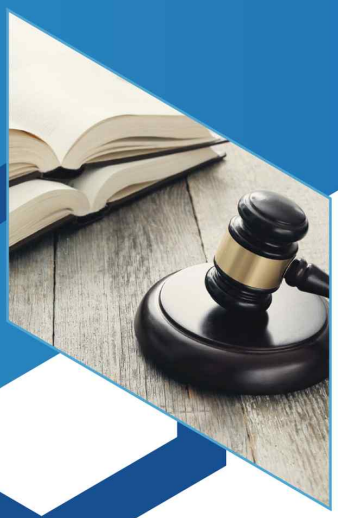
일 잘하는 의회, 함께 만드는 전북

2024년
전북특별자치도 조례
입법평가 결과보고서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입법정책담당관)

목 차

Ⅰ. 전북특별자치도 조례 입법평가 개요 ····· 3

Ⅱ. 전북특별자치도 조례 입법평가 결과 요약 ····· 6

1. 입법평가 결과표 ····· 7
2. 입법평가 심층분석 결과 요약 ····· 9
3. 구체적인 정비 요약표 ····· 12

Ⅲ. 조례별 입법평가 결과 보고 ····· 15

[기획행정위원회]

1. 전북특별자치도 미래전략과제 발굴 및 육성 조례 ····· 19
2. 전북특별자치도 용역관리 조례 ····· 23
3. 전북특별자치도 치안행정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 31
4. 전북특별자치도 북한이탈주민의 정착 지원에 관한 조례 ····· 34
5. 전북특별자치도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조례 ····· 42
6. 전북특별자치도 농산어촌유학 지원 조례 ····· 49
7. 전북특별자치도 민주시민교육 활성화와 지원에 관한 조례 ····· 54
8. 전북특별자치도 전입대학생 도서구입비 지원 조례 ····· 60
9. 전북특별자치도 출향도민 교류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63
10. 전북특별자치도 공직자 청렴도 관리 조례 ····· 67

[농업복지환경위원회]

11. 전북특별자치도 보호관찰 대상자 사회 복귀 지원에 관한 조례 ····· 75
12. 전북특별자치도 어르신 전용주차구역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 80
13. 전북특별자치도 금연활동 실천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환경조성 조례 ····· 84
14. 전북특별자치도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장소 지정 조례 ····· 89
15. 전북특별자치도 순환골재 등 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 ····· 95

16. 전북특별자치도 녹색제품 구매 촉진 조례 ····· 100
17. 전북특별자치도 도립공원 조례 ····· 106
18. 전북특별자치도 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 방지 조례 ····· 116
19. 전북특별자치도 농어촌 체험관광 활성화 지원 조례 ····· 123
20. 전북특별자치도 스마트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127

[경제산업건설위원회]

21. 전북특별자치도 청년일자리 창출 촉진에 관한 조례 ····· 133
22. 전북특별자치도 유통산업 상생협력 및 대규모점포 등의 입점예고에 관한 조례 ····· 138
23. 전북특별자치도 경제교육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145
24. 전북특별자치도 고등학교졸업자 고용촉진 조례 ····· 150
25. 전북특별자치도 수출 및 투자유공업체 포상 조례 ····· 153
26. 전북특별자치도 건설신기술 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 ····· 158
27. 전북특별자치도 여객자동차 운수사업 보조금 지원조례 ····· 164
28. 전북특별자치도 지식재산 진흥 조례 ····· 171
29. 전북특별자치도 도시가스 공급시설 설치비 지원 조례 ····· 178
30. 전북특별자치도 전기사업 주민상생 조례 ····· 182

[문화안전소방위원회]

31. 전북특별자치도 도민안전보험 지원 조례 ····· 187
32. 전북특별자치도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191
33. 전북특별자치도 장애인 문화예술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 ····· 195
34. 전북특별자치도 지역서점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200
35. 전북투어패스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조례 ····· 208
36. 전북특별자치도 관광기념품 개발 및 육성조례 ····· 212
37. 전북특별자치도 바둑 활성화 지원 조례 ····· 219
38. 전북특별자치도 국제문화예술 체육행사 지원 조례 ····· 223
39. 전북특별자치도 공사상 소방공무원 지원에 관한 조례 ····· 227
40. 전북특별자치도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 조례 ····· 233

Ⅳ. 심층분석 대상 조례 결과 보고 ····· 243

1. 전북특별자치도 미래전략과제 발굴 및 육성 조례 ····· 245
2. 전북특별자치도 치안행정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 267
3. 전북특별자치도 북한이탈주민의 정착 지원에 관한 조례 ····· 287
4. 전북특별자치도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조례 ····· 309
5. 전북특별자치도 농산어촌유학 지원 조례 ····· 335
6. 전북특별자치도 전입대학생 도서구입비 지원 조례 ····· 357
7. 전북특별자치도 출향도민 교류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371
8. 전북특별자치도 어르신 전용주차구역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 389
9. 전북특별자치도 금연활동 실천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환경조성 조례 ····· 405
10. 전북특별자치도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장소 지정 조례 ····· 423
11. 전북특별자치도 녹색제품 구매 촉진 조례 ····· 441
12. 전북특별자치도 도립공원 조례 ····· 457
13. 전북특별자치도 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 방지 조례 ····· 485
14. 전북특별자치도 농어촌 체험관광 활성화 지원 조례 ····· 507
15. 전북특별자치도 스마트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527
16. 전북특별자치도 청년일자리 창출 촉진에 관한 조례 ····· 555
17. 전북특별자치도 경제교육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579
18. 전북특별자치도 고등학교졸업자 고용촉진 조례 ····· 597
19. 전북특별자치도 건설신기술 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 ····· 617
20. 전북특별자치도 도시가스 공급시설 설치비 지원 조례 ····· 635
21. 전북특별자치도 지역서점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651
22. 전북투어패스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조례 ····· 679
23. 전북특별자치도 관광기념품 개발 및 육성조례 ····· 703
24. 전북특별자치도 바둑 활성화 지원 조례 ····· 727
25. 전북특별자치도 국제문화예술 체육행사 지원 조례 ····· 745
26. 전북특별자치도 공사상 소방공무원 지원에 관한 조례 ····· 767
27. 전북특별자치도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 조례 ····· 787

Ⅰ. 전북특별자치도 조례 입법평가 개요

Ⅰ. 전북특별자치도 조례 입법평가 개요

Ⅰ 추진배경 및 필요성

○ 「**2024년 전북특별자치도 조례 입법평가 계획**(입법정책담당관-578호)」에 따라 조례의 법적 정합성, 실효성 등 제고를 위한 **검증체계 구축 및 운영** 필요

○ 「전북특별자치도 조례 입법평가(시행 2023.7.7.)」 제정 후 입법평가 본격 시행을 앞두고 **외부 전문기관의 축적된 노하우**와 **객관적인 평가**를 통해 추후 조례 입법평가의 방향성을 확보하고, 전북자치도 조례의 질적 향상 도모

Ⅱ 용 역 개 요

○ **용 역 명** : 2024년 전북특별자치도 조례 입법평가 연구용역

○ **사업기간** : ’24. 8. 19. ~ 12. 16.(착수일로부터 4개월)

○ **사 업 비** : 50,000천원(도비)

○ **과업대상** : 전북특별자치도 조례 40건

○ **연구방법** : 조례 심층분석을 통한 문제점 파악, 시사점 도출 및 개선방안 등 의견 제시

○ **수행기관** : **한국법제연구원(법제 및 입법 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 **계약방법** : **수의계약**

한국법제연구원

- 설　　립 : 1990년 설립 / 법제 전문 국책연구기관
- 조직구성 : 5개본부 (기획경영본부, 연구본부, 혁신법제본부, 미래법제본부, 국제협력사업본부) 이하 19개 팀·연구자그룹
- 주요기능 : 국내외 헌정제도·법제와 입법정책 조사·연구, 국내외 입법데이터 관련 통계·평가 및 DB 구축, 법령의 입법 취지와 배경 등에 관한 해설자료 발간·보급, 입법이론·입법기술·법령용어 정비 및 법제사에 관한 조사·연구 등

* 2013년 지방자치단체 입법평가 연구사업 도입 이래 76개 자치단체 입법평가 실시

Ⅲ 용역 주요내용

○ 전북특별자치도 입법 평가대상 조례에 대한 현황 진단

○ 입법평가 기준에 의한 조례 입법평가 실시

- 기획행정, 농업복지환경, 경제산업건설, 문화안전소방 등 4개 분야별로 입법평가 평가기준표에 따른 입법평가 실시
- 평가대상 조례의 법적 정합성, 입법취지 및 자치법규 입안기준 부합성 등 평가
- 기초자료 분석에 기반한 조례의 실효성, 집행가능성 등 평가
- 상위법령 제·개정, 조례 제정 당시 상황과의 입법환경 변화 및 조례의 특수성 등을 고려하여 다양한 규범성 평가와 실증적 분석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규범적 대안 및 개선 이유 제시

○ 평가대상 조례의 개선방안 및 개정안 등 도출

- 개별 조례 입법평가에 따른 평가의견 제시 및 평가자료 작성
- 「자치법규 입안기준」(법제처), 「전북특별자치도 조례 입법평가 조례」 제4조에 따른 평가기준을 적용하여 대상 조례의 전반적인 문제점 및 개선방안 제시

○ 입법평가위원회 심의·의결 대응

- 입법평가 결과와 개선안을 종합하여 관련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입법평가위원회”에 상정, 타당성 검토 및 최종 개선방안 도출
- 최종보고회 시 입법평가위원회 회의자료 작성하고 입법평가위원회에서 제시한 보완사항 등 평가결과 심의·의결사항을 반영하여 최종보고서를 작성·제출

참고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입법평가위원회 현황**

□ 구성개요

○ (구　　성) 13명(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 포함)

- (당연직) 의회운영위원장<위원장> / (위촉직) 도의원, 교수, 변호사, 행정전문가

○ (위촉기간) ’23. 11. 15. ~ ’25. 11. 14.(2년)

* 단, 조례 제6조제5항에 따라 도의원 임기 : ’24.7.25. ~ ’26.6.30.

○ (역　　할) ①입법평가에 관한 사항 ②입법평가 제도 및 결과 개선

○ (근　　거) 「전북특별자치도 조례 입법평가 조례」 제6조

□ 위원회 위원 명단

분야	소　속	성　명	비 고
도의원	의회운영위원회	윤 수 봉	위원장(당연직)
	기획행정위원회	이 수 진	
	농업복지환경위원회	권 요 안	
	경제산업건설위원회	서 난 이	
	문화안전소방위원회	박 용 근	
교 수	전북대 글로벌융합대학	허 강 무	
	전북대 법학전문대학원	김 소 연	
	전북대 법학전문대학원	박 수 영	
	전주대 법학과	이 존 걸	
변호사	도의회 입법고문	국 순 화	
	도의회 법률고문	김 진 미	
	도의회 법률고문	두 세 훈	
행정전문가	(前)정읍시 부시장	곽 승 기	부위원장(호선)

Ⅱ. 전북특별자치도 조례 입법평가 결과 요약

1. 입법평가 결과표

연번	조 례 명	소관위원회	조례 유형	개선방안
1	전북특별자치도 미래전략과제 발굴 및 육성 조례	기획행정	자치	**개정/일반**
2	전북특별자치도 용역관리 조례	기획행정	위임	**일반 정비**
3	전북특별자치도 치안행정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기획행정	자치	**폐지 권고**
4	전북특별자치도 북한이탈주민의 정착 지원에 관한 조례	기획행정	자치	**개정/이행/일반**
5	전북특별자치도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조례	기획행정	위임	**개정/일반**
6	전북특별자치도 농산어촌유학 지원 조례	기획행정	자치	**개정/통합/일반**
7	전북특별자치도 민주시민교육 활성화와 지원에 관한 조례	기획행정	자치	**일반 정비**
8	전북특별자치도 전입대학생 도서구입비 지원 조례	기획행정	자치	**폐지/일반**
9	전북특별자치도 출향도민 교류 및 지원에 관한 조례	기획행정	자치	**개정/일반**
10	전북특별자치도 공직자 청렴도 관리 조례	기획행정	자치	**일반 정비**
11	전북특별자치도 보호관찰 대상자 사회 복귀 지원에 관한 조례	농업복지환경	자치	**개정/일반**
12	전북특별자치도 어르신 전용주차구역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농업복지환경	자치	**개정/일반**
13	전북특별자치도 금연활동 실천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환경조성 조례	농업복지환경	위임	**개정/일반**
14	전북특별자치도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장소 지정 조례	농업복지환경	위임	**개정/일반**
15	전북특별자치도 순환골재 등 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	농업복지환경	위임	**일반 정비**
16	전북특별자치도 녹색제품 구매 촉진 조례	농업복지환경	위임	**개정/일반**
17	전북특별자치도 도립공원 조례	농업복지환경	위임	**개정/일반**
18	전북특별자치도 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 방지 조례	농업복지환경	위임	**개정/일반**
19	전북특별자치도 농어촌 체험관광 활성화 지원 조례	농업복지환경	자치	**통합/일반**

연번	조 례 명	소관위원회	조례 유형	개선방안
20	전북특별자치도 스마트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농업복지환경	자치	**개정/일반**
21	전북특별자치도 청년일자리 창출 촉진에 관한 조례	경제산업건설	자치	**통합/일반**
22	전북특별자치도 유통산업 상생협력 및 대규모점포 등의 입점예고에 관한 조례	경제산업건설	자치	**개정/일반**
23	전북특별자치도 경제교육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경제산업건설	자치	**개정/일반**
24	전북특별자치도 고등학교졸업자 고용촉진 조례	경제산업건설	자치	**통합/일반**
25	전북특별자치도 수출 및 투자유공업체 포상 조례	경제산업건설	자치	**일반 정비**
26	전북특별자치도 건설신기술 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	경제산업건설	자치	**개정/일반**
27	전북특별자치도 여객자동차운수사업 보조금 지원조례	경제산업건설	위임	**개정/일반**
28	전북특별자치도 지식재산진흥조례	경제산업건설	자치	**일반 정비**
29	전북특별자치도 도시가스 공급시설 설치비 지원 조례	경제산업건설	자치	**개정/이행/일반**
30	전북특별자치도 전기사업 주민상생 조례	경제산업건설	자치	**일반 정비**
31	전북특별자치도 도민안전보험 지원 조례	문화안전소방	자치	**일반 정비**
32	전북특별자치도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문화안전소방	자치	**개정/일반**
33	전북특별자치도 장애인 문화예술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	문화안전소방	자치	**개정/일반**
34	전북특별자치도 지역서점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문화안전소방	위임	**개정/일반**
35	전북투어패스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조례	문화안전소방	자치	**일반 정비**
36	전북특별자치도 관광기념품 개발 및 육성조례	문화안전소방	자치	**개정/일반**
37	전북특별자치도 바둑 활성화 지원 조례	문화안전소방	자치	**일반 정비**
38	전북특별자치도 국제문화예술체육행사 지원 조례	문화안전소방	자치	**폐지/일반**
39	전북특별자치도 공사상 소방공무원 지원에 관한 조례	문화안전소방	자치	**개정/일반**
40	전북특별자치도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 조례	문화안전소방	위임	**개정/일반**

2. 입법평가 심층분석 대상 조례 결과 요약

순번	조 례 명	소관	유형	개선방안	심층분석 대상 선정 이유	심층분석 결과 요약
1	전북특별자치도 미래전략과제 발굴 및 육성 조례	기획행정	자치	개정/일반	전북특별자치도의 미래전략과제 발굴과 관련하여 조례로 지원이 가능한 사항 또는 그 방향성에 대한 추가를 검토하기 위하여 심층분석을 실시	지원사업으로 전북자치도의 지속가능한 발전 확립 · 확산 및 보급을 위한 사업을 추가하는 방안을 제시하고 미래전략 과제의 범위 및 지원사업에 관한 내용의 신설을 포함한 개정안을 제안
2	전북특별자치도 치안행정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기획행정	자치	폐지 권고	상위법 폐지, 실무협의회와의 업무 중복 등을 고려해서 폐지 검토 권고	상위법에 규정이 존재하지 않으며, 자치경찰위원회의 설치로 기능이 중복되어 치안행정협의회 운영의 실효성이 없어 조례 폐지 권고
3	전북특별자치도 북한이탈주민의 정착 지원에 관한 조례	기획행정	자치	개정/이행/일반	실무상 협의회를 반기 1회 이상 개최하기 어려운 경우 조례 제11조제4항을 삭제하거나 필요시 개최하도록 규정을 정비하는 방안 검토	위원회의 운영에 어려움이 예상된다는 점에서 위원회 운영과 관련하여 이 조례 제11조 제4항을 개정하는 방안을 제안
4	전북특별자치도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조례	기획행정	위임	개정/일반	남북관계 경색으로 인하여 현재 남북협력기금의 사용이 어려운 실정을 반영하여 기금을 폐지하고 일반회계로 전환하는 등 현안사업에 기금을 사용하여야 한다는 논의가 확대. 검토 필요	중장기적으로 남북관계의 경색이 계속되고 이와 관련된 전북자치도 내의 논의가 성숙되면 다시 검토할 수 있을 것임. 이 조례 현행 유지 권고
5	전북특별자치도 농산어촌유학 지원 조례	기획행정	자치	개정/통합/일반	농산어촌유학 활성화를 위해 타 시·도의 사례를 분석하여 시사점을 발굴하여 제안	조례를 별도로 운영하고자 하는 경우 타 시·도의 사례를 참고하여 가족 체류 프로그램 개발 및 지원사업 등 대상사업을 추가하도록 규정 신설 권고, 한편, 「전북특별자치도 농어촌 체험관광 활성화 지원 조례」와의 관계에서 세부적인 지원 내용의 유사성이 있으므로 지원 계획 수립 시 농산어촌유학을 「전북특별자치도 농어촌 체험관광 활성화 지원 조례」의 체험교육에 포함시키도록 하는 방안으로 통합안 제안
6	전북특별자치도 전입대학생 도서구입비 지원 조례	기획행정	자치	폐지/일반	상당 기간 실효성이 없었던 조례이므로 폐지 검토를 권고	전입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도서구입비 지원은 교재구입비와 일맥상통할 것으로 예상되는바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원으로 갈음할 수 있음. 조례 폐지 권고
7	전북특별자치도 출향도민 교류 및 지원에 관한 조례	기획행정	자치	개정/일반	타 시·도의 사례를 참고하여 출향도민회 관련 규정, 전북자치도민증 발급과 관련된 규정, 포상규정 신설 검토	타 시·도 분석을 통해 입장료 감면 규정을 도입하기 위하여 전북도민증 발급을 함께 검토할 필요가 있어 관련 개정안을 제안
8	전북특별자치도 어르신 전용주차구역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농업복지환경	자치	개정/일반	타 시·도 조례를 통해 전용표지를 발급하는 방안 또는 민원처리 우선창구를 개설 및 운영하는 방안을 검토	어르신 자동차표지 발급에 필요한 사항을 규칙으로 정하도록 개정안에서 위임하는 방안을 제안하고, 규칙으로 정하여야 하는 어르신 자동차표지 발급 관련 사항을 제안
9	전북특별자치도 금연활동 실천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환경조성 조례	농업복지환경	위임	개정/일반	타 시·도의 사례를 참고하여 흡연실 설치를 할 수 있도록 하여 흡연자의 권리를 보호함과 동시에 금연환경을 조성하고 간접흡연을 방지하는데 기여하도록 규정 신설 검토	타 시·도 사례를 참고하여 흡연실 설치 관련 규정의 신설을 제안함

순번	조 례 명	소관	유형	개선방안	심층분석 대상 선정 이유	심층분석 결과 요약
10	전북특별자치도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장소 지정 조례	농업복지환경	위임	개정/일반	타 시·도의 사례를 참고하여 영업자 지원, 영업자의 준수사항 및 영업신고 표시, 위반행위에 대한 조치사항에 대한 규정 신설 필요성 검토	타 시·도의 사례를 참고하여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에 대한 지원 등, 영업자의 준수사항, 영업신고표시, 위반행위에 대한 조치 규정을 신설하는 방안을 개정안에 반영하여 제시
11	전북특별자치도 녹색제품 구매 촉진 조례	농업복지환경	위임	개정/일반	타 시·도 사례와 비교하여 추가적인 시사점 검토	추가적인 시사점 없음
12	전북특별자치도 도립공원 조례	농업복지환경	위임	개정/일반	타 시·도의 사례를 참고하여 규정 신설이 필요한 사항에 대한 시사점을 도출함	경기도의 사례를 참고하여 야간탐방과 안전용품 대여, 자연환경해설사 채용에 대한 규정 신설을 제안함
13	전북특별자치도 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 방지 조례	농업복지환경	위임	개정/일반	타 시·도 사례와 비교하여 추가적인 시사점 검토	추가적인 시사점 없음
14	전북특별자치도 농어촌 체험관광 활성화 지원 조례	농업복지환경	자치	통합/일반	「전북특별자치도 농어촌민박사업 지원조례」와 조례 제정 목적 및 농어촌에 대한 정의가 같고, 농어촌민박사업 활성화 계획을 농어촌관광 활성화 기본계획으로 갈음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는 점 등에서 통합 가능 여부 검토	「전북특별자치도 농어촌 체험관광 활성화 지원 조례」, 「전북특별자치도 농산어촌 유학지원 조례」, 「전북특별자치도 농어촌민박사업 지원 조례」 이 세 조례의 제정목적, 정의, 지원사업 등 검토 결과, 「전북특별자치도 농어촌 체험관광 활성화 지원 조례」에 「전북특별자치도 농산어촌 유학지원 조례」를 통합 권고하고, 「전북특별자치도 농어촌민박사업 지원 조례」 는 지원 대상 및 내용이 달라 개별 조례 유지하는 것으로 검토
15	전북특별자치도 스마트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농업복지환경	자치	개정/일반	집행부에서 상위법 제정으로 인한 조례 전부개정을 준비 중이며, 심층분석 시 이를 반영·검토하여 개정안 제시	「스마트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에 따라 집행부서에서 추진하고 있는 전부개정 조례안의 각 규정에 대하여 세부 내용을 검토하여 정비방안을 제안
16	전북특별자치도 청년일자리 창출 촉진에 관한 조례	경제산업건설	자치	통합/일반	「전북특별자치도 고등학교 졸업자 고용촉진 조례」상 "고등학교 졸업자"의 개념이 「전북특별자치도 청년일자리 창출 촉진에 관한 조례」의 "청년"의 하위개념에 해당하므로 통합 가능여부 검토	양 조례의 세부 규정 내용을 살펴본 바 고등학교 졸업자 고용 확대, 불이익 금지에 관한 규정이 특징적이라고 할 것임. 따라서 「전북특별자치도 청년일자리 창출 촉진에 관한 조례」를 기반으로 하되 고등학교 졸업자 고용 확대와 불이익 금지에 관한 규정을 추가하는 통합안을 제안
17	전북특별자치도 경제교육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경제산업건설	자치	개정/일반	타 시·도 사례와 비교하여 추가적인 시사점 검토	추가적인 시사점 없음
18	전북특별자치도 고등학교졸업자 고용촉진 조례	경제산업건설	자치	통합/일반	「전북특별자치도 고등학교 졸업자 고용촉진 조례」상 "고등학교 졸업자"의 개념이 「전북특별자치도 청년일자리 창출 촉진에 관한 조례」의 "청년"의 하위개념에 해당하므로 통합 검토	「전북특별자치도 청년일자리 창출 촉진에 관한 조례」 분석 내용을 참고하여 통합안 제안
19	전북특별자치도 건설신기술 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	경제산업건설	자치	개정/일반	타 시·도 사례와 비교하여 추가적인 시사점 검토	추가적인 시사점 없음

순번	조 례 명	소관	유형	개선방안	심층분석 대상 선정 이유	심층분석 결과 요약
20	전북특별자치도 도시가스 공급시설 설치비 지원 조례	경제산업건설	자치	개정/이행/일반	타 시·도 사례와 비교하여 추가적인 시사점 검토	추가적인 시사점 없음
21	전북특별자치도 지역서점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문화안전소방	위임	개정/일반	지역서점 활성화를 위하여 전북자치도의 특성을 담아 조례로 지역서점의 요건을 정할 필요성에 대하여 검토 필요	타 시·도의 사례를 참고하여 지원사업에 관한 규정 추가, 지역서점 독서문화 지원 규정, 인증제도 운영, 우선 조달계약에 관한 규정 신설 권고
22	전북투어패스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조례	문화안전소방	자치	일반정비	전북투어패스 운영 관련 부실 문제가 제기된 바 있어 조례를 통하여 개선할 수 있도록 규정을 정비할 필요성 검토	보도자료에서 언급하고 있는 사업운영 부실 문제는 집행부에서 제출한 기초자료의 운영사업비 교부결정 관련 자료, 운영사업 정산검사 결과보고 자료 등을 분석한 결과 조례 규정의 불비에서 비롯된 문제라고 보기에는 어려움이 있어 특별히 조례 규정으로 보완할 사항은 없음
23	전북특별자치도 관광기념품 개발 및 육성 조례	문화안전소방	자치	개정/일반	타 시·도 사례와 비교하여 추가적으로 검토할 내용을 살펴서 시사점을 검토	관광명장의 선정에 관해서는 제주의 규정 사례를 검토하여 개정안을 제시 타 시·도의 사례를 참고하여 우수업체 지정 관련 규정 신설하는 경우 기념품 100선에 선정된 업체를 대상으로 위원회에서 선정하도록 하여 현행 조례상 제도와 연계하여 선정하도록 정비 검토
24	전북특별자치도 바둑 활성화 지원 조례	문화안전소방	자치	일반정비	유사한 내용을 규정하고 있는 「전북특별자치도 체육진흥 조례」와의 통합 운영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집행부 의견에 따라 심층분석을 통해 통합 여부 검토	조례를 별도로 운영함으로써 가질 수 있는 장점으로 "바둑 활성화" 지원에 관한 상징성 확보라는 면에서 조례를 별도로 운영할 실익이 크다고 보여 이 조례를 별도로 운영토록 권고
25	전북특별자치도 국제문화예술체육 행사 지원 조례	문화안전소방	자치	폐지/일반	타 시·도에 사례가 없는 전국 유일한 조례로 조례의 실효성 문제에 대한 검토 의견이 있어 심층분석 실시	이 조례는 지나치게 포괄적일 뿐더러 개별적 구체성을 특정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으므로 전북특별자치도의 국제행사의 특성을 반영할 수 있는 맞춤형 개별 조례를 제정하여 국제행사를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여 이 조례는 폐지를 권고함
26	전북특별자치도 공사상 소방공무원 지원에 관한 조례	문화안전소방	자치	개정/일반	「전북특별자치도 공사상 소방공무원 지원에 관한 조례」상 지원계획과 「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기본법」에 따른 집행계획 간 정합성을 확인할 필요	「전북특별자치도 공사상 소방공무원 지원에 관한 조례」상 지원계획을 「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기본법」에 따른 집행계획으로 대체하여도 무방하다고 판단됨. 다만 이와 같은 내용을 조례에서 명확하게 규정하도록 조례 개정안을 제안
27	전북특별자치도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 조례	문화안전소방	위임	개정/일반	타 시·도 사례와 비교하여 추가적인 시사점 검토	추가적인 시사점 없음

3. 구체적인 정비 요약표

○ 개정 권고 조례 목록

: 총 40건 중 33건 (개정권고/일반정비 21건, 개정권고/이행권고/일반정비 2건, 개정권고/통합권고/일반정비 1건)

- 상위법 개정사항 미반영한 경우, 조례의 실효성 확보 위해 개정이 필요한 사항, 타 시·도의 사례를 참고하여 조문 신설을 검토하는 경우 등

○ 통합 검토 권고 조례 목록

: 총 40건 중 4건 (통합권고/일반정비 3건, 개정권고/통합권고/일반정비 1건)

- 입법취지(목적) 또는 규율 대상 등이 동일하거나 유사하여 통합이 가능한 경우로 통합 검토를 권고

순번	조 례 명	소관	유형	개선방안	조 례 개 정 방 향
1	농산어촌유학 지원 조례	기획행정	자치	개정/통합/일반	- 「전북특별자치도 농어촌 체험관광 활성화 지원 조례」를 기반으로 계획 수립 시 농산어촌유학을 교육에 포섭 시키도록 하는 방안을 포함하여 위 조례와 **통합**안을 제안
2	농어촌 체험관광 활성화 지원 조례	농업복지환경	자치	통합/일반	- 「전북특별자치도 농산어촌유학 지원 조례」를 「전북특별자치도 농어촌 체험관광 활성화 지원 조례」에 **통합**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3	청년일자리 창출 촉진에 관한 조례	경제산업건설	자치	통합/일반	- "고등학교 졸업자"는 「전북특별자치도 청년일자리 창출 촉진에 관한 조례」에「전북특별자치도 고등학교 졸업자 고용촉진 조례」를 **통합** 검토 권고
4	고등학교졸업자 고용촉진 조례	경제산업건설	자치	통합/일반	- 「전북특별자치도 고등학교 졸업자 고용촉진 조례」를 「전북특별자치 도 청년일자리 창출 촉진에 관한 조례」에 **통합**을 검토할 필요

○ 폐지 권고 조례 목록

: 총 40건 중 3건 (폐지권고 1건, 폐지권고/일반정비 2건)

- 상위법 폐지와 타 조례와 기능 중복으로 실효성이 떨어지는 경우 및 상당기간 집행실적이 없어 실효성이 없었던 경우

순번	조 례 명	소관	유형	개선방안	조 례 개 정 방 향
1	치안행정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기획행정	자치	폐지 권고	- 상위법인「경찰법」제16조가 폐지되었고, 실무협의회와의 업무 중복 등을 고려해서 **폐지** 검토 권고
2	전입대학생 도서 구입비 지원 조례	기획행정	자치	폐지/일반	- 상당 기간 실효성이 없었던 조례이므로 **폐지** 권고(2003년 이후 예산배정 및 집행실적 없음). 단, 이 조례를 유지하는 경우 일반 정비 검토
3	국제문화예술체육 행사 지원 조례	문화안전소방	자치	폐지/일반	- 이 조례는 국제행사 지원의 일반적이고 포괄적인 내용을 규정하는 조례이지만 국제행사의 특성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는 문제점이 있어 이 조례는 **폐지**하고 행사별 별도 조례 제정 권고, 단, 이 조례를 유지하는 경우 일반 정비 검토

○ 이행 권고 조례 목록

: 총 40건 중 2건 (개정권고/이행권고/일반정비 2건)

순번	조례명	소관	유형	개선방안	조 례 개 정 방 향
1	북한이탈주민의 정착 지원에 관한 조례	기획행정	자치	개정/이행/일반 (협의회 개최 권고)	- 제11조제4항에서 "협의회는 반기 1회 이상 개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2022년 1회, 2023년 1회로 조례의 규정과 달리 개최되고 있어 반기 1회 이상 개최되도록 **협의회 개최**를 **권고**할 필요가 있음
2	도시가스 공급시설 설치비 지원 조례	경제산업건설	자치	개정/이행/일반 (규칙 제정 권고)	- 제7조에서 지원대상 구역 선정 방법 및 절차를 규칙으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규칙을 운영하고 있지 않음. **규칙 제정 권고** 검토

Ⅲ. 조례별 입법평가 결과보고

1. 기획행정위원회

연 번	조례명	분 류	위임근거	시행일	비 고
1	**전북특별자치도 미래전략과제 발굴 및 육성 조례**	자치조례	-	2017. 2. 3., 제정 (일부개정 1회) [시행 2024. 1. 18.] [전북특별자치도조례 제5399호, 2023. 12. 8., 일부개정]	■ 개정 권고 □ 통합 권고 □ 폐지 권고 □ 이행 권고 ■ 일반 정비 □ 현행 유지 □ 기타( )

사전 검토

○ 기본자료 분석

- (2-3) 조례에 근거하여 제2회 전북·새만금 혁신 심포지엄(JSIS) 계획을 수립함
- (2-5) 조례 제5조에 따라 새만금의 새로운 미래전략 구상을 위한 심포지엄 개최에 30,000천원을 집행함
- (3-3) 2023년 심포지엄 개최에 필요한 행사비용을 집행하기 위해 30,000천원을 확보하여 전액 집행함

○ 기타의견

- (8-1) 심포지엄을 지속적으로 개최할 예정으로 조례의 유지가 필요함

입법체계 분석

○ 조례 제정 목적

- 전북특별자치도의 정체성을 확립하고 미래전략과제 발굴 및 육성을 통해 미래 도시경쟁력 제고를 목적으로 함

○ 자치법규 입안기준 부합성

- 자치법규 입안기준에 부합하도록 인용 법령 정비 및 일반적 위임규정 삭제 등 정비 필요

○ 위임 적합성 평가

- 자치조례로 해당사항 없음

평가지표에 따른 평가

○ 분석지표별 평가

평가항목	평가항목별 검토 내용
1. 입법 근거 및 적법성	자치사무의 범위에서 적절하게 제정되었음
2. 조례의 실효성	조례 제5조와 제6조에 따라 지원대상을 규정하여 조례의 실효성을 확보하고 있음
3. 조례 내용의 적정성	조례에서 규정하고 있는 재정지원이 적절하게 이루어지고 있음
4. 조례의 공평성	장애, 성별, 나이 등에 관한 사회적 편견, 고정관념이 반영된 표현 및 차별 규정 없음
5. 주민 수용성	조례의 체계 및 용어가 주민이 알기 쉽게 되어 있음
6. 전북자치도 현실부합성	전북특별자치도의 정체성을 확립하고 미래전략과제를 발굴·육성하기

	위하여 제정된 본 조례는 행정수요를 반영하고 있어 전북자치도 현실에 부합함
7. 위원회 운영의 적정성	위원회 운영 관련 규정이 없음
※ 기타 의견	없음

○ 타 시·도 유사 조례와의 비교

전북특별자치도 미래전략과제 발굴 및 육성 조례	서울특별시 미래전략과제 발굴 및 육성조례	대구광역시 미래전략과제 발굴 및 육성조례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제3조(미래전략과제의 범위)	제3조(미래전략과제의 범위)	제3조(미래전략과제의 범위)
제4조(도지사의 책무)	제4조(시장의 책무)	제4조(시장의 책무)
제5조(지원대상)	제5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5조(지원대상)
제6조(지원사업)	제6조(지원대상)	제6조(지원사업)
제7조(지원절차 등)	제7조(지원사업)	제7조(지원절차 등)
제8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8조(지원절차 등)	제8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9조(시행규칙)	제9조(시행규칙)	제9조(시행규칙)

- 미래전략과제 발굴 및 육성 관련 조례는 전북특별자치도, 서울특별시, 대구광역시 총 3곳의 시·도에서만 운영 중이며 유사한 내용을 규정하고 있어 특별한 시사점 없음

○ 규제사항 평가

- 특이사항 없음

목적달성도 및 부수효과 분석

○ 조례 목적달성도 평가

- 조례 내용에 따라 새만금지역은 전북특별자치도의 미래전략과제로 설정하고 심포지엄을 지속적으로 개최하여 조례의 제정목적이 달성되고 있다고 평가됨

○ 부수효과

- 새만금지역을 중심으로 하여 지역 정체성을 확립할 수 있는 다양한 정책 추진 가능성 확대

관계법령

- 자치조례로 해당사항 없음

조례 개정방안

○ 조례 개정 방향

- 제1조: 이 조례의 목적을 명확하게 표현하도록 목적조항의 문장 표현 정비 검토
- 제5조제4호: 직업전문학교의 경우 「고등교육법」에 근거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제28조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지정한 시설이므로 이에 맞게 규정 정비 검토
- 제6조: 각 호의 내용을 이 조례의 목적에 맞게 중요성을 고려하여 재배치 검토
- 제7조: 재정지원에 관한 절차의 구체적인 사항은 당연히 「전북특별자치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적용 받으므로 규정의 실익이 없음(법제처, 2023년 우수조례 및 자치법규 입법컨설팅 사례집, 107면)
- 제9조: 시행규칙은 개별 조례에서 위임이 없더라도 조례의 집행에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규칙으

로 규정할 수 있으므로 삭제 권고

- 심층분석을 통해 타 시·도의 사례 및 「전북특별자치도 종합계획 수립 연구」를 참고하여 아래와 같이 미래전략과제의 범위 및 지원사업에 관한 내용의 규정 신설 권고

○ 개정안

현 행	개정안	비고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전북특별자치도의 정체성을 확립하고 미래전략과제 발굴 및 육성을 통해 미래 도시경쟁력 제고를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전북특별자치도의 정체성 확립 및 전북특별자치도의 미래전략과제 발굴과 육성을 통해 미래 도시경쟁력을 제고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 목적으로 한다.	-목적조항을 명확하게 규정하도록 정비 권고
제3조(미래전략과제의 범위) 이 조례를 적용하는 미래전략과제는 지역주력산업과 신성장동력산업, 공간개발사업, 삶의 질과 관련되는 장기적이고 미래지향적인 사업으로 한다.	제3조(미래전략과제의 범위) 이 조례를 적용하는 미래전략과제는 지역주력산업, 신성장동력산업, 농생명산업, 신기술기반사업, 환경보전사업, 해양개발사업, 공간개발사업 및 삶의 질과 관련되는 장기적이고 미래지향적인 사업으로 한다.	-심층분석을 통해 타 시·도의 사례 및 종합계획의 내용을 참고하여 미래전략과제의 범위를 확대하여 규정하도록 규정 정비 권고
제5조(지원대상) 도지사는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에게 미래전략과제 발굴을 시행하게 할 수 있다. 1. ~ 3. 생략 4. 「고등교육법」에 따라 설립된 대학 및 직업전문학교 <신설> 5. 「민법」제32조에 따라 중앙부처 장관의 허가를 받아 설립한 비영리 재단법인 6. 이하 생략	제5조(조사·연구 등) 도지사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에게 미래전략과제 발굴을 시행하게 할 수 있다. 1. ~ 3. 현행과 같음 4. 「고등교육법」에 따라 설립된 대학 4의2.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에 따른 직업전문학교 5. 「민법」 제32조에 따라 중앙부처 장관의 허가를 받아 설립한 비영리 재단법인 6. 이하 현행과 같음	-조제목: 과제발굴을 시행하도록 하는 것이므로 지원의 대상이 아니라 "조사·연구 등"으로 규정하여 이 조의 내용에 적합하게 규정하도록 정비 권고 -본문: 조례의 구체적 내용은 목적조항을 달성하기 위한 것으로 이를 규정하지 않아도 당연한 사항이므로 삭제 권고 -제4호: 지원대상 중 직업전문학교의 경우 「고등교육법」에 근거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제28조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지정한 시설이므로 이에

현 행	개정안	비고
		맞게 규정 정비 권고 -제5호: 띄어쓰기 정비
제6조(지원사업) 도지사는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 추진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미래전략과제 및 주요 시책 개발을 위한 사업 2. 다른 지방자치단체와의 상생발전을 위한 사업 3. 전북자치도 정체성 확립, 확산 및 보급을 위한 사업 <신설> 4.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6조(지원사업)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사업 추진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전북자치도 정체성 확립, 확산 및 보급을 위한 사업 2. 미래전략과제 및 주요 시책 개발을 위한 사업 3. 다른 지방자치단체와의 상생발전을 위한 사업 4. 전북자치도의 지속가능한 발전 확립, 확산 및 보급을 위한 사업 5. 신기술 및 인공지능을 활용한 시책 개발 및 보급을 위한 사업 6.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본문: 조례의 구체적 내용은 목적조항을 달성하기 위한 것으로 이를 규정하지 않아도 당연한 사항이므로 삭제 권고 -각 호의 내용을 이 조례의 목적에 맞게 중요성을 고려하여 재배치 권고 -심층분석을 통해 타 시·도의 사례 및 종합계획의 내용을 참고하여 미래전략과제의 범위를 확대하여 규정하도록 규정 정비 권고
제7조(지원절차 등) 제6조에 따라 경비를 지원하는 경우 지원 신청 및 교부절차 등 일반적인 사항은 「전북특별자치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삭제>	-재정지원에 관한 절차의 구체적인 사항은 당연히 「전북특별자치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적용 받으므로 규정의 실익이 없음(법제처, 2023년 우수조례 및 자치법규 입법컨설팅 사례집, 107면)
제8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미래전략과제 발굴 및 육성 등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 따른다.	제4조의2(다른 조례와의 관계) 미래전략과제 발굴 및 육성 등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 따른다.	-다른 조례와의 관계규정의 통상적인 위치에 규정하도록 조례 조항의 위치 정비 권고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삭제>	-시행규칙은 개별 조례에서 위임이 없더라도 조례의 집행에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규칙으로 규정할 수 있으므로 삭제 권고

연 번	조례명	분 류	위임근거	시행일	비 고
2	**전북특별자치도 용역관리 조례**	위임조례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제54조	2000. 7. 14., 제정 (전부개정 1회, 일부개정 16회) [시행 2024. 11. 1.] [전북특별자치도조례 제5618호, 2024. 11. 1., 일부개정]	□ 개정 권고 □ 통합 권고 □ 폐지 권고 □ 이행 권고 ■ 일반 정비 □ 현행 유지 □ 기타( )

사전 검토

○ 기본자료 분석

- (7-1) 조례 제1조와 제5조에 따라 전북특별자치도 용역과제심의위원회를 설치해야 함
- (7-2) 전북특별자치도 용역과제심의위원회는 조례로 설치된 위원회임
- (7-3) 위원회 위원 11인 중 여성의 비율이 36.5%임
- (7-4) 2022년에 7,334천원을 소요하여 7회(2.25, 3.25, 4.25, 7.1, 9.19, 10.27, 12.16), 2023년에 8,369천원을 소요하여 10회(1.31, 2.28, 3.30 ,4.27, 6.27, 8.30, 10.31, 11.9, 12.8, 12.20), 2024년에 3,000천원을 소요하여 4회(2.1, 3.21, 4.8, 6.28) 개최함

○ 기타의견

- (8-1) 용역사업의 필요성과 타당성을 사전에 심사하여 재정의 건전성 확보하고 용역결과의 활용 및 평가 등 효율적 추진을 위해 조례의 유지가 필요함

입법체계 분석

○ 조례 제정 목적

- 전북특별자치도가 시행하는 용역의 종합적·체계적 관리와 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용역의 품질과 활용도를 높이고 재정의 건전한 운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함

○ 자치법규 입안기준 부합성

- 자치법규 입안기준에 부합하도록 문장부호, 문장 표현 등 일반 정비 필요

○ 위임 적합성 평가

- 위임 범위에서 적절하게 규정하고 있음

평가지표에 따른 평가

○ 분석지표별 평가

평가항목	평가항목별 검토 내용
1. 입법 근거 및 적법성	용역사업의 필요성과 타당성 등 사전심사로 지방재정의 건전성 확보를 위해 정책연구용역을 관리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상위법의 위임 범위에서 적절하게 제정되었음
2. 조례의 실효성	조례 시행과정에서 다른 조례와의 충돌이나 모순 발생 사례와 유사조례의 제정 및 시행 사례가 없으므로 실효성이 확보됨

3. 조례 내용의 적정성	위원회 구성방법, 심의대상, 결과의 활용 등의 조례 내용이 적정함
4. 조례의 공평성	장애, 성별, 나이 등에 관한 사회적 편견, 고정관념이 반영된 표현 및 차별 규정 없음
5. 주민 수용성	조례의 체계 및 용어가 주민이 알기 쉽게 되어 있음
6. 전북자치도 현실부합성	입법 취지 및 필요성 등의 조항이 전북특별자치도 현실에 부합함
7. 위원회 운영의 적정성	규정에 따라 용역사업의 필요성과 타당성 사전 심사 등 위원회가 설치되어 활발히 운영되고 있어 위원회의 운영이 적절한 것으로 평가됨
※ 기타 의견	없음

○ 타 시·도 유사 조례와의 비교

전북특별자치도 용역관리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정책연구용역 관리 조례	경기도 정책연구용역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광주광역시 용역과제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제2조(용어의 정의)
제3조(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제3조(구성)
제4조(용역관리의 기본원칙)	제4조(정책연구용역 관리의 원칙)	제4조(정책연구용역 관리 원칙)	제4조(기능)
제5조(전북특별자치도 용역심의위원회 설치 및 구성)	제5조(정책연구용역심의위원회)	제5조(정책연구용역심의위원회 설치 및 기능)	제5조(심의대상)
제6조(기능)	제6조(위원회의 구성)	제6조(위원회 구성)	제6조(심의안건 제출)
제7조(위원장 등의 직무)	제7조(위원회의 운영)	제7조(위원장 직무)	제7조(위원장 등의 직무)
제8조(회의)	제8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제8조(위원회 회의)	제8조(회의)
제9조(의견청취 등)	제9조(용역실명제)	제9조(위원 해촉)	제9조(간사 등)
제10조(위원의 제척 및 회피)	제10조(연구과제의 선정)	제10조(제척·회피·기피)	제10조(제척·회피)
제11조(위원의 해임 및 해촉)	**제11조(연구과제의 중복 선정 금지)**	제11조(안건제출)	제11조(의견청취 등)
제12조(용역과제의 제출)	제12조(연구과제의 재심의)	제12조(재심의 사항)	제12조(용역실명제)
제13조(용역실명제)	제12조의2(정책연구용역 진행 상황의 점검)	제13조(의견청취)	제13조(용역 결과 평가 및 공개)
제14조(용역 진행상황의 점검)	제13조(연구결과의 평가)	제14조(간사)	제14조(회의록 등)
제15조(용역결과의 평가)	제14조(정책연구용역 결과 등의 공개)	제15조(결과조치 등)	제15조(수당 및 여비)
제16조(용역결과 등의 보고)	제15조(활용상황 점검)	제16조(정책연구용역 중간점검)	제16조(비밀엄수)
제17조(성과평가의 실시)	제16조(성과점검)	제17조(정책연구용역 집행 실명제의 실시)	
제18조(용역결과 등의 공개 및 활용)	제17조(수당 등 지급)	제18조(정책연구용역 결과 평가)	

제19조(평가결과 제출)	제18조	제19조(정책연구용역 결과 관리)	
제20조(회의록 등)		제20조(공공기관의 공개 등)	
제21조(수당 및 여비)		제21조(수당과 여비)	
제22조(비밀엄수)		제22조(시행규칙)	
제23조(시행규칙)			

- 전북특별자치도 조례에서는 제12조제2항에서 용역과제의 과업지시서를 제출함에 있어 기존 연구과제와의 유사·중복성을 확인하여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반면, 강원특별자치도 조례에서는 제11조에서 위원회가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기존 연구과제와 중복과제를 선정하면 안 된다는 규정을 따로 명문화하고 있음. 중복과제 선정과 관련된 확인의 주체에 있어 차이가 있음. 전북특별자치도는 위원회에서 심의·평가하는 과업지시서에 기존 용역과의 유사·중복성을 포함하여 제출하도록 하고 있어 큰 시사점이 있다고 보기는 어려움

○ 규제사항 평가

- 특이사항 없음

목적달성도 및 부수효과 분석

○ 조례 목적달성도 평가

- 조례 내용에 따라 2022년부터 활발하게 위원회를 개최하고 예산을 집행한 실적이 있는바 조례의 목적이 달성되고 있음

○ 부수효과

- 용역과제심사위원회를 지속적으로 개최하여 예산낭비를 최소화하고 용역결과에 대한 사후조치가 가능함

관계법령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제54조
제54조(정책연구의 공개) ① (생 략)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교육감은 정책연구가 종료된 후 제1항제2호에 따른 정책연구결과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책연구관리시스템을 통하여 공개하여야 한다. ③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른 비공개 대상 정보에 대해서는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조례 개정방안

○ 조례 개정 방향

- 제2조, 제3조, 제5조, 제6조, 제8조, 제10조, 제12조, 제13조: 법제처 자치법규 입안기준에 따른 정비(약칭 표현 수정, 띄어쓰기 정비, 인용 조례 정비 등)
- 제21조: 위원회의 수당 및 여비 규정의 경우 「전북특별자치도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등이 당연히 적용되는 것이므로 규정 실익이 없지만, 조례의 완성도·이해도를 위하여 조례명은 표기하지 않고 단순히 선언적 규정으로만 정비
- 제22조: 비밀준수 의무사항 삭제

- 제23조: 시행규칙은 개별 조례에서 위임이 없더라도 조례의 집행에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규칙으로 규정할 수 있으므로 삭제 검토

○ 개정안

현 행	개정안	비고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용역"이란 전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 라 한다)가 정책의 개발 또는 주요 시책사업의 추진에 필요한 조사·연구 등을 목적으로 용역과제를 선정하고, 연구자와 연구수행에 대한 대가를 지급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는 방식으로 조사·연구 등을 추진하는 용역사업을 말한다. 2. 이하 생략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용역"이란 전북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가 정책의 개발 또는 주요 시책사업의 추진에 필요한 조사·연구 등을 목적으로 용역과제를 선정하고, 연구자와 연구수행에 대한 대가를 지급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는 방식으로 조사·연구 등을 추진하는 용역사업을 말한다. 2. 이하 현행과 같음	-약칭문 띄어쓰기 정비 권고 -오기 정비 권고
제3조(적용범위) ① 이 조례는 전북특별자치도 본청 및 사업소에서 운영하고 있는 용역사업을 대상으로 하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의 범위에서 적용한다. ② 용역과제 심의는 제2조의 제3호부터 제5호까지 중 다음 사항에 한한다. 다만, 투자심사를 받은 사업, 국비 보조사업, 법령 및 조례에 의한 의무사업은 제외한다. 1. 용역비 1천만원 이상인 학술용역 2. 용역비 5천만원 이상이거나 공사설계 예정금액 10억원 이상인 종합기술용역 및 공사설계용역 3. 제2항 단서에도 불구하고 국비 보조사업의 경우, 용역비 축소 및 용역사업의 방향제시 등을 위하여 전북특별자치도 용역심의위원회에서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용역 ③ 생략	제3조(적용범위) ① 이 조례는 전북특별자치도 본청 및 사업소에서 운영하고 있는 용역사업을 대상으로 하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의 범위에서 적용한다. ② 용역과제 심의는 제2조제3호부터 제5호까지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역에 한정한다. 다만, 투자심사를 받은 사업, 국비 보조사업, 법령 및 조례에 의한 의무사업은 제외한다. 1. 용역비 1천만원 이상인 학술용역 2. 용역비 5천만원 이상이거나 공사설계 예정금액 10억원 이상인 종합기술용역 및 공사설계용역 3. 제2항 단서에도 불구하고 국비 보조사업의 경우, 용역비 축소 및 용역사업의 방향제시 등을 위하여 전북특별자치도 용역심의위원회에서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용역 ③ 현행과 같음	-제1항: 법률명 꺽쇠 정비 권고 -제2항: 본문 문장 표현 정비 권고 -제2항제3호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상 위원회 명칭 관련 개정사항이 띄어쓰기가 아닌 줄바꿈으로 반영되어 있음
제5조(구성) ① ~ ④ 생략 ⑤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제5조(구성) ① ~ ④ 현행과 같음 ⑤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불필요한 문장부호 삭제 권고 -단서에 문장부호 사용하도록 정비 권

현 행	개정안	비고
이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⑥ 생략	이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⑥ 현행과 같음	고
제6조(기능) ① 위원회는 용역사업에 관한 다음 사항을 심의·평가한다. 1. 이하 생략	제6조(기능) ① 위원회는 용역사업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평가한다. 1. 이하 현행과 같음	-법조문장으로 정비(법제처, 2022년 우수조례 및 자치법규 입법컨설팅 사례집, 190면)
제8조(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용역과제가 있을 때 분기마다 실시하되, 도지사의 요구가 있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위원장이 소집할 수 있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일시, 장소 및 안건을 집회 3일전까지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④ 생략	제8조(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용역과제가 있는 경우에 분기마다 실시하며, 도지사의 요구가 있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위원장이 소집할 수 있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려면 회의 개최 3일 전까지 회의 일시, 장소, 및 안건 등을 위원에게 통지해야 한다. 다만 회의를 긴급히 소집하거나 불가항력적인 사유 등으로 인하여 부득이 한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④ 현행과 같음	-제1항: 용역과제가 있는 경우에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문장을 마치는 경우 마침표를 표기하도록 정비 -"개의"가 정확한 표기임(법제처, 2023년 우수조례 및 자치법규 입법컨설팅 사례집, 119면 등) -법조문장으로 정비(법제처, 2023년 우수조례 및 자치법규 입법컨설팅 사례집, 95면 등)
제9조(의견청취 등) 위원회는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 될 때에는 관계전문가를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계기관·단체 등에 자료 또는 의견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제9조(의견청취 등) 위원회는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관계전문가를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계기관·단체 등에 자료 또는 의견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띄어쓰기 정비 권고
제10조(위원의 제척 및 회피) 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제척된다. 1. 위원이 심의 대상 용역과 관련된 자문, 연구 등을 수행하고 있거나 수행한 경우 2. 위원 본인 또는 위원의 배우자, 4촌 이내의 혈족, 2촌 이내의 인척이 용역을 수행할 경우	제10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제척된다. 1. 위원이나 그 배우자 또는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이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제목을 각 항의 규정과 일치하게 표기하여야 함 -위원의 전형적인 제척·기피·회피 사유로 문장정비(법제처, 2023년 우수조례 및 자치법규 입법컨설팅 사례집, 147-148면.) -문장정비(법제처, 2

현 행	개정안	비고
3. 제2호에 규정된 사람이 속한 기관・단체에서 용역을 수행할 경우 4. 위원이 최근 3년 이내에 심의 대상 용역과 관련된 기관・단체에서 재직한 경우 ② 당사자는 제1항에 따른 제척사유가 있거나 그 밖에 위원에게 공정한 심사를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은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사유에 해당하거나 본인에게 심사의 공정성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증언, 진술, 자문, 연구, 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② 당사자는 제1항에 따른 제척사유가 있거나 그 밖에 위원에게 공정한 심사를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은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023년 우수조례 및 자치법규 입법컨설팅 사례집, 148면.)
제12조(용역과제의 제출) ① 도지사는 용역사업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다음 사항이 포함된 용역의 과업지시서를 작성하여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1. 용역사업의 필요성 2. 용역의 방식 및 예산규모 3. 용역 결과의 활용방안 4. 기존 용역과의 유사・중복성 5. 그 밖에 용역과제의 추진에 관한 사항 ② 제1항제4호의 기존 용역과의 유사・중복성을 검토할 때 정책연구관리시스템(프리즘)을 활용하여 정부기관 및 타 지방자치단체에서 이미 연구가 완료되었거나 연구를 하고 있는 연구과제와의 유사・중복성을 확인하여야 한다.	제12조(용역과제의 제출) ① 도지사는 용역사업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용역의 과업지시서를 작성하여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1. 용역사업의 필요성 2. 용역의 방식 및 예산규모 3. 용역 결과의 활용방안 4. 기존 용역과의 유사・중복성 5. 그 밖에 용역과제의 추진에 관한 사항 ② 제1항제4호에 따른 기존 용역과의 유사・중복성을 검토할 때 정책연구관리시스템(프리즘을 말한다)을 활용하여 정부기관 및 타 지방자치단체에서 이미 연구가 완료되었거나 연구를 하고 있는 연구과제와의 유사・중복성을 확인하여야 한다.	-문장정비 및 띄어쓰기 정비 권고 -원칙적으로 괄호안의 문장은 완성형이어야 함(법제처, 2023년 우수조례 및 자치법규 입법컨설팅 사례집, 89면.)
제13조(용역실명제) ① ~ ② 생략 ③ 용역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용역시행부서의 과장급 공무원을 과	제13조(용역실명제) ① ~ ② 현행과 같음 ③ 용역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용역시행부서의 과장급 공무원을 과	-문장 표현 정비 권고

현 행	개정안	비고
제담당관으로 지정하고, 다음 사항을 담당한다. 1. 이하 생략	제담당관으로 지정하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담당한다. 1. 이하 현행과 같음	
제21조(수당 및 여비) 위원회에 참석하는 위촉직 위원 및 관계전문가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전북특별자치도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21조(수당 및 여비) 위원회에 참석하는 위촉직 위원 및 관계전문가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수당 및 여비에 관해 선언적인 의미만을 규정하면, 그에 따른 구체적인 사항은 당연히 「전북특별자치도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적용받으므로 규정의 실익이 없음(법제처, 2023년 우수조례 및 자치법규 입법컨설팅 사례집, 226면)
제22조(비밀엄수) 용역과제의 심의·평가업무에 관여한 위원 및 기타 종사자는 업무수행 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 하여서는 안 된다.	<삭제>	-상위법인 「개인정보 보호법」 제59조(금지행위)제2호, 제60조(비밀유지) 등에 규정하고 있어 조례에 재기재할 실익이 없음. 또한, 업무종사자가 비밀을 누설할 경우에는 다음 법 조항을 적용받게 되므로 삭제 권고(「형법」 제127조(공무상 비밀의 누설)-공무원인자가 비밀을 누설한 경우 처벌규정, 「형법」 제317조(업무상 비밀누설)-변호사등이 비밀을 누설한 경우 처벌규정, 「민법」 제750조(불법행위의 내용)에 따른 불법행위책임 (손해배상책임)부담)
제23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	<삭제>	-시행규칙은 개별 조례에서 위임이 없

현 행	개정안	비고
한다.		더라도 조례의 집행에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규칙으로 규정할 수 있으므로 삭제 권고

연 번	조례명	분 류	위임근거	시행일	비 고
3	**전북특별자치도 치안행정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자치조례	-	2010. 10. 1., 제정 (일부개정 1회) [시행 2024. 1. 18.] [전북특별자치도조례 제5399호, 2023. 12. 8., 일부개정]	□ 개정 권고 □ 통합 권고 ■ 폐지 권고 □ 이행 권고 □ 일반 정비 □ 현행 유지 □ 기타( )

사전 검토

○ 기본자료 분석

- (2-1) 본 조례는 「전북특별자치도 자치경찰사무와 자치경찰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와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자치경찰위원회에 생활안전·교통·경비 등 자치경찰사무의 협력·조정 등 협의를 위한 경찰청 등 관계 기관과 실무협의회 구성·운영 규정에서 치안행정협의회와 실무협의회 기능 중복이 발생함
- (3-1) 조례 제13조에 재정지원 규정이 있음
- (6-1) 조례가 마지막으로 개정된 지 14년 1개월이 지났고, 시·도 치안행정협의회 상위 근거 부재 및 자치경찰 위원회 설치에 따른 기능 중복 등으로 인해 존치의 실효성이 미비하고 치안행정협의회가 운영되지 않아 현실과 부합하지 않음
- (7-2) 조례 제2조에 따라 치안행정협의회를 설치해야 함
- (7-5) 2019년 11월 이후로 위원회가 운영되지 않고, 위원 임기도 만료되어 위원회를 지속할 필요성이 없음
- (7-6) 치안행정협의회는 자치경찰위원회 실무협의회와 위원회 통합이 필요함

○ 기타의견

- (8-1) 「경찰법」이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로 개정됨에 따라 「치안행정협의회규정」 (대통령령) 폐지(2021.1.1.)되었고, 시·도 치안행정협의회 상위 근거 부재 및 자치경찰위원회 설치에 따른 기능 중복 등으로 인해 조례의 존치 실효성이 미비함
- (8-3) 법령상 조례 시행이 불가능함

입법체계 분석

○ 조례 제정 목적

- 전북지역 법질서 확립과 전북도민의 생활안전을 위한 치안행정협의회의 설치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지역사회의 안전을 확보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 자치법규 입안기준 부합성

- 자치법규 입안의 기본원칙(형식, 소관사무, 법령우위) 및 세부입안기준에 대체로 부합하지만, 상위법 폐지 등을 반영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 위임 적합성 평가

- 자치조례로 해당사항 없음

평가지표에 따른 평가

○ 분석지표별 평가

평가항목	평가항목별 검토 내용
1. 입법 근거 및 적법성	본 조례는「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로 개정됨에 따라 자치사무의 범위에서 적절하게 제정되었음
2. 조례의 실효성	시·도 치안행정협의회 상위 근거 부재 및 자치경찰위원회 설치에 따른 기능 중복 등 조례를 존치할 실효성이 미비함
3. 조례 내용의 적정성	상위법이 폐지되면서 협의회를 운영할 필요성이 없어져 조례 내용을 적정하다고 평가하기 어려움
4. 조례의 공평성	장애, 성별, 나이 등에 관한 사회적 편견, 고정관념이 반영된 표현 및 차별 규정 없음
5. 주민 수용성	조례의 체계 및 용어가 주민이 알기 쉽게 되어 있음
6. 전북자치도 현실부합성	치안행정협의회가 운영되고 있지 않아 현실과 부합하지 않음
7. 위원회 운영의 적정성	위원회의 업무를 타 위원회에서 대행하고 있어 위원회 조항의 실효성이 없음
※ 기타 의견	없음

○ 타 시·도 유사 조례와의 비교

전북특별자치도 치안행정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광주광역시 지역치안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서울특별시 치안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경기도 치안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제2조(협의회 설치)	제2조(설치)	제2조(설치)	제2조(설치)
제3조(정의)	제3조(기능)	제3조(기능)	제3조(기능)
제4조(역할)	제4조(협의회의 구성)	제4조(구성)	제4조(구성)
제5조(구성)	제5조(임기)	제5조(위원장 등)	제5조(임기)
제6조(임기)	제6조(위원장)	제6조(임기)	제6조(해촉)
제7조(해촉)	제7조(간사)	제7조(해촉)	제7조(위원장의 직무)
제8조(위원장의 선출 및 임무)	제8조(위원의 위촉 해제)	제8조(회의)	제8조(회의)
제9조(간사)	제9조(실무협의회)	제9조(간사)	제9조(간사)
제10조(회의)	제10조(분과위원회)	제10조(실무협의회)	제10조(실무협의회)
제11조(실무협의회)	**제11조(회의)**	제11조(분과위원회)	제11조(지원)
제12조(분과협의회)	**제12조(의사정족수)**	제12조(협의회의 협의 및 사무처리의 효력)	제12조(비밀누설의 금지)
제13조(치안협력 사업)	**제13조(의결정족수)**	제13조(행정지원 등)	제13조(운영세칙)
제14조(운영세칙)	**제14조(회의의 공개)**	제14조(운영세칙)	
	제15조(협의회의 협의 및 사무처리의 효력)		
	제16조(협의회의 폐지)		
	제17조(비밀누설 금지)		
	제18조(지원)		
	제19조(활동실적 제출)		
	제20조(포상)		
	제21조(운영세칙)		

- 광주광역시 조례에서는 협의회의 세부운영 사항에 대한 내용을 조례에서 규정하고 있다는 특징이 있음

○ 규제사항 평가

- 특이사항 없음

목적달성도 및 부수효과 분석

○ 조례 목적달성도 평가

- 조례는 제정되었으나 조례를 근거로 한 위원회가 최근 5년간 개최되지 않아 조례의 목적달성도를 평가하기 어려움

○ 부수효과

- 최근 5년간 협의회가 개최되지 않아 조례의 부수효과를 확인하기 어려움

관계법령

- 자치조례로 해당사항 없음

조례 개정방안

○ 조례 개정 방향

- 상위법 폐지, 실무협의회와의 업무 중복 등을 고려해서 폐지 검토 권고

연 번	조례명	분 류	위임근거	시행일	비 고
4	**전북특별자치도 북한이탈주민의 정착 지원에 관한 조례**	자치조례	-	2014. 4. 30., 제정 (일부개정 5회) [시행 2024. 1. 18.] [전북특별자치도조례 제5399호, 2023. 12. 8., 일부개정]	■ 개정 권고 □ 통합 권고 □ 폐지 권고 ■ 이행 권고 (협의회 개최) ■ 일반 정비 □ 현행 유지 □ 기타( )

사전 검토

○ 기본자료 분석

- (2-4) 조례 제3조, 제14조에 따라 2024년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에 28,000천원, 이북5도·북한이탈주민 고향 만남의 날 개최를 위한 예산 25,000천원을 확보함
- (2-5) 2022년 북한이탈주민 지원 유공 민간인 포상(3명)과 2023년 이북5도 및 북한이탈주민 지원 유공 민간인 포상(8명)을 수여함
- (3-1) 2023년도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에 28,000천원, 이북5도·북한이탈주민 고향 만남의 날 개최에 25,000천원을 집행함
- (3-3) 2022년부터 2024년까지 아래와 같이 예산을 확보하고 집행함 (단위: 천원)

연도	사업명	필요예산	확보예산	집행액	집행내역
2022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	18,000	18,000	18,000	전북하나센터 교부
	이북5도·북한이탈주민 고향 만남의 날 개최	25,000	25,000	25,000	이북5도사무소 교부
2023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	28,000	28,000	28,000	전북하나센터 교부
	이북5도·북한이탈주민 고향 만남의 날 개최	25,000	25,000	25,000	이북5도사무소 교부
2024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	28,000	28,000	28,000	전북하나센터 교부
	이북5도·북한이탈주민 고향 만남의 날 개최	25,000	25,000	-	(하반기 집행 예정)

- (6-1) 조례를 개정한 후 8개월이 경과하였고, 조례 제3조가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의2와 유사함
- (7-1) 조례 제6조에 따라 전북특별자치도 북한이탈주민 지역협의회를 둘 수 있음
- (7-2) 전북특별자치도 북한이탈주민 지역협의회는 조례에 따라 설치되는 위원회임
- (7-3) 위원회 위원 15인 중 여성 비율이 14%임
- (7-4) 조례 내용에 따라 위원회를 2022년 7,000천원을 집행하여 1회(4.22.), 2023년 7,000천원을 집행하여 서면으로 1회(12월) 개최하였고, 2024년에는 3,200천원을 확보하여 개최예정임
- (7-5) 북한이탈주민 지원 시책에 관한 사항을 심의 자문하기 위해 위원회의 설치·운영이 필요함

○ 기타의견

- (8-1) 북한이탈주민들이 지역사회의 일원으로 성공적으로 적응하여 정착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지원이 필요하여 조례를 유지해야 함

입법체계 분석

○ 조례 제정 목적

- 전북특별자치도에 거주하는 북한이탈주민들이 지역사회의 일원으로서 성공적으로 적응하여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함

○ 자치법규 입안기준 부합성

- 자치법규 입안기준에 부합하도록 띄어쓰기 오류, 인용 조례 오류 등 일반 정비 필요

○ 위임 적합성 평가

- 자치조례로 해당사항 없음

평가지표에 따른 평가

○ 분석지표별 평가

평가항목	평가항목별 검토 내용
1. 입법 근거 및 적법성	자치사무의 범위에서 적절하게 제정되었음
2. 조례의 실효성	조례 제4조에 따른 지원대상, 제5조의 지원 범위 등을 규정함으로써 조례의 실효성을 확보하고 있음
3. 조례 내용의 적정성	조례에서 규정하고 있는 북한이탈주민 지원이 적절하게 이루어지고 있음
4. 조례의 공평성	장애, 성별, 나이 등에 관한 사회적 편견, 고정관념이 반영된 표현이 없음
5. 주민 수용성	조례의 체계 및 용어가 주민이 알기 쉽게 되어 있음
6. 전북자치도 현실부합성	전북특별자치도에 거주하는 북한이탈주민을 지원하여 그들이 대한민국 사회에 성공적으로 적응할 수 있도록 돕는 조례로, 전북특별자치도 현실에 부합함
7. 위원회 운영의 적정성	위원회가 규정대로 설치되었고 활발히 운영되고 있어 위원회의 운영이 적절한 것으로 평가됨
※ 기타 의견	없음

○ 타 시·도 유사 조례와의 비교

전북특별자치도 북한이탈주민의 정착지원에 관한 조례	**경기도 북한이탈주민의 정착지원에 관한 조례**	**서울특별시 북한이탈주민의 정착지원에 관한 조례**	**대구광역시 북한이탈주민의 정착지원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제3조(책무)	제3조(도의 책무)	제3조(시장 등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제4조(지원 대상)	제4조(지원 대상)	제4조(지원의 범위)	제4조(지원 대상)
제5조(지원 범위)	제5조(지원 사업)	제5조(실태조사)	제5조(지원의 범위)
제6조(전북특별자치도 북한이탈주민지원 지역협의회 구성 등)	**제5조의2(공무원 특별채용)**	제6조(서울특별시 북한이탈주민지원 지역협의회 구성 등)	제6조(대구광역시북한이탈주민정착지원협의회 설치)
제7조(협의회의 기능)	**제5조의3(공공부문 일자리 창출)**	제7조(협의회의 기능)	제7조(협의회의 기능)
제8조(위원의 임기)	**제5조의4(공공기관 평가 반영)**	제8조(위원장 등)	제8조(위원장)
제9조(위원의 제척·기	제6조(경기도 북한이탈	제9조(회의)	제9조(협의회 회의)

피·회피)	주민지원 지역협의회 구성 등)		
제10조(위원장)	제7조(협의회의 기능)	제10조(비밀엄수의무)	제10조(수당 등)
제11조(회의)	제8조(위원장)	제11조(수당 등)	제11조(북한이탈주민 지원단체에 대한 지원)
제12조(비밀엄수의무 등)	제9조(회의)	제12조(북한이탈주민 지원 촉진)	제12조(포상)
제13조(수당 등)	제9조의2(비밀엄수의무 등)	**제12조의2(북한이탈주민의 날 행사)**	제13조(업무의 위임 및 위탁)
제14조(북한이탈주민 지원단체에 대한 지원)	제10조(수당 등)	제13조(업무의 위임 및 위탁)	제14조(시행규칙)
제15조(업무의 위임 및 위탁)	제11조(북한이탈주민 지원단체에 대한 지원)	제14조(지도·감독)	
제16조(포상)	제12조(업무의 위임 및 위탁)	제15조(포상)	
제17조(시행규칙)	제13조(포상)	제16조(시행규칙)	
	제14조(시행규칙)		

- 경기도 조례에서는 북한이탈주민을 공무원이나 공공기관 직원으로 특별채용을 할 수 있고, 이를 평가에 반영하여 각 기관이 북한이탈주민을 적극적으로 채용하도록 함
- 서울특별시 조례에서는 북한이탈주민의 날 행사를 실시하여 북한이탈주민의 권익향상을 위해 노력함

○ 규제사항 평가

- 특이사항 없음

목적달성도 및 부수효과 분석

○ 조례 목적달성도 평가

- 조례 내용에 따라 다양한 북한이탈주민 지원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는 점에서 조례의 목적이 달성되고 있다고 평가됨

○ 부수효과

- 전북특별자치도 내에 거주하는 북한이탈주민을 성공적으로 대한민국 사회로 편입하여 인구소멸에 대응하는 다양한 정책을 추진할 수 있음

관계법령

- 자치조례로 해당사항 없음

조례 개정방안

○ 조례 개정 방향

- 제2조, 제3조, 제4조, 제5조, 제8조, 제11조: 법제처 자치법규 입안기준에 따른 정비(약칭 표현 수정, 띄어쓰기 정비, 인용 조례 정비 등)
- 제6조: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 사항을 일목요연하게 정비
- 제12조: 비밀준수 의무사항 삭제
- 제13조: 위원회의 수당 및 여비 규정의 경우 「전북특별자치도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

한 조례」 등이 당연히 적용되는 것이므로 규정 실익이 없지만, 조례의 완성도・이해도를 위하여 조례명은 표기하지 않고 단순히 선언적 규정으로만 정비

- 제14조: 재정지원에 관해 선언적인 의미만을 규정하면, 그에 따른 구체적인 사항은 당연히「전북특별자치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적용 받으므로 규정의 실익이 없음(법제처, 2023년 우수조례 및 자치법규 입법컨설팅 사례집, 107면)
- 제15조: 위탁 규정의 경우「전북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등이 당연히 적용되는 것이므로 규정 실익이 없지만, 조례의 완성도・이해도를 위하여 조례명은 표기하지 않고 단순히 선언적 규정으로만 정비
- 제16조: 포상에 관해 선언적인 의미만을 규정하면, 그에 따른 구체적인 사항은 당연히「전북특별자치도 포상 조례」를 적용 받으므로 규정의 실익이 없음(법제처, 2023년 우수조례 및 자치법규 입법컨설팅 사례집, 118면)
- 제17조: 시행규칙은 개별 조례에서 위임이 없더라도 조례의 집행에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규칙으로 규정할 수 있으므로 삭제 권고
- 제11조제4항에서 "협의회는 반기 1회 이상 개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2022년 1회, 2023년 1회로 조례의 규정과 달리 개최되고 있어 반기 1회 이상 개최되도록 협의회 개최를 권고할 필요가 있음. 또한 여성위원의 비율이 14%로 여성위원의 비율을 높이도록 향후 위원회 구성 시 고려할 필요가 있음. 실무상 협의회를 반기 1회 이상 개최하기 어려운 경우 조례 제11조제4항을 삭제하거나 필요시 개최하도록 규정을 정비하는 방안도 검토할 필요가 있음-심층분석을 통해 개정 권고(협의회의 회의를 안건이 발생한 경우 개최하도록 정비 권고)

○ 개정안

현 행	개정안	비고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북한이탈주민"이란 북한에 주소, 직계가족, 배우자, 직장 등을 두고 있는사람으로서 북한을 벗어난 후 외국의 국적을 취득하지 아니한 사람을 말한다. 2. 이하 생략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북한이탈주민"이란 북한에 주소, 직계가족, 배우자, 직장 등을 두고 있는 사람으로서 북한을 벗어난 후 외국의 국적을 취득하지 아니한 사람을 말한다. 2. 이하 현행과 같음	-띄어쓰기 정비 권고
제3조(책무) ① ~ ② 생략	제3조(도지사의 책무 등) ① ~ ② 현행과 같음	-제2항에서 실태조사를 규정하고 있으므로 제목을 "책무"→"도지사의 책무 등"으로 정비
제4조(지원 대상) 이 조례에 따른 지원 대상은 전북특별자치도(이하 "전북자치도"라 한다)의 관할구역 안에 거주하는 북한이탈주민 및 그 가정으로 한다.	제4조(지원 대상) 이 조례에 따른 지원 대상은 전북특별자치도(이하 "전북자치도"라 한다)의 관할구역 안에 거주하는 북한이탈주민 및 그 가정(이하 "북한이탈주민 등"이라 한다)으로 한다.	-제5조에서 "북한이탈주민 등"으로 약칭하여 사용하고 있으므로 제4조에서 이를 약칭하도록 정비 권고
제5조(지원 범위) ① 북한이탈주민 등	제5조(지원 범위) ① 북한이탈주민 등	-제6호: 제4조에서

현 행	개정안	비고
에 대한 지원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 5. 생략 6. 북한이탈주민과 도민간의 교류 및 결연 사업 7. 법 제26조의3에 따른 소관 공공시설에 편의사업 또는 편의시설의 설치를 허가·위탁 시의 우선고려 8. 이하 생략	에 대한 지원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 5. 현행과 같음 6. 북한이탈주민과 전북자치도민 간의 교류 및 결연 사업 7.「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제26조의3에 따른 소관 공공시설에 편의사업 또는 편의시설의 설치를 허가·위탁 시의 우선고려 8. 이하 현행과 같음	약칭한대로 "전북자치도민"으로 사용하도록 정비 권고 -제7호: 약칭하지 않은 상태에서는 법률 제명을 그대로 사용하도록 정비 권고
제6조(전북특별자치도 북한이탈주민 지원 지역협의회 구성 등) ① ~ ② 생략 ③ 협의회의 당연직 위원은 행정부지사, 북한이탈주민 지원업무담당국장,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전북특별자치도지방경찰청·광주지방고용노동청전주지청의 북한이탈주민 지원부서책임자로 하며,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위촉한다. 1. <삭제 2016. 8. 12.> 2. 북한이탈주민 지원 분야의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3. 그 밖에 도의회가 추천한 사람 ④ 이하 생략	제6조(전북특별자치도 북한이탈주민 지원 지역협의회 구성 등) ① ~ ② 현행과 같음 ③ 협의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1. 당연직 위원: 행정부지사, 북한이탈주민 지원업무담당국장,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전북특별자치도지방경찰청·광주지방고용노동청전주지청의 북한이탈주민 지원부서책임자 2. 위촉직 위원: 다음 각 목의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위촉하는 사람 가. 북한이탈주민 지원 분야의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나. 전북특별자치도의회에서 추천하는 사람 다. 그 밖에 도지사가 북한이탈주민지원 지역협의회 위원으로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④ 이하 현행과 같음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 사항을 일목요연하게 정비(법제처, 2023년 우수조례 및 자치법규 입법컨설팅 사례집, 223면을 참고하여 재구성함)
제8조(위원의 임기) 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차례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해당직위에 재임하는 동안으로 하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제8조(위원의 임기) 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위에 재임하는 동안으로 하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	-연임 관련 문장 표현 정비 -"해당 직위에"로 띄어쓰기 정비 -조례문장 끝에는

현 행	개정안	비고
남은 임기로 한다 ② 이하 생략	은 임기로 한다. ② 이하 현행과 같음	마침표 작성하도록 정비
제10조(위원의 제척 및 회피) 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제척된다. 1. 위원이 심의 대상 용역과 관련된 자문, 연구 등을 수행하고 있거나 수행한 경우 2. 위원 본인 또는 위원의 배우자, 4촌 이내의 혈족, 2촌 이내의 인척이 용역을 수행할 경우 3. 제2호에 규정된 사람이 속한 기관·단체에서 용역을 수행할 경우 4. 위원이 최근 3년 이내에 심의 대상 용역과 관련된 기관·단체에서 재직한 경우 ② 생략 ③ 위원은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거나 본인에게 심사의 공정성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제10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제척된다. 1. 위원이나 그 배우자 또는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이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증언, 진술, 자문, 연구, 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② 현행과 같음 ③ 위원은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제목을 각 항의 규정과 일치하게 표기하여야 함 -문장정비(법제처, 2023년 우수조례 및 자치법규 입법컨설팅 사례집, 147-148면.)
제11조(회의) ① 생략 ② 협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열고,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생략 ④ 협의회의 회의는 반기 1회 이상 개최하여야 한다.	제11조(회의) ① 현행과 같음 ② 협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현행과 같음 ④ 협의회의 회의는 심의 또는 자문이 필요한 안건이 발생한 경우 개최한다.	-"개의"가 정확한 표기임(법제처, 2023년 우수조례 및 자치법규 입법컨설팅 사례집, 119면 등) -심층분석을 통해 개정 권고(협의회의 회의를 안건이 발생한 경우 개최하도록 정비 권고)
제13조(수당 등) 전북자치도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과 협의회에 출석한 전문가 및 관계인 등에게는「전북특별자치도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	제13조(수당 등) 전북자치도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과 협의회에 출석한 전문가 및 관계인 등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여비 및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수당 및 여비에 관해 선언적인 의미만을 규정하면, 그에 따른 구체적인 사항은 당연히「전북특별자치도 각종 위원회

현 행	개정안	비고
위에서 수당, 여비 및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적용 받으므로 규정의 실익이 없음(법제처, 2023년 우수조례 및 자치법규 입법컨설팅 사례집, 226면)
제14조(북한이탈주민 지원단체에 대한 지원) 도지사는 북한이탈주민 지원단체의 활동에 필요한 행정적 또는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고, 「전북특별자치도 사회단체보조금 지원 조례」에 따라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14조(북한이탈주민 지원단체에 대한 지원) 도지사는 북한이탈주민 지원단체의 활동에 필요한 행정적 또는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재정지원에 관해 선언적인 의미만을 규정하면, 그에 따른 구체적인 사항은 당연히 「전북특별자치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적용 받으므로 규정의 실익이 없음(법제처, 2023년 우수조례 및 자치법규 입법컨설팅 사례집, 107면)
제15조(업무의 위임 및 위탁) ① 도지사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전북특별자치도 사무위임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군수 또는 북한이탈주민 지원 단체에 업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위임하거나 위탁할 수 있다. ② 이하 생략	제15조(업무의 위임 및 위탁) ① 도지사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시장·군수 또는 북한이탈주민 지원단체에 업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위임하거나 위탁할 수 있다. ② 이하 현행과 같음	-업무위탁에 대한 선언적인 의미만을 규정하면, 그에 따른 구체적인 사항은 당연히 「전북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를 적용 받으므로 규정의 실익이 없음(법제처, 2023년 우수조례 및 자치법규 입법컨설팅 사례집, 108면)
제16조(포상) ① 생략 ② 기타 포상에 필요한 절차 등은 「전북특별자치도 포상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16조(포상) ① 현행과 같음 ② <삭제>	-포상에 관해 선언적인 의미만을 규정하면, 그에 따른 구체적인 사항은 당연히 「전북특별자치도 포상 조례」를 적용 받으므로 규정의 실익이 없음(법제처, 2023년 우수조례 및 자치법규 입법컨설팅 사례집, 118면)

현 행	개정안	비고
제1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삭제>	-시행규칙은 개별 조례에서 위임이 없더라도 조례의 집행에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규칙으로 규정할 수 있으므로 삭제 권고

연 번	조례명	분 류	위임근거	시행일	비 고
5	**전북특별자치도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조례**	위임조례	「지방자치법」 제159조	2007. 12. 28., 제정 (전부개정 1회, 일부개정 8회) [시행 2024. 1. 18.] [전북특별자치도조례 제5399호, 2023. 12. 8., 일부개정]	■ 개정 권고 □ 통합 권고 □ 폐지 권고 □ 이행 권고 ■ 일반 정비 □ 현행 유지 □ 기타( )

사전 검토

○ 기본자료 분석

- (2-5) 조례 제16조에 따라 실무기획단을 둘 수 있으나, 운영실적은 없음. 2008년도부터 조성하여 2022년도까지 기금 집행실적이 없어 실질적으로 남북교류사업 추진을 위한 실무기획단의 필요성이 부족함
- (3-2) 조례 제4조와 시행규칙 제3조에 따라 지원대상과 범위가 규정됨
- (3-3) 2022년부터 2024년까지 아래와 같이 예산을 확보하고 집행함 (단위: 천원)

연도	사업명	필요예산	확보예산	집행액	집행내역
2022	민간단체 인도적 대북사업 및 남북교류사업	30,000	30,000	0	
	전라북도 남북교류협력사업	50,000	50,000	0	
	시군 남북교류협력사업	20,000	20,000	0	
2023	2030 미래세대 중심의 남북교류협력 인식개선 사업	50,000	50,000	31,920	대학생 등 DMZ 평화의길 시찰 프로그램
	민간단체 인도적 대북사업 및 남북교류사업	10,000	10,000	0	
	전라북도 남북교류협력사업	20,000	20,000	0	
	시군 남북교류협력사업	20,000	20,000	0	
2024	2030 미래세대 중심의 남북교류협력 인식개선 사업	40,000	40,000	0	(사업 추진 중)

- (6-1) 2022년도까지 기금 집행실적이 없고, 남북관계 경색 등에 따라 남북이 공동으로 행하는 대북사업 추진이 어려움
- (7-1) 조례 제8조에 따라 전북특별자치도 남북교류협력위원회를 설치함
- (7-3) 위원회 위원 중 여성 비율이 37%임
- (7-4) 조례 내용에 따라 위원회를 2022년 5,000천원을 소요하여 서면으로 2회(2월, 11월), 2023년 5,000천원을 소요하여 서면으로 2회(2월, 10월), 2024년에는 3,000천원을 확보하여 서면으로 1회(2월) 개최함
- (7-5) 남북교류협력의 촉진을 위한 협의 및 자문과 남북교류협력기금 운용 및 관리 사항 등을 위한 심의·의결 기구가 필요하여 위원회를 유지해야 함

○ 기타의견

- (8-1) 남북교류협력기금 운용을 위해 조례의 유지가 필요함
- (8-2) 위원회 관련 규정의 개정이 필요하고, 2024. 7. 남북교류 사무가 자치행정과로 이관되며 남북교류, 평화통일 관련 사무가 일원화 됨. 「전북특별자치도 평화통일교육 활성화 지원 조례」에 따르면 평화통일교육위원회를 두도록 하였지만 위원회 구성 운영하고 있지 않은 상황으로, 남북교류협력위원회가 평화통일교육위원회의 기능을 함께 할 수 있도록 개정이 필요함

입법체계 분석

○ 조례 제정 목적

- 전북특별자치도와 군사분계선 이북지역간의 상호교류와 협력을 촉진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양 지역 간 교류협력을 활성화하여 한반도의 평화와 통일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함

○ 자치법규 입안기준 부합성

- 자치법규 입안기준에 부합하도록 띄어쓰기 정비 및 용어 정비 필요

○ 위임 적합성 평가

- 위임 범위에서 적절하게 규정하고 있음

평가지표에 따른 평가

○ 분석지표별 평가

평가항목	평가항목별 검토 내용
1. 입법 근거 및 적법성	상위법의 위임 범위에서 자치사무를 적절하게 규정하고 있음
2. 조례의 실효성	조례 제3조에 따른 기금조성, 제8조의 위원회 설치 등을 이행함으로써 조례의 실효성을 확보하고 있음
3. 조례 내용의 적정성	남북관계 경색으로 인해 조례에서 규정하고 있는 지원이 적절하게 이루어지고 있지는 않음
4. 조례의 공평성	장애, 성별, 나이 등에 관한 사회적 편견, 고정관념이 반영된 표현이 없음
5. 주민 수용성	조례의 체계 및 용어가 주민이 알기 쉽게 되어 있음
6. 전북자치도 현실부합성	전북자치도 주관으로 시행되는 남북교류협력 사업을 지원하고 시행하기 위하여 제정된 본 조례는 행정수요를 반영하고 있어 전북자치도 현실에 부합함
7. 위원회 운영의 적정성	위원회가 규정대로 설치되었고 활발히 운영되고 있어 위원회의 운영이 적절한 것으로 평가됨
※ 기타 의견	없음

○ 타 시·도 유사 조례와의 비교

전북특별자치도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조례	경기도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조례	제주특별자치도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조례	서울특별시 남북교류협력 및 평화통일기반조성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제2조(시장의 책무)
제3조(조성)	제3조(도지사의 책무)	제3조(책무 등)	제3조(기금의 설치 및 재원 조성)
제4조(용도)	제4조(기금의 설치 및 조성)	제4조(위탁관리)	제3조의2(기금의 존속기한)
제5조(관리·운용)	제5조(기금의 용도)	제4조의2(남북교류협력 활성화를 위한 지원)	제4조(기금의 용도)

제6조(회계공무원)	제6조(기금의 운용·관리)	제5조(남북교류협력위원회 설치)	제5조(기금의 운용·관리)
제7조(보고 등)	제7조(회계공무원)	제6조(위원회의 기능)	제6조(기금의 회계공무원)
제8조(설치)	제8조(업무 위탁 및 재정지원)	제7조(위원회 구성)	제7조(보고 및 환수)
제9조(기능)	제9조(보고 등)	제8조(임기)	제8조(평화통일기반조성위원회의 설치)
제10조(구성 등)	제10조(분배의 투명성 확보)	제9조(위원장의 직무)	제9조(위원회 구성 등)
제11조(임기)	제11조(위원회의 설치)	제10조(회의)	제10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등)
제12조(위원회의 운영)	제12조(위원회의 기능)	제11조(실무위원회)	제11조(수당 등)
제13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등)	제13조(위원회의 구성 등)	제12조(간사)	제12조(보조금 지원 및 사업 위탁)
제14조(위원의 해촉)	제14조(위원의 임기)	제13조(관계 기관 등에의 협조요청 등)	**제13조(민간인 국외여비 지원)**
제15조(수당 등)	제15조(위원회의 운영)	제14조(공청회 등의 개최)	제14조(규칙)
제16조(실무기획단)	제16조(위원회 수당 등)	제15조(수당 등)	
제17조(업무위탁 및 재정지원)	제17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등)	제16조(운영세칙)	
제18조(시행규칙)	제18조(위원의 위촉 해제)	**제17조(기금의 설치)**	
	제19조(남북교류 협력사업 추진단)	**제18조(기금의 조성)**	
	제20조(대학 등 학과의 설치장려)	**제19조(기금의 용도)**	
	제21조(시행규칙)	**제20조(환수)**	
		제21조(기금의 관리·운용)	
		제22조(기금운용심의위원회)	
		제23조(준용)	
		제24조(회계공무원 지정)	
		제25조(시행규칙)	

- 경기도 조례에서는 경기도 내에 소재하는 대학에 남북교류협력과 관련된 학과의 설치를 장려할 수 있다는 규정이 존재함
- 제주특별자치도 조례에서는 기금 운용에 관한 사항을 상세하게 규정하고 있음
- 서울특별시 조례에서는 시장이 남북교류협력 및 평화통일기반조성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전문가 등 민간인에게 국외여비를 지원할 수 있는 규정이 존재함

○ 규제사항 평가

- 특이사항 없음

목적달성도 및 부수효과 분석

○ 조례 목적달성도 평가

- 본 조례는 전북특별자치도에서 진행하는 남북교류협력을 지원하기 위해 제정되었으나, 남북관계 경색이라는 대외적 요소로 인해 남북교류협력 사업이 수행되지 않아 조례의 목적달성도가 낮음

○ 부수효과

- 사업 평가 등을 할 수 있는 규정이 미비하여 부수효과를 판단하기 어려움

관계법령

「지방자치법」 제159조
제159조(재산과 기금의 설치) ① 지방자치단체는 행정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경우나 공익상 필요한 경우에는 재산(현금 외의 모든 재산적 가치가 있는 물건과 권리를 말한다)을 보유하거나 특정한 자금을 운용하기 위한 기금을 설치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재산의 보유, 기금의 설치·운용에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

조례 개정방안

○ 조례 개정 방향

- 조례에서 전체 규정이 30조 미만인 경우에는 장(章)으로 나누지 않음(법제처, 2022 자치법규 길라잡이, 344면)
- 제1조, 제5조, 제7조, 제8조, 제11조, 제13조, 제17조: 법제처 자치법규 입안기준에 따른 정비(용어 수정, 당연규정 삭제 등)
- 제9조: 남북교류 사무가 자치행정과로 이관되며 남북교류, 평화통일 관련 사무가 일원화됨에 따라 위원회 사무를 추가하도록 개정 권고
- 제18조: 시행규칙은 개별 조례에서 위임이 없더라도 조례의 집행에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규칙으로 규정할 수 있으므로 삭제 권고

○ 개정안

현 행	개정안	비고
제1장 총칙	<삭제>	-장(章) 삭제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전북특별자치도와 군사분계선 이북지역간의 상호교류와 협력을 촉진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양 지역 간 교류협력을 활성화하여 한반도의 평화와 통일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전북특별자치도와 군사분계선 이북지역 간의 교류협력을 증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한반도의 평화와 통일 기반조성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띄어쓰기 정비 권고 -목적조항의 규정형식에 맞게 문장 표현 정비 권고
제2장 남북교류협력기금	<삭제>	-장(章) 삭제
제5조(관리·운용) ① 제3조에 따른 기금은 「전북특별자치도 통합재정안정	제5조(관리·운용) ① 기금은 「전북특별자치도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약칭한 사항은 조문표기 없이 표기함

현 행	개정안	비고
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에 따라 관리한다. ② 기금의 운용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는 전북특별자치도 남북교류협력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1. 기금운용계획 수립 2. 기금운용계획의 변경 3. 기금결산보고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및 운용 조례」에 따라 관리한다. ② 기금의 운용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는 전북특별자치도 남북교류협력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1. 기금운용계획 수립 2. 기금운용계획의 변경 3. 기금결산보고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도지사가 기금의 관리·운용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이미 제3조에서 "기금"으로 약칭하였음) -문장정비
제7조(보고 등) ① 생략 ② 도지사는 기금지원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한다고 확인된 때에는 기한을 정하여 기금지원기관에 지원한 기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기금을 환수하고 향후 5년간 기금의 교부대상에서 제외한다. 1. 거짓 또는 부당한 방법으로 기금을 교부받은 경우 2. 이 조례에서 규정한 기금의 용도를 위배하여 기금을 사용하거나 전용한 경우 3. 기금 교부 목적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정지하였을 경우 4. 그 밖에 기금교부 사업과 관련 도의 시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거부, 거짓보고 등 사업을 성실히 수행하지 않는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7조(보고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도지사는 기금지원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한다고 확인된 때에는 기한을 정하여 기금지원기관에 지원한 기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기금을 환수하고 앞으로 5년간 기금의 교부대상에서 제외한다. 1. 거짓 또는 부당한 방법으로 기금을 교부받은 경우 2. 제4조에 따른 기금의 용도를 위배하여 기금을 사용하거나 전용한 경우 3. 기금 교부 목적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정지되었을 경우 4. 그 밖에 기금교부 사업과 관련 도의 시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거부, 거짓보고 등 사업을 성실히 수행하지 않는다고 인정되는 경우	-법조문장으로 정비(법제처, 2023년 우수조례 및 자치법규 입법컨설팅 사례집, 184면) -정확한 출처표기
제3장 전북특별자치도 남북교류협력위원회	<삭제>	-장(章) 삭제
제8조(회의)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일시, 장소 및 안건을 집회 3일전까지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제8조(회의)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려면 회의 개최 3일 전까지 회의 일시, 장소, 및 안건 등을 위원에게 통지해야 한다. 다만, 회의를 긴급히 소집할 필요가 있거나 불가항력적인 사유	-"개의"가 정확한 표기임(법제처, 2023년 우수조례 및 자치법규 입법컨설팅 사례집, 119면 등) -회의소집 관련 법조문장으로 정비(법제처, 2023년 우수조례 및 자치법규

현 행	개정안	비고
	등으로 인하여 부득이 한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입법컨설팅 사례집, 95면 등)
제9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하고, 도지사의 자문에 응한다. 1. ~ 4. 생략 <신설> 5.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9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하고, 도지사의 자문에 응한다. 1. ~ 4. 현행과 같음 5. 「전북특별자치도 평화통일교육 활성화 지원 조례」에 따른 평화통일교육위원회 업무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구성되지 않은「전북특별자치도 평화통일교육 활성화 지원 조례」의 평화통일교육위원회 업무 대행, 해당 조례의 관련 내용도 개정 필요(제11조(회의) 제5항 추가: 위원회 업무를 「전북특별자치도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조례」에 따른 '전북특별자치도 남북교류협력위원회'가 대행할 수 있다.
제11조(임기) 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임명직 위원의 임기는 당해 직위의 재직기간으로 하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11조(임기) 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임명직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위의 재직기간으로 하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띄어쓰기 정비, 알기 쉬운 법령정비기준에 따른 용어 정비 -"전임자"를 "전임위원"으로 정비
제13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등) ① 위원은 기금의 운용·관리와 관련한 심의·의결의 공정성을 도모하기 위하여 자기와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의결에는 관여할 수 없다. ② 위원은 제1항에 따른 제척사유가 있거나 심의·의결의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유가 있는 경우 관계인의 신청에 따라 심의·의결에서 제외될 수 있다.	제13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등) 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제척된다. 1. 위원이나 그 배우자 또는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이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증언, 진술, 자문, 연구, 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② 당사자는 제1항에 따른 제척사유가 있거나 그 밖에 위원에게 공정한	-위원의 전형적 인 제척·기피·회피 사유로 문장정비(법제처, 2023년 우수조례 및 자치법규 입법컨설팅 사례집, 147-148면.)

현 행	개정안	비고
	심사를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은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제4장 남북교류협력 활성화 사업 지원	<삭제>	-장(章) 삭제
제17조(업무위탁 및 재정지원) ① 도지사는 남북교류협력 증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제4조에 따른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전문성을 갖춘 법인·단체에 위탁하거나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1. 남북교류 및 협력에 관한 홍보물 제작·활용 등 홍보사업 2. 남북교류 및 협력을 위한 행사지원(기념행사, 박람회, 문화행사 등)	제17조(업무위탁 및 재정지원) ① 도지사는 남북교류협력 증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제4조에 따른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전문성을 갖춘 법인·단체 등에 위탁하거나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1. 남북교류 및 협력에 관한 홍보물 제작·활용 등 홍보사업 2. 남북교류 및 협력을 위한 행사지원(기념행사, 박람회, 문화행사 등을 포함한다)	-제목과 내용이 일치 -원칙적으로 괄호안의 문장은 완성형이어야 함(법제처, 2023년 우수조례 및 자치법규 입법컨설팅 사례집, 89면.)
제1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삭제>	-시행규칙은 개별 조례에서 위임이 없더라도 조례의 집행에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규칙으로 규정할 수 있으므로 삭제 권고

연 번	조례명	분 류	위임근거	시행일	비 고
6	**전북특별자치도 농산어촌유학 지원 조례**	자치조례	-	2012. 12. 7., 제정 (일부개정 5회) [시행 2024. 1. 18.] [전북특별자치도조례 제5399호, 2023. 12. 8., 일부개정]	■ 개정 권고 ■ 통합 권고 □ 폐지 권고 □ 이행 권고 ■ 일반 정비 □ 현행 유지 □ 기타( )

사전 검토

○ 기본자료 분석

- (1-1) 본 조례는「도시와 농어촌 간의 교류촉진에 관한 법률」제3조에 따라 제정된 자치조례임
- (2-3) 조례 제3조에 따라 전북 농촌관광 활성화 기본계획을 수립함
- (2-4) 조례 제8조에 따라 2024년 체험마을 리더교육 지원에 18,228천원을 확보함
- (2-5) 조례 내용에 따라 24년 기준 예산액 18백만원을 확보하여 매년 체험마을 리더교육 지원을 통한 교육을 온·오프라인으로 시행함
- (3-1) 2024년도 예산액 기준 전북형 농촌관광 운영활성화 지원에 600백만원, 농촌체험휴양마을 육성 지원에 312백만원, 체험마을 리더교육 지원에 18백만원, 농촌체험휴양마을 박람회 참가 지원에 12백만원, 농촌관광 홍보 지원에 66백만원, 농촌관광 경쟁력 제고사업에 500백만원을 지원함

○ 기타의견

- (8-1) 도시와 농촌간의 교류 및 상생과 농촌의 경제활성화를 위하여 농촌관광 사업이 더욱 확대되어야 하므로 농촌관광 활성화를 위하여 해당 조례의 유지가 필요함

입법체계 분석

○ 조례 제정 목적

- 농촌유학의 활성화를 통해 전북특별자치도 지역교육과 문화의 중심지인 지역학교를 유지하고, 주민의 소득 증대와 지역마을 활력에 이바지하면서 도시와 농촌의 상생 발전을 도모하고자 농산어촌 유학생 유치와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함

○ 자치법규 입안기준 부합성

- 자치법규 입안기준에 부합하도록 용어 정비, 띄어쓰기 정비 등 일반 정비 필요

○ 위임 적합성 평가

- 자치조례로 해당사항 없음

평가지표에 따른 평가

○ 분석지표별 평가

평가항목	평가항목별 검토 내용
1. 입법 근거 및 적법성	자치사무의 범위에서 적절하게 제정되었음
2. 조례의 실효성	조례에 따른 시행계획 수립 및 교육 추진 등을 통해 조례의 실효성을

	확보하고 있음
3. 조례 내용의 적정성	농촌관광 활성화를 위한 사업을 추진하기에 조례 내용이 적정함
4. 조례의 공평성	장애, 성별, 나이 등에 관한 사회적 편견, 고정관념이 반영된 표현 및 차별 규정 없음
5. 주민 수용성	조례의 체계 및 용어가 주민이 알기 쉽게 되어 있음
6. 전북자치도 현실부합성	농촌활성화를 위한 농산어촌 유학을 지원하기 위하여 제정된 본 조례는 행정수요를 반영하고 있어 전북특별자치도 현실에 부합함
7. 위원회 운영의 적정성	협의회 운영 규정은 임의규정이며, 2023년 1회 개최되어 적정하게 운영되고 있음
※ 기타 의견	없음

○ 타 시·도 유사 조례와의 비교

전북특별자치도 농산어촌유학 지원 조례	전라남도 농산어촌유학 지원 조례	충청남도 농산어촌유학 지원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제3조(농촌유학 지원계획 수립)	제3조(농산어촌유학 지원계획 수립)	제3조(지원계획의 수립)
제4조(지원대상사업)	제4조(사업지원)	제4조(지원사업)
제5조(지원센터 운영)	제5조(지원센터 운영)	제5조(위원회의 설치 및 역할)
제6조(협의회 구성)	제6조(협의회 구성)	제6조(위원회 구성)
제7조(협의회 기능)	제7조(협의회 기능)	제7조(위원회의 운영)
제8조(위원의 임기)	제8조(위원의 임기)	제8조(위원장의 직무)
제9조(회의)	제9조(회의)	제9조(수당 및 여비)
제10조(수당 등)	제10조(삭제 2017. 9. 28.)	**제10조(홍보)**
제11조(시행규칙)	제11조(시행규칙)	제11조(시행규칙)

- 농산어촌유학 지원과 관련된 조례는 전북특별자치도, 전라남도, 충청남도 등 총 3곳의 광역지방자치단체에서만 운영 중이며, 충청남도 조례에서 규정하고 있는 홍보 조항을 제외하면 내용이 유사함

○ 규제사항 평가

- 특이사항 없음

목적달성도 및 부수효과 분석

○ 조례 목적달성도 평가

- 조례 내용에 따라 농산어촌유학 지원을 위한 다양한 사업을 진행함으로써 조례의 목적이 달성되고 있다고 평가됨

○ 부수효과

- 지원을 통해 도시-농산어촌간 유대를 강화하고 새로운 관광자원 확보에 기여

관계법령

- 자치조례로 해당사항 없음

조례 개정방안

○ 조례 개정 방향

- 제2조, 제4조, 제6조, 제7조, 제8조, 제9조: 법제처 자치법규 입안기준에 따른 정비(용어 수정, 띄어쓰기 수정, 당연규정 삭제, 표현 정비 등)
- 제4조: 심층분석을 통해 타 시・도의 사례를 참고하여 지원대상사업을 추가하도록 규정 신설 권고
- 제10조: 위원회의 수당 및 여비 규정의 경우「전북특별자치도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등이 당연히 적용되는 것이므로 규정 실익이 없지만, 조례의 완성도・이해도를 위하여 조례명은 표기하지 않고 단순히 선언적 규정으로만 정비
- 제11조: 시행규칙은 개별 조례에서 위임이 없더라도 조례의 집행에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규칙으로 규정할 수 있으므로 삭제 권고
- 심층분석을 통해「전북특별자치도 농어촌 체험관광 활성화 지원 조례」를 기반으로 계획 수립 시 농산어촌유학을 교육에 포섭시키도록 하는 방안을 포함하여 조례 통합안을 제안(부록2. 심층분석서)

○ 개정안

현 행	개정안	비고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신설> 1. "농산어촌유학"이란 도시에 사는 초·중·고 학생들이 농산어촌에서 일정기간 동안 생활하면서 학교를 다니고 시골살이를 체험하는 것을 말한다.(이하 "농촌유학"이라 한다) 2. "농산어촌유학시설"은 유학생들이 농산어촌유학 활동가의 지도를 받으며 숙식 또는 생활을 하는 장소와 지방자치단체나 마을에서 제공한 유학생 부모가 생활하는 시설을 말한다.(이하 "농촌유학시설"이라 한다) 3. "농산어촌유학 활동가"란 농촌유학 시설에서 유학생의 학교 외 생활을 지원하고, 돌봄 기능을 도와주는 사람을 말한다.(이하 "농촌유학 활동가"이라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농산어촌"이란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5호, 「산림기본법」 제3조제2호 및 「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 제3조제6호에 따른 지역을 말한다. 2. "농산어촌유학"(이하 "농촌유학"이라 한다)이란 도시에 사는 초·중·고 학생들이 농산어촌에서 일정기간 동안 생활하면서 학교를 다니고 시골살이를 체험하는 것을 말한다. 3. "농산어촌유학시설"(이하 "농촌유학시설"이라 한다)이란 유학생들이 농산어촌유학 활동가의 지도를 받으며 숙식 또는 생활을 하는 장소와 지방자치단체나 마을에서 제공한 유학생 부모가 생활하는 시설을 말한다. 4. "농산어촌유학 활동가"(이하 "농촌유학 활동가"이라 한다)란 농촌유학 시설에서 유학생의 학교 외 생활을 지원하고, 돌봄 기능을 도와주는 사람을 말한다.	-정의 조항의 규정형식에 맞게 정비 권고 -제1호에 "농산어촌"에 대한 정의를 신설하도록 정비 권고 -제2호 조사 정비 권고
제4조(지원대상사업) 도지사는 농촌유학 활성화를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	제4조(지원대상 사업) 도지사는 농촌유학 활성화를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사	-띄어쓰기 정비 권고 -제3조에서 이미 약칭한 사항은 조문표

현 행	개정안	비고
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1. 제3조의 지원계획에 반영된 사업 2. 농촌유학 시설 확충사업 3. 농촌유학 프로그램 개발 및 지원 사업 <신설> 4. 그 밖에 도지사가 농촌유학 사업을 수행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1. 지원계획에 반영된 사업 2. 농촌유학 시설 확충사업 3. 농촌유학 프로그램 개발 및 지원 사업 4. 가족 체류 프로그램 개발 및 지원 사업 5. 모범학교 발굴 및 지원 6. 농촌유학 관계자 교육 사업 7. 그 밖에 도지사가 농촌유학 사업을 수행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기 없이 약칭만 표기하도록 정비 -심층분석을 통해 타 시·도의 사례를 참고하여 지원대상사업을 추가하도록 규정 신설 권고
제6조(협의회 구성) ① 도지사는 농촌유학 육성·지원 정책에 대한 심의 및 자문을 위하여 전북특별자치도 농촌유학 협의회(이하"협의회"라 한다)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② ~ ③ 생략 ④ 당연직 위원은 해당 실·국·본부장이 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도지사가 위촉한다. 1. 도의장이 추천하는 도의회 의원 1명 2. 도 교육감 추천 1명 3. 아동, 교육 등 관련분야 학계 전문가 4. 농촌유학 분야 연구원 5. 농촌유학 실행지역 주민대표 6. 농촌유학 활동가 7. 기타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6조(협의회 구성) ① 도지사는 농촌유학 육성·지원 정책에 대한 심의 및 자문을 위하여 전북특별자치도 농촌유학 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 ③ 현행과 같음 ④ 당연직 위원은 해당 실·국·본부장이 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위촉한다. 1. 전북특별자치도의회에서 추천하는 사람 1명 2.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에서 추천하는 사람 1명 3. 아동, 교육 등 관련분야 학계 전문가 4. 농촌유학 분야 연구원 5. 농촌유학 실행지역 주민대표 6. 농촌유학 활동가 7. 그 밖에 도지사가 농촌유학 활성화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문장 정비(법제처, 2022년 우수조례 및 자치법규 입법컨설팅 사례집, 253면) -의장(교육감)이 추천할 수 없고, 의회(교육청)에서 추천하는 것임
제7조(협의회 기능)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심의·자문한다. 1. 농촌유학 지원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2. 생략 3. 기타 도지사가 요청한 사항 등	제7조(협의회 기능)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심의·자문한다. 1. 지원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2. 현행과 같음 3. 그 밖에 도지사가 요청한 사항 등	-문장정비 -제3조에서 "지원계획"으로 약칭하였으므로 약칭만 표기
제8조(위원의 임기) ① 당연직 위원의	제8조(위원의 임기) ① 당연직 위원의	-문장을 명확하게 규

현 행	개정안	비고
임기는 그 재직기간으로 하며,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기간으로 한다. ② 이하 생략	임기는 그 재직기간으로 하며,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기간으로 한다. ② 이하 현행과 같음	정하도록 정비 권고
제9조(회의) ① 협의회 회의는 도지사 또는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와 위원 3분의 1이상의 요구가 있을 경우 회의를 소집한다. ② 심의사항에 대하여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9조(회의) ① 협의회 회의는 도지사 또는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와 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경우 회의를 소집한다. ② 심의사항에 대하여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띄어쓰기 정비 -"개의"가 정확한 표기임
제10조(수당 등) 협의회의 회의에 참석한 위원에 대하여는「전북특별자치도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준용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0조(수당 등) 협의회의 회의에 참석한 위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수당 및 여비에 관해 선언적인 의미만을 규정하면, 그에 따른 구체적인 사항은 당연히 「전북특별자치도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적용받으므로 규정의 실익이 없음(법제처, 2023년 우수조례 및 자치법규 입법컨설팅 사례집, 226면)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삭제>	-시행규칙은 개별 조례에서 위임이 없더라도 조례의 집행에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규칙으로 규정할 수 있으므로 삭제 권고

연 번	조례명	분 류	위임근거	시행일	비 고
7	**전북특별자치도 민주시민교육 활성화와 지원에 관한 조례**	자치조례	-	2016. 3. 25., 제정 (일부개정 1회) [시행 2024. 1. 18.] [전북특별자치도조례 제5399호, 2023. 12. 8., 일부개정]	□ 개정 권고 □ 통합 권고 □ 폐지 권고 □ 이행 권고 ■ 일반 정비 □ 현행 유지 □ 기타( )

사전 검토

○ 기본자료 분석

- (1-1)「교육기본법」제2조에서 민주시민으로서 필요한 자질 개발을 교육이념으로 삼은 점과 평생교육법 제16조의 지자체의 평생교육프로그램의 개발 및 지원을 근거로 조례를 제정함
- (1-4) 조례 제정 이후 정부는 '민주시민교육 활성화'를 국정과제로 선정(2017.5.)하고 교육부에 민주시민교육과를 신설, 정책협의회, 자문위원회 등 다양한 전문가 의견을 수렴하여 '민주시민교육 활성화를 위한 종합계획'을 발표함(2028.11.)
- (2-3) 조례 제3조에 따라 2024년 전북특별자치도 평생교육진흥 시행계획을 수립함
- (2-4) 조례 제10조에 따라 2024년 민주시민교육 프로그램 운영 지원에 48,250천원을 확보함
- (2-5) 2022년부터 29개 과정을 50회, 총 1,799명을 교육하여 사업완료 후 실적보고서를 제출함
- (2-5) 민주시민교육 진행자/전문가 양성, 도민특강 및 포럼 개최, 청소년 워크숍 및 현장견학을 위한 민주시민교육 프로그램 운영지원사업에 168,250천원을 확보하여 120,000천원을 집행함
- (3-1) 조례 제10조에 따라 2023년 민주시민교육 프로그램 운영 지원에 168,250천원을 확보함
- (3-2) 조례 제10조에 따라 지정된 지원대상이 적정함
- (3-3) 2022년부터 2024년까지 아래와 같이 예산을 확보하고 집행함 (금액단위: 천원)

연도	사업명	필요예산	확보예산	집행액	집행내역
2022	민주시민교육 프로그램 운영지원	50,000	50,000	50,000	홍보, 강사료, 운영비
2023		70,000	70,000	70,000	홍보, 강사료, 운영비
2024		48,250	48,250		추진중

- (7-1) 조례 제8조에 따라 민주시민교육자문위원회를 둘 수 있음

○ 기타의견

- (8-1) 민주시민교육 활성화와 지원에 필요한 내용을 적절하게 규정하고 있어 조례를 유지하는 것이 필요함

입법체계 분석

○ 조례 제정 목적

- 민주시민교육을 활성화하고 지원에 필요한 사항 등을 정하여 전북특별자치도민이 민주시민으로서 지녀야 할 권리와 책임의식을 함양하는 문화의 조성을 목적으로 함

○ 자치법규 입안기준 부합성

- 자치법규 입안기준에 부합하도록 약칭문 정비 등 일반 정비 필요

○ 위임 적합성 평가

- 자치조례로 해당사항 없음

평가지표에 따른 평가

○ 분석지표별 평가

평가항목	평가항목별 검토 내용
1. 입법 근거 및 적법성	민주시민 자질개발 및 평생교육 실현을 위해 필요한 조례로 자치사무의 범위에서 적절하게 제정되었음
2. 조례의 실효성	민주시민교육에 대한 교육 내용과 이수 장려 조항을 통해 조례의 실효성을 확보하고 있음
3. 조례 내용의 적정성	조례 내용이 적정함
4. 조례의 공평성	장애, 성별, 나이 등에 관한 사회적 편견, 고정관념이 반영된 표현 및 차별 규정 없음
5. 주민 수용성	조례의 체계 및 용어가 주민이 알기 쉽게 되어 있음
6. 전북자치도 현실부합성	민주시민 공동체 활성화를 위하여 제정된 본 조례는 행정수요를 반영하고 있어 전북특별자치도 현실에 부합함
7. 위원회 운영의 적정성	위원회 운영 규정은 있으나(임의규정) 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지 않음
※ 기타 의견	없음

○ 타 시·도 유사 조례와의 비교

전북특별자치도 민주시민교육 활성화와 지원에 관한 조례	서울특별시 민주시민교육에 관한 조례	경기도 민주시민교육 조례	대전광역시 민주시민교육 조례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제3조(적용대상)	제3조(적용대상)	제3조(기본원칙)	제3조(기본원칙)
제4조(기본원칙)	제4조(기본원칙)	제4조(적용대상)	제4조(책무)
제5조(도지사의 책무)	제5조(책무)	제5조(도지사의 책무)	제5조(민주시민교육 내용)
제6조(민주시민교육 내용)	제6조(민주시민교육 내용)	제6조(민주시민교육종합계획)	제6조(종합계획)
제7조(민주시민교육 시행계획의 수립·시행)	제7조(종합계획의 수립·시행)	제7조(민주시민교육 내용 및 방법)	제7조(민주시민교육위원회 설치)
제8조(민주시민교육자문위원회)	제8조(민주시민교육자문위원회)	제8조(민주시민교육자문위원회)	제8조(위원회의 구성)
제9조(위원회의 운영세칙)	제9조(위원의 해촉)	제9조(위원의 의무)	제8조의2(위원의 해촉)
제10조(경비보조 및 지원)	제10조(수당 및 여비)	제10조(회의)	제9조(위원회의 운영)
제11조(민주시민교육의 이수)	제11조(운영세칙)	제11조(소위원회의 구성·운영)	제10조(민주시민교육지원센터 설치)
제12조(교류협력)	**제12조(민주시민교육의 위탁)**	제12조(위원회의 의견청취)	제11조(지원)

제13조(포상)	제13조(재정지원 등)	제13조(수당 및 여비)	제11조의2(이수증의 발급)
제14조(시행규칙)	제14조(이수증의 발급)	**제14조(경기도 민주시민교육지원센터)**	제12조(교류·협력)
	제15조(이수현황의 파악 등)	**제15조(민주시민교육의 위탁)**	제13조(포상)
	제16조(교류협력 등)	제16조(이수증의 발급)	
	제17조(표창)	제17조(재정지원 등)	
	제18조(시행규칙)	제18조(교류협력 등)	
		제19조(평가)	
		제20조(포상)	
		제21조(시행규칙)	

- 서울특별시와 경기도 조례에서는 민주시민교육을 위탁할 수 있도록 하여 교육의 전문성을 도모하고자 함
- 또한 경기도 조례는 제14조에서 민주시민교육지원센터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음. 이는 민주시민교육의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수행을 위함이며, 경기도지사는 해당 센터에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하도록 규정함

○ 규제사항 평가

- 특이사항 없음

목적달성도 및 부수효과 분석

○ 조례 목적달성도 평가

- 조례 내용에 따라 전북특별자치도 내에서 학생들을 대상으로 민주시민교육을 활발하게 진행하고 있다는 점에서 조례 목적이 달성되고 있음

○ 부수효과

- 전북특별자치도 내 민주시민교육을 활성화하여 시민 참여와 민주주의의 확산에 기여함

관계법령

- 자치조례로 해당사항 없음

조례 개정방안

○ 조례 개정 방향

- 제2조, 제5조, 제7조, 제8조, 제9조, 제10조, 제12조: 법제처 자치법규 입안기준에 따른 정비(약칭 표현 정비, 중복표현 정비, 제목 정비 등)
- 제13조: 포상 규정의 경우 「전북특별자치도 포상 조례」 등이 당연히 적용되는 것이므로 규정 실익이 없지만, 조례의 완성도·이해도를 위하여 조례명은 표기하지 않고 단순히 선언적 규정으로만 정비
- 제14조: 시행규칙은 개별 조례에서 위임이 없더라도 조례의 집행에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규칙으로 규정할 수 있으므로 삭제 권고

○ **개정안**

현 행	개정안	비고
제2조(정의) "민주시민교육"이란 전북특별자치도민(이하 "도민"이라 한다)이 민주사회의 주권자로서 민주 국가와 시민사회의 지속 발전을 위한 지식·기능·가치·태도 등 민주시민의 자질과 소양을 함양하고 건강한 시민으로 성숙된 삶과 행동으로 이어지도록 하는 교육을 말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민주시민교육"이란 전북특별자치도민(이하 "도민"이라 한다)이 민주사회의 주권자로서 민주 국가와 시민사회의 지속 발전을 위한 지식·기능·가치·태도 등 민주시민의 자질과 소양을 함양하고 건강한 시민으로 성숙된 삶과 행동으로 이어지도록 하는 교육을 말한다.	-하나의 정의만을 표기할 경우에는 이 조례에서 "OOO"(이)란 ~을 말한다."로 표기함(법제처, 2022 자치법규 입안 길라잡이, 93면.)
제5조(도지사의 책무) 도지사는 모든 도민에게 민주시민교육의 기회가 충분히 제공되도록 민주시민교육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여야 하며, 도내 시·군의 민주시민교육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도지사의 책무) 전북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모든 도민에게 민주시민교육의 기회가 충분히 제공되도록 민주시민교육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여야 하며, 도 내 시·군의 민주시민교육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도지사"를 약칭한 후 사용하도록 정비 권고 -"도 내"로 띄어쓰기 정비 권고
제7조(민주시민교육 시행계획의 수립·시행) ① 도지사는 매 3년마다 민주시민교육 활성화 및 지원을 위하여 「평생교육법」제11조 및 「전북특별자치도평생교육진흥조례」 제4조에 따라 수립·시행하는 전북특별자치도 평생교육진흥 시행계획에 민주시민교육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포함하여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시행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민주시민교육의 중장기 정책 목표 및 그 추진 방향에 관한 사항 2. 민주시민교육 사업의 계획 및 추진 방법에 관한 사항 3. 민주시민교육 사업의 지원을 위한 소요 재원 및 재원조달에 관한 사항 4. 민주시민교육 사업의 기반구축 및 활성화에 관한 사항 5. 민주시민교육 과정 및 프로그램의 연구·개발·평가 등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민주시민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	제7조(민주시민교육 시행계획의 수립·시행) ① 도지사는 3년 마다 민주시민교육 활성화 및 지원을 위하여 「평생교육법」 제11조 및 「전북특별자치도 평생교육 진흥 조례」 제4조에 따라 수립·시행하는 전북특별자치도 평생교육진흥 시행계획에 전북특별자치도 민주시민교육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포함하여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민주시민교육의 중장기 정책 목표 및 추진 방향에 관한 사항 2. 민주시민교육 사업의 계획 및 추진 방법에 관한 사항 3. 민주시민교육 사업의 지원을 위한 소요 재원 및 재원조달에 관한 사항 4. 민주시민교육 사업의 기반구축 및 활성화에 관한 사항 5. 민주시민교육 과정 및 프로그램의 연구·개발·평가 등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도지사가 민주시민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	-띄어쓰기 정비 -각종 계획에는 행정기관의 고유명칭이 표기되어야 함 -"시행계획"으로 약칭하였으므로 조문 표기 하지 않음

현 행	개정안	비고
되는 사항	고 인정되는 사항	
제8조(민주시민교육자문위원회) 도지사는 제7조에 따른 시행계획의 수립·시행 및 그 밖의 민주시민교육에 관한 전문적이고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기 위하여 전북특별자치도 민주시민교육 자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제8조(민주시민교육 자문위원회) 도지사는 시행계획의 수립·시행 및 그 밖의 민주시민교육에 관한 전문적이고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기 위하여 전북특별자치도 민주시민교육 자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약칭한 경우 조문 표기 하지 않음(법제처, 2023 우수조례 및 자치법규 입법컨설팅 사례집 191면.)
제9조(위원회의 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된 사항 이외에 위원회의 운영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가 따로 정한다.	제9조(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문장 정비(법제처, 2022년 우수조례 및 자치법규 입법컨설팅 사례집, 150면.)
제10조(경비보조 및 지원) 도지사는 민주시민교육 프로그램의 개발 및 시행, 인력의 양성과 배치, 그 밖에 도민의 민주시민교육 참여를 촉진하기 위하여 수행하는 사업 등 도민을 위한 민주시민교육 사업을 예산의 범위 안에서 실시하거나, 시·군 및 법인·단체에게 지원할 수 있다.	제10조(경비보조 및 지원) 도지사는 민주시민교육 프로그램의 개발 및 시행, 인력의 양성과 배치, 그 밖에 도민의 민주시민교육 참여를 촉진하기 위하여 수행하는 사업 등 도민을 위한 민주시민교육 사업을 예산의 범위에서 실시하거나, 시·군 및 법인·단체에게 지원할 수 있다.	-중복적인 표현 정비 권고
제12조(교류협력) 도지사는 민주시민교육의 기반구축 및 활성화를 위하여 중앙정부 및 타 시·도, 기초자치단체, 법인·단체 등과 긴밀한 교류 및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제12조(교류 및 협력체계 구축) 도지사는 민주시민교육의 기반구축 및 활성화를 위하여 중앙행정기관, 타 시·도 및 시·군·구, 법인·단체 등과 긴밀한 교류 및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제목을 내용에 맞게 정비함 -문장 정비(법제처, 2022 자치법규 입안 길라잡이, 110면.)
제13조(포상) 도지사는 민주시민교육에 공적이 있는 법인·단체 및 개인 등에게 「전북특별자치도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제13조(포상) 도지사는 민주시민교육에 공적이 있는 법인·단체 및 개인 등에게 포상할 수 있다.	-포상에 관해 선언적인 의미만을 규정하면, 그에 따른 구체적인 사항은 당연히 「전북특별자치도 포상 조례」를 적용 받으므로 규정의 실익이 없음(법제처, 2023년 우수조례 및 자치법규 입법컨설팅 사례집, 118면)
제14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도지사가 따	<삭제>	-시행규칙은 개별 조례에서 위임이 없

현 행	개정안	비고
로 정한다.		더라도 조례의 집행에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규칙으로 규정할 수 있으므로 삭제 권고

연 번	조례명	분 류	위임근거	시행일	비 고
8	**전북특별자치도 전입대학생 도서구입비 지원 조례**	자치조례	-	2003. 11. 14., 제정 (일부개정 3회) [시행 2024. 1. 18.] [전북특별자치도조례 제5399호, 2023. 12. 8., 일부개정]	□ 개정 권고 □ 통합 권고 ■ 폐지 권고 □ 이행 권고 ■ 일반 정비 □ 현행 유지 □ 기타( )

사전 검토

○ 기본자료 분석

- (3-1) 조례 제3조에 따라 2003년 재정지원을 실시함
- (3-3) 2003년 전라북도 전입대학생 도서구입비 지원에 20,000천원을 확보하여 전액 집행함. 이후 지원의 실효성이 부족하여 예산을 확보하지 않음
- (6-1) 인구유입 정책 요인으로 실효성이 떨어져 전북특별자치도 현실과 부합하지 않음

○ 기타의견

- (8-1) 해당 조례는 제정된 2003년 이후 도서구입비 지원사업이 실행된 사례가 없고, 조례 제정 당시(2003년)와 달리 현재는 도서구입비 지원이 전입 대학생의 생활안정에 필수적 요인으로 작용하지 않으며, 실효성이 없는 조례를 유지하기보다는 실질적인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는 편이 효율적으로 조례를 유지할 필요가 없음
- (8-3) 수년간 조례 운영 실적 전무하며,「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제4조의 학자금 지원의 범위에 교재구입비가 포함되어 있다는 점에서 조례 운영의 실익이 없음

입법체계 분석

○ 조례 제정 목적

- 전북특별자치도 인구 늘리기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도 내 대학(교)에 재학 중인 타 시·도 출신 대학생들이 도내로 주민등록을 이전한 경우, 도서구입비 지원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함

○ 자치법규 입안기준 부합성

- 자치법규 입안기준에 부합하도록 띄어쓰기 등 일반 정비 필요

○ 위임 적합성 평가

- 자치조례로 해당사항 없음

평가지표에 따른 평가

○ 분석지표별 평가

평가항목	평가항목별 검토 내용
1. 입법 근거 및 적법성	자치사무의 범위에서 적절하게 제정되었음
2. 조례의 실효성	2003년 이후로 지원 실적이 전혀 없어 조례의 실효성이 낮음
3. 조례 내용의 적정성	조례의 목적에 맞도록 규정되어 내용은 적정한 것으로 평가됨

4. 조례의 공평성	장애, 성별, 나이 등에 관한 사회적 편견, 고정관념이 반영된 표현 및 차별 규정 없음
5. 주민 수용성	조례의 체계 및 용어가 주민이 알기 쉽게 되어 있음
6. 전북자치도 현실부합성	전북특별자치도의 현실에 부합하긴 하나, 진행되는 사업이 약 20년간 운영되지 않아 실효성이 떨어짐
7. 위원회 운영의 적정성	위원회 운영 관련 규정이 없음
※ 기타 의견	없음

○ 타 시·도 유사 조례와의 비교

전북특별자치도 전입대학생 도서구입비 지원 조례	대전광역시 도서구입비 지원 조례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제2조(지급자격)	제2조(정의)
제3조(지원금액)	제3조(책무)
제4조(도서구입비의 신청)	제4조(지원)
제5조(지원결정)	**제5조(환수)**
제6조(지급방법 및 시기)	
제7조(예산조치)	

- 타 시·도 조례에는 전입대학생의 도서구입비 지원에 관한 조례가 없으며, 대전광역시의 경우 도서구입비 지원 조례를 운영 중임
- 대전광역시 조례에서는 환수조치와 관련한 규정을 두어 지원자격을 위반하여 지원받았거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받은 경우 지원액 환수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함

○ 규제사항 평가

- 특이사항 없음

목적달성도 및 부수효과 분석

○ 조례 목적달성도 평가

- 조례 제정 후 21년간 지원 실적이 없어 조례 목적달성도가 낮음

○ 부수효과

- 조례의 실효성이 떨어져 조례로 인한 부수효과를 판단하기 어려움

관계법령

- 자치조례로 해당사항 없음

조례 개정방안

○ 조례 개정 방향

- 상당 기간 실효성이 없었던 조례이므로 폐지 권고
- 조례를 유지하는 경우 아래와 같은 일반 정비 검토
  · 제1조, 제2조, 제3조, 제5조: 법제처 자치법규 입안기준에 따른 정비(약칭표현 정비 등)

○ 개정안

현 행	개정안	비고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전북특별자치도 인구 늘리기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도내 대학(교)에 재학중인 타 시·도 출신 대학생들이 도내로 주민등록을 이전한 경우, 도서구입비 지원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전북특별자치도 인구 늘리기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전북특별자치도 내 대학(교)에 재학 중인 타 시·도 출신 대학생들이 도 내로 주민등록을 이전한 경우 도서구입비를 지원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약칭 없이 사용한 "전북특별자치도" 정비 및 띄어쓰기 정비 권고 -문장 표현 정비 권고
제2조(지급자격) 타 시·도에서 전북특별자치도내의 대학(교)에 재학중인 대학생으로서 매년 12월1일 현재 도내로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대학생에 한 한다.	제2조(지급자격) 타 시·도에서 전입한 사람으로 전북특별자치도 내의 대학(교)에 재학 중인 대학생으로서 매년 12월1일 현재 도 내에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대학생에 한한다.	-띄어쓰기 정비, 문장 정비 권고
제3조(지원금액) 도서구입비 지원금액은 예산 범위내에서 결정하여 지급한다.	제3조(지원금액) 도서구입비 지원금액은 예산의 범위에서 결정하여 지급한다.	-문장 표현 정비 권고
제5조(지원결정) 도서구입비 지원 신청을 접수받아 대학(교)의 재학 여부와 타시·도에서 도내로 주민등록을 이전하였는지를 파악하여 결정한 후, 신청자에게 결정된 사항을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자의 수가 예산 범위내를 초과되는 경우에는 접수된 순으로 지원자를 선정한다.	제5조(지원결정) 도지사는 도서구입비 지원 신청을 접수받아 대학(교)의 재학 여부와 타 시·도에서 전북특별자치도 내로 주민등록을 이전하였는지를 파악하여 결정한 후, 신청자에게 결정된 사항을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자의 수가 예산의 범위를 초과되는 경우에는 접수된 순으로 지원자를 선정한다.	-지원결정의 주체를 도시자로 규정하도록 정비 권고 -약칭하지 않은 용어 정비 및 띄어쓰기 정비 권고

연 번	조례명	분 류	위임근거	시행일	비 고
9	**전북특별자치도 출향도민 교류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자치조례	-	2015. 10. 12., 제정 (일부개정 2회) [시행 2024. 1. 18.] [전북특별자치도조례 제5399호, 2023. 12. 8., 일부개정]	■ 개정 권고 □ 통합 권고 □ 폐지 권고 □ 이행 권고 ■ 일반 정비 □ 현행 유지 □ 기타( )

사전 검토

○ 기본자료 분석

- (2-3) 조례 내용에 따라 도정 발전 출향도민 홍보 계획과 출향단체 활성화 추진계획을 수립함
- (2-4) 조례 내용에 따라 아래와 같이 관련 사업을 진행함 (단위: 천원)

규 정	사 업 명	예산(2024년)
제4조(지원사업)	출향도민 소통 활성화 지원	63,500
제4조(지원사업)	도민의 날 출향도민 초청 행사	35,500
제4조(지원사업)	도정 발전 출향도민 홍보 추진	30,000

- (3-1) 조례 제4조에 따라 도민의 날 출향도민 초청 행사(35,500천원), 출향도민 소통 활성화 지원(63,500천원), 도정 발전 출향도민 홍보 추진(30,000천원) 사업을 실시함
- (3-2) 조례 제1조와 제4조에 따라 규정된 지원사업이 적정함
- (3-3) 조례 제4조에 따라 2022년부터 2024년까지 아래와 같이 예산을 확보하고 집행함

(단위: 천원)

연도	사업명	필요예산	확보예산	집행액	집행내역
2022	출향도민 소통 활성화 지원사업	20,000	20,000	20,000	고향방문 행사 지원 및 간담회
	도민의 날 출향도민 초청행사	30,000	20,000	20,000	출향도민 초청 행사 실시
2023	출향도민 소통 활성화 지원사업	60,000	60,000	60,000	고향방문 행사 지원 및 간담회
	도민의 날 출향도민 초청행사	35,500	35,500	33,657	출향도민 초청 행사 실시
	도정 발전 출향도민 홍보 추진	20,000	20,000	20,000	출향단체 도민회보를 통한 도정 홍보
2024	출향도민 소통 활성화 지원사업	63,500	63,500	-	고향방문 행사 지원 및 간담회
	도민의 날 출향도민 초청행사	35,500	35,500	-	출향도민 초청 행사 실시
	도정 발전 출향도민 홍보 추진	30,000	30,000	-	출향단체 도민회보를 통한 도정 홍보

○ 기타의견

- (8-1) 출향도민 상호간의 친목도모와 애향심과 자긍심 고취를 위해 출향도민단체에 지속적인 관리 및 재정적 지원이 필요로 되며 조례 유지를 통해 예산 확보와 도정 동반자적 협력 관계로 발전하는데 기여하여 조례의 유지가 필요함

입법체계 분석

○ 조례 제정 목적

- 국내에 거주하는 출향도민 상호간의 친목도모와 권익신장 및 역량결집에 필요한 지원방안을 마

련함으로써 출향도민들의 애향심과 자긍심을 고취함은 물론 전북특별자치도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함

○ 자치법규 입안기준 부합성

- 자치법규 입안기준에 부합하도록 띄어쓰기 정비 필요

○ 위임 적합성 평가

- 자치조례로 해당사항 없음

평가지표에 따른 평가

○ 분석지표별 평가

평가항목	평가항목별 검토 내용
1. 입법 근거 및 적법성	자치사무의 범위에서 적절하게 제정되었음
2. 조례의 실효성	출향도민단체에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통해 조례의 실효성을 확보하고 있음
3. 조례 내용의 적정성	조례에서 규정하고 있는 재정지원이 적절하게 이루어지고 있음
4. 조례의 공평성	장애, 성별, 나이 등에 관한 사회적 편견, 고정관념이 반영된 표현 및 차별 규정 없음
5. 주민 수용성	조례의 체계 및 용어가 주민이 알기 쉽게 되어 있음
6. 전북자치도 현실부합성	전북특별자치도 출신으로 출향한 출향도민을 지원하기위하여 제정된 본 조례는 행정수요를 반영하고 있어 전북특별자치도 현실에 부합함
7. 위원회 운영의 적정성	위원회 운영 관련 규정이 없음
※ 기타 의견	없음

○ 타 시·도 유사 조례와의 비교

전북특별자치도 출향도민 교류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충청남도 출향도민 교류·협력 등에 관한 조례	경상북도 출향도민 지원에 관한 조례	전라남도 출향도민 교류와 지원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제3조(도지사의 책무)	제3조(도지사의 책무)	**제3조(출향도민의 권리)**	**제3조(출향도민의 권리)**
제4조(지원사업)	**제4조(출향도민회의 책무)**	제4조(도지사의 책무)	제4조(도지사의 책무)
제5조(고향사랑명예대사 위촉)	**제5조(교류·협력 사업)**	**제5조(출향도민회의 책무)**	제5조(지원사업)
	제6조(사업의 지원)	제6조(지원)	제6조(전남사랑도민증 발급 등)
	제7조(포상)	**제7조(포상)**	제7조(전남사랑애 서포터즈 구성 및 운영 등)
	제8조(시행규칙)	제8조(시행규칙)	제8조(공공시설의 입장료 감면 등 지원)
			제9조(사업의 위탁)
			제10조(포상)
			제11조(시행규칙)

- 충청남도와 경상북도, 전라남도 조례에서는 출향도민회를 구성하고 책무를 부여하며 포상을 실시해 출향도민회가 실질적으로 활동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함

○ 규제사항 평가

- 특이사항 없음

목적달성도 및 부수효과 분석

○ 조례 목적달성도 평가

- 수년간 조례 내용에 따라 전북특별자치도 출향도민을 위한 사업을 수행하고 있다는 점에서 조례 목적이 충분히 달성되고 있음

○ 부수효과

- 출향도민들의 애향심을 고취함과 동시에 전북특별자치도의 경제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음

관계법령

- 자치조례로 해당사항 없음

조례 개정방안

○ 조례 개정 방향

- 제1조: 법제처 자치법규 입안기준에 따른 정비(약칭표현 정비, 띄어쓰기 정비 등)
- 제2조, 제3조의2: 타 시·도의 사례를 참고하여 출향도민회 관련 규정 신설 검토
- 제6조: 타 시·도의 사례를 참고하여 전북자치도민증 발급과 관련된 규정 신설 검토
- 제7조: 타 시·도의 사례를 참고하여 포상규정 신설 검토

○ 개정안

현 행	개정안	비고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내에 거주하는 출향도민 상호간의 친목도모와 권익신장 및 역량결집에 필요한 지원방안을 마련함으로써 출향도민들의 애향심과 자긍심을 고취함은 물론 전북특별자치도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내에 거주하는 전북특별자치도 출향도민 상호간의 친목도모와 권익신장 및 역량결집에 필요한 지원방안을 마련함으로써 출향도민들의 애향심과 자긍심을 고취함은 물론 전북특별자치도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북특별자치도 출향도민"으로 명확하게 규정하도록 정비 권고 -띄어쓰기 정비 권고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출향도민"이란 전북특별자치도(이하 "전북자치도"라 한다) 출신으로 전북자치도를 제외한 국내에 거주하는 사람을 말한다. 2. "교류사업"이란 전북자치도와 출향도민간 상호 친선 우호 및 전북자치도 발전에 대한 공동관심 사항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출향도민"이란 전북특별자치도(이하 "전북자치도"라 한다) 출신으로 전북자치도를 제외한 국내에 거주하는 사람을 말한다. 2. "교류사업"이란 전북자치도와 출향도민 간 상호 친선 우호 및 전북자치도 발전에 대한 공동관심 사항	-제2호: 띄어쓰기 정비 권고 -제3호: 타 시·도의 사례를 참고하여 "출향도민회" 규정 신설 권고

현 행	개정안	비고
교류협력을 말한다. <신설>	의 교류협력을 말한다. 3. "출향도민회"란 출향도민 상호간 우의와 친목도모 및 전북자치도민과의 교류와 협력을 목적으로 구성된 단체를 말하며 국내외의 향우회를 포함한다.	
<신설>	제3조의2(출향도민회의 책무) 출향도민회는 전북자치도의 발전을 위하여 노력해야 하며 도정 시책에 적극 참여하고 협력하여야 한다.	-타 시·도의 사례를 참고하여 출향도민회의 책무 규정 신설 권고
제5조(고향사랑명예대사 위촉) ① 도지사는 애향심과 덕망을 갖추고 아래의 임무를 수행할 수 있다고 판단되는 출향도민 중 고향사랑명예대사(이하 "명예대사"라 한다)를 위촉할 수 있다. ② 이하 생략	제5조(고향사랑명예대사 위촉) ① 도지사는 애향심과 덕망을 갖추고 다음 각 호의 임무를 수행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출향도민 중에서 전북특별자치도 고향사랑명예대사(이하 "명예대사"라 한다)를 위촉할 수 있다. ② 이하 현행과 같음	-행정기관의 고유명칭을 표기하여야 타 시·도와 구별할 수 있음
<신설>	제6조(전북자치도민증의 발급 및 공공시설의 입장료 감면) ① 도지사는 가족관계등록부에 따른 전북자치도에 등록기준지를 둔적이 있거나 종전에 전북자치도민이었음을 입증한 사람에게 전북특별자치도민증(이하 "전북자치도민증"이라 한다)을 발급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전북자치도민증을 발급받은 사람 또는 명예대사 등에게 전북자치도 및 시·군에서 설치·관리하고 있는 시설의 입장료·사용료 전부 또는 일부 감면할 수 있다.	-출향민에게 ① 전북자치도민증을 발급하여 애향심을 키우고, ② 그들에게 최소한의 혜택(입장료 감면)을 제공하는 규정 신설 권고
<신설>	제7조(포상) 도지사는 전북자치도의 발전 및 출향도민회 등 활성화에 이바지한 공로가 크다고 인정되는 출향도민에게 포상할 수 있다.	-타 시·도의 사례를 참고하여 포상 규정 신설 권고

연 번	조례명	분 류	위임근거	시행일	비 고
10	**전북특별자치도 공직자 청렴도 관리 조례**	자치조례	-	2015. 12. 28., 제정 (일부개정 3회) [시행 2024. 11. 1.] [전북특별자치도조례 제5614호, 2024. 11. 1., 일부개정]	□ 개정 권고 □ 통합 권고 □ 폐지 권고 □ 이행 권고 ■ 일반 정비 □ 현행 유지 □ 기타( )

사전 검토

○ 기본자료 분석

- (2-3) 조례 제5조에 따라 매년 반부패·청렴정책 추진계획을 수립함
- (2-4) 조례 내용에 따라 아래와 같이 관련 사업을 진행함

(단위: 천원)

규 정	사 업 명	예산(2024년)
제11조	청렴도 및 만족도 조사시스템 운영	6,200
제12조	공직자 청렴도 측정	8,000
제16조	청렴교육	3,000
제16조	청렴 상시학습 시스템 운영	6,000

- (2-5) 조례 제11조에 따라 고위공직자 부패위험성 진단 설문조사를 실시하고 청렴도 및 만족도 조사시스템을 운영함
- (2-5) 조례 제16조에 따라 2024년 4급 이상 간부공무원 청렴리더십 교육(4.23./ 1,865천원), 청렴 상시학습 시스템 운영(수시운영/ 6,000천원), 2024 팀장급 이상 갑질예방 및 청탁금지법 교육(3.20./ 800천원)을 실시함
- (2-5) 세출예산 구조조정으로 인한 포상금 예산 삭감으로 2024년에는 포상을 실시하지 않음
- (3-3) 조례 내용에 따라 2022년부터 2024년까지 아래와 같이 예산을 확보하고 집행함

(단위: 천원)

연도	사업명	필요예산	확보예산	집행액	집행내역
2022	청렴교육 청렴누리문화제	8,200	8,200	8,200	청렴교육 청렴누리문화제
	공직자 청렴도 측정	8,000	8,000	8,000	공직자 청렴도 측정
	청렴 상시학습 시스템	6,000	6,000	6,000	청렴 상시학습 시스템
	청렴도 및 만족도 조사시스템 운영	39,019	39,019	39,019	청렴도 및 만족도 조사시스템 운영
	청렴마일리지 포상금	18,000	18,000	18,000	청렴마일리지 포상금
2023	청렴교육 청렴누리문화제	8,200	8,200	8,200	청렴교육 청렴누리문화제
	공직자 청렴도 측정	8,000	8,000	8,000	공직자 청렴도 측정
	청렴 상시학습 시스템	6,000	6,000	6,000	청렴 상시학습 시스템
	청렴도 및 만족도 조사시스템 운영	4,461	4,461	4,461	청렴도 및 만족도 조사시스템 운영
	청렴마일리지 포상금	18,000	18,000	18,000	청렴마일리지 포상금
2024	청렴교육 청렴누리문화제	7,000	7,000	2,745	청렴교육 청렴누리문화제
	공직자 청렴도 측정	8,000	8,000	-	공직자 청렴도 측정
	청렴 상시학습 시스템	6,000	6,000	-	청렴 상시학습 시스템
	청렴도 및 만족도 조사시스템 운영	6,200	6,200	5,875	청렴도 및 만족도 조사시스템 운영

○ 기타의견

- (8-1) 조례에 따라 청렴도 관리가 이루어지고 있고, 국민권익위원회 종합청렴도 평가 대응에 필요한 전북특별자치도 청렴도 관리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어 조례를 유지해야 함

입법체계 분석

○ 조례 제정 목적

- 전북특별자치도 공직자의 청렴도를 향상시키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공정하고 투명한 도정을 실현하고 도정에 대한 도민의 신뢰를 확보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 자치법규 입안기준 부합성

- 자치법규 입안기준에 부합하도록 용어 사용 정비 필요

○ 위임 적합성 평가

- 자치조례로 해당사항 없음

평가지표에 따른 평가

○ 분석지표별 평가

평가항목	평가항목별 검토 내용
1. 입법 근거 및 적법성	자치사무의 범위에서 적절하게 제정되었음
2. 조례의 실효성	매년 반부패·청렴정책 추진계획을 수립하여 연도별 청렴정책 추진을 통해 조례의 실효성을 확보하고 있음
3. 조례 내용의 적정성	조례에서 규정하고 있는 청렴도 평가가 적절하게 이루어지고 있음
4. 조례의 공평성	장애, 성별, 나이 등에 관한 사회적 편견, 고정관념이 반영된 표현 및 차별 규정 없음
5. 주민 수용성	조례의 체계 및 용어가 주민이 알기 쉽게 되어 있음
6. 전북자치도 현실부합성	전북특별자치도에서 근무하는 공직자의 청렴도를 평가하기 위하여 제정된 본 조례는 행정수요를 반영하고 있어 전북특별자치도 현실에 부합함
7. 위원회 운영의 적정성	위원회 운영 관련 규정이 없음
※ 기타 의견	없음

○ 타 시·도 유사 조례와의 비교

전북특별자치도 공직자 청렴도 관리 조례	전라남도 공직자 청렴도 관리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청렴도 향상 및 부패방지 기본 조례	경상북도 청렴도 향상 조례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제3조(도지사의 책무)	제3조(도지사의 책무)	제3조(도지사의 책무)	제3조(도지사의 책무)
제4조(공직자의 청렴의무)	제4조(공직자의 청렴의무)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5조(청렴도 향상 종합대책 수립)	제5조(청렴도 향상 종합대책 수립)	제5조(기본계획의 수립·시행 등)	제5조(기본계획의 수립·시행 등)
제6조(공직자 부패신고)	제6조(공직자 부패신고)	제6조(사업)	제5조의2(반부패·청렴정책 협의체)
제7조(부패행위 신고방법)	제7조(부패행위 신고방법)	제7조(포상 등)	제6조(사업)
제8조(부패행위 조사 및 처리)	제8조(부패행위 조사 및 처리)	제8조(협력체계의 구축)	제7조(예산 지원)
제9조(부패행위 신고자 보호)	제9조(부패행위 신고자 보호)	제9조(강원특별자치도 청렴대상 수여 등)	제8조(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
제10조(금품수수 등 범죄행위 고발)	제10조(금품수수 등 범죄행위 고발)	제10조(수상부문)	제9조(청렴도 평가)
제11조(청렴해피콜 운영)	제11조(청렴해피콜 운영)	제11조(수상자 추천 및 선정절차)	제10조(평가결과)
제12조(공직자 청렴도 평가)	제12조(공직자 청렴도 평가)	제12조(강원특별자치도 청렴대상 심사위원회 설치 등)	제11조(청렴해피콜)
제13조(청렴마일리지 제도의 운영)	제13조(청렴마일리지 제도의 운영)	제13조(위원회의 구성)	제12조(업무처리)
제14조(청렴포상 운영)	제14조(청렴포상 운영)	제14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제13조(청렴포상)
제15조(청렴도와 성과평가 연계)	제15조(청렴도와 성과평가 연계)	제15조(위원장)	제14조(협력체계)
제16조(청렴교육 및 홍보)	제16조(청렴교육 및 홍보)	제16조(회의)	제15조(시행규칙)
제17조(시행규칙 등)	제17조(시행규칙)	제17조(간사)	
		제18조(청렴해피콜)	
		제19조(청렴해피콜 업무처리)	

- 타 시·도의 사례와 유사하여 특별한 시사점 없음

○ 규제사항 평가

- 특이사항 없음

목적달성도 및 부수효과 분석

○ 조례 목적달성도 평가

- 전북특별자치도의 공직자 청렴도를 개선하고 인식을 향상하기 위해 많은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는 점에서 조례의 목적이 달성되고 있다고 평가됨

○ 부수효과

- 공직자 청렴도를 향상하여 시민의 행정신뢰를 높이고 행정의 효율성을 확보할 수 있음

관계법령

- 자치조례로 해당사항 없음

조례 개정방안

○ 조례 개정 방향

- 조례에서 전체 규정이 30조 미만인 경우에는 장(章)으로 나누지 않음(법제처, 2022 자치법규 길라잡이, 344면)
- 제1조, 제2조, 제5조, 제13조, 제14조, 제15조: 법제처 자치법규 입안기준에 따른 정비(약칭표현 정비, 띄어쓰기 정비 등)
- 제14조: 위임관계를 명확하게 규정하도록 조례 규정 정비 검토
- 제17조: 시행규칙은 개별 조례에서 위임이 없더라도 조례의 집행에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규칙으로 규정할 수 있으므로 삭제 권고

○ 개정안

현 행	개정안	비고
제1장 총칙	<삭제>	-장(章) 삭제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전북특별자치도 공직자의 청렴도를 향상시키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공정하고 투명한 도정을 실현하고 도정에 대한 도민의 신뢰를 확보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전북특별자치도 공직자의 청렴도를 향상시키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공정하고 투명한 도정을 실현하고 도정에 대한 전북특별자치도민의 신뢰를 확보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도민"을 "전북특별자치도민"으로 사용하도록 정비 권고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생략 2. "출연기관 등"이라 함은「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전북자치도가 설치한 지방공기업과 「전북특별자치도 출자·출연 기관 등의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전북자치도에서 출자·출연한 단체·기관를 말한다. 3. 이하 생략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현행과 같음 2. "출연기관 등"이라 함은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전북자치도가 설치한 지방공기업과 「전북특별자치도 출자·출연 기관 등의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전북자치도에서 출자·출연한 단체·기관을 말한다. 3. 이하 현행과 같음	-문장 표현 정비 -제2호: 띄어쓰기 정비, 오기 정비
제5조(청렴도 향상 종합대책 수립) 도지사는 청렴도 향상 활동을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매년 12월에 다음 연도 청렴도 향상 종합대책을 수립하여야 한다. 다만,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실시하는 공공기관 청렴도 측정에서 상위권을 상당기간 유지하는 경우 등 별도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5조(청렴도 향상 종합대책 수립) 도지사는 청렴도 향상 활동을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매년 12월에 다음 연도 청렴도 향상 종합대책을 수립하여야 한다. 다만,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실시하는 공공기관 청렴도 측정에서 상위권을 상당기간 유지하는 경우 등 규칙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단서 조항의 문장 표현을 명확하게 정비 권고
제2장 부패행위 신고 등	<삭제>	-장(章) 삭제
제8조(부패행위 조사 및 처리) ① 생략	제8조(부패행위 조사 및 처리) ① 현행과 같음	-단서 조항의 문장 표현을 명확하게 정

현 행	개정안	비고
② 감사위원장은 부패행위 신고에 대한 조사를 마쳤을 때에는 조사결과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그 결과를 부패행위 신고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제7조제2항에 따라 익명으로 신고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② 감사위원장은 부패행위 신고에 대한 조사를 마쳤을 때에는 조사결과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그 결과를 부패행위 신고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제7조제2항에 따라 익명으로 신고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비 권고 -관련 사항을 규칙으로 정하고 있으므로 위임 관계를 명확하게 하도록 정비 권고
제10조(금품수수 등 범죄행위 고발) ① 생략 ② 범죄행위 고발대상의 범위, 고발시기와 절차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별도로 정한다.	제10조(금품수수 등 범죄행위 고발) ① 현행과 같음 ② 범죄행위 고발대상의 범위, 고발시기와 절차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관련 사항을 규칙으로 정하고 있으므로 위임 관계를 명확하게 하도록 정비 권고
제3장 청렴도 향상 활동	<삭제>	-장(章) 삭제
제11조(청렴해피콜 운영) ① 감사위원장은 공사 및 용역관리·감독, 인·허가, 보조금 지원 등 공직자가 처리한 업무와 관련된 민원인 등의 명부를 관련기관·부서로부터 제출받아 청렴해피콜을 실시하여야 한다. 청렴해피콜 실시 민원 범위, 실시 방법 등 세부사항은 별도로 정한다. ② 생략	제11조(청렴해피콜 운영) ① 감사위원장은 공사 및 용역관리·감독, 인·허가, 보조금 지원 등 공직자가 처리한 업무와 관련된 민원인 등의 명부를 관련기관·부서로부터 제출받아 청렴해피콜을 실시하여야 한다. 청렴해피콜 실시 민원 범위, 실시 방법 등 세부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② 현행과 같음	-관련 사항을 규칙으로 정하고 있으므로 위임 관계를 명확하게 하도록 정비
제12조(공직자 청렴도 평가) ① ~ ② 생략 ③ 평가분야는 직무청렴성, 청렴실천 노력, 조직문화 향상도, 준법성 등으로 하며, 세부평가 기준은 별도로 정한다. ④ 생략	제12조(공직자 청렴도 평가) ① ~ ② 생략 ③ 평가분야는 직무청렴성, 청렴실천 노력, 조직문화 향상도, 준법성 등으로 하며, 세부평가 기준은 규칙으로 정한다. ④ 현행과 같음	-관련 사항을 규칙으로 정하고 있으므로 위임 관계를 명확하게 하도록 정비
제13조(청렴마일리지 제도의 운영) ① 생략 ② 제1항의 청렴마일리지 가점 및 감점지표 등 청렴마일리지 제도의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별도로 정한다.	제13조(청렴마일리지 제도의 운영) ① 현행과 같음 ② 제1항에 따른 청렴마일리지 가점 및 감점지표 등 청렴마일리지 제도의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약칭하지 않은 경우에는 "제O조(항)에 따른"으로 표기함 -관련 사항을 규칙으로 정하고 있으므로 위임 관계를 명확하게 하도록 정비
제14조(청렴포상 운영) ① 도지사는 청렴도 향상에 크게 기여한 전북자치도 실과소와 전북자치도 내 시군	제14조(청렴포상 운영) ① 도지사는 청렴도 향상에 현저하게 기여한 전북자치도 실과소와 전북자치도 내	-제1항: 문장정비 및 문장부호를 사용하도록 정비 권고

현 행	개정안	비고
및 산하 기관, 그리고 공직자를 선정하여 포상(이하 "청렴대상"이라 한다) 할 수 있다. ② 청렴대상의 포상부문, 평가기준, 수상기관 또는 수상자 우대 등에 관한 세부내용은 별도로 정한다.	시·군 및 산하 기관, 그리고 공직자를 선정하여 포상(이하 "청렴대상"이라 한다) 할 수 있다. ② 청렴대상의 포상부문, 평가기준, 수상기관 또는 수상자 우대 등에 관한 세부내용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2항: 관련 사항을 규칙으로 정하고 있으므로 위임 관계를 명확하게 하도록 정비 권고
제15조(청렴도와 성과평가 연계) ① 도지사는 제12조 및 제13조에 따른 공무원 청렴도 평가결과 및 청렴 마일리지 평가결과를 공무원 성과평가에 반영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성과평가에 반영하는 공무원의 범위는 별도로 정한다.	제15조(청렴도와 성과평가 연계) ① 도지사는 제12조 및 제13조에 따른 공무원 청렴도 평가결과 및 청렴마일리지 평가결과를 공무원 성과평가에 반영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성과평가에 반영하는 공무원의 범위는 규칙으로 정한다.	-띄어쓰기 등 문장 정비 -관련 사항을 규칙으로 정하고 있으므로 위임 관계를 명확하게 하도록 정비 권고
제16조(청렴교육 및 홍보) ① 생략 ② 감사위원장은 전북자치도 청렴도 향상을 위한 시책사항을 적극적으로 알리는 등 도민들이 청렴도정 실현에 동참하도록 홍보하여야 한다.	제16조(청렴교육 및 홍보) ① 현행과 같음 ② 감사위원장은 전북자치도 청렴도 향상을 위한 시책사항을 적극적으로 알리는 등 전북특별자치도민들이 청렴도정 실현에 동참하도록 홍보하여야 한다.	-"도민"을 약칭한바 없으므로 원 용어를 사용하도록 정비 권고
제4장 보칙	<삭제>	-장(章) 삭제
제17조(시행규칙 등)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규칙 또는 별도로 정하고, 출연기관 등의 경우에는 규정으로 정한다.	<삭제>	-시행규칙은 개별 조례에서 위임이 없더라도 조례의 집행에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규칙으로 규정할 수 있으므로 삭제 권고

2. 농업복지환경위원회

연 번	조례명	분 류	위임근거	시행일	비 고
11	**전북특별자치도 보호관찰 대상자 사회 복귀 지원에 관한 조례**	자치조례	-	2017. 6. 2., 제정(일부개정 2회) [시행 2024. 7. 5.] [전북특별자치도조례 제5541호, 2024. 7. 5., 일부개정]	■ 개정 권고 □ 통합 권고 □ 폐지 권고 □ 이행 권고 ■ 일반 정비 □ 현행 유지 □ 기타( )

사전 검토

○ 기본자료 분석

- (2-3) 보호관찰 대상자 사회복귀 지원은 국가사무로 광역자치단체에서는 보조적인 역할을 수행하며 국가요청·필요에 따라 국가 총 계획에 맞게 지원하여 별도의 계획을 수립하지 않음
- (2-5) 보호관찰 대상자 사회복귀 지원은 국가사무로 보호관찰 대상자의 정보는 민감한 개인정보로 국가에서 수행해야하여 별도의 실태조사를 실시하지 않음
- (2-5) 보호관찰 대상자를 위한 국가지정 보호관찰소가 기 지정되어 있어 인증기관을 별도로 지정하지 않음
- (2-5) 관계기관(법무보호복지공단·보호관찰소)과 업무협의를 실시함
- (2-5) 전북특별자치도 내 위기청소년 대상 심리치료 및 진로 프로그램 컨설팅 등 지원을 위해 20백만원을 집행하여 촉법소년 등 위기청소년 심리치료 프로그램을 진행함
- (3-1) 조례 제5조에 따라 해당되는 사업에 재정지원이 가능함
- (3-3) 조례 내용에 따라 2023년과 2024년에 아래와 같이 예산 지원을 실시함 (금액단위: 천원)

연도	사업명	필요예산	확보예산	집행액	집행내역
2023 2024	촉법소년 등 위기청소년 심리치료 프로그램	20,000	20,000	20,000	심리치료를 위한 전주보호관찰소협의회 위탁

- (7-1) 보호관찰 대상자 사회복귀 지원은 국가사무로 광역자치단체에서는 보조적인 역할을 수행하며 국가위원회를 통해서 사업을 지원하기 때문에 별도의 위원회를 설치하지 않음

○ 기타의견

- (8-1) 보호관찰 대상자의 원활한 사회복귀를 지원하며, 지역사회 범죄예방과 시민의 복지증진에 기여하기 위하여 조례의 유지가 필요함

입법체계 분석

○ 조례 제정 목적

-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보호관찰 대상자의 원활한 사회복귀를 지원하여 지역사회의 범죄예방과 시민의 복지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함

○ 자치법규 입안기준 부합성

- 자치법규 입안의 기본에 부합하도록 목적조항 정비 및 문장 표현 정비 필요

○ 위임 적합성 평가

- 자치조례로 해당사항 없음

평가지표에 따른 평가

○ 분석지표별 평가

평가항목	평가항목별 검토 내용
1. 입법 근거 및 적법성	자치사무의 범위에서 적절하게 제정되었음
2. 조례의 실효성	전북특별자치도 내 보호관찰 대상자들의 사회복귀 지원을 통해 조례의 실효성을 확보하고 있음
3. 조례 내용의 적정성	보호관찰대상자의 사회복귀를 지원하기 위하여 제정된 조례로 조례 내용이 적정함
4. 조례의 공평성	장애, 성별, 나이 등에 관한 사회적 편견, 고정관념이 반영된 표현 및 차별 규정 없음
5. 주민 수용성	조례의 체계 및 용어가 주민이 알기 쉽게 되어 있음
6. 전북자치도 현실부합성	보호관찰 대상자의 사회복귀를 지원하기위하여 제정된 본 조례는 행정수요를 반영하고 있어 전북특별자치도 현실에 부합함
7. 위원회 운영의 적정성	위원회 운영 관련 규정이 없음
※ 기타 의견	없음

○ 타 시·도 유사 조례와의 비교

전북특별자치도 보호관찰 대상자 사회복귀 지원에 관한 조례	울산광역시 보호관찰 대상자 등에 대한 사회정착 지원 조례	경기도 보호관찰 대상자 등에 대한 사회정착지원 조례	부산광역시 보호관찰 대상자 등에 대한 사회복귀 지원 조례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제2조(정의)	제2조(적용범위)	제2조(적용범위)	제2조(정의)
제3조(도지사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도지사의 책무)	제3조(책무)
제4조(실태조사)	제4조(시민의 협력)	제4조(도민의 협력 등)	제4조(지원사업)
제5조(지원사업)	제5조(지원대상)	제5조(지원사업)	제5조(지역사회 협력체계 구축)
제6조(개인정보 수집 등)	제6조(사업추진)	제6조(지역사회 협력체계 구축)	제6조(비밀엄수)
제7조(비밀누설 금지)	제7조(예산의 지원)	제7조(시행규칙)	제7조(포상)
제8조(포상)	제8조(협력체계 구축)		
제9조(협력체계 구축)	제9조(포상)		
	제10조(시행규칙)		

- 타 시·도의 조례가 실질적인 규정내용이 유사하여 특별한 시사점 없음
- 다만, 조례 제명과 관련하여, 지자체마다 '사회복귀 지원' 혹은 '사회정착 지원'으로 나뉘어져 있다는 점에는 주목할 만함. '복귀'와 '정착'은 방향성에 있어 유사하지만, 목적에 있어 차이가 있으며, '사회정착 지원'으로 조례 제명을 사용하는 지방자치단체가 다수인 바 조례 제명에 대한 검토를 해보는 것도 의미가 있음

○ 규제사항 평가

- 특이사항 없음

목적달성도 및 부수효과 분석

○ 조례 목적달성도 평가

- 지역사회의 범죄예방과 시민의 복지증진은 실적으로 확인할 수 없지만 조례의 운영 자체로서도

충분히 조례 목적이 달성되고 있다고 평가됨

○ 부수효과

- 보호관찰대상자들이 성공적으로 사회에 복귀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 사회 안정을 꾀할 수 있음

관계법령

- 자치조례로 해당사항 없음

조례 개정방안

○ 조례 개정 방향

- 제1조, 제4조: 법제처 자치법규 입안기준에 따른 정비(목적조항, 문장 표현 정비 등)
- 제5조제1항제4호: 타 시·도의 사례를 참고하여 "보호관찰 대상자 등의 가족에 대한 심리 상담 및 치료 지원"에 관한 규정 신설 검토
- 제5조제2항: 재정지원 규정의 경우 「전북특별자치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등이 당연히 적용되는 것이므로 규정 실익이 없지만, 조례의 완성도·이해도를 위하여 조례명은 표기하지 않고 단순히 선언적 규정으로만 정비
- 제7조: 비밀준수 의무사항 삭제
- 제8조: 포상 규정의 경우 「전북특별자치도 포상 조례」 등이 당연히 적용되는 것이므로 규정 실익이 없지만, 조례의 완성도·이해도를 위하여 조례명은 표기하지 않고 단순히 선언적 규정으로만 정비
- 제9조: 임의규정의 일반적인 규정형식에 맞도록 문장 표현 정비 검토

○ 개정안

현 행	개정안	비고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보호관찰 대상자의 원활한 사회복귀를 지원하여 지역사회의 범죄예방과 시민의 복지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전북특별자치도 내 보호관찰 대상자의 원활한 사회복귀를 지원하여 지역사회의 범죄를 예방하여 전북특별자치도민의 복지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자치조례로서의 성격을 명확하게 하도록 목적조항 정비 권고
제4조(실태조사) ① 생략 ② 그 밖에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에 필요한 사항은 도지사가 정한다.	제4조(실태조사) ① 현행과 같음 ② 그 밖에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한다.	-주어를 명시하여 구체적인 문장으로 정비
제5조(지원사업) ① 도지사는 보호관찰 대상자의 사회복귀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 1. ~ 3. 생략 <신설> 4. 보호관찰 대상자에 대한 사회적 인식 개선을 위한 정보제공 및 홍보 5. 그 밖에 보호관찰 대상자의 사회복귀를 위하여 필요한 사업 ② 도지사는 제1항 각 호의 사업을	제5조(지원사업) ① 도지사는 보호관찰 대상자의 사회복귀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 1. ~ 3. 현행과 같음 4. 보호관찰 대상자 등의 가족에 대한 심리 상담 및 치료 지원 5. 보호관찰 대상자에 대한 사회적 인식 개선을 위한 정보제공 및 홍보 6. 그 밖에 보호관찰 대상자의 사회복귀를 위하여 필요한 사업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사업을	-문장 정비 -타 시·도의 사례를 참고하여 제5조제4호 "보호관찰 대상자 등의 가족에 대한 심리 상담 및 치료 지원"에 관한 규정 신설 검토 -"기관·법인·단체"라고 쓰는 표현이 보편적. 법조문장으로

현 행	개정안	비고
추진하는 법인 또는 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비를 「전북특별자치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지원할 수 있다.	추진하는 관계 기관·법인·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다.	수정 권고함 -재정지원에 관해 선언적인 의미만을 규정하면, 그에 따른 구체적인 사항은 당연히 「전북특별자치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적용받으므로 규정의 실익이 없음(법제처, 2023년 우수조례 및 자치법규 입법컨설팅 사례집, 107면)
제7조(비밀누설 금지) 이 조례에 따라 업무를 수행하거나 수행하였던 사람은 업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안 된다.	<삭제>	-상위법인 「개인정보 보호법」 제59조(금지행위)제2호, 제60조(비밀유지) 등에 규정하고 있어 조례에 재기재할 실익이 없음. 또한, 업무종사자가 비밀을 누설할 경우에는 다음 법 조항을 적용받게 되므로 삭제 권고(「형법」 제127조(공무상 비밀의 누설)-공무원인자가 비밀을 누설한 경우 처벌규정, 「형법」 제317조(업무상 비밀누설)-변호사등이 비밀을 누설한 경우 처벌규정, 「민법」 제750조(불법행위의 내용)에 따른 불법행위책임 (손해배상책임)부담)
제8조(포상) 도지사는 보호관찰 대상자 등의 원활한 사회복귀를 위하여 제5조의 사업을 모범적으로 수행한 법인・단체 및 개인에게 「전북특별자치도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제8조(포상) 도지사는 보호관찰 대상자 등의 원활한 사회복귀를 위하여 제5조의 사업을 모범적으로 수행한 법인・단체 및 개인에게 포상할 수 있다.	-포상에 관해 선언적인 의미만을 규정하면, 그에 따른 구체적인 사항은 당연히 「전북특별자치

현 행	개정안	비고
수 있다.		도 포상 조례」를 적용 받으므로 규정의 실익이 없음(법제처, 2023년 우수조례 및 자치법규 입법컨설팅 사례집, 118면)
제9조(협력체계 구축) 도지사는 보호관찰 대상자의 원활한 사회복귀를 위하여 보호관찰소 등 국가기관,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정신보건시설, 상담기관 등 관련 기관·단체와 협력체계 구축을 위하여 노력한다.	제9조(협력체계 구축) 도지사는 보호관찰 대상자의 원활한 사회복귀를 위하여 보호관찰소 등 국가기관,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정신보건시설, 상담기관 등 관련 기관·단체와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임의규정의 일반적 규정형식에 맞게 정비 권고

연 번	조례명	분 류	위임근거	시행일	비 고
12	**전북특별자치도 어르신 전용주차구역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자치조례	-	2020. 7. 13., 제정 (일부개정 2회) [시행 2024. 1. 18.] [전북특별자치도조례 제5399호, 2023. 12. 8., 일부개정]	■ 개정 권고 □ 통합 권고 □ 폐지 권고 □ 이행 권고 ■ 일반 정비 □ 현행 유지 □ 기타( )

사전 검토

○ 기본자료 분석

- (1-1) 본 조례는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제정된 자치조례임

○ 기타의견

- (8-1) 고령화 현상이 심해지고 있는 추세에 따라 공공시설 및 다중이용시설을 방문하는 어르신 운전자에 대한 배려와 이용편의를 제공함으로써 어르신 복지증진을 위하여 조례의 유지가 필요

입법체계 분석

○ 조례 제정 목적

-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공공시설 및 다중이용시설을 방문하는 어르신 운전자에 대한 배려와 이용편의를 제공함으로써 어르신 복지증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함

○ 자치법규 입안기준 부합성

- 자치법규 입안기준에 부합하도록 목적조항 정비 필요

○ 위임 적합성 평가

- 자치조례로 해당사항 없음

평가지표에 따른 평가

○ 분석지표별 평가

평가항목	평가항목별 검토 내용
1. 입법 근거 및 적법성	자치사무의 범위에서 적절하게 제정되었음
2. 조례의 실효성	공공시설 등을 방문하는 어르신 운전자에 이용편의 제공을 통해 어르신 복지증진 도모하고 조례의 실효성을 확보함
3. 조례 내용의 적정성	교통약자 이용편의를 위하여 제정된 조례로 조례 내용이 적정함
4. 조례의 공평성	장애, 성별, 나이 등에 관한 사회적 편견, 고정관념이 반영된 표현 및 차별 규정 없음
5. 주민 수용성	조례의 체계 및 용어가 주민이 알기 쉽게 되어 있음
6. 전북자치도 현실부합성	공공시설물 등에 어르신 주차구역을 설치하기 위하여 제정된 본 조례는 행정수요를 반영하고 있어 전북특별자치도 현실에 부합함

7. 위원회 운영의 적정성	위원회 운영 관련 규정이 없음
※ 기타 의견	없음

○ 타 시·도 유사 조례와의 비교

전북특별자치도 어르신 전용주차구역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서울특별시 임산부 전용주차구역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울산광역시 임산부 전용주차구역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광주광역시 임산부 예우 및 임산부전용주차구역 설치·운영 조례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제3조(도지사의 책무)	제3조(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제4조(적용 범위)	제4조(임산부 전용주차구역 설치 등)	제4조(적용범위)	제4조(다른 법규와의 관계)
제5조(전용주차구역 설치 등)	**제5조(임산부 등이 표지 발급 등)**	제5조(임산부 전용주차구역 설치 등)	제5조(입장료등 감면)
제6조(위반차량 이동조치)	제6조(위반차량 조치)	**제6조(임산부자동차표지 발급 등)**	**제6조(임산부 민원처리 우선창구 개설·운영)**
제7조(시행규칙)	제7조(시행규칙)	제7조(임산부자동차 주차안내 표지)	제7조(임산부의 날)
		제8조(위반차량 조치)	제8조(임산부전용주차구역 적용범위)
		제9조(권한의 위임)	제9조(임산부전용주차구역의 설치 등)
		제10조(시행규칙)	**제10조(임산부자동차 표지 발급 등)**
			제11조(위반차량 조치)
			제12조(시행규칙)

- 타 시·도 조례에는 어르신 전용 주차구역에 관한 조례가 없어 제일 유사한 임산부 전용 주차구역 관련 조례를 비교 검토하였음. 전용 표지를 발급하는 방안 또는 민원처리 우선창구를 개설 및 운영하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음
- 그 외에도 유사하다고 볼 수 있는 조례로 '장애인전용주차구역 관리에 관한 조례' 등이 있음

○ 규제사항 평가

- 어르신 전용주차구역을 위반한 차량을 강제로 이동할 수 있도록 하나, 이는 위반자에 대한 정당한 규제임

목적달성도 및 부수효과 분석

○ 조례 목적달성도 평가

- 2020년 조례 제정 이후 조례를 기반으로 한 사업이 진행된 실적이 현재까지 미비하여 조례의 목적달성도를 평가하기에 어려움이 있으나, 고령사회에 진입하였다는 점에서 향후 장기적인 관점으로 조례 목적달성도를 분석해 볼 필요성이 있음

○ 부수효과

- 고령운전자의 편의를 보장하여 노인의 이동권을 보장할 수 있음

관계법령

- 자치조례로 해당사항 없음

조례 개정방안

○ 조례 개정 방향

- 제1조, 제5조: 법제처 자치법규 입안기준에 따른 정비(목적조항, 문장 표현 정비 등)
- 제5조의2: 타 시·도의 사례를 참고하여 전용주차구역에 있어 어르신 운전자 표지 발급과 관련된 사항 규정 검토
- 제7조: 시행규칙은 개별 조례에서 위임이 없더라도 조례의 집행에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규칙으로 규정할 수 있으므로 삭제 권고

○ 개정안

현 행	개정안	비고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공공시설 및 다중이용시설을 방문하는 어르신 운전자에 대한 배려와 이용편의를 제공함으로써 어르신 복지증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전북특별자치도 내 공공시설 및 다중이용시설을 방문하는 어르신 운전자에 대한 배려와 이용편의를 제공함으로써 어르신 복지증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자치조례로서의 성격을 명확하게 하도록 목적조항 정비 권고
제5조(전용주차구역 설치 등) ① 제4조의 시설 관리자가 전용주차구역을 설치할 때에는 운전자의 이동편의를 위하여 통행이 편리한 장소에 설치하여야 한다. ② ~ ④ 생략	제5조(전용주차구역 설치 등) ① 도지사는 제4조의 시설 관리자가 전용주차구역을 설치할 때에는 운전자의 이동편의를 위하여 통행이 편리한 장소에 설치하여야 한다. ② ~ ④ 현행과 같음	-주어를 명시하여 구체적인 문장으로 정비
<신설>	제5조의2(어르신자동차표지 발급 등) ① 도지사는 제2조제1호에 따른 어르신으로부터 자동차표지 발급을 신청 받은 경우에는 이를 발급하여야 한다. ② 누구든지 제1항에 따른 자동차표지가 부착되지 아니한 자동차를 전용주차장에 주차해서는 안 된다. 자동차표지가 부착된 자동차의 경우에도 전용주차장에 주차할 경우 어르신이 탑승하지 아니하면 또한 같다. ③ 제1항에 따른 어르신자동차표지 발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임산부 전용주차장 설치 조례 등 유사 조례의 규정 사례를 참고하여 어르신 운전자 전용 표지 발급 관련 사항 규정 신설 권고
제7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삭제>	-시행규칙은 개별 조례에서 위임이 없

현 행	개정안	비고
		더라도 조례의 집행에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규칙으로 규정할 수 있으므로 삭제 권고

연 번	조례명	분 류	위임근거	시행일	비 고
13	**전북특별자치도 금연활동 실천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환경조성 조례**	위임조례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	2009. 7. 31., 제정 (전부개정 1회, 일부개정 5회) [시행 2024. 1. 18.] [전북특별자치도조례 제5399호, 2023. 12. 8., 일부개정]	■ 개정 권고 □ 통합 권고 □ 폐지 권고 □ 이행 권고 ■ 일반 정비 □ 현행 유지 □ 기타( )

사전 검토

○ 기본자료 분석

- (1-1) 본 조례는「국민건강증진법」제9조제7항에 따라 위임된 위임조례임
- (1-5) 본 조례는「국민건강증진법」제9조제6항(과태료)에 따라 조례 제7조와 제13조에 관련된 규제 규정(금연구역 지정, 과태료)을 둠
- (2-5) 전북특별자치도 및 14개 시·군에서 자체적으로 총 2,565회의 교육과 76,153건의 홍보를 실시함
- (2-5) 2023년에 도지사 기관표창 3개, 공무원 2개, 민간인 3개의 포상을 수여함
- (3-1) 2024년 도비 3,423,380원을 집행하여 지역사회 금연지원사업을 실시함

○ 기타의견

- (8-1) 금연실천 촉진과 간접흡연의 유해환경으로부터 전북특별자치도민을 보호함으로써 건강증진과 쾌적한 환경조성을 통해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기 위해 조례의 유지가 필요함

입법체계 분석

○ 조례 제정 목적

- 「국민건강증진법」에 따라 전북특별자치도민의 금연실천 촉진과 간접흡연의 유해환경으로부터 보호함으로써 전북특별자치도민의 건강증진과 쾌적한 환경조성을 통해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함

○ 자치법규 입안기준 부합성

- 자치법규 입안기준에 부합하도록 용어 정비 및 불필요한 조항 표기 삭제 필요

○ 위임 적합성 평가

- 위임 범위에서 적절하게 규정하고 있음

평가지표에 따른 평가

○ 분석지표별 평가

평가항목	평가항목별 검토 내용
1. 입법 근거 및 적법성	「국민건강증진법」 제3조 및 제9조의 위임 범위에서 적절하게 제정되었음
2. 조례의 실효성	조례 제7조에 따른 금연구역 지정과 조례 제10조의 흡연 피해자 지원

	을 통해 조례의 실효성을 확보하고 있음
3. 조례 내용의 적정성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제7항에 따른 금연구역을 설정하여 조례 내용이 적정함
4. 조례의 공평성	장애, 성별, 나이 등에 관한 사회적 편견, 고정관념이 반영된 표현 및 차별 규정 없음
5. 주민 수용성	조례의 체계 및 용어가 주민이 알기 쉽게 되어 있음
6. 전북자치도 현실부합성	전북특별자치도민의 건강과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있는 사안으로 조례의 내용이 전북특별자치도 현실에 부합함
7. 위원회 운영의 적정성	위원회 운영관련 규정이 없음
※ 기타 의견	없음

○ 타 시·도 유사 조례와의 비교

전북특별자치도 금연활동 실천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환경조성 조례	**경기도 금연활동 실천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환경조성 조례**	**전라남도 금연환경 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울산광역시 금연환경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제3조(도지사 등의 책임 등)	제3조(도지사 등의 책임 등)	**제3조(도민의 권리 등)**	**제3조(시민의 권리 등)**
제4조(재정지원 등)	제4조(재정지원 등)	제4조(도지사의 책무)	제4조(금연구역의 지정 등)
제5조(금연정책 등 공고)	제5조(금연정책 등 공고)	제5조(금연구역의 지정 등)	제5조(금연구역 표시 등)
제6조(흡연예방 및 금연홍보)	제6조(흡연예방 및 금연홍보)	제6조(금연구역의 지정 변경 등)	**제6조(흡연장소의 설치 등)**
제7조(금연구역 지정 대상)	제7조(금연구역 지정 대상)	제7조(금연구역 표시)	제7조(금연교육 및 홍보지원)
제8조(금연구역 지정 방법)	제8조(금연구역 지정 방법)	**제8조(흡연실 설치)**	제8조(자원봉사자 활용 및 지원)
제9조(금연구역 표시)	제9조(금연구역 표시)	제9조(금연교육 및 홍보지원)	제9조(평가 등)
제10조(흡연 피해자 구제 지원)	**제10조(흡연실의 설치 등)**	제10조(과태료)	제10조(과태료)
제11조(담배 광고·판촉·후원 금지)	**제10조의2(흡연실 설치 지원 등)**		제11조(권한위임)
제12조(금연사업 평가)	제11조(흡연 피해자 구제 지원)		
제13조(과태료)	제12조(담배 광고·판촉·후원 금지)		
제14조(권한위임)	제13조(금연사업 평가)		
제15조(시행규칙)	제14조(과태료)		
	제15조(권한의 위임)		
	제16조(시행규칙)		

- 전라남도와 울산광역시 조례에서는 간접흡연의 피해로부터 보호받을 권리에 대해 명문화하고 있음
- 또한 경기도와 전라남도, 울산광역시 조례에서는 비흡연자의 권리뿐만 아니라 흡연자의 흡연권도 함께 보호하기 위해 흡연장소의 설치와 관련된 규정을 두고 있음

○ 규제사항 평가

- 조례 제13조에 따라 조례 위반자에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고, 이는 상위법령에서 위임된 사항이므로 적절한 규제임

목적달성도 및 부수효과 분석

○ 조례 목적달성도 평가

- 조례 내용에 따라 교육과 홍보는 지속적으로 시행 중이나, 이로 인해 실제로 금연환경이 얼마나 조성되었는지 여부는 추후 장기적인 시각에서 평가가 필요함

○ 부수효과

- 금연환경을 조성하여 비흡연자들의 권리를 보호하고 도시 미관을 개선할 수 있음

관계법령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제7항
제9조(금연을 위한 조치) ① ~ ⑥ 생 략 ⑦ 지방자치단체는 흡연으로 인한 피해 방지와 주민의 건강 증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조례로 다수인이 모이거나 오고가는 관할 구역 안의 일정한 장소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조례 개정방안

○ 조례 개정 방향

- 제3조, 제7조, 제10조: 법제처 자치법규 입안기준에 따른 정비(목적조항, 문장 표현 정비 등)
- 제9조제4항: 타 시·도의 사례를 참고하여 「국민건강증진법 시행규칙」 제6조제4항 별표 2의 기준에 맞게 필요한 경우 흡연실 설치를 할 수 있도록 하여 흡연자의 권리를 보호함과 동시에 금연환경을 조성하고 간접흡연을 방지하는데 기여하도록 규정 신설 검토 권고
- 제9조의2: 심층분석을 통해 타 시·도의 사례를 참고하여 흡연시설의 설치에 관한 규정 신설 권고
- 제15조: 시행규칙은 개별 조례에서 위임이 없더라도 조례의 집행에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규칙으로 규정할 수 있으므로 삭제 권고

○ 개정안

현 행	개정안	비고
제3조(도지사 등의 책임 등) ① 전북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금연에 대한 도민의 관심을 높이고 흡연자의 금연 촉진 및 비흡연자의 간접흡연 피해 예방을 위한	제3조(도지사 등의 책임 등) ① 전북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금연에 대한 전북특별자치도민(이하 "도민"이라 한다)의 관심을 높이고 흡연자의 금연 촉진 및 비흡	-"도민"을 약칭하고 사용하도록 정비 권고

현 행	개정안	비고
각종 시책을 마련하여 추진하여야 한다. ② 생략	연자의 간접흡연 피해 예방을 위한 각종 시책을 마련하여 추진하여야 한다. ② 현행과 같음	
제7조(금연구역 지정 대상) ① 도지사는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제7항에 따라 간접흡연으로 인한 피해방지 및 도민의 건강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구역의 전부 또는 일부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1. 생략 2.「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의한 정류소, 택시 승차대 3. 이하 생략	제7조(금연구역 지정 대상) ① 도지사는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제7항에 따라 간접흡연으로 인한 피해방지 및 도민의 건강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구역의 전부 또는 일부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1. 현행과 같음 2.「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른 정류소, 택시 승차대 3. 이하 현행과 같음	-알기 쉬운 법령정비 기준에 따라 "의한"을 "따른"으로 정비 권고
제9조(금연구역 표시) ① ~ ③ 생략 <신설> <신설>	제9조(금연구역 표시 등)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금연구역으로 지정된 시설이나 구역의 관리자 또는 소유자는 흡연자의 편의를 고려하여 흡연실을 설치할 수 있다. ⑤ 제4항에 따른 설치기준 및 방법은 「국민건강증진법 시행규칙」 제6조제4항 별표 2에 따른다.	-「국민건강증진법 시행규칙」 제6조제4항 별표 2의 기준에 맞게 필요한 경우 흡연실 설치를 할 수 있도록 하여 흡연자의 권리를 보호함과 동시에 금연환경을 조성하고 간접흡연을 방지하는데 기여하도록 규정 신설 검토 권고
<신설>	제9조의2(흡연시설의 설치 등) ① 도지사가 지정하는 금연구역 내 시설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자는 흡연시민의 편의를 고려하여 해당 구역 내에 흡연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 이 경우 도지사는 예산의 범위에서 흡연시설 설치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흡연시설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국민건강증진법 시행규칙」 제6조에 따라 흡연장소임을 알 수 있도록 표시를 하여야 한다. ③ 도지사는 금연구역에서 담배를	-심층분석을 통해 타 시·도의 사례를 참고하여 흡연시설의 설치에 관한 규정 신설 권고

현 행	개정안	비고
	피우려는 사람에게 흡연시설을 이용하도록 홍보하여야 한다.	
제10조(흡연 피해자 구제 지원) ① 도지사는 흡연으로 인한 도민의 건강과 재산상의 피해 구제를 위한 필요한 노력을 할 수 있다.	제10조(흡연 피해자 구제 지원) 도지사는 흡연으로 인한 도민의 건강과 재산상의 피해 구제를 위한 필요한 노력을 할 수 있다.	-제10조는 단항 조항으로 불필요한 "①" 삭제 권고
제15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삭제>	-시행규칙은 개별 조례에서 위임이 없더라도 조례의 집행에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규칙으로 규정할 수 있으므로 삭제 권고

연 번	조례명	분 류	위임근거	시행일	비 고
14	**전북특별자치도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장소 지정 조례**	위임조례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별표 15의2 제10호	2016. 12. 30., 제정 (일부개정 1회) [시행 2024. 1. 18.] [전북특별자치도조례 제5399호, 2023. 12. 8., 일부개정]	■ 개정 권고 □ 통합 권고 □ 폐지 권고 □ 이행 권고 ■ 일반 정비 □ 현행 유지 □ 기타( )

사전 검토

○ 기본자료 분석

- (1-1) 본 조례는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42조제1항제14호에 따른 영업을 할 수 있는 장소를 지정하기 위해 제정된 조례임

○ 기타의견

- (8-1)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별표 15의2에 따른 전북특별자치도 내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을 할 수 있는 장소를 지정하기 위해서는 조례의 유지가 필요함

입법체계 분석

○ 조례 제정 목적

-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별표 15의2제9호에 따른 전북특별자치도 내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을 할 수 있는 장소를 지정함을 목적으로 함

○ 자치법규 입안기준 부합성

- 자치법규 입안기준에 부합도록 상위법령 인용 오류, 문장부호 추가 등 일반 정비 필요

○ 위임 적합성 평가

- 위임 범위에서 적절하게 규정하고 있음

평가지표에 따른 평가

○ 분석지표별 평가

평가항목	평가항목별 검토 내용
1. 입법 근거 및 적법성	상위법의 위임 범위에서 적절하게 제정되었음
2. 조례의 실효성	전북특별자치도 내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장소 지정을 통해 조례의 실효성을 확보하고 있음
3. 조례 내용의 적정성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장소 및 첨부서류에 관한 내용을 규정하여 조례 내용이 적정함
4. 조례의 공평성	장애, 성별, 나이 등에 관한 사회적 편견, 고정관념이 반영된 표현 및 차별 규정 없음
5. 주민 수용성	조례의 체계 및 용어가 주민이 알기 쉽게 되어 있음
6. 전북자치도 현실부합성	전북특별자치도의 무분별한 음식판매자동차 판매를 방지하기 위하여 제정된 본 조례는 행정수요를 반영하고 있어 전북특별자치도 현실에

	부합함
7. 위원회 운영의 적정성	위원회 운영 관련 규정이 없음
※ 기타 의견	없음

○ 타 시·도 유사 조례와의 비교

전북특별자치도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장소 지정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시설·장소 지정 등에 관한 조례	경기도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장소 지정 및 영업의 지원 등에 관한 조례	광주광역시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장소 지정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제2조(영업장소)	제2조(영업장소)
제3조(영업장소)	제3조(음식판매자동차 영업시설・장소)	제3조(영업장소 지정신청)	제3조(영업장소 지정신청)
제4조(첨부서류)	**제4조(영업시설 등의 사용허가・계약 시 우대)**	**제4조(음식판매자동차 영업에 대한 지원 등)**	제4조(첨부서류)
제5조(시·군 조례와의 관계)	**제5조(음식판매자동차 영업 위생교육)**	제5조(음식판매자동차 영업자격, 영업기간 등)	제5조(음식판매자동차 영업기간 제한)
제6조(준용)	제6조(협력체계 구축)	제5조의2(모집방법)	제6조(음식판매자동차 영업 시 준수사항)
		제5조의3(우선순위)	**제7조(영업자의 범위 등)**
		제5조의4(지역축제 등 참여지원)	**제8조(영업신고 표시)**
		제6조(음식판매자동차 영업 시 준수사항)	**제9조(의무불이행에 대한 조치)**
		제7조(영업신고 표시)	**제10조(음식판매자동차 영업에 대한 지원 등)**
		제8조(의무불이행에 대한 조치)	
		제9조(협조요청)	
		제10조(시행규칙)	

- 강원특별자치도 조례에서는 도민이 운영하는 음식판매자동차에 대한 우대사항을 규정하고 운영자에 대한 위생교육을 실시하도록 규정함
- 경기도 조례에서도 강원도와 유사하게 도민이 운영하는 음식판매자동차에 대한 우대사항을 규정하고 영업 시 준수사항을 규정하여 음식판매자동차의 실효적인 운영을 도모함. 광주광역시 조례 또한 지원 규정을 두고 있음

○ 규제사항 평가

- 특이사항 없음

목적달성도 및 부수효과 분석

○ 조례 목적달성도 평가

- 조례를 기반으로 규정된 내용을 통해 음식판매자동차의 영업장소가 지정되는바 조례의 목적이 달성되었다고 평가됨

○ 부수효과

- 전북특별자치도 내에서 운영되는 음식판매자동차에 대한 최소한의 규제를 실시하여 전북특별자치도민의 안전을 확보하고 음식판매자동차의 난립을 방지함

관계법령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42조제1항제14호 별표15의2 제10호
음식판매자동차를 사용하는 영업의 신고 시 첨부서류(제42조제1항제14호 관련) 1. ~9. 생략 10. 그 밖에 특별시·광역시·도·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 또는 시·군·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의 조례로 정하는 시설 또는 장소: 해당 시설 또는 장소에서 휴게음식점영업등을 하려는 경우에는 그 시설 또는 장소를 사용할 수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 등으로서 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시.군.구의 조례로 정하는 서류

조례 개정방안

○ 조례 개정 방향

- 제2조, 제3조, 제4조, 제5조: 법제처 자치법규 입안기준에 따른 정비(상위법령 인용 오류 정비, 문장 표현 정비, 띄어쓰기 정비, 문장 부호 추가 등)
- 제3조제6호: 타 시·도의 사례를 참고하여 전통시장 등을 영업장소로 추가하도록 신설 검토 권고
- 제3조의2: 타 시·도의 사례를 참고하여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에 대한 지원 규정 신설 검토 권고
- 제3조의3: 심층분석을 통해 타 시·도의 사례를 참고하여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에 대한 지원 규정 신설 검토 권고
- 제6조: 다른 법률 등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당연히 적용되는 것으로 준용 규정의 실익이 없음
- 제7조, 제8조, 제9조: 타 시·도의 사례를 참고하여 영업자의 준수사항 및 영업신고 표시, 위반행위에 대한 조치사항에 대한 규정 신설 검토 권고

○ 개정안

현 행	개정안	비고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 2. 생략 3. "제과점영업"이란 영 제21조제8호나목에 해당하는 영업을 말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 2. 현행과 같음 3. "제과점영업"이란 영 제21조제8호바목에 해당하는 영업을 말한다.	-제과점영업은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제8호바목에서 규정하고 있음. 인용 법령 조항 인용오류 정비 권고
제3조(영업장소) 음식판매자동차를 이용한 휴게음식점영업 또는 제과점영업을 할 수 있는 전북특별자치도 내	제3조(영업장소) 음식판매자동차를 이용한 휴게음식점영업 또는 제과점영업을 할 수 있는 전북특별자치도 내	-문장 표현 정비 권고 -띄어쓰기 정비 권

현 행	개정안	비고
영업장소는 다음 각 호를 따른다. 1. 「문화예술진흥법」제2조제1항제3호에 따른 시설 2.「도로법」제2조제1호에 따른 도로,「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2조제6호 및 영 제2조제2항제1호에 따른 보행자전용도로 3. 「자연공원법」제2조제1호에 따른 공원 4. 생략 5.「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제5조제2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공공용재산 및 기업용재산 <신설>	영업장소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문화예술진흥법」 제2조제1항제3호에 따른 시설 2.「도로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도로,「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2항제1호에 따른 보행자전용도로 3.「자연공원법」 제2조제3호에 따른 도립공원, 같은 조 제4호에 따른 군립공원, 같은 조 제4호의2에 따른 시립공원 4. 현행과 같음 5.「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5조제2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공공용재산 및 기업용재산 6.「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조제1호 및 제4호에 따른 전통시장 및 상권활성화구역	고 -제2호: 이 조례 제2조에서「식품위생법 시행령」을 "영"으로 약칭하고 있음. 제3호제2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영"은「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말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 시행령"으로 사용하도록 정비 권고 -제3호:「자연공원법」 제2조제1호에서는 국립공원, 도립공원, 군립공원 및 지질공원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이 중에서 전북특별자치도의 권한 범위에 있는 "도립공원" 등으로 한정하도록 정비 권고 -타 시·도의 사례를 참고하여 전통시장 등을 영업장소로 추가하도록 신설 검토 권고
<신설>	제3조의2(음식판매자동차 영업에 대한 지원 등) 도지사는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지원할 수 있다. 1.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장소 확대 등 제도적 기반구축 2. 음식판매자동차 영업 관련 창업 희망자, 종사자에 대한 교육지원 3. 음식판매자동차 영업과 관련한 다음 각 목에 대한 창업지원 가.「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시행령」 제7조에 따른 취업애로 청년 나. 소득인정액이「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차상위	-타 시·도의 사례를 참고하여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에 대한 지원 규정 신설 검토 권고

현 행	개정안	비고
	계층 이하인 사람 다.「사회적기업 육성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사회적기업 라.「협동조합 기본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사회적협동조합 4. 그 밖에 음식판매자동차 영업 활성화를 위하여 도지사가 인정하여 규칙으로 정하는 사항	
<신설>	제3조의3(지역축제 등 참여지원) 도 및 도 내 시·군에서 주최·주관·후원하는 축제 및 행사에 음식판매자동차가 참여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이 경우 도 내 영업신고 된 음식판매자동차를 우선적으로 모집할 수 있다.	-심층분석을 통해 타 시·도의 사례를 참고하여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에 대한 지원 규정 신설 검토 권고
제4조(첨부서류) 제3조 각 호의 시설 또는 장소에서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을 하려는 경우 제출하여야 하는 첨부 서류는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로 한다. 1. 이하 생략	제4조(첨부서류) 제3조 각 호의 시설 또는 장소에서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을 하려는 경우 제출하여야 하는 첨부 서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이하 현행과 같음	-문장 표현 정비 권고
제5조(시·군 조례와의 관계) 시·군의 조례로 영업장소 및 첨부서류를 정한 경우에는 제3조 및 제4조에도 불구하고 해당 시군의 조례를 따른다.	제5조(시·군 조례와의 관계) 시·군의 조례로 영업장소 및 첨부서류를 정한 경우에는 제3조 및 제4조에도 불구하고 해당 시·군의 조례를 따른다.	-문장 부호 추가하도록 정비 권고
제6조(준용)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식품위생법」등 관련 법규를 따른다.	<삭제>	-상위법령인 「식품위생법」은 준용의 대상이 아니며, 다른 법률 등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당연히 적용되는 것으로 준용 규정의 실익이 없음
<신설>	제7조(영업자의 준수사항) ①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자(이하 "영업자"라 한다)는「식품위생법」에 따른 위생안전 등에 필요한 조건을 준수하고 장소사용계약에 관한 의무를 이행해야 한다.	-타 시·도의 사례를 참고하여 영업 중 발생할 수 있는 위생 문제나 안전사고를 사전에 방지하고, 불공정한 영업

현 행	개정안	비고
	② 영업자는 지정된 영업기간이 만료되는 즉시 영업을 중단하고 영업기간 연장을 위한 재계약 등의 조치를 취해야 한다.	행위를 예방할 수 있어 이를 통해 영업자의 책임의식이 강화될 수 있도록 조항 신설 권고
<신설>	제8조(영업신고표시) 영업자는 본인, 영업장소, 영업신고번호, 영업소 명칭 등이 작성된 영업신고 표시사항을 이용객이 잘 볼 수 있는 장소에 부착해야 한다.	-타 시·도의 사례를 참고하여 전북특별자치도 조례에 소비자의 신뢰를 확보하고 영업의 투명성을 높일 수 있도록 영업 신고 표시 조항을 신설 권고
<신설>	제9조(위반행위에 대한 조치) 전북특별자치도지사는 영업자가 제4조의 준수사항을 위반한 때에는 관련 법령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타 시·도의 사례를 참고하여 영업행위 위반에 대한 조치를 명시하여 영업자의 법규 준수를 유도하고 위반 시 제재를 명확히 하는 조항을 신설 권고

연 번	조례명	분 류	위임근거	시행일	비 고
15	**전북특별자치도 순환골재 등 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	위임조례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	2017. 3. 10., 제정 (일부개정 2회) [시행 2024. 1. 18.] [전북특별자치도조례 제5399호, 2023. 12. 8., 일부개정]	□ 개정 권고 □ 통합 권고 □ 폐지 권고 □ 이행 권고 ■ 일반 정비 □ 현행 유지 □ 기타( )

사전 검토

○ **기본자료 분석**

- (1-1) 본 조례는 「건설폐기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에 따라 제정된 위임조례임
- (1-5) 조례 제3조는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제1항제11호의 위임을 받아 규정된 내용임

○ **기타의견**

- (8-1) 법령에 따른 순환골재 의무사용건설공사를 규정하여 조례를 유지해야 함

입법체계 분석

○ **조례 제정 목적**

-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건설폐기물의 친환경적 처리 및 자원의 순환성 강화를 위하여 건설공사에 순환골재 등의 사용을 촉진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함

○ **자치법규 입안기준 부합성**

- 자치법규 입안기준에 부합하도록 약칭 용어 정비 필요

○ **위임 적합성 평가**

- 위임 범위에서 적절하게 규정하고 있음

평가지표에 따른 평가

○ **분석지표별 평가**

평가항목	평가항목별 검토 내용
1. 입법 근거 및 적법성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를 근거로 하여 위임 범위에서 적절하게 제정되었음
2. 조례의 실효성	조례 제5조의 순환골재 의무사용 건설공사 규정을 통해 조례의 실효성을 확보하고 있음
3. 조례 내용의 적정성	조례에서 규정하고 있는 순환골재 활용이 적절하게 이루어지고 있음
4. 조례의 공평성	장애, 성별, 나이 등에 관한 사회적 편견, 고정관념이 반영된 표현 및 차별 규정 없음
5. 주민 수용성	조례의 체계 및 용어가 주민이 알기 쉽게 되어 있음
6. 전북자치도 현실부합성	전북특별자치도의 순환골재 재활용을 장려하기 위하여 제정된 본 조

	례는 행정수요를 반영하고 있어 전북특별자치도 현실에 부합함
7. 위원회 운영의 적정성	위원회 운영 관련 규정이 없음
※ 기타 의견	없음

○ 타 시·도 유사 조례와의 비교

전북특별자치도 순환골재 등 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	경기도 순환골재 등의 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	충청북도 순환골재 등의 활용 촉진 조례	부산광역시 순환골재 등의 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제3조(적용대상)	제3조(도지사의 책무)	제3조(도지사의 의무)	제3조(책무)
제4조 삭제	제4조(적용범위)	제4조(적용범위)	제4조(순환골재등 활용 계획 수립)
제5조(의무사용건설공사의 범위)	**제5조(재활용 시행계획 수립)**	제5조(의무사용건설공사 범위)	제5조(순환골재등의 의무사용 등)
제6조(순환골재 등의 재활용 용도)	제6조(의무사용건설공사 범위)	제6조(순환골재 등의 용도)	**제6조(사용계획 및 실적의 제출)**
제7조(의무사용량)	제7조(순환골재 등의 용도)	제7조(의무사용량)	**제7조(순환골재등 활용 교육)**
제8조(품질관리)	제8조(의무사용량)	제8조(품질기준 등)	
제9조(순환골재 등의 품질기준)	제9조(품질기준 등)	**제9조(실적제출 등)**	
	제10조(품질관리)	**제10조(포상)**	
	제11조(실적제출 등)	제11조(시행규칙)	
	제12조(포상)		
	제13조(시행규칙)		

- 경기도와 충청북도 조례에서는 시행계획 수립, 재활용 실적 제출, 포상 실시 등의 조치를 규정하고 있으며, 부산광역시 조례에서는 사용계획 및 실적 제출, 활용 교육 등의 규정을 통해 조례의 실효성을 확보하고 있음

○ 규제사항 평가

- 특이사항 없음

목적달성도 및 부수효과 분석

○ 조례 목적달성도 평가

- 조례 내용에 따라 전북특별자치도 내에서 진행되는 도시개발사업에 순환골재를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다는 점에서 조례의 목적이 달성되고 있다고 평가됨

○ 부수효과

- 순환골재의 사용을 통해 건축폐기물을 최소화하고 지속가능한 발전을 통한 환경 보전에 기여

관계법령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
제4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등의 의무)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건설폐기물을 친환경적으로 적절하게 처리하고 재활용을 촉진할 수 있도록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생 략) ③ (생 략)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제1항
제5조(순환골재등 의무사용 건설공사의 범위) ①법 제2조제1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구조·규모·용도에 해당하는 건설공사"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설공사를 말한다. 1.「농어촌도로 정비법」 제2조에 따른 농어촌도로(이하 이 조에서 "농어촌도로"라 한다),「도로법」 제2조제1호 또는 제108조에 따른 도로 및「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2항제1호에 따른 도로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사 가. 공사구간의 폭이 2.75미터 이상이고 길이가 1킬로미터(농어촌도로의 경우 200미터) 이상 나. 포장면적이 9천제곱미터(농어촌도로의 경우 2천제곱미터) 이상 2. 삭제 3.「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9호에 따른 산업단지개발사업중 면적이 15만제곱미터 이상인 용지조성사업 4.「하수도법」 제2조제6호에 따른 하수관로의 설치공사, 같은 법 제2조제9호에 따른 공공하수처리시설의 설치공사, 같은 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분뇨처리시설의 설치공사

조례 개정방안

○ 조례 개정 방향

- 제2조, 제3조, 제6조, 제7조: 법제처 자치법규 입안기준에 따른 정비(용어정의, 약칭표현 정비, 당연규정 삭제 등)
- 제5조: 구체적인 상위법령 조문 명시. 과태료 부과 또는 행정처분의 명시는 조례의 규정에 근거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므로 삭제 권고
- 제12조: 포상에 관해 선언적인 의미만을 규정하면, 그에 따른 구체적인 사항은 당연히「전북특별자치도 포상 조례」를 적용 받으므로 규정의 실익이 없음(법제처, 2023년 우수조례 및 자치법규 입법컨설팅 사례집, 118면)
- 제13조: 다른 법률 등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당연히 적용되는 것으로 규정의 실익이 없으므로 삭제 권고
- 제14조: 시행규칙은 개별 조례에서 위임이 없더라도 조례의 집행에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규칙으로 규정할 수 있으므로 삭제 권고

○ 개정안

현 행	개정안	비고
제2조(정의) 생략 1. "순환골재 등"이란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7호·제8호에 따른 순환골재 및 순환골재 재활용제품을	제2조(정의) 현행과 같음 1. "순환골재등"이란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7호 및 제8호에 따른 순환골재 및 순환골재 재활	-상위법령의 용어정의 규정을 그대로 규정할 경우에는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

현 행	개정안	비고
말한다. 2. "품질인증"이란 법 제36조에 따른 순환골재의 품질인증을 말한다. 3. "발주자"란 건설공사의 전부를 최초로 위탁하는 자(자기가 그 건설공사를 직접 하는 자를 포함한다)를 말한다. 4. 생략	용제품을 말한다. 2. "품질인증"이란 법 제36조에 따른다. 3. "발주자"란 법 제2조제10호에 따른다. 4. 현행과 같음	「○○법」 제○조에 따른다"고 표현함(법제처 2022 자치법규 입안 길라잡이 95쪽, 이하 같음) -정의에서 사용하는 '등'은 한 단어로 판단하여 붙여씀(법제처 2023 우수조례 및 자치법규 입법컨설팅 사례집 61쪽)
제3조(적용대상) ① 생략 ② 도지사는 시·군에서 발주하는 도비보조사업 외의 건설공사와 시·군 산하기관에서 발주하는 건설공사에 대하여는 순환골재 등의 사용을 권장할 수 있다. ③ 이하 생략	제3조(적용범위) ① 현행과 같음 ② 전북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시·군에서 발주하는 도비보조사업 외의 건설공사와 시·군 산하기관에서 발주하는 건설공사에 대하여는 순환골재 등의 사용을 권장할 수 있다. ③ 이하 현행과 같음	-적용범위에 관하여 여러 가지 표현을 쓰고 있으나, 표현의 통일을 기하기 위해 "적용범위"를 쓰기로 함(법제처 2022 자치법규 입안 길라잡이 103쪽) -도지사 약칭 후 사용하도록 약칭 용어 정비 권고
제5조(의무사용건설공사의 범위) ① 순환골재 등을 의무적으로 사용하여야 하는 건설공사는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이하 "영"이라 한다) 제5조에 따른다. ② 발주자는 제1항에 따른 의무사용 건설공사 외의 건설공사에도 순환골재 등의 사용이 원활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순환골재 등을 설계에 반영하여 활용할 수 있다. ③ 제3조에 의한 발주자는 건설업자에게 순환골재 등 의무사용과 관련한 입찰공고, 계약서 등에 법 제66조제1항에 따른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와 그 밖의 행정처분 등을 명시할 수 있다.	제5조(의무사용건설공사의 범위) ① 순환골재 등을 의무적으로 사용하여야 하는 건설공사는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이하 "영"이라 한다) 제5조제1항에 따른다. ② 발주자는 제1항에 따른 의무사용 건설공사 외의 건설공사에도 법 제36조에 따라 품질인증을 받은 순환골재의 경우 효율성을 판단하여 순환골재 등을 설계에 반영하여 활용할 수 있다. <삭제>	-제1항: 구체적인 상위법령 조문 명시하도록 정비 권고 -제2항: 추상적이고 선언적인 규정으로 해석되는 바, 구체적인 조문을 명시하도록 정비 권고 -제3항: 법 제66조제1항은 당연히 적용되는 것이며, 과태료 부과 또는 행정처분의 명시는 조례의 규정에 근거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므로 삭제 권고
제6조(순환골재 등의 재활용 용도) 의무사용 건설공사에 사용되는 순환골	제6조(순환골재 등의 재활용용도) 의무사용 건설공사에 사용되는 순환골	-인용하고 있는 영 제4조에서 사용하는

현 행	개정안	비고
재 등의 재활용 용도는 영 제4조에 따른다.	재 등의 재활용용도는 영 제4조에 따른다.	용어와 같게 사용하도록 띄어쓰기 정비 권고
제7조(의무사용량) 의무사용건설공사의 순환골재 등 의무사용량은 법 제38조제3항의 「순환골재 등 의무사용건설공사의 순환골재·순환골재 재활용제품 사용용도 및 의무사용량에 관한 고시」기준 이상으로 한다.	제7조(의무사용량) 의무사용건설공사의 순환골재 등 의무사용량은 법 제38조제3항에 따른 「순환골재 등 의무사용건설공사의 순환골재·순환골재 재활용제품 사용용도 및 의무사용량에 관한 고시」에서 정한 기준 이상으로 한다.	-인용 관련 조사를 명확하게 규정하도록 정비 권고
제12조(포상) ① 생략 ② 포상에 필요한 절차 등은 「전북특별자치도 포상 조례」에 따른다.	제12조(포상) ① 현행과 같음 ② <삭제>	-포상에 관해 선언적인 의미만을 규정하면, 그에 따른 구체적인 사항은 당연히 「전북특별자치도 포상 조례」를 적용 받으므로 규정의 실익이 없음(법제처, 2023년 우수조례 및 자치법규 입법컨설팅 사례집, 118면)
제13조(준용) 이 조례에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등 관계 법령을 준용한다.	<삭제>	-상위법인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은 준용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법률 등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당연히 적용되는 것으로 규정의 실익이 없으므로 삭제 권고
제14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삭제>	-시행규칙은 개별 조례에서 위임이 없더라도 조례의 집행에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규칙으로 규정할 수 있으므로 삭제 권고

연 번	조례명	분 류	위임근거	시행일	비 고
16	**전북특별자치도 녹색제품 구매 촉진 조례**	위임조례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제11조	2008. 12. 26., 제정 (일부개정 4회) [시행 2024. 1. 18.] [전북특별자치도조례 제5399호, 2023. 12. 8., 일부개정]	■ 개정 권고 □ 통합 권고 □ 폐지 권고 □ 이행 권고 ■ 일반 정비 □ 현행 유지 □ 기타( )

사전 검토

○ 기본자료 분석

- (1-1) 본 조례는「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제11조에 따라 제정된 위임조례임
- (2-5) 조례 내용에 따라 2024년(2023년 실적) 합동평가 녹색제품 구매실적 최종 결과 알림을 작성함

○ 기타의견

- (8-1) 법령에 따른 녹색제품 구매 촉진을 규정하여 조례의 유지가 필요함

입법체계 분석

○ 조례 제정 목적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제11조에 따라 전북특별자치도가 녹색제품의 구매를 촉진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함

○ 자치법규 입안기준 부합성

- 자치법규 입안기준에 부합하도록 상위법령 폐지 등 변경 사항 반영 및 띄어쓰기 등 정비 필요

○ 위임 적합성 평가

- 위임 범위에서 적절하게 규정하고 있음

평가지표에 따른 평가

○ 분석지표별 평가

평가항목	평가항목별 검토 내용
1. 입법 근거 및 적법성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제11조를 근거로 하여 위임 범위에서 적절하게 제정되었음
2. 조례의 실효성	조례 제4조에 따른 적용대상 공공기관을 통해 조례의 실효성을 확보하고 있음
3. 조례 내용의 적정성	조례에서 규정하고 있는 녹색제품 구매가 적절하게 이루어지고 있음
4. 조례의 공평성	장애, 성별, 나이 등에 관한 사회적 편견, 고정관념이 반영된 표현 및 차별 규정 없음
5. 주민 수용성	조례의 체계 및 용어가 주민이 알기 쉽게 되어 있음
6. 전북자치도 현실부합성	전북특별자치도의 녹색제품 구매를 촉진하기 위하여 제정된 본 조례

	는 행정수요를 반영하고 있어 전북자치도 현실에 부합함
7. 위원회 운영의 적정성	위원회 운영 관련 규정이 없음
※ 기타 의견	없음

○ 타 시·도 유사 조례와의 비교

전북특별자치도 녹색제품 구매 촉진 조례	제주특별자치도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조례	서울특별시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조례	경기도 녹색제품 구매 촉진 조례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제2조(용어의 정의)	제2조(용어의 정의)	제2조(다른 법규와의 관계)	제2조(정의)
제3조(적용범위)	제3조(다른 법령 또는 조례와의 관계)	제3조(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제4조(적용대상 공공기관)	제4조(적용대상 공공기관)	제4조(녹색제품 구매·생산 촉진시책의 수립·시행)	제4조(적용대상 공공기관)
제5조(녹색제품 구매담당관 지정)	제5조(녹색제품 구매·생산 촉진 시책의 수립)	제5조(녹색제품 구매이행계획의 수립·시행)	제5조(녹색제품 구매촉진 시책의 수립)
제6조(녹색제품 구매·생산촉진 시책의 수립)	제6조(녹색제품 구매담당관 지정)	제6조(녹색제품 구매실적의 관리)	제6조(녹색제품 구매이행계획의 수립)
제7조(녹색제품 구매이행계획의 수립)	제7조(녹색제품 구매이행계획의 수립)	제7조(녹색제품 구매의무 등)	제7조(녹색제품의 구매실적)
제8조(녹색제품의 구매실적)	제8조(녹색제품의 구매실적 관리)	제8조(판단기준의 설정·관리)	제8조(녹색제품 구매의무)
제9조(녹색제품 구매의무)	제9조(녹색제품 구매예외)	제9조(구매담당자 등에 대한 교육)	제9조(녹색제품 구매담당관 지정)
제10조(녹색제품 판단기준)	제10조(판단기준의 설정·관리)	**제10조(관내기업에 대한 지원)**	제10조(판단기준의 설정·관리)
제11조(교육훈련)	제11조(교육훈련)	제11조(산학협력사업의 개발)	제11조(교육훈련)
제12조(녹색제품 생산·유통·판매지원)	**제12조(도내기업에 대한 지원)**	제12조(녹색제품에 관한 정보제공)	제12조(자금 및 융자지원 확대)
제13조(녹색제품 정보제공)	제13조(녹색제품 정보제공)	제13조(녹색제품 구매문화의 증진)	제13조(녹색제품 개발·생산·유통·판매 지원 등)
제14조(구매문화 증진사업)	제14조(녹색제품 구매문화 증진사업)	**제14조(녹색구매지원센터의 설치·운영)**	제14조(녹색제품 정보제공 등)
제15조(평가)	**제15조(녹색구매지원센터의 설치·운영)**	제15조(녹색제품 구매실적의 평가 등)	**제15조(녹색제품 구매문화 증진사업)**
제16조(사무분장)	제16조(평가)	제16조(포상)	**제16조(녹색구매지원센터의 설치·운영 등)**
제17조(시행규칙)	제17조(포상)		제17조(기관 평가)
	제18조(시행규칙)		제18조(포상)
			제19조(사무분장)
			제20조(시행규칙)

- 제주특별자치도와 서울특별시, 경기도 조례에서는 지역 내에 소재하는 녹색제품 생산기업에 대

한 지원을 실시하고 녹색제품 구매지원센터를 설치하여 생산자와 소비자를 모두 지원할 수 있도록 방안을 마련하고 있으나, 이는「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제17조의3에 근거하여 추진할 수 있음. 이외 특별한 시사점 없음

○ 규제사항 평가

- 특이사항 없음

목적달성도 및 부수효과 분석

○ 조례 목적달성도 평가

- 2023년 전북특별자치도의 녹색제품 구매 목표율은 5.3%였으나, 실 구매율은 5.63%로, 목표 구매율을 상회하여 조례의 목적이 충분히 달성됨

○ 부수효과

- 녹색제품 구매를 통해 친환경산업을 발전시키고 자원 재활용률을 증진할 수 있음

관계법령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제11조제1항
제11조(지방자치단체의 녹색제품 구매촉진 등) ①특별시·광역시·도·특별자치도(이하 "시·도"라 한다) 또는 시·군·구는 녹색제품의 구매를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다음 각호의 내용을 조례로 정하여 시행할 수 있다. 1. 제6조의 규정에 의한 녹색제품 의무구매를 이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2. 녹색제품 대상품목외의 품목에 대한 녹색제품 판단기준의 설정·운영 3. 그 밖에 녹색제품의 구매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생 략)

조례 개정방안

○ 조례 개정 방향

- 조례에서 전체 규정이 30조 미만인 경우에는 장(章)으로 나누지 않음(법제처, 2022 자치법규 길라잡이, 344면)
- 제2조, 제4조, 제5조, 제6조, 제7조, 제8조, 제9조, 제14조, 제15조, 제16조: 법제처 자치법규 입안기준에 따른 정비(문장부호 정비, 띄어쓰기 정비, 중복표현 정비 등)
- 제10조:「수도권 대기환경 개선에 관한 특별법」은 2019년 4월 2일 제정된「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폐지되었고,「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역시 2021년 9월 제정된「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에 의해 폐지되었으며 해당 법률 제66조 제4항에서는 "녹색제품"을 규정하고 있으므로 반영, 그리고「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에는 녹색제품이나 탄소중립제품에 관한 사항은 없으므로 인용 삭제 권고
- 제17조: 시행규칙은 개별 조례에서 위임이 없더라도 조례의 집행에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규칙으로 규정할 수 있으므로 삭제 권고

○ 개정안

현 행	개정안	비고

현 행	개정안	비고
제1장 총 칙	<삭제>	-장(章) 삭제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관내기업"이란 본사 또는 생산시설이 전북특별자치도내에 소재한 기업을 말한다. 2. 생략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관내기업"이란 본사 또는 생산시설이 전북특별자치도 내에 소재한 기업을 말한다. 2. 현행과 같음	-띄어쓰기 정비 권고
제4조(적용대상 공공기관) 이 조례의 적용을 받는 공공기관(이하"공공기관"이라 한다.)은 법 제2조제2호에 따른 공공기관을 말한다.	제4조(적용대상 공공기관) 이 조례의 적용을 받는 공공기관(이하 "공공기관"이라 한다)은 법 제2조제2호에 따른 공공기관을 말한다.	-약칭문 띄어쓰기 및 문장부호 사용 정비 권고
제5조(녹색제품 구매담당관 지정) ① 생략 ② 제1항에 따라 공공기관의 장이 지정할 수 있는 녹색제품 구매담당관은 전북특별자치도 물품관리 조례 시행규칙 제2조제1항제1호와 제2호에 따른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사람으로 한다. 1. 이하 생략	제5조(녹색제품 구매담당관 지정) ① 현행과 같음 ② 제1항에 따라 공공기관의 장이 지정할 수 있는 녹색제품 구매담당관은 「전북특별자치도 물품관리 조례 시행규칙」 제2조제1항제1호와 제2호에 따른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사람으로 한다. 1. 이하 현행과 같음	-인용하고 있는 시행규칙에 문장부호를 사용하도록 정비 권고
제2장 녹색제품 의무구매제의 이행	<삭제>	-장(章) 삭제
제6조(녹색제품 구매·생산촉진 시책의 수립) ① ~ ② 생략 ③ 도지사가 녹색제품 구매·생산촉진 시책을 수립하거나 변경한 경우에는 이를 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하고 지원사항을 건의 할 수 있다.	제6조(녹색제품 구매·생산촉진 시책의 수립) ① ~ ② 현행과 같음 ③ 도지사가 녹색제품 구매·생산촉진 시책을 수립하거나 변경한 경우에는 이를 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하고 지원사항을 건의할 수 있다.	-띄어쓰기 정비 권고
제7조(녹색제품 구매이행계획의 수립) ① ~ ② 생략 ③ 도지사는 제1항의 녹색제품 구매이행계획과 법 제8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시장·군수가 제출한 녹색제품 구매이행계획을 종합하여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생략	제7조(녹색제품 구매이행계획의 수립) ① ~ ② 현행과 같음 ③ 도지사는 제1항의 녹색제품 구매이행계획과 법 제8조제2항에 따라 시장·군수가 제출한 녹색제품 구매이행계획을 종합하여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현행과 같음	-조항 인용표기 방식에 맞게 정비 권고
제8조(녹색제품의 구매실적) ① 생략 ② 녹색제품의 구매실적에 대한 공표방법은 제7조제1항의 규정을 준용	제8조(녹색제품의 구매실적) ① 현행과 같음 ② 녹색제품의 구매실적에 대한 공표방법은 제7조제1항을 준용한다.	-조항 인용표기 방식에 맞게 정비 권고

현 행	개정안	비고
한다. ③ 이하 생략	③ 이하 현행과 같음	
제9조(녹색제품 구매의무) ① 법 제6조에 따라 공공기관의 장은 상품을 구매하고자 하는 경우 녹색제품을 구매 하여야 한다. ② 생략	제9조(녹색제품 구매의무) ① 법 제6조에 따라 공공기관의 장은 상품을 구매하고자 하는 경우 녹색제품을 구매하여야 한다. ② 현행과 같음	-띄어쓰기 정비 권고
제10조(녹색제품 판단기준) 법 제11조 제1항제2호에 따른 녹색제품 대상 품목 외의 품목에 대한 녹색제품 판단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수도권 대기환경 개선에 관한 특별법」에서 정한 저공해자동차 2. 생략 3.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및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에 따른 저탄소제품, 탄소중립제품 4. 이하 생략	제10조(녹색제품 판단기준) 법 제11조 제1항제2호에 따른 녹색제품 대상 품목 외의 품목에 대한 녹색제품 판단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에서 정한 저공해자동차 2. 현행과 같음 3.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에 따른 녹색제품 4. 이하 현행과 같음	-폐지법에 대한 인용사항 삭제 권고
제3장 녹색제품 생산·유통·판매지원	<삭제>	-장(章) 삭제
제13조(녹색제품 정보제공) ① 생략 ② 도지사는 정보수집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전문기관 등에 예산의 범위 안에서 비용을 지불할 수 있다.	제13조(녹색제품 정보제공) ① 생략 ② 도지사는 정보수집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전문기관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비용을 지불할 수 있다.	-중복적인 표현 정비 권고
제14조(구매문화 증진사업) ① 도지사는 전북특별자치도내에 소재한 학교법인, 종교시설, 체육시설 및 산업계 등에게 녹색제품의 우선구매를 요청할 수 있다. ② 이하 생략	제14조(구매문화 증진사업) ① 도지사는 전북특별자치도 내에 소재한 학교법인, 종교시설, 체육시설 및 산업계 등에게 녹색제품의 우선구매를 요청할 수 있다. ② 이하 현행과 같음	-띄어쓰기 정비 권고
제4장 보 칙	<삭제>	-장(章) 삭제
제15조(평가) ① 도지사는 공공기관의 업무평가 항목에 녹색제품 구매실적 등을 반영하여 평가 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공공기관의 녹색제품 구매촉진 시책수립과 추진에 소요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보조할 수 있다.	제15조(평가) ① 도지사는 공공기관의 업무평가 항목에 녹색제품 구매실적 등을 반영하여 평가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공공기관의 녹색제품 구매촉진 시책수립과 추진에 소요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할 수 있다.	-띄어쓰기 정비 권고 -중복적인 표현 정비 권고
제16조(사무분장) 녹색제품의 구매촉	제16조(사무분장) 녹색제품의 구매촉	-띄어쓰기 정비 권

현 행	개정안	비고
진 업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한 부서간 사무분장은 별표와 같다.	진 업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한 부서 간 사무분장은 별표와 같다.	고
제1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삭제>	-시행규칙은 개별 조례에서 위임이 없더라도 조례의 집행에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규칙으로 규정할 수 있으므로 삭제 권고

연 번	조례명	분 류	위임근거	시행일	비 고
17	**전북특별자치도 도립공원 조례**	위임조례	「자연공원법」 제9조, 제37조, 제38조, 제80조, 「자연공원법 시행규칙」 제24조	2015. 10. 30., 제정 (전부개정 1회, 일부개정 15회) [시행 2024. 5. 31.] [전북특별자치도조례 제5508호, 2024. 5. 31., 일부개정]	■ 개정 권고 □ 통합 권고 □ 폐지 권고 □ 이행 권고 ■ 일반 정비 □ 현행 유지 □ 기타( )

사전 검토

○ 기본자료 분석

- (1-1) 본 조례는「자연공원법」제9조, 제37조, 제38조, 제80조,「자연공원법 시행규칙」제24조에 따라 제정된 위임조례임
- (2-5) 조례 제6조에 따라 도립공원의 효율적 운영관리에 360,000천원, 도립공원 정비 및 생태계 복원에 1,850,000천원을 집행함
- (3-1) 조례 제6조에 따라 예산 지원을 실시할 수 있음
- (3-3) 조례 제6조에 따라 2022년부터 2024년까지 아래와 같이 예산을 확보하고 집행함

(금액단위: 천원)

연도	사업명	필요예산	확보예산	집행액	집행내역
2022	도립공원의 효율적 운영관리	400,000	400,000	400,000	공원 환경정비 등
	도립공원 정비 및 생태계복원	1,850,000	1,850,000	1,850,000	탐방로 정비 등
2023	도립공원의 효율적 운영관리	400,000	400,000	400,000	공원 환경정비 등
	도립공원 정비 및 생태계복원	1,650,000	1,650,000	1,650,000	탐방로 정비 등
2024	도립공원의 효율적 운영관리	360,000	360,000	360,000	공원 환경정비 등
	도립공원 정비 및 생태계복원	1,850,000	1,850,000	1,850,000	탐방로 정비 등

- (4-1) 조례 제21조에 따라 해당자에게 시설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음
- (4-2) 위의 차별 사항은 공무수행 목적과 취약계층, 국가유공자 등에 대한 시설사용료 감면 적용으로 합리적인 차별임
- (7-1) 조례 제8조에 따라 전북특별자치도 도립공원위원회를 둠
- (7-3) 위원회 위원 중 45%가 여성으로 구성됨
- (7-4) 2022년과 2023년에 아래와 같이 위원회를 개최함

연도별	2022	2023
개최건수	1	1
개최일	2022.12.27.	2023.4.5.
소요예산	541,800원	560,000원

- (7-5) 공원계획 결정·변경 등의 심의를 위해 위원회의 유지가 필요함

○ 기타의견

- (8-1) 법령에 따른 도립공원위원회 지속 운영을 위해 조례를 유지해야 함

입법체계 분석

○ 조례 제정 목적

- 「자연공원법」 제9조·제37조·제38조 및 제80조에 따라 전북특별자치도 도립공원의 보호·관리와 공원위원회의 설치운영, 시설사용료 및 점용료의 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함

○ 자치법규 입안기준 부합성

- 자치법규 입안기준에 부합하도록 인용 법령 제명 오류 정비, 띄어쓰기 정비 등 필요

○ 위임 적합성 평가

- 위임 범위에서 적절하게 규정하고 있음

평가지표에 따른 평가

○ 분석지표별 평가

평가항목	평가항목별 검토 내용
1. 입법 근거 및 적법성	「자연공원법」과 「자연공원법 시행규칙」을 근거로 하여 위임 범위에서 적절하게 제정되었음
2. 조례의 실효성	조례 제7조의 도립공원의 권한 위임조항을 통해 조례의 실효성을 확보하고 있음
3. 조례 내용의 적정성	조례에서 규정하고 있는 재정지원이 적절하게 이루어지고 있음
4. 조례의 공평성	장애, 성별, 나이 등에 관한 사회적 편견, 고정관념이 반영된 표현 및 차별 규정은 없으며, 시설사용료의 감면은 공무수행 목적 및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 측면으로 합리적인 차별로 평가됨
5. 주민 수용성	조례의 체계 및 용어가 주민이 알기 쉽게 되어 있음
6. 전북자치도 현실부합성	법령의 위임사항을 규정하여 도립공원을 전북특별자치도의 상황에 맞게 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위임조례로 전북특별자치도 현실에 부합함
7. 위원회 운영의 적정성	위원회가 규정대로 설치되었고 활발히 운영되고 있어 위원회의 운영이 적절함
※ 기타 의견	없음

○ 타 시·도 유사 조례와의 비교

전북특별자치도 도립공원 조례	제주특별자치도립공원 관리 조례	경기도 도립공원 관리 조례	경상북도 도립공원 관리조례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제2조(적용범위)	제2조(정의)	제2조(적용범위)	제2조(적용범위)
제3조(정의)	제3조(공원의 명칭 및 구역)	제3조(정의)	제3조(정의)
제4조(공원의 명칭과 위치)	제4조(도립공원구역 중요 변경사항)	제4조(공원의 명칭)	제4조(공원의 명칭과 위치)
제5조(건축물의 형식 등)	제5조(승인을 받아야 하는 도립공원 축소 규모)	제5조(설치)	제5조(공원보호 등의 직무)
제6조(예산지원)	제6조(도립공원의 지정에 필요한 서류)	제6조(심의 사항)	제6조(관리사무소)
제7조(권한의 위임)	제7조(공원지정 등의	제6조의2(구성 및 운영	제7조(권한의 위임)

	고시)	등)	
제8조(설치)	제8조(도립공원의 폐지 등)	제6조의3(위원장 등의 직무)	제8조(설치)
제9조(기능)	제9조(위원회의 구성)	제7조(특별위원)	제9조(조직)
제10조(구성)	제10조(위원장의 직무)	제8조(위원·특별위원의 제척·기피·회피)	제10조(임기)
제11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등)	제11조(회의)	제8조의2(위원·특별위원의 지명철회 및 해촉)	제11조(위원장의 직무)
제12조(임기)	제12조(수당 등)	제9조(수당 등)	제12조(기능)
제13조(위원장의 직무)	제13조(운영세칙)	제10조(시설사용료)	제13조(회의)
제14조(회의)	**제14조(공원계획의 경미한 변경)**	제11조(시설사용료 등 면제)	제14조(분과위원회)
제15조(분과위원회)	**제15조(공원계획에 대한 타당성 검토기준)**	제12조(요금표의 게시)	제15조(간사등)
제16조(간사 등)	**제16조(공원계획의 고시)**	제13조(점용료)	제16조(실비변상)
제17조(운영세칙)	**제17조(공원계획변경시의 자연환경영향평가 대상)**	제14조(점용료 징수시기)	제17조(운영세칙)
제18조(입장료)	**제18조(자연환경에 미치는 영향평가)**	제15조(점용료의 감면 및 반환)	제18조(입장료)
제19조(시설사용료)	**제19조(공원별 보전·관리계획의 수립기준 등)**	제16조(점용허가 변경 등)	제19조(입장료 징수등)
제20조(광고사용 등)	**제20조(해안 및 섬지역의 범위)**	제17조(원상회복)	제20조(시설사용료)
제21조(시설사용료의 감면)	**제21조(공원사업의 시행기준)**	제18조(과태료)	제20조의2(입장료 및 시설사용료의 결정)
제22조(요금표의 게시)	**제22조(공원사업시행계획의 고시 등)**	제19조(세입조치)	제21조(입장료 등의 면제)
제23조(점용료의 징수)	**제23조(공원사업시행허가 생략사항)**	제20조(준용)	제22조(요금게시)
제24조(점용료의 징수시기)	**제24조(환매권)**	**제21조(관리사무소)**	제23조(점용료)
제25조(점용료의 감면)	**제25조(공원구역에서의 행위허가 신청)**	**제22조(안전장비 대여)**	제24조(점용료의 징수시기)
제26조(원상회복)	**제26조(공원구역에서의 행위신고)**	**제23조(야간탐방)**	제25조(점용료의 감면)
제27조(점용료의 반환)	**제27조(신고생략사항)**	제24조(자연환경해설사 채용·활용)	제26조(점용폐지신고)
제28조(준용)	**제28조(허가에 관한 관계 행정기관과의 협의 등)**	제25조(권한의 위임)	제27조(원상회복)
제29조(시행규칙)	**제29조(도립공원 점·사용자에 대한 원상회복 비용의 예치 등)**	제26조(시행규칙)	제28조(과태료)
	제30조(제거된 물건 등의 보관 및 처리)		제29조(입장료 등의 반환)
	제31조(금지행위)		제30조(시행규칙)
	제32조(공원구역에서 금지할 수 있는 영업의		

	제한 등)		
	제33조(공원대장의 서식)		
	제34조(입장료)		
	제35조(입장료 징수 등)		
	제36조(입장료의 면제 등)		
	제37조(입장료 징수대행)		
	제38조(입장료 징수대행수수료)		
	제39조(점용료 등의 징수)		
	제40조(점용료 등의 감면)		
	제41조(허가에 관한 협의 등)		
	제42조(상·하수도시설 설치 등에 대한 주민지원)		
	제43조(주민지원사업)		
	제44조(도립공원 보전·관리·이용활동에 대한 재정지원 등)		
	제45조(매수대상토지의 판정기준)		
	제46조(매수절차 등)		
	제47조(공원관리의 위탁)		
	제48조(규제의 재검토)		
	제49조(시행규칙)		

- 제주특별자치도 조례에서는 도립공원 관리를 위한 다양한 조항을 마련하여 공원에서의 금지행위, 주민지원사업 등도 함께 규정하고 있음
- 경기도 조례에서는 야간 개장과 안전용품 대여에 대한 규정을 두어 도립공원의 안전한 이용을 도모함

○ 규제사항 평가

- 특이사항 없음

목적달성도 및 부수효과 분석

○ 조례 목적달성도 평가

- 조례 내용에 따라 다양한 지원사업을 실시하고 있다는 점에서 조례의 목적이 달성되고 있다고 평가됨

○ 부수효과

- 도립공원의 보호 및 관리를 통하여 도립공원의 보전 및 지속가능한 이용을 가능하게 하며, 관련 홍보를 통한 관광자원 활성화와 도민의 도립공원의 안전한 이용을 도모함

관계법령

「자연공원법」 제9조제2항, 제37조제6항, 제38조제2항 및 제80조

제9조(공원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등) ① (생 략)

② 제1항에 따른 각 공원위원회의 구성·운영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국립공원위원회의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도립공원위원회 또는 광역시립공원위원회(이하 "도립공원위원회"라 한다) 및 군립공원위원회·시립공원위원회 또는 구립공원위원회(이하 "군립공원위원회"라 한다)의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이 경우 각 공원위원회 위원의 과반수는 공무원이 아닌 위원으로 위촉하여야 한다.

③ (생 략)

제37조(입장료 및 사용료의 징수) ① ~ ⑤ (생 략)

⑥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입장료 및 사용료의 징수에 필요한 사항은 국립공원의 경우 환경부령으로 정하고, 도립공원 및 군립공원의 경우 그 공원관리청이 소속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제38조(점용료 등의 징수) ① (생 략)

② 제1항에 따른 점용료 또는 사용료의 기준과 징수에 필요한 사항은 국립공원의 경우 환경부령으로 정하고, 도립공원 및 군립공원의 경우 그 공원관리청이 소속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③ (생 략)

제80조(권한의 위임·위탁) ① 이 법에 따른 환경부장관의 권한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소속 기관 또는 시·도지사에게 위임하거나 공단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시·도지사는 도립공원의 관리에 관한 공원관리청의 직무를 그 시·도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군수에게 위임하거나 공단에 위탁할 수 있다.

③ 군수는 군립공원의 관리에 관한 공원관리청의 직무를 그 군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단에 위탁할 수 있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위임 또는 위탁을 받아 공단, 시·도지사 또는 군수가 자연공원을 관리하는 경우에는 위임·위탁된 업무의 범위에서 이들을 그 자연공원의 공원관리청으로 본다.

「자연공원법 시행규칙」 제24조

제24조(공원시설사용료) ① 법 제37조제1항에 따른 국립공원의 공원시설사용료는 그 시설의 설치에 소요된 비용과 그 유지·관리비용을 고려하여 실비의 범위에서 환경부장관이 이를 정한다. 다만, 법 제80조제1항에 따라 국립공원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 또는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가 공원시설의 유지·관리에 관한 공원관리청의 권한을 위임받거나 위탁받은 경우에는 공단이 정하거나 당해 시·도지사가 규칙으로 정한다.

② 제1항에 따라 환경부장관, 공단, 시·도지사가 공원시설사용료를 정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해당기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20일(긴급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10일)간 그 내용을 게시하고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공원시설사용료를 정한 때에는 그 내용과 공원시설사용료 산정내역을 해당 기관의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하여야 한다.

④ 법 제37조제3항 후단에 따라 공원관리청의 사용료 징수허가를 받아야 하는 시설은 주차장·야영장 및 대피소로 한다.

⑤ (생 략)

⑥ (생 략)

조례 개정방안

○ 조례 개정 방향

- 제1조, 제3조, 제4조, 제5조, 제7조, 제12조, 제20조, 제21조, 제24조, 제28조: 법제처 자치법규 입안기준에 따른 정비(일본식 표현 정비, 중복표현 정비 등)
- 조례에서 전체 규정이 30조 미만인 경우에는 장(章)으로 나누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나(법제처, 2022 자치법규 길라잡이, 344면) 이 조례의 경우 「자연공원법」의 구성체계를 기반으로 하여 조례가 구성되어 있다는 점에서 장으로 구분하는 것이 보다 명료하므로 장을 정비하지 않는 것이 보다 바람직함
- 제2조: 당연히 상위법은 조례보다 먼저 적용을 받게 되므로 상위법의 내용을 규정하는 것은 실익이 없음
- 제9조: 회의 안건을 상정하는 주체 오류사항 수정
- 제11조: 위원의 회피와 관련하여 특별위원도 포함하도록 하고 사유발생 시 "회피하도록" 규정 정비 검토
- 제19조, 제21조: 도 조례에서 시·군 규칙으로 위임하는 것은 체계에 맞지 아니하므로 시장·군수가 정하는 바에 따라 감면할 수 있도록 규정 정비 권고
- 제20조의2에서 제20조의4: 심층분석을 통해 타 시·도의 사례를 참고하여 안전장비 대여, 야간탐방, 자연환경해설사 채용·활용에 관한 규정 신설 권고
- 제29조: 시행규칙은 개별 조례에서 위임이 없더라도 조례의 집행에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규칙으로 규정할 수 있으므로 삭제 권고

○ 개정안

현 행	개정안	비고
제1조(목적) 이 조례는「자연공원법」제9조·제37조·제38조 및 제80조에 따라 전북특별자치도 도립공원의 보호관리와 공원위원회의 설치운영, 시설사용료 및 점용료의 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자연공원법」 제9조·제37조·제38조 및 제80조에 따라 전북특별자치도 도립공원의 보호·관리와 공원위원회의 설치운영, 시설사용료 및 점용료의 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띄어쓰기 정비 권고 -"보호"와 "관리"는 병렬적 행위이므로 문장부호를 사용하여 표현하도록 정비 권고
제2조(적용범위) 전북특별자치도 도립공원(이하 "공원"이라 한다)의 보호·관리에 관하여 「자연공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또는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2조(적용범위) 전북특별자치도 도립공원(이하 "공원"이라 한다)의 보호·관리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상위법은 당연히 조례보다 먼저 적용을 받게 되므로 상위법의 내용을 규정하는 것은 실익이 없음
제3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시설사용료: 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시설물을 사용하는 자로부터 징수하는 요금을 말한다.	제3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시설사용료"란 「자연공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시설물을 사용하는 자로부터 징수하는 요금을 말한다.	-정의 문장에 맞게 정비(시설사용료: → 시설사용료란) -제2조 정비에 따라 삭제된 "「자연공원법」(이하 "법"이라

현 행	개정안	비고
2. 점용료: 법 제23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점용 및 사용자로부터 징수하는 요금을 말한다. 3. 경자동차: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별표 1의 자동차의 종류에 따른 경형자동차를 말한다. 4. 공원관리청: 전북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를 말한다. 다만, 제7조에 따라 권한을 위임한 범위에서 공원을 관리하는 시장·군수를 공원관리청으로 본다. 5. 집단시설지구: 공원의 보전·관리를 위한 공원시설을 집단화시키기 위하여 공원계획으로 집단시설지구로 지정한 지역을 말한다.	2. "점용료"란 법 제23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점용 및 사용자로부터 징수하는 요금을 말한다. 3. "경자동차"란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별표 1의 자동차의 종류에 따른 경형자동차를 말한다. 4. "공원관리청"이란 전북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를 말한다. 다만, 제7조에 따라 권한을 위임한 범위에서 공원을 관리하는 시장·군수를 공원관리청으로 본다. 5. "집단시설지구"란 공원의 보전·관리를 위한 공원시설을 집단화시키기 위하여 공원계획으로 집단시설지구로 지정한 지역을 말한다.	한다)"을 규정하도록 문장 정비 권고
제5조(건축물의 형식 등) 공원관리청이 집단시설지구내에서 건축허가를 할 경우에는 법 시행규칙 제14조제3호에 따른 공원시설의 설치권고기준에 관한 규정에 의하여 한국고유의 건축미를 살리는 방향으로 건축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제5조(건축물의 형식 등) 공원관리청이 집단시설지구 내에서 건축허가를 할 경우에는 「자연공원법 시행규칙」 제14조제3호에 따른 공원시설의 설치권고기준에 관한 규정에 의하여 한국고유의 건축미를 살리는 방향으로 건축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띄어쓰기 정비 권고 -약칭한바 없는「자연공원법 시행규칙」을 원 제명대로 규정하도록 정비 권고
제7조(권한의 위임) 도지사는 법 제80조제2항에 따라 도립공원에 관한 다음 각 호의 권한을 시장·군수에게 위임한다. 1. 공원시설의 유지관리와 공원사업의 시행 2. 「법 시행령」제45조제2항 각 호의 권한	제7조(권한의 위임) 도지사는 법 제80조제2항에 따라 도립공원에 관한 다음 각 호의 권한을 시장·군수에게 위임한다. 1. 공원시설의 유지관리와 공원사업의 시행 2. 「자연공원법 시행령」 제45조제2항 각 호의 권한	-띄어쓰기 정비 권고 -약칭한바 없는「자연공원법 시행령」을 원 제명대로 규정하도록 정비 권고
제9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 3. 생략 4. 그 밖에 도지사가 위원회의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9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 3. 현행과 같음 4.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회의 안건을 상정하는 사람은 도지사가 아니고 위원장이므로 문장 표현 정비 권고
제11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등) ①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대상 안건의 심사 업무에서 제척된다. 1. ~ 2. 생략	제11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등) ① 위원회의 위원 및 특별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대상 안건의 심사 업무에서 제척된다. 1. ~ 2. 현행과 같음	-특별위원도 제적·기피·회피의 대상이 되어야 하므로 특별위원을 포함하여 규정하도록 정비 권고

현 행	개정안	비고
3. 그 밖에 자문 안건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회의를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기피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해당 위원의 기피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기피신청을 받은 위원은 그 기피여부에 대한 결정에 참여할 수 없다. 위원은 제1항 또는 제2항의 사유에 해당하면 스스로 그 안건의 심사를 회피할 수 있다.	3. 그 밖에 자문 안건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당사자는 위원 및 특별위원에게 공정한 회의를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기피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해당 위원 및 특별위원의 기피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기피신청을 받은 위원 및 특별위원은 그 기피여부에 대한 결정에 참여할 수 없다. ② 위원 및 특별위원은 제1항 또는 제2항의 사유에 해당하면 스스로 그 안건의 심사를 회피하여야 한다.	-제3호를 제2항으로 규정하도록 체계 정비 권고(하나의 조·항·호는 하나의 문장으로 구성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단서 또는 조건을 부여하는 경우 예외로 2문장으로 구성하는데 제3호의 경우 세 개의 문장으로 구성되어 있으므로 정비 권고) -회피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회피하도록" 당연규정으로 정비 권고
제12조(임기) 위원회 위원 및 특별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당해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고,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12조(임기) 위원회 위원 및 특별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고,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당해"를 "해당"으로 정비 권고
제19조(시설사용료) ① 시설사용료는 별표 2의 기준 범위에서 징수하되, 유지관리비 및 지역적 여건을 고려하여 시장·군수가 규칙으로 정한다. 다만, 주차장 시설사용료는 징수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이하 생략	제19조(시설사용료) ① 시설사용료는 별표 2의 기준 범위에서 징수하되, 유지관리비 및 지역적 여건을 고려하여 시장·군수가 정하는 바에 따라 감면할 수 있다. 다만, 주차장 시설사용료는 징수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이하 현행과 같음	-도 조례에서 시·군 규칙으로 위임하는 것은 체계에 맞지 아니하므로 시장·군수가 정하는 바에 따라 감면할 수 있도록 규정 정비 권고
제20조(광고사용 등) ① 제19조에 따른 주차권·시설이용권에 관하여 타 법령이나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광고사용을 하게 할 수 있다. 다만, 과대광고·거짓광고·미풍양속을 해치는 저속한 광고는 게재할 수 없다. ② 생략 ③ 광고사용은 별지 제1호서식, 별지 제2호서식 및 별지 제3호서식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야 한다.	제20조(광고사용 등) ① 제19조에 따른 주차권·시설이용권에 관하여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광고사용을 하게 할 수 있다. 다만, 과대광고·거짓광고·미풍양속을 해치는 저속한 광고는 게재할 수 없다. ② 현행과 같음 ③ 광고사용은 별지 제1호서식, 별지 제2호서식 및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다.	-제1항: "타"를 "다른"으로 정비 권고 -제3항: 문장 표현 정비 권고

현 행	개정안	비고
<신설>	제20조의2(안전장비 대여) ① 도지사는 탐방객에게 안전장비를 무료로 대여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안전장비의 종류 및 대여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도지사가 따로 정한다.	-심층분석을 통해 타 시·도의 사례를 참고하여 안전장비 대여에 관한 규정 신설 권고
<신설>	제20조의3(야간탐방) ① 도지사는 공원의 보호 및 탐방객의 안전을 위하여 일몰 이후 야간탐방에 대해 법 제28조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야간탐방이 제한되지 않는 탐방로, 전망대 등에 야간 경관 향상을 위한 조명을 설치할 수 있다. ③ 도지사는 공원 이용 활성화를 위해 야간탐방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다.	-심층분석을 통해 타 시·도의 사례를 참고하여 야간탐방에 관한 규정 신설 권고
<신설>	제20조의4(자연환경해설사 채용·활용) 도지사는 탐방객의 자연환경보전에 관한 이해를 증진시키기 위하여 「자연환경보전법」 제59조에 따른 자연환경해설사를 채용·활용할 수 있다.	-심층분석을 통해 타 시·도의 사례를 참고하여 자연환경해설사 채용·활용에 관한 규정 신설 권고
제21조(시설사용료의 감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시설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 이 경우, 구체적인 감면대상과 범위는 시장·군수가 규칙으로 정한다. 1. ~ 8. 생략 9.「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2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10. ~ 15. 생략 16.「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등록 포로 및 같은 조 제3호에 따른 억류지 출신 포로가족 17. 생략	제21조(시설사용료의 감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시설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 이 경우, 구체적인 감면대상과 범위는 시장·군수가 별도로 정한다. 1. ~ 8. 현행과 같음 9.「5·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2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10. ~ 15. 현행과 같음 16.「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등록 포로 및 같은 조 제3호에 따른 억류지출신 포로가족 17. 현행과 같음	-각 호외의 본문: 도 조례에서 시·군 규칙으로 위임하는 것은 체계에 맞지 아니하므로 시장·군수가 별도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감면할 수 있도록 규정 정비 권고 -제9호: 인용 법령 제명 오기 정비 권고 -제16호: 인용 법령에서 사용하는 용어와 같게 사용하도록 띄어쓰기 정비 권고

현 행	개정안	비고
제23조(점용료의 징수) ① ~ ② 생략 ③ 제2항 단서규정에 의하여 점용료를 산정함에 있어 1월 미만 일때에는 일수로 계산한다.	제23조(점용료의 징수) ① ~ ② 현행과 같음 ③ 제2항 단서에 따라 점용료를 산정함에 있어 1월 미만 일 때에는 일수로 계산한다.	-문장 표현 정비 권고
제24조(점용료의 징수시기) 점용료의 징수 시기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의한다. 1. 생략 2. 점용기간이 1년 이상인 때에는 점용허가를 하는 해당연도분은 허가를 할 때에, 그 이후 연도분은 해당 연도 개시후 3월이 경과되기 전에 징수한다.	제24조(점용료의 징수시기) 점용료의 징수 시기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다. 1. 현행과 같음 2. 점용기간이 1년 이상인 때에는 점용허가를 하는 해당 연도분은 허가를 할 때에, 그 이후 연도분은 해당 연도 개시 후 3월이 경과되기 전에 징수한다.	-일본식 표현의 순화 권고 -띄어쓰기 정비 권고
제26조(원상회복) ① 공원의 점용자가 그 점용기간이 만료되었거나 점용을 폐지한 때에는 공원을 원상으로 회복하여야 한다. 다만, 원상회복이 불가능하거나 부적당하여 도지사의 승인을 얻을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② 도지사는 제1항의 원상회복을 하지 아니할 때에는 이를 대집행하고 그 비용을 점용자로부터 징수할 수 있다.	제26조(원상회복) ① 공원의 점용자가 그 점용기간이 만료되었거나 점용을 폐지한 때에는 공원을 원상으로 회복하여야 한다. 다만, 원상회복이 불가능하거나 부적당하여 도지사의 승인을 얻은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② 도지사는 제1항의 원상회복을 하지 아니할 때에는 이를 대집행하고 그 비용을 점용자로부터 징수하여야 한다.	-제1항: 오기 수정 권고 -제2항: 도지사가 원상회복 비용의 징수 여부에 대해서 재량을 갖는 것으로 규정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으므로 대집행비용을 징수하도록 규정 정비 권고
제28조(준용) 시설사용료와 점용료의 징수에 관하여 법 또는 이 조례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지방세징수의 예에 의한다.	제28조(준용) 시설사용료와 점용료의 징수에 관하여 법 또는 이 조례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지방세징수의 예에 따른다.	-일본식 표현의 순화 권고
제29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삭제>	-시행규칙은 개별 조례에서 위임이 없더라도 조례의 집행에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규칙으로 규정할 수 있으므로 삭제 권고

연 번	조례명	분 류	위임근거	시행일	비 고
18	**전북특별자치도 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 방지 조례**	위임조례	「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 방지법」 제7조, 제11조,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 제6조, 제10조	2017. 12. 1., 제정 (일부개정 2회) [시행 2024. 5. 31.] [전북특별자치도조례 제5508호, 2024. 5. 31., 일부개정]	■ 개정 권고 □ 통합 권고 □ 폐지 권고 □ 이행 권고 ■ 일반 정비 □ 현행 유지 □ 기타( )

사전 검토

○ 기본자료 분석

- (1-1) 본 조례는「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 방지법」제7조, 제11조,「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 방지법 시행령」제2조,「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 방지법 시행규칙」제3조, 제6조, 제10조에 따라 제정된 위임조례임
- (2-4) 조례 제5조에 따라 제2차 빛공해 방지 기본계획 용역 추진사업에 49,000천원을 집행함
- (2-5) 조례 내용에 따라 빛공해 방지 기본계획 도청 홈페이지 홍보, 빛공해 환경영향평가 평가위원 공개모집 및 관련 자료 도청 홈페이지 홍보, 빛공해 관련 조명관리구역 지정 추진 홍보, 빛공해 방지 조례안 입법 예고 홍보, 빛공해 저감 컨설팅 서비스 안내(시군), 빛공해 측정 및 분석 장비 현황 파악, 빛공해 방지 기본계획 및 환경영향평가 시·군 의견 수렴, 빛공해 피해 발생 우려지역 조사 등을 실시함
- (2-5) 조례 내용에 따라 제2차('25~'29) 전북특별자치도 빛공해 방지 기본계획 용역을 실시함
- (3-1) 조례 제19조에 재정지원 내용이 규정됨
- (3-3) 조례 제19조에 따라 2022년과 2024년에 아래와 같이 예산을 확보하고 집행함

(금액단위: 천원)

연도	사업명	필요예산	확보예산	집행액	집행내역
2022	제2차 빛공해 환경영향평가 용역 추진	80,000	80,000	76,000	환경영향평가 용역비
2023	해당 없음				
2024	제2차 빛공해 방지 기본계획 용역 추진	49,000	49,000	21,818	기본계획 수립 용역 선금 지급

- (7-1) 조례 제7조에 따라 전북특별자치도 빛공해 방지 지역위원회를 설치함
- (7-3) 위원회 위원 중 여성 비율이 25%임
- (7-4) 2022년과 2023년에 아래와 같이 위원회를 개최함

연도별	2022	2023	2024
개최건수	1	1	-
개최일	'22.11.17.	'23.09.26.	개최예정
소요예산	800천원	500천원	-

- (7-5) 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 방지법 제7조에 따라 전북특별자치도의 조명환경관리구역의 지정·지정해제 등 빛공해 관련 주요 결정 사항에 관한 심의를 위해 현행대로 지역 위원회 유지가 필요함

○ 기타의견

- (8-1)「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 방지법」제7조에 따라 전북특별자치도의 조명환경관리구역의 지정·지정해제 등 빛공해 관련 주요 결정 사항에 관한 심의를 위해 현행대로 지역 위원회 유지가 필요함
- (8-2)「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 방지법 시행령」제6조에 따라 빛 방사허용기준의 적용 제외 구역을 조례로 위임하여 정하도록 하는 내용의 조례 개정 필요
- (8-4) 생활환경 개선에 대한 전북특별자치도민의 요구가 증가함에 따라 빛공해로 인한 건강·생태계 영향을 예측하고 사전에 예방하기 위하여 본 조례는 존속 유지 필요함
- (8-4) 정부(환경부)의 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 방지를 위한 '제3차 빛공해방지 종합계획(2024~2028)을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시행하며 이에 따라 전북특별자치도는 제2차 기본계획 수립 용역을 추진하고 있는 등 정부와 계획에 따라 정책을 수행함에 있어 그 근거 조례가 반드시 필요함

입법체계 분석

○ 조례 제정 목적

- 「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 방지법」과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모든 도민이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게 함을 목적으로 함

○ 자치법규 입안기준 부합성

- 자치법규 입안기준에 부합하도록 인용 법령 개정 사항 반영, 약칭 정비 등 정비 필요

○ 위임 적합성 평가

- 위임 범위에서 적절하게 규정하고 있음

평가지표에 따른 평가

○ 분석지표별 평가

평가항목	평가항목별 검토 내용
1. 입법 근거 및 적법성	「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 방지법」, 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을 근거로 하여 위임 범위에서 적절하게 제정되었음
2. 조례의 실효성	제5조에 따른 공해방지 계획과 제16조에 따른 조명환경관리구역 설정을 통해 조례의 실효성을 확보하고 있음
3. 조례 내용의 적정성	본 조례는 전북특별자치도 내에서 발생할 수 있는 인공조명에 의한 빛 공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조례로 규정한 내용이 적정함
4. 조례의 공평성	장애, 성별, 나이 등에 관한 사회적 편견, 고정관념이 반영된 표현 및 차별 규정 없음
5. 주민 수용성	조례의 체계 및 용어가 주민이 알기 쉽게 되어 있음
6. 전북자치도 현실부합성	전북특별자치도 내에서 발생할 수 있는 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제정된 본 조례는 행정수요를 반영하고 있어 전북특별자치도 현실에 부합함
7. 위원회 운영의 적정성	위원회가 규정대로 설치되었고 활발히 운영되고 있어 위원회의 운영이 적절함
※ 기타 의견	생활환경 개선에 대한 전북특별자치도민의 요구가 증가함에 따라 빛공해로 인한 건강·생태계 영향을 예측하고 사전에 예방하기 위하여

	본 조례는 존속 유지 필요함. 정부(환경부)의 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 방지를 위한 '제3차 빛공해방지 종합계획(2024~2028)을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시행하며 이에 따라 전북특별자치도는 제2차 기본계획 수립 용역 추진하고 있는 등 정부와 계획에 따라 정책을 수행함에 있어 그 근거조례가 반드시 필요함

○ 타 시·도 유사 조례와의 비교

전북특별자치도 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 방지 조례	경기도 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 방지 조례	서울특별시 빛공해 방지 및 좋은빛 형성 관리 조례	부산광역시 빛공해 방지 조례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제3조(조명기구의 범위)	제3조(조명기구의 범위)	제3조(조명기구의 범위)	제3조(조명기구의 범위)
제4조(책무)	제4조(도지사 등의 책무)	제4조(시장 등의 책무)	제4조(시 등의 책무)
제5조(빛공해방지계획의 수립·시행)	제5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5조(빛공해방지계획의 수립)	제5조(빛공해방지계획의 수립·시행)
제6조(빛환경 관리계획의 수립·시행)	제6조(경기도빛공해방지계획 수립)	**제6조(조명환경관리구역의 지정)**	제6조(빛환경관리계획의 수립·시행)
제7조(빛공해방지지역위원회의 설치)	**제7조(조명환경관리구역 지정 등)**	제7조(빛환경 관리계획의 수립)	제7조(빛공해방지위원회의 설치)
제8조(구성)	제8조(빛방사허용기준의 강화)	제8조(빛방사허용기준의 적용 제외)	제8조(구성)
제9조(위원의 임기)	제9조(빛방사허용기준의 적용 제외)	제9조(빛공해환경영향평가 등)	제9조(위원의 임기)
제10조(위원장의 직무)	제10조(빛공해환경영향평가)	제10조(좋은빛위원회)	제9조의2(위원의 해촉)
제11조(위원회의 회의)	제11조(빛공해방지위원회의 구성)	제11조(위원회의 기능)	제9조의3(위원의 제척·기피·회피)
제12조(관계기관 등에 대한 협조요청)	제12조(위원회의 기능)	제12조(위원회의 구성)	제10조(위원장의 직무)
제13조(간사)	제13조(위원장의 직무)	제13조(위원의 제척 및 회피)	제11조(회의)
제14조(수당 등)	제14조(위원회의 회의)	제14조(위원의 위촉 해제)	제12조(관계기관 등에 대한 협조요청)
제15조(운영세칙)	제15조(수당 등)	제15조(위원장의 직무 등)	제13조(간사)
제16조(조명환경관리구역 지정 시 고려사항)	제16조(자료제출 등)	제16조(위원회의 운영 등)	제14조(수당 등)
제17조(빛방사허용기준의 강화)	제17조(지도 및 권고)	제17조(비밀준수)	제15조(운영세칙)
제18조(빛공해환경영향평가)	제18조(시범사업 발굴)	제18조(협조요청 등)	제16조(조명환경관리구역 지정 시 고려사항)
제19조(조명기구 정비	제19조(지원제도)	제19조(수당)	제17조(빛방사허용기준

지원 등)			의 강화)
제20조(포상)	제20조(평가 및 포상 등)	제20조(운영세칙)	제18조(빛방사허용기준의 적용 제외)
	제21조(시행규칙)		제19조(빛공해환경영향평가)
			제20조(조명기구 정비 지원 등)
			제21조(포상)

- 경기도와 서울특별시 조례에서는 '조명환경관리구역의 지정'에 관해 규정하고 있음. 이는 상위법령에서 조례로 위임한 사항(「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 방지법」 제9조 및 「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 방지법 시행규칙」 제3조제5호)에 따른 내용을 명시한 것임

○ 규제사항 평가

- 특이사항 없음

목적달성도 및 부수효과 분석

○ 조례 목적달성도 평가

- 조례 내용에 따라 다양한 사업을 집행하고 환경영향평가를 시행하는 등 조례의 목적이 달성되고 있다고 평가됨

○ 부수효과

- 빛공해의 감소를 통해 전북특별자치도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데 기여

관계법령

「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 방지법」 제3조, 제7조 및 제11조

제3조(국가 등의 책무) ① (생 략)

② 지방자치단체는 관할 지역의 지역적 특성을 고려하여 빛공해 방지시책을 수립·시행하고, 지역 주민에게 빛공해에 관한 정보제공 등의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③ (생 략)

제7조(빛공해방지지역위원회) ① 시·도지사는 시·도빛공해방지계획의 수립·시행과 제9조 및 제10조에 따른 조명환경관리구역의 지정·지정해제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빛공해방지지역위원회(이하 "지역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지역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제11조(빛방사허용기준) ①환경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제9조제1항 각 호의 조명환경관리구역에서 허용되는 빛방사허용기준(이하 "빛방사허용기준"이라 한다)을 에너지 절약과 기술의 발전을 고려하여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②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는 제1항에 따른 빛방사허용기준으로는 빛공해의 방지 또는 쾌적한 환경의 조성이 어렵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제1항에 따른 빛방사허용기준보다 엄격한 빛방사허용기준을 정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가 엄격한 빛방사허용기준을 정하거나 변경하였을 경우에는 시·도지사는 이를 지체 없이 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하고, 이해관계자가 알 수 있도록 공고하여야 한다.

「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 방지법 시행령」 제2조

「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 방지법 시행령」 제2조

제2조(조명기구의 범위) 「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 방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에 따른 조명기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1. 안전하고 원활한 야간활동을 위하여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간을 비추는 발광기구 및 부속장치
   가.「도로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도로
   나.「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보행자길
   다.「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공원녹지
   라. 그 밖에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 또는 특별자치도(이하 "시·도"라 한다)의 조례로 정하는 옥외 공간
2.「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라 허가를 받아야 하는 옥외광고물(「건축법 시행령」 제3조의5에 따른 의료시설, 위험물 저장 및 처리 시설, 교정시설 또는 국방·군사시설에 설치된 옥외광고물은 제외한다)에 설치되거나 광고를 목적으로 그 옥외광고물을 비추는 발광기구 및 부속장치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 시설물, 조형물 또는 자연환경 등을 장식할 목적으로 그 외관에 설치되거나 외관을 비추는 발광기구 및 부속장치
   가.「건축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건축물 중 연면적이 2천제곱미터 이상이거나 5층 이상인 것
   나.「건축법 시행령」 제3조의5에 따른 숙박시설 및 위락시설
   다. 교량
   라. 그 밖에 해당 시·도의 조례로 정하는 것

「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 방지법 시행규칙」 제3조, 제6조 및 제10조

제3조(조명환경관리구역의 지정) 법 제9조제2항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법 제16조에 따른 빛공해환경영향평가 결과
2.「자연환경 보전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생태·경관보전지역 지정 현황
3.「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7조제1항에 따른 야생생물 특별보호구역 지정 현황
4.「습지보전법」 제8조제1항에 따른 습지보호지역·습지주변관리지역 지정 현황 및 같은 법 제9조제1항에 따른 협약등록습지 통보 현황
5. 그 밖에 조명환경관리구역 지정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것으로서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 또는 특별자치도(이하 "시·도"라 한다)의 조례로 정하는 사항

제6조(빛방사허용기준) ① 법 제11조에 따른 빛방사허용기준은 별표 1과 같다.

② 삭제

③ 시·도지사가 법 제11조제2항에 따라 조례로 엄격한 기준을 정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지역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야 한다.

제10조(빛공해환경영향평가) ① 법 제16조에 따른 빛공해환경영향평가의 평가항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다음 각 목의 사항을 포함한 지역환경 현황
   가. 자연 및 생활 환경 현황
   나. 토지이용 현황 및 지역개발 계획
   다. 조명기구 설치·관리 및 빛공해 현황
2. 다음 각 목의 사항을 포함한 빛공해 영향분석

「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 방지법 시행규칙」 제3조, 제6조 및 제10조
가. 인공조명이 동물・식물, 경관 등 자연환경에 미치는 영향 나. 인공조명이 주민의 주거, 안전, 건강 등 생활환경에 미치는 영향 다. 인공조명이 농림수산업의 영위에 미치는 영향 라. 인공조명이 천체관측에 미치는 영향 3. 그 밖에 빛공해환경영향평가에 필요한 사항으로서 시・도의 조례로 정하는 사항 ② 시・도지사는 법 제16조에 따라 빛공해환경영향평가가 끝난 날부터 30일 이내에 그 결과를 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빛공해환경영향평가의 절차 등 평가의 실시에 필요한 사항은 시・도의 조례로 정한다.

조례 개정방안

○ 조례 개정 방향

- 제3조, 제4조, 제9조: 법제처 자치법규 입안기준에 따른 정비(띄어쓰기 정비, 상위법령 인용 오류 수정, 약칭표현 정비 등)
- 제3조라목: 문화유산과 관련하여 인용 법령의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정비 검토
- 제17조의2: 타 시・도의 사례를 참고하여 「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 방지법 시행령」 제6조에 따라 빛 방사허용기준의 적용 제외 구역을 조례로 위임하여 정하도록 하고 있음. 이와 같은 내용을 포함한 조례 규정 신설 검토
- 제20조: 포상 규정의 경우 「전북특별자치도 포상 조례」 등이 당연히 적용되는 것이므로 규정 실익이 없지만, 조례의 완성도・이해도를 위하여 조례명은 표기하지 않고 단순히 선언적 규정으로만 정비

○ 개정안

현 행	개정안	비고
제3조(조명기구의 범위) 이 조례에 따른 조명기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1. ~ 2. 생략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 시설물, 조형물 또는 자연환경 등을 장식할 목적으로 그 외관에 설치되거나 외관을 비추는 발광기구 및 부속장치 가. 「건축법」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건축물 중 연면적이 2천제곱미터 이상이거나 5층 이상인 것 나. 「건축법 시행령」제3조의5에 따른 숙박시설 및 위락시설 다. 생략 라. 「문화재보호법」제2조에 따른 지정문화재 또는 등록문화재	제3조(조명기구의 범위) 이 조례에 따른 조명기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1. ~ 2. 현행과 같음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 시설물, 조형물 또는 자연환경 등을 장식할 목적으로 그 외관에 설치되거나 외관을 비추는 발광기구 및 부속장치 가. 「건축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건축물 중 연면적이 2천제곱미터 이상이거나 5층 이상인 것 나. 「건축법 시행령」 제3조의5에 따른 숙박시설 및 위락시설 다. 현행과 같음 라.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지정문화유	-띄어쓰기 정비 권고 -마목에서 인용하고 있는 제12조제4항은 건축비용에 관한 내용이므로 제1항으로 정비 권고 -제3호라목: 「문화재보호법」의 개정으로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로 변경되었으며, 기존의 "문화재"는 "문화유산"으로 용어가 변경되었음. 또한 기존 "등록문화재"는 「근현대문

현 행	개정안	비고
마. 「문화예술진흥법 시행령」제12조제4항에 따른 미술작품	산 또는 「근현대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등록문화유산 마. 「문화예술진흥법 시행령」 제12조제1항에 따른 미술작품	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음. 인용 법령의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정비 권고
제4조(책무) ① 전북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지역적 특성을 고려하여 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이하 "빛공해"라 한다) 방지시책을 수립·시행하고, 도민에게 빛공해에 관한 정보제공 등의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② 생략	제4조(책무) ① 전북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지역적 특성을 고려하여 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이하 "빛공해"라 한다) 방지시책을 수립·시행하고, 전북특별자치도민(이하 "도민"이라 한다)에게 빛공해에 관한 정보제공 등의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② 현행과 같음	-"도민"을 약칭하고 사용하도록 정비 권고
제9조(위원의 임기) ①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② 생략	제9조(위원의 임기) ①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② 현행과 같음	-문장 표현 정비 권고
<신설>	제17조의2(빛방사허용기준의 적용 제외) ① 도지사는 영 제6조제2항에 따라 빛방사허용기준의 적용 제외에 대한 승인 여부를 결정할 때에는 위원회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② 도지사는 여성 및 아동 등 시민의 생활안전 및 범죄예방에 관련된 조명 시설에 대하여는 규칙 별표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위원회의 의견을 들어 빛방사허용기준 보다 완화하여 결정할 수 있다.	-타 시·도의 사례를 참고하여 「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 방지법 시행령」 제6조에 따라 빛 방사허용기준의 적용 제외 구역을 정하도록 규정 신설 권고
제20조(포상) 도지사는 빛공해 방지에 기여한 공적이 현저한 기관·단체 또는 개인에게 「전북특별자치도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제20조(포상) 도지사는 빛공해 방지에 기여한 공적이 현저한 기관·단체 또는 개인에게 포상할 수 있다.	-포상에 관해 선언적인 의미만을 규정하면, 그에 따른 구체적인 사항은 당연히 「전북특별자치도 포상 조례」를 적용 받으므로 규정의 실익이 없음(법제처, 2023년 우수조례 및 자치법규 입법컨설팅 사례집, 118면)

연 번	조례명	분 류	위임근거	시행일	비 고
19	**전북특별자치도 농어촌 체험관광 활성화 지원 조례**	자치조례	-	2013. 11. 8., 제정 (일부개정 5회) [시행 2024. 1. 18.] [전북특별자치도조례 제5399호, 2023. 12. 8., 일부개정]	□ 개정 권고 ■ 통합 권고 □ 폐지 권고 □ 이행 권고 ■ 일반 정비 □ 현행 유지 □ 기타( )

사전 검토

○ 기본자료 분석

- (1-1) 본 조례는「도시와 농어촌 간의 교류촉진에 관한 법률」제3조와 관련된 내용을 규정한 자치조례임
- (2-4) 조례 제8조에 따라 체험마을 리더교육 지원에 18,228천원을 집행함
- (2-5) 조례 내용에 따라 24년 기준 예산액 18백만원을 확보하여 매년 체험마을 리더교육 지원을 통한 교육을 온, 오프라인으로 시행함
- (3-1) 2024년도 예산액 기준 전북형 농촌관광 운영활성화 지원에 600백만원, 농촌체험휴양마을 육성 지원에 312백만원, 체험마을 리더교육 지원에 18백만원, 농촌체험휴양마을 박람회 참가 지원에 12백만원, 농촌관광 홍보 지원에 66백만원, 농촌관광 경쟁력 제고사업에 500백만원을 지원함

○ 기타의견

- (8-1) 도시와 농촌간의 교류 및 상생과 농촌의 경제활성화를 위하여 농촌관광 사업이 더욱 확대되어야 하므로 농촌관광 활성화를 위하여 해당 조례의 유지가 필요함

입법체계 분석

○ 조례 제정 목적

- 전북특별자치도 농어촌과 도시간의 교류를 활성화하여 농어촌지역의 소득증대 및 삶의 질 향상과 도시지역 주민의 건강한 여가욕구 수요를 충족시켜 농어촌과 도시가 함께 발전할 수 있는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함

○ 자치법규 입안기준 부합성

- 자치법규 입안기준에 부합하도록 띄어쓰기 정비, 상위법령 개정 사항 반영 정비 필요

○ 위임 적합성 평가

- 자치조례로 해당사항 없음

평가지표에 따른 평가

○ 분석지표별 평가

평가항목	평가항목별 검토 내용
1. 입법 근거 및 적법성	관련 법률에서 농촌 활성화를 위한 자치법규를 제정·운영하도록 하고 있으며 본 조례는 자치사무의 범위에서 적절하게 제정되었음

2. 조례의 실효성	조례에 따른 시행계획 수립 및 교육 추진 등을 통해 조례의 실효성을 확보하고 있음
3. 조례 내용의 적정성	농촌관광 활성화를 위한 사업을 추진하기에 조례 내용이 적정함
4. 조례의 공평성	장애, 성별, 나이 등에 관한 사회적 편견, 고정관념이 반영된 표현 및 차별 규정 없음
5. 주민 수용성	조례의 체계 및 용어가 주민이 알기 쉽게 되어 있음
6. 전북자치도 현실부합성	본 조례는 농어촌의 체험관광을 활성화하고자 하는 행정수요를 반영하고 있어 전북특별자치도 현실에 부합함
7. 위원회 운영의 적정성	위원회 운영 관련 규정이 없음
※ 기타 의견	없음

○ 타 시·도 유사 조례와의 비교

전북특별자치도 농어촌 체험관광 활성화 지원 조례	전라남도 농산어촌 체험관광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	경상남도 농산어촌체험관광 활성화 지원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농산어촌 체험관광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제3조(체험관광사업의 활성화 계획 수립·시행)	제3조(활성화계획 수립·시행)	제3조(도지사의 책무)	제3조(활성화계획 수립·시행)
제4조(농어촌 체험관광 활성화 자문회의)	제4조(지원대상)	제4조(지원대상)	제4조(지원대상)
제5조(지원대상)	제5조(지원내용)	제5조(지원내용)	제5조(지원내용)
제6조(지원내용)	제6조(청소년 등 참여 지원)	제6조(체험관광사업의 활성화)	제6조(청소년 등 참여 지원)
제7조(청소년 등 참여 지원)	제7조(전문가의 자문 등)	제7조(청소년 등 참여 지원)	제7조(전문가의 자문 등)
제8조(전문인력의 육성 등)	제8조(전문인력의 육성 등)	제8조(전문가의 자문 등)	제8조(전문인력의 육성 등)
제9조(1사1촌 자매결연의 활성화)	제9조(1사1촌 및 1교1촌 자매결연의 활성화)	제9조(전문인력의 육성 등)	제9조(1사1촌 자매결연의 활성화)
제10조(지도 감독 및 평가 등)	제10조(지도·감독 및 평가 등)	제10조(1사1촌 친선결연의 활성화)	제10조(지도·감독 및 평가 등)
제11조 <삭제 2016. 9. 30.>	제11조(시행규칙)	제11조(감독 및 평가 등)	제11조(시행규칙)
제12조 <삭제 2016. 9. 30.>		제12조(시행규칙)	
제13조(시행규칙)			

- 타 시·도 조례와 실질적인 규정내용이 유사하여 특별한 시사점 없음

○ 규제사항 평가

- 특이사항 없음

목적달성도 및 부수효과 분석

○ 조례 목적달성도 평가

- 조례 내용에 따라 농어촌 관광 활성화를 위해 다양한 홍보와 교육을 진행하고 있다는 점에서 조례의 목적이 달성되고 있다고 평가됨

○ 부수효과

- 농산어촌 체험관광을 활성화하여 새로운 관광자원을 개발하고 수입원을 창출하는데 기여

관계법령

- 자치조례로 해당사항 없음

조례 개정방안

○ 조례 개정 방향

- 제2조, 제3조, 제4조: 법제처 자치법규 입안기준에 따른 정비(띄어쓰기 정비, 상위법령 개정 사항 반영 등)
- 제13조: 시행규칙은 개별 조례에서 위임이 없더라도 조례의 집행에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규칙으로 규정할 수 있으므로 삭제 권고
- 유사 내용의 조례와 심층분석한 결과, 「전북특별자치도 농산어촌 유학지원 조례」와 지원대상, 추진사업 등이 동일하여 통합을 검토할 수 있음. 또한, 「전북특별자치도 농어촌민박사업 지원조례」와는 조례 제정 목적 및 농어촌에 대한 정의가 같고, 농어촌민박사업 활성화계획을 농어촌관광 활성화 기본계획으로 갈음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는 점 등에서 통합을 검토할 수는 있으나, 이 경우 지원대상, 지원 내용 등이 다르므로 심층분석을 통해서 조례의 통합안 검토 제시

○ 개정안

현 행	개정안	비고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농어촌"이란「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3조제5호에 따른 전북특별자치도 시·군의 지역을 말한다. 2. ~ 4. 생략 5. "1교1촌 자매결연"이란 「유아교육법」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과 「초·중등교육법」 제2조 각 호의 학교(다른 시·도를 포함한다. 이하 "학교 등"이라 한다)가 하나의 농어촌 마을과 자매 결연을 맺어 유아 및 학생의 체험활동 등을 통하여 지속적으로 교류를 추진하는 것을 말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농어촌"이란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5호 및 「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 제3조제6호에 따른 전북특별자치도 시·군의 지역을 말한다. 2. ~ 4. 현행과 같음 5. "1교1촌 자매결연"이란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과 「초·중등교육법」 제2조 각 호의 학교(다른 시·도를 포함한다. 이하 "학교 등"이라 한다)가 하나의 농어촌 마을과 자매결연을 맺어 유아 및 학생의 체험활동 등을 통하여 지속적으로 교류를 추진하는 것을 말한다.	-띄어쓰기 및 법령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농어촌"을 정의하도록 정비 권고 -"자매결연"으로 띄어쓰기 정비 권고
제3조(체험관광사업의 활성화 계획 수립·시행) ① 전북특별자치도지사(이하"도지사"라 한다)는 농어촌체험	제3조(체험관광사업의 활성화 계획 수립·시행) ① 전북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농어촌체	-띄어쓰기 정비 권고

현 행	개정안	비고
관광사업의 체계적인 관리·지원을 위하여 전북특별자치도 농어촌 체험관광 활성화계획(이하 "활성화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이하 생략	험관광사업의 체계적인 관리·지원을 위하여 전북특별자치도 농어촌 체험관광 활성화계획(이하 "활성화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이하 현행과 같음	
제4조(농어촌 체험관광 활성화 자문회의) 도지사는 전북특별자치도 농어촌 체험관광 활성화 자문회의를 통해 활성화계획의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을 자문 및 심의할 수 있다.	제4조(농어촌 체험관광 활성화 자문회의) 도지사는 전북특별자치도 농어촌 체험관광 활성화 자문회의를 통해 활성화계획의 수립·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경우 자문 및 심의를 받을 수 있다.	-도지사는 자문 또는 심의를 받는 주체이므로 규정 표현 정비 권고
제13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삭제>	-시행규칙은 개별 조례에서 위임이 없더라도 조례의 집행에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규칙으로 규정할 수 있으므로 삭제 권고

연 번	조례명	분 류	위임근거	시행일	비 고
20	**전북특별자치도 스마트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자치조례	-	2021. 2. 19., 제정 (일부개정 1회) [시행 2024. 1. 18.] [전북특별자치도조례 제5399호, 2023. 12. 8., 일부개정]	■ 개정 권고 □ 통합 권고 □ 폐지 권고 □ 이행 권고 ■ 일반 정비 □ 현행 유지 □ 기타( )

사전 검토

○ 기본자료 분석

- (1-4) 조례 제정 이후 「스마트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 제정됨
- (2-3) 조례 제4조에 따라 '전북특별자치도 스마트농업 육성계획'을 매년마다 수립하여야 하나, 현재 '전북자치도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육성계획' 수립 시 반영 예정임
- (2-4) 조례 제6조와 제7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사업을 수행함 (금액단위: 천원)

규 정	사 업 명	예산('24년)	비고
제6조(교육 및 컨설팅 지원)	청년창업 스마트팜 컨설팅 운영	85,000	
	과학영농 실용농업 스마트팜 교육	30,000	
제7조(사업추진 및 지원)	청년 희망 스마트팜 지원	250,000	
	청년창업 스마트팜 패키지 지원	2,156,000	

- (2-5) 조례 제6조에 따라 2018년부터 현재까지 청년창업 보육센터를 운영하고, 2024년부터는 과학영농 실용농업 스마트팜 교육을 진행하며, 청년창업 스마트팜 패키지 지원사업 성과 홍보, 스마트축산 패키지 지원사업 참여 홍보, 스마트축산 패키지 지원사업 공모선정, 스마트팜 청년창업보육교육 성과 등 홍보, 스마트팜 청년창업 보육센터 국내외 견학사례 홍보를 실시함
- (3-1) 조례 제6조와 제7조에 따라 재정지원을 실시할 수 있음
- (3-3) 2022년부터 2024년까지 아래와 같이 예산 지원을 실시함 (금액단위: 천원)

연도	사업명	필요예산	확보예산	집행액	집행내역
2022	소계	3,830,000	3,830,000	3,713,000	
	청년 희망 스마트팜 지원	300,000	300,000	300,000	시설하우스, ICT 장비 등 지원
	청년창업 스마트팜 패키지 지원	3,300,000	3,300,000	3,300,000	청년농 스마트팜 조성 지원
	과학영농 실용농업 스마트팜 교육	30,000	30,000	30,000	교육운영비(강사비, 식비 등)
	청년창업 스마트팜 컨설팅 운영	200,000	200,000	83,000	청년농 대상 스마트팜 컨설팅 지원
2023	소계	7,230,000	7,230,000	6,960,000	
	청년 희망 스마트팜 지원	300,000	300,000	30,000	시설하우스, ICT 장비 등 지원
	청년창업 스마트팜 패키지 지원	4,400,000	4,400,000	4,400,000	청년농 스마트팜 조성 지원
	동부권 임대형 수직농장 실증 지원	2,500,000	2,500,000	2,500,000	청년 임대형 수직농장 조성
	과학영농 실용농업 스마트팜 교육	30,000	30,000	30,000	교육운영비(강사비, 식비 등)
2024	소계	2,521,000	2,521,000	2,406,000	
	청년 희망 스마트팜 지원	250,000	250,000	250,000	시설하우스, ICT 장비 등 지원
	청년창업 스마트팜 패키지 지원	2,156,000	2,156,000	2,156,000	청년농 스마트팜 조성 지원
	과학영농 실용농업 스마트팜 교육	30,000	30,000		교육운영비(강사비, 식비 등)
	청년창업 스마트팜 컨설팅 운영	85,000	85,000		청년농 대상 스마트팜 컨설팅 지원

○ 기타의견

- (8-1) 고령화 및 기후변화 등 농업의 위기 극복을 위해 스마트농업 확산 및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근거가 필요하여 조례를 유지해야 함

입법체계 분석

○ 조례 제정 목적

- 전북특별자치도의 스마트농업 육성을 위한 정책수립과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농업인의 소득 증대와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 자치법규 입안기준 부합성

- 자치법규 입안기준에 부합하도록 시행규칙 제정에 대한 일반적 위임규정 삭제 정비 필요

○ 위임 적합성 평가

- 자치조례로 해당사항 없음

평가지표에 따른 평가

○ 분석지표별 평가

평가항목	평가항목별 검토 내용
1. 입법 근거 및 적법성	전북특별자치도에서 스마트 농업을 육성하기 위한 자치조례로 자치사무의 범위에서 적절하게 제정되었음
2. 조례의 실효성	제7조에 따른 사업 추진을 통해 조례의 실효성을 확보하고 있음
3. 조례 내용의 적정성	전북특별자치도 내에서 스마트 농업을 개발하고 보급하기 위한 조례로, 조례의 내용이 적정함
4. 조례의 공평성	장애, 성별, 나이 등에 관한 사회적 편견, 고정관념이 반영된 표현 및

	차별 규정 없음
5. 주민 수용성	조례의 체계 및 용어가 주민이 알기 쉽게 되어 있음
6. 전북자치도 현실부합성	스마트농업을 보급하기 위한 조례로 농업이 활발하게 이뤄지고 있는 전북특별자치도 현실에 부합함
7. 위원회 운영의 적정성	위원회 운영 관련 규정이 없음
※ 기타 의견	없음

○ 타 시·도 유사 조례와의 비교

전북특별자치도 스마트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경기도 스마트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경상남도 스마트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서울특별시 스마트농업 육성 및 지원 조례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제3조(도지사의 책무)	제3조(도지사의 책무)	제3조(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제4조(스마트농업 육성 계획의 수립)	제4조(스마트농업 육성 계획 수립)	제4조(스마트농업 육성 계획 수립·시행 등)	제4조(스마트농업육성 계획 수립 등)
제5조(홍보)	**제5조(스마트농업 지원 사업)**	제5조(스마트농업 육성 사업)	제5조(스마트농업 육성 사업 지원)
제6조(교육 및 컨설팅 지원 등)	**제6조(스마트농업기술의 개발 및 보급)**	제6조(스마트농업 육성 사업 지원)	제6조(스마트농업 관련 기술개발 등)
제7조(사업추진 및 지원)	**제7조(스마트농업정보센터)**	제7조(우수농업인 교육 기회 제공)	제7조(교육 및 컨설팅 지원 등)
제8조(시행규칙)	**제8조(스마트팜 지원)**	제8조(협력체계 구축)	제8조(협력체계 구축 및 수출 지원 등)
	제9조(청년농업인 경영실습 스마트팜)	제9조(스마트농업정보센터 설치·운영)	제9조(스마트농업 홍보)
	제10조(교육 및 컨설팅 지원 등)		
	제11조(스마트농업기술의 홍보)		
	제12조(협력체계 구축)		
	제13조(시행규칙)		

- 경기도 조례에서는 청년 농업인 지원을 위해 스마트팜에 대한 체계적인 교육을 실시하고 있는 점이 특징적임

○ 규제사항 평가

- 특이사항 없음

목적달성도 및 부수효과 분석

○ 조례 목적달성도 평가

- 조례 내용에 따라 다양한 형태의 스마트팜과 스마트팜 밸리를 조성하고자 하는 계획을 수립하였다는 점에서 조례의 목적이 달성되고 있다고 평가됨

○ 부수효과

- 스마트 농법 보급을 통한 농업 소멸의 방지와 청년농민의 유입을 기대할 수 있음

관계법령

- 자치조례로 해당사항 없음

조례 개정방안

○ 조례 개정 방향

- 제7조의2: 타 시·도의 사례를 참고하여 청년농업인 대상 스마트팜에 대한 체계적인 교육 실시 규정 신설 권고
- 제8조: 시행규칙은 개별 조례에서 위임이 없더라도 조례의 집행에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규칙으로 규정할 수 있으므로 삭제 권고
- 집행부에서 상위법 제정으로 인한 조례 전부개정을 준비 중이며, 심층분석 시 이를 반영·검토하여 개정안 제시

○ 개정안

현 행	개정안	비고
<신설>	제7조의2(청년농업인 경영실습 스마트팜) ① 도지사는 청년농업인에게 스마트농업 경영을 위한 실습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청년농업인 경영실습 스마트팜(이하 "청년스마트팜"이라 한다)을 조성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청년스마트팜을 조성·운영함에 있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1. 스마트농업 경영에 관한 정보 제공 및 영농기술 등의 지원 2. 청년스마트팜 시설 운영 및 임대 3. 그 밖에 청년스마트팜의 효율적인 이용 및 관리를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③ 제2항제2호에 따른 청년스마트팜을 임대하는 경우 그 계약기간, 임대면적, 임대료 등에 관한 사항은 도지사가 따로 정한다.	-타 시·도의 사례를 참고하여 청년농업인 경영실습 스마트팜 규정 신설 검토 권고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삭제>	-시행규칙은 개별 조례에서 위임이 없더라도 조례의 집행에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규칙으로 규정할 수 있으므로 삭제 권고

3. 경제산업건설위원회

연 번	조례명	분 류	위임근거	시행일	비 고
21	**전북특별자치도 청년일자리 창출 촉진에 관한 조례**	자치조례	-	2013. 10. 4., 제정 (일부개정 4회) [시행 2024. 1. 18.] [전북특별자치도조례 제5399호, 2023. 12. 8., 일부개정]	□ 개정 권고 ■ 통합 권고 □ 폐지 권고 □ 이행 권고 ■ 일반 정비 □ 현행 유지 □ 기타( )

사전 검토

○ 기본자료 분석

- (2-3) 조례 제4조에 따라 2024년 전북특별자치도 청년일자리 창출계획을 수립함
- (2-5) 2024년 계획 수립 시 2023년 사업 추진 실적을 포함함
- (3-1) 조례 제3조에 따라 재정 지원이 가능함
- (3-3) 2022년부터 2024년까지 아래와 같이 예산 지원을 실시함 (금액단위: 천원)

연도	사업명	필요예산	확보예산	집행액	집행내역
2022	전북형 청년취업지원	593,000	593,000	593,000	사업 추진을 위한 시군 사업비 교부
2023					
2024		305,760	305,760	305,760	

○ 기타의견

- (8-1) 청년일자리 창출을 통한 전북특별자치도 내 청년인구 지속적 유출 등의 문제에 대응하기 위하여 조례의 유지가 필요함
- (8-2, 8-4) 「전북특별자치도 고등학교졸업자 고용촉진 조례」에 따른 "고등학교졸업자"의 개념이 「전북특별자치도 청년일자리 창출 촉진에 관한 조례」의 "청년"의 개념에 포함되므로 통합이 필요

입법체계 분석

○ 조례 제정 목적

- 「청년고용촉진 특별법」에 따라 전북특별자치도 지역 청년들의 일자리 창출을 촉진함으로써 지속적인 경제발전과 사회 안정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함

○ 자치법규 입안기준 부합성

- 자치법규 입안기준에 부합하도록 문장 표현 정비 필요

○ 위임 적합성 평가

- 자치조례로 해당사항 없음

평가지표에 따른 평가

○ 분석지표별 평가

평가항목	평가항목별 검토 내용
1. 입법 근거 및 적법성	위임 범위에서 적절하게 제정되었음

2. 조례의 실효성	제9조에 따른 청년 일자리 지원을 통해 조례의 실효성을 확보하고 있음
3. 조례 내용의 적정성	조례에서 규정하고 있는 재정지원이 적절하게 이루어지고 있음
4. 조례의 공평성	장애, 성별, 나이 등에 관한 사회적 편견, 고정관념이 반영된 표현 및 차별 규정 없음
5. 주민 수용성	조례의 체계 및 용어가 주민이 알기 쉽게 되어 있음
6. 전북자치도 현실부합성	전북특별자치도의 청년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하여 제정된 본 조례는 행정수요를 반영하고 있어 전북특별자치도 현실에 부합함
7. 위원회 운영의 적정성	위원회가 운영 관련 규정이 있지만(임의규정) 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지 아니함
※ 기타 의견	「전북특별자치도 고등학교졸업자 고용촉진 조례」에 따른 "고등학교졸업자"의 개념이 「전북특별자치도 청년일자리 창출 촉진에 관한 조례」의 "청년"의 개념에 포함되므로 통합이 필요함

○ 타 시·도 유사 조례와의 비교

전북특별자치도 청년일자리 창출 촉진에 관한 조례	충청남도 청년일자리 창출 촉진에 관한 조례	경상남도 청년 일자리 창출 촉진에 관한 조례	세종특별자치시 청년일자리 창출 촉진 등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제3조(책무)	제3조(책무)	제3조(도지사의 책무)	제2조의2(적용 범위)
제4조(청년일자리 창출 계획)	제4조(추진계획의 수립·시행)	제4조(청년 일자리 창출 시행계획 수립)	제3조(청년인력수급계획)
제5조(실태조사)	제5조(실태조사)	제4조의2(일자리창출사업 등 추진)	제4조(실태조사)
제6조(위원회)	제6조(위원회의 설치·운영)	제5조(실태조사)	제5조(교육지원 등)
제7조(교육기관 활용)	**제7조(출자기관 등의 청년고용 확대)**	제6조(교육기관의 활용)	제6조(관계기관·단체와의 협력 등)
제8조(관계기관·단체와의 협력 등)	제8조(취업지원 등)	제7조(기관·단체 등과의 협력)	**제7조(청년구직자 및 고등학교 졸업자 고용 노력)**
제9조(행·재정적 지원)	제9조(교육기관 활용 등)	제8조(취업 지원)	제8조(행·재정적 지원)
제10조(시행규칙)	제10조(노동교육 등)	**제9조(청년 고용 확대)**	제9조(청년일자리창출위원회)
	제11조(지원센터의 설치)	제10조 삭제	제10조(시행규칙)
	제12조(경비지원)	제11조(지원방법 등)	
	제13조(협력체계의 구축 등)	제12조(시행규칙)	
	제14조(표창)		
	제15조(시행규칙)		

- 충청남도와 경상남도 조례에서는 청년 고용 확대를 위해 출자기관에 청년 고용을 확대할 것을

규정하고, 청년에게도 도의 정책에 협조하도록 함
- 세종특별자치시 조례에서는 제7조에서 청년구직자 및 고등학교졸업자 고용 노력에 관한 조문을 규정하고 있는바 전북특별자치도 집행부의 조례 통합의견에 시사하는 바가 있음

○ 규제사항 평가

- 특이사항 없음

목적달성도 및 부수효과 분석

○ 조례 목적달성도 평가

- 조례내용에 따라 청년 일자리 창출을 위한 구체적인 계획을 수립하고 있다는 점에서 조례의 목적이 달성되고 있다고 평가됨

○ 부수효과

- 청년 일자리 창출을 통해 청년들의 순 유입을 늘리고, 지방 소멸을 억제할 수 있음

관계법령

- 자치조례로 해당사항 없음

조례 개정방안

○ 조례 개정 방향

- 「전북특별자치도 고등학교졸업자 고용촉진 조례」에 따른 "고등학교졸업자"의 개념이 「전북특별자치도 청년일자리 창출 촉진에 관한 조례」의 "청년"의 개념에 포함되므로 통합을 검토할 수 있음. 통합 검토 권고
- 제1조, 제2조, 제3조, 제4조, 제6조, 제9조: 법제처 자치법규 입안기준에 따른 정비(문장표현 정비, 약칭표현 정비, 띄어쓰기 정비, 중복적인 표현 정비 등)
- 제9조제2항: 재정지원 규정의 경우 「전북특별자치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등이 당연히 적용되는 것이므로 규정 실익이 없지만, 조례의 완성도·이해도를 위하여 조례명은 표기하지 않고 단순히 선언적 규정으로만 정비
- 제10조: 시행규칙은 개별 조례에서 위임이 없더라도 조례의 집행에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규칙으로 규정할 수 있으므로 삭제 권고

○ 개정안

현 행	개정안	비고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청년고용촉진 특별법」에 따라 전북지역 청년들의 일자리 창출을 촉진함으로써 지속적인 경제발전과 사회 안정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청년고용촉진 특별법」에 따라 전북특별자치도 지역 청년들의 일자리 창출을 촉진함으로써 지속적인 경제발전과 사회 안정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지역을 명확하게 규정하도록 정비 권고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청년고용촉진 특별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제2조에 따른다.	-상위법령의 용어정의 규정을 그대로 규정할 경우에는 "「○○법」 제○조에

현 행	개정안	비고
		따른다."고 표현함
제3조(책무) ① 전북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청년의 고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대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1. 이하 생략	제3조(책무) ① 전북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청년의 고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대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1. 이하 현행과 같음	-법조형식의 문장으로 정비(「112신고의 운영 및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참조)
제4조(청년일자리 창출계획) ① 도지사는 매년 청년 일자리 창출계획을 수립하여 청년 고용안정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이하 생략	제4조(청년일자리 창출계획) ① 도지사는 매년 전북특별자치도 청년 일자리 창출계획(이하 "청년일자리 창출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청년 고용안정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이하 현행과 같음	-약칭을 할 경우에는 전체 명칭을 사용한 후 약칭함
제6조(위원회) ① 도지사는 청년일자리 창출 촉진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전북특별자치도청년일자리창출촉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1. 생략 2. 그 밖에 청년고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1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은 도지사가 위촉하고 과반수는 외부 인사 중 민간위원으로 한다. 위원장은 경제부지사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한다. ③ 생략 1. ~ 3. 생략 4. 전북특별자치도 교육청, 도내 대학교 총장·학장의 추천을 받은 고등학생 또는 대학생 대표 ④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1회 연임할 수 있으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⑤ ~ ⑥ 생략 ⑦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제6조(위원회) ① 도지사는 청년일자리 창출 촉진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전북특별자치도 청년일자리 창출촉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1. 현행과 같음 2. 그 밖에 위원회가 청년고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1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은 도지사가 위촉하고 과반수는 외부 인사 중 민간위원으로 한다. 위원장은 경제부지사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현행과 같음 1. ~ 3. 현행과 같음 4.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도 내 대학교 총장·학장의 추천을 받은 고등학생 또는 대학생 대표 ④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으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⑤ ~ ⑥ 현행과 같음 ⑦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띄어쓰기 수정 -주어를 신설하여 구체적인 문장으로 정비 -고유명사는 붙여씀 -띄어쓰기 정비 권고 -문장표현 정비 권고

현 행	개정안	비고
위원 해촉에 관한 사안의 경우 제5항의 규정에 따른다.	위원 해촉에 관하여는 제5항에 따른다.	
제9조(행·재정적 지원) ① 도지사는 청년일자리 창출 사업을 수행하는 관련 기관이나 비영리단체 등에 대한 행정적 지원 또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그 사업에 따른 소요경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경비지원 방법·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전북특별자치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③ 이하 생략	제9조(행·재정적 지원) ① 도지사는 청년일자리 창출 사업을 수행하는 관련 기관이나 비영리단체 등에 대한 행정적 지원 또는 예산의 범위에서 그 사업에 따른 소요경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삭제> ③ 이하 현행과 같음	-중복적인 표현 정비 권고 -재정지원에 관해 선언적인 의미만을 규정하면, 그에 따른 구체적인 사항은 당연히 「전북특별자치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적용받으므로 규정의 실익이 없음(법제처, 2023년 우수조례 및 자치법규 입법컨설팅 사례집, 107면)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삭제>	-시행규칙은 개별 조례에서 위임이 없더라도 조례의 집행에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규칙으로 규정할 수 있으므로 삭제 권고

연 번	조례명	분 류	위임근거	시행일	비 고
22	**전북특별자치도 유통산업 상생 협력 및 대규모 점포 등의 입점 예고에 관한 조례**	자치조례	-	2011. 2. 7., 제정 (일부개정 2회) [시행 2024. 1. 18.] [전북특별자치도조례 제5399호, 2023. 12. 8., 일부개정]	■ 개정 권고 □ 통합 권고 □ 폐지 권고 □ 이행 권고 ■ 일반 정비 □ 현행 유지 □ 기타( )

사전 검토

○ 기본자료 분석

- (2-3) 조례 제3조에 따라 '전북특별자치도유통산업상생협력계획'을 수립함
- (2-5) 조례 제6조에 따라 지역 유통산업 실태조사 및 분석을 시행할 예정임
- (7-1) 조례 제9조에 따라 유통산업상생발전협의회를 둠
- (7-5) 상생협력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등을 수행하기 위해 위원회를 유지해야 함

○ 기타의견

- (8-1) 대형유통기업과 중소유통기업 및 소상공인 간의 상생협력 추진 시 필요하여 조례를 유지해야 함

입법체계 분석

○ 조례 제정 목적

- 대형유통기업과 중소유통기업 및 소상공인간 상생의 협력관계를 공고히 하여 소상공인 보호 및 지역 유통산업의 균형발전을 도모하고 지역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함

○ 자치법규 입안기준 부합성

- 자치법규 입안기준에 부합하도록 인용조문 오류, 일반적인 위임규정 삭제 등 일반 정비 필요

○ 위임 적합성 평가

- 자치조례로 해당사항 없음

평가지표에 따른 평가

○ 분석지표별 평가

평가항목	평가항목별 검토 내용
1. 입법 근거 및 적법성	자치사무의 범위에서 적절하게 제정되었음
2. 조례의 실효성	제4조에 지원 조항을 통해 조례의 실효성을 확보하고 있음
3. 조례 내용의 적정성	중소 유통기업과 대규모 점포의 상생을 위한 조례로, 조례 내용이 적정함
4. 조례의 공평성	장애, 성별, 나이 등에 관한 사회적 편견, 고정관념이 반영된 표현 및 차별 규정 없음
5. 주민 수용성	조례의 체계 및 용어가 주민이 알기 쉽게 되어 있음
6. 전북자치도 현실부합성	전북특별자치도에 입점하게 될 대규모 유통점포와 중소 유통기업의

	상생을 위하여 제정된 본 조례는 행정수요를 반영하고 있어 전북특별자치도 현실에 부합함
7. 위원회 운영의 적정성	위원회가 운영 관련 규정이 있지만(임의규정) 위원회 개최실적이 없음
※ 기타 의견	없음

○ 타 시·도 유사 조례와의 비교

전북특별자치도 유통산업 상생협력 및 대규모점포 등의 입점예고에 관한 조례	서울특별시 유통업 상생협력 및 소상공인 지원과 유통분쟁에 관한 조례	경기도 유통업 상생협력 및 유통분쟁에 관한 조례	경상북도 유통업 상생협력과 소상인 보호 조례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제3조(상생협력계획의 수립·시행)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행계획의 수립·시행)	제3조(상생협력계획의 수립·시행)
제4조(중소유통기업 및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	제4조(상생협력계획의 수립・시행)	제4조(대형유통기업의 지역사회 기여 및 협력)	제4조(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
제5조(대형유통기업의 지역사회 기여 및 협력 등)	제5조(대형유통기업의 지역사회 기여 및 협력 등)	제5조(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 설치)	**제5조(소상인의 경쟁력 향상 지원)**
제6조(유통산업의 실태조사)	**제6조(유통분쟁조정위원회)**	제6조(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 회의)	제6조(대형 유통기업 등의 지역사회 기여 및 협력 등)
제7조(입점예고)	**제6조의2(분쟁의 조정)**	**제7조(유통분쟁조정위원회 설치)**	제7조(상생협력사업의 지원)
제8조(상권조사 및 입점지역 등의 조정 권고)	제7조(위원회의 구성)	**제8조(분쟁의 조정)**	
제9조(유통산업상생발전협의회)	제8조(위원회의 운영)	제9조(준용규정)	
제10조(협의회의 구성)	제8조의2(위원의 제척・기피・회피)	제10조(포상)	
제11조(협의회의 운영)	제8조의3(위원의 위촉 해제)	제11조(행정 및 재정 지원)	
제12조(전통상업보존구역의 지정)	제9조(상생협력 촉진 지원)	제12조(시행규칙)	
제13조(대규모점포 등의 등록 심의)	제10조(상권영향 조사 등)		
제14조(상생협력 촉진 지원)	제11조(입점지역 등의 조정)		
제15조(포상)	제12조(영업시간 등의 제한)		
제16조(비밀의 유지)	제13조(비밀의 유지)		
제17조(시행규칙)	제14조(시행규칙)		

- 서울특별시와 경기도 조례에서는 '분쟁의 조정'을 위한 위원회를 두고 관련 규정을 둔 반면, 전북특별자치도의 조례는 분쟁조정에 초점을 두기 보다는 대규모점포 등의 운영자로 하여금 입점예정

60일 전에 '입점예고'하는 것을 별도의 조문으로 둔 점에서 차이가 있음. 이처럼 '입점예고'에 초점을 둔 규정은 전북특별자치도에서만 운영 중인 조문으로 보임

- 경상북도 조례에서는 유통업의 상생협력에 있어 소상인의 경쟁력 향상을 위한 지원에 초점을 둔 규정을 두고 있음

○ 규제사항 평가

- 특이사항 없음

목적달성도 및 부수효과 분석

○ 조례 목적달성도 평가

- 조례가 제정된 이후 조례를 기반으로 한 사업이 이뤄진 실적이 없고, 현재 실태조사 및 분석을 시행할 예정으로 있어 현재까지는 목적달성도가 낮으나, 장기적으로 추후에 평가할 필요가 있음

○ 부수효과

- 전북특별자치도에 입점하게 될 대규모 유통점포와 중소 유통기업의 상생을 통해 지역사회의 안정적인 발전을 도모할 수 있음

관계법령

- 자치조례로 해당사항 없음

조례 개정방안

○ 조례 개정 방향

- 제1조, 제2조, 제3조, 제8조, 제9조, 제10조, 제14조, 제15조: 법제처 자치법규 입안기준에 따른 정비(상위법 조문 인용오류 정비, 당연규정 삭제 등)
- 제12조, 제13조: 시·군 조례로 정할 내용으로 전북특별자치도 조례에서 규정할 실익이 없으므로 삭제 권고
- 제16조: 비밀준수 의무사항 삭제 권고
- 제17조: 시행규칙은 개별 조례에서 위임이 없더라도 조례의 집행에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규칙으로 규정할 수 있으므로 삭제 권고

○ 개정안

현 행	개정안	비고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형유통기업과 중소유통기업 및 소상공인간 상생의 협력관계를 공고히하여 소상공인 보호 및 지역 유통산업의 균형발전을 도모하고 지역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형유통기업과 중소유통기업 및 소상공인 간 상생의 협력관계를 공고히 하여 소상공인 보호 및 지역 유통산업의 균형발전을 도모하고 지역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띄어쓰기 정비 권고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유통산업"이란 「유통산업발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산업을 말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유통산업"이란 「유통산업발전법」 제2조제1호에 따른다.	-상위법령의 용어정의 규정을 그대로 규정할 경우에는 "「○○법」 제○조에

현 행	개정안	비고
2. "대규모점포"란 「유통산업발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점포의 집단을 말한다. 3. "준대규모점포"란 「유통산업발전법」 제2조제3호의2에 따른 점포를 말한다. 4. "대규모점포 등"이란 제2호 및 제3호를 포함하여 말한다. 5. 생략 6. "중소유통기업"이란 유통산업을 영위하는 자 중 제5호의 대형유통기업을 제외한 자로서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의한 중소기업자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7. 생략 8. "전통시장"이란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통시장을 말한다.	2. "대규모점포"란 「유통산업발전법」 제2조제3호에 따른다. 3. "준대규모점포"란 「유통산업발전법」 제2조제4호에 따른다. 4. "대규모점포등"이란 제2호 및 제3호를 포함한 것을 말한다. 5. 현행과 같음 6. "중소유통기업"이란 유통산업을 영위하는 자 중 제5호의 대형유통기업을 제외한 자로서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7. 현행과 같음 8. "전통시장"이란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다.	따른다"고 표현함 -제3호: 인용조문 오류 정비 권고 -제4호: 문장 표현 정비 권고 -제6호: 조항 인용표기 방식에 맞게 정비 권고 -정의에서 사용하는 '등'은 한 단어로 판단하여 붙여 씀(이하 같음)
제3조(상생협력계획의 수립·시행) ① 전북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대형유통기업과 중소유통기업 및 소상공인 간의 상생협력을 촉진하기 위해 전북특별자치도유통산업상생협력계획(이하 "상생협력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시행해야 한다. ② 1. ~ 6. 생략 7. 그 밖에 상생협력 촉진을 위해 필요한 사항	제3조(상생협력계획의 수립·시행) ① 전북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대형유통기업과 중소유통기업 및 소상공인 간의 상생협력을 촉진하기 위해 전북특별자치도 유통산업 상생협력계획(이하 "상생협력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시행해야 한다. ② 1. ~ 6. 현행과 같음 7. 그 밖에 도지사가 상생협력 촉진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조례 제명과 같이 띄어쓰기 하도록 정비 권고 -주어를 명시하여 구체적인 문장으로 정비(이하 같음)
제8조(상권조사 및 입점지역 등의 조정 권고) ① 도지사는 유통산업상생발전협의회의 요청이 있거나, 제3조에 따라 상생협력계획 수립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또는 제7조 입점예고에 따른 신청이 있을 경우 대규모점포 등이 지역상권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할 수 있다.	제8조(상권조사 및 입점지역 등의 조정 권고) ① 도지사는 유통산업상생발전협의회의 요청이 있거나, 제3조에 따라 상생협력계획 수립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또는 제7조 입점예고에 따른 신청이 있을 경우 대규모점포 등이 지역상권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할 수 있다.	-쉼표 삭제
제9조(유통산업상생발전협의회) ① 도지사는 대형유통기업과 중소유통기업 및 소상공인 간의 상생협력 촉진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전북특별자치도유통산	제9조(유통산업상생발전협의회) ① 도지사는 대형유통기업과 중소유통기업 및 소상공인 간의 상생협력 촉진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전북특별자치도 유통산	-띄어쓰기 정비 및 조사 정비 권고

현 행	개정안	비고
업상생발전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1. ~ 3. 생략 4. 지역내 생산되는 상품 및 농축수산물의 구매 및 판로개척을 위한 협력에 관한 사항 5. 이하 생략	업 상생발전 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1. ~ 3. 현행과 같음 4. 지역 내에서 생산되는 상품 및 농축수산물의 구매 및 판로개척을 위한 협력에 관한 사항 5. 이하 현행과 같음	
제10조(협의회의 구성) ① 생략 ② 협의회의 회장과 부회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위촉 또는 임명한다. ③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결원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④ 이하 생략	제10조(협의회의 구성) ① 현행과 같음 ② 협의회의 회장과 부회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위촉 또는 임명한다. ③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④ 이하 현행과 같음	-제2항: 띄어쓰기 정비 권고 -제3항: 연임 횟수에 대한 규정이 필요한 경우가 아니라면, 연임을 허용한다는 사실을 규정할 필요는 없음<2022 자치법규 입안 길라잡이, 법제처, p.224 참고> -제3항 단서: "보궐위원"으로 규정하도록 정비 권고
제12조(전통상업보존구역의 지정) ① 시장·군수는 지역 유통산업의 전통과 역사를 보존하기 위하여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전통시장이나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정하는 전통상점가의 경계로부터 500미터 이내의 범위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지역을 전통상업보존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전통상업보존구역의 범위, 지정 절차 및 지정 취소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정한다.	<삭제>	-「유통산업발전법」 제13조의3에서 시장·군수의 권한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시·군 조례로 정할 내용으로 전북특별자치도 조례에서 규정할 실익이 없으므로 삭제 권고
제13조(대규모점포 등의 등록 심의) ① 생략 ② 심의위원회에서는 제1항에 따른 대규모점포 등 개설 등록신청에 따른 구비서류, 절차, 확인사항, 심의위원회의 설치·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	<삭제>	-「유통산업발전법」 제8조에서 시장·군수의 권한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시·군 조례로 정할 내용으로 전북특별자치도 조례에서 규정

현 행	개정안	비고
례로 정한다.		할 실익이 없으므로 삭제 권고
제14조(상생협력 촉진 지원) 도지사는 상생협력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때에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상생협력 사업 추진에 필요한 행·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14조(상생협력 촉진 지원) 도지사는 상생협력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때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상생협력 사업 추진에 필요한 행·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중복적인 표현 정비 권고
제15조(포상) ① 도지사는 이 조례를 위반하거나 대형유통기업의 위법행위에 대해 신고한 자에 대하여 그 신고내용이 위반 또는 위법사항으로 확인된 경우에는 포상할 수 있다. ② 생략	제15조(포상) ① 도지사는 이 조례를 위반한 행위 또는 대형유통기업의 위법행위에 대해 신고한 자에 대하여 그 신고내용이 위반 또는 위법사항으로 확인된 경우에는 포상할 수 있다. ② 현행과 같음	-주술관계에 맞게 문장 표현 정비 권고
제16조(비밀의 유지) 협의회의 위원 및 관련자는 업무상 인지한 각 유통기업의 영업상 비밀을 공개할 수 없다.	<삭제>	-상위법인 「개인정보 보호법」 제59조(금지행위)제2호, 제60조(비밀유지) 등에 규정하고 있어 조례에 재기재할 실익이 없음. 또한, 업무종사자가 비밀을 누설할 경우에는 다음 법 조항을 적용받게 되므로 삭제 권고(「형법」 제127조(공무상 비밀의 누설)-공무원인자가 비밀을 누설한 경우 처벌규정, 「형법」 제317조(업무상 비밀누설)-변호사등이 비밀을 누설한 경우 처벌규정, 「민법」 제750조(불법행위의 내용)에 따른 불법행위책임 (손해배상책임)부담)
제1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	<삭제>	-시행규칙은 개별 조례에서 위임이 없

현 행	개정안	비고
한다.		더라도 조례의 집행에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규칙으로 규정할 수 있으므로 삭제 권고

연 번	조례명	분 류	위임근거	시행일	비 고
23	**전북특별자치도 경제교육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자치조례	-	2020. 2. 28., 제정 (일부개정 4회) [시행 2024. 1. 18.] [전북특별자치도조례 제5399호, 2023. 12. 8., 일부개정]	■ 개정 권고 □ 통합 권고 □ 폐지 권고 □ 이행 권고 ■ 일반 정비 □ 현행 유지 □ 기타( )

사전 검토

○ 기본자료 분석

- (2-3) 기획재정부 경제교육 추진계획에 따른 계획을 수립 예정임
- (2-5) 연 2회 전북특별자치도, 경제교육센터, 민간단체, 학계 등의 인사를 초청해서 협력체계를 구축함
- (2-5) 조례 제15조에 따라 전주대 산학협력단(전북경제교육센터)에 업무를 위탁함
- (3-1) 조례 제9조에 따라 재정지원을 실시할 수 있음
- (3-3) 2022년부터 2024년까지 아래와 같이 예산을 확보하고 집행함 (금액단위: 천원)

연도	사업명	필요예산	확보예산	집행액	집행내역
2022 2023 2024	경제교육 활성화 지원	50,000	50,000	50,000	경제교육센터 운영 등 초중고 경제교육 지원 등 취약계층 경제교육 지원 등

○ 기타의견

- (8-1) 자치사무이긴 하나, 경제교육지원법과의 대응 및 경제교육 활성화 지원 근거가 필요하여 조례를 유지해야 함

입법체계 분석

○ 조례 제정 목적

- 전북특별자치도민이 경제 관련 지식을 습득하고 합리적인 경제의식의 함양과 바람직한 경제주체가 되도록 경제교육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 자치법규 입안기준 부합성

- 자치법규 입안기준에 부합하도록 연임 규정 정비 필요

○ 위임 적합성 평가

- 자치조례로 해당사항 없음

평가지표에 따른 평가

○ 분석지표별 평가

평가항목	평가항목별 검토 내용
1. 입법 근거 및 적법성	자치사무의 범위에서 적절하게 제정되었음
2. 조례의 실효성	제7조에 지원 조항을 통해 조례의 실효성을 확보하고 있음

3. 조례 내용의 적정성	전북특별자치도의 경제교육을 활성화하기 위한 조례로, 조례 내용이 적정함
4. 조례의 공평성	장애, 성별, 나이 등에 관한 사회적 편견, 고정관념이 반영된 표현 및 차별 규정 없음
5. 주민 수용성	조례의 체계 및 용어가 주민이 알기 쉽게 되어 있음
6. 전북자치도 현실부합성	전북특별자치도에서 시행될 경제 교육을 지원하기 위하여 제정된 본 조례는 행정수요를 반영하고 있어 전북특별자치도 현실에 부합함
7. 위원회 운영의 적정성	제10조에서 협의회를 설치하도록 하고 있는데, 협의회 운영의 실적을 확인할 수 없음(2023년 12월 개정사항으로 2024년 이후 실적으로 적정성을 평가할 필요가 있음)
※ 기타 의견	없음

○ 타 시·도 유사 조례와의 비교

전북특별자치도 경제교육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서울특별시 경제교육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경상북도 경제교육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경기도 경제교육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제3조(기본목표)	제3조(기본원칙)	제3조(도지사의 책무)	제3조(기본원칙)
제4조(도지사의 책무)	제4조(책무)	제4조 삭제	제4조(적용범위)
제5조(교육감의 책무)	제5조(경제교육 활성화 기본계획)	제5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5조(도지사의 책무)
제6조(계획의 수립)	제6조(경제교육활성화 위원회 설치 및 기능)	제6조(경제교육 기본계획)	제6조(경제교육 기본계획)
제7조(경제교육의 사업 지원)	제7조(위원회 구성)	제7조(경제교육추진위원회)	제7조(재정지원)
제8조(전문인력 양성)	제8조(위원의 임기)	제8조(회의)	제8조(경제교육추진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
제9조(지원)	제9조(위원장의 직무)	제9조(경제교육 추진사업)	제9조(전문인력 양성)
제10조(협의회의 설치)	제10조(위원회 운영)	제10조(경제교육인력 양성)	제10조(경제교육의 위탁)
제11조(협의회의 구성)	제11조(경제교육인력의 양성 등)	제11조(경제교육의 위탁)	제11조(교류협력 등)
제12조(위원의 해촉)	제12조(경제교육의 위탁)	제12조(재정지원)	제12조(공청회 등)
제13조(협의회의 운영)	제13조(재정지원)	제13조(교류협력 등)	제13조(시행규칙)
제14조(수당 등)	제14조(교류협력)	제14조(공청회 등)	
제15조(업무의 위탁)	제15조(시행규칙)	제15조(시행규칙)	
제16조(교류협력 등)			
제17조(시행규칙)			

- 타 시·도의 조례와 실질적인 규정내용이 유사하여 특별한 시사점 없음

○ 규제사항 평가

- 특이사항 없음

목적달성도 및 부수효과 분석

○ 조례 목적달성도 평가

- 조례 내용에 따라 다양한 계층의 전북특별자치도민에게 경제교육을 실시하고 있다는 점에서 조례의 목적이 달성되고 있음

○ 부수효과

- 전북특별자치도민 경제교육을 통해 기본적인 경제 상식을 갖출 수 있음

관계법령

- 자치조례로 해당사항 없음

조례 개정방안

○ 조례 개정 방향

- 제1조, 제3조, 제4조, 제7조, 제10조, 제11조, 제12조: 법제처 자치법규 입안기준에 따른 정비(용어 수정, 당연규정 삭제 등)
- 제13조: 조례 제10조에서 협의회를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조례 제13조제2항에서 연간 1회 이상 개최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협의회 개최 관련 실적을 확인할 수 없다는 점에서 협의회 구성 및 운영 권고. 다만, 협의회의 운영이 실질적으로 어려운 경우 협의회를 정기적으로 개최하도록 하고 있는 현재의 규정을 개정하여 필요한 경우 협의회를 구성하여 운영하도록 규정을 개정하는 방안을 검토할 수 있을 것임
- 제14조: 위원회의 수당 및 여비 규정의 경우 「전북특별자치도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등이 당연히 적용되는 것이므로 규정 실익이 없지만, 조례의 완성도·이해도를 위하여 조례명은 표기하지 않고 단순히 선언적 규정으로만 정비
- 제15조: 위탁 규정의 경우 「전북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 등이 당연히 적용되는 것이므로 규정 실익이 없지만, 조례의 완성도·이해도를 위하여 조례명은 표기하지 않고 단순히 선언적 규정으로만 정비
- 제17조: 시행규칙은 개별 조례에서 위임이 없더라도 조례의 집행에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규칙으로 규정할 수 있으므로 삭제 권고

○ 개정안

현 행	개정안	비고
제2조(정의) 생략 1. "경제교육"이란 「경제교육지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교육을 말한다. 2. "경제교육단체"란 법 제2조제2호에 따른 기관 또는 단체를 말한다. 3. 생략 4. "경제교육인력"이란 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제2조(정의) 현행과 같음 1. "경제교육"이란 「경제교육지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다. 2. "경제교육단체"란 법 제2조제2호에 따른다. 3. 현행과 같음 4. "경제교육인력"이란 법 제2조제3호에 따른다.	-상위법령의 용어정의 규정을 그대로 규정할 경우에는 "「○○법」 제○조에 따른다"고 표현함
제3조(기본목표) 생략	제3조(기본이념) 현행과 같음	-기본이념의 규정은

현 행	개정안	비고
		기본원칙, 기본방향 등 여러 가지로 표현하고 있으나 통일을 기하기 위해 원칙적으로 "기본이념"으로 규정하도록 정비 권고
제4조(도지사의 책무) 전북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경제교육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관련 시책 및 사업을 적극 발굴하여 추진하고, 이에 수반되는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	제4조(도지사의 책무) 전북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경제교육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관련 시책 및 사업을 적극 발굴하여 추진하고, 필요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	-문장 정비
제7조(경제교육의 사업지원) 생략 1. 생략 2. 그 밖에 경제교육지원사업과 경제교육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7조(경제교육의 사업지원) 현행과 같음 1. 현행과 같음 2. 그 밖에 도지사가 경제교육지원사업과 경제교육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주어를 명시하여 구체적인 문장으로 정비
제10조(협의회의 설치) ① 도지사는 경제교육 활성화를 위한 제반 시책을 심의·조정하고, 전북특별자치도·민간단체·학계 각 분야별 상호협력 체계를 강화하기 위하여 전북특별자치도경제교육추진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설치한다.	제10조(협의회의 설치) ① 도지사는 경제교육 활성화를 위한 제반 시책을 심의·조정하기 위하여 전북특별자치도 경제교육 추진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설치한다.	-상호협력체계 강화는 제16조에 명시되어 있어, 중복되는 자구 삭제 -띄어쓰기 수정
제12조(위원의 해촉) 위원의 해촉은 「전북특별자치도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7조에 따른다.	<삭제>	-「전북특별자치도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명시되어 있어 재기재할 실익이 없으므로 삭제 권고
제13조(협의회의 운영) ① 생략 ② 정기회의는 연간 1회 이상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소집한다. ③ 생략	제13조(협의회의 운영) ① 현행과 같음 ②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소집한다. ③ 현행과 같음	-필요한 경우 협의회를 소집하여 개최하도록 규정 정비 권고
제14조(수당 등) 협의회에 참석한 위	제14조(수당 등) 협의회에 참석한 위	-수당 및 여비에 관

현 행	개정안	비고
촉직 위원에 대하여는 「전북특별자치도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5조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촉직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해 선언적인 의미만을 규정하면, 그에 따른 구체적인 사항은 당연히 「전북특별자치도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적용받으므로 규정의 실익이 없음(법제처, 2023년 우수조례 및 자치법규 입법컨설팅 사례집, 226면)
제15조(업무의 위탁) ① 생략 ② 제1항에 따라 경제교육을 위탁하는 경우, 필요한 절차와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전북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 또는 「전북특별자치도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대행에 관한 조례」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15조(업무의 위탁) ① 현행과 같음 ② <삭제>	-업무위탁에 대한 선언적인 의미만을 규정하면, 그에 따른 구체적인 사항은 당연히 「전북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를 적용 받으므로 규정의 실익이 없음(법제처, 2023년 우수조례 및 자치법규 입법컨설팅 사례집, 108면)
제1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삭제>	-시행규칙은 개별 조례에서 위임이 없더라도 조례의 집행에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규칙으로 규정할 수 있으므로 삭제 권고

연 번	조례명	분 류	위임근거	시행일	비 고
24	**전북특별자치도 고등학교졸업자 고용촉진 조례**	자치조례	-	2013. 7. 12., 제정 (일부개정 2회) [시행 2024. 1. 18.] [전북특별자치도조례 제5399호, 2023. 12. 8., 일부개정]	□ 개정 권고 ■ 통합 권고 □ 폐지 권고 □ 이행 권고 ■ 일반 정비 □ 현행 유지 □ 기타( )

사전 검토

○ 기본자료 분석

- (1-1) 본 조례는 「청년고용촉진특별법」과 관련된 내용을 규정하고 있는 자치조례임
- (1-4) 근거 법령이 2023년 12월 31일 일부개정됨
- (2-2) 조례의 내용이 "고등학교졸업자"는 「전북특별자치도 청년일자리 창출 촉진에 관한 조례」의 "청년"에 포함되므로 해당 조례와 통합이 필요함
- (2-3) 조례 제4조에 따라 고등학교졸업자 고용촉진 대책을 수립해야하나, 해당하는 내용이 「전북특별자치도 청년일자리 창출 촉진에 관한 조례」에 따라 수립한 「2024년 전북특별자치도 청년일자리 창출 계획」에 이미 포함되어 있어 별도의 계획을 수립하지 않음
- (3-1) 조례 제9조에 따라 고등학교졸업자 고용촉진을 위하여 제6조에서 정한 고용목표를 달성한 제3조제2항에 따른 공기업 등에 대해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음

○ 기타의견

- (8-1) "고등학교졸업자"는 「전북특별자치도 청년일자리 창출 촉진에 관한 조례」의 "청년"에 포함되므로 해당 조례와 통합이 필요함
- (8-3) 다른 유사한 조례와 통합하여 운영할 필요성이 있음

입법체계 분석

○ 조례 제정 목적

- 「청년고용촉진 특별법」에 따라 전북특별자치도 지역 고등학교졸업자들의 일자리 창출을 촉진하여 지속적인 경제발전과 사회안정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함

○ 자치법규 입안기준 부합성

- 자치법규 입안기준에 부합하도록 띄어쓰기 정비 필요

○ 위임 적합성 평가

- 자치조례로 해당사항 없음

평가지표에 따른 평가

○ 분석지표별 평가

평가항목	평가항목별 검토 내용
1. 입법 근거 및 적법성	자치사무의 범위에서 적절하게 규정되었음
2. 조례의 실효성	고등학교졸업자 고용촉진 대책이 이미 「전북특별자치도 청년일자리

	창출 촉진에 관한 조례」에 따라 수립한 「2024년 전북특별자치도 청년 일자리 창출 계획」에 포함되었고, 조례에 따른 별도의 사업도 진행되지 않아 조례의 실효성이 낮음
3. 조례 내용의 적정성	조례의 목적에 맞도록 규정되어 내용은 적정한 것으로 평가됨
4. 조례의 공평성	장애, 성별, 나이 등에 관한 사회적 편견, 고정관념이 반영된 표현 없음
5. 주민 수용성	조례의 체계 및 용어가 주민이 알기 쉽게 되어 있음
6. 전북자치도 현실부합성	고교 졸업자 취업 지원책 발전에 기여하여 전북특별자치도 현실에 부합함
7. 위원회 운영의 적정성	위원회 운영 관련 규정이 없음
※ 기타 의견	없음

○ 타 시·도 유사 조례와의 비교

전북특별자치도 고등학교졸업자 고용촉진 조례	전라남도 고등학교졸업자 고용촉진 조례	서울특별시 고등학교졸업자 고용촉진 조례	경기도 고등학교졸업자 고용촉진 조례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제3조(책무)	제3조(책무)	제3조(책무)	제3조(도지사 등의 책무)
제4조(고등학교졸업자 고용촉진 대책의 수립)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례)	제4조(고등학교졸업자 고용촉진 대책의 수립)	제4조(고용촉진 대책의 수립)
제5조(고등학교졸업자 실태조사 등)	제5조(고등학교졸업자 고용촉진 대책의 수립)	제5조(고등학교졸업자 실태조사 등)	제5조(실태조사 등)
제6조(고등학교졸업자 고용 확대)	제6조(실태조사 등)	제6조(고등학교졸업자 고용 확대)	제6조(우선 채용)
제7조(고등학교졸업자 불이익 금지)	제7조(고용 확대)	제7조(고등학교졸업자 불이익 금지)	제7조(불이익 금지)
제8조(관계기관·단체와의 협력 등)	제8조(불이익 금지)	제8조(관계기관·단체와의 협력 등)	제8조(관계기관·단체와의 협력 등)
제9조(행정적·재정적 지원)	제9조(관계기관·단체와의 협력 등)	제9조(행정적·재정적 지원)	제9조(행정적·재정적 지원)
제10조(시행규칙)	제10조(행정적·재정적 지원)	제10조(시행규칙)	제10조(시행규칙)
	제11조(시행규칙)		

- 타 시·도의 조례가 실질적인 규정내용이 유사하여 특별한 시사점 없음

○ 규제사항 평가

- 특이사항 없음

목적달성도 및 부수효과 분석

○ 조례 목적달성도 평가

- 청년일자리 관련 정책 등과 중첩되는 부분이 있어 타 조례의 계획수립 등으로 대체하는 등 본 조례 자체만으로 목적달성도를 평가하기에 어려움이 있음

○ 부수효과

- 고등학교졸업자들에게도 취업 기회의 균형을 통한 사회 안정에 이바지할 수 있음

관계법령

- 자치조례로 해당사항 없음

조례 개정방안

○ 조례 개정 방향

- 제8조: 법제처 자치법규 입안기준에 따른 정비(문장 표현 정비)
- 제9조: 재정지원 규정의 경우 「전북특별자치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등이 당연히 적용되는 것이므로 규정 실익이 없지만, 조례의 완성도・이해도를 위하여 조례명은 표기하지 않고 단순히 선언적 규정으로만 정비
- 제17조: 시행규칙은 개별 조례에서 위임이 없더라도 조례의 집행에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규칙으로 규정할 수 있으므로 삭제 권고
- "고등학교졸업자"는 「전북특별자치도 청년일자리 창출 촉진에 관한 조례」의 "청년"에 포함되므로 유사 조례(「전북특별자치도 청년일자리 창출 촉진에 관한 조례」)와 통합 검토 권고

○ 개정안

현 행	개정안	비고
제8조(관계기관·단체와의 협력 등) ① 도지사는 고등학교졸업자 고용촉진 지원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중앙행정기관(그 소속·산하기관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와 같다) 및 일자리 관련 기관·단체 등과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② 생략	제8조(관계기관·단체와의 협력 등) ① 도지사는 고등학교졸업자 고용촉진 지원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중앙행정기관(그 소속·산하기관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및 일자리 관련 기관·단체 등과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② 현행과 같음	-문장 표현 정비 권고
제9조(행정적·재정적 지원) ① 생략 ② 제1항에 따른 경비지원 방법·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전북특별자치도 지방보조금 관리조례」에 따른다.	제9조(행정적·재정적 지원) ① 현행과 같음 ② <삭제>	-재정지원에 관해 선언적인 의미만을 규정하면, 그에 따른 구체적인 사항은 당연히 「전북특별자치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적용받으므로 규정의 실익이 없음(법제처, 2023년 우수조례 및 자치법규 입법컨설팅 사례집, 107면)
제1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삭제>	-시행규칙은 개별 조례에서 위임이 없더라도 조례의 집행에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규칙으로 규정할 수 있으므로 삭제 권고

연 번	조례명	분 류	위임근거	시행일	비 고
25	**전북특별자치도 수출 및 투자유공 업체 포상 조례**	자치조례	-	1998. 5. 1., 제정 (일부개정 8회) [시행 2024. 1. 18.] [전북특별자치도조례 제5399호, 2023. 12. 8., 일부개정]	□ 개정 권고 □ 통합 권고 □ 폐지 권고 □ 이행 권고 ■ 일반 정비 □ 현행 유지 □ 기타( )

사전 검토

○ 기본자료 분석

- (1-1) 본 조례는 수출증진에 노력하거나 전북특별자치도에 투자하여 지역경제활성화에 이바지하는 중·소수출업체 또는 국내외 투자기업을 선정하여 포상하기 위해 제정된 자치조례임
- (2-5) 전라북도 수출 및 투자유공 업체 포상을 2022년 7개 부문 8개 기업, 2023년 6개 부문 6개 기업, 2024년 8개 부문 8개 기업에 수여함
- (3-2) 포상 대상은 전북특별자치도 내 소재한 중소수출업체 또는 전북특별자치도에 투자한 국내외 투자기업으로 적정함
- (7-1) 조례 제6조에 따라 전북특별자치도 수출 및 투자유공업체 포상업체 선정 심사위원회를 설치함
- (7-3) 위원회 위원 9인 중 여성이 3인임
- (7-4) 2022년과 2023년 각 1회씩 위원회를 개최함
- (7-5) 지역경제에 이바지하는 전북특별자치도 내 중소기업에 대한 격려 및 포상이 필요하여 위원회를 계속 유지해야 함

○ 기타의견

- (8-4) 수출 분야와 관련하여 포상을 통해 기업들의 수출증진에 기여할 수 있다는 점에서 해당 조례를 통한 포상의 지속적인 추진 필요함

입법체계 분석

○ 조례 제정 목적

- 수출증진에 노력하거나 전북특별자치도에 투자하여 지역경제활성화에 이바지 중·소수출업체 또는 전북특별자치도에 투자한 국내외 투자기업을 선정하여 포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함

○ 자치법규 입안기준 부합성

- 자치법규 입안기준에 부합하도록 문장 표현 및 띄어쓰기 정비 필요

○ 위임 적합성 평가

- 자치조례로 해당사항 없음

평가지표에 따른 평가

○ 분석지표별 평가

평가항목	평가항목별 검토 내용
1. 입법 근거 및 적법성	조례 제정 목적이 전북특별자치도의 자치 사무 범위 내에 있는 적법한 조례임
2. 조례의 실효성	제4조에 따른 포상업체 추천과 제6조에 따른 위원회 조항을 통해 조례의 실효성을 확보하고 있음
3. 조례 내용의 적정성	전북특별자치도 중소기업 포상 및 격려라는 조례 내용이 적정함
4. 조례의 공평성	장애, 성별, 나이 등에 관한 사회적 편견, 고정관념이 반영된 표현 및 차별 규정 없음
5. 주민 수용성	조례의 체계 및 용어가 주민이 알기 쉽게 되어 있음
6. 전북자치도 현실부합성	전북특별자치도 중소기업 포상 및 격려를 위하여 제정된 본 조례는 행정수요를 반영하고 있어 전북특별자치도 현실에 부합함
7. 위원회 운영의 적정성	위원회가 규정대로 설치되었고 활발히 운영되고 있어 위원회의 운영이 적절함
※ 기타 의견	수출 분야와 관련하여 포상을 통해 기업들의 수출증진에 기여할 수 있다는 점에서 해당 조례를 통한 포상의 지속적인 추진 필요

○ 타 시·도 유사 조례와의 비교

전북특별자치도 수출 및 투자유공업체 포상 조례
제1조(목적)
제2조(포상대상)
제3조(포상의 종류)
제4조(포상대상업체 추천 등)
제5조(포상권자)
제6조(심사위원회)
제7조(포상대상업체 결정)
제8조(시상)
제9조(실비변상)
제10조(시행규칙)

- 타 시·도에서 수출 및 투자유공업체 포상 관련 조례를 운영하고 있는 곳이 없음

○ 규제사항 평가

- 특이사항 없음

목적달성도 및 부수효과 분석

○ 조례 목적달성도 평가

- 조례 내용에 따라 매년 다양한 기업에 포상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에서 조례의 목적이 달성되고 있다고 평가됨

○ 부수효과

- 수출 및 투자 유공업체를 포상하여 타 업체들에게 수출을 증진하기 위한 자극을 줄 수 있음

관계법령

- 자치조례로 해당사항 없음

조례 개정방안

○ 조례 개정 방향

- 제2조, 제3조: 조문 위치변경 및 제2조(정의), 제3조(적용범위)로 정비 권고
- 제4조, 제7조, 제8조: 법제처 자치법규 입안기준에 따른 정비(띄어쓰기, 표현 수정 등)
- 제6조: 조례 작성례 위원회 관련 규정에 맞게 수정
- 제9조: 위원회의 수당 및 여비 규정의 경우「전북특별자치도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등이 당연히 적용되는 것이므로 규정 실익이 없지만, 조례의 완성도・이해도를 위하여 조례명은 표기하지 않고 단순히 선언적 규정으로만 정비
- 제10조: 시행규칙은 개별 조례에서 위임이 없더라도 조례의 집행에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규칙으로 규정할 수 있으므로 삭제 권고

○ 개정안

현 행	개정안	비고
제3조(포상의 종류) ① 포상은 수출최우수부문·해외시장다변화부문·처음수출최우수부문·내국인투자우수부문·외국인투자우수부문으로 구분하여 시행한다. 1. 수출최우수라 함은 자체생산품 수출총액을 달러($)로 표시하여 그 실적이 우수함을 말한다. 2. 해외시장다변화라 함은 다수의 국가에 수출시장을 개척·확보함을 말한다. 3. 처음수출이라 함은 업체 창립후 최초의 해외수출을 말한다. 4. "내국인투자우수"라 함은 전북특별자치도에 기업을 이전 또는 신규로 투자한 실적에 우수함을 말한다. 5. "외국인투자우수"라 함은 전라북도에 외국자본을 투자한 실적이 우수함을 말한다. ② 도지사는 필요한 경우 3개 부문 이내로 포상부문을 추가할 수 있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수출최우수"란 자체생산품 수출총액을 달러($)로 표시하여 그 실적이 우수함을 말한다. 2. "해외시장다변화"란 다수의 국가에 수출시장을 개척·확보함을 말한다. 3. "처음수출"이란 업체 창립후 최초의 해외수출을 말한다. 4. "내국인투자우수"란 전북특별자치도(이하 "전북자치도"라 한다)에 기업을 이전 또는 신규로 투자한 실적에 우수함을 말한다. 5. "외국인투자우수"란 전북자치도에 외국자본을 투자한 실적이 우수함을 말한다. <삭제>	-원안 제3조 제목은 포상의 종류를 명시하고 있지만, 각 호의 내용은 정의에 대한 내용으로 검토안과 같이 수정 권고함 -문장부호 " " 추가 및 비문 정비 권고 -추측컨대, 포상명이어서 모두 붙여 사용하는 것으로 보이는데, 가독성 등을 제고하기 위해 띄어쓰기할 것을 권고 -"전라북도"를 "전북자치도"로 정비 권고
제2조(포상대상) 포상은 전북특별자치도내에 소재한 중·소수출업체 또는 전북특별자치도에 투자한 국내외 투자기업으로 한다.	제3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전북자치도 내에 소재한 중소수출업체 및 전북자치도에 투자한 국내외 투자기업에 적용한다.	-제2조(정의)의 각 조의 적용범위로 규정 권고
제4조(포상대상업체 추천 등) ① 도내 무역 또는 투자관련 기관·단체는 전북특별자치도수출 또는 투자유공포상대상업체를 추천할 수 있다.	제4조(포상대상업체 추천 등) ① 전북자치도 내 무역 또는 투자관련 기관·단체는 전북자치도 수출 또는 투자유공 포상대상업체를 추천할 수 있	-제1항: "전북자치도"로 약칭하도록 한 제2조제4호 정비안에 맞게 정비 권

현 행	개정안	비고
② 전북특별자치도수출 또는 투자유공포상대상업체를 추천할 때에는 규칙에서 정하는 서류를 구비하여 포상업체선정심사위원회에 포상예정일 30일전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의하여 접수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아니한다. ④ 생략	다. ② 전북자치도 수출 또는 투자유공포상대상업체를 추천할 때에는 규칙에서 정하는 서류를 구비하여 포상업체선정심사위원회에 포상예정일 30일 전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접수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아니한다. ④ 현행과 같음	고, 띄어쓰기 정비 권고 -제2항: 띄어쓰기 정비 권고 -제3항: 조항 표기 방식에 맞게 정비 권고
제6조(심사위원회) ① 포상대상업체를 선정하기 위하여 포상업체선정심사위원회(이하 "심사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심사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도지사가 위촉한 9인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심사위원회 위원장은 경제부지사가 되고, 위원은 도의원 1인과 관계국·과장을 포함한 무역관련 유관기관장 등으로 하며, 관련공무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며 관련 공무원 외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신설>	제6조(심사위원회) ① 포상대상업체를 선정하기 위하여 전북특별자치도 포상업체 선정심사위원회(이하 "심사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심사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9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심사위원회의 위원장은 경제부지사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 심사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1. 당연직: 담당 국장, 담당 과장 2. 위촉직 가.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의원 1명 나. 무역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다. 그 밖에 도지사가 심사와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1항: 각종 계획 등의 명칭앞에는 행정기관의 고유명칭이 표기되어야 함 -제2항: 문장 표현 정비 권고, 띄어쓰기 정비 권고 -조례 작성례의 위원회 관련 규정에 맞게 수정
제7조(포상대상업체 결정) ① 포상업체 선정은 심사위원 과반수이상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이상의 찬성으로 결정한다. ② 부문별 포상대상업체에 대한 심사는 2개업체이상일 경우로 한다. ③ 포상대상업체 선정심사는 전년도 7월 1일부터 당해년도 6월 30일까지의 실적을 대상으로 한다.	제7조(포상대상업체 결정) ① 포상업체 선정은 심사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결정한다. ② 부문별 포상대상업체에 대한 심사는 2개 업체 이상일 경우로 한다. ③ 포상대상업체 선정심사는 전년도 7월 1일부터 해당 연도 6월 30일까지의 실적을 대상으로 한다.	-제1항: "과반수"는 1/2을 초과한다는 의미로 일반적 의결정족수에 과반수 이상을 사용하지 않음 -제2항: 띄어쓰기 정비 권고 -제3항: 문장 표현 정비 권고

현 행	개정안	비고
제8조(시상) ① 전북특별자치도수출 및 투자유공업체 포상은 매년 12월 초에 실시하며, 포상대상업체 대표자 또는 그 대리인에게 수여한다. ② 포상수여업체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부상을 줄 수 있다.	제8조(시상) ① 전북특별자치도 수출 및 투자유공업체 포상은 매년 12월 초에 실시하며, 포상대상업체 대표자 또는 그 대리인에게 수여한다. ② 포상수여업체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부상을 줄 수 있다.	-제1항: 띄어쓰기 정비 권고 -제2항: 중복적인 표현 정비 권고
제9조(실비변상) 심사위원중 소속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전북특별자치도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의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9조(실비변상) 심사위원중 소속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수당 및 여비에 관해 선언적인 의미만을 규정하면, 그에 따른 구체적인 사항은 당연히 「전북특별자치도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적용받으므로 규정의 실익이 없음(법제처, 2023년 우수조례 및 자치법규 입법컨설팅 사례집, 226면)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도지사가 규칙으로 정한다.	<삭제>	-시행규칙은 개별 조례에서 위임이 없더라도 조례의 집행에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규칙으로 규정할 수 있으므로 삭제 권고

연 번	조례명	분 류	위임근거	시행일	비 고
26	**전북특별자치도 건설신기술 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	자치조례	-	2019. 8. 9., 제정 (일부개정 3회) [시행 2024. 5. 31.] [전북특별자치도조례 제5508호, 2024. 5. 31., 일부개정]	■ 개정 권고 □ 통합 권고 □ 폐지 권고 □ 이행 권고 ■ 일반 정비 □ 현행 유지 □ 기타( )

사전 검토

○ 기본자료 분석

- (1-1)「건설기술 진흥법」상 조례 입법을 명시적으로 규정한 조항은 없음. 그러나「건설기술 진흥법」제14조, 같은 법 시행령 제34조 및 제36조 등 건설신기술 활용에 관해 규정한 조항을 근거내용으로 하여 조례를 제정함
- (2-5) 2024년 3월 29일 포상 조항을 신설했으나, 건설신기술 보유 기업 및 개발자가 적고, 우수신기술개발자 및 우수사례 등에 대한 발주청 추천이 없었음
- (3-1) 조례 제13조에 따라 재정지원을 실시할 수 있음
- (3-2) 지원범위를 전북특별자치도 내 거주 기술개발자 또는 소재 중소기업으로 한정하여 적정함
- (3-3) 재정 지원 규정은 있으나, 최근 신설된 임의규정이며 지원대상인 건설신기술 보유 전북특별자치도 내 업체(4개소)의 재정지원 요청이 없었고, 해당 조항은 임의규정이므로 재정지원이 의무사항은 아니라 지원 실적이 없음
- (3-4) 조례상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는 "건설신기술 개발자 육성", "신기술의 실용화 및 보급"에 해당하는 사안에 대해 정형화하여 구체적으로 명시화하기 어려움
- (3-6) 조례 제13조와 제14조의 '재정·행정적 지원'과 '포상'에 관한 조문을 임의규정으로 구성하여 집행여부에 대해 행정기관에 재량권을 부여하였으며, 지원대상, 규모 등 재량권 범위는 적정함
- (6-1) 건설신기술 활용 촉진을 도모하기 위해「건설기술 진흥법」제14조제4항, 같은 법 시행령 제34조제3항과 조례 제8조의 내용이 동일함(우수한 신기술의 건설공사 설계 반영)
- (7-1) 조례 제4조에 따라 전북특별자치도 신기술활용위원회를 비상설위원회로 운영함
- (7-3) 비상설위원회이며, 위원회 구성 시 특정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함
- (7-5) 2022년 300,000원을 소요하여 위원회를 11회 개최함. 위원회 안건 발생 빈도가 적은 경우, 비상설 위원회로 전환하여 운영하도록 한 행정안전부 지침*에 따라 조례 개정을 통해 비상설위원회로 전환함(2024.03.29.).
  *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안부 예규, 2020.12.30.)」에 따라 발주청이 신기술 선정 외부전문가 자문회의, 공법선정 위원회 자체 진행하므로 위원회 개최 실적이 저조하나, 그 외 조례에서 정한 사항에 대한 심의·자문을 위해 위원회(비상설) 계속 설치 및 운영이 필요함

○ 기타의견

- (8-1) 전북특별자치도 내 건설신기술 보유 기업 및 활용실적은 저조하나, 관계법령의 취지와 중장기적 관점에서 건설신기술의 활용 촉진을 위해 조례의 유지가 필요함

입법체계 분석

○ 조례 제정 목적

- 「건설기술 진흥법」 제14조, 같은 법 시행령 제34조 및 제36조에 따라 전북특별자치도가 발주청으로 하는 건설공사에 신기술을 활용·촉진하도록 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함

○ 자치법규 입안기준 부합성

- 자치법규 입안기준에 부합하도록 약칭문 정비, 띄어쓰기 정비 필요

○ 위임 적합성 평가

- 자치조례로 해당사항 없음

평가지표에 따른 평가

○ 분석지표별 평가

평가항목	평가항목별 검토 내용
1. 입법 근거 및 적법성	자치사무의 범위에서 적절하게 제정되었음
2. 조례의 실효성	조례 시행과정에서 타 조례와의 충돌이나 모순 발생 사례와 유사 또는 동일한 타 조례의 제정 및 시행 사례가 없으므로 실효성이 확보됨
3. 조례 내용의 적정성	위원회 구성방법, 지원대상 및 범위 등 조례 내용이 적정함
4. 조례의 공평성	장애, 성별, 나이 등에 관한 사회적 편견, 고정관념이 반영된 표현 및 차별 규정 없음
5. 주민 수용성	조례의 체계 및 용어가 주민이 알기 쉽게 되어 있음
6. 전북자치도 현실부합성	건설신기술 활용.촉진을 도모하고자 하는 관련법 취지 및 필요성 등이 현실에 부합함
7. 위원회 운영의 적정성	위원회 안건 발생 빈도가 낮아, 행안부 지침에 따라 조례 개정을 통해 비상설위원회로 전환(2024.3.29.)하였음. 안건 발생 시 위원회를 구성하고 심의 의결 후 자동 해산되므로 적정함
※ 기타 의견	없음

○ 타 시·도 유사 조례와의 비교

전북특별자치도 건설신기술 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	경기도 건설신기술 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	서울특별시 건설신기술 활용촉진에 관한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건설신기술 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제3조(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제4조(전북특별자치도 신기술활용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제4조(신기술 활용 심의·자문)	제4조(설치)	제4조(신기술 활용 심의·자문)
제5조(신기술 활용 심의·자문)	제5조(심의·자문 요청)	제5조(기능)	제5조(심의·자문 요청)
제6조(심의·자문 요청)	제6조(심의·자문사항의 사후관리)	제6조(심의·자문 요청)	제6조(심의·자문사항의 사후관리)
제7조(심의·자문사항의 사후관리)	제7조(생애주기비용평가서 반영)	제7조(구성 등)	제7조(생애주기비용평가서 반영)
제8조(설계반영의무	제8조(설계반영의무)	제8조(준용규정)	제8조(설계반영의무)

등)			
제9조(계약)	제9조(계약)	제9조(심의·자문사항의 사후관리)	제9조(신기술 실명제)
제10조(실명제)	제10조(신기술 실명제)	제10조(설계반영의무)	제10조(자료축적 및 활용)
제11조(생애주기비용평가서 반영)	제11조(자료축적 및 활용)	제11조(계약)	제11조(포상)
제12조(자료축적 및 활용)	제12조(건설신기술에 대한 지원 등)	제12조(신기술 실명제)	제12조(시행규칙)
제13조(건설신기술에 대한 지원 등)	**제13조(건설신기술 전시회 및 경진대회 등)**	제13조(생애주기비용평가서 반영)	
제14조(포상)	제14조(포상)	제14조(자료축적 및 활용)	
제15조(시행규칙)	제15조(시행규칙)	제15조(포상)	
		제16조(시행규칙)	

- 경기도에서는 제13조(건설신기술 전시회 및 경진대회 등)에서 매년 건설신기술 개발자가 개발한 신기술을 전시하고, 영세 기술개발자의 기술 홍보 및 제도개선을 위한 의견교환, 기술개발자 간 정보교환, 신기술 적용 활성화를 위한 상담 등을 진행하는 건설신기술 전시회를 개최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음

○ 규제사항 평가

- 특이사항 없음

목적달성도 및 부수효과 분석

○ 조례 목적달성도 평가

- 본 조례에 따라 전북특별자치도 및 전북특별자치도 출자출연기관이 시행하는 건설공사에 건설신기술 적용을 촉진할 수 있어 조례의 목적이 달성되고 있다고 평가됨

○ 부수효과

- 건설신기술 확보를 통하여 향후 전북특별자치도의 건설산업 발전에 기여할 수 있음

관계법령

- 자치조례로 해당사항 없음

조례 개정방안

○ 조례 개정 방향

- 제1조, 제2조, 제3조, 제5조, 제6조, 제13조: 법제처 자치법규 입안기준에 따른 정비(띄어쓰기, 약칭표현 수정 등)
- 제2조의2: 조례 제8조제1항의 규정은 도지사의 책무와 관련된 내용으로 제2조의2를 신설하여 규정할 것을 권고
- 제13조: 타 시·도의 사례를 참고하여 건설신기술 전시회 및 경진대회 등에 관한 규정 신설 검토
- 제14조: 포상 규정의 경우 「전북특별자치도 포상 조례」 등이 당연히 적용되는 것이므로 규정 실익이 없지만, 조례의 완성도·이해도를 위하여 조례명은 표기하지 않고 단순히 선언적 규정으로만 정비
- 제15조: 시행규칙은 개별 조례에서 위임이 없더라도 조례의 집행에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규칙으로 규정할 수 있으므로 삭제 권고

○ **개정안**

현 행	개정안	비고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건설기술 진흥법」 제14조, 같은 법 시행령 제34조 및 제36조에 따라 전북특별자치도가 발주청으로 하는 건설공사(시·군에서 시행하는 도비 지원 또는 도비 보조금 사업을 포함한다)에 신기술을 활용·촉진하도록 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건설기술 진흥법」 제14조, 같은 법 시행령 제34조 및 제36조에 따라 전북특별자치도가 발주청으로 하는 건설공사에 신기술을 활용·촉진하도록 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목적조항에서 괄호문 삭제 정비 권고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건설공사"란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4호의 건설공사를 말한다. 2. "신기술"이란 「건설기술 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4조제1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고시한 새로운 건설기술로 법 제14조제2항에 따른 보호기간 내에 있는 기술을 말한다. 3. 생략 4. "생애주기비용"이란 건설공사 대상 시설물의 기획, 조사, 설계, 조달, 시공, 운영, 유지관리, 철거 등에 이르는 시설물의 내구연한 동안 발생하는 비용과 잔존가치를 포함한 총비용을 말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건설공사"란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4호에 따른다. 2. "신기술"이란 「건설기술 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4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다. 3. 이하 현행과 같음 4. "생애주기비용"이란 건설공사(시·군에서 시행하는 도비 지원 또는 도비 보조금 사업을 포함한다) 대상 시설물의 기획, 조사, 설계, 조달, 시공, 운영, 유지관리, 철거 등에 이르는 시설물의 내구연한 동안 발생하는 비용과 잔존가치를 포함한 총비용을 말한다.	-상위법령의 용어정의 규정을 그대로 규정할 경우에는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법」 제○조에 따른다"고 표현함 -제4호: 목적조항에서 삭제한 괄호문 추가 정비 권고
<신설>	제2조의2(책무) 전북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건설신기술의 활성화 촉진을 위한 다양한 시책을 추진할 수 있으며, 신기술 등이 선정 및 활용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조례 제8조제1항의 규정은 도지사의 책무와 관련된 내용으로 제3조를 신설하여 규정할 것을 권고함 -제3조로 신설 시 이하 조문번호 변경 검토 필요
제3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건설공사를 시행함에 있어 신기술을 적용하는 다음 각 호의 기관들(이하 "발주	제3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건설공사를 시행함에 있어 신기술을 적용하는 다음 각 호의 기관들(이하 "발주	-인용 조례 제명 띄어쓰기 정비 권고

현 행	개정안	비고
청"이라 한다)에 적용한다. 1. 「전북특별자치도 행정기구 설치 및 정원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른 본청·직속기관 및 사업소 2. 이하 생략	청"이라 한다)에 적용한다. 1. 「전북특별자치도 행정기구 설치 및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른 본청·직속기관 및 사업소 2. 이하 현행과 같음	
제5조(신기술 활용 심의·자문) ① ~ ② 생략 ③ 법 시행령 제75조에 따라 설계의 경제성 등 검토를 시행하는 건설공사는 위원회의 심의 또는 자문 대상에서 제외한다.	제5조(신기술 활용 심의·자문) ① ~ ② 현행과 같음 ③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이하 "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75조에 따라 설계의 경제성 등 검토를 시행하는 건설공사는 위원회의 심의 또는 자문 대상에서 제외한다.	-법 시행령은 약칭 한바 없으므로 원 제명으로 규정하도록 하고 약칭을 추가하도록 정비 권고
제6조(심의·자문 요청) 발주청은 제5조의 사항에 대하여 위원회의 심의 또는 자문의견을 받으려는 자는 심의요청서나 자문요청서에 관계 서류를 첨부하여 도지사에게 요청하여야 한다.	제6조(심의·자문 요청) 제5조에 따른 사항에 대하여 위원회의 심의 또는 자문의견을 받으려는 자는 심의요청서나 자문요청서에 관계 서류를 첨부하여 도지사에게 요청하여야 한다.	-불필요한 "발주청"을 삭제하도록 정비 권고
제13조(건설신기술에 대한 지원 등) 도지사는 도내 건설신기술 개발자 육성, 신기술의 실용화 및 보급 등에 필요한 재정적·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다만, 지원받을 수 있는 기술개발자 또는 기업은 도내 거주하는 사람 또는 도내에 소재지를 둔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에 한한다.	제13조(건설신기술에 대한 지원 등) 도지사는 전북자치도 내 건설신기술 개발자 육성, 신기술의 실용화 및 보급 등에 필요한 재정적·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다만, 지원받을 수 있는 기술개발자 또는 기업은 전북자치도 내 거주하는 사람 또는 전북자치도 내에 소재지를 둔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에 한한다.	-띄어쓰기 정비 권고
<신설>	제13조의2(건설신기술 전시회 및 경진대회 등) ① 도지사는 매년 건설신기술 개발자가 개발한 신기술을 전시하고, 영세 기술개발자의 기술홍보 및 제도개선을 위한 의견교환, 기술개발자 간 정보교환, 신기술 적용 활성화를 위한 상담 등을 진행하는 건설신기술 전시회를 개최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매년 건설신기술 개발 및 보급·활성화 등에 우수한 성과를 거둔 건설신기술을 시상하는 신	-타 시·도의 사례를 참고하여 건설신기술 전시회 및 경진대회 등에 관한 규정 신설 권고

현 행	개정안	비고
	기술 경진대회를 개최할 수 있다. ③ 도지사는 매년 건설신기술 분야의 연구활성화 및 기술개발을 촉진하기 위하여 정보박람회 및 연구발표회, 세미나 등을 개최할 수 있다. ④ 도지사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전시회 등을 효율적으로 개최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업무를 관련 법인, 기관,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제14조(포상) 도지사는 발주청의 추천을 받거나 자체적인 심사를 거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전북특별자치도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1. 이하 생략	제14조(포상) 도지사는 발주청의 추천을 받거나 자체적인 심사를 거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포상할 수 있다. 1. 이하 현행과 같음	-포상에 관해 선언적인 의미만을 규정하면, 그에 따른 구체적인 사항은 당연히 「전북특별자치도 포상 조례」를 적용 받으므로 규정의 실익이 없음(법제처, 2023년 우수조례 및 자치법규 입법컨설팅 사례집, 118면)
제15조(시행규칙)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외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삭제>	-시행규칙은 개별 조례에서 위임이 없더라도 조례의 집행에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규칙으로 규정할 수 있으므로 삭제 권고

연 번	조례명	분 류	위임근거	시행일	비 고
27	**전북특별자치도 여객자동차 운수사업 보조금 지원 조례**	위임조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50조,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43조	2006. 12. 29., 제정 (전부개정 1회, 일부개정 7회) [시행 2024. 1. 18.] [전북특별자치도조례 제5399호, 2023. 12. 8., 일부개정]	■ 개정 권고 □ 통합 권고 □ 폐지 권고 □ 이행 권고 ■ 일반 정비 □ 현행 유지 □ 기타( )

사전 검토

○ 기본자료 분석

- (1-1) 본 조례는「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제50조,「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제43조에 따라 제정된 위임조례임
- (2-5) 조례 제3조에 따라 시외버스 대폐차 지원사업에 160백만원, 시외버스 재정지원에 14,754백만원, 시내·농어촌버스 재정지원에 10,822백만원을 책정함
- (3-1) 조례 제3조에 따라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음
- (3-3) 조례 제3조에 따라 2022~2024년간 아래와 같이 예산을 확보하고 집행함

(단위: 천원)

연도	사업명	필요예산	확보예산	집행액	집행내역
2022	시외버스 대폐차 지원	160,000	160,000	159,996	시외버스 대폐차 지원
	시외버스 재정지원	20,177,000	20,177,000	20,177,000	비수익노선 손실액 일부 재정지원
	시내, 농어촌버스 재정지원	10,799,000	10,799,000	10,799,000	비수익노선 손실액 일부 재정지원
2023	시외버스 대폐차 지원	160,000	160,000	160,000	시외버스 대폐차 지원
	시외버스 재정지원	16,800,000	16,800,000	16,800,000	비수익노선 손실액 일부 재정지원
	시내, 농어촌버스 재정지원	13,056,000	13,056,000	13,056,000	비수익노선 손실액 일부 재정지원
2024	시외버스 대폐차 지원	160,000	160,000	수요조사 후 집행예정(12월중)	시외버스 대폐차 지원
	시외버스 재정지원	14,754,000	14,754,000	10,401,570	비수익노선 손실액 일부 재정지원(3분기까지 집행)
	시내, 농어촌버스 재정지원	10,822,000	10,822,000	6,016,382	비수익노선 손실액 일부 재정지원(2분기까지 집행)

- (6-1) 상위법령에 위배되지 않도록 통일성을 유지하기 위해「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제50조와 조례 제2장의 내용이 동일함
- (7-1) 조례 제9조에 따라 전북특별자치도 버스지원심의위원회를 둠
- (7-3) 위원회 위원 13인 중 여성 비율은 54%임
- (7-4) 2022년~2024년간 아래와 같이 위원회를 개최함

연도별	2022	2023	2024
개최건수	2회	2회	1회
개최일	(1차/서면) 1.19.~ 1.20. (2차/대면) 12.14.	(1차) 5.12. (2차) 10.6.	(1차) 2.21.
소요예산	700천원	900천원	600천원

- (7-5) 대중교통 서비스 제고와 여객자동차운수사업의 건전한 육성을 위한 보조금 지원을 위해 위원회를 설치하여 보조금 지원 및 방법에 관한 사항 및 여객자동차운수사업의 제도운영 및 서비스 개선에 관한 사항을 심의·자문하는 위원회의 역할이 필요함

○ 기타의견

- (8-1)「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제50조,「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제43조에 따라 위임된 조례이므로 현행대로 유지할 필요가 있음

입법체계 분석

○ 조례 제정 목적

- 대중교통의 서비스 제고와 여객자동차운수사업의 건전한 육성을 위하여 여객자동차운수사업에 대한 보조금 지원대상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함

○ 자치법규 입안기준 부합성

- 자치법규 입안기준에 부합하도록 인용 법령의 제명 오류 수정 등 정비 필요

○ 위임 적합성 평가

- 위임 범위에서 적절하게 규정하고 있음

평가지표에 따른 평가

○ 분석지표별 평가

평가항목	평가항목별 검토 내용
1. 입법 근거 및 적법성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50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43조에 따라 제정된 조례로 위임 범위에서 적절하게 규정하고 있음
2. 조례의 실효성	개별 사업계획 수립을 통한 조례의 실효성이 확보됨
3. 조례 내용의 적정성	재정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으로 사업추진 근거 조항이 적정함
4. 조례의 공평성	장애, 성별, 나이 등에 관한 사회적 편견, 고정관념이 반영된 표현 및 차별 규정 없음
5. 주민 수용성	조례의 체계 및 용어가 주민이 알기 쉽게 되어 있음
6. 전북자치도 현실부합성	조례 일부개정(`20.08.14.)으로 현실 부합성을 확보함
7. 위원회 운영의 적정성	위원회가 규정대로 설치되었고 활발히 운영되고 있어 위원회의 운영이 적절함
※ 기타 의견	없음

○ 타 시·도 유사 조례와의 비교

전북특별자치도 여객자동차운수사업	대구광역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 지원 조례	경상북도 여객자동차운수사업	전라남도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의 보조금

보조금 지원조례		재정지원 조례	지원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제3조(보조금 지원)	제3조(재정지원의 대상)	제3조(재정지원 대상사업)	제3조(지원 대상사업)
제4조(수익성이 없는 노선)	제4조(재정지원의 신청)	제4조(재정지원의 신청)	제4조(운송원가 및 운송수입금 산정)
제5조(회계감사 및 적자손실액 산정)	제5조(재정지원의 방법 및 절차)	제5조(재정지원의 결정)	제5조(보조금의 신청)
제6조(운송원가 및 운송수입금 산정)	**제6조(자금의 보조 또는 융자)**	제6조(재정지원의 방법 및 절차)	제6조(보조금 지원방법 및 절차)
제7조(보조금의 신청)	**제7조(융자알선 및 융자금 이자일부 보전)**	제7조(재정지원의 중단)	제7조(보조금의 조정·지원)
제8조(보조금 지원결정)	제8조(재정지원금의 정산보고)	제8조(경영 및 서비스 평가)	
제9조(위원회 설치)	제9조(재정지원의 중단 등)	제9조(위원회 운영)	
제10조(위원회 구성)	제10조(시행규칙)	제10조(모범운수사업자의 사기진작 등)	
제11조(위원회 기능)		제11조	
제12조(위원의 임기)		제12조(시행규칙)	
제13조(위원장)			
제14조(회의)			
제15조(위원의 의무)			
제16조(위원의 위촉해제등)			
제17조(위원의 제척·기피)			
제18조(간사와 서기)			
제19조(수당 등)			
제20조(사후관리)			
제21조(보조금 지원중단)			
제22조(차등지원)			
제23조(정보공개)			
제24조(준용)			
제25조(우수사업자에 대한 포상 등)			

- 대구광역시 조례에서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의 지원을 위해 보조금뿐만 아니라 융자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서울특별시, 울산광역시 등 융자 규정을 가진 광역지방자치단체 조례가 있지만, 전북특별자치도와 환경이 유사한 경상북도, 전라남도 조례 등에는 융자 규정을 가지고 있지 않음)

○ 규제사항 평가

- 특이사항 없음

목적달성도 및 부수효과 분석

○ 조례 목적달성도 평가

- 본 조례에 따라 매년 2~3천만원의 사업 지원을 하고 있고, 이러한 지원도 위원회의 심의 의결

과 회계감사 등의 방법을 통하여 적정하게 배분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본 조례의 제정 목적이 달성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됨

○ 부수효과

- 여객자동차운수사업자에 대해 보조금을 지원함으로써 대중교통서비스의 지속적 이용에 기여함

관계법령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50조

제50조(재정 지원) ① (생 략)

② 시·도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으면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자에게 필요한 자금의 일부를 보조하거나 융자할 수 있다. 이 경우 보조 또는 융자의 대상 및 방법과 보조금 또는 융자금의 상환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해당 시·도의 조례로 정한다.

1.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자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수행하는 경우
2. 여객의 안전을 위한 교통안전시설을 확충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3. 대중교통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버스교통체계를 개선하는 경우
4. 터미널이용객의 편의를 증진하기 위하여 경영이 어려운 터미널사업을 계속하게 할 필요가 있는 경우
5. 여객자동차운송사업(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인 경우만 해당한다)의 폐업 또는 감차를 통한 구조조정이 필요할 경우
6. 제3조제1항제3호에 따른 수요응답형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운영하는 경우
7. 운수종사자의 휴식에 필요한 시설을 설치·개선하는 경우
8. 운수종사자의 근로여건 및 처우개선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③ ~ ⑨ (생 략)

조례 개정방안

○ 조례 개정 방향

- 조례에서 전체 규정이 30조 미만인 경우에는 장(章)으로 나누지 않음(법제처, 2022 자치법규 길라잡이, 344면)
- 제2조, 제5조, 제6조, 제7조, 제9조, 제12조: 법제처 자치법규 입안기준에 따른 정비(인용 법령 제명 수정, 문장 표현 수정)
- 제10조: 위원회 규정에 맞게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분하여 규정하도록 수정 권고
- 제19조: 위원회의 수당 및 여비 규정의 경우 「전북특별자치도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등이 당연히 적용되는 것이므로 규정 실익이 없지만, 조례의 완성도·이해도를 위하여 조례명은 표기하지 않고 단순히 선언적 규정으로만 정비
- 제24조: 재정지원에 관해 선언적인 의미만을 규정하면, 그에 따른 구체적인 사항은 당연히 「전북특별자치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적용 받으므로 규정의 실익이 없음(법제처, 2023년 우수조례 및 자치법규 입법컨설팅 사례집, 107면)

○ 개정안

현 행	개정안	비고
제1장 총 칙	<삭제>	-장(章) 삭제

현 행	개정안	비고
제4조(수익성이 없는 노선) ① 생략 ② 제1항의 비수익노선은 법 제23조의 벽지노선 구간은 제외한다.	제4조(수익성이 없는 노선) ① 현행과 같음 ② 제1항의 비수익노선은 법 제23조제10호에 따른 벽지노선 구간은 제외한다.	-상위법령 조문 구체적으로 명시
제2장 보조금 신청 및 지원	<삭제>	-장(章) 삭제
제5조(회계감사 및 적자손실액 산정) ① 생략 ② 적자손실액 산정용역시 운송사업자는 매년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기준을 참고하여 도가 별도로 정한 기준에 의한 외부 회계감사를 받아야 하며, 그 결과에 따라 회계감사인은 운송사업자별·노선별로 운송원가를 산정하여야 한다. ③ 생략	제5조(회계감사 및 적자손실액 산정) ① 현행과 같음 ② 운송사업자는 매년 적자손실액 산정용역시 운송사업자는 매년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기준을 참고하여 도가 별도로 정한 기준에 의한 외부 회계감사를 받아야 하며, 그 결과에 따라 회계감사인은 운송사업자별·노선별로 운송원가를 산정하여야 한다. ③ 현행과 같음	-주어를 앞에 명시하여 자연스러운 문장으로 정비 -인용 법령 제명 오류 정비 권고
제6조(운송원가 및 운송수입금 산정) ① 생략 ② 제1항에 따른 운송원가 및 운송수입금 산정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반영하여야 한다. 1. ~ 3. 생략 4. 운송사업자는 운송원가 및 운송수입금의 객관적인 산정과 투명한 회계처리를 위하여 도가 정한 회계처리기준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6조(운송원가 및 운송수입금 산정) ① 생략 ② 제1항에 따른 운송원가 및 운송수입금 산정 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반영하여야 한다. 1. ~ 3. 생략 4. 운송사업자는 운송원가 및 운송수입금의 객관적인 산정과 투명한 회계처리를 위하여 전북특별자치도가 정한 회계처리기준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2항 각 호외의 본문: 띄어쓰기 정비 권고 -제2항제4호: "도"를 약칭한바 없으므로 "전북특별자치도"로 사용하도록 정비 권고
제7조(보조금의 신청) ① 제3조에 따른 보조금을 받으려는 자는 비수익노선 운행에 따른 지원의 경우에는 별지 제1호 서식, 그 외의 경우에는 별지 제2호 서식에 의한 신청서와 그에 따른 붙임서류를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이하 생략	제7조(보조금의 신청) ① 제3조에 따른 보조금을 받으려는 자는 비수익노선 운행에 따른 지원의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 그 외의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신청서와 그에 따른 붙임서류를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이하 현행과 같음	-띄어쓰기 정비 권고
제3장 버스지원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삭제>	-장(章) 삭제
제9조(위원회 설치) 도지사는 대중교	제9조(위원회 설치) 도지사는 대중교	-띄어쓰기 정비 권

현 행	개정안	비고
통서비스 제고와 여객자동차운수사업의 건전한 육성을 위한 보조금 지원을 위하여 도지사 소속하에 전북특별자치도 버스지원심의위원회를 둔다.	통서비스 제고와 여객자동차운수사업의 건전한 육성을 위한 보조금 지원을 위하여 도지사 소속 하에 전북특별자치도 버스지원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고 -'약칭'은 맨 먼저 나오는 조문에서 약칭함
제10조(위원회 구성) ① 전북특별자치도 버스지원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3명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성한다. 당연직 위원은 전북특별자치도 건설교통국장, 전북특별자치도지방경찰청 교통담당과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 중에서 도지사가 위촉한 자로 한다. 1.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의원 2. 교통전문가, 교통관련 대학교수·연구원 3. 회계관련 대학교수, 언론인, 변호사, 공인회계사, 시민단체 등 직능대표 4. 그 밖에 교통관련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제10조(위원회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3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1. 당연직: 전북자치도 건설교통국장, 전북자치도지방경찰청 교통담당과장 2. 위촉직 가.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의원 나. 교통전문가, 교통관련 대학교수·연구원 다. 회계관련 대학교수, 언론인, 변호사, 공인회계사, 시민단체대표 등 라. 그 밖에 교통관련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위원회 규정에 맞게 수정 권고
제12조(위원의 임기)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당해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제12조(위원의 임기)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임기로 한다.	-문장 표현 정비 권고
제19조(수당 등)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전북특별자치도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등의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직접 그 업무와 관련하여 참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19조(수당 등)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등의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직접 그 업무와 관련하여 참석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수당 및 여비에 관해 선언적인 의미만을 규정하면, 그에 따른 구체적인 사항은 당연히 「전북특별자치도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적용

현 행	개정안	비고
		받으므로 규정의 실익이 없음(법제처, 2023년 우수조례 및 자치법규 입법컨설팅 사례집, 226면) -문장 표현 정비 권고
제4장 보조금 관리	<삭제>	-장(章) 삭제
제24조(준용) 보조금 지원에 관한 교부조건, 절차, 방법, 감독 및 제재 등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것은「전북특별자치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삭제>	-재정지원에 관해 선언적인 의미만을 규정하면, 그에 따른 구체적인 사항은 당연히 「전북특별자치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적용받으므로 규정의 실익이 없음(법제처, 2023년 우수조례 및 자치법규 입법컨설팅 사례집, 107면)

연 번	조례명	분 류	위임근거	시행일	비 고
28	**전북특별자치도 지식재산 진흥 조례**	자치조례	-	2012. 10. 5., 제정 (일부개정 1회) [시행 2024. 1. 18.] [전북특별자치도조례 제5399호, 2023. 12. 8., 일부개정]	□ 개정 권고 □ 통합 권고 □ 폐지 권고 □ 이행 권고 ■ 일반 정비 □ 현행 유지 □ 기타( )

사전 검토

○ 기본자료 분석

- (1-1) 본 조례는「지식재산 기본법」제4조의 내용을 규정하고 있는 자치조례임
- (2-3) 조례 제4조에 따라 2023년 시행계획 추진실적 및 2024년도 시행계획을 수립함
- (2-4) 조례 제7조에 따라 지식재산창출 지원사업에 2,252백만원을 책정함
- (2-5) 지식재산 활성화 유공자 포상을 2022년 1회, 2023년 2회 수여함
- (3-1) 조례 제7조에 따라 지식재산 창출활동에 재정지원을 실시할 수 있음
- (3-3) 조례 제7조에 따라 지식재산창출 지원사업에 2022년(2,124백만원(국비 1,062, 도비 997, 시·군비 65)), 2023년(2,258백만원(국비 1,129, 도비 1,097, 시·군비 32)), 2024년(2,252백만원(국비 1,126, 도비 1,037, 시·군비 89))을 지원함

○ 기타의견

- (8-1) 상위법 내용에 위배되지 않고, 조례에 따른 지원근거가 명확하여 조례의 현행 유지가 필요함
- (8-2) 현재 지식재산위원회 위원장이 행정부지사로 되어 있어, 조직체계상 경제부지사로 위원장 변경이 필요함

입법체계 분석

○ 조례 제정 목적

- 전북특별자치도의 지식재산 창출·보호 및 활용 등을 위한 종합적인 시책을 마련하고, 체계적인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역의 지식재산 진흥을 통한 지역경제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함

○ 자치법규 입안기준 부합성

- 자치법규 입안기준에 부합하도록 약칭 정비, 띄어쓰기 정비 필요

○ 위임 적합성 평가

- 자치조례로 해당사항 없음

평가지표에 따른 평가

○ 분석지표별 평가

평가항목	평가항목별 검토 내용
1. 입법 근거 및 적법성	자치사무의 범위에서 적절하게 제정되었음
2. 조례의 실효성	제7조에 따른 재정지원 규정을 통해 조례의 실효성을 확보하고 있음

3. 조례 내용의 적정성	조례에서 규정하고 있는 재정지원이 적절하게 이루어지고 있음
4. 조례의 공평성	장애, 성별, 나이 등에 관한 사회적 편견, 고정관념이 반영된 표현 및 차별 규정 없음
5. 주민 수용성	조례의 체계 및 용어가 주민이 알기 쉽게 되어 있음
6. 전북자치도 현실부합성	전북특별자치도 내에서 지식재산을 진흥하기 위하여 제정된 본 조례는 행정수요를 반영하고 있어 전북특별자치도 현실에 부합함
7. 위원회 운영의 적정성	위원회 관련된 규정이 있으나(임의규정) 위원회 개최실적은 없음
※ 기타 의견	없음

○ 타 시·도 유사 조례와의 비교

전북특별자치도 지식재산 진흥 조례	경기도 지식재산 진흥에 관한 조례	대구광역시 지식재산 진흥 조례	대전광역시 지식재산 진흥 조례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제2조(기본이념)
제3조(책무)	제3조(도지사의 책무)	제3조(기본이념)	제3조(정의)
제4조(진흥계획의 수립)	제4조(다른 법령 등과의 관계)	제4조(책무)	제4조(책무)
제5조(전담부서의 설치)	제5조(종합계획의 수립)	제5조(종합계획의 수립)	제5조(진흥계획의 수립)
제6조(재원의 조달 및 지원)	제6조(전담부서의 설치 등)	제6조(전담부서의 설치)	제6조(전담부서의 운영)
제7조(지식재산 창출활동의 지원)	**제7조(지식재산정책 책임관 지정 운영)**	**제7조(지식재산정책 책임관 지정 운영)**	제7조(예산의 지원)
제8조(지식재산의 사업화 촉진)	제8조(지식재산 창출활동 및 권리화 지원)	제8조(지식재산 창출활동의 지원)	제8조(지식재산 창출활동의 지원)
제9조(지역특성화 사업의 실시 등)	제8조의2(지식재산 교육 지원)	제9조(지식재산 사업화 촉진)	제9조(지식재산 사업화 촉진)
제10조(지식재산 관련 전문인력 양성)	제9조(지식재산의 사업화 촉진)	제10조(지역특성화사업의 실시 등)	제10조(지식재산 권리화 지원)
제11조(유관기관의 협력)	제10조(지역특성화사업의 실시 등)	제11조(지식재산 관련 전문인력 양성)	제11조(권리침해 분쟁 예방 조치)
제12조(지식재산의 권리화 지원)	제11조(지식재산을 활용한 성장산업의 선정)	제12조(유관기관의 협력)	제12조(설치)
제13조(권리침해의 분쟁 예방 조치)	제12조(지식재산 관련 전문인력 양성)	제13조(분쟁예방)	제13조(위원회의 구성)
제14조(지식재산위원회의 설치)	제13조(유관기관의 협력)	제14조(지식재산위원회의 설치)	제14조(위원회의 회의 등)
제15조(위원회의 구성)	제14조(권리침해의 분쟁예방 및 보호강화)	제15조(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제15조(수당 등)
제16조(위원의 임기)	제15조(지식재산위원회의 설치)	제16조(권한의 위임 등)	제16조(업무의 관장)
제17조(위원장등의 직무)	제16조(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제17조(시민발명제안 및 시민특허권의 제출)**
제18조(회의)	제16조의2(위원의 제척·회피)		**제18조(시민발명제안의 특허출원)**

제19조(수당 등)	제16조의3(위원의 위촉 해제)		**제19조(시민발명 장려금)**
제20조(관계기관 등에 협력 요청)	제17조(자료의 제출과 협력)		**제20조(처분보상금 등)**
제21조(비밀보호)	제18조(비밀보호)		**제21조(시민발명장려금 및 처분보상금 등의 지급)**
제22조(권한의 위임 등)	제19조(권한의 위탁)		**제22조(시민발명장려금 및 처분보상금 등의 반환)**
제23조(시행규칙)	제20조(시행규칙)		**제23조(시민발명자 등의 의무)**
			제24조(실용신안 및 디자인에 관한 준용)
			제25조(업무의 관장)
			제26조(발명의 신고)
			제27조(직무발명의 승계)
			제28조(시유재산의 등록·관리)
			제29조(발명자의 출원 금지)
			제30조(처분의 원칙)
			제31조(처분의 방법 등)
			제32조(의견청취 등)
			제33조(특허권등록 전의 처분)
			제34조(처분결과의 통지)
			제35조(자유발명의 양도신청)
			제36조(등록보상금)
			제37조(처분보상금)
			제38조(보상금 등의 지급)
			제39조(비밀유지의 의무)
			제40조(실용신안 및 디자인에 관한 준용)
			제41조(사무의 위탁 등)

- 대구광역시와 경기도에서는 제7조(지식재산정책 책임관 지정 운영)에서 지식재산 정책의 원활한 수행과 총괄적인 관리를 위하여 소속 공무원 중 지식재산정책 책임관을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함
- 대전광역시에서는 제4장 "시민발명의 관리"의 제16조부터 제24조까지의 규정을 통해 지식재산 진흥사업 관련 시민발명에 대한 장려를 위해 특허출원, 장려금, 보상금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함

○ 규제사항 평가

- 특이사항 없음

목적달성도 및 부수효과 분석

○ 조례 목적달성도 평가

- 지식재산 진흥을 위해 매년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지식재산 기업 육성 사업을 매년 추진하여 예산을 집행하고 있는바 조례의 목적이 달성되고 있다고 평가됨

○ 부수효과

- 전북특별자치도 내 지식재산 진흥을 통해 지역경제 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관계법령

- 자치조례로 해당사항 없음

조례 개정방안

○ 조례 개정 방향

- 조례에서 전체 규정이 30조 미만인 경우에는 장(章)으로 나누지 않음(법제처, 2022 자치법규 길라잡이, 344면)
- 제2조, 제3조, 제4조, 제8조, 제11조, 제13조, 제16조: 법제처 자치법규 입안기준에 따른 정비(정의조항 정비, 약칭표현 정비 등)
- 제15조: 지식재산위원회 위원장이 행정부지사로 되어 있어, 조직체계상 경제부지사로 위원장 변경 검토
- 제19조: 위원회의 수당 및 여비 규정의 경우 「전북특별자치도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등이 당연히 적용되는 것이므로 규정 실익이 없지만, 조례의 완성도・이해도를 위하여 조례명은 표기하지 않고 단순히 선언적 규정으로만 정비
- 제21조: 비밀준수 의무사항 삭제 권고
- 제23조: 시행규칙은 개별 조례에서 위임이 없더라도 조례의 집행에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규칙으로 규정할 수 있으므로 삭제 권고

○ 개정안

현 행	개정안	비고
제1장 총칙	<삭제>	-장(章) 삭제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지식재산"이라 함은「지식재산기본법」제3조제1호의 규정에 따라 인간의 창조적 활동 또는 경험 등에 의하여 창출되거나 발견된 지식·정보·기술, 사상이나 감정의 표현, 영업이나 물건의 표시, 생물의 품종이나 유전자원, 그 밖에 무형적인 것으로서 재산적 가치가 실현될 수 있는 것을 말한다. 2. "신지식재산"이란「지식재산기본법」제3조제2호의 규정에 따라 경제·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지식재산"이란 「지식재산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다. 2. "신지식재산"이란 「지식재산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다.	-정의조항 규정형식에 맞게 정비 권고 -띄어쓰기 정비 권고 -조항 표기방식에 맞게 정비 권고 -상위법령의 용어 정의 규정을 그대로 규정할 경우에는 "「○○법」 제○조에 따른다"고 표현함

현 행	개정안	비고
사회 또는 문화의 변화나 과학기술의 발전에 따라 새로운 분야에서 출현하는 지식재산을 말한다. 3. "지식재산권"이란「지식재산기본법」제3조제3호의 규정에 따라 법령 또는 조약 등에 따라 인정되거나 보호되는 지식재산에 관한 권리를 말한다. 4. "지역지식재산센터"라 함은「발명진흥법」제23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특허청에 등록된 기관을 말한다.	3. "지식재산권"이란 「지식재산기본법」 제3조제3호에 따른다. 4. "지역지식재산센터"란 「발명진흥법」 제23조제3항에 따라 특허청에 등록된 기관을 말한다.	
제3조(책무) ① 전북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이라 한다)는 지식재산의 진흥을 위하여 국가의 시책과 지역적 특성을 고려하여 종합적인 시책을 세우고 추진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도민 모두에게 지식재산의 창출·보호·활용에 대한 체계적인 지원을 균등하게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3조(책무) ① 전북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지식재산의 진흥을 위하여 국가의 시책과 지역적 특성을 고려하여 종합적인 시책을 세우고 추진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전북특별자치도민 모두에게 지식재산의 창출·보호·활용에 대한 체계적인 지원을 균등하게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약칭문 표현 정비 권고 -"도민"은 약칭하지 않았으므로 원 용어를 사용하도록 정비 권고
제2장 지식재산 진흥계획의 수립 및 추진체계	<삭제>	-장(章) 삭제
제4조(진흥계획의 수립) ① 도지사는 이 조례의 목적을 효율적으로 달성하기 위한 전북특별자치도 지식재산 진흥계획(이하 "진흥계획"이라 한다.)을 매 5년마다 수립하고, 매년 추진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이하 생략	제4조(진흥계획의 수립) ① 도지사는 이 조례의 목적을 효율적으로 달성하기 위한 전북특별자치도 지식재산 진흥계획(이하 "진흥계획"이라 한다)을 매 5년마다 수립하고, 매년 추진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이하 현행과 같음	-약칭문에는 마침표를 사용하지 않음. 문장부호 삭제 권고
제3장 지식재산의 창출, 보호 및 활용의 촉진	<삭제>	-장(章) 삭제
제8조(지식재산의 사업화 촉진) ① ~ ② 생략 ③ 도지사는 전북자치도가 보유하는 지식재산권의 보유상황에 대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수시로 공표하여 사업자에게로 기술이전이 촉진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 이하 생략	제8조(지식재산의 사업화 촉진) ① ~ ② 현행과 같음 ③ 도지사는 전북특별자치도(이하 "전북자치도"라 한다)가 보유하는 지식재산권의 보유상황에 대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수시로 공표하여 사업자에게로 기술이전이 촉진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 이하 현행과 같음	-"전북자치도"로 약칭하도록 정비 권고

현 행	개정안	비고
제11조(유관기관의 협력) 도지사는 진흥계획의 효율적인 시행을 위하여 지역 유관기관인 지식재산센터, 테크노파크, 대학 산학협력단 등과 업무협약 등의 제휴를 촉진하여 지식재산 관련 사업을 공동으로 추진하거나 협력할 수 있다.	제11조(관계기관의 협력) 도지사는 진흥계획의 효율적인 시행을 위하여 지역 관계기관인 지식재산센터, 테크노파크, 대학 산학협력단 등과 업무협약 등의 제휴를 촉진하여 지식재산 관련 사업을 공동으로 추진하거나 협력할 수 있다.	-한자어 정비(유관기관 → 관계기관)
제13조(권리침해의 분쟁예방 조치) 도지사는 해당 지역내에서 지식재산의 침해 및 지식재산권을 침해하는 물품의 유통 등에 대한 분쟁을 예방할 수 있도록 사업자 또는 관련 단체와의 협력 체계를 구축하고, 신고·상담 창구의 마련 등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제13조(권리침해의 분쟁예방 조치) 도지사는 해당 지역 내에서 지식재산의 침해 및 지식재산권을 침해하는 물품의 유통 등에 대한 분쟁을 예방할 수 있도록 사업자 또는 관련 단체와의 협력 체계를 구축하고, 신고·상담 창구의 마련 등 필요한 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	-띄어쓰기 정비 권고 -한자어 정비(강구→마련)
제4장 지식재산위원회	<삭제>	-장(章) 삭제
제15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행정부지사가 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당연직 위원은 소관업무 담당국장이 되며,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위촉한다. 1. 도의회 의원 2. 대학 등에서 조교수 이상 또는 이에 상당하는 직에 있거나 있었던 자로서 지식재산에 관한 연구경험이 있는 사람 3. 초·중·고 교원으로 5년 이상 재직한 자로서 관련분야 경험이 있는 사람 4. 이하 생략	제15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경제부지사가 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 하는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1. 당연직: 담당국장 2. 위촉직 가.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의원 나. 지식재산에 관한 연구경험이 있는 조교수 이상 또는 이에 상당하는 직에 있거나 있었던 사람 3. 5년 이상 재직한 초·중·고 교원으로서 관련분야 경험이 있는 사람 4. 이하 현행과 같음	-조직체계 현황을 반영하여 "행정부지사"를 "경제부지사"로 정비 권고 -약칭하지 않은 "도의회"를 "전북특별자치도의회"로 규정하도록 정비 권고 -당연직과 위촉직으로 구분하여 규정
제19조(수당 등)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전북특별자치도 각종위원회 실비 변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9조(수당 등)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전북특별자치도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7조에 명시되어 있어, 조례에 재기재할 실익이 적음

현 행	개정안	비고
제21조(비밀보호) 위원은 위원회의 활동을 통하여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삭제>	-상위법인 「개인정보 보호법」 제59조(금지행위)제2호, 제60조(비밀유지) 등에 규정하고 있어 조례에 재기재할 실익이 없음. 또한, 업무종사자가 비밀을 누설할 경우에는 다음 법 조항을 적용받게 되므로 삭제 권고(「형법」 제127조(공무상 비밀의 누설)-공무원인자가 비밀을 누설한 경우 처벌규정, 「형법」 제317조(업무상 비밀누설)-변호사등이 비밀을 누설한 경우 처벌규정, 「민법」 제750조(불법행위의 내용)에 따른 불법행위책임 (손해배상책임)부담)
제23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삭제>	-시행규칙은 개별 조례에서 위임이 없더라도 조례의 집행에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규칙으로 규정할 수 있으므로 삭제 권고

연 번	조례명	분 류	위임근거	시행일	비 고
29	**전북특별자치도 도시가스 공급시설 설치비 지원 조례**	자치조례	-	2016. 11. 4., 제정 (일부개정 1회) [시행 2024. 1. 18.] [전북특별자치도조례 제5399호, 2023. 12. 8., 일부개정]	■ 개정 권고 □ 통합 권고 □ 폐지 권고 ■ 이행 권고 (규칙 제정) ■ 일반 정비 □ 현행 유지 □ 기타

사전 검토

○ 기본자료 분석

- (1-1) 본 조례는「도시가스사업법」제19조의3의 내용과 관련하여 규정하고 있는 자치조례임
- (2-3) 조례 제4조에 따라 도시가스 미공급지역 설치비 지원사업 추진계획을 수립함
- (2-4) 조례 제3조에 따라 도시가스 미공급지역 설치비 지원사업에 22,146,000천원을 확보함
- (3-1) 조례 제5조에 따라 도시가스 미공급지역에 설치비를 지원할 수 있음
- (3-3) 조례 제5조에 따라 2021년~2023년간 아래와 같이 재정지원을 실시함 (금액단위: 천원)

연도	사업명	필요예산	확보예산	집행액	집행내역
2021	도시가스 미공급지역 설치비 지원)	2,228,315	2,228,315	2,228,315	도시가스 미공급지역 배관 설치
2022		3,190,625	3,190,625	3,190,625	
2023		4,012,846	4,012,846	4,012,846	

○ 기타의견

- (8-1) 지원대상 선정 주체 및 시군 위임사항 명시 등을 위해 조례의 유지가 필요함

입법체계 분석

○ 조례 제정 목적

- 「도시가스사업법」 제19조의3에 따라 전북특별자치도 내 도시가스 미공급지역에 이를 조기에 공급함으로써, 주민의 연료비 부담 경감 및 주거환경 개선에 기여하기 위하여 도시가스공급시설 설치비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함

○ 자치법규 입안기준 부합성

- 자치법규 입안기준에 부합하도록 일반적 위임규정 삭제 등 정비 필요

○ 위임 적합성 평가

- 자치조례로 해당사항 없음

평가지표에 따른 평가

○ 분석지표별 평가

평가항목	평가항목별 검토 내용
1. 입법 근거 및 적법성	조례 제정 목적이 전북특별자치도의 자치사무 범위에 있는 적법한 조례임

2. 조례의 실효성	제5조에 따른 재정지원을 통해 조례의 실효성을 확보하고 있음
3. 조례 내용의 적정성	조례에서 규정하고 있는 재정지원이 적절하게 이루어지고 있음
4. 조례의 공평성	장애, 성별, 나이 등에 관한 사회적 편견, 고정관념이 반영된 표현 및 차별 규정 없음
5. 주민 수용성	조례의 체계 및 용어가 주민이 알기 쉽게 되어 있음
6. 전북자치도 현실부합성	도시가스 미공급지역의 도시가스 설치비 지원을 위하여 제정된 본 조례는 행정수요를 반영하고 있어 전북특별자치도 현실에 부합함
7. 위원회 운영의 적정성	위원회 운영 관련 규정이 없음
※ 기타 의견	없음

○ 타 시·도 유사 조례와의 비교

전북특별자치도 도시가스 공급시설 설치비 지원 조례	부산광역시 도시가스 공급시설 설치비 지원 조례	충청남도 도시가스공급시설 설치비 지원 조례	충청북도 도시가스공급시설 설치비 지원 조례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제3조(책무)	제3조(책무)	제3조(책무)	제3조(도지사의 책무)
제4조(지원계획의 수립·시행)	제4조(지원계획)	제4조(지원계획의 수립·시행)	제4조(지원계획의 수립 및 시행)
제5조(설치비 지원)	**제5조(실태조사)**	제5조(설치비 지원)	제5조(지원내용)
제6조(지원신청)	제6조(지원대상)	제6조(지원신청)	제6조(지원신청 등)
제7조(지원대상 선정 등)	제7조(지원내용)	제7조(지원대상 선정 등)	제7조(지원대상 선정 등)
제8조(협약체결)	제8조(지원금의 환수)	제8조(협약체결)	제8조(보조금 지원)
제9조(지도·감독)	제9조(협조체계 구축·운영)	제9조(지도·감독)	제9조(협약체결)
제10조(환수 등)	제10조(감독)	제10조(환수 등)	제10조(사업의 점검)
제11조(준용)		제11조(준용)	제11조(보조금의 반환 등)
제12조(권한의 위임)		제12조(시행규칙)	**제12조(사업결과 보고)**
제13조(시행규칙)			제13조(시행규칙)

- 부산광역시 조례에서는 지원계획을 효율적으로 수립·시행하기 위해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규정하여 도시가스를 공급하기 어려운 지역의 현황, 세대수 등을 파악하고자 하고 있음
- 충청북도 조례에서는 시장·군수가 설치비 지원사업의 완료시 보조금 지원에 대한 결과를 도지사에게 보고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규제사항 평가

- 조례 조항에 지원금 환수 규정을 두고 있으나, 이는 법령위반, 거짓 보고 등으로 취한 부당이득을 환수하는 것으로 적정한 규제사항으로 평가됨

목적달성도 및 부수효과 분석

○ 조례 목적달성도 평가

- 조례 내용에 따라 도시가스 미공급지역에 체계적으로 도시가스를 공급할 수 있어 조례의 목적이 달성됨

○ 부수효과

- 도시가스의 안정적인 공급을 통해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전북특별자치도민의 생활수준을 향상할 수 있음

관계법령

- 자치조례로 해당사항 없음

조례 개정방안

○ 조례 개정 방향

- 제2조, 제7조: 법제처 자치법규 입안기준에 따른 정비(문장 표현 정비 등)
- 제4조: 지원계획의 수립 시행에 대한 내용을 명확하고 구체적으로 명시
- 제7조에서 지원대상 구역 선정 방법 및 절차를 규칙으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규칙을 운영하고 있지 않음. 규칙 제정 권고 검토
- 제11조: 재정지원에 관해 선언적인 의미만을 규정하면, 그에 따른 구체적인 사항은 당연히 「전북특별자치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적용 받으므로 규정의 실익이 없음(법제처, 2023년 우수조례 및 자치법규 입법컨설팅 사례집, 107면)
- 제13조: 시행규칙은 개별 조례에서 위임이 없더라도 조례의 집행에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규칙으로 규정할 수 있으므로 삭제 권고

○ 개정안

현 행	개정안	비고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사업자"란「도시가스사업법」제3조제2항에 따라 일반도시가스사업의 허가를 받은 기관 또는 법인·개인을 말한다. 2. "공급배관 등"이란 본관·공급관 및 정압시설을 말한다. 3. ~ 4. 생략 5. "수요가부담 시설분담금"이란 사업자가 경제성 미달지역의 가스공급 요청자에게 일반시설분담금 및 취사전용시설분담금 외에 추가적으로 분담하도록 하는 설치비용의 선부과 요금을 말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사업자"란「도시가스사업법」제3조제2항에 따라 일반도시가스사업의 허가를 받은 자를 말한다. 2. "공급배관등"이란 본관·공급관 및 정압시설을 말한다. 3. ~ 4. 현행과 같음 5. "수요가부담 시설분담금"이란 사업자가 경제성 미달지역의 가스공급 요청자에게 일반시설분담금 및 취사전용시설분담금 외에 추가적으로 분담하도록 하는 설치비용을 미리 부과한 요금을 말한다.	-사람 외에 단체, 법인 등도 가리킬 때는 "자"를 씀 -정의에서 사용하는 '등'은 한 단어로 판단하여 붙여서 씀 -한자어 정비
제4조(지원계획의 수립·시행) 도지사는 사업자의 도시가스공급 사업계획	제4조(지원계획의 수립·시행) ① 도지사는 매년 도시가스 미공급 지역	-지원계획의 수립 시행에 대한 내용을

현 행	개정안	비고
등을 반영하여 해마다 미공급지역에 대한 도시가스 공급 지원규모, 지원절차 등을 포함하는 전북특별자치도 도시가스 미공급지역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해야 한다. 〈신설〉	에 대한 전북특별자치도 도시가스 미공급지역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해야 한다. 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지원계획의 방향 및 목표 2. 도시가스 공급시설 설치비 지원을 위한 시책 개발에 관한 사항 3. 제5조에 따른 지원내용에 관한 사항 4. 도시가스 공급시설 설치비 지원을 위한 재원조달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도지사가 공급시설 설치비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명확하고 구체적으로 명시하도록 규정 신설 권고
제7조(지원대상 선정 등) ① 생략 ② 제1항의 지원 대상구역 선정 방법 및 절차는 규칙으로 정한다. ③ 생략	제7조(지원대상 선정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제1항의 지원대상 구역 선정 방법 및 절차는 규칙으로 정한다. ③ 현행과 같음	-조 제목에 맞게 띄어쓰기 정비 권고 -규칙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는 사항을 정하도록 규칙 제정 권고
제11조(준용) 도시가스 설치비 지원을 위한 보조금의 신청·교부·보고·정산 등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외의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전북특별자치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삭제>	-재정지원에 관해 선언적인 의미만을 규정하면, 그에 따른 구체적인 사항은 당연히 「전북특별자치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적용받으므로 규정의 실익이 없음(법제처, 2023년 우수조례 및 자치법규 입법컨설팅 사례집, 107면)
제13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삭제>	-시행규칙은 개별 조례에서 위임이 없더라도 조례의 집행에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규칙으로 규정할 수 있으므로 삭제 권고

연 번	조례명	분 류	위임근거	시행일	비 고
30	**전북특별자치도 전기사업 주민상생 조례**	자치조례	-	2019. 10. 11., 제정 (일부개정 1회) [시행 2024. 1. 18.] [전북특별자치도조례 제5399호, 2023. 12. 8., 일부개정]	□ 개정 권고 □ 통합 권고 □ 폐지 권고 □ 이행 권고 ■ 일반 정비 □ 현행 유지 □ 기타( )

사전 검토

○ **기본자료 분석**

- 각 평가항목별 조례 해당사항 없음

○ **기타의견**

- (8-1) 지원대상 선정 주체 및 시·군 위임사항 명시 등을 위해 조례의 유지가 필요함

입법체계 분석

○ **조례 제정 목적**

- 전북특별자치도 전기·발전사업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고 도민의 이익을 보호하여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함

○ **자치법규 입안기준 부합성**

- 자치법규 입안기준에 부합하도록 인용 법령 제명 띄어쓰기 오류 정비 필요

○ **위임 적합성 평가**

- 자치조례로 해당사항 없음

평가지표에 따른 평가

○ **분석지표별 평가**

평가항목	평가항목별 검토 내용
1. 입법 근거 및 적법성	자치사무의 범위에서 적절하게 제정되었음
2. 조례의 실효성	제4조에 따른 주민상생협력 조항을 통해 조례의 실효성을 확보하고 있음
3. 조례 내용의 적정성	조례 목적에 부합하게 내용이 규정되어 적정한 것으로 평가됨
4. 조례의 공평성	장애, 성별, 나이 등에 관한 사회적 편견, 고정관념이 반영된 표현 및 차별 규정 없음
5. 주민 수용성	조례의 체계 및 용어가 주민이 알기 쉽게 되어 있음
6. 전북자치도 현실부합성	전북특별자치도 내에서 실시하는 전기사업과 전북특별자치도민 생활의 상생을 위하여 제정된 본 조례는 행정수요를 반영하고 있어 전북특별자치도 현실에 부합함
7. 위원회 운영의 적정성	위원회 운영 관련 규정이 없음
※ 기타 의견	없음

○ 타 시·도 유사 조례와의 비교

전북특별자치도 전기사업 주민상생 조례
제1조(목적)
제2조(정의)
제3조(경관)
제4조(주민상생협력)
제5조(환경보호)
제6조(재해복구)
제7조(보고 등)
제8조(준용)

- 타 시·도의 경우 전기사업 주민상생에 관한 조례를 운영하고 있는 곳이 없음

○ 규제사항 평가

- 특이사항 없음

목적달성도 및 부수효과 분석

○ 조례 목적달성도 평가

- 조례를 기반으로 한 사업이 규정되어 있지 않아 조례의 목적달성도를 평가하기 어렵지만 선언적 규정으로 지원대상, 위임사항, 책무 명시 자체로도 목적이 달성되고 있다고 평가됨

○ 부수효과

- 전북특별자치도에서 실시하는 전기공사와 전북특별자치도민 생활에 상생을 도모하여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전기 사업의 정당성을 확보할 수 있음

관계법령

- 자치조례로 해당사항 없음

조례 개정방안

○ 조례 개정 방향

- 제1조, 제2조, 제5조: 법제처 자치법규 입안기준에 따른 정비(목적조항 정비, 띄어쓰기 정비 등)
- 제8조: 준용 규정을 두지 않아도 당연히 적용되므로 이 조항 삭제 권고

○ 개정안

현 행	개정안	비고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전기사업법」 제98조제1항(권한의 위임·위탁)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2조(권한의 위임·위탁)에 따라 전북특별자치도 전기·발전사업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고 도민의 이익을 보호하여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전기사업법」 제98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2조에 따라 전북특별자치도 전기·발전사업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고 도민의 이익을 보호하여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목적조항의 규정형식에 맞게 인용 조항의 조제목 삭제 권고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인용 법령 제명 띄어쓰기 오류 정비

현 행	개정안	비고
1. ~ 8. 생략 9. "재난"이란 「재난 및 안전 관리 기본법」에서 정한 것으로 국민의 생명·신체·재산과 국가에 피해를 주거나 줄 수 있는 재해, 태풍, 홍수, 호우, 강풍, 지진 등을 말한다.	1. ~ 8. 현행과 같음 9. "재난"이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서 정한 것으로 국민의 생명·신체·재산과 국가에 피해를 주거나 줄 수 있는 재해, 태풍, 홍수, 호우, 강풍, 지진 등을 말한다.	권고
제5조(환경보호) 전기사업법 제5조에 따라 전기사업자는 전기설비를 설치하여 전기사업을 할 때에는 자연환경 및 생활환경 등 주변 환경을 적정하게 관리·보존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	제5조(환경보호) 「전기사업법」 제5조에 따라 전기사업자는 전기설비를 설치하여 전기사업을 할 때에는 자연환경 및 생활환경 등 주변 환경을 적정하게 관리·보존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	-법령 제명에 문장부호를 사용하도록 정비 권고
제8조(준용) 전기사업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전기사업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삭제>	-준용 규정을 두지 않아도 당연히 적용되므로 이 조항 삭제 권고

4. 문화안전소방위원회

연 번	조례명	분 류	위임근거	시행일	비 고
31	**전북특별자치도 도민안전보험 지원 조례**	자치조례	-	2019. 8. 9., 제정 (일부개정 1회) [시행 2024. 1. 18.] [전북특별자치도조례 제5399호, 2023. 12. 8., 일부개정]	□ 개정 권고 □ 통합 권고 □ 폐지 권고 □ 이행 권고 ■ 일반 정비 □ 현행 유지 □ 기타( )

사전 검토

○ 기본자료 분석

- (1-1) 본 조례는「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4조 관련 내용을 규정한 자치조례임
- (2-3) 시군에서 안전보험 직접 시행하거나 보험료를 지원하여 별도의 기본계획을 수립하지 않음
- (2-5) 재난이나 그 밖의 사고로 피해를 입은 전북특별자치도민의 생활안전을 위하여 도민안전보험 지원에 953,000천원을 지원함
- (3-1) 조례 제4조에 따라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음
- (3-3) 2022년부터 2024년까지 아래와 같이 예산을 확보하여 집행함

(단위: 천원)

연도	사업명	필요예산	확보예산	집행액	집행내역
2022	도민 안전 보험료 지원	150,000	150,000	149,482	보험료 지급
2023		150,000	150,000	149,746	
2024		286,000	286,000		

- (6-1) 각종 재난이나 사고로부터 피해를 입은 전북특별자치도민들에게 보험금을 지급함으로써 생활 안정 지원을 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하여 현실에 부합함

○ 기타의견

- (8-1) 재난이나 그 밖의 사고로 피해를 입은 전북특별자치도민들의 생활 안정을 위하여 도민안전보험 지원 조례가 반드시 있어야 함

입법체계 분석

○ 조례 제정 목적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4조에 따라 재난이나 그 밖의 사고로 피해를 입은 전북특별자치도 도민의 생활 안정을 위하여 도민안전보험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함

○ 자치법규 입안기준 부합성

- 자치법규 입안기준에 부합하도록 약칭 표현 정비 필요

○ 위임 적합성 평가

- 자치조례로 해당사항 없음

평가지표에 따른 평가

○ 분석지표별 평가

평가항목	평가항목별 검토 내용

1. 입법 근거 및 적법성	자치사무의 범위에서 적절하게 제정되었음
2. 조례의 실효성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을 지원하고 있는 등 조례의 실효성을 확보하고 있음
3. 조례 내용의 적정성	가입 대상과 보험료 지원 관련 규정 등이 명시되어 있어 조례 내용이 적정함
4. 조례의 공평성	장애, 성별, 나이 등에 관한 사회적 편견, 고정관념이 반영된 표현 및 차별 규정 없음
5. 주민 수용성	조례의 체계 및 용어가 주민이 알기 쉽게 되어 있음
6. 전북자치도 현실부합성	재난이나 사고로부터 피해를 입은 전북특별자치도민들에게 보험금을 지급하고 전북특별자치도민의 생활 안정 지원을 할 수 있어 현실에 부합함
7. 위원회 운영의 적정성	위원회 운영관련 규정이 없음
※ 기타 의견	없음

○ 타 시·도 유사 조례와의 비교

전북특별자치도 도민안전보험 지원 조례	제주특별자치도 도민안전공제・보험가입에 관한 조례	광주광역시 시민안전보험 가입 및 운영 조례	경상남도 도민안전보험 지원 조례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제3조(보험 가입 대상)	제3조(가입대상)	제3조(가입대상)	제3조(가입대상)
제4조(보조금의 지원 등)	**제4조(보상범위와 보상한도액)**	**제4조(보상범위 등)**	제4조(보조금의 지원)
제5조(보험 계약의 체결)	제5조(공제·보험료 납입방법)	제5조(보험료 납부방법)	제5조(도민안전보험 계약의 체결)
제6조(자료요청)	제6조(공제·보험금액 산정 등)	제6조(피해신고 및 조사)	제6조(자료요청)
제7조(적용)		제7조(보험금 청구)	
제8조(시행규칙)		제8조(보험금액 산정)	
		제9조(보험금 지급)	
		제10조(보험금 지급제외)	
		제11조(시행규칙)	

- 제주특별자치도 조례 및 광주광역시 조례에서는 재난 사고의 유형별 보상범위를 각 호로 열거하고 있음
- 광주광역시 조례에서는 제9조와 제10조에서 보험금의 지급 규정을 두고 있으며 보험금의 지급 대상에서 제외되는 경우를 규정하고 있음

○ 규제사항 평가

- 특이사항 없음

목적달성도 및 부수효과 분석

○ 조례 목적달성도 평가

- 조례 내용에 따라 매년 도민안전보험료를 납부하고 있다는 점에서 조례의 목적이 달성되고 있음

○ 부수효과

- 본 조례를 통해 전북특별자치도민의 사회적 안전지수를 상승시키고, 안전사고가 발생했을 시 최소한의 보장을 도모할 수 있음

관계법령

- 자치조례로 해당사항 없음

조례 개정방안

○ 조례 개정 방향

- 제2조: 법제처 자치법규 입안기준에 따른 정비(인용조문 표기 정비, 약칭표현 정비)
- 제7조: 재정지원에 관해 선언적인 의미만을 규정하면, 그에 따른 구체적인 사항은 당연히 「전북특별자치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적용 받으므로 규정의 실익이 없음(법제처, 2023년 우수조례 및 자치법규 입법컨설팅 사례집, 107면)
- 제8조: 시행규칙은 개별 조례에서 위임이 없더라도 조례의 집행에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규칙으로 규정할 수 있으므로 삭제 권고

○ 개정안

현 행	개정안	비고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재난"이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에 따른 재난을 말한다. 2. "도민안전보험"(이하 "보험"이라 한다)이란 전북특별자치도 도민(이하 "도민"이라 한다)이 재난이나 그 밖의 사고로 입은 피해를 보상하기 위하여 도내 시장·군수와 보험기관이 계약을 체결한 보험을 말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재난"이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을 말한다. 2. "도민안전보험"(이하 "보험"이라 한다)이란 전북특별자치도민(이하 "도민"이라 한다)이 재난이나 그 밖의 사고로 입은 피해를 보상하기 위하여 전북특별자치도 내 시장·군수와 보험기관이 계약을 체결한 보험을 말한다.	-정확한 인용조문 표기 -약칭 용어 및 약칭하지 않은 용어 사용 정비 권고
제7조(적용) 이 조례에 따라 지원되는 보조금의 교부방법과 집행, 사업비 정산 등에 관하여는 「전북특별자치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삭제>	-재정지원에 관해 선언적인 의미만을 규정하면, 그에 따른 구체적인 사항은 당연히 「전북특별자치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적용 받으므로 규정의 실익이 없음(법제처, 2023년 우수조례 및 자치법규 입법컨설

현 행	개정안	비고
		팅 사례집, 107면)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삭제>	-시행규칙은 개별 조례에서 위임이 없더라도 조례의 집행에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규칙으로 규정할 수 있으므로 삭제 권고

연 번	조례명	분 류	위임근거	시행일	비 고
32	**전북특별자치도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자치조례	-	2015. 10. 12., 제정 (일부개정 2회) [시행 2024. 1. 18.] [전북특별자치도조례 제5399호, 2023. 12. 8., 일부개정]	■ 개정 권고 □ 통합 권고 □ 폐지 권고 □ 이행 권고 ■ 일반 정비 □ 현행 유지 □ 기타( )

사전 검토

○ 기본자료 분석

- (1-1) 본 조례는「병역법」제82조의4와 관련된 내용을 규정한 자치조례임
- (2-3) 조례 내용에 따라 병역명문가 도지사 포상 계획을 수립함
- (2-5) 병무청에서 운영하는 병역명문가 누리집을 통해 제도 소개 및 각종 혜택을 홍보함
- (2-5) 병역명문가 병역이행의무 유공 표창 2점을 수여함
- (3-2) 병역명문가라는 명확한 지원 대상을 규정하고 있음

○ 기타의견

- (8-1) 3대 가족이 현역복무 등을 성실하게 이행한 병역명문가가 전북특별자치도민들에게 존경받고 긍지를 가질 수 있는 문화를 조성하고, 이들의 희생과 헌신에 대한 존경과 감사를 표시하기 위하여 조례를 통해 선양 및 예우사업을 실시하고자 함. 또한 현행「병역법」에도 지방자치단체장에게 병역명문가 예우에 필요한 지원 및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음

입법체계 분석

○ 조례 제정 목적

- 대대로 병역의무를 명예롭게 이행한 병역명문가가 도민들로부터 존경받고 긍지를 가질 수 있는 사회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하여 그 예우와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함

○ 자치법규 입안기준 부합성

- 자치법규 입안기준에 부합하도록 상위법령 변경 등에 관한 사항 반영, 일반적인 위임규정 삭제 등 정비 필요

○ 위임 적합성 평가

- 자치조례로 해당사항 없음

평가지표에 따른 평가

○ 분석지표별 평가

평가항목	평가항목별 검토 내용
1. 입법 근거 및 적법성	자치사무의 범위에서 적절하게 제정되었음
2. 조례의 실효성	조례에 따른 책무와 병역명문가 예우를 위한 지원사업을 통해 조례의 실효성을 확보하고 있음
3. 조례 내용의 적정성	타 시·도의 유사조례 검토 결과 조례 내용이 적정함

4. 조례의 공평성	장애, 성별, 나이 등에 관한 사회적 편견, 고정관념이 반영된 표현 및 차별 규정 없음
5. 주민 수용성	조례의 체계 및 용어가 주민이 알기 쉽게 되어 있음
6. 전북자치도 현실부합성	병역명문가 선양 및 예우를 위하여 제정된 본 조례는 행정수요를 반영하고 있어 전북특별자치도 현실에 부합함
7. 위원회 운영의 적정성	위원회 운영관련 규정이 없음
※ 기타 의견	없음

○ 타 시·도 유사 조례와의 비교

전북특별자치도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경기도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서울특별시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한 조례	경상남도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제3조(도지사의 책무)	제3조(도지사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도지사의 책무)
제4조(적용범위)	제4조(적용범위)	제4조(예우 및 홍보)	제4조(적용범위)
제5조(예우 및 홍보)	제5조(예우 및 홍보)	제5조(우대)	제5조(예우 및 홍보)
제6조(우대)	제6조(우대)	제6조(협조요청)	제6조(우대)
제7조(협조요청)	제7조(협조요청)	제7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7조(협조요청)
제8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8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8조(시행규칙)	제8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9조(준용 등)	제9조(준용 등)		제9조(시행규칙)
제10조(시행규칙)	제10조(시행규칙)		

- 타 시·도 조례와 실질적인 규정내용이 유사하여 특별한 시사점 없음

○ 규제사항 평가

- 특이사항 없음

목적달성도 및 부수효과 분석

○ 조례 목적달성도 평가

- 병역명문가를 지원하고 예우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있다는 점에서 조례의 목적이 달성되고 있다고 평가됨

○ 부수효과

- 본 조례를 통해 전북특별자치도 내 병역의무 이행에 대한 긍정적 문화를 형성할 수 있음

관계법령

- 자치조례로 해당사항 없음

조례 개정방안

○ 조례 개정 방향

- 제2조, 제4조: 병역명문가를 병무청에서 지정하고 있으므로 병역명문가에 대한 정의를 조례에서 하지 않고 병무청장으로부터 발급받은 사항이라는 점을 반영하는 형태로 정의 규정 문장 정비
- 제8조, 제9조: 법제처 자치법규 입안기준에 따른 정비(약칭표현 정비, 조문순서 조정, 준용규정

삭제 검토)

- 제10조: 시행규칙은 개별 조례에서 위임이 없더라도 조례의 집행에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규칙으로 규정할 수 있으므로 삭제 권고

○ 개정안

현 행	개정안	비고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병역명문가"란 3대가 모두 현역복무를 성실히 마친 가문을 말한다. 다만, 3대째 가족 중 남성이 없고 군 의무복무기간을 마친 여성이 있는 가문의 경우를 포함한다. 2. "3대"란 조부와 부·백부·숙부 그리고 본인, 형제 및 사촌형제 등 조부의 직계비속 남자 모두(사망한 사람을 포함한다)를 말한다. 3. "현역복무"란 징집 또는 지원하는 방식으로 장교, 준사관, 부사관, 병으로 입영하여 현역(전투·의무·해양경찰, 경비교도대원, 의무소방원, 상근예비역을 포함한다)으로 복무하는 것을 말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병역명문가"란 병무청장으로부터 병역명문가증을 발급받은 가문을 말한다. 2. "예우대상자"란 병무청장으로부터 병역명문가증을 발급받은 사람을 말한다. 3. "예우대상자 가족"이란 예우대상자의 부모, 배우자, 자녀를 말한다.	-병역명문가를 병무청에서 지정하고 있으므로 병역명문가에 대한 정의를 조례에서 하지 않고 병무청장으로부터 발급받은 사항이라는 점을 반영하는 형태로 정의 규정 문장 정비 권고
제4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3대 가족 중 한 명 이상이 도내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병역명문가에 적용한다.	제4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전북특별자치도(이하 "전북자치도"라 한다) 내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예우대상자와 예우대상자 가족에 적용한다.	-정의조항 정비에 따라 적용범위 문장 수정
제8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도지사는 전북자치도에서 설치, 관리, 위탁하는 시설물 등의 사용료 감면 또는 면제와 관련한 조례를 제정하거나 개정하는 경우 제6조제1항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4조의2(다른 조례와의 관계) 도지사는 전북자치도에서 설치, 관리, 위탁하는 시설물 등의 사용료 감면 또는 면제와 관련한 조례를 제정하거나 개정하는 경우 제6조제1항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입법편제에 맞게 조문 순서 조정 정비 권고
제9조(준용 등)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병역이행명문가 선정 및 표창 운영규정」의 규정들을 준용한다.	<삭제> 제9조(준용 등)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병역명문가 선정 및 표창 운영 규정」에 따른다.	-인용하고 있는 훈령은 「병역명문가 선정 및 표창 운영 규정」으로 개정됨 -상위법령은 준용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법률 등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당연히 적용되는 것으로 규정의 실익이

현 행	개정안	비고
		없음. 삭제 권고 -조항을 유지하고자 하는 경우 인용하고 있는 훈령의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제명 정비 권고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삭제>	-시행규칙은 개별 조례에서 위임이 없더라도 조례의 집행에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규칙으로 규정할 수 있으므로 삭제 권고

연 번	조례명	분 류	위임근거	시행일	비 고
33	**전북특별자치도 장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	자치조례	-	2016. 6. 17., 제정 (일부개정 1회) [시행 2024. 1. 18.] [전북특별자치도조례 제5399호, 2023. 12. 8., 일부개정]	■ 개정 권고 □ 통합 권고 □ 폐지 권고 □ 이행 권고 ■ 일반 정비 □ 현행 유지 □ 기타( )

사전 검토

○ 기본자료 분석

- (1-1) 본 조례는 「문화예술진흥법」,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과 관련된 내용을 규정한 자치조례임
- (2-3) 조례 제4조에 따라 장애인 문화·예술활동 지원 세부시행계획을 수립함
- (2-5) 조례 제7조에 따라 지사는 전북자치도 및 전북자치도 산하기관(도립미술관은 제외)이 미술작품을 구입 시 일정한 기준에 따라 장애인 미술작품을 구입하도록 노력하여야 하지만, 조례가 2016.6.17 제정된 이후 미술품 구입실적은 없음
- (3-1) 조례 제6조에 따라 지원사업을 실시할 수 있음
- (3-3) 2022년부터 2024년까지 아래와 같이 예산을 확보하고 집행함

(단위: 천원)

연도	사업명	필요예산	확보예산	집행액	집행내역
2022	장애인공감콘서트	31,500	31,500	31,500	장애인 연주, 음악공연, 미술작품 전시 등
2023	장애인공감콘서트	31,500	31,500	31,500	장애인 연주, 음악공연, 미술작품 전시 등
2024	장애인공감콘서트	31,500	31,500	31,500	장애인 연주, 음악공연, 미술작품 전시 등

- (4-1) 본 조례는 제정 목적부터 장애인의 문화생활을 지원하기 위해 제정되었기 때문에 합리적인 차별임

○ 기타의견

- (8-1) 장애인의 문화·예술활동을 도모하여 장애인의 자긍심을 높이고 비장애인과의 공감대 형성과 창작활동 육성을 위하여 조례의 현행 유지가 필요함

입법체계 분석

○ 조례 제정 목적

- 「문화예술진흥법」과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전북특별자치도에 거주하는 장애인의 문화·예술활동을 지원·육성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함

○ 자치법규 입안기준 부합성

- 자치법규 입안기준에 부합하도록 문장부호 정비 필요

○ 위임 적합성 평가

- 자치조례로 해당사항 없음

평가지표에 따른 평가

○ 분석지표별 평가

평가항목	평가항목별 검토 내용
1. 입법 근거 및 적법성	자치사무의 범위에서 적절하게 제정되었음
2. 조례의 실효성	장애인 문화·예술활동 지원 시행계획 수립 및 지원 등을 통하여 조례의 실효성을 확보하고 있음
3. 조례 내용의 적정성	장애인 예술단체 요건이나 지원사항 규정 등 조례 내용이 적정함
4. 조례의 공평성	장애, 성별, 나이 등에 관한 사회적 편견, 고정관념이 반영된 표현 및 차별 규정 없음. '장애인문화예술인'을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른 등록 장애인으로 정의하여 지원대상을 명확히 하고 있음
5. 주민 수용성	조례의 체계 및 용어가 주민이 알기 쉽게 되어 있음
6. 전북자치도 현실부합성	전북특별자치도 내에 거주하는 장애인의 문화생활을 위하여 제정된 본 조례는 행정수요를 반영하고 있어 현실에 부합함
7. 위원회 운영의 적정성	위원회 운영관련 규정이 없음
※ 기타 의견	없음

○ 타 시·도 유사 조례와의 비교

전북특별자치도 장애인 문화예술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	서울특별시 장애예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	경기도 장애예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	충청남도 장애인 문화예술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제3조(도지사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도지사의 책무)	제3조(도지사의 책무)
제4조(시행계획)	제4조(시행계획 수립 등)	제4조(시행계획의 수립 등)	제4조(시행계획)
제5조(장애인문화예술단체)	제5조(장애예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 사업)	제5조(실태조사)	제5조(사업지원)
제6조(지원사업)	제5조의2(장애예술인의 창작물 우선구매)	제6조(지원)	제6조(업무위탁 등)
제7조(장애인 미술작품 구입)	제6조(장애예술인의 문화예술 활동 참여 확대)	제7조(우선구매)	제7조(장애인문화예술인 창작품 우선구매)
제8조(사무의 위탁)	제7조(장애예술인 고용촉진 등)	제8조(장애예술인 문화예술 지원센터 설치 등)	제8조(준용)
제9조(시행규칙)	**제8조(장애예술인의 문화시설 접근성 제고)**	제9조(위탁)	제9조(시행규칙)
	제9조(장애예술인 관련 단체의 지원)	제10조(시행규칙)	
	제10조(업무의 위탁 등)		
	제11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12조(시행규칙)		

- 서울특별시 조례의 경우 제8조에서 문화시설 접근성 제고 관련 내용을 규정하고 있음. 이는 「장애예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제12조제2항의 내용을 규정한 것임

○ 규제사항 평가

- 특이사항 없음

목적달성도 및 부수효과 분석

○ 조례 목적달성도 평가

- 조례 내용에 따라 장애인 공감 콘서트를 매년 개최하고 있으나, 장애인 미술작품 구입, 장애인 문화예술단체 지원 등 사업을 다각화할 필요가 있어 보임. 실적내용으로 보아 조례의 목적이 달성되고 있다고 평가됨

○ 부수효과

- 장애인의 문화·예술활동을 지원하여 장애인의 문화권을 보호하고, 장애인에 대한 인식 개선에 기여할 수 있음

관계법령

- 자치조례로 해당사항 없음

조례 개정방안

○ 조례 개정 방향

- 조례 제명에서 문장부호를 사용하도록 하여 용어를 통일적으로 사용하도록 정비 권고
- 제4조, 제5조, 제6조: 법제처 자치법규 입안기준에 따른 정비(약칭표현 정비 등)
- 제7조: 문장 정비, 규칙 위임 규정을 명확하게 하여 위임여부를 규정하도록 정비 검토
- 제8조: 위탁 규정의 경우「전북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등이 당연히 적용되는 것이므로 규정 실익이 없지만, 조례의 완성도·이해도를 위하여 조례명은 표기하지 않고 단순히 선언적 규정으로만 정비
- 제9조: 시행규칙은 개별 조례에서 위임이 없더라도 조례의 집행에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규칙으로 규정할 수 있으므로 삭제 권고

○ 개정안

현 행	개정안	비고
전북특별자치도 장애인 문화예술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북특별자치도 장애인 문화·예술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	-이 조례에서는 "문화·예술활동"으로 용어를 사용하고 있으므로 조례 제명에서 문장부호를 사용하도록 하여 용어를 통일적으로 사용하도록 정비 권고
제4조(시행계획) ① 도지사는 장애인 문화·예술활동을 지원·육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시행계획을 5년마다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1. 이하 생략	제4조(시행계획) ① 도지사는 장애인 문화·예술활동을 지원·육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전북특별자치도(이하 "전북자치도"라 한다) 장애인 문화·예술 활동지원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1. 이하 현행과 같음	-문장표현 정비 -시행계획에 행정기관의 고유명칭 표기

현 행	개정안	비고
제5조(장애인문화예술단체) 장애인문화예술단체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1. 전북특별자치도(이하 "전북자치도"라 한다) 내에 소재한 단체 2. 생략	제5조(장애인문화예술단체) 장애인문화예술단체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1. 전북자치도 내에 소재한 단체 2. 현행과 같음	-제4조에서 이미 약칭하고 있음
제6조(지원사업) ① 도지사는 장애인의 문화·예술활동을 지원·육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에 소요되는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3. 장애인 문화·예술활동과 관련된 국내·외 교류 ② 생략	제6조(지원사업) ① 도지사는 장애인의 문화·예술활동을 지원·육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에 소요되는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3. 장애인 문화·예술활동과 관련된 국내외 교류 ② 현행과 같음	-문장 부호를 삭제하도록 정비 권고
제7조(장애인 미술작품 구입) ① 도지사는 전북자치도 및 전북자치도 산하기관(도립미술관은 제외한다)이 미술작품을 구입 시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장애인 미술작품을 구입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다만, 구입 대상작품은 도내에서 거주하고 활동하는 장애인의 창작품이어야 한다. 1. 작품구입 총 건수가 10건 미만일 경우: 1건 2. 작품구입 총 건수가 10건 이상 20건 미만일 경우: 3건 3. 작품구입 총 건수가 20건 이상일 경우: 총 구입 건수의 25% 이내 ② 장애인 미술작품 구입에 필요한 세부 절차는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제7조(장애인 미술작품 구입) ① 도지사는 전북자치도 및 전북자치도 산하기관(도립미술관은 제외한다)이 미술작품을 구입 시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장애인 미술작품을 구입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구입 대상작품은 전북자치도 내에서 거주하고 활동하는 장애인의 창작품이어야 한다. 1. <삭제> 2. <삭제> 3. <삭제> ② 장애인 미술작품 구입에 필요한 세부 절차는 규칙으로 정한다.	-제1항: 문장 정비. 미술작품 구입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본문 규정과 달리 각 호에서는 의무를 부여하는 것과 같이 규정하고 있어 각 호 삭제 권고 -제2항: 규칙으로 정할 것인지 여부를 조례에서 명확하게 규정하도록 정비 권고
제8조(사무의 위탁) ① 생략 ② 제1항에 따라 위탁하는 사무의 종류와 범위, 위탁의 방법과 절차 등은 「전북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에 따른다.	제8조(업무의 위탁) ① 현행과 같음 ② <삭제>	-업무위탁에 대한 선언적인 의미만을 규정하면, 그에 따른 구체적인 사항은 당연히 「전북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를 적용 받으므로 규정의 실익이 없음(법제처, 2023년 우수

현 행	개정안	비고
		조례 및 자치법규 입법컨설팅 사례집, 108면)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삭제>	-시행규칙은 개별 조례에서 위임이 없더라도 조례의 집행에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규칙으로 규정할 수 있으므로 삭제 권고

연 번	조례명	분 류	위임근거	시행일	비 고
34	**전북특별자치도 지역서점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위임조례	「출판문화산업 진흥법」 제7조의2	2017. 4. 14., 제정 (일부개정 1회) [시행 2024. 1. 18.] [전북특별자치도조례 제5399호, 2023. 12. 8., 일부개정]	■ 개정 권고 □ 통합 권고 □ 폐지 권고 □ 이행 권고 ■ 일반 정비 □ 현행 유지 □ 기타( )

사전 검토

○ 기본자료 분석

- (1-1) 본 조례는 「출판문화산업 진흥법」 제7조의2에 따라 제정된 위임조례임
- (2-5) 조례 내용에 따라 2023년에 45,000천원(2,699권), 2024년에 29,010천원(1,759권)을 전북특별자치도청 도서관 도서 구입에 사용함
- (3-1) 조례 제6조에 따라 지원 사업을 진행할 수 있음
- (3-3) 2022년과 2023년 아래와 같이 예산을 확보하여 집행함 (금액단위: 천원)

연도	사업명	필요예산	확보예산	집행액	집행내역
2022	전북도청도서관 도서구입	45,000	45,000	44,921	전북도청도서관 도서구입
	동네서점과 작가와의만남	1,500	1,500	1,500	강사수당, 현수막 제작, 강연장 및 장비 임차료
2023	전북도청도서관 도서구입	45,000	45,000	44,921	전북도청도서관 도서구입
	동네서점과 작가와의만남	2,930	2,930	2,430	강사수당, 도서구입, 현수막 제작 등

- (3-4) 조례 제2조에 "지역서점"을 '전북특별자치도에 본사와 방문매장 사업장을 두고 영업하고 있는 서점'으로 구체화함
- (6-1) 온라인·대형 체인서점의 시장 장악과 그에 따른 지역서점의 도태 위기 가속화에 따른 경영 지원 근거를 마련하여 지역서점의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조례 제4조를 「출판문화산업 진흥법」 제7조의2와 동일하게 규정함
- (7-1) 조례 제9조에 따라 전북특별자치도 지역서점위원회를 둘 수 있음
- (7-3) 위원회 위원 중 여성 비율은 50%임
- (7-4) 2022년부터 2024년까지 아래와 같이 위원회를 개최함

연도별	2022	2023	2024
개최건수	1	1	12월 예정
개최일	12.23~12.26	12.12~12.13	-
소요예산	600,000원	-	-

○ 기타의견

- (8-1) 지역 문화공간으로서의 성장을 도모하여 지역서점 활성화를 꾀하고 도민의 독서문화 진흥에 이바지하기 위해서는 조례의 현행 유지가 필요함

입법체계 분석

○ 조례 제정 목적

- 독서문화 진흥을 통한 지역서점의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전북특별자치도민의 독서문화 진흥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함

○ 자치법규 입안기준 부합성

- 자치법규 입안기준에 부합하도록 목적조항 정비 및 용어수정 등 정비 필요

○ 위임 적합성 평가

- 위임 범위에서 적절하게 규정하고 있음

평가지표에 따른 평가

○ 분석지표별 평가

평가항목	평가항목별 검토 내용
1. 입법 근거 및 적법성	「출판문화산업 진흥법」 제7조의2(지역서점 활성화 지원 등)에 근거하여 위임 범위에서 적절하게 제정되었음
2. 조례의 실효성	제5조에 따른 활성화 계획을 통해 조례의 실효성을 확보하고 있음
3. 조례 내용의 적정성	재정지원 규정 및 지원대상이 구체화되어 있기 때문에 조례 내용이 적정함
4. 조례의 공평성	장애, 성별, 나이 등에 관한 사회적 편견, 고정관념이 반영된 표현 및 차별 규정 없음
5. 주민 수용성	조례의 체계 및 용어가 주민이 알기 쉽게 되어 있음
6. 전북자치도 현실부합성	지역 서점에 대한 적정한 지원을 통해 공공복리 증진에 기여하는 조례로 전북특별자치도 현실에 부합함
7. 위원회 운영의 적정성	위원회가 규정대로 설치되었고 활발히 운영되고 있어 위원회의 운영이 적절함
※ 기타 의견	없음

○ 타 시·도 유사 조례와의 비교

전북특별자치도 지역서점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경기도 지역서점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울산광역시 지역서점 활성화에 관한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지역서점 활성화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3조(적용범위)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4조(도지사의 책무)	제4조(도지사의 책무)	제4조(시장의 책무)	제4조(도지사의 책무)
제5조(지역서점 활성화 및 지원계획)	제5조(지역서점 활성화 및 지원계획)	제5조(지역서점 지원계획)	제5조(지원계획)
제6조(지원사업 추진)	제6조(지역서점 지원)	제6조(지역서점 지원사업)	제6조(지원사업)
제7조(사무의 위탁)	**제6조의2(지역서점 인증)**	**제6조의2(지역서점 인증)**	**제7조(지역서점 인증)**
제8조(협력체계 구축)	제7조(지역서점위원회 설치)	**제6조의3(인증요건)**	제8조(지역서점위원회 설치)

제9조(지역서점위원회 설치)	제8조(구성)	**제6조의4(인증 유효기간 등)**	제9조(위원회 구성)
제10조(구성)	제9조(위원의 위촉 해제)	**제6조의5(인증서점의 관리)**	제10조(협력사업)
제11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제10조(위원장의 직무)	**제6조의6(인증 취소)**	**제11조(지역서점 등과의 우선 조달계약)**
제12조(해촉)	제11조(회의·운영)	제7조(지역서점 독서문화 지원)	제12조(협력체계의 구축)
제13조(위원장의 직무)	제12조(수당 등)	제8조(지역서점위원회 설치)	제13조(위임・위탁)
제14조(회의·운영)	**제13조(지역서점 등과의 우선 조달계약)**	제9조(위원회 구성)	제14조(포상)
제15조(수당 등)	제14조(업무의 위탁)	제10조(회의·운영)	제15조(시행규칙)
제16조(포상)	제15조(표창)	제11조(사무의 위탁)	
	제16조(시행규칙)	제12조(포상)	
		제13조(시행규칙)	

- 경기도와 울산광역시, 강원특별자치도 조례에서는 지역서점 인증 제도를 마련하여 인증받은 지역 서점에 대해 지원사업을 우선적으로 시행할 수 있음
- 경기도와 강원특별자치도 조례에서는 지역서점 및「협동조합기본법」에 의한 지역서점 협동조합에 대해 도서에 관한 조달계약을 우선적으로 체결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 규제사항 평가

- 특이사항 없음

목적달성도 및 부수효과 분석

○ 조례 목적달성도 평가

- 조례 내용에 따라 전북 도서관 도서 우선 구입, 작가와의 만남 등의 사업을 추진한다는 점에서 조례의 목적이 달성되고 있다고 평가됨

○ 부수효과

- 지역 서점 지원을 통해 전북특별자치도민의 독서문화 창달 및 도서산업 활성화에 이바지할 수 있음

관계법령

「출판문화산업 진흥법」 제7조의2

제7조의2(지역서점 활성화 지원 등)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춘 서점(이하 "지역서점"이라 한다)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정책을 수립하고 이에 필요한 지원을 하여야 한다. 다만, 지방자치단체는 지역 실정에 따라 지역서점의 요건을 조례로 달리 정할 수 있다.

1. 관할 지역에 주소와 매장을 두고 불특정 다수가 이용할 수 있을 것
2.「부가가치세법」 제8조에 따라 서적 소매업으로 사업자등록을 하였을 것
3.「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가 경영할 것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지역서점 활성화 정책의 수립 및 지원에 필요한 기초자료로

「출판문화산업 진흥법」 제7조의2
활용하기 위하여 지역서점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이 경우 실태조사 결과 지역서점이 없는 지역에 대하여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협의하여 별도의 지원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③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지역서점 활성화 정책의 수립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관련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④ 지방자치단체는 지역서점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정할 수 있다. ⑤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교육감과 협력하여 관할 지역의 도서관(「도서관법」 제3조에 따른 도서관을 말한다)이 도서를 구매하는 경우 지역서점을 이용하도록 독려하여야 한다. ⑥ 제2항에 따른 지역서점에 관한 실태조사의 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조례 개정방안

○ 조례 개정 방향

- 제1조: 위임조례로서의 성격을 명확하게 하도록 목적조항 정비 검토
- 제2조, 제5조, 제10조: 법제처 자치법규 입안기준에 따른 정비(용어 수정, 당연규정 삭제)
- 제3조, 제4조: 입법편제면에서 순서조정 검토
- 제7조: 위탁 규정의 경우 「전북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 등이 당연히 적용되는 것이므로 규정 실익이 없지만, 조례의 완성도・이해도를 위하여 조례명은 표기하지 않고 단순히 선언적 규정으로만 정비
- 제15조: 위원회의 수당 및 여비 규정의 경우 「전북특별자치도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등이 당연히 적용되는 것이므로 규정 실익이 없지만, 조례의 완성도・이해도를 위하여 조례명은 표기하지 않고 단순히 선언적 규정으로만 정비
- 제16조: 포상 규정의 경우 「전북특별자치도 포상 조례」 등이 당연히 적용되는 것이므로 규정 실익이 없지만, 조례의 완성도・이해도를 위하여 조례명은 표기하지 않고 단순히 선언적 규정으로만 정비
- 지역서점 활성화를 위하여 전북자치도의 특성을 담아 조례로 지역서점의 요건을 정할 필요성에 대하여 심층분석을 통하여 지원사업의 세부내용 추가 신설, 지역서점 독서문화 지원 규정, 인증제도 및 우선 조달 계약과 관련된 규정 신설 권고

○ 개정안

현 행	개정안	비고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독서문화 진흥을 통한 지역서점의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도민의 독서문화 진흥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출판문화산업 진흥법」 제7조의2에 따라 전북특별자치도 내 독서문화 진흥을 통한 지역서점의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전북특별자치도민의 독서문화 진흥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위임조례로서의 성격을 명확하게 하도록 목적조항의 규정을 정비 권고
제2조(정의) 이 조례의 "지역서점"이란 전북특별자치도에 본사와 방문매장 사업장을 두고 영업하고 있는 서점을 말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지역서점"이란 전북특별자치도 내에 본사와 방문매장 사업장을 두고 영업하고 있는 서점을 말한다.	-정의조항 규정 형식에 맞게 문장 정비 권고

현 행	개정안	비고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독서문화 진흥을 통한 지역서점 활성화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독서문화 진흥을 통한 지역서점 활성화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입법편제면에서 순서 조정(제3조↔제4조)
제4조(도지사의 책무) ① 전북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독서문화 진흥을 통한 지역서점의 경영안정을 위하여 지역서점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시책을 적극 발굴하고 추진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도서관 등에서의 도서구입시 지역서점 우선구매 정책을 시행하고, 필요한 예산 지원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③ 도지사는 지역서점 활성화에 필요한 시책 마련 및 추진을 위하여 전북특별자치도교육감 및 시장·군수와 협력하여야 한다.	제3조(도지사의 책무) ① 전북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독서문화 진흥을 통한 지역서점의 경영안정을 위하여 지역서점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시책을 적극 발굴하고 추진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도서관 등에서의 도서구입 시 지역서점 우선구매 정책을 시행하고, 필요한 예산 지원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③ 도지사는 지역서점 활성화에 필요한 시책 마련 및 추진을 위하여 전북특별자치도교육감 및 시장·군수와 협력하여야 한다.	-입법편제면에서 순서 조정(제3조↔제4조) -띄어쓰기 정비 권고
제5조(지역서점 활성화 및 지원계획) ① 도지사는 지역서점 활성화와 경쟁력 강화를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지역서점 활성화 및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	제5조(지역서점 활성화 및 지원계획) ① 도지사는 지역서점 활성화와 경쟁력 강화를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전북특별자치도 지역서점 활성화 및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	-지원계획에 행정기관의 고유명칭을 표기하도록 정비 권고
제6조(지원사업 추진) 도지사는 지역문화공간으로서의 지역서점을 활성화하고 경영안정을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인문학 강좌, 작가와의 만남 등 독서관련 프로그램 운영 2. 지역문화공간으로서의 지역서점 활성화 포럼 3. 창업상담, 컨설팅, 교육, 창업자금 융자지원 등의 창업지원 <신설>	제6조(지원사업 추진) 도지사는 지역문화공간으로서의 지역서점을 활성화하고 경영안정을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인문학 강좌, 작가와의 만남 등 독서관련 프로그램 운영 2. 지역문화공간으로서의 지역서점 활성화 포럼 3. 창업상담, 컨설팅, 교육, 창업자금 융자지원 등의 창업지원 4. 지역서점 활성화를 위한 독서문화 진흥 시설의 설치 지원 5. 공공도서관 도서 우선 구매	-심층분석 결과 타 시·도의 사례를 참고하여 지원사업의 세부내용 신설 권고

현 행	개정안	비고
4. 그 밖에 지역서점 활성화와 경영안정 등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	6. 책값 돌려주기 등 지역서점 활성화 지원 7. 협업사업, 밀집지역 활성화, 문화·교육프로그램 운영 등 활성화를 위한 등 경영개선 지원 8. 홍보, 디자인 또는 공동브랜드 개발, 판매촉진 등 마케팅 지원 지역서점, 관련 조합 및 단체 등의 지역서점 활성화를 위한 사업 지원 9. 지역서점 활성화를 위한 책 읽는 문화 확산 시설 설치 지원 10. 그 밖에 지역서점 활성화와 경영안정 등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	
<신설>	제6조의2(지역서점 독서문화 지원) ① 도지사는 지역서점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문화·교육 프로그램 운영 등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인문도서, 고서 등을 전문으로 취급하는 특성화서점의 활성화를 위하여 시책을 추진하고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③ 도지사는 지역서점을 활성화하고 독서인구의 저변을 확대하기 위하여 전북특별자치도민이 지역서점에서 구입한 도서를 읽고 도서관에 제출할 경우 책값을 돌려주는 등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심층분석 결과 타 시·도의 사례를 참고하여 지역서점 독서문화 지원에 관한 규정 신설 권고
<신설>	제6조의3(인증제도 운영) ① 도지사는 지역서점의 자생력 강화 및 복합문화공간화 성장 지원을 위하여 지역문화공간으로서의 지역서점임을 인증하는 인증제도를 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역서점 인증에 필요한 요건, 절차 및 취소 등 구체적인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심층분석 결과 타 시·도의 사례를 참고하여 인증제도 운영에 관한 규정 신설 권고
제7조(사무의 위탁) ① 생략 ② 제1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할	제7조(업무의 위탁) ① 현행과 같음 ② <삭제>	-업무위탁에 대한 선언적인 의미만을 규정하

현 행	개정안	비고
경우에 필요한 절차·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전북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에 따른다.		면, 그에 따른 구체적인 사항은 당연히 「전북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를 적용 받으므로 규정의 실익이 없음(법제처, 2023년 우수조례 및 자치법규 입법컨설팅 사례집, 108면)
제10조(구성) ① 생략 ② 위원회의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다만, 위촉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 위원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한다. 1. 전북도청도서관 관장 2. ~ 5. 생략 ③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④ 생략	제10조(구성) ① 현행과 같음 ② 위원회의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다만, 위촉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 위원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한다. 1. 전북특별자치도청도서관 관장 2. ~ 5. 현행과 같음 ③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④ 현행과 같음	-명칭 변경 정비 권고 -연임 제한에 관한 일반적인 표현으로 규정하도록 정비 권고 -문장 표현 정비 권고
제14조(회의·운영) ① 위원회의 정기회는 매년 한차례 이상 개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임시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소집한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4조(회의·운영) ① 위원회의 정기회는 매년 한 차례 이상 개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임시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소집한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문장 정비 권고
제15조(수당 등)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전북특별자치도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 업	제15조(수당 등)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위원회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수당 및 여비에 관해 선언적인 의미만을 규정하면, 그에 따른 구체적인 사항은 당연히 「전북특별자치도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현 행	개정안	비고
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위원회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아니한다.	관한 조례」를 적용 받으므로 규정의 실익이 없음(법제처, 2023년 우수조례 및 자치법규 입법컨설팅 사례집, 226면)
<신설>	제15조의2(지역서점 등과의 우선 조달계약) ① 도지사는 법령의 범위 안에서 지역서점 또는 「협동조합 기본법」에 따른 지역서점 협동조합에 대하여 도서에 관한 조달계약을 우선적으로 체결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지역서점에서 도서를 구입하는 학교 및 공공기관, 시·군의 도서관 등에 대하여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	-심층분석 결과 타 시·도의 사례를 참고하여 우선 조달계약에 관한 규정 신설 권고
제16조(포상) 도지사는 독서문화 진흥을 통한 지역서점 활성화에 기여한 공적이 뛰어난 개인 또는 단체 등에 대하여 「전북특별자치도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제16조(포상) 도지사는 독서문화 진흥을 통한 지역서점 활성화에 기여한 공적이 뛰어난 개인 또는 단체 등에 대하여 포상할 수 있다.	-포상에 관해 선언적인 의미만을 규정하면, 그에 따른 구체적인 사항은 당연히 「전북특별자치도 포상 조례」를 적용 받으므로 규정의 실익이 없음(법제처, 2023년 우수조례 및 자치법규 입법컨설팅 사례집, 118면)

연 번	조례명	분 류	위임근거	시행일	비 고
35	**전북투어패스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자치조례	-	2019. 2. 1., 제정 (일부개정 2회) [시행 2024. 1. 18.] [전북특별자치도조례 제5399호, 2023. 12. 8., 일부개정]	□ 개정 권고 □ 통합 권고 □ 폐지 권고 □ 이행 권고 ■ 일반 정비 □ 현행 유지 □ 기타( )

사전 검토

○ 기본자료 분석

- (2-4) 조례 제14조에 따라 전북투어패스를 운영하는 데에 1,400,000천원을 집행함
- (2-5) 2023년 공무원 5명, 민간인 3명에게 전북투어패스 유공 포상을 수여함
- (2-5) 조례 제15조에 따라 ㈜엘에스컴퍼니에 전북투어패스 홍보, 판매, 정산 등 통합시스템 운영을 위탁함
- (3-3) 2022년부터 2024년까지 아래와 같이 예산 지원을 실시함 (금액단위: 천원)

연도	사업명	필요예산	확보예산	집행액	집행내역
2022	전북투어패스 운영	1,041,500	1,041,500	1,041,500	전북투어패스 운영 사업비
2023		941,500	941,500	941,500	
2024		1,400,000	1,400,000	720,000	

- (3-5) 전북투어패스는 서비스 공급의 능률성이 현저히 요구되는 사무로써 다양한 수요 대응과 여행트렌트에 맞는 상품 개발, 다각적인 홍보 마케팅 등 사업 운영의 경험 및 노하우를 바탕으로 민간의 축적된 전문역량을 활용하고, 사업의 안정성과 효율성 제고를 위해 민간위탁이 필요한 사업이며, 민간위탁대상으로 적정함

○ 기타의견

- (8-1) 전북투어패스 운영은 전북특별자치도 내 자연환경 및 다양한 문화관광자원을 하나의 여행 콘텐츠로 연계하여 80여개의 주요 관광지를 단 한 장의 카드로 이용할 수 있게 만든 관광 자유이용권으로, 전북자치도의 관광객 유치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는 바가 큰 사업으로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해 조례의 유지가 필요함

입법체계 분석

○ 조례 제정 목적

- 전북특별자치도의 관광 진흥 및 활성화를 촉진하기 위하여 전북특별자치도 내 주요 관광지, 교통수단 등을 하나의 카드로 무료 또는 할인하여 이용할 수 있는 전북투어패스의 발행, 운영 및 관리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 자치법규 입안기준 부합성

- 자치법규 입안기준에 부합하도록 일반적 위임규정 삭제 등 정비 필요

○ 위임 적합성 평가

- 자치조례로 해당사항 없음

평가지표에 따른 평가

○ 분석지표별 평가

평가항목	평가항목별 검토 내용
1. 입법 근거 및 적법성	전북투어패스 운영 및 관리를 위해 자치사무의 범위에서 적절하게 제정되었음
2. 조례의 실효성	전북투어패스 홍보·마케팅 및 연계상품 개발로 관광객 유입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등 전북자치도 관광객 유치 기여하여 조례의 실효성을 확보하고 있음
3. 조례 내용의 적정성	전북투어패스 운영 및 관리를 위한 조례의 각 규정 내용이 적정함
4. 조례의 공평성	장애, 성별, 나이 등에 관한 사회적 편견, 고정관념이 반영된 표현 및 차별 규정 없음
5. 주민 수용성	조례의 체계 및 용어가 주민이 알기 쉽게 되어 있음
6. 전북자치도 현실부합성	전북투어패스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제정된 본 조례는 행정수요를 반영하고 있어 전북특별자치도 현실에 부합함
7. 위원회 운영의 적정성	위원회 운영관련 규정이 없음
※ 기타 의견	없음

○ 타 시·도 유사 조례와의 비교

전북투어패스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충청남도 관광통합이용권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제3조(투어패스 활성화 시책)	**제3조(도지사의 책무)**
제4조(투어패스 이용범위)	제4조(투어패스 운영 등)
제5조(투어패스 종류 등)	제5조(투어패스 판매·환불)
제6조(투어패스 유효기간 등)	제6조(가맹점 지정 등)
제7조(판매점 지정 등)	제7조(가맹점 준수사항)
제8조(판매 수수료)	제8조(투어패스 시스템 구축)
제9조(환불기준)	제9조(위탁)
제10조(가맹점 지정 등)	
제11조(가맹점 준수사항)	
제12조(정산기준)	
제13조(투어패스 시스템 등)	
제14조(예산 등)	
제15조(위탁)	
제16조(시행규칙)	

- 투어패스와 관련하여 충청남도에서 유사한 조례를 운영하고 있으며, 제3조(도지사의 책무) 규정을 제외하고 내용이 유사함

○ 규제사항 평가

- 특이사항 없음

목적달성도 및 부수효과 분석

○ 조례 목적달성도 평가

- 조례 내용에 따라 전북특별자치도 지역에서 자유로이 여행이 가능한 투어패스를 판매 중이지만, 2023년 회계 법령 위반과 금액 부풀리기 의혹 등으로 공무원 11명이 징계처분을 받은 점을 비추어 볼 때 조례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함

○ 부수효과

- 투어패스 판매를 통해 전북특별자치도 내 관광자원을 활성화하여 전북특별자치도민의 관광사업 수익을 높일 수 있음

관계법령

- 자치조례로 해당사항 없음

조례 개정방안

○ 조례 개정 방향

- 조례에서 전체 규정이 30조 미만인 경우에는 장(章)으로 나누지 않음(법제처, 2022 자치법규 길라잡이, 344면)
- 제14조: 법제처 자치법규 입안기준에 따른 정비(조문제목 및 문장 정비)
- 제15조: 위탁 규정의 경우 「전북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 등이 당연히 적용되는 것이므로 규정 실익이 없지만, 조례의 완성도・이해도를 위하여 조례명은 표기하지 않고 단순히 선언적 규정으로만 정비
- 제16조: 시행규칙은 개별 조례에서 위임이 없더라도 조례의 집행에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규칙으로 규정할 수 있으므로 삭제 권고
- 전북투어패스 관련 부실 문제가 제기된바 있으므로 이를 조례를 통하여 개선할 수 있도록 규정을 정비할 필요성에 대해 심층분석을 통해 검토

○ 개정안

현 행	개정안	비고
제1장 총칙	<삭제>	-장(章) 삭제
제2장 투어패스 발행	<삭제>	-장(章) 삭제
제3장 판매점	<삭제>	-장(章) 삭제
제4장 가맹점	<삭제>	-장(章) 삭제
제5장 투어패스 시스템 등	<삭제>	-장(章) 삭제
제14조(예산 등) 도지사는 투어패스의 발행・판매・홍보 등 운영관리 및 투어패스 시스템의 운영, 유지보수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에 반영할 수 있다.	제14조(재정 지원) 도지사는 투어패스의 발행・판매・홍보 등 운영관리 및 투어패스 시스템의 운영, 유지보수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조문제목 및 문장 정비
제6장 보칙	<삭제>	-장(章) 삭제

현 행	개정안	비고
제15조(위탁) ① 도지사는 전북특별자치도 출자·출연기관이나 「관광진흥법」 제2조에 따라 설립된 관광사업자 등에 투어패스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할 수 있다. 1. 생략 2. 제7조부터 제9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투어패스 판매, 판매점 관리 3. ~ 4. 생략 ② 생략 ③ 업무를 위탁할 경우에는 「전북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조례」를 따른다.	제15조(위탁) ① 도지사는 전북특별자치도 출자·출연기관이나 「관광진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관광사업자 등에 투어패스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할 수 있다. 1. 현행과 같음 2. 제7조부터 제9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투어패스 판매 및 판매점 관리 3. ~ 4. 현행과 같음 ② 현행과 같음 ③ <삭제>	-정확한 인용조문 표기 -문장 정비 -업무위탁에 대한 선언적인 의미만을 규정하면, 그에 따른 구체적인 사항은 당연히 「전북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를 적용 받으므로 규정의 실익이 없음(법제처, 2023년 우수조례 및 자치법규 입법컨설팅 사례집, 108면)
제16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삭제>	-시행규칙은 개별 조례에서 위임이 없더라도 조례의 집행에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규칙으로 규정할 수 있으므로 삭제 권고

연 번	조례명	분 류	위임근거	시행일	비 고
36	**전북특별자치도 관광기념품 개발 및 육성조례**	자치조례	-	2015. 5. 1., 제정 (일부개정 2회) [시행 2024. 1. 18.] [전북특별자치도조례 제5399호, 2023. 12. 8., 일부개정]	■ 개정 권고 □ 통합 권고 □ 폐지 권고 □ 이행 권고 ■ 일반 정비 □ 현행 유지 □ 기타( )

사전 검토

○ 기본자료 분석

- (2-3) 조례 제4조에 따라 2024 전북특별자치도 관광기념품 100선 사업 기본계획을 수립함
- (3-3) 조례 내용에 따라 2022년부터 2024년까지 아래와 같이 예산을 확보하고 집행함

(금액단위: 천원)

연도	사업명	필요예산	확보예산	집행액	집행내역
2022	전라북도 관광 기념품 100선	350,000	350,000	350,000	- 공모전, 컨설팅 등 진행 - 100선 판매관 운영비 지원
2023	전라북도 관광 기념품 100선	350,000	350,000	350,000	- 공모전, 컨설팅 등 진행 - 100선 판매관 운영비 지원
2024	전북특별자치도 관광 기념품 100선	350,000	350,000	350,000	- 공모전, 컨설팅 등 진행 - 100선 판매관 운영비 지원

- (7-1) 조례 제5조에 따라 관광기념품 100선 공모전 심사위원회를 둠
- (7-3) 위원회 위원 11인 중 여성 비율은 45.45%임
- (7-4) 2022년부터 2024년까지 아래와 같이 위원회를 개최함

연도별	2022	2023	2024
개최건수	1	1	1
개최일	6.17.	10.16.	6.19.
소요예산	6,744,200	6,148,050	5,178,500

- (7-5) 관광기념품 100선의 선정 또는 해제 사유 발생 시 심사를 위해 위원회를 계속 운영해야 함

○ 기타의견

- (8-1) 현행 조례를 통하여 관광기념품 100선 사업을 원활히 수행함으로써 지역경제 활성화에 크게 기여하고 있어 조례의 현행유지가 필요함

입법체계 분석

○ 조례 제정 목적

- 전북특별자치도 관광기념품의 개발과 육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관광기념품 산업의 발전기반 조성과 관광기념품의 고부가가치 산업화를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함

○ 자치법규 입안기준 부합성

- 자치법규 입안기준에 부합하도록 비문수정, 용어수정 등 정비 필요

○ 위임 적합성 평가

- 자치조례로 해당사항 없음

평가지표에 따른 평가

○ 분석지표별 평가

평가항목	평가항목별 검토 내용
1. 입법 근거 및 적법성	자치사무의 범위에서 적절하게 제정되었음
2. 조례의 실효성	조례에서 규정하고 있는 관광기념품 100선 사업이 예산 확보를 통해 적절하게 이루어지고 있음
3. 조례 내용의 적정성	관광기념품 100선의 선정, 공모, 지원사항을 규정하는 등 조례 내용이 적정하게 제정되었음
4. 조례의 공평성	장애, 성별, 나이 등에 관한 사회적 편견, 고정관념이 반영된 표현 없음
5. 주민 수용성	조례의 체계 및 용어가 주민이 알기 쉽게 되어 있음
6. 전북자치도 현실부합성	관광기념품의 개발과 육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여 전북의 현실과 부합한 행정수요를 반영하고 있음
7. 위원회 운영의 적정성	조례 제5조에 따라 위원회가 적절하게 설치되어 운영 중임
※ 기타 의견	없음

○ 타 시·도 유사 조례와의 비교

전북특별자치도 관광기념품 개발 및 육성조례	서울특별시 관광기념품 개발 및 육성 조례	충청남도 관광기념품 개발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제주특별자치도 관광기념품 개발 및 육성 조례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제3조(시책과 사업)	제3조(시책과 사업)	제3조(도지사의 책무)	제3조(시책 수립 등)
제4조(관광기념품 100선 선정)	제4조(위원회의 설치)	제4조(추진사업)	제4조(위원회의 설치)
제5조(관광기념품 100선 공모전 심사위원회)	제5조(구성 등)	제5조(행사 개최·참가 등)	제5조(구성)
제6조(관광기념품 100선 마크의 개발·사용)	제6조(위원장의 직무)	제6조(우수 관광기념품의 선정)	제6조(임기)
제7조(마크 부착에 따른 생산자의 책무 및 선정 해제)	제7조(회의)	**제7조(우수업체의 지정)**	제7조(위원장의 직무)
제8조(관광기념품 100선 선정제품 지원)	제8조(수당 등)	제8조(우수업체 지정 해제)	제8조(회의)
제9조(사무의 위탁)	제9조(경진대회 등의 개최)	제9조(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등)	제9조(수당 등)
제10조(포상)	제10조(입상자에 대한 지원)	제10조(위원장의 직무)	제10조(경진대회 등의 개최)
	제11조(우수관광기념품 업체의 지정)	제11조(회의)	제11조(입상자에 대한 지원)

	제12조(평가기관)	제12조(시행규칙)	제12조(제주관광명품의 선정)
	제13조(지정 신청)		**제13조(제주관광명장의 선정)**
	제14조(지정 고시와 통지)		제14조(우수관광기념품 업체의 지정)
	제15조(지정 효력)		제15조(평가기관)
	제16조(사후관리)		제16조(지정 등의 신청)
	제17조(지정 해제)		제17조(지정 등의 고시와 통지)
	제18조(전시판매장의 설치 운영)		제18조(지정 등의 효력)
	제19조(우수관광기념품 업체 육성 및 지원)		제19조(사후관리)
	제20조(마케팅 활동 및 판로개척 등 지원)		제20조(지정 등의 해제)
	제21조(사무의 위탁)		제21조(전시판매장의 설치운영)
	제22조(표창)		제22조(제주관광명품·제주관광명장 등의 육성)
	제23조(시행규칙)		제23조(판로개척)
			제24조(전문기관 등의 지정)
			제25조(시행규칙)

- 서울특별시에서는 우수관광기념품업체의 육성을 위하여 사업수행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함
- 충청남도에서는 우수업체 지정 조항을 통해 관광기념품 업체에 대하여 관광기념품 개발·상품화·판로개척 등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함
- 제주특별자치도에서는 제13조에서 관광기념품을 창작 개발·제작하는 사람 중 일정한 요건을 갖춘 사람을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제주관광명장으로 선정할 수 있도록 함

○ 규제사항 평가

- 특이사항 없음

목적달성도 및 부수효과 분석

○ 조례 목적달성도 평가

- 조례 내용에 따라 전북특별자치도의 특색있는 관광기념품을 판매하여 지역 홍보와 제조업체 성장에 기여함

○ 부수효과

- 전북특별자치도의 특색있는 관광기념품을 통해 전북특별자치도민에게는 지역 애향심을 고취하고 외부인에게는 전북특별자치도 홍보의 기회를 마련함

관계법령

- 자치조례로 해당사항 없음

조례 개정방안

○ 조례 개정 방향

- 제2조, 제6조, 제8조: 법제처 자치법규 입안기준에 따른 정비(비문 수정, 문장 표현 수정)
- 제4조의2: 타 시·도의 사례를 참고하여 우수업체 지정 등 관련 규정 신설 검토
- 제9조: 위탁 규정의 경우「전북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등이 당연히 적용되는 것이므로 규정 실익이 없지만, 조례의 완성도·이해도를 위하여 조례명은 표기하지 않고 단순히 선언적 규정으로만 정비
- 제10조: 포상 규정의 경우「전북특별자치도 포상 조례」등이 당연히 적용되는 것이므로 규정 실익이 없지만, 조례의 완성도·이해도를 위하여 조례명은 표기하지 않고 단순히 선언적 규정으로만 정비
- 제13조: 심층분석을 통해 타 시·도의 사례를 참고하여 관광명장 선정 규정 신설 검토

○ 개정안

현 행	개정안	비고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생략 2. "전북특별자치도 관광기념품 100선"이란 관광기념품 중에서 품질이 우수하고 부가가치가 높아 경쟁력 있는 전략적인 관광기념품으로 육성할 만한 가치가 있는 전북특별자치도의 대표상품으로서 이 조례에 따라 지정된 관광기념품을 말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현행과 같음 2. "전북특별자치도 관광기념품 100선"이란 관광기념품 중에서 품질이 우수하고 부가가치가 높고 경쟁력이 있어 전략적인 관광기념품으로 육성할 만한 가치가 있는 전북특별자치도의 대표상품으로서 이 조례에 따라 지정된 관광기념품을 말한다.	-자연스러운 문장으로 정비하여 전달력 있는 문장으로 정비
<신설>	제4조의2(우수업체의 지정) ① 도지사는 관광기념품 관련 업체 중 아이디어 및 제작 기술이 우수한 업체를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우수 관광기념품 업체로 지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제4조에 따른 관광기념품 100선에 선정된 업체를 우선 고려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지정된 우수 관광기념품 업체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거나 사업 수행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1. 업체 시설 현대화 및 집단화 사업 2. 신규 관광기념품 개발 및 생산 장려금의 지원 3. 포장 디자인과 브랜드 개발 4. 마케팅 및 홍보 촉진 활동 5. 특허 출원, 등록 관리 등에 필요	-타 시·도의 사례를 참고하여 우수업체 지정 관련 규정 신설 검토 -우수업체 지원과 관련하여 현행 조례 제8조의 관광기념품 100선에 대한 지원과 차별화 할 수 있도록 규정 검토

현 행	개정안	비고
	한 사항 지원 및 법률자문 5. 국내외 박람회, 전시회 , 특별행사 개최 및 참가 6. 유관기관을 통한 국내외 판로개척 7. 그 밖에 관광기념품 개발과 육성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4조의3(우수업체 지정 해제) ①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경우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정을 해제할 수 있다. 1. 우수 관광기념품 업체로 지정 당시의 관광기념품을 생산하지 않고 다른 제품을 생산하거나 휴업·폐업·관외 이전 또는 소재 불명 업체로 되었을 경우 2. 관계 법규를 위반하였거나 그 밖에 특수한 사유가 있을 경우 3. 그 밖에 도지사가 지정을 지속적으로 유지하기가 부적합하다고 판단할 경우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해제할 경우, 지원의 중단과 반환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5조(관광기념품 100선 공모전 심사위원회) ① 관광기념품 100선의 선정 또는 해제를 심사하기 위하여 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하여 12인 이내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행정부지사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도록 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생략 ④ 심사의 공정성을 위해 당해 제품과 관련 있는 사람은 심사위원에서	제5조(관광기념품 100선 공모전 심사위원회) ① 관광기념품 100선의 선정 또는 해제를 심사하기 위하여 전북특별자치도 관광기념품 100선 공모전 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2명 이내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행정부지사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도록 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현행과 같음 ④ 심사의 공정성을 위해 해당 제품과 관련있는 사람은 심사위원에서	-위원회 정식 명칭에 행정기관의 고유명칭 표기 -정확한 용어 및 일본식 표기 등의 문장정비

현 행	개정안	비고
배제된다. ⑤ 생략 ⑥ 전북자치도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⑦ 이하 생략	배제된다. ⑤ 현행과 같음 ⑥ 전북자치도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⑦ 이하 현행과 같음	
제6조(관광기념품 100선 마크의 개발·사용) ① 생략 ② 마크는 관광기념품 100선 공모전에 선정된 작품에 한하여 부착할 수 있으며, 마크에 대한 권리는 도지사에게 있다. ③ 생략	제6조(관광기념품 100선 마크의 개발·사용) ① 현행과 같음 ② 마크는 관광기념품 100선 공모전에 선정된 작품에 한하여 부착할 수 있으며, 마크에 대한 권리는 전북자치도에 있다. ③ 현행과 같음	-권리는 전북자치도에 속해야 할 것으로 보임. 문장 표현 정비 권고
제8조(관광기념품 100선 선정제품 지원) 도지사는 전북특별자치도 관광기념품 100선 공모전 선정제품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1. ~ 3. 생략 4. 그 밖에 전북특별자치도 관광기념품 100선 사업 활성화를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8조(관광기념품 100선 선정제품 지원) 도지사는 관광기념품 100선 공모전 선정제품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1. ~ 3. 현행과 같음 4. 그 밖에 도지사가 관광기념품 100선 사업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3조에서 약칭하고 있음 -중복적인 문장 표현 정비 권고
제9조(사무의 위탁) ① 생략 ② 제1항에 따라 위탁하는 사무의 종류·범위, 위탁의 방법과 절차 등은 「전북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에 따른다.	제9조(업무의 위탁) ① 현행과 같음 ② <삭제>	-업무위탁에 대한 선언적인 의미만을 규정하면, 그에 따른 구체적인 사항은 당연히 「전북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를 적용 받으므로 규정의 실익이 없음(법제처, 2023년 우수 조례 및 자치법규 입법컨설팅 사례집, 108면)
제10조(포상) 도지사는 전북특별자치도 관광기념품의 개발과 육성에 현저한 공로가 있다고 인정되는 개인·기관·단체·법인 및 공무원 등에 대하여 「전북특별자치도 포상 조례」에	제10조(포상) 도지사는 전북특별자치도 관광기념품의 개발과 육성에 현저한 공로가 있다고 인정되는 개인·기관·단체·법인 및 공무원 등에 대하여 포상할 수 있다.	-포상에 관해 선언적인 의미만을 규정하면, 그에 따른 구체적인 사항은 당연히 「전북특별자치

현 행	개정안	비고
따라 포상할 수 있다.		도 포상 조례」를 적용 받으므로 규정의 실익이 없음(법제처, 2023년 우수조례 및 자치법규 입법컨설팅 사례집, 118면)
<신설>	제13조(전북관광명장의 선정 등) ① 도지사는 제2조제2호의 전북특별자치도 관광기념품을 창작 개발·제작하는 사람 중 일정한 요건을 갖춘 사람을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전북관광명장으로 선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전북관광명장의 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심층분석을 통해 타 시·도의 사례를 참고하여 관광명장 선정 규정 신설 검토

연 번	조례명	분 류	위임근거	시행일	비 고
37	**전북특별자치도 바둑 활성화 지원 조례**	자치조례	-	2020. 2. 28., 제정 (일부개정 1회) [시행 2024. 1. 18.] [전북특별자치도조례 제5399호, 2023. 12. 8., 일부개정]	□ 개정 권고 □ 통합 권고 □ 폐지 권고 □ 이행 권고 ■ 일반 정비 □ 현행 유지 □ 기타( )

사전 검토

○ 기본자료 분석

- (1-1) 본 조례는 「바둑진흥법」 제3조, 제8조 관련 내용을 규정한 자치조례임
- (2-2) 본 조례 내용은 2015년 제정된 전북특별자치도 체육진흥조례와 내용이 유사함
- (2-3) 조례 내용에 따라 2024년 바둑 활성화 지원 계획을 수립함
- (2-4) 조례 제4조에 따라 전북특별자치도민을 대상으로 한 바둑교육에 3,440천원, 바둑생활체육 관련 사업에 68,000천원을 확보함
- (2-5) 현재 3개 시·군에 생활체육교실 설립을 추진 중임
- (2-5) 2023년 12월 1명에게 생활체육유공 포상을 수여함
- (3-1) 조례 제3조에 따라 재정지원을 실시할 수 있음
- (3-3) 조례 제3조에 따라 2022년부터 2024년까지 아래와 같이 예산을 확보하고 집행함

(단위: 천원)

연도	사업명	필요예산	확보예산	집행액	집행내역
2022	시군생활체육대회지원	15,000	15,000	15,000	대회지원비
	국제전국규모체육대회지원	38,000	38,000	38,000	대회지원비
2023	시군생활체육대회지원	21,000	21,000	21,000	대회지원비
	국제전국규모체육대회지원	28,000	28,000	28,000	대회지원비
2024	시군생활체육대회지원	50,000	50,000	50,000	대회지원비
	도지사기 대회 지원	18,000	18,000	18,000	대회지원비
	생활체육교실 운영	3,440	3,440	3,440	강사비 등

○ 기타의견

- (8-1) 바둑 활성화 및 바둑문화 기반조성을 위해 조례 유지가 필요함
- (8-3) 다른 유사한 조례(「전북특별자치도 체육진흥 조례」)와의 통합하여 운영할 필요성은 있음

입법체계 분석

○ 조례 제정 목적

- 전북특별자치도 바둑 활성화 및 바둑문화 기반조성에 관한 지원 사항을 정함으로써 전북특별자치도민의 여가선용 기회 확대와 건강한 정신 함양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 자치법규 입안기준 부합성

- 자치법규 입안기준에 부합하도록 일반적 위임규정 삭제 정비 필요

○ 위임 적합성 평가

- 자치조례로 해당사항 없음

평가지표에 따른 평가

○ 분석지표별 평가

평가항목	평가항목별 검토 내용
1. 입법 근거 및 적법성	자치사무의 범위에서 적절하게 제정되었음
2. 조례의 실효성	바둑관련 프로그램 등 지속적으로 잘 운영되어 실효성이 확보됨
3. 조례 내용의 적정성	실질적인 지원방안인 바둑대회 개최와 같은 조례 내용이 적정함
4. 조례의 공평성	장애, 성별, 나이 등에 관한 사회적 편견, 고정관념이 반영된 표현 및 차별 규정 없음
5. 주민 수용성	조례의 체계 및 용어가 주민이 알기 쉽게 되어 있음
6. 전북자치도 현실부합성	지역의 특성과 여건에 맞는 바둑 진흥책을 마련하기 위하여 제정된 본 조례는 행정수요를 반영하고 있어 전북특별자치도 현실에 부합함
7. 위원회 운영의 적정성	위원회 운영관련 규정이 없음
※ 기타 의견	없음

○ 타 시·도 유사 조례와의 비교

전북특별자치도 바둑 활성화 지원 조례	광주광역시 바둑 진흥 조례	서울특별시 바둑 진흥 및 지원 조례	경기도 바둑 진흥 및 지원 조례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제3조(도지사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3조(도지사의 책무)
제4조(사업)	제4조(다른 법령 및 조례와의 관계)	제4조(시장의 책무)	제4조(사업)
제5조(바둑전용경기장의 조성)	제5조(사업)	제5조(사업)	제5조(바둑전용경기장의 조성)
제6조(협력체계 구축)	**제6조(바둑지도자 등의 육성 및 확보)**	제6조(바둑전용경기장의 조성)	제6조(지원)
제7조(포상)	제7조(바둑전용경기장의 조성)	제7조(지원)	제7조(협력체계 구축)
제8조(시행규칙)	제8조(지원)	제8조(협력체계 구축)	제8조(포상)
	제9조(바둑의 날)	제9조(표창)	제9조(시행규칙)
	제10조(협력체계 구축)	제10조(시행규칙)	
	제11조(포상)		
	제12조(시행규칙)		

- 광주광역시는 제6조(바둑지도자 등의 육성 및 확보)에서 바둑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바둑지도자, 바둑전문기사 등을 육성하거나 확보할 수 있도록 함

○ 규제사항 평가

- 특이사항 없음

목적달성도 및 부수효과 분석

○ 조례 목적달성도 평가

- 조례 내용에 따라 매년 전북특별자치도, 시·군 체육대회에 지원을 실시하고 있다는 점에서 조례의 목적이 달성되고 있음

○ 부수효과

- 바둑의 진흥을 통해 청소년의 두뇌학습에 기여할 수 있음

관계법령

- 자치조례로 해당사항 없음

조례 개정방안

○ 조례 개정 방향

- 제4조: 법제처 자치법규 입안기준에 따른 정비(약칭표현 정비)
- 제5조: 띄어쓰기 정비 권고
- 제7조: 포상 규정의 경우「전북특별자치도 포상 조례」등이 당연히 적용되는 것이므로 규정 실익이 없지만, 조례의 완성도·이해도를 위하여 조례명은 표기하지 않고 단순히 선언적 규정으로만 정비
- 제8조: 시행규칙은 개별 조례에서 위임이 없더라도 조례의 집행에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규칙으로 규정할 수 있으므로 삭제 권고
- 유사한 내용을 규정하고 있는「전북특별자치도 체육진흥 조례」와의 통합운영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집행부 의견에 따라 심층분석을 통해 통합 여부 검토

○ 개정안

현 행	개정안	비고
제4조(사업) 도지사는 바둑 진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전북특별자치도 바둑 및 바둑문화 진흥 2. 전북특별자치도 바둑 관련 실태조사 및 기술개발	제4조(사업) 도지사는 바둑 진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전북특별자치도(이하 "전북자치도"라 한다) 바둑 및 바둑문화 진흥 2. 전북자치도 바둑 관련 실태조사 및 기술개발	-약칭표현 정비 권고
제5조(바둑전용경기장의 조성) 도지사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바둑 전용경기장을 조성·운영 할 수 있다.	제5조(바둑전용경기장의 조성) 도지사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바둑 전용경기장을 조성·운영할 수 있다.	-띄어쓰기 정비 권고
제7조(포상) 도지사는 바둑 활성화에 기여한 공로가 현저한 기관·법인·단체 및 개인 등을 선정하여 「전북특별자치도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제7조(포상) 도지사는 바둑 활성화에 기여한 공로가 현저한 기관·법인·단체 및 개인 등을 선정하여 포상할 수 있다.	-포상에 관해 선언적인 의미만을 규정하면, 그에 따른 구체적인 사항은 당연히 「전북특별자치도 포상 조례」를 적용 받으므로 규정의 실익이 없음(법제처, 2023년 우수조례 및 자치법규 입법컨설팅 사례집, 118면)

현 행	개정안	비고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삭제>	-시행규칙은 개별 조례에서 위임이 없더라도 조례의 집행에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규칙으로 규정할 수 있으므로 삭제 권고

연 번	조례명	분 류	위임근거	시행일	비 고
38	**전북특별자치도 국제문화예술체육행사 지원 조례**	자치조례	-	1999. 12. 3., 제정 (일부개정 3회) [시행 2024. 1. 18.] [전북특별자치도조례 제5399호, 2023. 12. 8., 일부개정]	□ 개정 권고 □ 통합 권고 ■ 폐지 권고 □ 이행 권고 ■ 일반 정비 □ 현행 유지 □ 기타( )

사전 검토

○ 기본자료 분석

- (2-3) 조례 제3조에 따라 2023전북아시아태평양마스터스대회 운영지원 계획을 수립함
- (2-5) 조례 제5조에 따라 2023전북아시아태평양마스터스대회 운영지원에 2020년부터 2024년까지 총 11,630,000천원을 집행함
- (2-5) 조례 제3조에 따라 2023전북아시아태평양마스터스대회 조직위원회를 1총장, 3본부, 8부, 42명으로 구성함
- (2-5) 조례 제8조에 따라 2020년부터 2023년까지 매년 2023전북아시아태평양마스터스대회 추진실적 및 결산보고서를 제출함
- (2-5) 2023전북아시아태평양마스터스대회 유공 포상을 공무원 25인, 민간인 80인에게 수여함
- (3-1) 조례 제3조에 따라 재정 지원을 실시할 수 있음
- (3-3) 2020년부터 2024년까지 아래와 같이 예산을 확보하고 집행함

(단위: 천원)

연도	사업명	필요예산	확보예산	집행액	집행내역
2020	2023전북아태마스터스대회조직위 운영 지원	859,416	859,416	706,391	대회개최준비
2021		2,313,557	2.313,557	2,313,557	대회지원비 운영비
2022		3,178,000	3,178,000	3,178,000	대회지원비 운영비
2023		5,279,027	5,279,027	5,279,027	대회지원비 운영비

○ 기타의견

- (8-1) 대규모 국제체육대회 유치 지원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조직위원회를 설치하고 구성하여 행사준비를 철저히 하기 위해 조례의 유지가 필요함

입법체계 분석

○ 조례 제정 목적

- 전북특별자치도에서 개최하는 국제문화예술체육행사 준비와 운영을 위하여 설립되는 조직위원회를 지원하여 행사를 성공적으로 개최함으로써 지역문화 발전과 도민의 자긍심을 높이는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함

○ 자치법규 입안기준 부합성

- 자치법규 입안기준에 부합하도록 용어 수정, 목적조항 약칭 삭제, 표현 수정 등 정비 필요

○ 위임 적합성 평가

- 자치조례로 해당사항 없음

평가지표에 따른 평가

○ 분석지표별 평가

평가항목	평가항목별 검토 내용
1. 입법 근거 및 적법성	대규모 체육행사 개최 준비와 운영을 위해 자치사무의 범위에서 적절하게 제정되었음
2. 조례의 실효성	국제스포츠대회 노하우 습득을 통한 대규모 국제행사 유치로 관광객 유입을 통한 경제효과 및 전북을 세계 각국 홍보라는 실효성이 확보됨
3. 조례 내용의 적정성	스포츠와 관광을 결합한 대규모 국제대회를 유치하여 지역경제활성화와 문화유산 및 관광자원의 세계화 도모라는 목적을 가진 조례 내용이 적정함
4. 조례의 공평성	장애, 성별, 나이 등에 관한 사회적 편견, 고정관념이 반영된 표현 및 차별 규정 없음
5. 주민 수용성	조례의 체계 및 용어가 주민이 알기 쉽게 되어 있음
6. 전북자치도 현실부합성	행사 준비와 운영을 위해 조직설치 및 구성, 예산지원 등을 규정하기 위하여 제정된 본 조례는 행정수요를 반영하고 있어 전북특별자치도 현실에 부합함
7. 위원회 운영의 적정성	조직위원회가 규정에 따라 구성되고 매년 실적을 추진하고 결산하는 등 적정하게 운영되고 있음
※ 기타 의견	국제행사 지원을 위한 포괄적인 내용을 담고 있어 각 행사의 특성을 반영하는 내용을 규정하고 있지는 않음

○ 타 시·도 유사 조례와의 비교

전북특별자치도 국제문화예술 체육행사 지원 조례
제1조(목적)
제2조(정의)
제3조(조직위원회 설치 및 구성)
제4조(조직위원회의 기능)
제5조(예산의 지원)
제6조(공무원의 파견)
제7조(기타 행정상 지원)
제8조(사업계획서 및 사업정산서 제출)
제9조(휘장 등의 사용)
제10조(시행규칙)

- 타 시·도 조례에는 국제문화예술 체육행사 지원에 관한 조례나 유사조례가 없음

○ 규제사항 평가

- 특이사항 없음

목적달성도 및 부수효과 분석

○ 조례 목적달성도 평가

- 조례 내용에 따라 71개국에서 1만 4천여명이 참가한 2023전북아시아태평양마스터스대회가 성공적으로 개최되었다는 점에서 조례의 목적이 충분히 달성됨

○ 부수효과

- 국제 문화예술체육행사 개최를 통해 전북특별자치도를 홍보하고 관광수입을 증대할 수 있음

관계법령

- 자치조례로 해당사항 없음

조례 개정방안

○ 조례 개정 방향

- 이 조례는 문화·예술·체육 분야의 국제행사 지원을 위한 포괄적인 내용을 담고 있어 각 행사별 구체적인 특성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문제점이 도출되어 심층분석을 실시하였고, 그 결과 이 조례는 폐지하고 각각의 행사에 맞는 개별 조례 제정 필요하다고 판단. 다만, 폐지하지 않고 이 조례를 유지한다면 다음과 같은 개정 필요
- 제1조, 제2조, 제4조, 제5조, 제6조, 제8조: 법제처 자치법규 입안기준에 따른 정비(약칭 수정, 일본식 표현 수정)
- 제10조: 시행규칙은 개별 조례에서 위임이 없더라도 조례의 집행에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규칙으로 규정할 수 있으므로 삭제 권고

○ 개정안

현 행	개정안	비고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전북특별자치도에서 개최하는 국제문화예술체육행사(이하 "행사"라 한다) 준비와 운영을 위하여 설립되는 조직위원회(이하 "조직위원회"라 한다)를 지원하여 행사를 성공적으로 개최함으로써 지역문화 발전과 도민의 자긍심을 높이는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전북특별자치도에서 개최하는 국제문화예술체육행사 준비와 운영을 위하여 설립되는 조직위원회를 지원하여 행사를 성공적으로 개최함으로써 지역문화 발전과 전북특별자치도민의 자긍심을 높이는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 목적조항에서 약칭을 하지 않음. 약칭 삭제 권고 -이하 조례 본문을 검토했을 때, 굳이 "조직위원회"에 대한 약칭이 필요 없음 -"도민"을 원용어로 사용하도록 정비 검토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국제문화예술체육행사"라 함은 전북특별자치도가 주최하거나 관할 지방자치단체 또는 중앙부처·국제기구 및 공공단체 등이 전북특별자치도내에서 개최하는 문화·음악·미술·무용·연극·영화·민속·체육 등과 관련한 행사중 외국국가가 참여하는 행사로서 전북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행사를 말하며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국제문화예술체육행사(이하 "행사"라 한다)"라 함은 전북특별자치도가 주최하거나 관할 지방자치단체 또는 중앙부처·국제기구 및 공공단체 등이 전북특별자치도 내에서 개최하는 문화·음악·미술·무용·연극·영화·민속·체육 등과 관련한 행사 중 외국국가가 참여하는 행사로서 전북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가 필요하다고	-목적조항에서 삭제한 "행사" 용어 약칭 표현 추가 정비 권고 -띄어쓰기 정비 권고

현 행	개정안	비고
전북특별자치도의회의 승인을 받은 사업 또는 행사에 한한다.	인정하는 행사를 말하며 전북특별자치도의회의 승인을 받은 사업 또는 행사에 한한다.	
제4조(조직위원회의 기능) 조직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업 또는 활동을 수행한다. 1. 생략 2. 행사기간중 문화예술 또는 체육행사 및 부대사업 시행 운영 3. ~ 5. 생략	제4조(조직위원회의 기능) 조직위원회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 또는 활동을 수행한다. 1. 현행과 같음 2. 행사기간 중 문화예술 또는 체육행사 및 부대사업 시행 운영 3. ~ 5. 현행과 같음	-조직위원회가 각 호의 모든 내용에 해당하는 사업 또는 활동을 수행할 것이므로 '다음 각 호'로 표시하는 것이 맞고, 만약 각 호의 어느 하나에만 해당되어도 가능하다는 의미로 규정하고 싶다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로 규정할 것을 권고함 -띄어쓰기 정비 권고
제5조(예산의 지원) 도지사는 조직위원회의 운영과 행사의 준비를 지원하기 위하여 「지방재정법」지방재정법 제17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 29조 제2항 에 의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예산을 지원 할 수 있다.	제5조(예산의 지원) 도지사는 조직위원회의 운영과 행사의 준비를 지원하기 위하여 「지방재정법」 제17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제2항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중복 삭제 정비 권고 -띄어쓰기 정비 권고
제6조(공무원의 파견) 도지사는 조직위원회의 원활한 업무수행을 위하여 소속공무원의 파견요청이 있을 경우에 「지방공무원법」제30조의4 및 「지방공무원임용령」제27조의2에 의거 소속공무원을 파견하여 행사 업무를 지원하게 할 수 있다.	제6조(공무원의 파견) 도지사는 조직위원회의 원활한 업무수행을 위하여 소속공무원의 파견요청이 있을 경우에 「지방공무원법」 제30조의4 및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27조의2에 따라 소속공무원을 파견하여 행사 업무를 지원하게 할 수 있다.	-일본식 표현 정비 권고 -법령 제명 띄어쓰기 정비 권고
제8조(사업계획서 및 사업정산서 제출) ① 생략 ② 조직위원회는 행사 종료후 1월이내에 사업정산보고서를 작성하여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8조(사업계획서 및 사업정산서 제출) ① 현행과 같음 ② 조직위원회는 행사 종료 후 1월이내에 사업정산보고서를 작성하여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띄어쓰기 정비 권고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삭제>	-시행규칙은 개별 조례에서 위임이 없더라도 조례의 집행에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규칙으로 규정할 수 있으므로 삭제 권고

연 번	조례명	분 류	위임근거	시행일	비 고
39	**전북특별자치도 공사상 소방공무원 지원에 관한 조례**	자치조례	-	2015. 12. 28., 제정 (일부개정 1회) [시행 2024. 1. 18.] [전북특별자치도조례 제5399호, 2023. 12. 8., 일부개정]	■ 개정 권고 □ 통합 권고 □ 폐지 권고 □ 이행 권고 ■ 일반 정비 □ 현행 유지 □ 기타( )

사전 검토

○ 기본자료 분석

- (2-3) 조례 제6조에 따라 지원 계획을 수립해야 하나, 조례에서 규정한 지원계획은 「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기본법」을 근거로 집행계획을 수립·운영 중이며 세부 사업별로 별도 시행 중이라 별도의 지원계획을 수립하지 않음
- (2-5) 순직 소방공무원을 추모하고, 숭고한 희생과 헌신을 기리기 위한 추모공간 조성(300,000천원) 및 추모행사(9,000천원)에 예산을 집행함
- (3-1) 조례 제9조에 따라 공사상 소방공무원의 자녀에게 장학금을 지급할 수 있음
- (3-2) 지원을 받는 소방공무원의 유족은 배우자, 자녀, 부모, 성년인 직계비속이 없는 조부모로 명확히 정의됨
- (3-3) 공사상자 발생 시 기타 법률 등에 의해 보상체계를 갖추고 적절한 보상이 이루어지고 있다고 평가되어 별도의 예산을 확보하지 않음
- (7-1) 조례 제8조에 따라 전북특별자치도 공사상 소방공무원 지원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음
- (7-3) 위원 성별에 관한 규정사항은 없으나 공사상자 지원에 관한 사항은 성별의 영향을 받지 않을 것으로 판단하여 성별 구분 또는 고정관념, 성별 특성반영, 성별 균형참여 등 개선할 사항이 없는 것으로 평가됨

○ 기타의견

- (8-1) 전북특별자치도 내 공사상 소방공무원 지원에 관한 세부적 사항을 규정하는 역할로 본 조례가 필요함

입법체계 분석

○ 조례 제정 목적

- 도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각종 소방활동과 재난현장에서 순직 또는 부상·질병을 입은 전북특별자치도 소방공무원과 유족 또는 가족을 예우하고 지원함으로써 생활안정과 사기진작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함

○ 자치법규 입안기준 부합성

- 자치법규 입안기준에 부합하도록 상위법령 인용 오류 수정, 용어 수정 등의 정비 필요

○ 위임 적합성 평가

- 자치조례로 해당사항 없음

평가지표에 따른 평가

○ 분석지표별 평가

평가항목	평가항목별 검토 내용
1. 입법 근거 및 적법성	자치사무의 범위에서 적절하게 제정되었음
2. 조례의 실효성	공사상자 발생 시 기타 법률 등에 의해 보상체계를 갖추고 적절한 보상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조례에 의해 추모공간 조성, 추모행사 진행 등이 추진되고 있어 조례의 실효성이 확보됨
3. 조례 내용의 적정성	조례의 목적에 맞도록 규정되어 내용은 적정한 것으로 평가됨
4. 조례의 공평성	장애, 성별, 나이 등에 관한 사회적 편견, 고정관념이 반영된 표현 및 차별 규정 없음
5. 주민 수용성	조례의 체계 및 용어가 주민이 알기 쉽게 되어 있음
6. 전북자치도 현실부합성	공사상 소방공무원의 유족 지원을 통해 공공복리 증진에 기여하는 조례로 전북특별자치도 현실에 부합함
7. 위원회 운영의 적정성	위원회 운영 관련 규정이 있으나(임의규정) 위원회 개최 실적은 없음
※ 기타 의견	없음

○ 타 시·도 유사 조례와의 비교

전북특별자치도 공사상 소방공무원 지원에 관한 조례	서울특별시 순직·공상 소방공무원 지원 조례	충청남도 순직 및 공상 소방공무원 지원에 관한 조례	부산광역시 순직·공상 소방공무원 지원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제3조(다른 조례 등과의 관계)	제3조(다른 조례 등과의 관계)	제3조(적용범위)	제3조(책무)
제4조(유족 또는 가족의 범위)	제4조(유족 또는 가족의 범위)	제4조(책무)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5조(도지사의 책무)	제5조(시장의 책무)	제5조(지원계획의 수립)	제5조(유족 또는 가족의 범위)
제6조(지원계획 수립)	제6조(지원계획의 수립)	제6조(재원부담 및 확보)	제6조(지원계획의 수립)
제7조(재원의 부담 및 확보)	**제7조(순직소방공무원 추모사업 지원)**	제7조(위원회의 설치·운영)	제7조(자녀장학금 지원)
제8조(위원회 설치·운영)	제8조(순직소방공무원 유족 지원)	제8조(장학금 지원)	제8조(보험료의 지원)
제9조(자녀장학금 지원)	제9조(취업·창업 지원)	제9조(단체보험 지원)	제9조(취업과 창업 지원)
제10조(단체보험 지원)		제10조(취업·창업 등 지원)	
제11조(취업·창업 지원 등)		제11조(시행규칙)	
제12조(시행규칙)			

- 서울특별시 조례의 경우 순직소방공무원의 추모사업을 지원하는 규정을 명시하여 시장이 필요한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추모사업을 지원할 수 있음

○ 규제사항 평가

- 특이사항 없음

목적달성도 및 부수효과 분석

○ 조례 목적달성도 평가

- 조례 내용에 따라 공사상 소방공무원을 위한 추모공간을 조성하고 추모행사를 실시하는 등 다양한 사업을 수행하고 있다는 점에서 조례 목적이 충분히 달성됨

○ 부수효과

- 공사상 소방관 가족의 명예와 자긍심을 고취하고 전북특별자치도민의 소방관에 대한 감사의 마음을 확대하는 데 기여할 수 있음

관계법령

- 자치조례로 해당사항 없음

조례 개정방안

○ 조례 개정 방향

- 제2조: "순직소방공무원"의 정의에서 「소방기본법」제16조의3(생활안전활동)의 내용도 포함시키는 것으로 개정 권고. 「공무원연금법 시행령」제29조 및 제30조는 공무원 연금의 지급 및 수령, 연금증서발행에 관한 규정이며, 공무원의 공상과 관련해서는 「공무원 재해보상법」 제4조 및 제4조의2에서 규정하고 있음
- 제7조, 제8조, 제11조: 법제처 자치법규 입안기준에 따른 정비(상위법령 인용 오류 수정, 용어 수정)
- 제11조의2: 타 시·도의 사례를 참고하여 순직 소방공무원의 추모 및 예우를 위해 상징적으로 명시하도록 규정 신설 검토
- 제12조: 시행규칙은 개별 조례에서 위임이 없더라도 조례의 집행에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규칙으로 규정할 수 있으므로 삭제 권고
- 조례 제6조에서는 3년마다 지원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있는데 법령을 근거로 수립 운영 중임. 「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기본법」 제8조에 따른 집행계획으로 갈음하고 있는 것으로 보임. 이 법에 따른 집행계획은 매년 수립하도록 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에 따른 집행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과 이 조례에 따른 지원계획 간의 정합성을 확인할 필요가 있음. 심층분석을 통하여 검토 – 제6조제3항을 신설하는 것으로 개정 권고

○ 개정안

현 행	개정안	비고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순직소방공무원"이란「소방기본법」제16조 및 제16조의 2와 제17조의 소방활동, 소방지원활동 등 직무수행이나 소방교육·훈련 중 사망한 전북특별자치도 소방공무원을 말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순직소방공무원"이란 「소방기본법」제16조부터 제16조의3까지 및 제17조에 따른 소방활동, 소방지원활동, 생활안전활동 등 직무수행이나 소방교육·훈련 중 사망한 전북특별자치도 소방공무원을 말한다.	-「소방기본법」제16조의3(생활안전활동)의 내용도 포함시켜야 할 것으로 보임 -「공무원연금법 시행령」제29조 및 제30조는 공무원 연금

현 행	개정안	비고
2. "공상소방공무원"이란 제1호에 따른 부상·질병이 발생한 전북특별자치도 소방공무원으로「공무원연금법 시행령」제29조 및 제30조에 따라 공무상 질병 및 부상자로 인정된 사람을 말한다. 3. 생략	2. "공상소방공무원"이란 제1호에 따른 부상·질병이 발생한 전북특별자치도 소방공무원으로 「공무원 재해보상법」 제4조 및 제4조의2에 따라 공무상 질병 및 부상자로 인정된 사람을 말한다. 3. 현행과 같음	의 지급 및 수령, 연금증서발행에 관한 규정이며, 공무원의 공상과 관련해서는「공무원 재해보상법」제4조 및 제4조의2에서 규정하고 있음 -띄어쓰기 정비 권고
제6조(지원계획 수립) ① 도지사는 소방공무원의 유족 및 질병·부상을 입은 소방공무원과 그 가족의 생활안정과 복지향상을 위한 지원계획을 3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소방공무원의 사고예방을 위한 안전조치 계획 2. 공사상 소방공무원에 대한 실태조사 3. 공상소방공무원의 진료 및 요양에 관한 사항 4. 소방공무원의 유족 및 공상소방공무원과 그 가족의 생활안정을 위한 지원시책 5. 소방공무원의 외상 후 스트레스 치료 등 조치계획 6. 그 밖에 공사상 소방공무원의 복지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신설>	제6조(지원계획 수립) ① 도지사는 소방공무원의 유족 및 질병·부상을 입은 소방공무원과 그 가족의 생활안정과 복지향상을 위한 지원계획을 3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소방공무원의 사고예방을 위한 안전조치 계획 2. 공사상 소방공무원에 대한 실태조사 3. 공상소방공무원의 진료 및 요양에 관한 사항 4. 소방공무원의 유족 및 공상소방공무원과 그 가족의 생활안정을 위한 지원시책 5. 소방공무원의 외상 후 스트레스 치료 등 조치계획 6. 그 밖에 공사상 소방공무원의 복지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제1항에 따른 계획은「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기본법」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에 따른 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집행계획에 포함하여 수립할 수 있다.	-심층분석을 통해 계획 관련 현황을 반영하여 조례 문장 정비 권고
제7조(재원의 부담 및 확보) 도지사는 제6조의 지원계획에 따른 재원을 매년 재정계획에 반영하여 특별회계 세출예산에 계상하여야 한다.	제7조(재원의 부담 및 확보) 도지사는 제6조의 지원계획에 따른 재원을 매년 재정계획에 반영하여 특별회계 세출예산에 반영하여야 한다.	-또는 "계상(計上)"으로 수정
제8조(위원회 설치·운영) ① 공사상 소방공무원의 지원시책에 대한 자문	제8조(위원회 설치·운영) ① 공사상 소방공무원의 지원시책에 대한 자문	-제1항: 불필요한 문장 부호 삭제 권고,

현 행	개정안	비고
과 지원대상자 선정 등을 위하여 필요할 경우 "전라북도 공사상 소방공무원 지원위원회"(이하 "위원회" 라 한다.)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 ③ 생략 ④ 위원장은 행정부지사가 되고, 당연직 위원은 소방본부장이 되며, 위원은 아래의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위촉한다. 1. 도의회에서 추천하는 도의원 2. ~ 4. 생략 ⑤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⑥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대상 안건의 심사 업무에서 제척된다. 1. 생략 2. 최근 3년이내에 안건과 이해관계가 있는 업체에 임원 또는 직원으로 재직한 경우 3. 생략 ⑦ 생략 ⑧ 위원은 제6항 또는 제7항의 사유에 해당하면 스스로 그 안건의 심사를 회피할 수 있다. ⑥ 생략	과 지원대상자 선정 등을 위하여 필요할 경우 전북특별자치도 공사상 소방공무원 지원위원회(이하 "위원회" 라 한다)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 ③ 현행과 같음 ④ 위원장은 행정부지사가 되고, 당연직 위원은 소방본부장이 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위촉한다. 1. 전북특별자치도의회에서 추천하는 도의원 2. ~ 4. 현행과 같음 ⑤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⑥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대상 안건의 심사 업무에서 제척된다. 1. 현행과 같음 2. 최근 3년 이내에 안건과 이해관계가 있는 업체에 임원 또는 직원으로 재직한 경우 3. 현행과 같음 ⑦ 현행과 같음 ⑧ 위원은 제6항 또는 제7항의 사유에 해당하면 스스로 그 안건의 심사를 회피하여야 한다. ⑥ 현행과 같음	'전라북도'에서 '전북특별자치도'로 개정 필요 -제4항 각 호외의 본문: 문장 표현 정비 권고 -제4항제1호: "도의회"를 약칭한바 없으므로 약칭 정비 권고 -제5항: 띄어쓰기 정비 권고 -제6항제2호: 띄어쓰기 정비 권고 -제8항: 위원의 회피를 의무로 규정하여 안건심사의 공정성을 확보하도록 규정 정비 권고
제11조(취업·창업 지원 등) 도지사는 공사상 소방공무원의 유족 및 그 가족의 경제활동 강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취업과 창업 지원 등에 적극적으로 힘써야 한다. 1. ~ 2. 생략 3. 그 밖에 도에서 시행하는 관련시책 참여시 우대 등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1조(취업·창업 지원 등) 도지사는 공사상 소방공무원의 유족 및 그 가족의 경제활동 강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취업과 창업 지원 등에 적극적으로 힘써야 한다. 1. ~ 2. 현행과 같음 3. 그 밖에 전북특별자치도에서 시행하는 관련시책 참여시 우대 등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도"로 약칭한바 없으므로 용어 정비 권고
<신설>	제11조의2(추모사업 지원) 도지사는 순직소방공무원에 대한 애도와 희생정신에 경의를 표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추모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타 시·도의 사례를 참고하여 순직소방공무원의 추모 및 예우를 위해 상징적으로 명시 필요

현 행	개정안	비고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삭제>	-시행규칙은 개별 조례에서 위임이 없더라도 조례의 집행에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규칙으로 규정할 수 있으므로 삭제 권고

연번	조례명	분 류	위임근거	시행일	비 고
40	**전북특별자치도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 조례**	위임조례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5조, 제16조의2, 제17조,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조, 제5조, 제6조, 제8조, 제10조, 제11조, 제12조, 제16조, 제17조, 제18조, 제19조, 제20조, 제21조, 제22조	2015. 5. 29., 제정 (전부개정 3회, 일부개정 7회) [시행 2024. 1. 18.] [전북특별자치도 조례 제5399호, 2023. 12. 8., 일부개정]	■ 개정 권고 □ 통합 권고 □ 폐지 권고 □ 이행 권고 ■ 일반 정비 □ 현행 유지 □ 기타( )

사전 검토

○ 기본자료 분석

- (1-1) 본 조례는「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과 같은 법 시행규칙 따라 제정된 위임조례임
- (2-5) 조례 제17조에 따라 광주소방학교 의용소방대 간부교육 및 전문교육과 한국소방안전원 의용소방대 전문화교육을 실시함
- (2-5) 조례 제15조에 따라 소방관서 원거리지역 의용소방대 화재진화차 등 지원에 700,000천원을 소요하여 12대의 차량을 지원함
- (2-5) 2024년 6월 17일 의용소방대 활동실적 성과평가를 제출함
- (2-5) 조례 제27조에 따라 15개 시군구 연합회와 타 시·도 연합회 교류행사에 예산 지원을 실시함
- (2-5) 조례 제19조에 따라 2022년(표창 59, 상장 11, 공로패 158), 2023년(표창 59, 상장 17, 공로패 136), 2024년(표창 64, 상장 17, 공로패 140) 포상을 수여함
- (2-5) 의용소방대 소방기술경연대회(115,000천원 소요)와 의용소방대 강의경연대회(2,000천원 소요)를 실시함
- (3-1) 조례 제21조에 따라 의용소방대의 경비를 부담함
- (3-3) 2021년부터 2023년까지 아래와 같이 예산을 확보하여 집행함 (금액단위: 천원)

연도	사업명	필요예산	확보예산	집행액	집행내역
2021	의용소방대 운영	4,985,624	4,985,624	4,985,624	소집수당,피복비,장학금,여비,기술경연 등
	화재진화차 구매	120,000	120,000	120,000	화재진화차 및 개인보호장비 구입
2022	의용소방대 운영	5,023,575	5,023,585	5,023,585	소집수당,피복비,장학금,여비,기술경연 등
	화재진화차 구매	120,000	12,0000	12,0000	화재진화차 및 개인보호장비 구입
2023	의용소방대 운영	5,089,902	5,089,902	5,089,902	소집수당,피복비,장학금,여비,기술경연 등

- (7-1) 조례 제10조부터 제13조에 따라 의용소방대 운영위원회를 구성함
- (7-4) 2022년부터 2024년까지 아래와 같이 위원회를 개최함

연도별	2022	2023	2024
개최건수	91	87	66
개최일	연중 필요시		
소요예산	1,851,800	1,651,400	1,331,400

- (7-5) 의용소방대 추천, 해임, 포상 등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위원회의 유지가 필요함

○ 기타의견

- (8-1) 의용소방대 운영 전반에 대해 반드시 필요한 사항들이 규정되어 있어 조례의 현행 유지가 필요함
- (8-2) 제7차 민생토론회 시 제기된 과도한 인감증명서 발급과 관련 인감증명 요구사무 등을 원칙적 폐지토록 지시하여 조례 별지 제13호서식 중 "인감증명서"를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또는 전자본인서명확인서의 발급증"으로 개정이 필요함

입법체계 분석

○ 조례 제정 목적

-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과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위임된 사항 및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함

○ 자치법규 입안기준 부합성

- 자치법규 입안기준에 부합하도록 상위법령 제명 수정, 용어 수정 등의 정비 필요

○ 위임 적합성 평가

- 위임 범위에서 적절하게 규정하고 있음

평가지표에 따른 평가

○ 분석지표별 평가

평가항목	평가항목별 검토 내용
1. 입법 근거 및 적법성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등 상위법령을 근거로 하여 위임 범위에서 적절하게 제정되었음
2. 조례의 실효성	조례에 근거한 의용소방대 관련 업무 처리를 통해 조례의 실효성을 확보하고 있음
3. 조례 내용의 적정성	의용소방대 업무 처리를 위한 조례 내용이 적정함
4. 조례의 공평성	장애, 성별, 나이 등에 관한 사회적 편견, 고정관념이 반영된 표현 및 차별 규정 없음
5. 주민 수용성	조례의 체계 및 용어가 주민이 알기 쉽게 되어 있음
6. 전북자치도 현실부합성	전북특별자치도 내 의용소방대의 조직을 위하여 제정된 본 조례는 행정수요를 반영하고 있어 전북특별자치도 현실에 부합함
7. 위원회 운영의 적정성	위원회가 규정대로 설치되었고 활발히 운영되고 있어 위원회의 운영이 적절함
※ 기타 의견	없음

○ 타 시·도 유사 조례와의 비교

전북특별자치도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 조례	서울특별시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세종특별자치시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경기도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 조례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제2조(의용소방대의 설	제2조(의용소방대의 설	제2조(의용소방대의 설	제2조(의용소방대의 설

치 등)	치 등)	치 등)	치 등)
제2조의2(의용소방대의 날 운영)	제3조(의용소방대의 표지 등)	제2조의2(의용소방대의 해산명령 등)	제2조의2(의용소방대의 날 운영)
제3조(의용소방대의 표지 등)	제4조(의용소방대원의 임명)	제3조(의용소방대의 표지 등)	제3조(의용소방대의 표지 등)
제4조(의용소방대원의 임명)	제5조(의용소방대원의 해임 등)	제4조(의용소방대원의 임명)	제4조(의용소방대원의 임명)
제5조(의용소방대원의 해임 등)	제6조(조직)	제5조(의용소방대원의 해임 등)	제5조(의용소방대원의 해임 등)
제6조(조직)	제7조(대장 등의 임기)	제6조(조직 등)	제6조(조직)
제6조의2(반장·부장의 자격 기준)	제7조의2(부장·반장의 임명 기준)	제7조(대장 등의 연임)	제6조의2(부장 또는 반장의 자격)
제7조(정원)	제8조(정원)	제8조(정원)	제7조(정원)
제8조(신분증 재발급 신청)	제9조(신분증명서)	제9조(신분증의 재발급 신청)	제8조(신분증명서 재발급 신청)
제9조(개인정보)	제10조(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제10조(개인정보)	제9조(개인정보)
제10조(구성)	제11조(운영위원회의 구성)	제11조(구성)	제10조(운영위원회 구성 및 운영)
제11조(심의 및 수당)	제12조(심의대상)	제12조(임기 등)	제11조(운영위원회 심의)
제12조(절차 및 의결)	제13조(회의 운영 등)	제13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제12조(해임 등 심의 절차)
제13조(대장 등 추천)	제14조(복무에 대한 지도·감독)	제14조(운영위원회 심의)	제13조(연합회장 등 추천)
제14조(전담의용소방대)	제15조(교육 및 훈련)	제15조(절차)	제14조(전담의용소방대)
제15조(소방장비 등 물품 유지·관리)	제16조(소집수당)	제16조(대장 등의 추천)	제15조(소방장비 등 물품 유지·관리)
제16조(복무에 대한 지도·감독)	제17조(성과중심의 포상 등)	제17조(전담의용소방대의 운영 등)	제16조(복무에 대한 지도·감독)
제17조(교육 및 훈련)	제18조(재해보상)	제18조(소방장비 등 물품 유지·관리)	제17조(교육 및 훈련)
제18조(소집수당 등)	**제19조(장학금 지원)**	제19조(복무에 대한 지도·감독)	제18조(소집수당 등)
제19조(성과중심의 보상)	제20조(장학금 지급정지)	제20조(교육 및 훈련)	제19조(성과중심의 포상 등)
제20조(재해보상)	제21조(경비부담)	제21조(경비부담)	제20조(재해보상)
제21조(경비부담)	제22조(의용소방대연합회)	제22조(소집수당 등)	제21조 삭제
제22조(설립)	제23조(연합회의 임무)	제23조(성과중심의 보상)	제21조의2 삭제
제23조(조직 및 구성)	제24조(연합회의 경비 지원)	제24조(재해보상)	제22조(경비부담)
제24조(회장 등의 임명)	제25조(관할 구역 내의 업무지원)	제25조(설립)	제23조(설립)
제25조(회장의 임기)	제26조(권한위임)	제26조(조직 및 구성)	제24조(조직 및 구성)

제26조(회의 등)	제27조(시행규칙)	제27조(회장 등의 선출)	제25조(연합회장 등의 선출)
제27조(경비지원)		제28조(회장 등의 임기)	제26조(회장 등의 임기)
제28조(전국연합회 임원)		제29조(임원의 직무)	제27조(운영)
제29조(시행규칙)		제30조(운영)	제28조(회의 등)
제30조(권한의 위임)		제31조(경비지원)	제29조(경비지원)
		제32조(권한의 위임)	제30조(고문)
		제33조(시행규칙)	제31조(보고)
			제32조(회칙)
			제33조(권한위임)
			제34조(시행규칙)

- 서울특별시 조례의 경우 제19조에서 장학금 지원에 관해 규정하면서 시장으로 하여금 의용소방대원의 자녀에 대하여 기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장학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함. 전북특별자치도의 경우 별도의 조례(전북특별자치도 의용소방대 장학금 지급조례)에서 관련 내용을 규정하고 있음

○ 규제사항 평가

- 특이사항 없음

목적달성도 및 부수효과 분석

○ 조례 목적달성도 평가

- 조례 내용에 따라 매년 의용소방대 차원의 다양한 행사를 개최하고 있다는 점에서 조례 목적이 달성되고 있다고 평가됨

○ 부수효과

- 의용소방대를 활성화하여 유사시 긴급대응을 가능하게 하여 재해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복구에 기여하도록 할 수 있음

관계법령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의용소방대의 설치 등) ①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 또는 소방서장은 재난현장에서 화재진압, 구조·구급 등의 활동과 화재예방활동에 관한 업무(이하 "소방업무"라 한다)를 보조하기 위하여 의용소방대를 설치할 수 있다.

② ~ ④ (생 략)

⑤ 그 밖에 의용소방대의 설치 등에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조(의용소방대의 설치 등) ① ~ ③ (생 략)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의용소방대의 설치 등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 또는 특별자치도(이하 "시·도"라 한다)의 조례로 정한다.

조례 개정방안

○ 조례 개정 방향

- 조례에서 전체 규정이 30조 미만인 경우에는 장(章)으로 나누지 않음(법제처, 2022 자치법규 길라잡이, 344면)
- 제2조, 제4조, 제5조, 제6조의2, 제8조, 제11조, 제12조, 제15조, 제16조, 제17조, 제20조, 제22조, 제23조, 제27조, 제28조: 법제처 자치법규 입안기준에 따른 정비(약칭 수정, 인용 법령 제명 수정, 띄어쓰기 수정) 검토
- 제11조제2항: 위원회의 수당 및 여비 규정의 경우 「전북특별자치도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등이 당연히 적용되는 것이므로 규정 실익이 없지만, 조례의 완성도・이해도를 위하여 조례명은 표기하지 않고 단순히 선언적 규정으로만 정비
- 제19조: 포상 규정의 경우 「전북특별자치도 포상 조례」 등이 당연히 적용되는 것이므로 규정 실익이 없지만, 조례의 완성도・이해도를 위하여 조례명은 표기하지 않고 단순히 선언적 규정으로만 정비
- 제29조: 시행규칙은 개별 조례에서 위임이 없더라도 조례의 집행에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규칙으로 규정할 수 있으므로 삭제 권고
- 별지 제13호서식: 집행부 실무의견을 반영하여 내용 수정 검토

○ 개정안

현 행	개정안	비고
제1장 총칙	<삭제>	-장(章) 삭제
제2조(의용소방대의 설치 등) ①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4항에 따른 전담의용소방대는 「지방소방기관 설치에 관한 규정」에 따른 소방기관(이하 "소방기관"이라 한다)이 설치되지 아니한 읍·면지역에서 운영할 수 있다. ②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2조제2항에 따른 전문의용소방대는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구성한다. 1. ~ 6. 생략 ③ 이하 생략	제2조(의용소방대의 설치 등) ① 전북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이라 한다) 또는 전북특별자치도소방서장(이하 "소방서장"이라 한다)은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4항에 따른 전담의용소방대를 「지방소방기관 설치에 관한 규정」에 따른 소방기관(이하 "소방기관"이라 한다)이 설치되지 아니한 읍·면지역에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도지사 또는 소방서장은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2조제2항에 따른 전문의용소방대를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구성한다. 1. ~ 6. 현행과 같음 ③ 이하 현행과 같음	-행위 주체를 넣어 자연스러운 문장으로 표현 -"도지사"의 경우 제4조에서 약칭하고 있는데, 가장 먼저 사용된 곳에서 약칭하도록 정비 권고
제2장 의용소방대원의 임명 및 조직 등	<삭제>	-장(章) 삭제
제4조(의용소방대원의 임명) ① 전북	제4조(의용소방대원의 임명) ① 도지	-제4조제1항: 제2조

현 행	개정안	비고
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 또는 소방서장은 공개모집을 통하여 의용소방대 입대신청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모집공고문을 전북특별자치도 및 소방기관 게시판 또는 홈페이지 등에 10일 이상 게시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 또는 소방서장은 제1항에 따른 공개모집 결과 신청자가 없는 경우에는 전북특별자치도 소방본부 또는 관할 소방서 소속 소방공무원이나 의용소방대원이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추천하는 자 중에서 임명할 수 있다. 이 경우 소방공무원이나 의용소방대원은 추천대상자의 사전 동의를 받아야 한다. ③ 생략 ④ 도지사 또는 소방서장은 의용소방대원을 임명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른 임명장을 수여할 수 있다. ⑤ 생략	사 또는 소방서장은 공개모집을 통하여 의용소방대 입대신청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모집공고문을 전북특별자치도 및 소방기관 게시판 또는 홈페이지 등에 10일 이상 게시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 또는 소방서장은 제1항에 따른 공개모집 결과 신청자가 없는 경우에는 전북특별자치도 소방본부 또는 관할 소방서 소속 소방공무원이나 의용소방대원이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추천하는 자 중에서 임명할 수 있다. 이 경우 소방공무원이나 의용소방대원은 추천대상자의 사전 동의를 받아야 한다. ③ 현행과 같음 ④ 도지사 또는 소방서장은 의용소방대원을 임명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임명장을 수여할 수 있다. ⑤ 현행과 같음	제2항제6호에서 "도지사"를 사용하고 있으므로 가장 먼저 용어가 사용된 곳에서 약칭하도록 정비 권고 -제4조제2항·제4항: 띄어쓰기 정비 권고
제5조(의용소방대원의 해임 등) ① 도지사 또는 소방서장은 법 제4조에 따라 의용소방대원을 해임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른 의용소방대원 해임통지서를 해당 의용소방대원에게 보내야 한다. ② 의용소방대원이 사직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4호 서식에 따른 의용소방대원 사직서를 도지사 또는 소방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5조(의용소방대원의 해임 등) ① 도지사 또는 소방서장은 법 제4조에 따라 의용소방대원을 해임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의용소방대원 해임통지서를 해당 의용소방대원에게 보내야 한다. ② 의용소방대원이 사직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 의용소방대원 사직서를 도지사 또는 소방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띄어쓰기 정비 권고
제6조의2(반장·부장의 자격 기준) 대원에서 반장, 반장에서 부장으로 임명할 때에는 각각 3년 이상 근무한 대원을 최우선 임명하되, 법 제7조 및 법 시행규칙 제13조의 활동사항을 고려하여 임명하여야 한다.	제6조의2(반장·부장의 자격 기준) 대원에서 반장, 반장에서 부장으로 임명할 때에는 각각 3년 이상 근무한 대원을 최우선 임명하되, 법 제7조 및 규칙 제13조의 활동사항을 고려하여 임명하여야 한다.	-제2조제2항에서 이미 "규칙"으로 약칭했으므로 약칭으로 기재하도록 정비 권고
제8조(신분증 재발급 신청) 의용소방대원이 신분증을 재발급 받으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5호 서식에 따른 의용소방대원 신분증 재발급 신청서	제8조(신분증 재발급 신청) 의용소방대원이 신분증을 재발급 받으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 의용소방대원 신분증 재발급 신청서를	-띄어쓰기 정비 권고

현 행	개정안	비고
를 도지사 또는 소방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도지사 또는 소방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3장 의용소방대 운영위원회	<삭제>	-장(章) 삭제
제11조(심의 및 수당) ① 생략 ② 공무원이 아닌 위촉 위원에게는 「전북특별자치도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 또는 여비 등의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1조(심의 및 수당) ① 현행과 같음 ② 공무원이 아닌 위촉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또는 여비 등의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중복적인 표현 정비 권고 -수당 및 여비에 관해 선언적인 의미만을 규정하면, 그에 따른 구체적인 사항은 당연히 「전북특별자치도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적용받으므로 규정의 실익이 없음(법제처, 2023년 우수조례 및 자치법규 입법컨설팅 사례집, 226면)
제12조(절차 및 의결) ① 생략 ② 운영위원회는 규칙 제12조제2항제1호에 따른 의용소방대원의 해임을 심의하는 경우에는 해당 의용소방대원에게 별지 제7호 서식에 따른 출석요구서를 발송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해당 의용소방대원은 회의에 출석하여 진술하거나 별지 제8호 서식에 따른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다. ③ 생략	제12조(절차 및 의결) ① 현행과 같음 ② 운영위원회는 규칙 제12조제2항제1호에 따른 의용소방대원의 해임을 심의하는 경우에는 해당 의용소방대원에게 별지 제7호서식에 따른 출석요구서를 발송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해당 의용소방대원은 회의에 출석하여 진술하거나 별지 제8호서식에 따른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다. ③ 현행과 같음	-띄어쓰기 정비 권고
제4장 복무와 교육 및 훈련	<삭제>	-장(章) 삭제
제15조(소방장비 등 물품 유지·관리) 의용소방대는 법 제10조제3항 및 규칙 제17조제1항에 따라 무상으로 대여하거나 사용하는 소방장비 등 물품을 「소방장비관리규칙」에 따라 유지·관리하여야 한다.	제15조(소방장비 등 물품 유지·관리) 의용소방대는 법 제10조제3항 및 규칙 제17조제1항에 따라 무상으로 대여하거나 사용하는 소방장비 등 물품을 「소방장비관리법 시행규칙」에 따라 유지·관리하여야 한다.	-상위 법령의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인용 법령의 제명 정비 권고
제16조(복무에 대한 지도·감독) ① 법 제12조에 따라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각 연 1회 이상 의용소방대원의 복무에 대한 지도·감독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16조(복무에 대한 지도·감독) ① 법 제12조에 따라 전북특별자치도 소방본부장(이하 "소방본부장"이라 한다) 또는 소방서장은 각 연 1회 이상 의용소방대원의 복무에 대한 지도·감독	-"소방본부장"을 약칭 후 사용하도록 용어 정비 권고

현 행	개정안	비고
② 생략	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현행과 같음	
제17조(교육 및 훈련) ① ~ ⑥ 생략 ⑦ 도지사 또는 소방서장은 의용소방대원 교육·훈련을 위하여 소집한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7조(교육 및 훈련) ① ~ ⑥ 생략 ⑦ 도지사 또는 소방서장은 의용소방대원 교육·훈련을 위하여 소집한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중복적인 표현 정비 권고
제5장 의용소방대원의 경비 및 재해보상 등	<삭제>	-장(章) 삭제
제19조(성과중심의 보상) ①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의용소방대원의 활동실적을 반영하여 포상기회를 부여하는 등 성과중심으로 보상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② 생략 ③ 도지사 또는 소방서장은 재난현장에서 주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등 법 제7조 각 호에 따른 임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공적이 있는 의용소방대원에 대하여 「전북특별자치도 포상조례」 또는 지침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④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성과보상 및 사기진작 등을 위하여 모범의용소방대원에 대한 국내·외 견학, 시·도 화합을 위한 지역 간 교류행사, 전북자치도 및 시·군 의용소방연합회별 소방기술능력 배양을 위한 행사를 실시할 수 있다.	제19조(성과중심의 포상) ①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의용소방대원의 활동실적을 반영하여 포상기회를 부여하는 등 성과중심으로 포상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② 현행과 같음 ③ 도지사 또는 소방서장은 재난현장에서 주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등 법 제7조 각 호에 따른 임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공적이 있는 의용소방대원에 대하여 포상할 수 있다. ④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성과포상 및 사기진작 등을 위하여 모범의용소방대원에 대한 국내외 견학, 시·도 화합을 위한 지역 간 교류행사, 전북자치도 및 시·군 의용소방연합회별 소방기술능력 배양을 위한 행사를 실시할 수 있다.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서 사용하는 용어와 같게 "보상"을 "포상"으로 정비 권고 -포상에 관해 선언적인 의미만을 규정하면, 그에 따른 구체적인 사항은 당연히 「전북특별자치도 포상 조례」를 적용 받으므로 규정의 실익이 없음(법제처, 2023년 우수조례 및 자치법규 입법컨설팅 사례집, 118면)
제20조(재해보상) ① 생략 ② 도지사 또는 소방서장은 제1항에 따른 재해보상의 청구를 받은 때에는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재해보상금 지급을 결정하고 지체없이 지급하여야 한다. ③ ~ ④ 생략	제20조(재해보상) ① 현행과 같음 ② 도지사 또는 소방서장은 제1항에 따른 재해보상의 청구를 받은 때에는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재해보상금 지급을 결정하고 지체 없이 지급하여야 한다. ③ ~ ④ 현행과 같음	-띄어쓰기 정비 권고. '지체 없이'는 사전에 하나의 단어로 올라 있지 않기 때문에 띄어 쓰도록 정비 권고
제6장 전북자치도 및 시·군 의용소방대연합회	<삭제>	-장(章) 삭제
제22조(설립) ① ~ ② 생략	제22조(설립) ① ~ ② 현행과 같음	-약칭한 대로 "전북

현 행	개정안	비고
③ 전북자치도 및 시·군 연합회의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 2. 생략 3. 도 및 시·군 등의 협조 요청에 따른 지원	③ 전북자치도 및 시·군 연합회의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 2. 현행과 같음 3. 전북자치도 및 시·군 등의 협조 요청에 따른 지원	자치도"로 용어 사용 정비 권고
제23조(조직 및 구성) ① 도 연합회는 회장, 부회장, 감사 및 사무처장을 시·군 연합회는 회장, 부회장, 감사 및 사무국장을 둘 수 있다. 다만 남성의용소방대연합회와 여성의용소방대연합회를 통합하여 운영하는 경우에는 전북자치도 연합회는 남성과 여성 각각의 회장, 부회장, 감사 및 사무처장을 시·군 연합회는 남성과 여성 각각의 회장, 부회장, 감사 및 사무국장을 둘 수 있다. ② 이하 생략	제23조(조직 및 구성) ① 전북자치도 연합회는 회장, 부회장, 감사 및 사무처장을 시·군 연합회는 회장, 부회장, 감사 및 사무국장을 둘 수 있다. 다만 남성의용소방대연합회와 여성의용소방대연합회를 통합하여 운영하는 경우에는 전북자치도 연합회는 남성과 여성 각각의 회장, 부회장, 감사 및 사무처장을 시·군 연합회는 남성과 여성 각각의 회장, 부회장, 감사 및 사무국장을 둘 수 있다. ② 이하 현행과 같음	-약칭한 대로 "전북자치도"로 용어 사용 정비 권고
제24조(회장 등의 임명) ① 생략 ② 부회장 및 감사는 총회에서 선출하고 사무처장 및 사무국장은 회장이 회원중에서 지명하며 도지사 또는 소방서장이 위촉한다.	제24조(회장 등의 임명) ① 생략 ② 부회장 및 감사는 총회에서 선출하고 사무처장 및 사무국장은 회장이 회원 중에서 지명하며 도지사 또는 소방서장이 위촉한다.	-띄어쓰기 정비 권고
제27조(경비지원) ① ~ ② 생략 ③ 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가 소요경비를 지원하는 경우에는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지도 감독을 하여야 한다.	제27조(경비지원) ① ~ ② 현행과 같음 ③ 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가 소요경비를 지원하는 경우에는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지도·감독을 하여야 한다.	-문장 부호를 사용하여 정비 권고
제28조(전국연합회 임원) 규칙 제23조 제2항에 따른 전국연합회임원은 전국연합회 임원의 임기 내에서 전북자치도 연합회장의 임기를 보장 할 수 있다.	제28조(전국연합회 임원) 규칙 제23조 제2항에 따른 전국연합회임원은 전국연합회 임원의 임기 내에서 전북자치도 연합회장의 임기를 보장받을 수 있다.	-주술관계에 맞게 문장 표현 정비 권고
제29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삭제>	-시행규칙은 개별 조례에서 위임이 없더라도 조례의 집행에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규칙으로 규정할 수 있으므로 삭제 권고

현 행	개정안	비고
제7장 보칙	<삭제>	-장(章) 삭제
[별지 제13호서식]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 요양·장애보상(주민등록등본, 외국인등록 사실증명서) 장제·유족보상(가족관계증명서· 인감증명서)	[별지 제13호서식]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 요양·장애보상(주민등록등본, 외국인등록 사실증명서) 장제·유족보상(가족관계증명서,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또는 전자본인서명확인서 발급증)	-별지의 서류 내용 수정(집행부 의견)

Ⅳ. 심층분석 대상 조례 결과 보고

01. 전북특별자치도 미래전략과제 발굴 및 육성 조례

Ⅰ. 종합의견

< 평가결과 >

□ 평가대상

조 례 명	전북특별자치도 미래전략과제 발굴 및 육성 조례		
조례 구분	자치조례	관계 법령	-
제정·시행일	2017. 2. 3. 제정	최근개정·시행일	2023. 12. 8. 개정
소관 부서	정책기획관	소관 상임위	기획행정

□ 평가의견

평가항목	평가의견	주요 내용
종합의견	개정/ 일반	- 제1조: 이 조례의 목적을 명확하게 표현하도록 목적조항의 문장 표현 정비 검토 - 제5조제4호: 직업전문학교의 경우 「고등교육법」에 근거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제28조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지정한 시설이므로 이에 맞게 규정 정비 검토 - 제6조: 각 호의 내용을 이 조례의 목적에 맞게 중요성을 고려하여 재배치 검토 - 제7조: 재정지원 규정의 경우 전북특별자치도 「전북특별자치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등이 당연히 적용되는 것이므로 규정 실익이 없지만, 조례의 완성도·이해도를 위하여 조례명은 표기하지 않고 단순히 선언적 규정으로만 정비 - 제9조: 시행규칙은 개별 조례에서 위임이 없더라도 조례의 집행에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규칙으로 규정할 수 있으므로 삭제 권고
심층분석 결과		- 전북특별자치도의 미래전략과제 발굴과 관련하여 조례를 통하여 지원이 가능한 사항 또는 그 방향성에 대한 추가적인 검토를 위하여 심층분석을 실시함 - 「전북특별자치도 종합계획 수립 연구」의 요약본에서 인구감소 관련 설명을 깊이 있게 다루면서 생명산업 등 특징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하고 있음. 관련하여 지원사업으로 전북자치도의 지속가능한 발전 계획의 확립, 확산 및 보급을 위한 사업을 추가하는 방안을 제시함 - 타 시·도의 사례 및 「전북특별자치도 종합계획 수립 연구」를

		참고하여 미래전략과제의 범위 및 지원사업에 관한 내용의 신설을 포함한 개정안을 제안함
1. 입법 근거 및 적법성	적정	자치사무의 범위에서 적절하게 제정되었음
2. 조례의 실효성	적정	조례 제5조와 제6조에 따라 지원대상을 규정하여 조례의 실효성을 확보하고 있음
3. 조례 내용의 적정성	적정	조례에서 규정하고 있는 재정지원이 적절하게 이루어지고 있음
4. 조례의 공평성	적정	장애, 성별, 나이 등에 관한 사회적 편견, 고정관념이 반영된 표현 및 차별 규정 없음
5. 주민 수용성	적정	조례의 체계 및 용어가 주민이 알기 쉽게 되어 있음
6. 전북자치도 현실 부합성	적정	전북특별자치도의 정체성을 확립하고 미래전략과제를 발굴·육성하기 위하여 제정된 본 조례는 행정수요를 반영하고 있어 전북자치도 현실에 부합함
7. 위원회 운영의 적정성	-	위원회 운영 관련 규정이 없음
※ 기타 의견	없음	

Ⅱ. 항목별 평가 결과

평가항목	세부항목	척도	의견 및 자료
1. 입법의 근거 및 적법성	1) 위임조례인가 자치사무에 관한 조례인가?	☐ 위임조례 ☑ 자치사무에 관한 조례	
	2) 조례에서 규정하고 있는 위임근거가 올바른가?	☐ 그렇다 ☐ 그렇지않다 ☑ 해당사항 없음	
	3) 조례가 위임범위에서 적절하게 제·개정되었는가?	☐ 그렇다 ☐ 그렇지않다 ☑ 해당사항 없음	
	4) 조례 제.개정 이후 동일 또는 유사한 법령이나 제도가 만들어졌거나 근거법령이 개정 또는 폐지되었는가?	☐ 그렇다 ☐ 그렇지않다 ☑ 해당사항 없음	
	5) 조례에서 주민의 권리제한, 의무부과, 벌칙 부과, 규제사항에 대한 법률위임이 있는가?	☐ 그렇다 ☐ 그렇지않다 ☑ 해당사항 없음	
	6) 상위법령에 위배되는 조항이 있는가?	☐ 그렇다 ☐ 그렇지않다 ☑ 해당사항 없음	
2. 조례의 실효성	1) 조례의 시행과정에서 다른 조례와의 충돌이나 모순이 발생하고 있는가?	☐ 그렇다 ☑ 그렇지않다 ☐ 해당사항 없음	
	2) 이 조례와 유사 또는 동일한 다른 조례가 제정 및 시행되고 있어 통합할 필요가 있는가?	☐ 그렇다 ☑ 그렇지않다 ☐ 해당사항 없음	
	3) 조례에 따른 계획이 수립·시행되고 있는가?	☑ 그렇다 ☐ 그렇지않다 ☐ 해당사항 없음	-전북·새만금 혁신 심포지엄(JSIS) 계획을 수립계획
	4) 조례에서 집행기관 등에 책무를 부여하고 있는가?	☑ 그렇다 ☐ 그렇지않다 ☐ 해당사항 없음	-제4조(도지사의 책무)

평가항목	세부항목	척도	의견 및 자료
	5) 조례에서 부여한 책무와 관련사업을 집행기관이 잘 이행하고 있는가?	☑ 그렇다 ☐ 그렇지않다 ☐ 해당사항 없음	
3. 조례 내용의 적정성	1) 조례에 재정지원 관련 규정이 있는가?	☑ 그렇다 ☐ 그렇지않다 ☐ 해당사항 없음	-제5조, 제6조
	2) 조례 시행에 필요한 예산 확보와 집행이 잘 이루어지고 있는가?	☑ 그렇다 ☐ 그렇지않다 ☐ 해당사항 없음	
	3) 지원대상이 집행이 가능한 정도로 구체화 되어 있는가?	☑ 그렇다 ☐ 그렇지않다 ☐ 해당사항 없음	
	4) 조례에 따른 위탁사무가 위탁대상으로 적정한가?	☐ 그렇다 ☐ 그렇지않다 ☑ 해당사항 없음	
4. 조례의 공평성	1) 조례에서 장애인, 성별 등의 특정계층이나 특정지역을 차별하는 조항이 있는가?	☐ 그렇다 ☑ 그렇지않다 ☐ 해당사항 없음	
	2) 조례에서 정한 차별이 합리적인가?	☐ 그렇다 ☐ 그렇지않다 ☑ 해당사항 없음	
5. 주민 의견 수용성	1) 조례 제·개정 시 입법예고는 하였는가?	☐ 그렇다 ☑ 그렇지않다 ☐ 해당사항 없음	
	2) 조례 제·개정 시 공청회, 세미나 등 이해관계인 및 주민에 대한 의견 수렴 과정이 있었는가?	☐ 그렇다 ☐ 그렇지않다 ☑ 해당사항 없음	
	3) 조례와 관련한 민원(청원, 진정, 소송 등)이 제기되거나 개정 또는 폐지 요구가 있었는가?	☐ 그렇다 ☑ 그렇지않다 ☐ 해당사항 없음	
	4) 조례의 체계나 사용 되어진 용어가 주민이 알기 쉽게 되어 있는가?	☑ 그렇다 ☐ 그렇지않다 ☐ 해당사항 없음	
6. 위원회 운영의 적정성	1) 조례로 위원회를 구성하도록 되어 있는가?	☐ 그렇다 ☑ 그렇지않다 ☐ 해당사항 없음	

평가항목	세부항목	척도	의견 및 자료
	2) 위원회가 법정위원회인가 조례로 설치하도록 한 위원회인가?	☐ 법정위원회 ☐ 조례로 정한 위원회 ☑ 해당사항 없음	
	3) 위원회 위원의 성별 구성이 적정한가?	☐ 그렇다 ☐ 그렇지않다 ☑ 해당사항 없음	
	4) 위원회가 법령이나 조례에서 정한 회의개최 운영 실적이 있고 관련 회의록을 보존하고 있는가?	☐ 그렇다 ☐ 그렇지않다 ☑ 해당사항 없음	
	5) 위원회를 계속 설치·운영할 필요성이 있는가?	☐ 그렇다 ☐ 그렇지않다 ☑ 해당사항 없음	
	6) 해당 위원회와 유사한 다른 위원회와의 기능적 통합이 필요한가?	☐ 그렇다 ☐ 그렇지않다 ☑ 해당사항 없음	
7. 종합 의견	1) 이 조례를 현행대로 유지할 필요가 있는가?	☑ 그렇다 ☐ 그렇지않다	
	2) 이 조례를 개정할 이유가 있는가? (해당사항 모두 표기)	☐ 위임근거에 불부합 ☑ 위임근거 불명확 ☐ 법령의 위임 없는 규제 정비 필요 ☐ 다른 조례와의 상충 및 모순 ☐ 조례 시행의 문제점 발생 ☐ 조례의 공평성 문제 ☑ 알기 쉬운 법령정비 기준에 따른 정비 필요 ☐ 위원회 관련 규정개정 필요 ☐ 그 밖의 사유	
	3) 이 조례를 폐지할 사유가 있는가? (해당사항 모두 표기)	☐ 다른 유사한 조례와의 통합 운영 필요성 ☐ 조례 시행 불가능 ☐ 최근 3년간 조례 관련 운영 실적 전무 ☐ 기타	
	4) 그 밖의 이 조례와 관련된 의견이 있는가?	☐ 있다 ☑ 없다	

Ⅲ. 세부내용

조례명	전북특별자치도 미래전략과제 발굴 및 육성 조례

■ 소관 부서 의견(팀)

○ **최종의견 : 심포지엄을 지속적으로 개최할 예정으로 조례의 유지가 필요함**

○ **내용**

- (2-3) 조례에 근거하여 제2회 전북·새만금 혁신 심포지엄(JSIS) 계획을 수립함
- (2-5) 조례 제5조에 따라 새만금의 새로운 미래전략 구상을 위한 심포지엄 개최에 30,000천원을 집행함
- (3-3) 2023년 심포지엄 개최에 필요한 행사비용을 집행하기 위해 30,000천원을 확보하여 전액 집행함

■ 종합의견	개정 권고/일반 정비

◎ 입법평가 세부의견

○ **평가항목별 검토**

평가항목	평가항목별 검토 내용
1. 입법 근거 및 적법성	자치사무의 범위에서 적절하게 제정되었음
2. 조례의 실효성	조례 제5조와 제6조에 따라 지원대상을 규정하여 조례의 실효성을 확보하고 있음
3. 조례 내용의 적정성	조례에서 규정하고 있는 재정지원이 적절하게 이루어지고 있음
4. 조례의 공평성	장애, 성별, 나이 등에 관한 사회적 편견, 고정관념이 반영된 표현 및 차별 규정 없음
5. 주민 수용성	조례의 체계 및 용어가 주민이 알기 쉽게 되어 있음
6. 전북자치도 현실부합성	전북특별자치도의 정체성을 확립하고 미래전략과제를 발굴·육성하기 위하여 제정된 본 조례는 행정수요를 반영하고 있어 전북자치도 현실에 부합함
7. 위원회 운영의 적정성	위원회 운영 관련 규정이 없음
※ 기타 의견	없음

○ **연도별 사업내용 및 예산/집행액**

• (2023년) 심포지엄 소요 예산액 : 30,000천원

- 심포지엄 진행, 장소 대관료 등

○ **조례의 입법목적 달성도 또는 부수효과 분석**

- 조례 목적달성도 평가
  - 조례 내용에 따라 새만금지역은 전북특별자치도의 미래전략과제로 설정하고 심포지엄을 지속적으로 개최하여 조례의 제정목적이 달성되고 있다고 평가됨
- 부수효과
  - 새만금지역을 중심으로 하여 지역 정체성을 확립할 수 있는 다양한 정책 추진 가능성 확대

○ **타 시·도 유사 조례와 비교 또는 타 시·도 자치법규(정책) 동향**

전북특별자치도 미래전략과제 발굴 및 육성 조례	서울특별시 미래전략과제 발굴 및 육성조례	대구광역시 미래전략과제 발굴 및 육성조례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제3조(미래전략과제의 범위)	제3조(미래전략과제의 범위)	제3조(미래전략과제의 범위)
제4조(도지사의 책무)	제4조(시장의 책무)	제4조(시장의 책무)
제5조(지원대상)	제5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5조(지원대상)
제6조(지원사업)	제6조(지원대상)	제6조(지원사업)
제7조(지원절차 등)	제7조(지원사업)	제7조(지원절차 등)
제8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8조(지원절차 등)	제8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9조(시행규칙)	제9조(시행규칙)	제9조(시행규칙)

- 미래전략과제 발굴 및 육성 관련 조례는 전북특별자치도, 서울특별시, 대구광역시 총 3곳의 시·도에서만 운영 중이며 유사한 내용을 규정하고 있어 특별한 시사점 없음

Ⅳ. 개정의견

현 행	개정안	비고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전북특별자치도의 정체성을 확립하고 미래전략과제 발굴 및 육성을 통해 미래 도시경쟁력 제고를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전북특별자치도의 정체성 확립 및 전북특별자치도의 미래전략과제 발굴과 육성을 통해 미래 도시경쟁력을 제고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 목적으로 한다.	-목적조항을 명확하게 규정하도록 정비 권고
제3조(미래전략과제의 범위) 이 조례를 적용하는 미래전략과제는 지역주력산업과 신성장동력산업, 공간개발사업, 삶의 질과 관련되는 장기적이고 미래지향적인 사업으로 한다.	제3조(미래전략과제의 범위) 이 조례를 적용하는 미래전략과제는 지역주력산업, 신성장동력산업, 농생명산업, 신기술기반사업, 환경보전사업, 해양개발사업, 공간개발사업 및 삶의 질과 관련되는 장기적이고 미래지향적인 사업으로 한다.	-심층분석을 통해 타 시·도의 사례 및 종합계획의 내용을 참고하여 미래전략과제의 범위를 확대하여 규정하도록 규정 정비 권고
제5조(지원대상) 도지사는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에게 미래전략과제 발굴을 시행하게 할 수 있다. 1. ~ 3. 생략 4. 「고등교육법」에 따라 설립된 대학 및 직업전문학교 <신설> 5. 「민법」제32조에 따라 중앙부처 장관의 허가를 받아 설립한 비영리 재단법인 6. 이하 생략	제5조(조사·연구 등) 도지사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에게 미래전략과제 발굴을 시행하게 할 수 있다. 1. ~ 3. 현행과 같음 4. 「고등교육법」에 따라 설립된 대학 4의2.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에 따른 직업전문학교 5. 「민법」 제32조에 따라 중앙부처 장관의 허가를 받아 설립한 비영리 재단법인 6. 이하 현행과 같음	-조제목: 과제발굴을 시행하도록 하는 것이므로 지원의 대상이 아니라 "조사·연구 등"으로 규정하여 이 조의 내용에 적합하게 규정하도록 정비 권고 -본문: 조례의 구체적 내용은 목적조항을 달성하기 위한 것으로 이를 규정하지 않아도 당연한 사항이므로 삭제 권고 -제4호: 지원대상 중 직업전문학교의 경우 「고등교육법」에 근거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제28조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지정한 시설이므로 이에 맞게 규정 정비 권고 -제5호: 띄어쓰기 정비
제6조(지원사업) 도지사는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다음 각 호의	제6조(지원사업)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사업 추진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	-본문: 조례의 구체적 내용은 목적조항을 달

현 행	개정안	비고
사업 추진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미래전략과제 및 주요 시책 개발을 위한 사업 2. 다른 지방자치단체와의 상생발전을 위한 사업 3. 전북자치도 정체성 확립, 확산 및 보급을 위한 사업 <신설> 4.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전북자치도 정체성 확립, 확산 및 보급을 위한 사업 2. 미래전략과제 및 주요 시책 개발을 위한 사업 3. 다른 지방자치단체와의 상생발전을 위한 사업 4. 전북자치도의 지속가능한 발전 확립, 확산 및 보급을 위한 사업 5. 신기술 및 인공지능을 활용한 시책 개발 및 보급을 위한 사업 6.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성하기 위한 것으로 이를 규정하지 않아도 당연한 사항이므로 삭제 권고 -각 호의 내용을 이 조례의 목적에 맞게 중요성을 고려하여 재배치 권고 -심층분석을 통해 타 시·도의 사례 및 종합계획의 내용을 참고하여 미래전략과제의 범위를 확대하여 규정하도록 규정 정비 권고
제7조(지원절차 등) 제6조에 따라 경비를 지원하는 경우 지원 신청 및 교부절차 등 일반적인 사항은 「전북특별자치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삭제>	-재정지원에 관한 절차의 구체적인 사항은 당연히 「전북특별자치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적용 받으므로 규정의 실익이 없음(법제처, 2023년 우수조례 및 자치법규 입법컨설팅 사례집, 107면)
제8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미래전략과제 발굴 및 육성 등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 따른다.	제4조의2(다른 조례와의 관계) 미래전략과제 발굴 및 육성 등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 따른다.	-다른 조례와의 관계규정의 통상적이 위치에 규정하도록 조례 조항의 위치 정비 권고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삭제>	-시행규칙은 개별 조례에서 위임이 없더라도 조례의 집행에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규칙으로 규정할 수 있으므로 삭제 권고

심층분석 관련 검토

○ 심층분석 사유

- 전북특별자치도의 미래전략과제 발굴과 관련하여 조례를 통하여 지원이 가능한 사항 또는 그 방향성에 대한 추가적인 검토를 위하여 심층분석을 실시함

○ 심층분석

- 미래전략과제 발굴을 위하여 타 시·도의 미래전략과제의 범위와 전북특별자치도 조례의 규정 내용을 비교함

-	전북특별자치도 미래전략과제 발굴 및 육성 조례	서울특별시 미래전략과제 발굴 및 육성조례	대구광역시 미래전략과제 발굴 및 육성조례
미래전략과제의 범위	제3조(미래전략과제의 범위) 이 조례를 적용하는 미래전략과제는 지역주력산업과 신성장동력산업, 공간개발사업, 삶의 질과 관련되는 장기적이고 미래지향적인 사업으로 한다.	제3조(미래전략과제의 범위) 이 조례를 적용하는 미래전략과제는 환경보전사업, 신기술기반사업, 인공지능사업, 공간개발사업, 지역주력산업, 신성장동력산업 및 삶의 질과 관련되는 장기적이고 미래지향적인 사업으로 한다.	제3조(미래전략과제의 범위) 이 조례를 적용하는 미래전략과제는 지역주력산업과 신성장동력산업, 공간개발사업, 삶의 질과 관련되는 장기적이고 미래지향적인 사업으로 한다.
지원대상	제5조(지원대상) 도지사는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에게 미래전략과제 발굴을 시행하게 할 수 있다. 1. 국공립 연구기관 2. 정부나 전북자치도가 출자·출연 또는 보조한 연구기관이나 법인 3. 「특정연구기관 육성법」에 따른 특정연구기관 4. 「고등교육법」에 따라 설립된 대학 및 직업전문학교 5. 「민법」제32조에 따라 중앙부처 장관의 허가를 받아 설립한 비영리 재단법인 6. 지역에 분포한 분야별 산업 종사자를 주 회원으로 한 협회, 조합, 단체 7. 그 밖에 도지사가 미래전	제6조(지원대상) 시장은 미래전략과제 발굴 및 육성을 위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에게 미래전략과제 발굴을 시행하게 할 수 있다. 1. 국공립 연구기관 2. 정부나 시가 출자·출연 또는 보조한 연구기관이나 법인 3. 「특정연구기관 육성법」에 따른 특정연구기관 4. 「고등교육법」에 따라 설립된 대학 5. 「민법」제32조에 따라 중앙부처 장관의 허가를 받아 설립한 비영리 재단법인 6. 지역에 분포한 분야별 산업 종사자를 주 회원으로 한 협회, 조합, 단체 7. 그 밖에 시장이 미래전략	제5조(지원대상) 시장은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에게 미래전략과제 발굴을 시행하게 할 수 있다. 1. 국공립 연구기관 2. 정부나 시가 출자·출연 또는 보조한 연구기관이나 법인 3. 「특정연구기관 육성법」에 따른 특정연구기관 4. 「고등교육법」에 따라 설립된 대학 및 직업전문학교 5. 「민법」제32조에 따라 중앙부처 장관의 허가를 받아 설립한 비영리 재단법인 6. 지역에 분포한 분야별 산업 종사자를 주 회원으로 한 협회, 조합, 단체 7. 그 밖에 시장이 미래전략과제 육성을 위하여 필요하다

	략과제 육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자 또는 비영리법인	과제 육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자 또는 비영리법인	고 인정하는 사업자 또는 비영리법인
지원사업	제6조(지원사업) 도지사는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 추진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미래전략과제 및 주요 시책 개발을 위한 사업 2. 다른 지방자치단체와의 상생발전을 위한 사업 3. 전북자치도 정체성 확립, 확산 및 보급을 위한 사업 4.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7조(지원사업) 시장은 미래전략과제 발굴 및 육성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미래전략과제 및 주요 시책 개발을 위한 사업 2. 다른 지방자치단체와의 상생발전을 위한 사업 3. 시 지속가능한 발전 확립, 확산 및 보급을 위한 사업 4. 신기술 및 인공지능을 활용한 시책 개발 및 보급을 위한 사업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6조(지원사업) 시장은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 추진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미래전략과제 및 주요 시책 개발을 위한 사업 2. 다른 지방자치단체와의 상생발전을 위한 사업 3. 시 정체성 확립, 확산 및 보급을 위한 사업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지원대상은 대동소이하나 미래전략과제의 범위와 관련하여 서울특별시의 경우 환경보전사업, 신기술기반사업, 인공지능사업을 규정하고 있다는 점이 특징적이며, 기초자치단체 중에서 「보령시 미래전략과제 발굴 및 육성 조례」 제3조에서 해양개발사업을 규정하고 있음이 특징적이며 전북자치도 도입을 검토할 수 있을 것임
- 지원사업과 관련하여 서울특별시의 경우 지속가능한 발전 계획의 확립, 확산 및 보급을 위한 사업과 신기술 및 인공지능을 활용한 시책 개발 및 보급을 위한 사업을 규정하고 있다는 점에서 시사점이 있음

- 「전북특별자치도 종합계획 수립 연구」의 요약본에서 인구감소 관련 설명을 깊이 있게 다루면서 생명산업 등 특징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하고 있음. 관련하여 지원사업으로 전북자치도의 지속가능한 발전 계획의 확립, 확산 및 보급을 위한 사업을 추가하는 방안을 제시함
- 타 시·도의 사례 및 「전북특별자치도 종합계획 수립 연구」를 참고하여 아래와 같이 미래전략과제의 범위 및 지원사업에 관한 내용의 신설을 포함한 개정안을 제안함

현 행	개정안	비고
제3조(미래전략과제의 범위) 이 조례를 적용하는 미래전략과제는 지역주력산업과 신성장동력산업, 공간개발사업,	제3조(미래전략과제의 범위) 이 조례를 적용하는 미래전략과제는 지역주력산업, 신성장동력산업, 농생명산업, 신기	-타 시·도의 사례 및 종합계획의 내용을 참고하여 미

현 행	개정안	비고
삶의 질과 관련되는 장기적이고 미래지향적인 사업으로 한다.	술기반사업, 환경보전사업, 해양개발사업, 공간개발사업 및 삶의 질과 관련되는 장기적이고 미래지향적인 사업으로 한다.	래전략과제의 범위를 확대하여 규정하도록 규정 정비 권고
제6조(지원사업) 도지사는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 추진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미래전략과제 및 주요 시책 개발을 위한 사업 2. 다른 지방자치단체와의 상생발전을 위한 사업 3. 전북자치도 정체성 확립, 확산 및 보급을 위한 사업 <신설> 4.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6조(지원사업) 도지사는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 추진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미래전략과제 및 주요 시책 개발을 위한 사업 2. 다른 지방자치단체와의 상생발전을 위한 사업 3. 전북자치도 정체성 확립, 확산 및 보급을 위한 사업 4. 전북자치도의 지속가능한 발전 확립, 확산 및 보급을 위한 사업 5. 신기술 및 인공지능을 활용한 시책 개발 및 보급을 위한 사업 6.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참고자료 1 – 위원회 관련 실적

○ 구성

- 위원회 운영 관련 규정이 없음

○ 개최 실적

- 해당사항 없음

□ 참고자료 2 – 조례 관련 보도 자료

○ 보도자료 1

전북특별자치도, 첨단산업 육성으로 미래 산업지도 바꾼다, 글로벌뉴스통신[1)]

전북특별자치도, 첨단산업 육성으로 미래 산업지도 바꾼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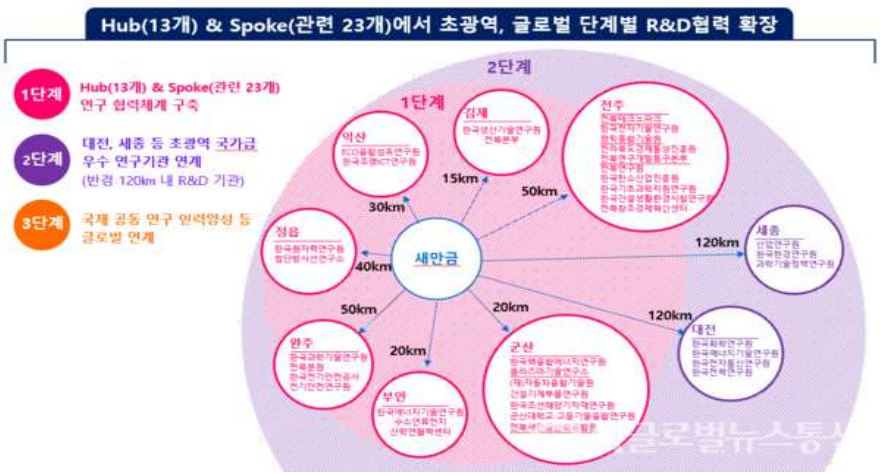
김일 기자 | 승인 2024.05.02 11:55 | 댓글 0

[전북=글로벌뉴스통신] 전북특별자치도의 새로운 미래는 첨단산업 육성에서부터 시작된다. 기존 1차 산업 중심에서 이차전지, 바이오, 수소경제 등 첨단산업으로 경제 전환을 통해 자본과 사람, 인프라가 모이는 글로벌 생명경제의 도시로 탈바꿈될 전망이다.

< 이차전지 산업 > - 이차전지 산업생태계 구축에 역량 집중

전북자치도의 새로운 미래 먹거리로 떠오른 건 단연 이차전지 산업이다. 이차전지 특화단지 지정('23.7월)을 전후하여 최근 3년간 이차전지 기업의 도내 투자는 9조 3천억원에 육박한다. 연이은 대규모 투자로 이차전지 특화단지의 산업 용지는 올 상반기에 조기 분양을 눈앞에 두었다.

우리 도는 산·학·연·관 전문가로 구성된 '이차전지 특화단지 추진단'을 운영, '이차전지 산업 육성 계획' 수립 등 특례 실행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 부족한 연구인프라를 확충하기 위해 이차전지 산업 생태계 구축에 행정력을 집중하고 있다.



1) https://www.globalnewsagency.kr/news/articleView.html?idxno=328903

○ **보도자료 2**

전북특별자치도, 바이오 특화단지 유치 아쉬움 뒤로 …첨단바이오 산업 지속적으로 육성, 스포츠한국[2)]

> 전북자치도, 바이오 특화단지 공모 결과에 아쉬움 표해
> 지난 1년여간 산학연병관 등 도민 한마음으로 준비, 유치기원에 감사
> 바이오 특화단지 지정과 관계 없이 바이오산업 지속 육성



전북특별자치도청 전경[사진=데일리스포츠한국DB]

[데일리스포츠한국 이석희 기자] 전북자치도가 정부에서 공모한 바이오 특화단지 공모 최종 선정 지역에 포함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져 아쉬움을 표했다.

◆정부의 바이오 특화단지 오가노이드 기술 제외 선정

전북자치도는 지난 27일 국가첨단전략산업위원회(위원장 국무총리)에서 최종 심의·의결한 바이오 분야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 공모사업에 오가노이드 재생치료제 산업 분야에는 선정된 지자체가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고 밝혔다.

전북특별자치도에 따르면 오가노이드는 줄기세포나 장기기반 세포에서 분리한 세포를 배양하거나 재가공해 만든 장기유사체를 의미하며 대체로 신약개발 및 질병치료, 인공장기 개발 등의 목적으로 활용되고 있다고 말했다.

2) https://www.dailysportshankook.co.kr/news/articleView.html?idxno=329327

○ **보도자료 3**

전북도 미래산업국, 첨단산업 생태계 조성으로 미래신산업 거점 구축, 투데이안[3)]

-이차전지 실시간 고도분석 센터, 사용후 이차전지 센터 구축 박차
-전북, 중소 제조혁신의 새로운 길라잡이로 도약
-신소재·신기술 기반 전북형 방위산업 기틀 마련
-국내 최고 자동차 전문 혁신기관과 협력체계 구축, 미래모빌리티산업 역량 강화
-지능형·스마트 농기계산업 전환, 글로벌 농기계산업 선도
-재생에너지 분야별 전문인력 양성 체계 구축을 위해 지역대학과 손 맞잡아
-수소특화 국가산업단지 최종 후보지 선정 등 수소산업 기반 확보
-1연구기관-1전담팀제, 연구개발(R&D)지원 원팀 출범
-농생명산업에 IoT, 5G 기술 접목, 푸드테크 산업 육성 시동
-2023년 미래산업국 주요성과



[투데이안] 올 한해 고물가·고금리 여파, 경제 심리 부진 등으로 산업경제 여건이 녹록치 않은 상황속에서도 산업별 거버넌스 구축, 지역 연구개발(R&D) 지원 체계 고도화 등 미래 산업 생태계 구축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 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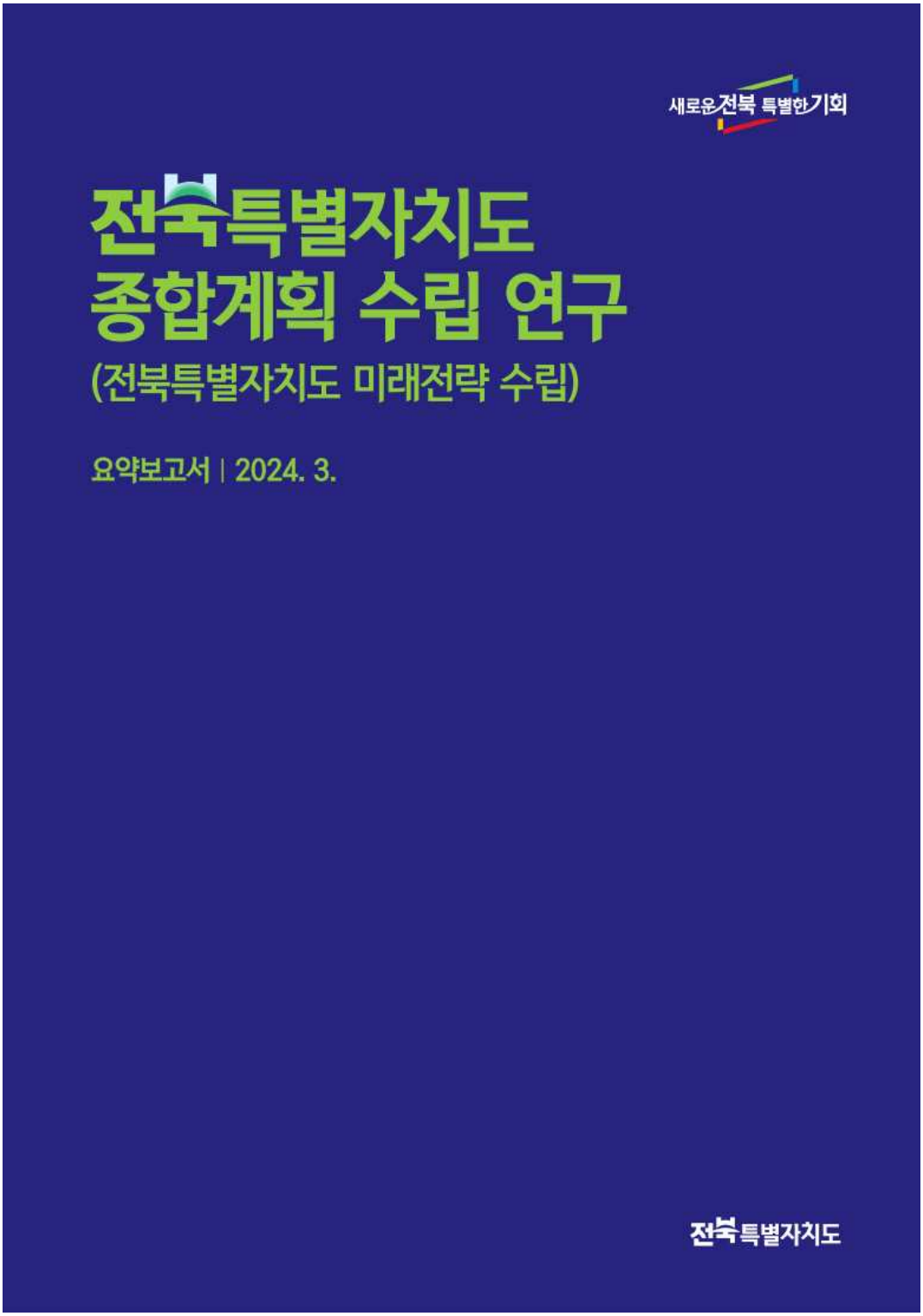
특히, 새만금 이차전지 특화단지 지정, 전북형 민관 상생형 스마트 제조혁신 도내 확산을 통한 제조혁신 1번지 도약, 수소특화 국가산업단지 최종 후보지 선정,'K-카본 플래그십 기술개발사업'예타 통과 등 굵직한 성과를 거두었다.

3) https://www.todayan.com/news/articleView.html?idxno=519616

□ 참고자료 3 – 조례 관련 보고서 및 연구 자료

○ 보고서 1

전북연구원에서 발간한 전북특별자치도 종합계획 수립 연구 : 미래전략 수립[4)]



4) http://www.jthink.kr/jthink/2022/inner.php?sMenu=A1000&mode=view&no=1174

○ 보고서 2

전북테크노파크 2024년도 업무 추진 계획

전북산업 대전환과 기업 고도성장을
선도하는 「Next 전북, Best TP」

(재)전북테크노파크
2024년도 업무추진 계획

JBTP 재단법인 전북테크노파크 JEONBUK TECHNOPARK

붙임 1 사업 관련 추진실적

□ 연도별 사업 및 예산 집행 실적

○ **2023년 : 3,000천원**

- 전북·새만금 혁신 심포지엄

● 기본계획 자료 참조

Ⅳ 소요예산(안)

○ 소요 예산액: 30,000천원

- 심포지엄 진행, 장소 대관료 등

○ 예산과목: 정책기획관, 전라북도정 기획·조정기능 강화, 도정 기획 및 정책개발 시스템 강화, 전북 미래 심포지엄 운영, 일반운영비, 행사운영비

붙임 2 평가대상 조례

전북특별자치도 미래전략과제 발굴 및 육성 조례

[시행 2024. 1. 18.] [전북특별자치도조례 제5399호, 2023. 12. 8., 일부개정]

전북특별자치도(정책기획관), 063-280-2195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전북특별자치도의 정체성을 확립하고 미래전략과제 발굴 및 육성을 통해 미래 도시경쟁력 제고를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3. 12. 8.>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개정 2023. 12. 8.>

1. “미래전략과제”란 전북특별자치도(이하 “전북자치도”라 한다)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핵심과제를 말한다.
2. “정체성”이란 전북자치도가 나아가야 할 방향을 제시하고, 미래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정신적 근간을 말한다.

제3조(미래전략과제의 범위) 이 조례를 적용하는 미래전략과제는 지역주력산업과 신성장동력산업, 공간개발사업, 삶의 질과 관련되는 장기적이고 미래지향적인 사업으로 한다.

제4조(도지사의 책무) 전북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지역산업의 지속적인 성장·발전과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미래전략과제를 발굴하고 육성해 나가야 한다.<개정 2023. 12. 8.>

제5조(지원대상) 도지사는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에게 미래전략과제 발굴을 시행하게 할 수 있다.<개정 2023. 12. 8.>

1. 국공립 연구기관
2. 정부나 전북자치도가 출자·출연 또는 보조한 연구기관이나 법인
3. 「특정연구기관 육성법」에 따른 특정연구기관
4. 「고등교육법」에 따라 설립된 대학 및 직업전문학교
5. 「민법」 제32조에 따라 중앙부처 장관의 허가를 받아 설립한 비영리 재단법인
6. 지역에 분포한 분야별 산업 종사자를 주 회원으로 한 협회, 조합, 단체
7. 그 밖에 도지사가 미래전략과제 육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자 또는 비영리법인

제6조(지원사업) 도지사는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 추진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개정 2023. 12. 8.>

1. 미래전략과제 및 주요 시책 개발을 위한 사업
2. 다른 지방자치단체와의 상생발전을 위한 사업
3. 전북자치도 정체성 확립, 확산 및 보급을 위한 사업
4.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7조(지원절차 등) 제6조에 따라 경비를 지원하는 경우 지원 신청 및 교부절차 등 일반적인 사항은 「전북특별자치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개정 2023. 12. 8.>

제8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미래전략과제 발굴 및 육성 등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 따른다.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02. 전북특별자치도 치안행정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Ⅰ. 종합의견

< 평가결과 >

□ 평가대상

조 례 명	전북특별자치도 치안행정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구분	자치조례	관계 법령	-
제정·시행일	2010. 10. 1 제정	최근개정·시행일	2023. 12. 8. 개정
소관 부서	자치행정과	소관 상임위	기획행정

□ 평가의견

평가항목	평가의견	주요 내용
종합의견	폐지 권고	상위법 폐지, 실무협의회와의 업무 중복 등을 고려해서 폐지 검토 권고
심층분석 결과		- 「전북특별자치도 치안행정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는 전북자치도 지역의 법질서 확립 및 도민의 안전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하여 2010.10.1. 「전라북도 치안행정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로 제정되어 2023.12.8. 일부개정되어 시행되어 왔음. 다만, 자치경찰제의 시행으로 「경찰법」이 「국가 경찰과 자치 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로 개정되면서 지역치안협의회를 운영할 근거인 치안행정협의회 규정이 존재하지 않으며, 자치경찰위원회의 설치로 기능이 중복되어 치안행정협의회 운영의 실효성이 없어 이 조례 폐지 권고
1. 입법 근거 및 적법성	적정	본 조례는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로 개정됨에 따라 자치사무의 범위에서 적절하게 제정되었음
2. 조례의 실효성	개정	시·도 치안행정협의회 상위법 근거 부재 및 자치경찰위원회 설치에 따른 기능 중복 등 조례를 존치할 실효성이 미비함
3. 조례 내용의 적정성	개정	상위법이 폐지되면서 협의회를 운영할 필요성이 없어져 조례 내용을 적정하다고 평가하기 어려움
4. 조례의 공평성	적정	장애, 성별, 나이 등에 관한 사회적 편견, 고정관념이 반영된 표현 및 차별 규정 없음
5. 주민 수용성	적정	조례의 체계 및 용어가 주민이 알기 쉽게 되어 있음

6. 전북자치도 현실 부합성	개정	치안행정협의회가 운영되고 있지 않아 현실과 부합하지 않음
7. 위원회 운영의 적정성	개정	위원회의 업무를 타 위원회에서 대행하고 있어 위원회 조항의 실효성이 없음
※ 기타 의견	없음	

Ⅱ. 항목별 평가 결과

평가항목	세부항목	척도	의견 및 자료
1. 입법의 근거 및 적법성	1) 위임조례인가 자치사무에 관한 조례인가?	☐ 위임조례 ☑ 자치사무에 관한 조례	
	2) 조례에서 규정하고 있는 위임근거가 올바른가?	☐ 그렇다 ☐ 그렇지않다 ☑ 해당사항 없음	
	3) 조례가 위임범위에서 적절하게 제·개정되었는가?	☐ 그렇다 ☐ 그렇지않다 ☑ 해당사항 없음	
	4) 조례 제.개정 이후 동일 또는 유사한 법령이나 제도가 만들어졌거나 근거법령이 개정 또는 폐지되었는가?	☐ 그렇다 ☐ 그렇지않다 ☑ 해당사항 없음	
	5) 조례에서 주민의 권리제한, 의무부과, 벌칙 부과, 규제사항에 대한 법률위임이 있는가?	☐ 그렇다 ☐ 그렇지않다 ☑ 해당사항 없음	
	6) 상위법령에 위배되는 조항이 있는가?	☐ 그렇다 ☐ 그렇지않다 ☑ 해당사항 없음	
2. 조례의 실효성	1) 조례의 시행과정에서 다른 조례와의 충돌이나 모순이 발생하고 있는가?	☑ 그렇다 ☐ 그렇지않다 ☐ 해당사항 없음	-실무협의회 관련 내용 중복
	2) 이 조례와 유사 또는 동일한 다른 조례가 제정 및 시행되고 있어 통합할 필요가 있는가?	☐ 그렇다 ☑ 그렇지않다 ☐ 해당사항 없음	-폐지 권고
	3) 조례에 따른 계획이 수립·시행되고 있는가?	☐ 그렇다 ☐ 그렇지않다 ☑ 해당사항 없음	
	4) 조례에서 집행기관 등에 책무를 부여하고 있는가?	☐ 그렇다 ☑ 그렇지않다 ☐ 해당사항 없음	

평가항목	세부항목	척도	의견 및 자료
	5) 조례에서 부여한 책무와 관련사업을 집행기관이 잘 이행하고 있는가?	□ 그렇다 □ 그렇지않다 ☑ 해당사항 없음	
3. 조례 내용의 적정성	1) 조례에 재정지원 관련 규정이 있는가?	☑ 그렇다 □ 그렇지않다 □ 해당사항 없음	-제13조(치안협력사업)
	2) 조례 시행에 필요한 예산 확보와 집행이 잘 이루어지고 있는가?	□ 그렇다 ☑ 그렇지않다 □ 해당사항 없음	
	3) 지원대상이 집행이 가능한 정도로 구체화 되어 있는가?	□ 그렇다 ☑ 그렇지않다 □ 해당사항 없음	
	4) 조례에 따른 위탁사무가 위탁대상으로 적정한가?	□ 그렇다 □ 그렇지않다 ☑ 해당사항 없음	
4. 조례의 공평성	1) 조례에서 장애인, 성별 등의 특정계층이나 특정지역을 차별하는 조항이 있는가?	□ 그렇다 ☑ 그렇지않다 □ 해당사항 없음	
	2) 조례에서 정한 차별이 합리적인가?	□ 그렇다 □ 그렇지않다 ☑ 해당사항 없음	
5. 주민 의견 수용성	1) 조례 제·개정 시 입법예고는 하였는가?	□ 그렇다 ☑ 그렇지않다 □ 해당사항 없음	
	2) 조례 제·개정 시 공청회, 세미나 등 이해관계인 및 주민에 대한 의견 수렴 과정이 있었는가?	□ 그렇다 □ 그렇지않다 ☑ 해당사항 없음	
	3) 조례와 관련한 민원(청원, 진정, 소송 등)이 제기되거나 개정 또는 폐지 요구가 있었는가?	□ 그렇다 ☑ 그렇지않다 □ 해당사항 없음	
	4) 조례의 체계나 사용 되어진 용어가 주민이 알기 쉽게 되어 있는가?	☑ 그렇다 □ 그렇지않다 □ 해당사항 없음	
6. 위원회 운영의 적정성	1) 조례로 위원회를 구성하도록 되어 있는가?	☑ 그렇다 □ 그렇지않다 □ 해당사항 없음	-제2조

평가항목	세부항목	척도	의견 및 자료
	2) 위원회가 법정위원회인가 조례로 설치하도록 한 위원회인가?	☐ 법정위원회 ☑ 조례로 정한 위원회 ☐ 해당사항 없음	
	3) 위원회 위원의 성별 구성이 적정한가?	☐ 그렇다 ☐ 그렇지않다 ☑ 해당사항 없음	
	4) 위원회가 법령이나 조례에서 정한 회의개최 운영 실적이 있고 관련 회의록을 보존하고 있는가?	☐ 그렇다 ☐ 그렇지않다 ☑ 해당사항 없음	
	5) 위원회를 계속 설치·운영할 필요성이 있는가?	☐ 그렇다 ☑ 그렇지않다 ☐ 해당사항 없음	-상위법령 폐지
	6) 해당 위원회와 유사한 다른 위원회와의 기능적 통합이 필요한가?	☑ 그렇다 ☐ 그렇지않다 ☐ 해당사항 없음	
7. 종합 의견	1) 이 조례를 현행대로 유지할 필요가 있는가?	☐ 그렇다 ☑ 그렇지않다	
	2) 이 조례를 개정할 이유가 있는가? (해당사항 모두 표기)	☐ 위임근거에 불부합 ☐ 위임근거 불명확 ☐ 법령의 위임 없는 규제 정비 필요 ☑ 다른 조례와의 상충 및 모순 ☐ 조례 시행의 문제점 발생 ☐ 조례의 공평성 문제 ☐ 알기 쉬운 법령정비 기준에 따른 정비 필요 ☑ 위원회 관련 규정 개정 필요 ☐ 그 밖의 사유	
	3) 이 조례를 폐지할 사유가 있는가? (해당사항 모두 표기)	☑ 다른 유사한 조례와의 통합 운영 필요성 ☐ 조례 시행 불가능 ☐ 최근 3년간 조례 관련 운영 실적 전무 ☐ 기타	
	4) 그 밖의 이 조례와 관련된 의견이 있는가?	☐ 있다 ☐ 없다	

Ⅲ. 세부내용

조례명	전북특별자치도 치안행정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 소관 부서 의견(팀)

○ **최종의견 : 기능 중복 등으로 인해 조례의 존치 실효성이 미비함, 법령상 조례 시행이 불가능함**

○ **내용**

- (2-1) 본 조례는 「전북특별자치도 자치경찰사무와 자치경찰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와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자치경찰위원회에 생활안전·교통·경비 등 자치경찰사무의 협력·조정 등 협의를 위한 경찰청 등 관계 기관과 실무협의회 구성·운영 규정에서 치안행정협의회와 실무협의회 기능 중복이 발생함
- (3-1) 조례 제13조에 재정지원 규정이 있음
- (6-1) 조례가 마지막으로 개정된 지 14년 1개월이 지났고, 시·도 치안행정협의회 상위 근거 부재 및 자치경찰 위원회 설치에 따른 기능 중복 등으로 인해 존치의 실효성이 미비하고 치안행정협의회가 운영되지 않아 현실과 부합하지 않음
- (7-2) 조례 제2조에 따라 치안행정협의회를 설치해야 함
- (7-5) 2019년 11월 이후로 위원회가 운영되지 않고, 위원 임기도 만료되어 위원회를 지속할 필요성이 없음
- (7-6) 치안행정협의회는 자치경찰위원회 실무협의회와 위원회 통합이 필요함
- (8-1) 「경찰법」이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로 개정됨에 따라 「치안행정협의회규정」(대통령령)이 폐지(2021.1.1.)되었고, 시·도 치안행정협의회 상위 근거 부재 및 자치경찰위원회 설치에 따른 기능 중복 등으로 인해 조례의 존치 실효성이 미비함
- (8-3) 법령상 조례 시행이 불가능함

■ 종합의견	폐지 권고

◎ 입법평가 세부의견

○ **평가항목별 검토**

평가항목	평가항목별 검토 내용
1. 입법 근거 및 적법성	본 조례는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로 개정됨에 따라 자치사무의 범위에서 적절하게 제정되었음
2. 조례의 실효성	시·도 치안행정협의회 상위 근거 부재 및 자치경찰위원회 설치에 따른

	기능 중복 등 조례를 존치할 실효성이 미비함
3. 조례 내용의 적정성	상위법이 폐지되면서 협의회를 운영할 필요성이 없어져 조례 내용을 적정하다고 평가하기 어려움
4. 조례의 공평성	장애, 성별, 나이 등에 관한 사회적 편견, 고정관념이 반영된 표현 및 차별 규정 없음
5. 주민 수용성	조례의 체계 및 용어가 주민이 알기 쉽게 되어 있음
6. 전북자치도 현실부합성	치안행정협의회가 운영되고 있지 않아 현실과 부합하지 않음
7. 위원회 운영의 적정성	위원회의 업무를 타 위원회에서 대행하고 있어 위원회 조항의 실효성이 없음
※ 기타 의견	없음

○ 연도별 사업내용 및 예산/집행액

- 예산집행내역 없음

○ 조례의 입법목적 달성도 또는 부수효과 분석

- 조례 목적달성도 평가
  - 조례는 제정되었으나 조례를 근거로 한 위원회가 최근 5년간 개최되지 않아 조례의 목적달성도를 평가하기 어려움
- 부수효과
  - 최근 5년간 협의회가 개최되지 않아 조례의 부수효과를 확인하기 어려움

○ 타 시·도 유사 조례와 비교 또는 타 시·도 자치법규(정책) 동향

전북특별자치도 치안행정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광주광역시 지역치안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서울특별시 치안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경기도 치안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제2조(협의회 설치)	제2조(설치)	제2조(설치)	제2조(설치)
제3조(정의)	제3조(기능)	제3조(기능)	제3조(기능)
제4조(역할)	제4조(협의회의 구성)	제4조(구성)	제4조(구성)
제5조(구성)	제5조(임기)	제5조(위원장 등)	제5조(임기)
제6조(임기)	제6조(위원장)	제6조(임기)	제6조(해촉)
제7조(해촉)	제7조(간사)	제7조(해촉)	제7조(위원장의 직무)
제8조(위원장의 선출 및 임무)	제8조(위원의 위촉 해제)	제8조(회의)	제8조(회의)
제9조(간사)	제9조(실무협의회)	제9조(간사)	제9조(간사)
제10조(회의)	제10조(분과위원회)	제10조(실무협의회)	제10조(실무협의회)

제11조(실무협의회)	**제11조(회의)**	제11조(분과위원회)	제11조(지원)
제12조(분과협의회)	**제12조(의사정족수)**	제12조(협의회의 협의 및 사무처리의 효력)	제12조(비밀누설의 금지)
제13조(치안협력 사업)	**제13조(의결정족수)**	제13조(행정지원 등)	제13조(운영세칙)
제14조(운영세칙)	**제14조(회의의 공개)**	제14조(운영세칙)	
	제15조(협의회의 협의 및 사무처리의 효력)		
	제16조(협의회의 폐지)		
	제17조(비밀누설 금지)		
	제18조(지원)		
	제19조(활동실적 제출)		
	제20조(포상)		
	제21조(운영세칙)		

- 광주광역시 조례에서는 협의회의 세부운영 사항에 대한 내용을 조례에서 규정하고 있다는 특징이 있음

Ⅳ. 개정의견

- 상위법 폐지, 실무협의회와의 업무 중복 등을 고려해서 폐지 검토 권고

심층분석 관련 검토

○ **심층분석 사유**

- 상위법 폐지, 실무협의회와의 업무 중복 등을 고려해서 폐지 검토 권고

○ **심층분석**

- 「전북특별자치도 치안행정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는 상위법인 「경찰법」이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로 개정됨에 따라 「치안행정협의회규정」(대통령령)이 폐지(2021.1.1.)되었고, 시·도 치안행정협의회 상위 근거 부재 및 자치경찰위원회 설치에 따른 기능 중복 등으로 인해 조례의 존치 실효성이 미비한 실정임
- 또한 「전북특별자치도 자치경찰사무와 자치경찰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와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자치경찰위원회에 생활안전·교통·경비 등 자치경찰사무의 협력·조정 등 협의를 위한 경찰청 등 관계 기관과 실무협의회 구성·운영 규정에서 치안행정협의회와 실무협의회 기능 중복이 발생하고 있음
- 「전북특별자치도 치안행정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는 전북자치도 지역의 법질서 확립 및 도민의 안전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하여 2010.10.1. 「전라북도 치안행정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로 제정되어 2023.12.8. 일부개정되어 시행되어 왔음. 다만, 자치경찰제의 시행으로 「경찰법」이 「국가 경찰과 자치 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로 개정되면서 지역치안협의회를 운영할 근거인 치안행정협의회 규정이 존재하지 않으며, 자치경찰위원회의 설치로 기능이 중복되어 치안행정협의회 운영의 실효성이 없어 이 조례 폐지 권고

※ 참고

- 폐지된 「경찰법」 상 치안행정협의회 규정

> 제16조(치안행정협의회) ① 지방행정과 치안행정의 업무조정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협의·조정하기 위하여 시·도지사(제주특별자치도지사는 제외한다) 소속으로 치안행정협의회를 둔다.
> ② 치안행정협의회의 조직·운영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현행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상 자치경찰위원회 규정

제18조(시·도자치경찰위원회의 설치) ① 자치경찰사무를 관장하게 하기 위하여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 소속으로 시·도자치경찰위원회를 둔다. 다만, 제13조 후단에 따라 시·도에 2개의 시·도경찰청을 두는 경우 시·도지사 소속으로 2개의 시·도자치경찰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시·도자치경찰위원회는 합의제 행정기관으로서 그 권한에 속하는 업무를 독립적으로 수행한다.
③ 제1항 단서에 따라 2개의 시·도자치경찰위원회를 두는 경우 해당 시·도자치경찰위원회의 명칭, 관할구역, 사무분장,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9조(시·도자치경찰위원회의 구성) ① 시·도자치경찰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7명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과 1명의 위원은 상임으로 하고, 5명의 위원은 비상임으로 한다.
② 위원은 특정 성(性)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위원 중 1명은 인권문제에 관하여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있는 사람이 임명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20조(시·도자치경찰위원회 위원의 임명 및 결격사유) ① 시·도자치경찰위원회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을 시·도지사가 임명한다.
1. 시·도의회가 추천하는 2명
2. 국가경찰위원회가 추천하는 1명
3. 해당 시·도 교육감이 추천하는 1명
4. 시·도자치경찰위원회 위원추천위원회가 추천하는 2명
5. 시·도지사가 지명하는 1명
② 시·도자치경찰위원회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격을 갖추어야 한다.
1. 판사·검사·변호사 또는 경찰의 직에 5년 이상 있었던 사람
2. 변호사 자격이 있는 사람으로서 국가기관등에서 법률에 관한 사무에 5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3. 대학이나 공인된 연구기관에서 법률학·행정학 또는 경찰학 분야의 조교수 이상의 직이나 이에 상당하는 직에 5년 이상 있었던 사람
4. 그 밖에 관할 지역주민 중에서 지방자치행정 또는 경찰행정 등의 분야에 경험이 풍부하고 학식과 덕망을 갖춘 사람
③ 시·도자치경찰위원회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시·도지사가 임명하고, 상임위원은 시·도자치경찰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 중에서 위원장의 제청으로 시·도지사가 임명한다. 이 경우 위원장과 상임위원은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원으로 한다.
④ 위원은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하며, 권한을 남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⑤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해서는「지방공무원법」제52조 및 제57조를 준용한다.
⑥ 공무원이 아닌 위원은 그 소관 사무와 관련하여 형법이나 그 밖의 법률에 따른 벌칙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⑦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위원이 될 수 없다. 위원이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한 경우에는 당연퇴직한다.
1. 정당의 당원이거나 당적을 이탈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2. 선거에 의하여 취임하는 공직에 있거나 그 공직에서 퇴직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3. 경찰, 검찰, 국가정보원 직원 또는 군인의 직에 있거나 그 직에서 퇴직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원(국립 또는 공립대학의 조교수 이상의 직에 있는 사람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거나 공무원이었던 사람으로서 퇴직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

람. 다만, 제20조제3항 후단에 따라 위원장과 상임위원이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원이 된 경우에는 당연퇴직하지 아니한다.
5.「지방공무원법」제31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다만,「지방공무원법」제31조제2호 및 제5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61조제1호 단서에 따른다.
⑧ 그 밖에 위원의 임명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시·도조례로 정한다.

제21조(시·도자치경찰위원회 위원추천위원회) ① 시·도자치경찰위원회 위원 추천을 위하여 시·도지사 소속으로 시·도자치경찰위원회 위원추천위원회를 둔다.
② 시·도지사는 시·도자치경찰위원회 위원추천위원회에 각계각층의 관할 지역주민의 의견이 수렴될 수 있도록 위원을 구성하여야 한다.
③ 시·도자치경찰위원회 위원추천위원회 위원의 수, 자격, 구성, 위원회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2조(시·도자치경찰위원회 위원장의 직무) ① 시·도자치경찰위원회 위원장은 시·도자치경찰위원회를 대표하고 회의를 주재하며 시·도자치경찰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업무를 수행한다.
② 시·도자치경찰위원회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상임위원, 시·도자치경찰위원회 위원 중 연장자순으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23조(시·도자치경찰위원회 위원의 임기 및 신분보장) ① 시·도자치경찰위원회 위원장과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없다.
②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하되, 전임자의 남은 임기가 1년 미만인 경우 그 보궐위원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③ 위원은 중대한 신체상 또는 정신상의 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의사에 반하여 면직되지 아니한다.

제24조(시·도자치경찰위원회의 소관 사무) ① 시·도자치경찰위원회의 소관 사무는 다음 각 호로 한다.
1. 자치경찰사무에 관한 목표의 수립 및 평가
2. 자치경찰사무에 관한 인사, 예산, 장비, 통신 등에 관한 주요정책 및 그 운영지원
3. 자치경찰사무 담당 공무원의 임용, 평가 및 인사위원회 운영
4. 자치경찰사무 담당 공무원의 부패 방지와 청렴도 향상에 관한 주요 정책 및 인권침해 또는 권한남용 소지가 있는 규칙, 제도, 정책, 관행 등의 개선
5. 제2조에 따른 시책 수립
6. 제28조제2항에 따른 시·도경찰청장의 임용과 관련한 경찰청장과의 협의, 제30조제4항에 따른 평가 및 결과 통보
7. 자치경찰사무 감사 및 감사의뢰
8. 자치경찰사무 담당 공무원의 주요 비위사건에 대한 감찰요구
9. 자치경찰사무 담당 공무원에 대한 징계요구
10. 자치경찰사무 담당 공무원의 고충심사 및 사기진작
11. 자치경찰사무와 관련된 중요사건·사고 및 현안의 점검
12. 자치경찰사무에 관한 규칙의 제정·개정 또는 폐지
13. 지방행정과 치안행정의 업무조정과 그 밖에 필요한 협의·조정
14. 제32조에 따른 비상사태 등 전국적 치안유지를 위한 경찰청장의 지휘·명령에 관한 사무
15. 국가경찰사무·자치경찰사무의 협력·조정과 관련하여 경찰청장과 협의

16. 국가경찰위원회에 대한 심의·조정 요청
17. 그 밖에 시·도지사, 시·도경찰청장이 중요하다고 인정하여 시·도자치경찰위원회의 회의에 부친 사항에 대한 심의·의결
② 시·도자치경찰위원회의 업무와 관련하여 시·도지사는 정치적 목적이나 개인적 이익을 위해 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25조(시·도자치경찰위원회의 심의·의결사항 등) ① 시·도자치경찰위원회는 제24조의 사무에 대하여 심의·의결한다.
② 시·도자치경찰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시·도지사는 제1항에 관한 시·도자치경찰위원회의 의결이 적정하지 아니하다고 판단할 때에는 재의를 요구할 수 있다.
④ 위원회의 의결이 법령에 위반되거나 공익을 현저히 해친다고 판단되면 행정안전부장관은 미리 경찰청장의 의견을 들어 국가경찰위원회를 거쳐 시·도지사에게 제3항의 재의를 요구하게 할 수 있고, 경찰청장은 국가경찰위원회와 행정안전부장관을 거쳐 시·도지사에게 재의를 요구하게 할 수 있다.
⑤ 시·도자치경찰위원회의 위원장은 재의요구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회의를 소집하여 재의결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전과 같은 의결을 하면 그 의결사항은 확정된다.

제26조(시·도자치경찰위원회의 운영 등) ① 시·도자치경찰위원회의 회의는 정기적으로 개최하여야 한다. 다만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위원 2명 이상이 요구하는 경우 및 시·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임시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
② 시·도자치경찰위원회는 회의 안건과 관련된 이해관계인이 있는 경우 그 의견을 듣거나 회의에 참석하게 할 수 있다.
③ 시·도자치경찰위원회의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직무활동에 필요한 비용 등을 지급할 수 있다.
④ 그 밖에 시·도자치경찰위원회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시·도조례로 정한다.

제27조(사무기구) ① 시·도자치경찰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시·도자치경찰위원회에 필요한 사무기구를 둔다.
② 사무기구에는 「지방자치단체에 두는 국가공무원의 정원에 관한 법률」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경찰공무원을 두어야 한다.
③ 제주특별자치도에는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44조제3항에도 불구하고 같은 법 제6조제1항 단서에 따라 이 법 제27조제2항을 우선하여 적용한다.
④ 사무기구의 조직·정원·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경찰청장의 의견을 들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시·도조례로 정한다.

- 위의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0조제8항, 제26조제4항, 제27조제4항의 위임에 따라 「전북특별자치도 자치경찰의 사무와 자치경찰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여 운영하고 있음

□ 참고자료 1 – 위원회 관련 실적

○ 구성

- 구성일자 : 2010. 10월
- 구성위원 : 20명 (당연직 4, 위촉직 16)
  - 당연직 위원 : 도지사, 도의회의장, 도교육감, 전북지방경찰청장
    ※ 위원장 : 도지사, 공동부위원장 : 당연직위원
  - 위촉직 위원 : 유관기관 기관장 및 시민사회단체 대표 16명
- 구성형태 및 임기 : 상설 / 2년(연임가능)
- 위촉방법 : 도내기관장, 단체장 및 전문가 중 도지사가 임명

○ 개최 실적

- 2012년 : 1차 ('12. 2.20), 2차 ('12. 6.25)
- 2013년 : 1차 ('13. 3.11), 2차 ('13.10.15)
- 2014년 : 1차 ('14. 2.17), 2차 ('14.10.16)
- 2015년 : 1차 ('15. 4. 9), 2차 ('15.11.25)
- 2016년 : 1차 ('16. 4.15), 2차 ('16. 6.24)
- 2016년 : 1차 ('16. 4.15), 2차 ('16. 6.24)
- 2017년 : 1차 ('17. 4.14)
- 2019년 : 1차 ('19.11.12) ※ 2018년 미개최

□ 참고자료 2 – 조례 관련 보도 자료

○ 보도자료 1

전북자경위, 유관기관 맞손 치안 강화 협력 방안 모색, 전라일보[5)]



전북자치경찰위원회는 30일 도청 중회의실에서 전북경찰청, 전북자치도, 도교육청, 전북변호사회 등 유관기관과 민간전문가, 현장경찰관이 참여한 가운데 실무협의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의회는 자치경찰 관련 주요 기관 간 협력 체계를 강화하고, 지역사회 치안 강화를 위한 실질적인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5) https://www.jeollailbo.com/news/articleView.html?idxno=743357

○ **보도자료 2**

지역소멸과 저출생 대응, 전북서 '자치경찰권 강화' 모색, 투데이안[6)]

-전북자치경찰위 24일, '자치경찰권 강화 정책 포럼' 개최
-진정한 지방시대 실현을 위한 자치경찰의 역할 강구
-'자치경찰권 강화' 위해 이원화 시행과 재정제도 마련 필요 한목소리



[투데이안] 정부 국정과제인 '자치경찰권 강화 실현'을 위해 시도 자치경찰위원회.전문가.관련기관.현장경찰 등 전국의 관계자 100여 명이 한 자리에 모여 자치경찰의 역할과 발전 방향을 모색하는 뜻깊은 자리가 전북에서 마련됐다.

전북특별자치도자치경찰위원회(위원장 이연주),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회장 박형준 부산광역시장), 전국시도자치경찰위원장협의회(회장 한진호 인천자치경찰위원장), 한국지방세연구원(원장 강성조)이 공동 주관한 '자치경찰권 강화 정책 포럼'이 24일 전북특별자치도청 대회의실에서 개최됐다.

포럼은 '지역소멸과 저출생 위기 극복, 자치경찰이 함께 합니다!'라는 주제로 개회사와 축사, 발제 및 종합토론순으로 진행됐다.

6) https://www.todayan.com/news/articleView.html?idxno=548732

○ 보도자료 3

전북자치경찰위원회,제2기 새롭게 출범, 정읍신문[7)]

김관영 도지사, "지역맞춤형 치안서비스 제공에 힘 모아달라"

전북특별자치도 자치경찰위원회는 지난 3일 '제2기 전북자치경찰위원회' 공식 출범을 알리는 위원 임명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김관영 전북특별자치도지사는 새롭게 구성된 제2기 위원 7명에게 임명장을 수여했다.

위원장에는 이연주 변호사가 임명됐다. 이 위원장은 전북특별자치도 도민고충처리위원회 위원, 전북특별자치도 노동위원회 공익위원, 전주지방법원 조정위원 등으로 활동했으며, 법률·행정·인권 분야의 폭넓은 경험을 살려 지역특색에 맞는 주민체감형 자치경찰제 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제2기 위원은 전북도의회 추천 최낙준 변호사와 하태춘 전 완산경찰서장, 위원추천위원회 추천 신일섭 전 정읍경찰서장과 남준희 변호사, 국가경찰위원회 추천 박성구 전 덕진경찰서장, 도교육감 추천 나유인 공직공익비리신고 전국시민운동연합 이사장 등 7명으로 구성됐다.
또한 위원은 전북참여자치 시민연대 자문위원, 지방노동위원회 공익심판위원, 전북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등의 경력을 가진 법조인과 전북갈등관리심의위원회 위원, 전주기전대 경찰경호학과 특임교수 등의 경력이 있는 전직경찰로 구성돼, 치안행정에 대한 전문성과 이해도가 높을 것으로 기대된다.

새롭게 출발하는 제2기 전북자치경찰위원회는 이날 첫회의를 열고 신일섭 위원을 상임위원으로 선출했다.

상임위원인 위원장과 사무국장은 지방공무원 채용 절차를 거쳐 정무직 공무원으로 임용되며, 위원 임기는 2024년 6월 2일부터 2027년 6월 1일까지 3년 간이다.

이연주 위원장은 "사회적약자 보호와 도민의 안전한 일상을 지키기 위해 지역사회와 함께 노력하겠다"며, "그동안 위원회에서 추진해 온 중점 사업을 더욱 발전시키고 도민이 체감할 수 있는 치안시책도 발굴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김관영 전북특별자치도지사는 "자치경찰제의 핵심은 지방행정과 경찰행정의 융합으로 주민이 원하는 지역맞춤형 치안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다"며 "자치경찰제도가 더욱 발전하고 도민들이 체감할 수 있도록 위원들께서 함께 힘을 모아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자치경찰제는 경찰법에 따라 2021년 전면 시행됐으며, 경찰사무 중 지역과 밀접한 연관이 있는 생활안전, 사회적약자 보호, 교통안전 등의 치안을 담당하며 시도 자치경찰위원회가 지휘 · 감독하는 제도이다.<자료제공 전북특별자치도 자치경찰행정과 담당 주연교/옮김 김남륜 기자>

7) https://www.jnewsk.com/news/articleView.html?idxno=84820

붙임 1 사업 관련 추진실적

□ 연도별 사업 및 예산 집행 실적

○ 사업 및 예산집행실적 없음

붙임 2 평가대상 조례

전북특별자치도 치안행정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 2024. 1. 18.] [전북특별자치도조례 제5399호, 2023. 12. 8., 일부개정]

전북특별자치도(자치행정과)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전북지역 법질서 확립과 도민의 생활안전을 위한 치안행정협의회의 설치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지역사회의 안전을 확보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협의회 설치)

① 전북지역 법질서를 확립하고 치안환경을 개선하며 나아가 지역 발전에 기여하기 위하여 전북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소속으로 전북특별잦도 치안행정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둔다.<개정 2023. 12. 8.>

② 협의회의 전문성과 추진력 제고를 위해 “실무 및 분과협의회”를 둘 수 있다.

제3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사회적 약자”란 아동·청소년·다문화가정·장애인 등 범죄로부터 취약한 계층을 말한다.

제4조(역할)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한다.

1. 법질서 확립과 사회적 약자 등 도민의 생활안전을 위한 주요 정책에 관한 사항
2. 법질서 확립 공감대 형성을 위한 각종 홍보에 관한 사항
3. 그 밖의 협의회에서 공동 추진하기로 정한 사항

제5조(구성)

① 협의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협의회의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분하고, 당연직 위원은 도지사,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의장(이하 “도의회 의장”이라 한다), 전북특별자치도 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 전북지방경찰청장(이하 “경찰청장”이라 한다)이 되며,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위원장이 위촉한다. <개정 2023. 12 . 8.>

1. 협의회 설립 목적에 공감하는 도내 기관·단체의 장
2. 법질서 확립활동에 기여할 수 있는 전문가

제6조(임기)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잔여임기로 하며, 각 기관·단체의 장 및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제7조(해촉) 위원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본인이 사임의 의사표시가 있는 경우
2. 정당한 사유 없이 위원 활동을 기피하는 경우
3. 위원이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거나, 위원으로서 품위 손상 등 임무를 수행하는데 부적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심신쇠약 또는 그 밖에 임무를 계속 수행하기 곤란한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제8조(위원장의 선출 및 임무)

① 위원장은 도지사로 하며 부위원장은 기타 당연직 위원이 공동으로 한다.

② 위원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협의회 사무를 총괄한다. 다만,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들이 상호 협의하여 직무대행자를 정한다.

제9조(간사) 간사는 전북지방경찰청의 협의회 업무담당 부서장으로 하고, 위원장을 보좌하여 다음 각 호의 협의회 사무를 처리한다.

1. 협의회의 의제 발굴 및 사전 검토
2. 참여기관·단체 등에 대한 의견 수렴 및 조정
3. 회의 진행에 필요한 준비 및 회의록 작성
4. 그 밖의 협의회 사무

제10조(회의)

① 협의회의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한다.

② 정기회는 반기별 1회 개최하며, 임시회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청이 있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③ 협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협의)한다.

제11조(실무협의회)

① 협의회 산하에 참여 기관·단체의 실무책임자로 구성된 “실무협의회”를 두며 실무협의회는 전북지방경찰청 업무담당 부서장이 주관한다.

② 실무협의회는 협의회에 상정할 안건에 대하여 사전 의견수렴·조정을 하고, 협의회에서 결정된 사항을 추진한다.

제12조(분과협의회) 분과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실무협의회에서 정한다.

제13조(치안협력 사업)

① 도지사는 협의회의 원활한 운영과 활동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법질서 확립과 도민의 생활안전을 위하여 협의회에서 정한 사업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제14조(운영세칙)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외에 협의회의 운영 등에 관하여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03. 전북특별자치도 북한이탈주민의 정착 지원에 관한 조례

Ⅰ. 종합의견

< 평가결과 >

□ 평가대상

조 례 명	전북특별자치도 북한이탈주민의 정착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구분	자치조례	관계 법령	-
제정·시행일	2014. 4. 30. 제정	최근개정·시행일	2023. 12. 8. 개정
소관 부서	자치행정과	소관 상임위	기획행정

□ 평가의견

평가항목	평가의견	주요 내용
종합의견	개정/이행/일반	협의회 개최 권고 및 규정 정비
심층분석 결과		- 이 조례 제11조제4항에서 "협의회는 반기 1회 이상 개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2022년 1회, 2023년 1회로 조례의 규정과 달리 개최되고 있어 반기 1회 이상 개최되도록 협의회 개최를 권고할 필요가 있음. 또한 여성위원의 비율이 14%로 여성위원의 비율을 높이도록 향후 위원회 구성 시 고려할 필요가 있음. - 다만, 실무상 협의회를 반기 1회 이상 개최하기 어려운 경우 조례 제11조제4항을 삭제하거나 필요한 경우 개최하도록 규정을 정비하는 방안도 검토할 필요가 있음. 위원회의 운영에 어려움이 예상된다는 점에서 위원회 운영과 관련하여 이 조례 제11조제4항을 개정하는 방안을 제안함
1. 입법 근거 및 적법성	적정	자치사무의 범위에서 적절하게 제정되었음
2. 조례의 실효성	적정	조례 제4조에 따른 지원대상, 제5조의 지원 범위 등을 규정함으로써 조례의 실효성을 확보하고 있음
3. 조례 내용의 적정성	적정	조례에서 규정하고 있는 북한이탈주민 지원이 적절하게 이루어지고 있음
4. 조례의 공평성	적정	장애, 성별, 나이 등에 관한 사회적 편견, 고정관념이 반영된 표현이 없음
5. 주민 수용성	적정	조례의 체계 및 용어가 주민이 알기 쉽게 되어 있음

6. 전북자치도 현실 부합성	적정	전북특별자치도에 거주하는 북한이탈주민을 지원하여 그들이 대한민국 사회에 성공적으로 적응할 수 있도록 돕는 조례로, 전북특별자치도 현실에 부합함
7. 위원회 운영의 적정성	적정	위원회가 규정대로 설치되었고 활발히 운영되고 있어 위원회의 운영이 적절한 것으로 평가됨
※ 기타 의견	없음	

Ⅱ. 항목별 평가 결과

평가항목	세부항목	척도	의견 및 자료
1. 입법의 근거 및 적법성	1) 위임조례인가 자치사무에 관한 조례인가?	☐ 위임조례 ☑ 자치사무에 관한 조례	
	2) 조례에서 규정하고 있는 위임근거가 올바른가?	☐ 그렇다 ☐ 그렇지않다 ☑ 해당사항 없음	
	3) 조례가 위임범위에서 적절하게 제·개정되었는가?	☐ 그렇다 ☐ 그렇지않다 ☑ 해당사항 없음	
	4) 조례 제.개정 이후 동일 또는 유사한 법령이나 제도가 만들어졌거나 근거법령이 개정 또는 폐지되었는가?	☐ 그렇다 ☐ 그렇지않다 ☑ 해당사항 없음	
	5) 조례에서 주민의 권리제한, 의무부과, 벌칙 부과, 규제사항에 대한 법률위임이 있는가?	☐ 그렇다 ☐ 그렇지않다 ☑ 해당사항 없음	
	6) 상위법령에 위배되는 조항이 있는가?	☐ 그렇다 ☐ 그렇지않다 ☑ 해당사항 없음	
2. 조례의 실효성	1) 조례의 시행과정에서 다른 조례와의 충돌이나 모순이 발생하고 있는가?	☐ 그렇다 ☑ 그렇지않다 ☐ 해당사항 없음	
	2) 이 조례와 유사 또는 동일한 다른 조례가 제정 및 시행되고 있어 통합할 필요가 있는가?	☐ 그렇다 ☑ 그렇지않다 ☐ 해당사항 없음	
	3) 조례에 따른 계획이 수립·시행되고 있는가?	☐ 그렇다 ☐ 그렇지않다 ☑ 해당사항 없음	
	4) 조례에서 집행기관 등에 책무를 부여하고 있는가?	☑ 그렇다 ☐ 그렇지않다 ☐ 해당사항 없음	-제3조, 제14조

평가항목	세부항목	척도	의견 및 자료
	5) 조례에서 부여한 책무와 관련사업을 집행기관이 잘 이행하고 있는가?	☑ 그렇다 ☐ 그렇지않다 ☐ 해당사항 없음	
3. 조례 내용의 적정성	1) 조례에 재정지원 관련 규정이 있는가?	☑ 그렇다 ☐ 그렇지않다 ☐ 해당사항 없음	-제14조
	2) 조례 시행에 필요한 예산 확보와 집행이 잘 이루어지고 있는가?	☑ 그렇다 ☐ 그렇지않다 ☐ 해당사항 없음	
	3) 지원대상이 집행이 가능한 정도로 구체화 되어 있는가?	☐ 그렇다 ☑ 그렇지않다 ☐ 해당사항 없음	
	4) 조례에 따른 위탁사무가 위탁대상으로 적정한가?	☑ 그렇다 ☐ 그렇지않다 ☐ 해당사항 없음	-제15조
4. 조례의 공평성	1) 조례에서 장애인, 성별 등의 특정계층이나 특정지역을 차별하는 조항이 있는가?	☐ 그렇다 ☑ 그렇지않다 ☐ 해당사항 없음	
	2) 조례에서 정한 차별이 합리적인가?	☐ 그렇다 ☐ 그렇지않다 ☑ 해당사항 없음	
5. 주민 의견 수용성	1) 조례 제·개정 시 입법예고는 하였는가?	☑ 그렇다 ☐ 그렇지않다 ☐ 해당사항 없음	
	2) 조례 제·개정 시 공청회, 세미나 등 이해관계인 및 주민에 대한 의견 수렴 과정이 있었는가?	☐ 그렇다 ☐ 그렇지않다 ☑ 해당사항 없음	
	3) 조례와 관련한 민원(청원, 진정, 소송 등)이 제기되거나 개정 또는 폐지 요구가 있었는가?	☐ 그렇다 ☐ 그렇지않다 ☑ 해당사항 없음	
	4) 조례의 체계나 사용 되어진 용어가 주민이 알기 쉽게 되어 있는가?	☑ 그렇다 ☐ 그렇지않다 ☐ 해당사항 없음	
6. 위원회 운영의 적정성	1) 조례로 위원회를 구성하도록 되어 있는가?	☑ 그렇다 ☐ 그렇지않다 ☐ 해당사항 없음	

평가항목	세부항목	척도	의견 및 자료
	2) 위원회가 법정위원회인가 조례로 설치하도록 한 위원회인가?	□ 법정위원회 ☑ 조례로 정한 위원회 □ 해당사항 없음	
	3) 위원회 위원의 성별 구성이 적정한가?	□ 그렇다 ☑ 그렇지않다 □ 해당사항 없음	-위촉직 남8, 여2
	4) 위원회가 법령이나 조례에서 정한 회의개최 운영 실적이 있고 관련 회의록을 보존하고 있는가?	☑ 그렇다 □ 그렇지않다 □ 해당사항 없음	
	5) 위원회를 계속 설치·운영할 필요성이 있는가?	☑ 그렇다 □ 그렇지않다 □ 해당사항 없음	
	6) 해당 위원회와 유사한 다른 위원회와의 기능적 통합이 필요한가?	□ 그렇다 ☑ 그렇지않다 □ 해당사항 없음	
7. 종합 의견	1) 이 조례를 현행대로 유지할 필요가 있는가?	☑ 그렇다 □ 그렇지않다	
	2) 이 조례를 개정할 이유가 있는가? (해당사항 모두 표기)	□ 위임근거에 불부합 □ 위임근거 불명확 □ 법령의 위임 없는 규제 정비 필요 □ 다른 조례와의 상충 및 모순 □ 조례 시행의 문제점 발생 □ 조례의 공평성 문제 ☑ 알기 쉬운 법령정비 기준에 따른 정비 필요 ☑ 위원회 관련 규정개정 필요 □ 그 밖의 사유	
	3) 이 조례를 폐지할 사유가 있는가? (해당사항 모두 표기)	□ 다른 유사한 조례와의 통합 운영 필요성 □ 조례 시행 불가능 □ 최근 3년간 조례 관련 운영 실적 전무 □ 기타	
	4) 그 밖의 이 조례와 관련된 의견이 있는가?	□ 있다 □ 없다	

Ⅲ. 세부내용

조례명	전북특별자치도 북한이탈주민의 정착 지원에 관한 조례

■ 소관 부서 의견(팀)

○ **최종의견 : 북한이탈주민들이 지역사회의 일원으로 성공적으로 적응하여 정착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지원이 필요하여 조례를 유지해야 함**

○ **내용**

- (2-4) 조례 제3조, 제14조에 따라 2024년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에 28,000천원, 이북5도·북한이탈주민 고향 만남의 날 개최를 위한 예산 25,000천원을 확보함
- (2-5) 2022년 북한이탈주민 지원 유공 민간인 포상(3명)과 2023년 이북5도 및 북한이탈주민 지원 유공 민간인 포상(8명)을 수여함
- (3-1) 2023년도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에 28,000천원, 이북5도·북한이탈주민 고향 만남의 날 개최에 25,000천원을 집행함
- (6-1) 조례를 개정한 후 8개월이 경과하였고, 조례 제3조가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의2와 유사함
- (7-1) 조례 제6조에 따라 전북특별자치도 북한이탈주민 지역협의회를 둘 수 있음
- (7-2) 전북특별자치도 북한이탈주민 지역협의회는 조례에 따라 설치되는 위원회임
- (7-3) 위원회 위원 15인 중 여성 비율이 14%임
- (7-4) 조례 내용에 따라 위원회를 2022년 7,000천원을 집행하여 1회(4.22.), 2023년 7,000천원을 집행하여 서면으로 1회(12월) 개최하였고, 2024년에는 3,200천원을 확보하여 개최예정임
- (7-5) 북한이탈주민 지원 시책에 관한 사항을 심의 자문하기 위해 위원회의 설치·운영이 필요함

■ 종합의견	개정 권고/이행 권고/일반 정비

◎ 입법평가 세부의견

○ **평가항목별 검토**

평가항목	평가항목별 검토 내용
1. 입법 근거 및 적법성	자치사무의 범위에서 적절하게 제정되었음
2. 조례의 실효성	조례 제4조에 따른 지원대상, 제5조의 지원 범위 등을 규정함으로써 조례의 실효성을 확보하고 있음
3. 조례 내용의 적정성	조례에서 규정하고 있는 북한이탈주민 지원이 적절하게 이루어지고 있음

4. 조례의 공평성	장애, 성별, 나이 등에 관한 사회적 편견, 고정관념이 반영된 표현이 없음
5. 주민 수용성	조례의 체계 및 용어가 주민이 알기 쉽게 되어 있음
6. 전북자치도 현실부합성	전북특별자치도에 거주하는 북한이탈주민을 지원하여 그들이 대한민국 사회에 성공적으로 적응할 수 있도록 돕는 조례로, 전북특별자치도 현실에 부합함
7. 위원회 운영의 적정성	위원회가 규정대로 설치되었고 활발히 운영되고 있어 위원회의 운영이 적절한 것으로 평가됨. 다만,
※ 기타 의견	없음

○ 연도별 사업내용 및 예산/집행액

(단위: 천원)

연도	사업명	필요예산	확보예산	집행액	집행내역
2022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	18,000	18,000	18,000	전북하나센터 교부
	이북5도·북한이탈주민 고향 만남의 날 개최	25,000	25,000	25,000	이북5도사무소 교부
2023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	28,000	28,000	28,000	전북하나센터 교부
	이북5도·북한이탈주민 고향 만남의 날 개최	25,000	25,000	25,000	이북5도사무소 교부
2024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	28,000	28,000	28,000	전북하나센터 교부
	이북5도·북한이탈주민 고향 만남의 날 개최	25,000	25,000	-	(하반기 집행 예정)

○ 조례의 입법목적 달성도 또는 부수효과 분석

- 조례 목적달성도 평가
  - 조례 내용에 따라 다양한 북한이탈주민 지원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는 점에서 조례의 목적이 달성되고 있다고 평가됨
- 부수효과
  - 전북특별자치도 내에 거주하는 북한이탈주민을 성공적으로 대한민국 사회로 편입하여 인구소멸에 대응하는 다양한 정책을 추진할 수 있음

○ 타 시·도 유사 조례와 비교 또는 타 시·도 자치법규(정책) 동향

전북특별자치도 북한이탈주민의 정착지원에 관한 조례	경기도 북한이탈주민의 정착지원에 관한 조례	서울특별시 북한이탈주민의 정착지원에 관한 조례	대구광역시 북한이탈주민의 정착지원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제3조(책무)	제3조(도의 책무)	제3조(시장 등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제4조(지원 대상)	제4조(지원 대상)	제4조(지원의 범위)	제4조(지원 대상)
제5조(지원 범위)	제5조(지원 사업)	제5조(실태조사)	제5조(지원의 범위)
제6조(전북특별자치도 북한이탈주민지원 지역협의회 구성 등)	**제5조의2(공무원 특별채용)**	제6조(서울특별시 북한이탈주민지원 지역협의회 구성 등)	제6조(대구광역시북한이탈주민정착지원협의회 설치)
제7조(협의회의 기능)	**제5조의3(공공부문 일자리 창출)**	제7조(협의회의 기능)	제7조(협의회의 기능)
제8조(위원의 임기)	**제5조의4(공공기관 평가 반영)**	제8조(위원장 등)	제8조(위원장)
제9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제6조(경기도 북한이탈주민지원 지역협의회 구성 등)	제9조(회의)	제9조(협의회 회의)
제10조(위원장)	제7조(협의회의 기능)	제10조(비밀엄수의무)	제10조(수당 등)
제11조(회의)	제8조(위원장)	제11조(수당 등)	제11조(북한이탈주민지원단체에 대한 지원)
제12조(비밀엄수의무 등)	제9조(회의)	제12조(북한이탈주민지원 촉진)	제12조(포상)
제13조(수당 등)	제9조의2(비밀엄수의무 등)	**제12조의2(북한이탈주민의 날 행사)**	제13조(업무의 위임 및 위탁)
제14조(북한이탈주민지원단체에 대한 지원)	제10조(수당 등)	제13조(업무의 위임 및 위탁)	제14조(시행규칙)
제15조(업무의 위임 및 위탁)	제11조(북한이탈주민지원단체에 대한 지원)	제14조(지도·감독)	
제16조(포상)	제12조(업무의 위임 및 위탁)	제15조(포상)	
제17조(시행규칙)	제13조(포상)	제16조(시행규칙)	
	제14조(시행규칙)		

- 경기도 조례에서는 북한이탈주민을 공무원이나 공공기관 직원으로 특별채용할 수 있고, 이를 평가에 반영하여 각 기관이 북한이탈주민을 적극적으로 채용하도록 함
- 서울특별시 조례에서는 북한이탈주민의 날 행사를 실시하여 북한이탈주민의 권익향상을 위해 노력함

Ⅳ. 개정의견

현 행	개정안	비고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북한이탈주민"이란 북한에 주소, 직계가족, 배우자, 직장 등을 두고 있는사람으로서 북한을 벗어난 후 외국의 국적을 취득하지 아니한 사람을 말한다. 2. 이하 생략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북한이탈주민"이란 북한에 주소, 직계가족, 배우자, 직장 등을 두고 있는 사람으로서 북한을 벗어난 후 외국의 국적을 취득하지 아니한 사람을 말한다. 2. 이하 현행과 같음	-띄어쓰기 정비 권고
제3조(책무) ① ~ ② 생략	제3조(도지사의 책무 등) ① ~ ② 현행과 같음	-제2항에서 실태조사를 규정하고 있으므로 제목을 "책무"→"도지사의 책무 등"으로 정비
제4조(지원 대상) 이 조례에 따른 지원 대상은 전북특별자치도(이하 "전북자치도"라 한다)의 관할구역 안에 거주하는 북한이탈주민 및 그 가정으로 한다.	제4조(지원 대상) 이 조례에 따른 지원 대상은 전북특별자치도(이하 "전북자치도"라 한다)의 관할구역 안에 거주하는 북한이탈주민 및 그 가정(이하 "북한이탈주민 등"이라 한다)으로 한다.	-제5조에서 "북한이탈주민 등"으로 약칭하여 사용하고 있으므로 제4조에서 이를 약칭하도록 정비 권고
제5조(지원 범위) ① 북한이탈주민 등에 대한 지원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 5. 생략 6. 북한이탈주민과 도민간의 교류 및 결연 사업 7. 법 제26조의3에 따른 소관 공공시설에 편의사업 또는 편의시설의 설치를 허가·위탁 시의 우선고려 8. 이하 생략	제5조(지원 범위) ① 북한이탈주민 등에 대한 지원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 5. 현행과 같음 6. 북한이탈주민과 전북자치도민 간의 교류 및 결연 사업 7.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제26조의3에 따른 소관 공공시설에 편의사업 또는 편의시설의 설치를 허가·위탁 시의 우선고려 8. 이하 현행과 같음	-제6호: 제4조에서 약칭한대로 "전북자치도민"으로 사용하도록 정비 권고 -제7호: 약칭하지 않은 상태에서는 법률제명을 그대로 사용하도록 정비 권고
제6조(전북특별자치도 북한이탈주민 지원 지역협의회 구성 등) ① ~ ② 생략 ③ 협의회의 당연직 위원은 행정부지사, 북한이탈주민 지원업무담당국장,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전북특별자치도지방경찰청·광주지방고용노동청전주지청의 북한이탈주민 지원부	제6조(전북특별자치도 북한이탈주민 지원 지역협의회 구성 등) ① ~ ② 현행과 같음 ③ 협의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 사항을 일목요연하게 정비(법제처, 2023년 우수조례 및 자치법규 입법컨설팅 사례집, 223면을 참고하여 재구성함)

현 행	개정안	비고
서책임자로 하며,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위촉한다. 1. <삭제 2016. 8. 12.> 2. 북한이탈주민 지원 분야의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3. 그 밖에 도의회가 추천한 사람 ④ 이하 생략	1. 당연직 위원: 행정부지사, 북한이탈주민 지원업무담당국장,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전북특별자치도지방경찰청·광주지방고용노동청전주지청의 북한이탈주민 지원부서책임자 2. 위촉직 위원: 다음 각 목의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위촉하는 사람 가. 북한이탈주민 지원 분야의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나. 전북특별자치도의회에서 추천하는 사람 다. 그 밖에 도지사가 북한이탈주민지원 지역협의회 위원으로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④ 이하 현행과 같음	
제8조(위원의 임기) 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차례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해당직위에 재임하는 동안으로 하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② 이하 생략	제8조(위원의 임기) 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위에 재임하는 동안으로 하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② 이하 현행과 같음	-연임 관련 문장 표현 정비 -"해당 직위에"로 띄어쓰기 정비 -조례문장 끝에는 마침표 작성하도록 정비
제10조(위원의 제척 및 회피) 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제척된다. 1. 위원이 심의 대상 용역과 관련된 자문, 연구 등을 수행하고 있거나 수행한 경우 2. 위원 본인 또는 위원의 배우자, 4촌 이내의 혈족, 2촌 이내의 인척이 용역을 수행할 경우 3. 제2호에 규정된 사람이 속한 기관·단체에서 용역을 수행할 경우 4. 위원이 최근 3년 이내에 심의 대상 용역과 관련된 기관·단체에서 재직한 경우 ② 생략	제10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제척된다. 1. 위원이나 그 배우자 또는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이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증언, 진술, 자문, 연구, 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② 현행과 같음	-제목을 각 항의 규정과 일치하게 표기하여야 함 -문장정비(법제처, 2023년 우수조례 및 자치법규 입법컨설팅 사례집, 147-148면.)

현 행	개정안	비고
③ 위원은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거나 본인에게 심사의 공정성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③ 위원은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제11조(회의) ① 생략 ② 협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열고,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생략 ④ 협의회의 회의는 반기 1회 이상 개최하여야 한다.	제11조(회의) ① 현행과 같음 ② 협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현행과 같음 ④ 협의회의 회의는 심의 또는 자문이 필요한 안건이 발생한 경우 개최한다.	-"개의"가 정확한 표기임(법제처, 2023년 우수조례 및 자치법규 입법컨설팅 사례집, 119면 등) -심층분석을 통해 개정 권고(협의회의 회의를 안건이 발생한 경우 개최하도록 정비 권고)
제13조(수당 등) 전북자치도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과 협의회에 출석한 전문가 및 관계인 등에게는「전북특별자치도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여비 및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3조(수당 등) 전북자치도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과 협의회에 출석한 전문가 및 관계인 등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여비 및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수당 및 여비에 관해 선언적인 의미만을 규정하면, 그에 따른 구체적인 사항은 당연히「전북특별자치도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적용 받으므로 규정의 실익이 없음(법제처, 2023년 우수조례 및 자치법규 입법컨설팅 사례집, 226면)
제14조(북한이탈주민 지원단체에 대한 지원) 도지사는 북한이탈주민 지원단체의 활동에 필요한 행정적 또는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고,「전북특별자치도 사회단체보조금 지원 조례」에 따라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14조(북한이탈주민 지원단체에 대한 지원) 도지사는 북한이탈주민 지원단체의 활동에 필요한 행정적 또는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재정지원에 관해 선언적인 의미만을 규정하면, 그에 따른 구체적인 사항은 당연히「전북특별자치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적용 받으므로 규정의 실익이 없음(법제처, 2023년 우수조례 및 자치법규 입법컨설팅 사례집, 107면)
제15조(업무의 위임 및 위탁) ① 도지사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전북특별자치도 사무위임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군수 또는 북한이탈주민 지원 단체에 업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위임하거나 위탁할	제15조(업무의 위임 및 위탁) ① 도지사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시장·군수 또는 북한이탈주민 지원단체에 업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위임하거나 위탁할 수 있다.	-업무위탁에 대한 선언적인 의미만을 규정하면, 그에 따른 구체적인 사항은 당연히「전북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를 적

현 행	개정안	비고
수 있다. ② 이하 생략	② 이하 현행과 같음	용 받으므로 규정의 실익이 없음(법제처, 2023년 우수조례 및 자치법규 입법컨설팅 사례집, 108면)
제16조(포상) ① 생략 ② 기타 포상에 필요한 절차 등은 「전북특별자치도 포상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16조(포상) ① 현행과 같음 ② <삭제>	-포상에 관해 선언적인 의미만을 규정하면, 그에 따른 구체적인 사항은 당연히 「전북특별자치도 포상 조례」를 적용 받으므로 규정의 실익이 없음(법제처, 2023년 우수조례 및 자치법규 입법컨설팅 사례집, 118면)
제1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삭제>	-시행규칙은 개별 조례에서 위임이 없더라도 조례의 집행에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규칙으로 규정할 수 있으므로 삭제 권고

심층분석 관련 검토

○ **심층분석 사유**

- 이 조례 제11조제4항에서 "협의회는 반기 1회 이상 개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2022년 1회, 2023년 1회로 조례의 규정과 달리 개최되고 있어 반기 1회 이상 개최되도록 협의회 개최를 권고할 필요가 있음. 또한 여성위원의 비율이 14%로 여성위원의 비율을 높이도록 향후 위원회 구성 시 고려할 필요가 있음. 실무상 협의회를 반기 1회 이상 개최하기 어려운 경우 조례 제11조제4항을 삭제하거나 필요시 개최하도록 규정을 정비하는 방안도 검토할 필요가 있음

○ **심층분석**

- 위원회의 운영에 어려움이 예상된다는 점에서 위원회 운영과 관련하여 이 조례 제11조제4항을 아래와 같이 개정하는 방안을 제안함

현 행	개정안	비고
제11조(회의) ① 위원장은 협의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② 협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열고,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장은 협의회의 업무수행을 위하여 관계공무원 또는 관계전문가를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계기관 또는 단체 등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④ 협의회의 회의는 반기 1회 이상 개최하여야 한다.	제11조(회의) ① 위원장은 협의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② 협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장은 협의회의 업무수행을 위하여 관계공무원 또는 관계전문가를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계기관 또는 단체 등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④ 협의회의 회의는 심의 또는 자문이 필요한 안건이 발생한 경우 개최한다.	-협의회의 회의를 안건이 발생한 경우 개최하도록 정비 권고

- 전북특별자치도의회에서 아래와 같은 검토의견을 제시함
  -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 조례 관련, 전북자치도와 전라남도 조례의 규정을 비교·분석 했을 때, 전북자치도의 규정이 더 구체적이고 세분화된 것으로 사료됨
  - 현재 이 조례와 동일한 제명의 조례는 전북자치도, 대구, 서울, 부산, 경남, 경북, 전남, 서울 등으로 모두 동일·유사한 내용을 규정하고 있음. 다만, 전북자치도 규정 일부 조문의 제목을 수정하여야 함(제3조(책무) → 제3조(도지사의 책무), 제10조(위원장) → 제10조(위원장의 직무)
  - 한편, 경기도 조례 제5조의2(공무원 특별채용), 제5조의3(공공부문 일자리 창출)을 둠으로서 각각 북한이탈주민을 공무원으로 우선 특별채용할 수 있으며, 공공

부문 일자리의 경우도 배려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 경기도 조례의 관련 규정은 아래와 같음

제5조의2(공무원 특별채용) ① 도지사는 북한이탈주민을 공무원 인사 관계 법령에 따라 우선적으로 특별채용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해당 특별채용에 부과되는 필기시험을 면제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북한이탈주민이 100명이상 거주하는 시·군에서는 적어도 1명 이상의 북한이탈주민을 고용하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의3(공공부문 일자리 창출) 도지사는 북한이탈주민 공공부문 일자리 제공을 위하여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호대상자의 신청이 있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경우 우선적으로 고려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1. 도가 수의계약에 의하여 소관 공공시설에 편의사업 또는 편의시설의 설치를 허가하거나 위탁하는 경우 2. 도가 출자·출연한 기관에 능력과 적성에 맞는 노동자를 고용하는 경우

- 그러나 이는 전북자치도민에 대한 또 다른 차별이 될 수 있고, 북한이탈주민과 전북자치도민의 갈등을 유발할 수 있으니 관련 규정의 도입은 충분한 논의와 사회적 협의를 전제로 한다는 점에서 중장기적으로 도입을 검토할 수는 있으나 현 시점에서는 신중한 접근이 필요함

□ 참고자료 1 – 위원회 관련 실적

○ 구성

구분	정원	현원	당연직	위촉직	
				남	여
위원수(명)	15	15	5	8	2
비 율(%)	-	-	33%	53%	14%

○ 개최 실적

연도별	2022	2023	2024
개최건수	1	1	0
개최일	4. 22.	12월(서면)	-
소요예산	7,000	7,000	3,200

□ 참고자료 2 – 조례 관련 보도 자료

○ 보도자료 1

전북자치도, '북한이탈주민의 날' 제정 첫 기념행사 진행, 시사타임즈[8)]

전북자치도, '북한이탈주민의 날' 제정 첫 기념행사 진행

2024.07.15 11:12 입력

[시사타임즈 = 김진규 기자] 전북특별자치도가 13일 도내 거주하는 북한이탈주민과 거주지보호관, 신변보호관, 정착 도우미 등 200여 명이 함께하는 '제1회 북한이탈주민의 날' 행사를 개최했다.



▲북한이탈주민의 날 기념행사 (사진제공 – 전북특별자치도) (c)시사타임즈

'북한이탈주민의 날'은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 지원에 관한 법률이 시행된 날(1997년 7월 14일)로 북한이탈주민의 포용과 정착 지원을 위해 올해 5월 국가 기념일로 공식 지정됐다.

전주교육대학교 체육관에서 열린 행사는 1, 2부로 나뉘어 진행됐다.

1부 행사는 전북하나센터 주관으로 탈북민 가수 장미옥씨가 사회를 보며 남북예술단 특별공연, '제1회 북한이탈주민의 날' 선포식, 합창 등 축하공연이 진행됐다.

8) http://timesisa.com/news/view.html?section=93&category=94&item=&no=41376

○ **보도자료 2**

전북자치도, 제7회 통일염원 이북도민·북한이탈주민 고향만남의 날 개최, 전북일보[9)]

> 도내 실향민과 북한이탈주민 등 500여 명 한자리
> 이북5도민 유공자 표창, 함북명예도민증 수여



2일 전북특별자치도청 야외 공연장에서 열린 '제7회 통일염원 이북도민·북한이탈주민 전북 고향만남의 날' 행사에 김관영 전북특별자치도지사를 비롯해 지성호 함경북도지사, 문승우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의장, 황해도 실향민 2세이자 전북 이북5도연합회 명예회장으로 활동 중인 김 지사의 배우자 목영숙 여사 등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사진=전북자치도 제공.

전북특별자치도는 지난 2일 청사 야외 공연장에서 '제7회 통일염원 이북도민·북한이탈주민 전북 고향만남의 날' 행사를 개최했다.

올해로 7회째를 맞은 이번 행사는 이북 실향민과 북한이탈주민이 한자리에 모여 고향의 애틋한 정과 평화 통일에 대한 염원을 자리로 마련됐다.

이날 행사에는 김관영 도지사와 지성호 함경북도지사, 문승우 전북도의회 의장을 비롯해 황해도 실향민 2세이자 전북 이북5도연합회 명예회장인 목영숙 여사와 북한이탈주민, 도민 등 500여 명이 참석했다.

행사는 전북자치도립국악원 무용단의 '동이놀이'를 시작으로 이북5도민 및 북한이탈주민 사회의 화합에 기여한 40명에게 유공도민 기관장 표창과 함북명예도민증 시상 순으로 진행됐다.

김 지사는 "남북관계가 어렵더라도 이북도민과 북한이탈주민이 고향을 그리며 함께 모여 서로를 격려하는 이 시간은 한반도의 평화를 염원하는 상징적인 의미를 가진다"며 앞으로도 이북도민과 북한이탈주민들이 전북의 따뜻한 가족으로서 안정적인 삶을 이어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전북자치도는 도청 내에 '이북5도 전북특별자치도사무소'를 운영하며 도내 이북5도민과 북한이탈주민을 위한 민원상담 및 지원 업무를 제공하고 있다. 도내 북한이탈주민의 정기적인 만남과 행사를 지속적으로 마련해 이들의 정착을 지원하고 있다.

9) https://www.jjan.kr/article/20241103580091

붙임 1 사업 관련 추진실적

□ 연도별 사업 및 예산 집행 실적

○ 최근 3년간 실적(조례 제4조) (금액단위: 천원)

연도	사업명	필요예산	확보예산	집행액	집행내역
2022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	18,000	18,000	18,000	전북하나센터 교부
	이북5도·북한이탈주민 고향 만남의 날 개최	25,000	25,000	25,000	이북5도사무소 교부
2023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	28,000	28,000	28,000	전북하나센터 교부
	이북5도·북한이탈주민 고향 만남의 날 개최	25,000	25,000	25,000	이북5도사무소 교부
2024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	28,000	28,000	28,000	전북하나센터 교부
	이북5도·북한이탈주민 고향 만남의 날 개최	25,000	25,000	-	(하반기 집행 예정)

붙임 2 평가대상 조례

전북특별자치도 북한이탈주민의 정착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 2024. 1. 18.] [전북특별자치도조례 제5399호, 2023. 12. 8., 일부개정]

전북특별자치도(자치행정과), 063-280-3474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전북특별자치도에 거주하는 북한이탈주민들이 지역사회의 일원으로서 성공적으로 적응하여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3. 12. 8.>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북한이탈주민”이란 북한에 주소, 직계가족, 배우자, 직장 등을 두고 있는사람으로서 북한을 벗어난 후 외국의 국적을 취득하지 아니한 사람을 말한다.
2. “북한이탈주민 가정”이란 국내에 주소나 거소를 두고 있는 북한이탈주민과 혼인·입양·혈연관계 등으로 친족관계를 이루어 생계나 주거를 함께하는 공동체를 말한다.
3. “북한이탈주민 지원 단체”란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지원을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법인, 기관 또는 단체를 말한다.

제3조(책무)

① 전북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북한이탈주민이 지역공동체의 구성원으로서 지역사회에 조기에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지역주민과 함께 살아갈 수 있는 여건 형성을 위한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개정 2023. 12. 8.>

② 도지사는 북한이탈주민의 수, 생활수준 등 지원시책 추진에 필요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제4조(지원 대상) 이 조례에 따른 지원 대상은 전북특별자치도(이하 “전북자치도”라 한다)의 관할구역 안에 거주하는 북한이탈주민 및 그 가정으로 한다.<개정 2023. 12. 8.>

제5조(지원 범위)

① 북한이탈주민 등에 대한 지원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언어·기초학력 및 사회적응 교육
2. 고충·생활·법률 등의 상담과 취업 지원
3. 응급 구호 및 보건의료 지원
4. 북한이탈주민을 위한 문화·체육행사 개최
5.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인식을 개선할 수 있는 사업
6. 북한이탈주민과 도민간의 교류 및 결연 사업
7. 법 제26조의3에 따른 소관 공공시설에 편의사업 또는 편의시설의 설치를 허가·위탁 시의 우선고려<신설 2015. 10. 30>
8. 그 밖에 북한이탈주민의 지역사회 적응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등<개정 2015. 10. 30>

② 도지사는 제1항의 각 호와 관련된 사업의 수행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6조(전북특별자치도 북한이탈주민지원 지역협의회 구성 등)

① 도지사는 제3조에 따른 북한이탈주민 지원시책에 관한 사항을 심의·자문하기 위하여 전북특별자

치도 북한이탈주민지원 지역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개정 2023. 12. 8.>

② 협의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협의회의 당연직 위원은 행정부지사, 북한이탈주민 지원업무담당국장,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전북특별자치도지방경찰청·광주지방고용노동청전주지청의 북한이탈주민 지원부서책임자로 하며,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위촉한다.

><개정 2014. 10. 22, 2016. 8. 12., 2023. 12. 8.>

2. 북한이탈주민 지원 분야의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3. 그 밖에 도의회가 추천한 사람

④ 위원장은 행정부지사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⑤ 협의회의 운영을 위하여 간사를 두되, 간사는 북한이탈주민 업무담당 사무관으로 한다.

제7조(협의회의 기능)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자문한다.

1. 북한이탈주민과 가정에 대한 취업 및 생활지원에 관한 사항
2. 북한이탈주민의 사회적응 프로그램의 운영에 관한 사항
3. 북한이탈주민의 정착지원을 위한 민·관 협력방안에 관한 사항
4.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인식개선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북한이탈주민의 정착지원과 관련하여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8조(위원의 임기)

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차례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해당직위에 재임하는 동안으로 하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② 도지사 또는 위원장은 위원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되거나 그 직무상 의무를 위반하는 등 위원으로서 자격유지가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그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제9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① 제6조 제1항에 따른 협의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상 안건의 심의·자문업무에서 제척된다.

1. 해당업체의 용역·자문·연구 또는 그 밖의 방법으로 직접 관여한 경우
2. 최근 3년 이내에 해당업체에 임원 또는 직원으로 재직한 경우
3. 그 밖에 심의 안건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를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기피신청을 할 수 있다.

③ 위원은 제1항 또는 제2항의 사유에 해당하면 스스로 그 안건의 심의를 회피하여야 한다.

제10조(위원장)

① 위원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협의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1조(회의)

① 위원장은 협의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② 협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열고,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장은 협의회의 업무수행을 위하여 관계공무원 또는 관계전문가를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계기관 또는 단체 등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④ 협의회의 회의는 반기 1회 이상 개최하여야 한다.

제12조(비밀엄수의무 등) 협의회의 위원은 회의 및 사업수행에 따라 알게 된 북한이탈주민과 관련한

제반 정보에 대해서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제13조(수당 등) 전북자치도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과 협의회에 출석한 전문가 및 관계인 등에게는 「전북특별자치도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여비 및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15. 5. 1., 2023. 12. 8.>

제14조(북한이탈주민 지원단체에 대한 지원) 도지사는 북한이탈주민 지원단체의 활동에 필요한 행정적 또는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고, 「전북특별자치도 사회단체보조금 지원 조례」에 따라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다.<개정 2023. 12. 8.>

제15조(업무의 위임 및 위탁)

① 도지사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전북특별자치도 사무위임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군수 또는 북한이탈주민 지원 단체에 업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위임하거나 위탁할 수 있다.<개정 2023. 12. 8.>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소관업무를 위임·위탁하는 경우에 시장·군수 또는 수탁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비 등을 지원할 수 있다.

③ 도지사는 시장·군수 또는 북한이탈주민 지원 단체에 업무를 위임·위탁하여 운영하는 경우에 관계 공무원에게 위임·위탁업무 및 운영비 등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기 또는 수시로 점검하고 지도하게 할 수 있다.

제16조(포상)

① 도지사는 북한이탈주민의 지역사회 정착에 기여한 공로가 크다고 인정되는 개인, 법인이나 단체에 포상할 수 있다.

② 기타 포상에 필요한 절차 등은 「전북특별자치도 포상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개정 2023. 12. 8.>

제1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04. 전북특별자치도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조례

Ⅰ. 종합의견

< 평가결과 >

□ 평가대상

조 례 명	전북특별자치도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조례		
조례 구분	개별 법률 위임	관계 법령	「지방자치법」 제159조
제정·시행일	2007. 12. 28. 제정	최근개정·시행일	2023. 12. 8. 개정
소관 부서	자치행정과	소관 상임위	기획행정

□ 평가의견

평가항목	평가의견	주요 내용
종합의견	개정/일반	- 법제처 자치법규 입안기준에 따른 정비(용어 수정 등) 검토 - 시행규칙은 개별 조례에서 위임이 없더라도 조례의 집행에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규칙으로 규정할 수 있으므로 삭제 권고 - 남북교류 사무가 자치행정과로 이관되며 남북교류, 평화통일 관련 사무가 일원화됨에 따라 위원회 사무를 추가하도록 개정 권고
심층분석 결과		- 이 조례에서 남북협력기금을 조성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다만, 남북관계 경색으로 인하여 현재 남북협력기금의 사용이 어려운 실정을 반영하여 기금을 폐지하고 일반회계로 전환하는 등 현안사업에 기금을 사용하여야 한다는 논의가 확대됨에 따라 타 시·도의 사례를 검토하여 시사점을 확인할 필요가 있음 - 현재 남북관계가 경색되어 있는 실정이나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5조에서 규정하고 있는바와 같이 기금 설치의 목적 달성이 불가능하다고 보기에는 어려움이 있음. 최근 미 대선에서 트럼프의 당선으로 남북관계의 전환이 예상되는 시점이라는 점에서 일반회계로 통합하도록 검토하기에 바람직한 시점은 아니라고 판단됨 - 차후 중장기적으로 남북관계의 경색이 계속되고 이와 관련된 전북자치도 내의 논의가 성숙되면 다시 검토할 수 있을 것임. 이 조례 유지 권고
1. 입법 근거 및 적법성	적정	상위법의 위임 범위에서 자치사무를 적절하게 규정하고 있음

2. 조례의 실효성	적정	조례 제3조에 따른 기금조성, 제8조의 위원회 설치 등을 이행함으로써 조례의 실효성을 확보하고 있음
3. 조례 내용의 적정성	개정	남북관계 경색으로 인해 조례에서 규정하고 있는 지원이 적절하게 이루어지고 있지는 않음
4. 조례의 공평성	적정	장애, 성별, 나이 등에 관한 사회적 편견, 고정관념이 반영된 표현이 없음
5. 주민 수용성	적정	조례의 체계 및 용어가 주민이 알기 쉽게 되어 있음
6. 전북자치도 현실 부합성	적정	전북특별자치도 주관으로 시행되는 남북교류협력 사업을 지원하고 시행하기 위하여 제정된 본 조례는 행정수요를 반영하고 있어 전북자치도 현실에 부합함
7. 위원회 운영의 적정성	적정	위원회가 규정대로 설치되었고 활발히 운영되고 있어 위원회의 운영이 적절한 것으로 평가됨
※ 기타 의견	없음	

Ⅱ. 항목별 평가 결과

평가항목	세부항목	척도	의견 및 자료
1. 입법의 근거 및 적법성	1) 위임조례인가 자치사무에 관한 조례인가?	☑ 위임조례 ☐ 자치사무에 관한 조례	-「지방자치법」 제159조
	2) 조례에서 규정하고 있는 위임근거가 올바른가?	☑ 그렇다 ☐ 그렇지않다 ☐ 해당사항 없음	
	3) 조례가 위임범위에서 적절하게 제·개정되었는가?	☑ 그렇다 ☐ 그렇지않다 ☐ 해당사항 없음	
	4) 조례 제.개정 이후 동일 또는 유사한 법령이나 제도가 만들어졌거나 근거법령이 개정 또는 폐지되었는가?	☑ 그렇다 ☐ 그렇지않다 ☐ 해당사항 없음	-관련 사무부처 이관
	5) 조례에서 주민의 권리제한, 의무부과, 벌칙 부과, 규제사항에 대한 법률위임이 있는가?	☐ 그렇다 ☑ 그렇지않다 ☐ 해당사항 없음	
	6) 상위법령에 위배되는 조항이 있는가?	☐ 그렇다 ☑ 그렇지않다 ☐ 해당사항 없음	
2. 조례의 실효성	1) 조례의 시행과정에서 다른 조례와의 충돌이나 모순이 발생하고 있는가?	☐ 그렇다 ☑ 그렇지않다 ☐ 해당사항 없음	
	2) 이 조례와 유사 또는 동일한 다른 조례가 제정 및 시행되고 있어 통합할 필요가 있는가?	☐ 그렇다 ☑ 그렇지않다 ☐ 해당사항 없음	
	3) 조례에 따른 계획이 수립·시행되고 있는가?	☐ 그렇다 ☐ 그렇지않다 ☑ 해당사항 없음	
	4) 조례에서 집행기관 등에 책무를 부여하고 있는가?	☐ 그렇다 ☐ 그렇지않다 ☑ 해당사항 없음	

평가항목	세부항목	척도	의견 및 자료
	5) 조례에서 부여한 책무와 관련사업을 집행기관이 잘 이행하고 있는가?	□ 그렇다 □ 그렇지않다 ☑ 해당사항 없음	
3. 조례 내용의 적정성	1) 조례에 재정지원 관련 규정이 있는가?	☑ 그렇다 □ 그렇지않다 □ 해당사항 없음	-제4조(용도)
	2) 조례 시행에 필요한 예산 확보와 집행이 잘 이루어지고 있는가?	☑ 그렇다 □ 그렇지않다 □ 해당사항 없음	
	3) 지원대상이 집행이 가능한 정도로 구체화 되어 있는가?	□ 그렇다 □ 그렇지않다 ☑ 해당사항 없음	
	4) 조례에 따른 위탁사무가 위탁대상으로 적정한가?	□ 그렇다 □ 그렇지않다 ☑ 해당사항 없음	
4. 조례의 공평성	1) 조례에서 장애인, 성별 등의 특정계층이나 특정지역을 차별하는 조항이 있는가?	□ 그렇다 ☑ 그렇지않다 □ 해당사항 없음	
	2) 조례에서 정한 차별이 합리적인가?	□ 그렇다 ☑ 그렇지않다 □ 해당사항 없음	
5. 주민 의견 수용성	1) 조례 제·개정 시 입법예고는 하였는가?	☑ 그렇다 □ 그렇지않다 □ 해당사항 없음	
	2) 조례 제·개정 시 공청회, 세미나 등 이해관계인 및 주민에 대한 의견 수렴 과정이 있었는가?	□ 그렇다 ☑ 그렇지않다 □ 해당사항 없음	
	3) 조례와 관련한 민원(청원, 진정, 소송 등)이 제기되거나 개정 또는 폐지 요구가 있었는가?	□ 그렇다 ☑ 그렇지않다 □ 해당사항 없음	
	4) 조례의 체계나 사용 되어진 용어가 주민이 알기 쉽게 되어 있는가?	☑ 그렇다 □ 그렇지않다 □ 해당사항 없음	
6. 위원회 운영의 적정성	1) 조례로 위원회를 구성하도록 되어 있는가?	☑ 그렇다 □ 그렇지않다 □ 해당사항 없음	

평가항목	세부항목	척도	의견 및 자료
	2) 위원회가 법정위원회인가 조례로 설치하도록 한 위원회인가?	□ 법정위원회 ☑ 조례로 정한 위원회 □ 해당사항 없음	
	3) 위원회 위원의 성별 구성이 적정한가?	☑ 그렇다 □ 그렇지않다 □ 해당사항 없음	-위촉직 남8, 여6
	4) 위원회가 법령이나 조례에서 정한 회의개최 운영 실적이 있고 관련 회의록을 보존하고 있는가?	☑ 그렇다 □ 그렇지않다 □ 해당사항 없음	
	5) 위원회를 계속 설치·운영할 필요성이 있는가?	☑ 그렇다 □ 그렇지않다 □ 해당사항 없음	
	6) 해당 위원회와 유사한 다른 위원회와의 기능적 통합이 필요한가?	□ 그렇다 ☑ 그렇지않다 □ 해당사항 없음	
7. 종합 의견	1) 이 조례를 현행대로 유지할 필요가 있는가?	☑ 그렇다 □ 그렇지않다	
	2) 이 조례를 개정할 이유가 있는가? (해당사항 모두 표기)	□ 위임근거에 불부합 □ 위임근거 불명확 □ 법령의 위임 없는 규제 정비 필요 □ 다른 조례와의 상충 및 모순 □ 조례 시행의 문제점 발생 □ 조례의 공평성 문제 ☑ 알기 쉬운 법령정비 기준에 따른 정비 필요 ☑ 위원회 관련 규정개정 필요 □ 그 밖의 사유	
	3) 이 조례를 폐지할 사유가 있는가? (해당사항 모두 표기)	□ 다른 유사한 조례와의 통합 운영 필요성 □ 조례 시행 불가능 □ 최근 3년간 조례 관련 운영 실적 전무 □ 기타	
	4) 그 밖의 이 조례와 관련된 의견이 있는가?	□ 있다 □ 없다	

Ⅲ. 세부내용

조례명	전북특별자치도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조례

■ 소관 부서 의견(팀)

○ **최종의견 : (8-1) 남북교류협력기금 운용을 위해 조례의 유지가 필요함**

○ **내용**

- (2-5) 조례 제16조에 따라 실무기획단을 둘 수 있으나, 운영실적은 없음. 2008년도부터 조성하여 2022년도까지 기금 집행실적이 없어 실질적으로 남북교류사업 추진을 위한 실무기획단의 필요성이 부족함
- (3-2) 조례 제4조와 시행규칙 제3조에 따라 지원대상과 범위가 규정됨
- (6-1) 2022년도까지 기금 집행실적이 없고, 남북관계 경색 등에 따라 남북이 공동으로 행하는 대북사업 추진이 어려움
- (7-1) 조례 제8조에 따라 전북특별자치도 남북교류협력위원회를 설치함
- (7-3) 위원회 위원 20인 중 여성 비율이 37%임
- (7-4) 조례 내용에 따라 위원회를 2022년 5,000천원을 소요하여 서면으로 2회(2월, 11월), 2023년 5,000천원을 소요하여 서면으로 2회(2월, 10월), 2024년에는 3,000천원을 확보하여 서면으로 1회(2월) 개최함
- (7-5) 남북교류협력의 촉진을 위한 협의 및 자문과 남북교류협력기금 운용 및 관리 사항 등을 위한 심의·의결 기구가 필요하여 위원회를 유지해야 함
- (8-2) 위원회 관련 규정의 개정이 필요하고, 2024. 7. 남북교류 사무가 자치행정과로 이관되며 남북교류, 평화통일 관련 사무가 일원화 됨. 「전북특별자치도 평화통일교육 활성화 지원 조례」에 따르면 평화통일교육위원회를 두도록 하였지만 위원회 구성 운영하고 있지 않은 상황으로, 남북교류협력위원회가 평화통일교육위원회의 기능을 함께 할 수 있도록 개정이 필요함

■ 종합의견	개정 권고/일반 정비

◎ 입법평가 세부의견

○ **평가항목별 검토**

평가항목	평가항목별 검토 내용
1. 입법 근거 및 적법성	상위법의 위임 범위에서 자치사무를 적절하게 규정하고 있음
2. 조례의 실효성	조례 제3조에 따른 기금조성, 제8조의 위원회 설치 등을 이행함으로써 조례의 실효성을 확보하고 있음

3. 조례 내용의 적정성	남북관계 경색으로 인해 조례에서 규정하고 있는 지원이 적절하게 이루어지고 있지는 않음
4. 조례의 공평성	장애, 성별, 나이 등에 관한 사회적 편견, 고정관념이 반영된 표현이 없음
5. 주민 수용성	조례의 체계 및 용어가 주민이 알기 쉽게 되어 있음
6. 전북자치도 현실부합성	전북특별자치도 주관으로 시행되는 남북교류협력 사업을 지원하고 시행하기 위하여 제정된 본 조례는 행정수요를 반영하고 있어 전북자치도 현실에 부합함
7. 위원회 운영의 적정성	위원회가 규정대로 설치되었고 활발히 운영되고 있어 위원회의 운영이 적절한 것으로 평가됨
※ 기타 의견	없음

○ 연도별 사업내용 및 예산/집행액

(단위: 천원)

연도	사업명	필요예산	확보예산	집행액	집행내역
2022	민간단체 인도적 대북사업 및 남북교류사업	30,000	30,000	0	
	전라북도 남북교류협력사업	50,000	50,000	0	
	시군 남북교류협력사업	20,000	20,000	0	
2023	2030 미래세대 중심의 남북교류협력 인식개선 사업	50,000	50,000	31,920	대학생 등 DMZ 평화의길 시찰 프로그램
	민간단체 인도적 대북사업 및 남북교류사업	10,000	10,000	0	
	전라북도 남북교류협력사업	20,000	20,000	0	
	시군 남북교류협력사업	20,000	20,000	0	
2024	2030 미래세대 중심의 남북교류협력 인식개선 사업	40,000	40,000	0	(사업 추진중)

○ 조례의 입법목적 달성도 또는 부수효과 분석

- 조례 목적달성도 평가
  - 전북특별자치도와 군사분계선 이북지역간의 상호교류와 협력을 촉진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양 지역 간 교류협력을 활성화하여 한반도의 평화와 통일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함
- 부수효과
  - 위임 범위에서 적절하게 규정하고 있음

○ 타 시·도 유사 조례와 비교 또는 타 시·도 자치법규(정책) 동향

전북특별자치도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조례	경기도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조례	제주특별자치도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조례	서울특별시 남북교류협력 및 평화통일기반조성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제2조(시장의 책무)
제3조(조성)	제3조(도지사의 책무)	제3조(책무 등)	제3조(기금의 설치 및 재원 조성)
제4조(용도)	제4조(기금의 설치 및 조성)	제4조(위탁관리)	제3조의2(기금의 존속기한)
제5조(관리·운용)	제5조(기금의 용도)	제4조의2(남북교류협력 활성화를 위한 지원)	제4조(기금의 용도)
제6조(회계공무원)	제6조(기금의 운용·관리)	제5조(남북교류협력위원회 설치)	제5조(기금의 운용·관리)
제7조(보고 등)	제7조(회계공무원)	제6조(위원회의 기능)	제6조(기금의 회계공무원)
제8조(설치)	제8조(업무 위탁 및 재정지원)	제7조(위원회 구성)	제7조(보고 및 환수)
제9조(기능)	제9조(보고 등)	제8조(임기)	제8조(평화통일기반조성위원회의 설치)
제10조(구성 등)	제10조(분배의 투명성 확보)	제9조(위원장의 직무)	제9조(위원회 구성 등)
제11조(임기)	제11조(위원회의 설치)	제10조(회의)	제10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등)
제12조(위원회의 운영)	제12조(위원회의 기능)	제11조(실무위원회)	제11조(수당 등)
제13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등)	제13조(위원회의 구성 등)	제12조(간사)	제12조(보조금 지원 및 사업 위탁)
제14조(위원의 해촉)	제14조(위원의 임기)	제13조(관계 기관 등에의 협조요청 등)	**제13조(민간인 국외여비 지원)**
제15조(수당 등)	제15조(위원회의 운영)	제14조(공청회 등의 개최)	제14조(규칙)
제16조(실무기획단)	제16조(위원회 수당 등)	제15조(수당 등)	
제17조(업무위탁 및 재정지원)	제17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등)	제16조(운영세칙)	
제18조(시행규칙)	제18조(위원의 위촉 해제)	**제17조(기금의 설치)**	
	제19조(남북교류 협력사업 추진단)	**제18조(기금의 조성)**	
	제20조(대학 등 학과의 설치장려)	**제19조(기금의 용도)**	
	제21조(시행규칙)	**제20조(환수)**	
		제21조(기금의 관리·운용)	
		제22조(기금운용심의위원회)	
		제23조(준용)	
		제24조(회계공무원 지정)	
		제25조(시행규칙)	

- 경기도 조례에서는 경기도 내에 소재하는 대학에 남북교류협력과 관련된 학과의 설치를 장려할 수 있다는 규정이 존재함
- 제주특별자치도 조례에서는 기금 운용에 관한 사항을 상세하게 규정하고 있음
- 서울특별시 조례에서는 시장이 남북교류협력 및 평화통일기반조성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전문가 등 민간인에게 국외여비를 지원할 수 있는 규정이 존재함

Ⅳ. 개정의견

현 행	개정안	비고
제1장 총칙	<삭제>	-장(章) 삭제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전북특별자치도와 군사분계선 이북지역간의 상호 교류와 협력을 촉진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양 지역 간 교류협력을 활성화하여 한반도의 평화와 통일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전북특별자치도와 군사분계선 이북지역 간의 교류협력을 증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한반도의 평화와 통일 기반조성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띄어쓰기 정비 권고 -목적조항의 규정형식에 맞게 문장 표현 정비 권고
제2장 남북교류협력기금	<삭제>	-장(章) 삭제
제5조(관리·운용) ① 제3조에 따른 기금은 「전북특별자치도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에 따라 관리한다. ② 기금의 운용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는 전북특별자치도 남북교류협력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1. 기금운용계획 수립 2. 기금운용계획의 변경 3. 기금결산보고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관리·운용) ① 기금은 「전북특별자치도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에 따라 관리한다. ② 기금의 운용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는 전북특별자치도 남북교류협력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1. 기금운용계획 수립 2. 기금운용계획의 변경 3. 기금결산보고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도지사가 기금의 관리·운용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약칭한 사항은 조문표기 없이 표기함(이미 제3조에서 "기금"으로 약칭하였음) -문장정비
제7조(보고 등) ① 생략 ② 도지사는 기금지원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한다고 확인된 때에는 기한을 정하여 기금지원기관에 지원한 기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기금을 환수하고 향후 5년간 기금의 교부대상에서 제외한다. 1. 거짓 또는 부당한 방법으로 기금을 교부받은 경우 2. 이 조례에서 규정한 기금의 용도를 위배하여 기금을 사용하거나 전용한 경우 3. 기금 교부 목적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정지하였을 경우	제7조(보고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도지사는 기금지원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한다고 확인된 때에는 기한을 정하여 기금지원기관에 지원한 기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기금을 환수하고 앞으로 5년간 기금의 교부대상에서 제외한다. 1. 거짓 또는 부당한 방법으로 기금을 교부받은 경우 2. 제4조에 따른 기금의 용도를 위배하여 기금을 사용하거나 전용한 경우 3. 기금 교부 목적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정지되었을 경우	-법조문장으로 정비(법제처, 2023년 우수조례 및 자치법규 입법컨설팅 사례집, 184면) -정확한 출처표기

현 행	개정안	비고
4. 그 밖에 기금교부 사업과 관련 도의 시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거부, 거짓보고 등 사업을 성실히 수행하지 않는다고 인정되는 경우	4. 그 밖에 기금교부 사업과 관련 도의 시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거부, 거짓보고 등 사업을 성실히 수행하지 않는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3장 전북특별자치도 남북교류협력위원회	<삭제>	-장(章) 삭제
제8조(회의)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일시, 장소 및 안건을 집회 3일전까지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제8조(회의)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려면 회의 개최 3일 전까지 회의 일시, 장소, 및 안건 등을 위원에게 통지해야 한다. 다만, 회의를 긴급히 소집할 필요가 있거나 불가항력적인 사유 등으로 인하여 부득이 한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개의"가 정확한 표기임(법제처, 2023년 우수조례 및 자치법규 입법컨설팅 사례집, 119면 등) -회의소집 관련 법조문장으로 정비(법제처, 2023년 우수조례 및 자치법규 입법컨설팅 사례집, 95면 등)
제9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하고, 도지사의 자문에 응한다. 1. ~ 4. 생략 <신설> 5.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9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하고, 도지사의 자문에 응한다. 1. ~ 4. 현행과 같음 5. 「전북특별자치도 평화통일교육 활성화 지원 조례」에 따른 평화통일교육위원회 업무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구성되지 않은 「전북특별자치도 평화통일교육 활성화 지원 조례」의 평화통일교육위원회 업무 대행, 해당 조례의 관련 내용도 개정 필요(제11조(회의) 제5항 추가: 위원회 업무를 「전북특별자치도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조례」에 따른 '전북특별자치도 남북교류협력위원회'가 대행할 수 있다.
제11조(임기) 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임명직 위원의 임기는 당해 직위의 재직기간으로 하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11조(임기) 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임명직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위의 재직기간으로 하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띄어쓰기 정비, 알기 쉬운 법령정비기준에 따른 용어 정비 -"전임자"를 "전임위원"으로 정비
제13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등) ① 위원은 기금의 운용·관리와 관련한 심의·의결의 공정성을 도모하기 위하여 자기와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의결에는 관여할 수 없다.	제13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등) 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제척된다. 1. 위원이나 그 배우자 또는 배우자였	-위원의 전형적 인 제척·기피·회피 사유로 문장정비(법제처, 2023년 우수조례 및 자치법규 입법컨설팅 사례집, 14

현 행	개정안	비고
② 위원은 제1항에 따른 제척사유가 있거나 심의·의결의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유가 있는 경우 관계인의 신청에 따라 심의·의결에서 제외될 수 있다.	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이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증언, 진술, 자문, 연구, 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② 당사자는 제1항에 따른 제척사유가 있거나 그 밖에 위원에게 공정한 심사를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은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7-148면.)
제4장 남북교류협력 활성화 사업 지원	<삭제>	-장(章) 삭제
제17조(업무위탁 및 재정지원) ① 도지사는 남북교류협력 증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제4조에 따른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전문성을 갖춘 법인·단체에 위탁하거나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1. 남북교류 및 협력에 관한 홍보물 제작·활용 등 홍보사업 2. 남북교류 및 협력을 위한 행사지원(기념행사, 박람회, 문화행사 등)	제17조(업무위탁 및 재정지원) ① 도지사는 남북교류협력 증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제4조에 따른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전문성을 갖춘 법인·단체 등에 위탁하거나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1. 남북교류 및 협력에 관한 홍보물 제작·활용 등 홍보사업 2. 남북교류 및 협력을 위한 행사지원(기념행사, 박람회, 문화행사 등을 포함한다)	-제목과 내용이 일치 -원칙적으로 괄호안의 문장은 완성형이어야 함(법제처, 2023년 우수조례 및 자치법규 입법컨설팅 사례집, 89면.)
제1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삭제>	-시행규칙은 개별 조례에서 위임이 없더라도 조례의 집행에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규칙으로 규정할 수 있으므로 삭제 권고

심층분석 관련 검토

○ 심층분석 사유

- 이 조례에서 남북협력기금을 조성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다만, 남북관계 경색으로 인하여 현재 남북협력기금의 사용이 어려운 실정을 반영하여 기금을 폐지하고 일반회계로 전환하는 등 현안사업에 기금을 사용하여야 한다는 논의가 확대됨에 따라 타 시·도의 사례를 검토하여 시사점을 확인할 필요가 있음

○ 심층분석

- 남북협력기금 조례를 개정하여 남북협력기금을 폐지한 타 시·도 사례 분석
  - 남북교류협력 조례를 폐지한 시·도는 아래와 같음

지자체명	폐지 관련 주요 내용
울산광역시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조례 [시행 2023. 1. 1.] [울산광역시조례 제2680호, 2022. 12. 29., 폐지]	부 칙 (폐지 2022. 12. 29. 조례 제2680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울산광역시 남북교류협력기금의 폐지에 관한 경과조치) ① 종전의 규정에 따른 울산광역시 남북교류협력기금에 속하는 자산과 채권·채무 및 그 밖의 권리는 일반회계가 이를 포괄 승계한다. ② 이 조례 시행으로 인하여 폐지되는 종전의 울산광역시 남북교류협력기금의 2022회계연도 결산에 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대구광역시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조례 [시행 2024. 9. 20.] [대구광역시조례 제6180호, 2024. 9. 20., 폐지]	○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제24조의2(2020.12.8.일부개정)에서 지방자치단체가 남북교류협력 사업의 주체임을 명시함. ○ 남북교류협력기금을 폐지하고 남북교류협력위원회를 비상설화 하는 내용의 개정(2022.10.11.) 이후 위원회가 한 차례도 구성되지 않는 등 사실상 조례의 실효성을 상실했으며, 그 외 조례의 내용 또한 존치의 실익이 없음.

  - 대구광역시의회가 지자체 차원의 통일사업 근거가 되는 '남북교류협력' 조례를 결국 폐지하였으며, 전국 17개 시·도 중 해당 조례를 폐지한 곳은 대구광역시와 울산광역시 2곳 임. 관련하여 세종시의 경우 지난해 조례를 폐지해 기금을 일반회계로 전환하는 방안이 추진됐으나 시의회에서 부결된 바 있음[10)]

- 전북자치도의 경우 110억의 기금이 조성되어 있는 실정이나 집행은 전무한 상황임. 일반회계로의 전환이 필요하다는 다양한 주장이 제기되고 있음. 그러나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5조에서는 기금의 관리 및 운용원칙을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기금을 그 설치 목적과 지역 실정에 맞도록 관리·운용하여야 한다."고 규

10) 평화뉴스, 2024.9.6.자 기사, '남북교류협력 조례' 울산 이어 대구도 폐지..."평화통일 노력 저버린 퇴행" 규탄, (https://www.pn.or.kr/news/articleView.html?idxno=30955)

정하고 있음. 그리고 이 법 제15조제1항제2호·제4호에서는 "기금 설치의 목적 달성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될 경우 또는 그 밖에 재정운영의 효율성 및 투명성을 높이기 위하여 일반회계에 통합하여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조례의 폐지 및 제정·개정 절차에 따라 이를 폐지하거나 다른 기금과 통합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 관련 규정의 내용은 아래와 같음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5조(기금의 관리 및 운용원칙)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기금을 그 설치 목적과 지역 실정에 맞도록 관리·운용하여야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기금자산의 안정성·유동성·수익성 및 공공성을 고려하여 기금자산을 투명하고 효율적으로 운용하여야 한다.

제15조(기금의 통합·폐지) ① 지방자치단체는 기금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조례의 폐지 및 제정·개정 절차에 따라 이를 폐지하거나 다른 기금과 통합하여야 한다. 다만, 법률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의무적으로 설치된 기금의 경우에는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이의 폐지 또는 통합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요청할 수 있다.

1. 기금 설치의 목적을 달성한 경우
2. 기금 설치의 목적 달성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될 경우
3. 「지방재정법」에 따른 특별회계와 기금 간 또는 기금 상호간에 유사하거나 중복되게 설치된 경우
4. 그 밖에 재정운영의 효율성 및 투명성을 높이기 위하여 일반회계에서 통합하여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② 제1항 단서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로부터 기금의 폐지 또는 통합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요청받은 행정안전부장관은 관련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후 그 결과를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통보하여야 한다.

- 현재 남북관계가 경색되어 있는 실정이나「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제15조에서 규정하고 있는바와 같이 기금 설치의 목적 달성이 불가능하다고 보기에는 어려움이 있음. 최근 미 대선에서 트럼프의 당선으로 남북관계의 전환이 예상되는 시점이라는 점에서 일반회계로 통합하도록 검토하기에 바람직한 시점은 아니라고 판단됨
- 차후 중장기적으로 남북관계의 경색이 계속되고 이와 관련된 전북자치도 내의 논의가 성숙되면 다시 검토할 수 있을 것임
- 이 조례 유지 권고

□ 참고자료 1 – 위원회 관련 실적

○ 구성(전북특별자치도 남북교류협력위원회)

- 위원회 구성 현황

구분	정원	현원	당연직	위촉직	
				남	여
위원수(명)	20	16	2	8	6
비 율(%)	-	-	13%	50%	37%

○ 개최 실적

- 최근 3년간 개최 실적

연도별	2022	2023	2024
개최건수	2	2	1
개최일	2월(서면), 11월(서면)	2월(서면), 10월(서면)	2월(서면)
소요예산	5,000천원	5,000천원	3,000천원

□ 참고자료 2 – 조례 관련 보도 자료

○ 보도자료 1

남북교류협력기금, 전북 시급한 현안 사업에 활용해야, 전라일보[11)]



/전북특별자치도청 전경.

정부가 지난해에 이어 올해 교부세를 사실상 삭감하면서 수년째 '낮잠'만 자고 있는 남북교류협력 기금의 활용처를 다각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올해 들어 북한의 미사일 도발이 잇따르는 등 남북관계 경색국면이 장기화하고 도의 재정이 어려운 처지인 만큼 대북 사업에 사용할 기금을 시급한 '현안 사업'에 써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11일 도 등에 따르면 지난 2008년부터 2017년까지, 10년간 도내 남북교류협력 기금은 110억 원(원금 89억 원·이자수입 21억 원)이다.

이는 전북을 포함한 전국 49개 지자체의 보유액 2094억 원의 5.2%에 해당하는 수치로 경기, 서울에 이어 전국에서 3번째로 큰 규모인 것으로 파악됐다.

반면, 지난 2022년까지는 도내에서 기금이 사용된 적이 단 한 번도 없었으며 지난해에 들어서야 1회(3000만 원) 사용됐다.

11) https://www.jeollailbo.com/news/articleView.html?idxno=751091

남북교류협력기금은 대북 사업을 목적으로 조성되는 기금으로 지자체가 자체 조성해 사용한다. 김대중 정부 시절이던 1998년 강원도를 시작으로 주로 노무현 정부와 문재인 정부 시절 근거 조례가 대거 신설됐다. 문재인 정부 때에는 지자체가 독자적으로 사업을 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이 개정됐지만, 일부 지자체를 제외하고는 교류협력 사업이 유명무실해졌다.

이에 최근 대전시는 지난 2016년부터 조성한 남북교류협력기금 폐지를 골자로 한 '대전시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을 대전시의회에 제출했다. 53억여 원으로 조성된 기금의 집행률이 저조해 재정 활성화를 위해서는 일반회계로 전환한다는 게 낫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또한, 지난 2022년 울산과 대구를 시작으로 올해까지 18곳의 지자체가 근거 조례를 삭제하며 기금을 지자체의 열악한 재정 보충에 활용하고 있다.

더욱이 정부가 올해에도 세수 결손을 이유로 지방교부세를 감액하기로 하면서 올해에도 지자체의 재정난은 지속될 것으로 전망된다.

그러나 전북의 경우 기금 활용도가 낮은 점은 인정하면서도 남북관계가 개선될 수도 있어 적기에 예산을 투입, 대북 사업을 선점하기 위해서는 기금을 유지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와 관련, 도내 정치권의 한 관계자는 "역대급 세수 한파로 도 재정 운영에 어려움이 예상돼 기금의 활용 방안을 모색하고 있는 울산, 대구를 참고해 폐지까지는 아니더라도 기금 일부를 일반회계로 전입하는 등 시의성에 맞게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이 적극적으로 검토돼야 한다"고 말했다.

○ 보도자료 2

"남북협력기금 등 불필요 특별회계 정리...전북 살림 보태야", 뉴시스[12)]

김성수 도의원, 3일 열린 임시회 5분 자유발언 주장
농어촌주택특별회계 등 일반재원 사용 바람직



[전주=뉴시스] 김성수 전북도의원이 3일 열린 제413회 임시회 5분 자유발언에서 불필요한 특별회계와 기금을 정리해 전북자치도 살림에 보태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2024.09.03 *재판매 및 DB 금지

[전주=뉴시스] 김민수 기자 = 전북특별자치도의회 김성수 의원(고창1)이 3일 열린 제413회 임시회 5분 자유발언을 통해 "불필요한 특별회계와 기금을 정리해 정부의 세수 결손으로 가뜩이나 어려운 전북자치도 살림에 보태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먼저 농어촌주택사업특별회계의 경우, 2024년도 예산서상의 세출예산은 당초의 특수한 목적을 위한 세출이라기보다는 일반회계에서도 가능한 세부 사업으로 운영되고 있다.

세입 또한 특별회계의 목적사업을 위한 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금 없이 주택개량 융자금 원금 수입이 63%를 차지하고 있어, 더 이상 특별회계로서의 추가 사업이 필요하지 않음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는 설명이다.

김 의원은 2022년 결산검사 시 농어촌주택사업 총 세출결산액의 70%가 예비비로 계상돼 있음을 지적하며 개선을 요구했지만 2023년 결산서에는 농어촌주택사업의 세출 결산액 중 57.5%에 해당하는 50억여 원이 통합관리기금에 예탁금으로 명칭만 바꿔 계상함으로써 눈 가리고 아웅하는 행태를 보이고 있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12) https://www.newsis.com/view/NISX20240903_0002873784

김 의원은 “50%가 넘는 금액이 예비비 또는 통합기금에 예탁된다는 것은 더 이상 특별회계로서 사업을 할 명분이 없음을 의미한다”면서 “농어촌주택사업특별회계를 폐지해 일반회계로 편입, 재원을 확충하고 관련 사업은 일반회계에서 편성·추진하는 것이 예산의 효율성을 높이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 의원에 따르면 농어촌 주택사업을 폐지하고 통합기금의 예탁금을 일반회계로 전환한다면 약 80억원 가량의 재원을 확충할 수 있을 것이라고 예상했다.

두 번째로 남북교류협력기금의 조정도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2008년부터 2017년까지 10년간 조성한 남북교류협력기금은 약 110억원(원금 89억원, 이자수입 21억원)으로 경기도와 서울에 이어 전국 3번째 큰 규모이다.

하지만 2018년 이후 집행액은 0원이었으며 2023년에는 단 1건의 행사에 3000여만원을 사용한 것이 전부였다. 이는 기금이 제대로 활용되지 못하고 아무 의미 없이 쌓여만 가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김 의원은 관련 조례를 폐지해 일반회계로 전입시키는 등 남북교류협력기금의 활용 방안을 모색하고 있는 울산, 대구광역시를 참고해 폐지까지는 아니더라도 기금의 일부를 일반회계로 전입하는 등 시의성에 맞게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적극 검토해야 된다고 말했다.

김성수 의원은 “전북자치도가 불필요한 예산을 따로 쌓아놓고 재정이 어렵다고 도민을 위한 사업을 추진하지 못한다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도민에게 돌아갈 것”이라며 “예결위원장으로서 2025년 예산안 심사 시 예산의 효율적인 사용을 위해 불필요한 예산, 집행률이 저조한 사업 등 비효율적인 예산에 대해 강도 높은 심사를 할 것”이라고 밝혔다.

○ **보도자료 3**

100억 넘는 남북교류 협력기금.. 대치 국면에 된서리, 전주 MBC[13)]

100억 넘는 남북교류 협력기금.. 대치 국면에 된서리

2024-09-06 ▶ 862



강동엽기자
soros@jmbc.co.kr



[전주MBC 자료사진]

링크복사

◀앵커▶
남북교류협력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지자체마다 기금을 조성하다보니 전북자치도도 100억이 넘는 기금을 모았습니다.

전국에서 4번째로 많은 규모인데 대치 국면이 장기화되면서 기금을 쓰지 못하는 것이 현실입니다.

이러다보니 지방재정이 어려운 처지로 몰리는 만큼 시급한 현안 사업에 써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강동엽 기자입니다.

◀리포트▶
오물 풍선에 대북 확성기, 미사일 도발까지 악화일로를 걷고 있는 남북 관계,

서로를 타도의 대상으로 삼으면서 개선의 실마리는 좀처럼 보이지 않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지난달 광복절 경축식)]
"빈곤과 기아로 고통받는 북녘땅으로 우리가 누리는 자유가 확장되어야 합니다."

남북 경색 국면이 길어지면서 그동안 쌓아놓은 남북교류협력기금이 난감한 처지에 놓였습니다.

13) https://www.jmbc.co.kr/news/view/46285

대북 사업을 위해 지난 2008년부터 기금을 모아 현재 전북자치도에서 조성한 금액은 110억 원, 전국에서 4번째로 많습니다.

낙농단지 조성과 태권도 교류 등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겠다는 청사진이었지만 길이 막히면서 2018년 이후 대북사업이 추진된 일은 없습니다.

이렇다 보니 사용처를 찾지 못하는 기금을 전북 현안을 위해 써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의 남북 관계를 볼 때 기금 사용이 앞으로도 불투명한 만큼 일부만 남겨놓고 지방소멸 등 시급한 사업에 우선 쓰자는 것입니다.

울산과 대구 등 일부 타 시군은 이미 기금을 폐지한 상황입니다.

[김성수 / 전북자치도의원]
"협력기금이 불필요하게 쌓여져 있다고 판단이 되기 때문에 지금 도 재정이 어려운 상황에서 도 정책사업으로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하지만 전북자치도는 기금 활용도가 낮은 점은 인정하면서도 사용 전환에는 부정적입니다.

남북관계가 문재인 정부 시절처럼 정권교체 등으로 개선될 수 있는데 그때 적기에 예산을 투입해 대북사업을 선점하기 위해서는 기금을 유지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김호식 / 전북자치도 행정팀장]
"남북관계 인식 개선 사업이라든가 이런 사업을 좀 발굴해서 추진하고 있고요. (남북 화해시) 우리 도가 준비했던 남북교류 사업들이 조기에 시행될 수 있도록.."

한 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남북의 대결 국면에 지자체의 어려운 재정 여건이 맞물리면서 남북협력기금 사용에 대한 고민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붙임 1 사업 관련 추진실적

□ 연도별 사업 및 예산 집행 실적

○ 최근 3년간 사업 및 예산 집행 실적

- (예산확보) 조례 제3조(조성)에 따라 2008년도부터 2017년도까지 도, 시·군 전입금으로 남북교류협력기금 조성(2023년 기준 약 110억원 조성)
- 2022년 집행실적 없음
- 2023년 1개 사업에서만 일부 예산이 집행됨
- 2024년 1개 사업 추진 중

(단위: 천원)

연도	사업명	필요예산	확보예산	집행액	집행내역
2022	민간단체 인도적 대북사업 및 남북교류사업	30,000	30,000	0	
	전라북도 남북교류협력사업	50,000	50,000	0	
	시군 남북교류협력사업	20,000	20,000	0	
2023	2030 미래세대 중심의 남북교류협력 인식개선 사업	50,000	50,000	31,920	대학생 등 DMZ 평화의길 시찰 프로그램
	민간단체 인도적 대북사업 및 남북교류사업	10,000	10,000	0	
	전라북도 남북교류협력사업	20,000	20,000	0	
	시군 남북교류협력사업	20,000	20,000	0	
2024	2030 미래세대 중심의 남북교류협력 인식개선 사업	40,000	40,000	0	(사업 추진중)

붙임 2 평가대상 조례

전북특별자치도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조례

[시행 2024. 1. 18.] [전북특별자치도조례 제5399호, 2023. 12. 8., 일부개정]

전북특별자치도(자치행정과), 063-280-2093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전북특별자치도와 군사분계선 이북지역간의 상호교류와 협력을 촉진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양 지역 간 교류협력을 활성화하여 한반도의 평화와 통일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3. 12. 8.>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남북교류협력사업”이란 전북특별자치도(이하 “전북자치도”라 한다)와 군사분계선 이북지역(이하 “북한”이라 한다)의 주민(법인·단체를 포함한다)이 상호 이해증진 및 민족공동체 회복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공동으로 행하는 문화·학술·체육·경제·관광·축제·농업 등에 관한 각종 활동을 말한다.<개정 2019. 8. 9., 2023. 12. 8.>

제2장 남북교류협력기금

제3조(조성)

① 전북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남북교류협력사업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하여 전북특별자치도 남북교류협력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운용한다.<개정 2023. 12. 8.>

②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개정 2023. 12. 8.>

1. 전북자치도 및 시·군의 출연금
2. 기금의 운용수익금
3. 그 밖의 수입금

제4조(용도)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에 사용한다.<개정 2019. 8. 9., 2022. 3. 11.>

1. 문화·학술·체육·경제·관광·축제·농업 분야 등 남북교류협력사업
2. 기금의 조성·운용 및 관리를 위한 경비의 지출
3. 남북 지방자치단체간의 교류협력을 증진하기 위한 사업
4. 남북교류협력 및 통일정책을 증진하기 위하여 개최하는 국제 또는 국내회의와 학술 연구에 관한 사업
5. 북한 재해·재난에 관한 사업
6.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홍보물 제작·활용 등 홍보사업
7. 남북교류협력을 위한 행사(기념행사, 박람회, 문화행사 등)
8. 그 밖에 도지사가 회의에 부쳐 남북교류협력위원회에서 의결한 사업

제5조(관리·운용)

① 제3조에 따른 기금은 「전북특별자치도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에 따라 관리한다.<개정 2022. 3. 11., 2023. 12. 8.>

② 기금의 운용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는 전북특별자치도 남북교류협력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개정 2022. 3. 11., 2023. 12. 8.>

1. 기금운용계획 수립
2. 기금운용계획의 변경
3. 기금결산보고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회계공무원) 기금의 효율적 운용·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회계공무원을 둔다.
1. 기금운용관 : 업무담당 실·국장
2. 기금출납원 : 업무담당 사무관

제7조(보고 등)
① 기금을 지원받은 기관·단체는(이하 "기금지원기관"이라 한다) 그 사업계획 및 집행결과를 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기금지원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한다고 확인된 때에는 기한을 정하여 기금지원기관에 지원한 기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기금을 환수하고 향후 5년간 기금의 교부대상에서 제외한다.
1. 거짓 또는 부당한 방법으로 기금을 교부받은 경우
2. 이 조례에서 규정한 기금의 용도를 위배하여 기금을 사용하거나 전용한 경우
3. 기금 교부 목적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정지하였을 경우
4. 그 밖에 기금교부 사업과 관련 도의 시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거부, 거짓보고 등 사업을 성실히 수행하지 않는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3장 전북특별자치도 남북교류협력위원회

제8조(설치) 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하고, 남북교류협력사업에 관한 도지사의 자문을 위하여 전북특별자치도 남북교류협력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개정 2023. 12. 8.>

제9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하고, 도지사의 자문에 응한다.
1. 남북교류협력의 촉진을 위한 협의 및 자문
2. 기금의 운용 및 관리에 관한 사항
3. 남북교류기반 조성 및 민간차원 교류지원에 관한 사항
4. 남북교류협력의 실질적 증진을 위한 계획의 수립과 집행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0조(구성 등)
①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성별 균형을 고려해야 한다.
② 위원회에는 위원장 1명, 부위원장 1명을 둔다.
③ 위원회의 위원장은 경제부지사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 호선한다.<개정 2022. 10. 21.>
④ 위원은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개정 2023. 12. 8.>
1. 남북교류협력 업무에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2. 남북교류협력업무와 관련이 있는 기관 및 단체에 소속된 사람
3. 전북특별자치도의회에서 추천하는 사람
4. 남북교류협력사업 관련 국장급 이상 공무원

제11조(임기) 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임명직 위원의 임기는 당해 직위의 재직기간으로 하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개정 2015. 10. 2, 2022. 11. 4.>

제12조(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장은 위원회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④ 위원장은 위원 1/3 이상이 요구하면 회의를 소집한다.

⑤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⑥ 위원회는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공무원 또는 관계자를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자료 및 의견의 제출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⑦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남북교류협력 사무를 담당하는 과장이 된다.

⑧ 재해, 기근 등 긴급한 사안발생으로 위원회를 소집하여 사무를 처리하기에 곤란한 경우 간사가 위원장에게 사전에 보고하고, 위원장이 안건을 회의에 올리는 경우 서면으로 위원회의 안건을 심의할 수 있다. 이 경우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3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등)

① 위원은 기금의 운용·관리와 관련한 심의·의결의 공정성을 도모하기 위하여 자기와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의결에는 관여할 수 없다.

② 위원은 제1항에 따른 제척사유가 있거나 심의·의결의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유가 있는 경우 관계인의 신청에 따라 심의·의결에서 제외될 수 있다.

제14조(위원의 해촉) 도지사는 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의 임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아니한 경우
2. 품위를 손상시켜 위원으로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위원이 제척·기피·회피의 사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심의에 참여하여 심의의 공정성을 해친 경우
4. 그 밖의 사정으로 위원의 임무를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15조(수당 등)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 등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위원회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제16조(실무기획단)

① 도지사는 남북교류협력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전북자치도에 실무기획단을 둘 수 있다.<개정 2023. 12. 8.>

② 도지사는 실무기획단을 활용하여 남북교류협력을 실질적으로 증진하는 방법을 제시할 수 있고, 관련연구를 연구기관 등에 의뢰할 수 있다.

제4장 남북교류협력 활성화 사업 지원

제17조(업무위탁 및 재정지원)

① 도지사는 남북교류협력 증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제4조에 따른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전문성을 갖춘 법인·단체에 위탁하거나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개정 2022. 3. 11.>

1. 남북교류 및 협력에 관한 홍보물 제작·활용 등 홍보사업
2. 남북교류 및 협력을 위한 행사지원(기념행사, 박람회, 문화행사 등)

② 도지사는 시장·군수가 단체 또는 법인에 지원하는 기금 사업의 사업비의 일부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시·군에 보조금을 교부할 수 있다.<신설 2019. 8. 9>

제1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개정 2015. 10. 12>

05. 전북특별자치도 농산어촌유학 지원 조례

Ⅰ. 종합의견

< 평가결과 >

□ 평가대상

조 례 명			
조례 구분	자치조례	관계 법령	-
제정·시행일	2012. 12. 7. 제정	최근개정·시행일	2023. 12. 8. 개정
소관 부서	교육협력추진단	소관 상임위	기획행정

□ 평가의견

평가항목	평가의견	주요 내용
종합의견	개정/통합/일반	타 조례와 통합 검토 또는 조례를 유지할 경우 자치법규 입안 기준에 따른 일반 정비
심층분석 결과		- 조례를 별도로 운영하고자 하는 경우 타 시·도의 사례를 참고하여 가족 체류 프로그램 개발 및 지원사업 등 대상사업을 추가하도록 규정 신설 권고 - 세부적인 지원 내용의 유사성이 있으므로 기존의 「전북특별자치도 농어촌 체험관광 활성화 지원 조례」를 기반으로 하되 계획 수립 시 농산어촌유학을 교육에 포함시키도록 하는 방안을 포함하여 통합안을 제안함
1. 입법 근거 및 적법성	적정	자치사무의 범위에서 적절하게 제정되었음
2. 조례의 실효성	적정	조례에 따른 시행계획 수립 및 교육 추진 등을 통해 조례의 실효성을 확보하고 있음
3. 조례 내용의 적정성	적정	농촌관광 활성화를 위한 사업을 추진하기에 조례 내용이 적정함
4. 조례의 공평성	적정	장애, 성별, 나이 등에 관한 사회적 편견, 고정관념이 반영된 표현 및 차별 규정 없음
5. 주민 수용성	적정	입법예고 절차를 시행하였으며, 조례의 체계 및 용어가 주민이 알기 쉽게 되어 있음
6. 전북자치도 현실부합성	적정	농촌활성화를 위한 농산어촌 유학을 지원하기 위하여 제정된 본 조례는 행정수요를 반영하고 있어 전북특별자치도 현실에 부합함
7. 위원회 운영의 적정성	적정	협의회 운영 규정은 임의규정이며, 2023년 1회 개최되어 적정하게 운영되고 있음
※ 기타 의견	없음	

Ⅱ. 항목별 평가 결과

평가항목	세부항목	척도	의견 및 자료
1. 입법의 근거 및 적법성	1) 위임조례인가 자치사무에 관한 조례인가?	☐ 위임조례 ☑ 자치사무에 관한 조례	
	2) 조례에서 규정하고 있는 위임근거가 올바른가?	☐ 그렇다 ☐ 그렇지않다 ☑ 해당사항 없음	
	3) 조례가 위임범위에서 적절하게 제·개정되었는가?	☐ 그렇다 ☐ 그렇지않다 ☑ 해당사항 없음	
	4) 조례 제.개정 이후 동일 또는 유사한 법령이나 제도가 만들어졌거나 근거법령이 개정 또는 폐지되었는가?	☐ 그렇다 ☐ 그렇지않다 ☑ 해당사항 없음	
	5) 조례에서 주민의 권리제한, 의무부과, 벌칙 부과, 규제사항에 대한 법률위임이 있는가?	☐ 그렇다 ☐ 그렇지않다 ☑ 해당사항 없음	
	6) 상위법령에 위배되는 조항이 있는가?	☐ 그렇다 ☐ 그렇지않다 ☑ 해당사항 없음	
2. 조례의 실효성	1) 조례의 시행과정에서 다른 조례와의 충돌이나 모순이 발생하고 있는가?	☐ 그렇다 ☑ 그렇지않다 ☐ 해당사항 없음	
	2) 이 조례와 유사 또는 동일한 다른 조례가 제정 및 시행되고 있어 통합할 필요가 있는가?	☐ 그렇다 ☑ 그렇지않다 ☐ 해당사항 없음	
	3) 조례에 따른 계획이 수립·시행되고 있는가?	☑ 그렇다 ☐ 그렇지않다 ☐ 해당사항 없음	
	4) 조례에서 집행기관 등에 책무를 부여하고 있는가?	☑ 그렇다 ☐ 그렇지않다 ☐ 해당사항 없음	

평가항목	세부항목	척도	의견 및 자료
	5) 조례에서 부여한 책무와 관련사업을 집행기관이 잘 이행하고 있는가?	☑ 그렇다 ☐ 그렇지않다 ☐ 해당사항 없음	
3. 조례 내용의 적정성	1) 조례에 재정지원 관련 규정이 있는가?	☑ 그렇다 ☐ 그렇지않다 ☐ 해당사항 없음	-제4조
	2) 조례 시행에 필요한 예산 확보와 집행이 잘 이루어지고 있는가?	☑ 그렇다 ☐ 그렇지않다 ☐ 해당사항 없음	
	3) 지원대상이 집행이 가능한 정도로 구체화 되어 있는가?	☑ 그렇다 ☐ 그렇지않다 ☐ 해당사항 없음	
	4) 조례에 따른 위탁사무가 위탁대상으로 적정한가?	☐ 그렇다 ☐ 그렇지않다 ☑ 해당사항 없음	
4. 조례의 공평성	1) 조례에서 장애인, 성별 등의 특정계층이나 특정지역을 차별하는 조항이 있는가?	☐ 그렇다 ☐ 그렇지않다 ☑ 해당사항 없음	
	2) 조례에서 정한 차별이 합리적인가?	☐ 그렇다 ☐ 그렇지않다 ☑ 해당사항 없음	
5. 주민 의견 수용성	1) 조례 제·개정 시 입법예고는 하였는가?	☑ 그렇다 ☐ 그렇지않다 ☐ 해당사항 없음	
	2) 조례 제·개정 시 공청회, 세미나 등 이해관계인 및 주민에 대한 의견 수렴 과정이 있었는가?	☑ 그렇다 ☐ 그렇지않다 ☐ 해당사항 없음	
	3) 조례와 관련한 민원(청원, 진정, 소송 등)이 제기되거나 개정 또는 폐지 요구가 있었는가?	☐ 그렇다 ☐ 그렇지않다 ☑ 해당사항 없음	
	4) 조례의 체계나 사용 되어진 용어가 주민이 알기 쉽게 되어 있는가?	☐ 그렇다 ☐ 그렇지않다 ☑ 해당사항 없음	
6. 위원회 운영의 적정성	1) 조례로 위원회를 구성하도록 되어 있는가?	☑ 그렇다 ☐ 그렇지않다 ☐ 해당사항 없음	-제6조

평가항목	세부항목	척도	의견 및 자료
	2) 위원회가 법정위원회인가 조례로 설치하도록 한 위원회인가?	☐ 법정위원회 ☑ 조례로 정한 위원회 ☐ 해당사항 없음	
	3) 위원회 위원의 성별 구성이 적정한가?	☑ 그렇다 ☐ 그렇지않다 ☐ 해당사항 없음	
	4) 위원회가 법령이나 조례에서 정한 회의개최 운영 실적이 있고 관련 회의록을 보존하고 있는가?	☐ 그렇다 ☑ 그렇지않다 ☐ 해당사항 없음	
	5) 위원회를 계속 설치·운영할 필요성이 있는가?	☑ 그렇다 ☐ 그렇지않다 ☐ 해당사항 없음	
	6) 해당 위원회와 유사한 다른 위원회와의 기능적 통합이 필요한가?	☐ 그렇다 ☐ 그렇지않다 ☑ 해당사항 없음	
7. 종합 의견	1) 이 조례를 현행대로 유지할 필요가 있는가?	☑ 그렇다 ☐ 그렇지않다	
	2) 이 조례를 개정할 이유가 있는가? (해당사항 모두 표기)	☐ 위임근거에 불부합 ☐ 위임근거 불명확 ☐ 법령의 위임 없는 규제 정비 필요 ☐ 다른 조례와의 상충 및 모순 ☐ 조례 시행의 문제점 발생 ☐ 조례의 공평성 문제 ☐ 알기 쉬운 법령정비 기준에 따른 정비 필요 ☐ 위원회 관련 규정개정 필요 ☐ 그 밖의 사유	
	3) 이 조례를 폐지할 사유가 있는가? (해당사항 모두 표기)	☐ 다른 유사한 조례와의 통합 운영 필요성 ☐ 조례 시행 불가능 ☐ 최근 3년간 조례 관련 운영 실적 전무 ☐ 기타	
	4) 그 밖의 이 조례와 관련된 의견이 있는가?	☐ 있다 ☑ 없다	

Ⅲ. 세부내용

조례명	전북특별자치도 농산어촌유학 지원 조례

■ 소관 부서 의견(팀)

○ **최종의견 : 도시와 농촌간의 교류 및 상생과 농촌의 경제활성화를 위하여 농촌관광 사업이 더욱 확대되어야 하므로 농촌관광 활성화를 위하여 해당 조례의 유지가 필요함**

○ **내용**

- (2-3) 조례 제3조에 따라 전북 농촌관광 활성화 기본계획을 수립함
- (2-4) 조례 제8조에 따라 2024년 체험마을 리더교육 지원에 18,228천원을 확보함
- (2-5) 조례 내용에 따라 24년 기준 예산액 18백만원을 확보하여 매년 체험마을 리더교육 지원을 통한 교육을 온, 오프라인으로 시행함
- (3-1) 2024년도 예산액 기준 전북형 농촌관광 운영활성화 지원에 600백만원, 농촌체험휴양마을 육성 지원에 312백만원, 체험마을 리더교육 지원에 18백만원, 농촌체험휴양마을 박람회 참가 지원에 12백만원, 농촌관광 홍보 지원에 66백만원, 농촌관광 경쟁력 제고사업에 500백만원을 지원함

■ 종합의견	개정 권고/통합 권고/일반 정비

◎ 입법평가 세부의견

○ **평가항목별 검토**

평가항목	평가항목별 검토 내용
1. 입법 근거 및 적법성	자치사무의 범위에서 적절하게 제정되었음
2. 조례의 실효성	조례에 따른 시행계획 수립 및 교육 추진 등을 통해 조례의 실효성을 확보하고 있음
3. 조례 내용의 적정성	농촌관광 활성화를 위한 사업을 추진하기에 조례 내용이 적정함
4. 조례의 공평성	장애, 성별, 나이 등에 관한 사회적 편견, 고정관념이 반영된 표현 및 차별 규정 없음
5. 주민 수용성	입법예고 절차를 시행하였으며, 조례의 체계 및 용어가 주민이 알기 쉽게 되어 있음
6. 전북자치도 현실부합성	농촌활성화를 위한 농산어촌 유학을 지원하기위하여 제정된 본 조례는 행정수요를 반영하고 있어 전북특별자치도 현실에 부합함
7. 위원회 운영의 적정성	협의회 운영 규정은 임의규정이며, 2023년 1회 개최되어 적정하게 운영되고 있음
※ 기타 의견	없음

○ **입법목적 달성도 또는 부수효과 분석**

- 조례 목적달성도 평가
  - 조례 내용에 따라 농산어촌유학 지원을 위한 다양한 사업을 진행함으로써 조례의 목적이 달성되고 있다고 평가됨
- 부수효과
  - 지원을 통해 도시-농산어촌간 유대를 강화하고 새로운 관광자원 확보에 기여

○ **타 시·도 유사 조례와의 비교**

전북특별자치도 농산어촌유학 지원 조례	전라남도 농산어촌유학 지원 조례	충청남도 농산어촌유학 지원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제3조(농촌유학 지원계획 수립)	제3조(농산어촌유학 지원계획 수립)	제3조(지원계획의 수립)
제4조(지원대상사업)	제4조(사업지원)	제4조(지원사업)
제5조(지원센터 운영)	제5조(지원센터 운영)	제5조(위원회의 설치 및 역할)
제6조(협의회 구성)	제6조(협의회 구성)	제6조(위원회 구성)
제7조(협의회 기능)	제7조(협의회 기능)	제7조(위원회의 운영)
제8조(위원의 임기)	제8조(위원의 임기)	제8조(위원장의 직무)
제9조(회의)	제9조(회의)	제9조(수당 및 여비)
제10조(수당 등)	제10조(삭제 2017. 9. 28.)	**제10조(홍보)**
제11조(시행규칙)	제11조(시행규칙)	제11조(시행규칙)

- 농산어촌유학 지원과 관련된 조례는 전북특별자치도, 전라남도, 충청남도 등 총 3곳의 광역지방자치단체에서만 운영 중이며, 충청남도 조례에서 규정하고 있는 홍보 조항을 제외하면 내용이 유사함

Ⅳ. 개정의견

현 행	개정안	비고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신설> 1. "농산어촌유학"이란 도시에 사는 초·중·고 학생들이 농산어촌에서 일정기간 동안 생활하면서 학교를 다니고 시골살이를 체험하는 것을 말한다.(이하 "농촌유학"이라 한다) 2. "농산어촌유학시설"은 유학생들이 농산어촌유학 활동가의 지도를 받으며 숙식 또는 생활을 하는 장소와 지방자치단체나 마을에서 제공한 유학생 부모가 생활하는 시설을 말한다.(이하 "농촌유학시설"이라 한다) 3. "농산어촌유학 활동가"란 농촌유학 시설에서 유학생의 학교 외 생활을 지원하고, 돌봄 기능을 도와주는 사람을 말한다.(이하 "농촌유학 활동가"이라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농산어촌"이란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5호, 「산림기본법」 제3조제2호 및 「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 제3조제6호에 따른 지역을 말한다. 2. "농산어촌유학"(이하 "농촌유학"이라 한다)이란 도시에 사는 초·중·고 학생들이 농산어촌에서 일정기간 동안 생활하면서 학교를 다니고 시골살이를 체험하는 것을 말한다. 3. "농산어촌유학시설"(이하 "농촌유학시설"이라 한다)이란 유학생들이 농산어촌유학 활동가의 지도를 받으며 숙식 또는 생활을 하는 장소와 지방자치단체나 마을에서 제공한 유학생 부모가 생활하는 시설을 말한다. 4. "농산어촌유학 활동가"(이하 "농촌유학 활동가"이라 한다)란 농촌유학 시설에서 유학생의 학교 외 생활을 지원하고, 돌봄 기능을 도와주는 사람을 말한다.	-정의 조항의 규정형식에 맞게 정비 권고 -제1호에 "농산어촌"에 대한 정의를 신설하도록 정비 권고 -제2호 조사 정비 권고
제4조(지원대상사업) 도지사는 농촌유학 활성화를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1. 제3조의 지원계획에 반영된 사업 2. 농촌유학 시설 확충사업 3. 농촌유학 프로그램 개발 및 지원사업 <신설> 4. 그 밖에 도지사가 농촌유학 사업을 수행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	제4조(지원대상 사업) 도지사는 농촌유학 활성화를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1. 지원계획에 반영된 사업 2. 농촌유학 시설 확충사업 3. 농촌유학 프로그램 개발 및 지원사업 4. 가족 체류 프로그램 개발 및 지원사업 5. 모범학교 발굴 및 지원 6. 농촌유학 관계자 교육 사업 7. 그 밖에 도지사가 농촌유학 사업을 수행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	-띄어쓰기 정비 권고 -제3조에서 이미 약칭한 사항은 조문표기 없이 약칭만 표기하도록 정비 -심층분석을 통해 타 시·도의 사례를 참고하여 지원대상사업을 추가하도록 규정 신설 권고

현 행	개정안	비고
하는 사업	하는 사업	
제6조(협의회 구성) ① 도지사는 농촌유학 육성·지원 정책에 대한 심의 및 자문을 위하여 전북특별자치도 농촌유학 협의회(이하"협의회"라 한다)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② ~ ③ 생략 ④ 당연직 위원은 해당 실·국·본부장이 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도지사가 위촉한다. 1. 도의장이 추천하는 도의회 의원 1명 2. 도 교육감 추천 1명 3. 아동, 교육 등 관련분야 학계 전문가 4. 농촌유학 분야 연구원 5. 농촌유학 실행지역 주민대표 6. 농촌유학 활동가 7. 기타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6조(협의회 구성) ① 도지사는 농촌유학 육성·지원 정책에 대한 심의 및 자문을 위하여 전북특별자치도 농촌유학 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 ③ 현행과 같음 ④ 당연직 위원은 해당 실·국·본부장이 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위촉한다. 1. 전북특별자치도의회에서 추천하는 사람 1명 2.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에서 추천하는 사람 1명 3. 아동, 교육 등 관련분야 학계 전문가 4. 농촌유학 분야 연구원 5. 농촌유학 실행지역 주민대표 6. 농촌유학 활동가 7. 그 밖에 도지사가 농촌유학 활성화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문장 정비(법제처, 2022년 우수조례 및 자치법규 입법컨설팅 사례집, 253면) -의장(교육감)이 추천할 수 없고, 의회(교육청)에서 추천하는 것임
제7조(협의회 기능)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심의·자문한다. 1. 농촌유학 지원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2. 생략 3. 기타 도지사가 요청한 사항 등	제7조(협의회 기능)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심의·자문한다. 1. 지원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2. 현행과 같음 3. 그 밖에 도지사가 요청한 사항 등	-문장정비 -제3조에서 "지원계획"으로 약칭하였으므로 약칭만 표기
제8조(위원의 임기) ①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재직기간으로 하며,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기간으로 한다. ② 이하 생략	제8조(위원의 임기) ①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재직기간으로 하며,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② 이하 현행과 같음	-문장을 명확하게 규정하도록 정비 권고
제9조(회의) ① 협의회 회의는 도지사 또는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와 위원 3분의 1이상의 요구가 있을 경우 회의를 소집한다. ② 심의사항에 대하여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9조(회의) ① 협의회 회의는 도지사 또는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와 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경우 회의를 소집한다. ② 심의사항에 대하여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띄어쓰기 정비 -"개의"가 정확한 표기임

현 행	개정안	비고
제10조(수당 등) 협의회의 회의에 참석한 위원에 대하여는「전북특별자치도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준용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0조(수당 등) 협의회의 회의에 참석한 위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수당 및 여비에 관해 선언적인 의미만을 규정하면, 그에 따른 구체적인 사항은 당연히「전북특별자치도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적용 받으므로 규정의 실익이 없음(법제처, 2023년 우수조례 및 자치법규 입법컨설팅 사례집, 226면)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삭제>	-시행규칙은 개별 조례에서 위임이 없더라도 조례의 집행에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규칙으로 규정할 수 있으므로 삭제 권고

심층분석 관련 검토

○ **심층분석 사유**

- 농산어촌유학 활성화를 위하여 타 시·도의 사례를 분석하여 시사점을 발굴하여 제안하고자 함

○ **심층분석**

- 입법정책담당관실에서는 이 조례와 관련하여 아래와 같은 의견을 제시함
  - 광역자치단체 기준 「농산어촌 유학 지원 조례」는 전북자치도, 전남, 충남 등 3곳에서 운영 중이며(기초는 전남: 고흥, 보성, 장흥 등 3곳), 전북자치도, 전남, 충남 등의 규정사항은 모두 유사하고, 전북자치도는 제5조(지원센터 운영)를 삭제하였고, 충남(제10조), 전남(제5조)은 규정을 두고 있음
  - 지원센터의 유무에 관하여는 각 지방자치단체에 따른 선택일 것으로 보이지만, 단독으로 운영할 경우 예산 및 효율성 등의 문제로 전북자치도는 「전북특별자치도 농어촌 종합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른 "농어촌 종합지원센터"에서 농산어촌 유학 관련 업무를 맡아서 진행하고 있음. 그에 따라 제5조(지원센터) 운영 규정을 삭제함(2016.9.30.)

- 타 시·도의 농산어촌유학 활성화 관련 규정과의 비교
  - 농산어촌유학 활성화를 위한 지원의 세부적인 내용을 살펴보면 아래와 같음

-	전북특별자치도 농산어촌유학 지원 조례	전라남도 농산어촌유학 지원 조례	충청남도 농산어촌유학 지원에 관한 조례
지원 사업	제4조(지원대상사업) 도지사는 농촌유학 활성화를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1. 제3조의 지원계획에 반영된 사업 2. 농촌유학 시설 확충사업 3. 농촌유학 프로그램 개발 및 지원 사업 4. 그 밖에 도지사가 농촌유학 사업을 수행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4조(사업지원) 도지사는 농산어촌유학 활성화를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1. 제3조의 지원계획에 반영된 사업 2. 농산어촌유학시설 확충 3. 농산어촌유학 프로그램 개발 및 추진 4. 가족 체류 프로그램 5. 그 밖에 농산어촌유학 사업 수행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4조(지원사업) ① 도지사는 농산어촌유학 활성화를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에 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1. 제3조의 지원계획에 반영된 사업 2. 농산어촌유학시설 확충사업 3. 농산어촌유학 프로그램 개발 및 지원사업 4. 농산어촌유학 관계자 교육사업 5. 그 밖에 도지사가 농산어

-	전북특별자치도 농산어촌유학 지원 조례	전라남도 농산어촌유학 지원 조례	충청남도 농산어촌유학 지원에 관한 조례
			촌유학 사업을 수행하기 위해 필요하다고인정하는 사업 ② 보조금의 지급에 관한 사항은 「충청남도 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 전라남도의 경우 "가족 체류 프로그램"을 지원 내용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전라남도교육청에서 운영하는 「전라남도교육청 농산어촌유학 활성화 지원 조례」에서는 지원사업으로 "지역에 특화된 교육과정 개발 및 보급, 모범학교 발굴 및 지원"과 "유학생을 위한 교육 지원, 누리집 개설 및 운영"을 규정하고 있으며, 충청남도의 경우 "농산어촌유학 관계자 교육 사업"을 지원의 내용으로 규정하고 있음

- 이 조례를 별도로 운영하고자 하는 경우 타 시·도의 사례를 참고하여 아래와 같이 사업의 내용을 신설하는 방안을 제안함

현 행	개정안	비고
제4조(지원대상사업) 도지사는 농촌유학 활성화를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1. 제3조의 지원계획에 반영된 사업 2. 농촌유학 시설 확충사업 3. 농촌유학 프로그램 개발 및 지원 사업 <신설> 4. 그 밖에 도지사가 농촌유학 사업을 수행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4조(지원대상사업) 도지사는 농촌유학 활성화를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1. 제3조의 지원계획에 반영된 사업 2. 농촌유학 시설 확충사업 3. 농촌유학 프로그램 개발 및 지원 사업 4. 가족 체류 프로그램 개발 및 지원 사업 5. 모범학교 발굴 및 지원 6. 농촌유학 관계자 교육 사업 7. 그 밖에 도지사가 농촌유학 사업을 수행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타 시·도의 사례를 참고하여 지원 대상사업을 추가하도록 규정 신설 권고

- 전북특별자치도가 「전북특별자치도 농산어촌유학 지원 조례」에 근거하여 시행하는 실제 사업은 아래와 같음

연도	사업명
2024	전북형 농촌관광 운영활성화
	농촌체험휴양마을 육성
	체험마을 리더 교육
	농촌체험휴양마을 박람회 참가
	농촌관광 홍보
	농촌관광 경쟁력 제고사업

- 위의 사업 내용을 살펴보면 농어촌 체험관광 활성화와 유사하게 진행되는 것으로 보임. 실제 「전북특별자치도 농어촌 체험관광 활성화 지원 조례」와 구성체계가 유사하고 이 조례에 따른 사업 및 예산 집행 실적으로 아래와 같은 사항을 제시함

• 2024년 실적

(단위 천원)

규 정	사 업 명	예산('24년)
제8조(전문인력의 육성 등)	체험마을 리더교육 지원	18,228

- 전북형 농촌관광 운영활성화 지원 : 600백만원
- 농촌체험휴양마을 육성 지원 : 312백만원
- 체험마을 리더교육 지원 : 18백만원
- 농촌체험휴양마을 박람회 참가 지원 : 12백만원
- 농촌관광 홍보 지원 : 66백만원
- 농촌관광 경쟁력 제고사업 : 500백만원

• 「전북특별자치도 농산어촌유학 지원 조례」와 「전북특별자치도 농어촌 체험관광 활성화 지원 조례」는 사업과 예산 집행실적이 동일함. 사업 내용만으로 보아서는 농산어촌 유학 조례의 특성을 살려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지는 않음

- 「전북특별자치도 농산어촌유학 지원 조례」와 「전북특별자치도 농어촌 체험관광 활성화 지원 조례」 및 이와 유사한 내용을 규정하고 있는 「전북특별자치도 농어촌민박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의 구성체계를 살펴보면 아래와 같음

전북특별자치도 농산어촌유학 지원 조례	전북특별자치도 농어촌 체험관광 활성화 지원 조례	전북특별자치도 농어촌민박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제3조(농촌유학 지원계획 수립)	제3조(체험관광사업의 활성화 계획 수립·시행)	제3조(책무)
제4조(지원대상사업)	제4조(농어촌 체험관광 활성화 자문회의)	제4조(활성화계획의 수립·시행)
제5조(지원센터 운영)	제5조(지원대상)	제5조(실태조사 등)
제6조(협의회 구성)	제6조(지원내용)	제6조(재정지원)
제7조(협의회 기능)	제7조(청소년 등 참여지원)	제7조(신청 및 선정)
제8조(위원의 임기)	제8조(전문인력의 육성 등)	제8조(지도·감독)
제9조(회의)	제9조(1사1촌 자매결연의 활성화)	제9조(협력체계)
제10조(수당 등)	제10조(지도 감독 및 평가 등)	제10조(시행규칙)
제11조(시행규칙)	제11조 <삭제 2016. 9. 30.>	
	제12조 <삭제 2016. 9. 30.>	
	제13조(시행규칙)	

- 「전북특별자치도 농어촌 체험관광 활성화 지원 조례」의 규정 내용이 오히려 농산어촌유학 지원에 보다 가까운 내용을 규정하고 있음. 관련하여 제7조 청소년 등 참여지원 규정에서 1교1촌 자매결연 지원 등의 내용을 담고 있음
- 또한 「전북특별자치도 농어촌 체험관광 활성화 지원 조례」와 「전북특별자치도 농어촌민박사업 지원조례」는 조례 제정 목적 및 농어촌에 대한 정의가 같고, 농어촌민박사업 활성화계획을 농어촌관광 활성화 기본계획으로 갈음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는 점 등에서 통합을 검토할 수 있음. 다만, 지원대상, 지원 내용은 양 조례가 달리 규정하고 있음. 지원의 내용은 오히려 살펴본바와 같이 「전북특별자치도 농산어촌유학 지원 조례」와 유사하다고 할 것임. 통합을 한다면 「전북특별자치도 농산어촌유학 지원 조례」와 「전북특별자치도 농어촌 체험관광 활성화 지원 조례」와의 통합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 세부적인 지원 내용의 유사성이 있으므로 기존의 「전북특별자치도 농어촌 체험관광 활성화 지원 조례」를 기반으로 하되 계획 수립 시 농산어촌유학을 교육에 포섭시키도록 하는 방안을 포함하여 아래와 같이 통합안을 제안함

전북특별자치도 농어촌 체험관광 활성화 지원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전북특별자치도 농어촌과 도시간의 교류를 활성화하여 농어촌지역의 소득증대 및 삶의 질 향상과 도시지역 주민의 건강한 여가욕구 수요를 충족시켜 농어촌과 도시가 함께 발전할 수 있는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농어촌”이란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5호, 「산림기본법」 제3조제2호 및 「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 제3조제6호에 따른 전북특별자치도 시·군의 지역을 말한다. 2. “마을”이란 「지방자치법」 제3조제3항에 따른 동·리, 같은 법 제7조제4항에 따른 행정동·리 등의 공간적 개념과 지역적으로 문화, 경제, 사회적 일체감을 갖는 주민들의 집합체라는 사회적인 개념을 총칭한다. 3. “농어촌 체험관광사업”이란 농어촌주민들이 마을의 역사·문화, 자연경관 및 농수산물과 특산물 등 부존자원을 활용하여 도시민들에게 체험·휴양·숙박·음식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농수산물과 특산물을 생산·가공·판매하는 소득증대 사업을 말한다. 4. “1사1촌 자매결연” 이란 하나의 기관(기업 및 단체 또는 관련부서를 포함한다)과 마을이 자매결연하고 교류를 추진하는 것을 말하며 1사1촌에는 1사다촌, 1부서1촌을 포함한다. 5. “1교1촌 자매결연”이란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과 「초·중등교육법」 제2조 각 호의 학교(다른 시·도를 포함한다. 이하 “학교 등”이라 한다)가 하나의 농어촌 마을과 자매결연을 맺어 유아 및 학생의 체험활동 등을 통하여 지속적으로 교류를 추진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체험관광사업의 활성화 계획 수립·시행)** ① 전북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농어촌체험관광사업의 체계적인 관리·지원을 위하여 전북특별자치도 농어촌 체험관광 활성화계획(이하 “활성화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활성화 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농어촌 체험관광 활성화를 위한 기본정책방향 2. 농어촌 체험관광사업에 대한 다양한 형태의 활성화 대책 3. 농어촌의 관광·휴양 자원의 개발 및 지역연계 관광정보 제공에 관한 사항 4. 관계 기관·단체와의 유기적 협조체제 구축 및 지원 방안 5. 청소년 등과 연계한 농어촌체험교육(농산어촌유학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사업 추진대책

6. 농어촌 체험관광 활성화를 위한 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
7. 농어촌 체험관광 활성화 지원사업을 위한 재원확보 방안
8. 그 밖에 농어촌 체험관광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업

③ 도지사가 제2항제5호와 관련된 사항을 활성화 계획에 포함시킬 때에는 전북특별자치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과 협의하여 수립하여야 한다.

제4조(농산어촌 체험관광 활성화 자문회의) 도지사는 전북특별자치도 농어촌 체험관광 활성화 자문회의를 통해 활성화계획의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자문 및 심의를 받을 수 있다.

제5조(지원대상) 이 조례에 따른 지원대상은 농어촌 체험관광사업을 추진하려는 마을 또는 복수의 마을 연합체(이하 "마을"이라 한다)로서 그 운영 실적이 우수하거나 시장·군수의 신청을 받아 추진하는 마을과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마을과 농어촌 관광 관련 법인으로 한다.

제6조(지원내용) ① 도지사는 농어촌 체험관광사업의 지속적인 추진과 사업이 널리 확산될 수 있도록 사업의 추진에 필요한 시설확보 및 기반정비 등을 적극적으로 지원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사업대상자로 선정된 마을과 법인에 대해서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제7조(청소년 등 참여지원) ① 도지사는 교육감과 협의하여 「유아교육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유아와 초·중등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이하 "청소년 등"이라 한다)에게 자연의 소중함과 농산어촌의 중요성을 알리기 위한 농어촌체험활동 추천과 교육과정 운영을 권장하여 체험활동에 적극 참여하도록 하고 다른 시·도 청소년 등에게도 사업을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참여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1교1촌 자매결연을 적극적으로 지원하여 학교 등과 농어촌의 활발한 교류를 장려해야 한다.

③ 도지사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농어촌 체험활동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농어촌체험 활동에 소요되는 경비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8조(전문인력의 육성 등) ① 도지사는 사업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전문 인력의 육성 및 확보에 노력해야 한다.

② 도지사는 농어촌 체험마을에서 추천한 농산어촌체험 운영인력에 대하여 그 전문성을 갖추도록 교육을 실시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전문기관에 의뢰하여 수행할 수 있다.

③ 도지사는 전문인력의 확보가 어려운 농어촌 체험마을에서 외부 전문인력을 활용할 경우에는 경비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9조(1사1촌 자매결연의 활성화) ① 도지사는 1사1촌 자매결연을 적극적으로 지원하여 기관과 농어촌의 활발한 교류를 장려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자매결연을 맺고 활발히 활동하고 있는 마을에 대해서는 편의시설의 확충 등 시설 개·보수사업을 요청할 경우에는 이를 지원할 수 있다.

③ 도지사는 자매결연 중인 기관의 소속직원 및 가족에게 사업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10조(지도 감독 및 평가 등) ① 도지사는 농어촌체험마을로 선정·지원되는 사업에 대해서는 시장·군수로 하여금 관리·감독을 실시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사업을 평가하고 결과에 따라 사업실적이 우수한 마을에 대하여 포상할 수 있다.

제11조 <삭제 2016. 9. 30.>

제12조 <삭제 2016. 9. 30.>

제13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 참고자료 1 – 위원회 관련 실적

○ 구성

구분	정원	현원	당연직	위촉직	
				남	여
위원수(명)	15	15	2	5	8
비 율(%)	-	-	14%	33%	53%

○ 개최 실적

연도별	2022	2023	2024
개최건수	0	1	0
개최일	-	3월	-
소요예산	-	-	-

□ 참고자료 2 – 조례 관련 보도 자료

○ 보도자료 1

전북 농촌유학생 126명, 24개 학교서 생태친화교육...매년 증가, 연합뉴스[14)]



농촌 유학 중인 서울 학생들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전주=연합뉴스) 백도인 기자 =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은 올해 1학기 농촌유학생으로 126명을 확정했다고 15일 밝혔다.

농촌 유학생을 받은 첫해인 2022년의 27명에서 지난해 84명으로 늘어난 데 이어 올해도 큰 폭의 증가세를 이어갔다.

지역별로는 서울 79명, 경기 32명, 광주 7명, 인천 3명, 부산 2명 등이다.

가족이 함께 내려와 생활하는 가족 체류형 유학생이 101명으로 대부분을 차지하고 학교 인근에 마련된 기숙사 형태인 유학센터를 이용하는 학생이 25명이다.

이들 학생은 도내 11개 시·군, 24개 초·중학교에 다니면서 생태 친화적 교육을 받게 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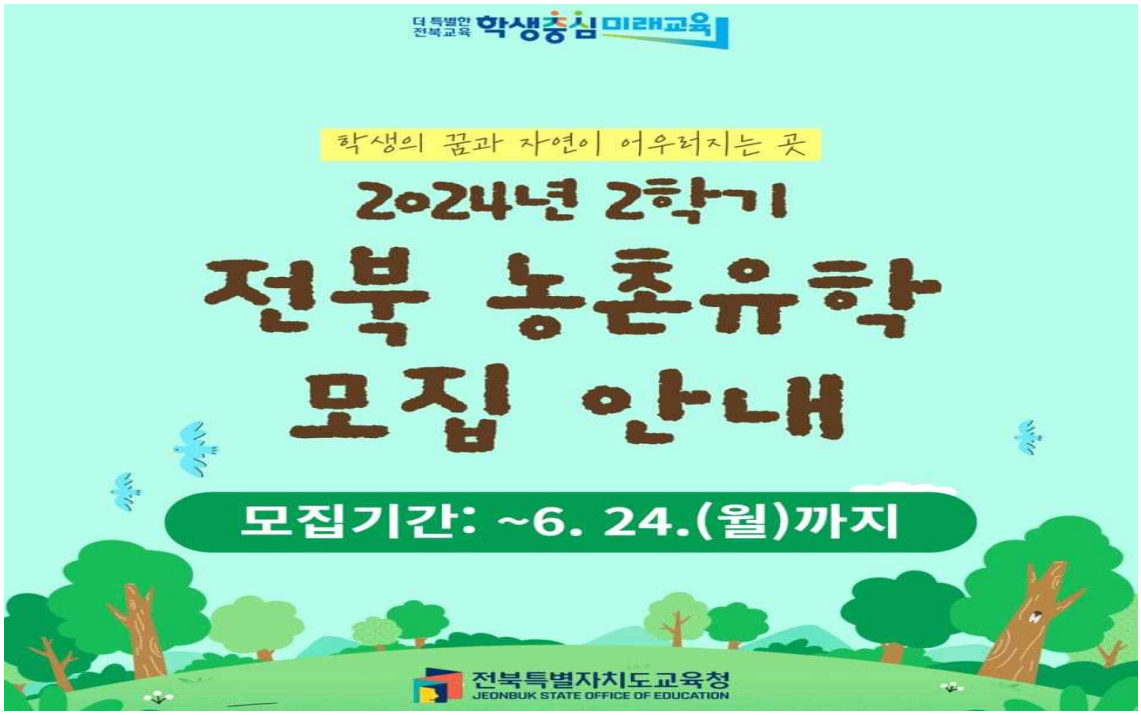
도교육청은 더 많은 농촌유학생을 확보하기 위해 올해부터는 2학기에도 모집하고 유학 경비 지원도 확대하기로 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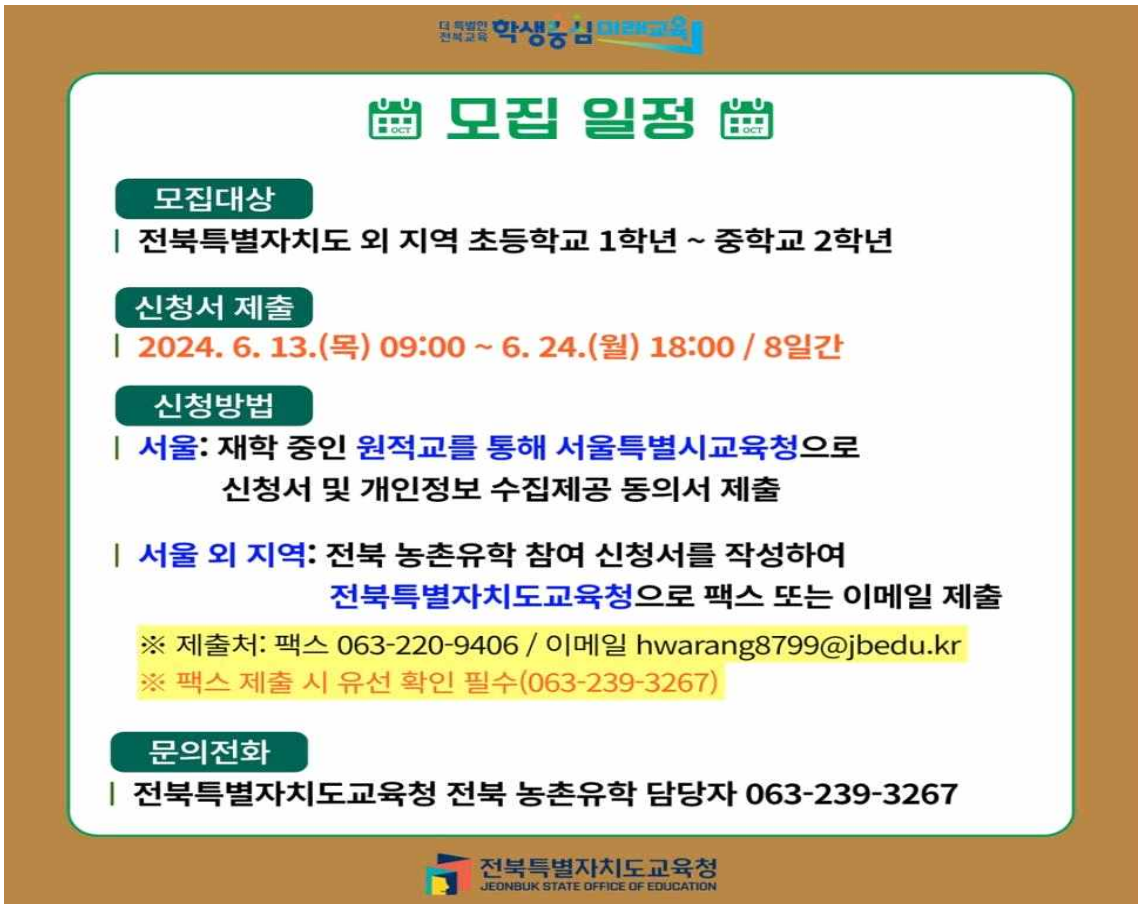
도교육청 관계자는 "농촌 유학은 소멸 위기의 농산어촌 학교를 살리고 도시 학생에게는 다양한 체험 학업 기회를 주는 상생 프로그램으로, 학생과 학부모의 만족도가 매우 높다"며 "주거시설을 확대하고 질 높은 교육프로그램을 도입해 농촌 유학 일번지로 발돋움하겠다"고 말했다.

14) https://www.yna.co.kr/view/AKR20240215076600055

□ 참고자료 3 – 조례 관련 사진

○ 포스터 1 – 전북특별자치도 교육청 2024-2학기 농촌유학 모집 포스터





붙임 1 사업 관련 추진실적

□ 연도별 사업 및 예산 집행 실적

○ 최근 3년간 실적(조례 제4조)

(단위 : 백만원)

연도	사업명	필요예산	확보예산	집행액	집행내역
2024	전북형 농촌관광 운영활성화	600	600	600	
	농촌체험휴양마을 육성	312	312	312	
	체험마을 리더 교육	18	18	18	
	농촌체험휴양마을 박람회 참가	12	12	12	
	농촌관광 홍보	66	66	66	
	농촌관광 경쟁력 제고사업	500	500	500	

붙임 2 평가대상 조례

전북특별자치도 농산어촌유학 지원 조례

[시행 2024. 1. 18.] [전북특별자치도조례 제5399호, 2023. 12. 8., 일부개정]

전북특별자치도(교육협력추진단), 063-280-2943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농촌유학의 활성화를 통해 전북특별자치도 지역교육과 문화의 중심지인 지역학교를 유지하고, 주민의 소득 증대와 지역마을 활력에 이바지하면서 도시와 농촌의 상생 발전을 도모하고자 농산어촌 유학생 유치와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3. 12. 8.>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 등이유학”이란 도시에 사는 초·중·고 학생들이 농산어촌에서 일정기간 동안 생활하면서 학교를 다니고 시골살이를 체험하는 것을 말한다.(이하 “농촌유학”이라 한다)
2. “농산어촌유학시설”은 유학생들이 농산어촌유학 활동가의 지도를 받으며 숙식 또는 생활을 하는 장소와 지방자치단체나 마을에서 제공한 유학생 부모가 생활하는 시설을 말한다.(이하 “농촌유학시설”이라 한다)
3. “농산어촌유학 활동가”란 농촌유학 시설에서 유학생의 학교 외 생활을 지원하고, 돌봄 기능을 도와주는 사람을 말한다.(이하 “농촌유학 활동가”이라 한다)

제3조(농촌유학 지원계획 수립) 전북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농촌유학사업을 체계적으로 육성하고 지원하기 위하여 전북특별자치도 농촌유학 육성·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개정 2023. 12. 8.>

제4조(지원대상사업) 도지사는 농촌유학 활성화를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1. 제3조의 지원계획에 반영된 사업
2. 농촌유학 시설 확충사업
3. 농촌유학 프로그램 개발 및 지원 사업
4. 그 밖에 도지사가 농촌유학 사업을 수행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5조(지원센터 운영) <삭제 2016. 9. 30.>

제6조(협의회 구성) ① 도지사는 농촌유학 육성·지원 정책에 대한 심의 및 자문을 위하여 전북특별자치도 농촌유학 협의회(이하“협의회”라 한다)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23. 12. 8.>

② 협의회는 의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의장은 경제부지사가 되고, 부의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개정 2022. 10. 21.>

④ 당연직 위원은 해당 실·국·본부장이 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도지사가 위촉한다. <개정 2019. 12. 31.>

1. 도의장이 추천하는 도의회 의원 1명
2. 도 교육감 추천 1명
3. 아동, 교육 등 관련분야 학계 전문가
4. 농촌유학 분야 연구원
5. 농촌유학 실행지역 주민대표
6. 농촌유학 활동가
7. 기타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7조(협의회 기능)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심의·자문한다.

1. 농촌유학 지원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2. 농촌유학 활성화 사업에 관한 사항
3. 기타 도지사가 요청한 사항 등

제8조(위원의 임기) ①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재직기간으로 하며,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기간으로 한다.

② 도지사는 위촉위원이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로 위원의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해촉할 수 있다.

1. 본인이 해촉을 원하는 경우
2. 해외출장, 질병, 사고 등으로 인하여 6개월 이상 협의회의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9조(회의) ① 협의회 회의는 도지사 또는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와 위원 3분의 1이상의 요구가 있을 경우 회의를 소집한다.

② 심의사항에 대하여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0조(수당 등) 협의회의 회의에 참석한 위원에 대하여는「전북특별자치도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준용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15. 5. 1., 2023. 12. 8.>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06. 전북특별자치도 전입대학생 도서구입비 지원 조례

Ⅰ. 종합의견

< 평가결과 >

□ 평가대상

조 례 명	전북특별자치도 전입대학생 도서구입비 지원 조례		
조례 구분	자치조례	관계 법령	-
제정·시행일	2003. 11. 14. 제정	최근개정·시행일	2023. 12. 8. 개정
소관 부서	교육협력추진단	소관 상임위	기획행정

□ 평가의견

평가항목	평가의견	주요 내용
종합의견	폐지/일반	- 상당 기간 실효성이 없었던 조례이므로 폐지 권고 - 이 조례를 유지하고자 하는 경우 일반 정비 권고
심층분석 결과		- 이 조례와 관련하여 예산을 확보하고 있으나, 2003년 이후 집행 실적이 없으며,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의 학자금 지원의 범위에 교재구입비가 포함되어 있다는 점에서 조례 운영의 실익이 없다는 집행부 의견이 제시됨 - 이 조례와 유사한 조례를 운영하고 있는 대전광역시의 경우 "도서구입비"를 지원하는데 지원의 목적이 지역서점의 생태계 보전과 학생 및 학교 밖 청소년의 독서체험 기회 확대에 있다는 점에서 전북자치도의 조례와 그 지향점이 다름 - 전북자치도의 조례는 인구 감소 대책의 일환으로 전입대학생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고자 하는 목적으로 제정되었다고 할 것임. 전입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도서구입비 지원은 교재구입비와 일맥상통할 것으로 예상되는바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원으로 갈음할 수 있으며, 20년 이상 실효성이 없었다는 점에서 조례의 폐지 권고 ※ 만약, 이 조례를 유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대전광역시의 사례와 같이 "도서구입비"를 지원하도록 개정하고, 그 지원의 목적이 지역서점의 생태계 보전과 학생 및 학교 밖 청소년의 독서체험 기회 확대로 연계되도록 개정하는 방안을 함께 검토할 필요가 있음.
1. 입법 근거 및 적법성	적정	자치사무의 범위에서 적절하게 제정되었음
2. 조례의 실효성	개정	2003년 이후로 지원 실적이 전혀 없어 조례의 실효성이 낮음

3. 조례 내용의 적정성	적정	조례의 목적에 맞도록 규정되어 내용은 적정한 것으로 평가됨
4. 조례의 공평성	적정	장애, 성별, 나이 등에 관한 사회적 편견, 고정관념이 반영된 표현 및 차별 규정 없음
5. 주민 수용성	적정	조례의 체계 및 용어가 주민이 알기 쉽게 되어 있음
6. 전북자치도 현실부합성	개정	전북특별자치도의 현실에 부합하긴 하나, 진행되는 사업이 약 20년간 운영되지 않아 실효성이 떨어짐
7. 위원회 운영의 적정성	-	위원회 운영 관련 규정이 없음
※ 기타 의견	없음	

Ⅱ. 항목별 평가 결과

평가항목	세부항목	척도	의견 및 자료
1. 입법의 근거 및 적법성	1) 위임조례인가 자치사무에 관한 조례인가?	☐ 위임조례 ☑ 자치사무에 관한 조례	
	2) 조례에서 규정하고 있는 위임근거가 올바른가?	☐ 그렇다 ☐ 그렇지않다 ☑ 해당사항 없음	
	3) 조례가 위임범위에서 적절하게 제·개정되었는가?	☐ 그렇다 ☐ 그렇지않다 ☑ 해당사항 없음	
	4) 조례 제.개정 이후 동일 또는 유사한 법령이나 제도가 만들어졌거나 근거법령이 개정 또는 폐지되었는가?	☐ 그렇다 ☐ 그렇지않다 ☑ 해당사항 없음	
	5) 조례에서 주민의 권리제한, 의무부과, 벌칙 부과, 규제사항에 대한 법률위임이 있는가?	☐ 그렇다 ☐ 그렇지않다 ☑ 해당사항 없음	
	6) 상위법령에 위배되는 조항이 있는가?	☐ 그렇다 ☐ 그렇지않다 ☑ 해당사항 없음	
2. 조례의 실효성	1) 조례의 시행과정에서 다른 조례와의 충돌이나 모순이 발생하고 있는가?	☐ 그렇다 ☑ 그렇지않다 ☐ 해당사항 없음	
	2) 이 조례와 유사 또는 동일한 다른 조례가 제정 및 시행되고 있어 통합할 필요가 있는가?	☐ 그렇다 ☑ 그렇지않다 ☐ 해당사항 없음	
	3) 조례에 따른 계획이 수립·시행되고 있는가?	☐ 그렇다 ☐ 그렇지않다 ☑ 해당사항 없음	
	4) 조례에서 집행기관 등에 책무를 부여하고 있는가?	☐ 그렇다 ☑ 그렇지않다 ☐ 해당사항 없음	

평가항목	세부항목	척도	의견 및 자료
	5) 조례에서 부여한 책무와 관련사업을 집행기관이 잘 이행하고 있는가?	□ 그렇다 □ 그렇지않다 ☑ 해당사항 없음	
3. 조례 내용의 적정성	1) 조례에 재정지원 관련 규정이 있는가?	□ 그렇다 □ 그렇지않다 □ 해당사항 없음	-제3조, 제4조
	2) 조례 시행에 필요한 예산 확보와 집행이 잘 이루어지고 있는가?	□ 그렇다 ☑ 그렇지않다 □ 해당사항 없음	
	3) 지원대상이 집행이 가능한 정도로 구체화 되어 있는가?	□ 그렇다 ☑ 그렇지않다 □ 해당사항 없음	
	4) 조례에 따른 위탁사무가 위탁대상으로 적정한가?	□ 그렇다 □ 그렇지않다 ☑ 해당사항 없음	
4. 조례의 공평성	1) 조례에서 장애인, 성별 등의 특정계층이나 특정지역을 차별하는 조항이 있는가?	□ 그렇다 ☑ 그렇지않다 □ 해당사항 없음	
	2) 조례에서 정한 차별이 합리적인가?	□ 그렇다 □ 그렇지않다 ☑ 해당사항 없음	
5. 주민 의견 수용성	1) 조례 제·개정 시 입법예고는 하였는가?	☑ 그렇다 □ 그렇지않다 □ 해당사항 없음	
	2) 조례 제·개정 시 공청회, 세미나 등 이해관계인 및 주민에 대한 의견 수렴 과정이 있었는가?	☑ 그렇다 □ 그렇지않다 □ 해당사항 없음	
	3) 조례와 관련한 민원(청원, 진정, 소송 등)이 제기되거나 개정 또는 폐지 요구가 있었는가?	□ 그렇다 ☑ 그렇지않다 □ 해당사항 없음	
	4) 조례의 체계나 사용 되어진 용어가 주민이 알기 쉽게 되어 있는가?	☑ 그렇다 □ 그렇지않다 □ 해당사항 없음	
6. 위원회 운영의 적정성	1) 조례로 위원회를 구성하도록 되어 있는가?	□ 그렇다 □ 그렇지않다 ☑ 해당사항 없음	

평가항목	세부항목	척도	의견 및 자료
	2) 위원회가 법정위원회인가 조례로 설치하도록 한 위원회인가?	☐ 법정위원회 ☐ 조례로 정한 위원회 ☑ 해당사항 없음	
	3) 위원회 위원의 성별 구성이 적정한가?	☐ 그렇다 ☐ 그렇지않다 ☑ 해당사항 없음	
	4) 위원회가 법령이나 조례에서 정한 회의개최 운영 실적이 있고 관련 회의록을 보존하고 있는가?	☐ 그렇다 ☐ 그렇지않다 ☑ 해당사항 없음	
	5) 위원회를 계속 설치·운영할 필요성이 있는가?	☐ 그렇다 ☐ 그렇지않다 ☑ 해당사항 없음	
	6) 해당 위원회와 유사한 다른 위원회와의 기능적 통합이 필요한가?	☐ 그렇다 ☐ 그렇지않다 ☑ 해당사항 없음	
7. 종합 의견	1) 이 조례를 현행대로 유지할 필요가 있는가?	☐ 그렇다 ☑ 그렇지않다	
	2) 이 조례를 개정할 이유가 있는가? (해당사항 모두 표기)	☐ 위임근거에 불부합 ☐ 위임근거 불명확 ☐ 법령의 위임 없는 규제 정비 필요 ☐ 다른 조례와의 상충 및 모순 ☐ 조례 시행의 문제점 발생 ☐ 조례의 공평성 문제 ☑ 알기 쉬운 법령정비 기준에 따른 정비 필요 ☐ 위원회 관련 규정개정 필요 ☐ 그 밖의 사유	
	3) 이 조례를 폐지할 사유가 있는가? (해당사항 모두 표기)	☐ 다른 유사한 조례와의 통합 운영 필요성 ☐ 조례 시행 불가능 ☑ 최근 3년간 조례 관련 운영 실적 전무 ☐ 기타	
	4) 그 밖의 이 조례와 관련된 의견이 있는가?	☐ 있다 ☐ 없다	

Ⅲ. 세부내용

조례명	전북특별자치도 전입대학생 도서구입비 지원 조례

■ 소관 부서 의견(팀)

○ **최종의견 : 수년간 조례 운영 실적 전무하여 조례를 폐지해야 함**

○ **내용**

- (3-1) 조례 제3조에 따라 2003년 재정지원을 실시함
- (3-3) 2003년 전라북도 전입대학생 도서구입비 지원에 20,000 천원을 확보하여 전액 집행함. 이후 지원의 실효성이 부족하여 예산을 확보하지 않음
- (6-1) 인구유입 정책 요인으로 실효성이 떨어져 전북특별자치도 현실과 부합하지 않음
- (8-1) 해당 조례는 제정된 2003년 이후 도서구입비 지원사업이 실행된 사례가 없고, 조례 제정 당시(2003년)와 달리 현재는 도서구입비 지원이 전입 대학생의 생활안정에 필수적 요인으로 작용하지 않으며, 실효성이 없는 조례를 유지하기보다는 실질적인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는 편이 효율적으로 조례를 유지할 필요가 없음

■ 종합의견	폐지 권고/일반 정비

◎ 입법평가 세부의견

○ **평가항목별 검토**

평가항목	평가항목별 검토 내용
1. 입법 근거 및 적법성	자치사무의 범위에서 적절하게 제정되었음
2. 조례의 실효성	2003년 이후로 지원 실적이 전혀 없어 조례의 실효성이 낮음
3. 조례 내용의 적정성	조례의 목적에 맞도록 규정되어 내용은 적정한 것으로 평가됨
4. 조례의 공평성	장애, 성별, 나이 등에 관한 사회적 편견, 고정관념이 반영된 표현 및 차별 규정 없음
5. 주민 수용성	조례의 체계 및 용어가 주민이 알기 쉽게 되어 있음
6. 전북자치도 현실부합성	전북특별자치도의 현실에 부합하긴 하나, 진행되는 사업이 약 20년간 없는 하자가 존재함
7. 위원회 운영의 적정성	위원회 운영 관련 규정이 없음
※ 기타 의견	없음

○ **연도별 사업내용 및 예산/집행액**

(단위: 천원)

연도	사업명	필요예산	확보예산	집행액	집행내역
2003	전라북도 전입대학생 도서구입비 지원	20,000	20,000		도서구입비

○ **조례의 입법목적 달성도 또는 부수효과 분석**

- 조례 목적달성도 평가
  - 조례 제정 후 21년간 지원 실적이 없어 조례 목적달성도가 낮음
- 부수효과
  - 조례의 실효성이 떨어져 조례로 인한 부수효과를 판단하기 어려움

○ **타 시·도 유사 조례와 비교 또는 타 시·도 자치법규(정책) 동향**

전북특별자치도 전입대학생 도서구입비 지원 조례	**대전광역시 도서구입비 지원 조례**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제2조(지급자격)	제2조(정의)
제3조(지원금액)	제3조(책무)
제4조(도서구입비의 신청)	제4조(지원)
제5조(지원결정)	**제5조(환수)**
제6조(지급방법 및 시기)	
제7조(예산조치)	

- 타 시·도 조례에는 전입대학생의 도서구입비 지원에 관한 조례가 없으며, 대전광역시의 경우 도서구입비 지원 조례를 운영 중임
- 대전광역시 조례에서는 환수조치와 관련한 규정을 두어 지원자격을 위반하여 지원받았거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받은 경우 지원액 환수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함

Ⅳ. 개정의견

현 행	개정안	비고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전북특별자치도 인구 늘리기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도내 대학(교)에 재학중인 타 시·도 출신 대학생들이 도내로 주민등록을 이전한 경우, 도서구입비 지원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전북특별자치도 인구 늘리기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전북특별자치도 내 대학(교)에 재학 중인 타 시·도 출신 대학생들이 도 내로 주민등록을 이전한 경우 도서구입비를 지원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약칭 없이 사용한 "전북특별자치도" 정비 및 띄어쓰기 정비 권고 -문장 표현 정비 권고
제2조(지급자격) 타 시·도에서 전북특별자치도내의 대학(교)에 재학중인 대학생으로서 매년 12월1일 현재 도내로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대학생에 한 한다.	제2조(지급자격) 타 시·도에서 전입한 사람으로 전북특별자치도 내의 대학(교)에 재학 중인 대학생으로서 매년 12월1일 현재 도 내에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대학생에 한한다.	-띄어쓰기 정비, 문장 정비 권고
제3조(지원금액) 도서구입비 지원금액은 예산 범위내에서 결정하여 지급한다.	제3조(지원금액) 도서구입비 지원금액은 예산의 범위에서 결정하여 지급한다.	-문장 표현 정비 권고
제5조(지원결정) 도서구입비 지원 신청을 접수받아 대학(교)의 재학 여부와 타시·도에서 도내로 주민등록을 이전하였는지를 파악하여 결정한 후, 신청자에게 결정된 사항을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자의 수가 예산 범위내를 초과되는 경우에는 접수된 순으로 지원자를 선정한다.	제5조(지원결정) 도지사는 도서구입비 지원 신청을 접수받아 대학(교)의 재학 여부와 타 시·도에서 전북특별자치도 내로 주민등록을 이전하였는지를 파악하여 결정한 후, 신청자에게 결정된 사항을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자의 수가 예산의 범위를 초과되는 경우에는 접수된 순으로 지원자를 선정한다.	-지원결정의 주체를 도시자로 규정하도록 정비 권고 -약칭하지 않은 용어 정비 및 띄어쓰기 정비 권고

심층분석 관련 검토

○ **심층분석 사유**

- 상당한 기간 집행실적이 없어 실효성에 의문이 있는 조례로 폐지 검토를 권고함

○ **심층분석**

- 예산을 확보하고 있으나, 2003년 이후 집행 실적이 없으며,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의 학자금 지원의 범위에 교재구입비가 포함되어 있다는 점에서 조례 운영의 실익이 없다는 집행부 의견이 제시됨

>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
> 제4조(학자금 지원의 범위) 대학생에게 지원되는 학자금의 범위는 등록금과 숙식비·교재구입비·어학연수비 및 교통비 등의 생활비로 한다. 다만, 제2조제1호나목에 따른 학자금 지원의 범위는 학업장려금 등으로서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이 조례와 유사한 조례를 운영하고 있는 대전광역시의 경우 "도서구입비"를 지원하는데 지원의 목적이 지역서점의 생태계 보전과 학생 및 학교 밖 청소년의 독서체험 기회 확대에 있다는 점에서 전북자치도의 조례와 그 지향점이 다름
- 전북자치도의 조례는 인구 감소 대책의 일환으로 전입대학생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고자 하는 목적으로 제정되었다고 할 것임. 전입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도서구입비 지원은 교재구입비와 일맥상통할 것으로 예상되는바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원으로 갈음할 수 있으며, 20년 이상 실효성이 없었다는 점에서 조례의 폐지 권고

※ 만약, 이 조례를 유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개정의견에서 제시한 일반정비 외에 대전광역시의 사례와 같이 "도서구입비"를 지원하도록 개정하고, 그 지원의 목적이 지역서점의 생태계 보전과 학생 및 학교 밖 청소년의 독서체험 기회 확대로 연계되도록 개정하는 방안을 함께 검토할 필요가 있음.

□ 참고자료 1 – 위원회 관련 실적

○ 구성

- 위원회 관련 규정 없음

○ 개최 실적

- 해당사항 없음

붙임 1 사업 관련 추진실적

□ 연도별 사업 및 예산 집행 실적

○ 2003년 이후 예산 확보 및 집행실적 없음

- 예산은 확보하였으나, 집행 실적이 없음

(단위: 천원)

연도	사업명	필요예산	확보예산	집행액	집행내역
2003	전라북도 전입대학생 도서 구입비 지원	20,000	20,000		도서구입비

붙임 2 평가대상 조례

전북특별자치도 전입대학생 도서구입비 지원 조례

[시행 2024. 1. 18.] [전북특별자치도조례 제5399호, 2023. 12. 8., 일부개정]

전북특별자치도(교육협력추진단), 063-280-472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전북특별자치도 인구 늘리기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도내 대학(교)에 재학중인 타 시·도 출신 대학생들이 도내로 주민등록을 이전한 경우, 도서구입비 지원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3. 12. 8.>

제2조(지급자격) 타 시·도에서 전북특별자치도내의 대학(교)에 재학중인 대학생으로서 매년 12월1일 현재 도내로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대학생에 한 한다.<개정 2023. 12. 8.>

제3조(지원금액) 도서구입비 지원금액은 예산 범위내에서 결정하여 지급한다.

제4조(도서구입비의 신청) 도서구입비를 지원 받고자 하는 대학생은 재학증명서와 본인의 통장사본을 전북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23. 12. 8.>

제5조(지원결정) 도서구입비 지원 신청을 접수받아 대학(교)의 재학 여부와 타시·도에서 도내로 주민등록을 이전하였는지를 파악하여 결정한 후, 신청자에게 결정된 사항을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자의 수가 예산범위내를 초과되는 경우에는 접수된 순으로 지원자를 선정한다.

제6조(지급방법 및 시기) 도서구입비의 지급은 본인이 직접 수령하거나 본인계좌로 입금할 수 있으며, 지급시기 등에 관한 사항은 도지사가 결정한다.

제7조(예산조치) 소요예산은 재정형편을 고려하여 매년 도비로 확보한다.<개정 2022. 11. 4.>

07. 전북특별자치도 출향도민 교류 및 지원에 관한 조례

Ⅰ. 종합의견

< 평가결과 >

□ 평가대상

조 례 명	전북특별자치도 출향도민 교류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구분	자치조례	관계 법령	-
제정·시행일	2015. 10. 12. 제정	최근개정·시행일	2023. 12. 8. 개정
소관 부서	대외협력과	소관 상임위	기획행정

□ 평가의견

평가항목	평가의견	주요 내용
종합의견	개정/일반	- 띄어쓰기 정비 등 일반 정비 검토 - 타 시·도의 사례를 참고하여 출향도민회 등 규정 신설 검토
심층분석 결과		- 타 시·도 사례의 구성체계를 살펴보면 전북자치도의 고향사랑명예대사 위촉과 전라남도 사랑애 서포터즈 구성 및 운영 등은 사실상 같은 규정으로 보임. 도입을 검토할 수 있는 조항은 입장료 감면 규정이 있음. 입장료 감면 규정을 도입하기 위하여 전북도민증 발급을 함께 검토할 필요가 있음. 관련 개정안을 제안함
1. 입법 근거 및 적법성	적정	자치사무의 범위에서 적절하게 제정되었음
2. 조례의 실효성	적정	출향도민단체에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통해 조례의 실효성을 확보하고 있음
3. 조례 내용의 적정성	적정	조례에서 규정하고 있는 재정지원이 적절하게 이루어지고 있음
4. 조례의 공평성	적정	장애, 성별, 나이 등에 관한 사회적 편견, 고정관념이 반영된 표현 및 차별 규정 없음
5. 주민 수용성	적정	조례의 체계 및 용어가 주민이 알기 쉽게 되어 있음
6. 전북자치도 현실 부합성	적정	전북특별자치도 출신으로 출향한 출향도민을 지원하기위하여 제정된 본 조례는 행정수요를 반영하고 있어 전북특별자치도 현실에 부합함
7. 위원회 운영의 적정성	-	위원회 운영 관련 규정이 없음
※ 기타 의견	없음	

Ⅱ. 항목별 평가 결과

평가항목	세부항목	척도	의견 및 자료
1. 입법의 근거 및 적법성	1) 위임조례인가 자치사무에 관한 조례인가?	☐ 위임조례 ☑ 자치사무에 관한 조례	
	2) 조례에서 규정하고 있는 위임근거가 올바른가?	☐ 그렇다 ☐ 그렇지않다 ☑ 해당사항 없음	
	3) 조례가 위임범위에서 적절하게 제·개정되었는가?	☐ 그렇다 ☐ 그렇지않다 ☑ 해당사항 없음	
	4) 조례 제.개정 이후 동일 또는 유사한 법령이나 제도가 만들어졌거나 근거법령이 개정 또는 폐지되었는가?	☐ 그렇다 ☐ 그렇지않다 ☑ 해당사항 없음	
	5) 조례에서 주민의 권리제한, 의무부과, 벌칙 부과, 규제사항에 대한 법률위임이 있는가?	☐ 그렇다 ☐ 그렇지않다 ☑ 해당사항 없음	
	6) 상위법령에 위배되는 조항이 있는가?	☐ 그렇다 ☐ 그렇지않다 ☑ 해당사항 없음	
2. 조례의 실효성	1) 조례의 시행과정에서 다른 조례와의 충돌이나 모순이 발생하고 있는가?	☐ 그렇다 ☑ 그렇지않다 ☐ 해당사항 없음	
	2) 이 조례와 유사 또는 동일한 다른 조례가 제정 및 시행되고 있어 통합할 필요가 있는가?	☐ 그렇다 ☑ 그렇지않다 ☐ 해당사항 없음	
	3) 조례에 따른 계획이 수립·시행되고 있는가?	☐ 그렇다 ☐ 그렇지않다 ☑ 해당사항 없음	
	4) 조례에서 집행기관 등에 책무를 부여하고 있는가?	☑ 그렇다 ☐ 그렇지않다 ☐ 해당사항 없음	-제3조

평가항목	세부항목	척도	의견 및 자료
	5) 조례에서 부여한 책무와 관련사업을 집행기관이 잘 이행하고 있는가?	☑ 그렇다 ☐ 그렇지않다 ☐ 해당사항 없음	
3. 조례 내용의 적정성	1) 조례에 재정지원 관련 규정이 있는가?	☑ 그렇다 ☐ 그렇지않다 ☐ 해당사항 없음	-제4조
	2) 조례 시행에 필요한 예산 확보와 집행이 잘 이루어지고 있는가?	☑ 그렇다 ☐ 그렇지않다 ☐ 해당사항 없음	
	3) 지원대상이 집행이 가능한 정도로 구체화 되어 있는가?	☑ 그렇다 ☐ 그렇지않다 ☐ 해당사항 없음	
	4) 조례에 따른 위탁사무가 위탁대상으로 적정한가?	☐ 그렇다 ☐ 그렇지않다 ☑ 해당사항 없음	
4. 조례의 공평성	1) 조례에서 장애인, 성별 등의 특정계층이나 특정지역을 차별하는 조항이 있는가?	☐ 그렇다 ☑ 그렇지않다 ☐ 해당사항 없음	
	2) 조례에서 정한 차별이 합리적인가?	☐ 그렇다 ☐ 그렇지않다 ☑ 해당사항 없음	
5. 주민 의견 수용성	1) 조례 제·개정 시 입법예고는 하였는가?	☑ 그렇다 ☐ 그렇지않다 ☐ 해당사항 없음	
	2) 조례 제·개정 시 공청회, 세미나 등 이해관계인 및 주민에 대한 의견 수렴 과정이 있었는가?	☐ 그렇다 ☐ 그렇지않다 ☑ 해당사항 없음	
	3) 조례와 관련한 민원(청원, 진정, 소송 등)이 제기되거나 개정 또는 폐지 요구가 있었는가?	☐ 그렇다 ☐ 그렇지않다 ☑ 해당사항 없음	
	4) 조례의 체계나 사용 되어진 용어가 주민이 알기 쉽게 되어 있는가?	☑ 그렇다 ☐ 그렇지않다 ☐ 해당사항 없음	
6. 위원회 운영의 적정성	1) 조례로 위원회를 구성하도록 되어 있는가?	☐ 그렇다 ☑ 그렇지않다 ☐ 해당사항 없음	

평가항목	세부항목	척도	의견 및 자료
	2) 위원회가 법정위원회인가 조례로 설치하도록 한 위원회인가?	☐ 법정위원회 ☐ 조례로 정한 위원회 ☑ 해당사항 없음	
	3) 위원회 위원의 성별 구성이 적정한가?	☐ 그렇다 ☐ 그렇지않다 ☑ 해당사항 없음	
	4) 위원회가 법령이나 조례에서 정한 회의개최 운영 실적이 있고 관련 회의록을 보존하고 있는가?	☐ 그렇다 ☐ 그렇지않다 ☑ 해당사항 없음	
	5) 위원회를 계속 설치·운영할 필요성이 있는가?	☐ 그렇다 ☐ 그렇지않다 ☑ 해당사항 없음	
	6) 해당 위원회와 유사한 다른 위원회와의 기능적 통합이 필요한가?	☐ 그렇다 ☐ 그렇지않다 ☑ 해당사항 없음	
7. 종합 의견	1) 이 조례를 현행대로 유지할 필요가 있는가?	☑ 그렇다 ☐ 그렇지않다	
	2) 이 조례를 개정할 이유가 있는가? (해당사항 모두 표기)	☐ 위임근거에 불부합 ☐ 위임근거 불명확 ☐ 법령의 위임 없는 규제 정비 필요 ☐ 다른 조례와의 상충 및 모순 ☐ 조례 시행의 문제점 발생 ☐ 조례의 공평성 문제 ☑ 알기 쉬운 법령정비 기준에 따른 정비 필요 ☐ 위원회 관련 규정개정 필요 ☑ 그 밖의 사유	-규정 신설 필요
	3) 이 조례를 폐지할 사유가 있는가? (해당사항 모두 표기)	☐ 다른 유사한 조례와의 통합 운영 필요성 ☐ 조례 시행 불가능 ☐ 최근 3년간 조례 관련 운영 실적 전무 ☐ 기타	
	4) 그 밖의 이 조례와 관련된 의견이 있는가?	☐ 있다 ☐ 없다	

Ⅲ. 세부내용

조례명	전북특별자치도 출향도민 교류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소관 부서 의견(팀)

○ **최종의견 : 출향도민 상호간의 친목도모와 애향심과 자긍심 고취를 위해 출향도민단체에 지속적인 관리 및 재정적 지원이 필요로 되며 조례 유지를 통해 예산 확보와 도정 동반자적 협력 관계로 발전하는데 기여하여 조례의 유지가 필요함**

○ **내용**

- (2-3) 조례 내용에 따라 도정 발전 출향도민 홍보 계획과 출향단체 활성화 추진계획을 수립함
- (2-4) 조례 내용에 따라 관련 사업을 진행함
- (3-1) 조례 제4조에 따라 도민의 날 출향도민 초청 행사(35,500천원), 출향도민 소통 활성화 지원(63,500천원), 도정 발전 출향도민 홍보 추진(30,000천원) 사업을 실시함
- (3-2) 조례 제1조와 제4조에 따라 규정된 지원사업이 적정함
- (3-3) 조례 제4조에 따라 2022년부터 2024년까지 아래와 같이 예산을 확보하고 집행함

■ 종합의견	개정 권고/일반 정비

◎ 입법평가 세부의견

○ **평가항목별 검토**

평가항목	평가항목별 검토 내용
1. 입법 근거 및 적법성	자치사무의 범위에서 적절하게 제정되었음
2. 조례의 실효성	출향도민단체에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통해 조례의 실효성을 확보하고 있음
3. 조례 내용의 적정성	조례에서 규정하고 있는 재정지원이 적절하게 이루어지고 있음
4. 조례의 공평성	장애, 성별, 나이 등에 관한 사회적 편견, 고정관념이 반영된 표현 및 차별 규정 없음
5. 주민 수용성	조례의 체계 및 용어가 주민이 알기 쉽게 되어 있음
6. 전북자치도 현실부합성	전북특별자치도 출신으로 출향한 출향도민을 지원하기위하여 제정된 본 조례는 행정수요를 반영하고 있어 전북특별자치도 현실에 부합함
7. 위원회 운영의 적정성	위원회 운영 관련 규정이 없음
※ 기타 의견	없음

○ **연도별 사업내용 및 예산/집행액** (단위: 천원)

연도	사업명	필요예산	확보예산	집행액	집행내역
2022	출향도민 소통 활성화 지원사업	20,000	20,000	20,000	고향방문 행사 지원 및 간담회
	도민의 날 출향도민 초청행사	30,000	20,000	20,000	출향도민 초청 행사 실시
2023	출향도민 소통 활성화 지원사업	60,000	60,000	60,000	고향방문 행사 지원 및 간담회
	도민의 날 출향도민 초청행사	35,500	35,500	33,657	출향도민 초청 행사 실시
	도정 발전 출향도민 홍보 추진	20,000	20,000	20,000	출향단체 도민회보를 통한 도정 홍보
2024	출향도민 소통 활성화 지원사업	63,500	63,500	-	고향방문 행사 지원 및 간담회
	도민의 날 출향도민 초청행사	35,500	35,500	-	출향도민 초청 행사 실시
	도정 발전 출향도민 홍보 추진	30,000	30,000	-	출향단체 도민회보를 통한 도정 홍보

○ **조례의 입법목적 달성도 또는 부수효과 분석**

- 조례 목적달성도 평가
  - 수년간 조례 내용에 따라 출향도민을 위한 사업을 수행하고 있다는 점에서 조례 목적이 충분히 달성되고 있음
- 부수효과
  - 출향도민들의 애향심을 고취함과 동시에 경제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음

○ **타 시·도 유사 조례와 비교 또는 타 시·도 자치법규(정책) 동향**

전북특별자치도 출향도민 교류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충청남도 출향도민 교류·협력 등에 관한 조례**	**경상북도 출향도민 지원에 관한 조례**	**전라남도 출향도민 교류와 지원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제3조(도지사의 책무)	제3조(도지사의 책무)	**제3조(출향도민의 권리)**	**제3조(출향도민의 권리)**
제4조(지원사업)	**제4조(출향도민회의 책무)**	제4조(도지사의 책무)	제4조(도지사의 책무)
제5조(고향사랑명예대사 위촉)	**제5조(교류·협력 사업)**	**제5조(출향도민회의 책무)**	제5조(지원사업)
	제6조(사업의 지원)	제6조(지원)	제6조(전남사랑도민증 발급 등)

	제7조(포상)	**제7조(포상)**	제7조(전남사랑애 서포터즈 구성 및 운영 등)
	제8조(시행규칙)	제8조(시행규칙)	제8조(공공시설의 입장료 감면 등 지원)
			제9조(사업의 위탁)
			제10조(포상)
			제11조(시행규칙)

- 충청남도와 경상북도, 전라남도 조례에서는 출향도민회를 구성하고 책무를 부여하며 포상을 실시해 출향도민회가 실질적으로 활동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함

Ⅳ. 개정의견

현 행	개정안	비고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내에 거주하는 출향도민 상호간의 친목도모와 권익신장 및 역량결집에 필요한 지원방안을 마련함으로써 출향도민들의 애향심과 자긍심을 고취함은 물론 전북특별자치도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내에 거주하는 전북특별자치도 출향도민 상호간의 친목도모와 권익신장 및 역량결집에 필요한 지원방안을 마련함으로써 출향도민들의 애향심과 자긍심을 고취함은 물론 전북특별자치도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북특별자치도 출향도민"으로 명확하게 규정하도록 정비 권고 -띄어쓰기 정비 권고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출향도민"이란 전북특별자치도(이하 "전북자치도"라 한다) 출신으로 전북자치도를 제외한 국내에 거주하는 사람을 말한다. 2. "교류사업"이란 전북자치도와 출향도민간 상호 친선 우호 및 전북자치도 발전에 대한 공동관심 사항의 교류협력을 말한다. <신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출향도민"이란 전북특별자치도(이하 "전북자치도"라 한다) 출신으로 전북자치도를 제외한 국내에 거주하는 사람을 말한다. 2. "교류사업"이란 전북자치도와 출향도민 간 상호 친선 우호 및 전북자치도 발전에 대한 공동관심 사항의 교류협력을 말한다. 3. "출향도민회"란 출향도민 상호간 우의와 친목도모 및 전북자치도민과의 교류와 협력을 목적으로 구성된 단체를 말하며 국내외의 향우회를 포함한다.	-제2호: 띄어쓰기 정비 권고 -제3호: 타 시·도의 사례를 참고하여 "출향도민회" 규정 신설 권고
<신설>	제3조의2(출향도민회의 책무) 출향도민회는 전북자치도의 발전을 위하여 노력해야 하며 도정 시책에 적극 참여하고 협력하여야 한다.	-타 시·도의 사례를 참고하여 출향도민회의 책무 규정 신설 권고
제5조(고향사랑명예대사 위촉) ① 도	제5조(고향사랑명예대사 위촉) ① 도	-행정기관의 고유명칭

현 행	개정안	비고
지사는 애향심과 덕망을 갖추고 아래의 임무를 수행할 수 있다고 판단되는 출향도민 중 고향사랑명예대사(이하 "명예대사"라 한다)를 위촉할 수 있다. ② 이하 생략	지사는 애향심과 덕망을 갖추고 다음 각 호의 임무를 수행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출향도민 중에서 전북특별자치도 고향사랑명예대사(이하 "명예대사"라 한다)를 위촉할 수 있다. ② 이하 현행과 같음	을 표기하여야 타 시·도와 구별할 수 있음
<신설>	제6조(전북자치도민증의 발급 및 공공시설의 입장료 감면) ① 도지사는 가족관계등록부에 따른 전북자치도에 등록기준지를 둔적이 있거나 종전에 전북자치도민이었음을 입증한 사람에게 전북특별자치도민증(이하 "전북자치도민증"이라 한다)을 발급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전북자치도민증을 발급받은 사람 또는 명예대사 등에게 전북자치도 및 시·군에서 설치·관리하고 있는 시설의 입장료·사용료 전부 또는 일부 감면할 수 있다.	-출향민에게 ① 전북자치도민증을 발급하여 애향심을 키우고, ② 그들에게 최소한의 혜택(입장료 감면)을 제공하는 규정 신설 권고
<신설>	제7조(포상) 도지사는 전북자치도의 발전 및 출향도민회 등 활성화에 이바지한 공로가 크다고 인정되는 출향도민에게 포상할 수 있다.	-타 시·도의 사례를 참고하여 포상 규정 신설 권고

심층분석 관련 검토

○ **심층분석 사유**

- 제2조, 제3조의2: 타 시·도의 사례를 참고하여 출향도민회 관련 규정 신설 검토
- 제6조: 타 시·도의 사례를 참고하여 전북자치도민증 발급과 관련된 규정 신설 검토
- 제7조: 타 시·도의 사례를 참고하여 포상규정 신설 검토

○ **심층분석**

- 광역자치단체를 기준으로 출향도민 지원 조례를 운영하고 있는 경우는 강원특별자치도, 경상남도, 경상북도, 전라남도, 전북특별자치도, 충청남도, 광주광역시로 7개임. 광역자치단체의 출향도민(출향인) 지원 조례의 구성체계를 살펴보면 아래와 같음

전북특별자치도 출향도민 교류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충청남도 출향도민 교류·협력 등에 관한 조례**	**경상북도 출향도민 지원에 관한 조례**	**전라남도 출향도민 교류와 지원에 관한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출향도민 지원에 관한 조례**	**경상남도 출향도민 지원에 관한 조례**	**광주광역시 출향인 교류·협력 및 지원 조례**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제3조(도지사의 책무)	제3조(도지사의 책무)	제3조(출향도민의 권리)	제3조(출향도민의 권리)	제3조(출향도민의 권리)	제3조(출향도민의 권리)	제3조(시장의 책무)
제4조(지원사업)	제4조(출향도민회의 책무)	제4조(도지사의 책무)	제4조(도지사의 책무)	제4조(도지사의 책무)	제4조(도지사의 책무)	제4조(교류·협력사업)
제5조(고향사랑명예대사 위촉)	제5조(교류·협력 사업)	제5조(출향도민회의 책무)	제5조(지원사업)	제5조(출향도민회 구성)	제5조(출향도민회의 책무)	제5조(재정지원)
	제6조(사업의 지원)	제6조(지원)	**제6조(전남사랑도민증 발급 등)**	제6조(출향도민회의 책무)	제6조(지원)	제6조(사업의 위탁)
	제7조(포상)	제7조(포상)	제7조(전남사랑애 서포터즈 구성 및 운영 등)	제7조(지원대상 및 범위)	제7조(포상)	제7조(포상)
	제8조(시행규칙)	제8조(시행규칙)	**제8조(공공시설의 입장료 감면 등 지원)**	제7조의2(보조금 지원)	제8조(준용규정)	제8조(시행규칙)
			제9조(사업의 위탁)	**제8조(출향강원도민증 발급대상)**	제9조(시행규칙)	
			제10조(포상)	**제9조(출향강원특별자**		

				치도민증 발급절차)		
			제11조(시행규칙)	**제10조(출향강원특별자치도민증 서식 등)**		
				제11조(출향강원특별자치도민증 발급 취소)		
				제12조(유료시설의 입장료 감면 등 지원)		
				제13조(시행규칙)		

- 위의 구성체계를 살펴보면 전북자치도의 고향사랑명예대사 위촉과 전라남도 사랑애 서포터즈 구성 및 운영 등은 사실상 같은 규정으로 보임. 도입을 검토할 수 있는 조항은 입장료 감면 규정이 있음. 입장료 감면 규정을 도입하기 위하여 전북도민증 발급을 함께 검토할 필요가 있음. 관련된 세부적인 규정은 아래와 같음

-	**전라남도 출향도민 교류와 지원에 관한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출향도민 지원에 관한 조례**
도민증 발급 규정	제6조(전남사랑도민증 발급 등) ① 도지사는 제2조에 따른 출향도민의 요건을 갖추고 전남사랑도민증(이하 "전남도민증"이라 한다)의 발급을 신청한 사람에게 전남도민증을 발급할 수 있다.	제8조(출향강원도민증 발급대상) 도지사는 제2조 제1호에 따른 출향도민의 요건을 갖추고 신청한 사람에게 출향강원도민증(이하 "출향도민증"이라 한다)을 발급할 수 있다. 제9조(출향강원특별자치도민증 발급절차) ① 출향강원특별자치도민증을 발급받으려는 출향도민은 별지 제1호서식의 신청서에 별지 제2호서식인 출향강원특별자치도민회원 확인서 등 관련서류를 첨부하여 도지사에게 제출한다. ② 출향도민회는 소속 회원이 제2조제1호에 따른 요건을 갖추었는지 확인 후 출향도민회원 확인서를 발급할 수 있다. ③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출향도민증 발급을 신청 받은 때에는 제8조에 따른 출향도민증 발급 대상에 적합한 경우 출향도민증을 발급한다. ④ 도지사는 제3항의 업무를 강원특별자치도민회중앙회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제10조(출향강원특별자치도민증 서식 등) ① 제9조에 따른 출향도민증의 규격·제식 및 기재사항은 별표 1에 따른다. ② 도지사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출향도민증 발급대장을 작성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제11조(출향강원특별자치도민증 발급 취소) 도지사는 출향도민증을 발급 받은 사람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8조에 따른 발급을 받은 경우에는 그 발급을 취소할 수 있다.
유료시설의 입장료 감면 등 지원	제6조(전남사랑도민증 발급 등) ② 도지사는 전남도민증을 발급받은 사람에게 편의 및 혜택을 제공하기 위해 다음 각 호의 시설을 운영하는 자와 상호 업무협약 등을 통해 할인가맹점으로 지정할 수 있다. 1. 도 및 시·군에서 설치·운영하거나 위탁하는 시설 2. 도내 관광 관련 민간시설(숙박·레저·교통 관련시설이나 음식점 등을 말한다) 3. 지역특산품 및 농수축산물 관련 온·오프라인 판매시설 4. 그 밖에 출향도민의 이용수요가 높은 각종 유료시설 등 ③ 도지사는 제2항에 따른 할인가맹점에 다음 각 호의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예산의 범위에서 할 수 있다. 1. 할인가맹점 안내 및 홍보 2. 할인가맹점이 출향도민을 위해 제공하는 각종 혜택 3. 그 밖에 도지사가 출향도민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2조(유료시설의 입장료 감면 등 지원) 도지사는 출향도민증을 발급받은 사람에게 강원특별자치도 및 시·군에서 설치·관리하고 있는 시설의 입장료 감면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 이와 관련하여 기 제시된 개정의견에서 개정안에 반영하여 제안함

□ 참고자료 1 – 위원회 관련 실적

○ 구성

- 위원회 규정 없음

○ 개최 실적

- 해당사항 없음

□ 참고자료 2 – 조례 관련 보도 자료

○ 보도자료 1

이수진 도의원, 출향도민 교류 및 지원사업의 적정성과 형평성 제고 촉구, 전북교육신문[15)]

> 전북특별자치도의회 기획행정위원회 이수진 도의원(국민의힘·비례)은 18일 제412회 임시회에서 대외국제소통국 업무보고를 통해 "전북특별자치도 출향도민 교류 및 지원사업의 적정성과 형평성이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
> 이 의원은 "'전북특별자치도 출향도민 교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적정성과 형평성을 높여야 한다"고 밝혔다.
>
> 조례 제4조에는 출향도민 교류 활성화를 위한 법인 또는 단체에 예산 범위 내에서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으나, 실제로는 매년 동일한 단체만 지원을 받고 있는 상황이다.
>
> 이 의원은 "지원사업의 종류가 다양하고 보조금 규모가 큰 만큼, 사업의 적정성을 면밀히 검토하고 법인 또는 단체 선정이 형평성 있게 이루어져야 한다"며, "이를 통해 지원사업의 신뢰성과 효과성을 높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15) https://www.jben.kr/liguard_bbs/view.php?number=26650

○ **보도자료 2**

전북특별자치도, 도민의 날 맞아 출향 도민 초청해 고향의 정 나눠, 굿모닝전북신문[16)]

| 고향을 떠나도 변함없는 애향심, 도민의 날로 다시 하나되다



↑↑ 전북특별자치도, 도민의 날 맞아 출향 도민 초청해 고향의 정 나눠

[굿모닝전북=오운석기자]전북특별자치도는 '제 44회 도민의 날'을 맞아 24일부터 25일까지 이틀간 39개 출향 단체 소속 출향 도민 130여 명을 초청해 고향의 정을 나누는 뜻깊은 행사를 성대하게 개최했다.

이번 행사는 고향을 떠나 생활하고 있는 출향 도민들의 애향심을 고취하고, 도정과의 유대를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첫날인 24일, 전국 각지에서 모인 출향 도민들은 대둔산의 아름다운 가을 풍경을 감상하며 고향의 정취를 느꼈다. 이후 전북에서 처음 개최된 `제22차 세계한인비즈니스대회`를 방문해 기업 전시관과 농특산물 홍보관을 둘러보는 시간을 가졌다.

김관영 전북특별자치도지사는 현장에서 "출향 도민 여러분의 지속적인 응원이 있었기에 세계한인비즈니스대회를 성공적으로 유치할 수 있었다"며, "앞으로도 전북의 도약을 위해 함께 힘을 모아달라"고 감사의 뜻을 전했다.

이어진 만찬 자리에서는 김종훈 경제부지사와 문승우 전북도의장 등이 참석해 출향 도민들과 깊은 교감을 나눴다.

김종훈 경제부지사는 "고향을 떠나서도 전북을 잊지 않고 지켜봐 주시는 출향 도민들에게 감사드린다" 며, "전북특별자치도의 성장에 기여할 수 있도록 힘쓰겠다"고 말했다.

특히 이번 행사에서는 재경전북특별자치도민회가 지난달에 이어 진행한 '고향사랑기부챌린지'를 통해 고액 기부를 이어가며, 고향에 대한 사랑을 몸소 실천하는 의미 있는 시간을 가졌다.

둘째 날인 25일에는 출향 도민들이 완주 로컬푸드 매장과 도립미술관 등 전북의 주요 관광지를 방문한 후, '제44주년 도민의 날 기념식'에 참석해 고향에 대한 자부심과 애정을 함께 나누었다.

윤석정 전북애향본부 총재는 "이번 행사를 통해 출향 도민들의 깊은 애향심을 느낄 수 있었다"며, "고향 전북은 언제나 출향 도민들을 기다리고 있다"고 말했다.

16) http://www.gmjbnews.com/news/view.php?idx=18970

붙임 1 사업 관련 추진실적

□ 연도별 사업 및 예산 집행 실적

○ 제4조(지원사업)

- 예산 확보 및 집행 현황 (단위: 천원)

연도	사업명	필요예산	확보예산	집행액	집행내역
2022	출향도민 소통 활성화 지원사업	20,000	20,000	20,000	고향방문 행사 지원 및 간담회
	도민의 날 출향도민 초청행사	30,000	20,000	20,000	출향 도민 초청 행사 실시
2023	출향도민 소통 활성화 지원사업	60,000	60,000	60,000	고향방문 행사 지원 및 간담회
	도민의 날 출향도민 초청행사	35,500	35,500	33,657	출향도민 초청 행사 실시
	도정 발전 출향도민 홍보 추진	20,000	20,000	20,000	출향단체 도민회보를 통한 도정 홍보
2024	출향도민 소통 활성화 지원사업	63,500	63,500		고향방문 행사 지원 및 간담회
	도민의 날 출향도민 초청행사	35,500	35,500		출향도민 초청 행사 실시
	도정 발전 출향도민 홍보 추진	30,000	30,000		출향단체 도민회보를 통한 도정 홍보

붙임 2 평가대상 조례

전북특별자치도 출향도민 교류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 2024. 1. 18.] [전북특별자치도조례 제5399호, 2023. 12. 8., 일부개정]

전북특별자치도(대외협력과), 063-280-2505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내에 거주하는 출향도민 상호간의 친목도모와 권익신장 및 역량결집에 필요한 지원방안을 마련함으로써 출향도민들의 애향심과 자긍심을 고취함은 물론 전북특별자치도 발전에 이바지 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3. 12. 8.>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개정 2023. 12. 8.>

1. “출향도민”이란 전북특별자치도(이하 “전북자치도”라 한다) 출신으로 전북자치도를 제외한 국내에 거주하는 사람을 말한다.
2. “교류사업”이란 전북자치도와 출향도민간 상호 친선 우호 및 전북자치도 발전에 대한 공동관심 사항의 교류협력을 말한다.

제3조(도지사의 책무) 전북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출향도민과의 교류활성화를 위하여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개정 2023. 12. 8.>

제4조(지원사업) 도지사는 출향도민과의 교류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수행하는 법인 또는 단체에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개정 2022. 10. 21., 2023. 12. 8.>

1. 출향도민 문화·체육 행사 개최
2. 전북자치도 홍보를 위한 관내 축제, 관광지 및 문화유적지 방문
3. 출향도민 송년·신년회 등 행사 지원
4. 출향도민 초청 간담회
5. 출향도민 자녀초청 애향프로그램 운영
6. 출향도민 농·특산품 홍보 및 판매
7. 도정시책의 홍보
8.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5조(고향사랑명예대사 위촉)

① 도지사는 애향심과 덕망을 갖추고 아래의 임무를 수행할 수 있다고 판단되는 출향도민 중 고향사랑명예대사(이하 “명예대사”라 한다)를 위촉할 수 있다.<신설 2022. 10. 21.>

1. 출향도민과의 관계구축 및 교류에 관한 활동
2. 도정정책홍보에 관한 활동
3. 기업 및 투자유치에 관한 활동
4. 지역 공산품 및 농특산품 홍보에 관한 활동
5. 각종 축제 및 행사 참여 등 문화·관광 활성화에 관한 활동
6. 그 밖의 교류협력에 관해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명예대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도지사는 활동이 부진하거나 전북자치도의 품위를 손상시키는 행위를 한 때에는 임기 중이라도 해촉할 수 있다.<신설 2022. 10. 21., 2023. 12. 8.>

③ 명예대사는 무보수 명예직으로 한다. 다만 임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여비 등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신설 2022. 10. 21.>

08. 전북특별자치도 어르신 전용주차구역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Ⅰ. 종합의견

< 평가결과 >

□ 평가대상

조 례 명	전북특별자치도 어르신 전용주차구역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구분	자치조례	관계 법령	-
제정·시행일	2020. 7. 13. 제정	최근개정·시행일	2023. 12. 8. 개정
소관 부서	고령친화정책과	소관 상임위	농업복지환경

□ 평가의견

평가항목	평가의견	주요 내용
종합의견	개정/일반	- 자치조례로서의 성격을 명확하게 규정하도록 목적조항 정비 검토 - 타 시·도의 사례를 참고하여 전용주차구역에 있어 어르신 운전자 표지 발급과 관련된 사항 규정 검토
심층분석 결과		- 「전북특별자치도 어르신 전용주차구역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와 유사한 내용의 조례를 운영하는 지방자치단체는 없음. 사회적 약자 배려를 위한 전용주차구역와 관련하여 임산부 전용주차구역 조례를 운영하는 사례를 참고하여 시사점을 도출할 수 있음 - 어르신자동차표지 발급에 필요한 사항을 규칙으로 정하도록 개정안에서 위임하는 방안을 제안하고, 규칙으로 정하여야 하는 어르신자동차표지 발급 관련 사항을 제안함
1. 입법 근거 및 적법성	적정	자치사무의 범위에서 적절하게 제정되었음
2. 조례의 실효성	적정	공공시설 등을 방문하는 어르신 운전자에 이용편의 제공을 통해 어르신 복지증진 도모하고 조례의 실효성을 확보함
3. 조례 내용의 적정성	적정	교통약자 이용편의를 위하여 제정된 조례로 조례 내용이 적정함
4. 조례의 공평성	적정	장애, 성별, 나이 등에 관한 사회적 편견, 고정관념이 반영된 표현 및 차별 규정 없음
5. 주민 수용성	적정	조례의 체계 및 용어가 주민이 알기 쉽게 되어 있음
6. 전북자치도 현실 부합성	적정	공공시설물 등에 어르신 주차구역을 설치하기 위하여 제정된 본 조례는 행정수요를 반영하고 있어 전북특별자치도 현실에 부합함
7. 위원회 운영의 적정성	-	위원회 운영 관련 규정이 없음
※ 기타 의견	없음	

Ⅱ. 항목별 평가 결과

평가항목	세부항목	척도	의견 및 자료
1. 입법의 근거 및 적법성	1) 위임조례인가 자치사무에 관한 조례인가?	☐ 위임조례 ☑ 자치사무에 관한 조례	
	2) 조례에서 규정하고 있는 위임근거가 올바른가?	☐ 그렇다 ☐ 그렇지않다 ☑ 해당사항 없음	
	3) 조례가 위임범위에서 적절하게 제·개정되었는가?	☐ 그렇다 ☐ 그렇지않다 ☑ 해당사항 없음	
	4) 조례 제.개정 이후 동일 또는 유사한 법령이나 제도가 만들어졌거나 근거법령이 개정 또는 폐지되었는가?	☐ 그렇다 ☐ 그렇지않다 ☑ 해당사항 없음	
	5) 조례에서 주민의 권리제한, 의무부과, 벌칙 부과, 규제사항에 대한 법률위임이 있는가?	☐ 그렇다 ☐ 그렇지않다 ☑ 해당사항 없음	
	6) 상위법령에 위배되는 조항이 있는가?	☐ 그렇다 ☐ 그렇지않다 ☑ 해당사항 없음	
2. 조례의 실효성	1) 조례의 시행과정에서 다른 조례와의 충돌이나 모순이 발생하고 있는가?	☐ 그렇다 ☑ 그렇지않다 ☐ 해당사항 없음	
	2) 이 조례와 유사 또는 동일한 다른 조례가 제정 및 시행되고 있어 통합할 필요가 있는가?	☐ 그렇다 ☑ 그렇지않다 ☐ 해당사항 없음	
	3) 조례에 따른 계획이 수립·시행되고 있는가?	☐ 그렇다 ☐ 그렇지않다 ☑ 해당사항 없음	
	4) 조례에서 집행기관 등에 책무를 부여하고 있는가?	☑ 그렇다 ☐ 그렇지않다 ☐ 해당사항 없음	-제3조

평가항목	세부항목	척도	의견 및 자료
	5) 조례에서 부여한 책무와 관련사업을 집행기관이 잘 이행하고 있는가?	☑ 그렇다 ☐ 그렇지않다 ☐ 해당사항 없음	
3. 조례 내용의 적정성	1) 조례에 재정지원 관련 규정이 있는가?	☐ 그렇다 ☑ 그렇지않다 ☐ 해당사항 없음	
	2) 조례 시행에 필요한 예산 확보와 집행이 잘 이루어지고 있는가?	☐ 그렇다 ☐ 그렇지않다 ☑ 해당사항 없음	
	3) 지원대상이 집행이 가능한 정도로 구체화 되어 있는가?	☐ 그렇다 ☐ 그렇지않다 ☑ 해당사항 없음	
	4) 조례에 따른 위탁사무가 위탁대상으로 적정한가?	☐ 그렇다 ☐ 그렇지않다 ☑ 해당사항 없음	
4. 조례의 공평성	1) 조례에서 장애인, 성별 등의 특정계층이나 특정지역을 차별하는 조항이 있는가?	☐ 그렇다 ☑ 그렇지않다 ☐ 해당사항 없음	
	2) 조례에서 정한 차별이 합리적인가?	☐ 그렇다 ☐ 그렇지않다 ☑ 해당사항 없음	
5. 주민 의견 수용성	1) 조례 제·개정 시 입법예고는 하였는가?	☑ 그렇다 ☐ 그렇지않다 ☐ 해당사항 없음	
	2) 조례 제·개정 시 공청회, 세미나 등 이해관계인 및 주민에 대한 의견 수렴 과정이 있었는가?	☐ 그렇다 ☑ 그렇지않다 ☐ 해당사항 없음	
	3) 조례와 관련한 민원(청원, 진정, 소송 등)이 제기되거나 개정 또는 폐지 요구가 있었는가?	☐ 그렇다 ☐ 그렇지않다 ☑ 해당사항 없음	
	4) 조례의 체계나 사용 되어진 용어가 주민이 알기 쉽게 되어 있는가?	☑ 그렇다 ☐ 그렇지않다 ☐ 해당사항 없음	
6. 위원회 운영의 적정성	1) 조례로 위원회를 구성하도록 되어 있는가?	☐ 그렇다 ☑ 그렇지않다 ☐ 해당사항 없음	

평가항목	세부항목	척도	의견 및 자료
	2) 위원회가 법정위원회인가 조례로 설치하도록 한 위원회인가?	☐ 법정위원회 ☐ 조례로 정한 위원회 ☑ 해당사항 없음	
	3) 위원회 위원의 성별 구성이 적정한가?	☐ 그렇다 ☐ 그렇지않다 ☑ 해당사항 없음	
	4) 위원회가 법령이나 조례에서 정한 회의개최 운영 실적이 있고 관련 회의록을 보존하고 있는가?	☐ 그렇다 ☐ 그렇지않다 ☑ 해당사항 없음	
	5) 위원회를 계속 설치·운영할 필요성이 있는가?	☐ 그렇다 ☐ 그렇지않다 ☑ 해당사항 없음	
	6) 해당 위원회와 유사한 다른 위원회와의 기능적 통합이 필요한가?	☐ 그렇다 ☐ 그렇지않다 ☑ 해당사항 없음	
7. 종합 의견	1) 이 조례를 현행대로 유지할 필요가 있는가?	☑ 그렇다 ☐ 그렇지않다	
	2) 이 조례를 개정할 이유가 있는가? (해당사항 모두 표기)	☐ 위임근거에 불부합 ☐ 위임근거 불명확 ☐ 법령의 위임 없는 규제 정비 필요 ☐ 다른 조례와의 상충 및 모순 ☐ 조례 시행의 문제점 발생 ☐ 조례의 공평성 문제 ☑ 알기 쉬운 법령정비 기준에 따른 정비 필요 ☐ 위원회 관련 규정개정 필요 ☑ 그 밖의 사유	-규정 정비 필요
	3) 이 조례를 폐지할 사유가 있는가? (해당사항 모두 표기)	☐ 다른 유사한 조례와의 통합 운영 필요성 ☐ 조례 시행 불가능 ☐ 최근 3년간 조례 관련 운영 실적 전무 ☐ 기타	
	4) 그 밖의 이 조례와 관련된 의견이 있는가?	☐ 있다 ☐ 없다	

Ⅲ. 세부내용

조례명	전북특별자치도 어르신 전용주차구역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 소관 부서 의견(팀)

○ **최종의견 : 고령화 현상이 심해지고 있는 추세에 따라 공공시설 및 다중이용시설을 방문하는 어르신 운전자에 대한 배려와 이용편의를 제공함으로써 어르신 복지증진을 위하여 조례의 유지가 필요함**

○ **내용**

- 본 조례는「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제6조에 따라 제정된 자치조례임

■ 종합의견	개정 권고/일반 정비

◎ 입법평가 세부의견

○ **평가항목별 검토**

평가항목	평가항목별 검토 내용
1. 입법 근거 및 적법성	자치사무의 범위에서 적절하게 제정되었음
2. 조례의 실효성	공공시설 등을 방문하는 어르신 운전자에 이용편의 제공을 통해 어르신 복지증진 도모하고 조례의 실효성을 확보함
3. 조례 내용의 적정성	교통약자 이용편의를 위하여 제정된 조례로 조례 내용이 적정함
4. 조례의 공평성	장애, 성별, 나이 등에 관한 사회적 편견, 고정관념이 반영된 표현 및 차별 규정 없음
5. 주민 수용성	조례의 체계 및 용어가 주민이 알기 쉽게 되어 있음
6. 전북자치도 현실부합성	공공시설물 등에 어르신 주차구역을 설치하기 위하여 제정된 본 조례는 행정수요를 반영하고 있어 전북특별자치도 현실에 부합함
7. 위원회 운영의 적정성	위원회 운영 관련 규정이 없음
※ 기타 의견	없음

○ **연도별 사업내용 및 예산/집행액**

- 예산집행내역 없음

○ **조례의 입법목적 달성도 또는 부수효과 분석**

- 조례 목적달성도 평가
  - 2020년 조례 제정 이후 조례를 기반으로 한 사업이 진행된 실적이 현재까지 미비하여 조례의 목적달성도를 평가하기에 어려움이 있으나, 고령사회에 진입한 현 시점에서 장기적인 관점으로 조례 목적달성도를 분석해 볼 필요성이 있음
- 부수효과
  - 고령운전자의 편의를 보장하여 노인의 이동권을 보장할 수 있음

○ **타 시·도 유사 조례와 비교 또는 타 시·도 자치법규(정책) 동향**

전북특별자치도 어르신 전용주차구역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서울특별시 임산부 전용주차구역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울산광역시 임산부 전용주차구역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광주광역시 임산부 예우 및 임산부전용주차구역 설치·운영 조례**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제3조(도지사의 책무)	제3조(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제4조(적용 범위)	제4조(임산부 전용주차구역 설치 등)	제4조(적용범위)	제4조(다른 법규와의 관계)
제5조(전용주차구역 설치 등)	**제5조(임산부 자동차 표지 발급 등)**	제5조(임산부 전용주차구역 설치 등)	제5조(입장료등 감면)
제6조(위반차량 이동조치)	제6조(위반차량 조치)	**제6조(임산부자동차표지 발급 등)**	**제6조(임산부 민원처리 우선창구 개설·운영)**
제7조(시행규칙)	제7조(시행규칙)	제7조(임산부자동차 주차안내 표지)	제7조(임산부의 날)
		제8조(위반차량 조치)	제8조(임산부전용주차구역 적용범위)
		제9조(권한의 위임)	제9조(임산부전용주차구역의 설치 등)
		제10조(시행규칙)	**제10조(임산부자동차 표지 발급 등)**
			제11조(위반차량 조치)
			제12조(시행규칙)

- 타 시·도 조례에는 어르신 전용 주차구역에 관한 조례가 없어 제일 유사한 임산부 전용 주차구역 관련 조례를 비교 검토하였음. 전용 표지를 발급하는 방안 또는 민원처리 우선창구를 개설 및 운영하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음
- 그 외에도 유사하다고 볼 수 있는 조례로 '장애인전용주차구역 관리에 관한 조례' 등이 있음

Ⅳ. 개정의견

현 행	개정안	비고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공공시설 및 다중이용시설을 방문하는 어르신 운전자에 대한 배려와 이용편의를 제공함으로써 어르신 복지증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전북특별자치도 내 공공시설 및 다중이용시설을 방문하는 어르신 운전자에 대한 배려와 이용편의를 제공함으로써 어르신 복지증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자치조례로서의 성격을 명확하게 하도록 목적조항 정비 권고
제5조(전용주차구역 설치 등) ① 제4조의 시설 관리자가 전용주차구역을 설치할 때에는 운전자의 이동편의를 위하여 통행이 편리한 장소에 설치하여야 한다. ②~④ 생략	제5조(전용주차구역 설치 등) ① 도지사는 제4조의 시설 관리자가 전용주차구역을 설치할 때에는 운전자의 이동편의를 위하여 통행이 편리한 장소에 설치하여야 한다. ②~④ 현행과 같음	-주어를 명시하여 구체적인 문장으로 정비
<신설>	제5조의2(어르신자동차표지 발급 등) ① 도지사는 제2조제1호에 따른 어르신으로부터 자동차표지 발급을 신청 받은 경우에는 이를 발급하여야 한다. ② 누구든지 제1항에 따른 자동차표지가 부착되지 아니한 자동차를 전용주차장에 주차해서는 안 된다. 자동차표지가 부착된 자동차의 경우에도 전용주차장에 주차할 경우 어르신이 탑승하지 아니하면 또한 같다. ③ 제1항에 따른 어르신자동차표지 발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임산부 전용주차장 설치 조례 등 유사조례의 규정 사례를 참고하여 어르신 운전자 전용 표지 발급 관련 사항 규정 신설 권고
제7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삭제>	-시행규칙은 개별 조례에서 위임이 없더라도 조례의 집행에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규칙으로 규정할 수 있으므로 삭제 권고

심층분석 관련 검토

○ **심층분석 사유**

- 타 시·도 조례에는 어르신 전용 주차구역에 관한 조례가 없어 제일 유사한 임산부 전용 주차구역 관련 조례를 비교 검토하였음. 전용 표지를 발급하는 방안 또는 민원처리 우선창구를 개설 및 운영하는 방안을 검토하여 제시할 필요가 있음

○ **심층분석**

- 「전북특별자치도 어르신 전용주차구역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와 유사한 내용의 조례를 운영하는 지방자치단체는 없음. 사회적 약자 배려를 위한 전용주차구역와 관련하여 임산부 전용주차구역 조례를 운영하는 사례를 참고하여 시사점을 도출할 수 있음
- 전용주차구역 설치와 관련된 적용범위와 설치 관련 규정을 비교해보면 아래와 같음

-	**전북특별자치도 어르신 전용주차구역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북특별자치도 임산부 탑승차량 전용주차구역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서울특별시 임산부 전용주차구역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울산광역시 임산부 전용주차구역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광주광역시 임산부 예우 및 임산부전용주차구역 설치·운영 조례**
적용 범위	제4조(적용 범위) 전용주차구역을 설치하는 시설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전북특별자치도청 부설주차장 및 전북특별자치도 직속기관·사업소·출연기관의 부설주차장 2. 어르신들의 이용편의를 위해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다중이용시설	제4조(적용 범위) 임산부 탑승 전용차량에게 주차편의를 제공해야 하는 공공시설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전북특별자치도 본청, 직속기관, 사업소 및 전북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가 직접 관리하는 공공시설 2. 시장·군수가 관리하는 공공시설로서 임산부의 주차편의를 위하여 지정한 시설	제4조(임산부 전용주차구역 설치 등) ① 시장은 임산부 탑승 자동차의 이동편의를 위하여 서울특별시 본청·직속기관·사업소·투자출연기관 및 그 밖에 시장이 직접 관리하는 공공시설에 임산부 전용주차구역을 설치한다. 다만, 가족배려주차구획이 설치되어 있는 경우에는 이를 임산부전용주차구역으로 활용할 수 있다.	제4조(적용범위) 임산부 전용주차구역을 설치해야 하는 공공시설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울산광역시청사(직속기관, 사업소 및 출장소를 포함한다) 2. 울산광역시에서 직접 관리하는 공공시설	제8조(임산부전용주차구역 적용범위) 임산부전용주차구역을 설치하는 공공시설의 범위는 「광주광역시 주차장 조례」에 따른 공영주차장 및 다음 각 호의 공공기관의 청사에 설치된 부설주차장으로 한다. 1. 광주광역시 및 그 소속기관 2. 광주광역시가 설치·설립 또는 경영하는 지방공기업 3. 광주광역시가 출자하거나 출연하여 설립한 기관

설치	제5조(전용주차구역 설치 등) ① 제4조의 시설 관리자가 전용주차구역을 설치할 때에는 운전자의 이동편의를 위하여 통행이 편리한 장소에 설치하여야 한다. ② 전용주차구역은 주차장 주차대수 50대 이상인 시설에 설치하며 설치기준은 주차대수의 2퍼센트 범위로 한다. 다만, 시설 관리자는 어르신의 주차수요를 고려하여 설치기준을 달리할 수 있다. ③ 전용주차구역은 다른 교통약자(임산부, 영유아 동반자, 여성 등)의 공동편의를 위해 공용으로 설치할 수 있다. ④ 전용주차구역 바닥면에는 어르신 전용 표시를 하여야 하며, 식별이 쉬운 장소에 전용주차구역 안내표지를 부착 또는 설치하여야 한다.	제5조(임산부 전용주차구역 설치) 도지사와 시장·군수는 제4조의 공공시설에 임산부 탑승 전용차량 운전자의 이동 편의를 위하여 통행이 편리한 장소에 임산부 전용주차구역을 설치하여야 한다.	제4조(임산부 전용주차구역 설치 등) ② 시장은 주차대수 규모가 30대 이상인 부설주차장의 관리자에게 임산부 전용주차구역 설치를 권고할 수 있다. ③ 임산부 전용주차구역은 해당 주차장의 특성을 고려하여 「서울특별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제25조의2 제4항 가족배려 주차장 주차구획 설치기준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기준에 부합한 위치에 설치한다. ④ 임산부 전용주차구역의 바닥면에는 "임산부 전용" 표시를 하여야 하며, 임산부 전용주차구역 표지를 주차장 안의 알아보기 쉬운 장소에 부착하거나 설치한다. ⑤ 자동차에 탑승한 임산부의 이동편의를 고려하여 임산부 전용주차구역의 크기는 「장애인·노인·임산부 등	제5조(임산부 전용주차구역 설치 등) ① 제4조 각 호의 시설 관리자는 해당 시설을 이용하는 임산부자동차의 이동 편의를 위하여 통행이 편리한 장소에 임산부 전용주차구역을 설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임산부 전용주차구역의 바닥면에는 임산부 전용 표시를 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임산부 전용주차구역을 설치하기가 어려운 경우에는 제4조 각 호의 시설 관리자는 임산부자동차를 적절한 장소에 주차할 수 있도록 안내하여야 한다.	제9조(임산부전용주차구역의 설치 등) ① 시장은 제8조의 공공시설에 임산부가 탑승한 자동차(이하 "임산부자동차"라 한다)의 이동 편의를 위하여 통행이 편리한 장소에 다음 각 호에 따라 임산부 전용주차구역을 설치하여야 한다. 1. 주차대수 규모가 100대 미만인 경우: 한 면 이상 2. 주차대수 규모가 100대 이상인 경우: 주차대수의 100분의1 이상 ② 임산부전용주차구역의 바닥면에는 임산부 전용 표시를 하여야 하며, 임산부전용주차구역 표지를 주차장 안의 알아보기 쉬운 장소에 부착하거나 설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임산부전용주차구역의 설치기준은 별표와 같다.

			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1제4호 장애인전용주차구역 규정을 따른다. ⑥ 임산부 전용주차구역 설치가 어려운 경우 해당 시설 관리자는 임산부 탑승 자동차를 적절한 장소에 주차할 수 있도록 안내한다.		

- 위에서 살펴본바와 같이 「전북특별자치도 어르신 전용주차구역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대하여 적용범위와 전용주차구역 설치 규정에 시사점이 있는 특별한 사항을 확인하기는 어려움
- 임산부자동차표지 관련 규정을 살피고 이와 관련된 어르신자동차표지를 발급하도록 규정을 신설하는 방안을 검토할 수 있음. 이와 관련하여 기 제시된 개정의견에서 개정안에 반영하여 제시함(확인하기 쉽도록 아래에서 다시 제시함).

현 행	개정안	비고
<신설>	제5조의2(어르신자동차표지 발급 등) ① 도지사는 제2조제1호에 따른 어르신으로부터 자동차표지 발급을 신청받은 경우에는 이를 발급하여야 한다. ② 누구든지 제1항에 따른 자동차표지가 부착되지 아니한 자동차를 전용주차장에 주차해서는 안 된다. 자동차표지가 부착된 자동차의 경우에도 전용주차장에 주차할 경우 어르신이 탑승하지 아니하면 또한 같다. ③ 제1항에 따른 **어르신자동차표지 발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임산부 전용주차장 설치 조례 등 유사조례의 규정 사례를 참고하여 어르신 운전자 전용 표지 발급 관련 사항 규정 신설 권고

- 어르신자동차표지 발급에 필요한 사항을 규칙으로 정하도록 개정안에서 위임하는 방안으로 제시하였으므로, 규칙으로 정하여야 하는 어르신자동차표지 발급 관련 사항을 아래와 같이 제안함

• 전북특별자치도 어르신 전용주차구역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안

『전북특별자치도 어르신 전용주차구역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안)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전북특별자치도 어르신 전용주차구역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어르신자동차 표지 발급) ① 조례 제5조의2제1항에 따라 어르신자동차표지(이하 "자동차표지"라 한다)를 발급받으려는 자는 신청일 현재 관내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어야 한다.
② 자동차표지를 신규 또는 재발급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신청서를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신청서를 제출받은 도지사는 관련 서류를 검토한 후 별지 제3호서식의 자동차표지를 발급하고 그 사실을 별지 제2호서식의 관리대장에 등록·관리하여야 한다.

제3조(자동차표지 부착) 어르신은 전용주차구역을 이용하는 경우 자동차표지를 확인하기 쉽도록 차량에 부착하여야 한다.

제4조(자동차표지의 관리) 도지사는 자동차표지의 유효기간이 경과되거나 어르신이 다른 시·도로 전출할 경우에는 자동차표지를 즉시 반납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제5조(비용부담) 전용주차장 설치 및 안내표지판, 자동차표지 등의 제작에 소요 되는 비용은 시설관리·운영기관에서 부담한다.

□ 참고자료 1 – 위원회 관련 실적

○ **구성**

- 위원회 규정 없음

○ **개최 실적**

- 해당사항 없음

붙임 1 사업 관련 추진실적

□ 연도별 사업 및 예산 집행 실적

○ **사업실적 및 예산집행내역 없음**

붙임 2 평가대상 조례

전북특별자치도 어르신 전용주차구역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 2024. 1. 18.] [전북특별자치도조례 제5399호, 2023. 12. 8., 일부개정]

전북특별자치도(고령친화정책과), 063-280-2515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공공시설 및 다중이용시설을 방문하는 어르신 운전자에 대한 배려와 이용편의를 제공함으로써 어르신 복지증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어르신”이란 70세 이상 노인을 말한다.
2. “전용주차구역”이란 어르신이 편리하게 주차할 수 있도록 제5조에 따라 설치된 장소를 말한다.

제3조(도지사의 책무)

① 전북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어르신 보호 및 사회·경제·문화활동 증진을 위한 지역 분위기 조성을 위해 공공시설에 전용주차구역을 설치하여야 한다.<개정 2023. 12. 8.>

② 도지사는 백화점, 대형마트, 병원, 터미널, 역 등 어르신들의 이용이 많은 다중이용시설에 대하여 전용주차구역 설치를 적극 권장하여야 한다.

제4조(적용 범위) 전용주차구역을 설치하는 시설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23. 12. 8.>

1. 전북특별자치도청 부설주차장 및 전북특별자치도 직속기관·사업소·출연기관의 부설주차장
2. 어르신들의 이용편의를 위해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다중이용시설

제5조(전용주차구역 설치 등)

① 제4조의 시설 관리자가 전용주차구역을 설치할 때에는 운전자의 이동편의를 위하여 통행이 편리한 장소에 설치하여야 한다.

② 전용주차구역은 주차장 주차대수 50대 이상인 시설에 설치하며 설치기준은 주차대수의 2퍼센트 범위로 한다. 다만, 시설 관리자는 어르신의 주차수요를 고려하여 설치기준을 달리할 수 있다.

③ 전용주차구역은 다른 교통약자(임산부, 영유아 동반자, 여성 등)의 공동편의를 위해 공용으로 설치할 수 있다.

④ 전용주차구역 바닥면에는 어르신 전용 표시를 하여야 하며, 식별이 쉬운 장소에 전용주차구역 안내표지를 부착 또는 설치하여야 한다.<개정 2022. 11. 4.>

제6조(위반차량 이동조치) 시설 관리자는 어르신이 운전하지 않는 차량을 전용주차구역에 주차한 자에게는 다른 장소로 이동하여 주차하도록 할 수 있다.

제7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09. 전북특별자치도 금연활동 실천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환경조성 조례

Ⅰ. 종합의견

< 평가결과 >

□ 평가대상

조 례 명	전북특별자치도 금연활동 실천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환경조성 조례		
조례 구분	개별 법률 위임	관계 법령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
제정·시행일	2009. 7. 31. 제정	최근개정·시행일	2023. 12. 8. 개정
소관 부서	건강증진과	소관 상임위	농업복지환경

□ 평가의견

평가항목	평가의견	주요 내용
종합의견	개정/일반	- 흡연권 보장을 위한 흡연실 설치에 관한 사항 신설 검토 - 법제처 알기 쉬운 법령정비기준에 따른 용어 정비 - 타 시·도의 사례를 참고하여「국민건강증진법 시행규칙」제6조제4항 별표 2의 기준에 맞게 규정 신설 검토 권고 - 시행규칙은 개별 조례에서 위임이 없더라도 조례의 집행에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규칙으로 규정할 수 있으므로 삭제 권고
심층분석 결과		- 「전북특별자치도 금연활동 실천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환경조성 조례」와 유사한 조례를 규정하고 있는 타 시·도 사례를 참고하여 흡연시설 관련 설치·지원을 통하여 간접흡연을 예방하는데 기여할 수 있음. 흡연실을 설치하여 운영하도록 규정함으로써 흡연자의 흡연권을 보장함과 동시에 간접흡연으로 인한 비흡연자의 피해를 예방할 수 있다는 점에서 흡연실 설치를 검토할 필요가 있음. 흡연실 설치 관련 규정의 신설을 제안함
1. 입법 근거 및 적법성	적정	「국민건강증진법」 제3조 및 제9조의 위임 범위에서 적절하게 제정되었음
2. 조례의 실효성	적정	조례 제7조에 따른 금연구역 지정과 조례 제10조의 흡연 피해자 지원을 통해 조례의 실효성을 확보하고 있음
3. 조례 내용의 적정성	적정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제7항에 따른 금연구역을 설정하여 조례 내용이 적정함
4. 조례의 공평성	적정	장애, 성별, 나이 등에 관한 사회적 편견, 고정관념이 반영된 표현 및 차별 규정 없음
5. 주민 수용성	적정	조례의 체계 및 용어가 주민이 알기 쉽게 되어 있음

6. 전북자치도 현실 부합성	적정	전북특별자치도민의 건강과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있는 사안으로 조례의 내용이 전북특별자치도 현실에 부합함
7. 위원회 운영의 적정성	-	위원회 운영관련 규정이 없음
※ 기타 의견	없음	

Ⅱ. 항목별 평가 결과

평가항목	세부항목	척도	의견 및 자료
1. 입법의 근거 및 적법성	1) 위임조례인가 자치사무에 관한 조례인가?	☑ 위임조례 ☐ 자치사무에 관한 조례	
	2) 조례에서 규정하고 있는 위임근거가 올바른가?	☑ 그렇다 ☐ 그렇지않다 ☐ 해당사항 없음	
	3) 조례가 위임범위에서 적절하게 제·개정되었는가?	☑ 그렇다 ☐ 그렇지않다 ☐ 해당사항 없음	
	4) 조례 제.개정 이후 동일 또는 유사한 법령이나 제도가 만들어졌거나 근거법령이 개정 또는 폐지되었는가?	☐ 그렇다 ☑ 그렇지않다 ☐ 해당사항 없음	
	5) 조례에서 주민의 권리제한, 의무부과, 벌칙 부과, 규제사항에 대한 법률위임이 있는가?	☐ 그렇다 ☑ 그렇지않다 ☐ 해당사항 없음	
	6) 상위법령에 위배되는 조항이 있는가?	☐ 그렇다 ☑ 그렇지않다 ☐ 해당사항 없음	
2. 조례의 실효성	1) 조례의 시행과정에서 다른 조례와의 충돌이나 모순이 발생하고 있는가?	☐ 그렇다 ☑ 그렇지않다 ☐ 해당사항 없음	
	2) 이 조례와 유사 또는 동일한 다른 조례가 제정 및 시행되고 있어 통합할 필요가 있는가?	☐ 그렇다 ☑ 그렇지않다 ☐ 해당사항 없음	
	3) 조례에 따른 계획이 수립·시행되고 있는가?	☐ 그렇다 ☐ 그렇지않다 ☐ 해당사항 없음	
	4) 조례에서 집행기관 등에 책무를 부여하고 있는가?	☑ 그렇다 ☐ 그렇지않다 ☐ 해당사항 없음	

평가항목	세부항목	척도	의견 및 자료
	5) 조례에서 부여한 책무와 관련사업을 집행기관이 잘 이행하고 있는가?	☑ 그렇다 ☐ 그렇지않다 ☐ 해당사항 없음	
3. 조례 내용의 적정성	1) 조례에 재정지원 관련 규정이 있는가?	☑ 그렇다 ☐ 그렇지않다 ☐ 해당사항 없음	
	2) 조례 시행에 필요한 예산 확보와 집행이 잘 이루어지고 있는가?	☑ 그렇다 ☐ 그렇지않다 ☐ 해당사항 없음	
	3) 지원대상이 집행이 가능한 정도로 구체화 되어 있는가?	☐ 그렇다 ☐ 그렇지않다 ☑ 해당사항 없음	
	4) 조례에 따른 위탁사무가 위탁대상으로 적정한가?	☐ 그렇다 ☐ 그렇지않다 ☑ 해당사항 없음	
4. 조례의 공평성	1) 조례에서 장애인, 성별 등의 특정계층이나 특정지역을 차별하는 조항이 있는가?	☐ 그렇다 ☑ 그렇지않다 ☐ 해당사항 없음	
	2) 조례에서 정한 차별이 합리적인가?	☐ 그렇다 ☐ 그렇지않다 ☑ 해당사항 없음	
5. 주민 의견 수용성	1) 조례 제·개정 시 입법예고는 하였는가?	☑ 그렇다 ☐ 그렇지않다 ☐ 해당사항 없음	
	2) 조례 제·개정 시 공청회, 세미나 등 이해관계인 및 주민에 대한 의견 수렴 과정이 있었는가?	☐ 그렇다 ☑ 그렇지않다 ☐ 해당사항 없음	
	3) 조례와 관련한 민원(청원, 진정, 소송 등)이 제기되거나 개정 또는 폐지 요구가 있었는가?	☐ 그렇다 ☐ 그렇지않다 ☑ 해당사항 없음	
	4) 조례의 체계나 사용 되어진 용어가 주민이 알기 쉽게 되어 있는가?	☑ 그렇다 ☐ 그렇지않다 ☐ 해당사항 없음	
6. 위원회 운영의 적정성	1) 조례로 위원회를 구성하도록 되어 있는가?	☐ 그렇다 ☑ 그렇지않다 ☐ 해당사항 없음	

평가항목	세부항목	척도	의견 및 자료
	2) 위원회가 법정위원회인가 조례로 설치하도록 한 위원회인가?	☐ 법정위원회 ☐ 조례로 정한 위원회 ☑ 해당사항 없음	
	3) 위원회 위원의 성별 구성이 적정한가?	☐ 그렇다 ☐ 그렇지않다 ☑ 해당사항 없음	
	4) 위원회가 법령이나 조례에서 정한 회의개최 운영 실적이 있고 관련 회의록을 보존하고 있는가?	☐ 그렇다 ☐ 그렇지않다 ☑ 해당사항 없음	
	5) 위원회를 계속 설치·운영할 필요성이 있는가?	☐ 그렇다 ☐ 그렇지않다 ☑ 해당사항 없음	
	6) 해당 위원회와 유사한 다른 위원회와의 기능적 통합이 필요한가?	☐ 그렇다 ☐ 그렇지않다 ☑ 해당사항 없음	
7. 종합 의견	1) 이 조례를 현행대로 유지할 필요가 있는가?	☑ 그렇다 ☐ 그렇지않다	
	2) 이 조례를 개정할 이유가 있는가? (해당사항 모두 표기)	☐ 위임근거에 불부합 ☐ 위임근거 불명확 ☐ 법령의 위임 없는 규제 정비 필요 ☐ 다른 조례와의 상충 및 모순 ☐ 조례 시행의 문제점 발생 ☐ 조례의 공평성 문제 ☑ 알기 쉬운 법령정비 기준에 따른 정비 필요 ☐ 위원회 관련 규정개정 필요 ☑ 그 밖의 사유	-간접흡연 방지 규정 신설 검토
	3) 이 조례를 폐지할 사유가 있는가? (해당사항 모두 표기)	☐ 다른 유사한 조례와의 통합 운영 필요성 ☐ 조례 시행 불가능 ☐ 최근 3년간 조례 관련 운영 실적 전무 ☐ 기타	
	4) 그 밖의 이 조례와 관련된 의견이 있는가?	☐ 있다 ☐ 없다	

Ⅲ. 세부내용

조례명	전북특별자치도 금연활동 실천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환경조성 조례

■ 소관 부서 의견(팀)

○ **최종의견 : 금연실천 촉진과 간접흡연의 유해환경으로부터 전북특별자치도민을 보호함으로써 건강증진과 쾌적한 환경조성을 통해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기 위해 조례의 유지가 필요함**

○ **내용**

- (1-1) 본 조례는「국민건강증진법」제9조제7항에 따라 위임된 위임조례임
- (1-5) 본 조례는「국민건강증진법」제9조제6항(과태료)에 따라 조례 제7조와 제13조에 관련된 규제 규정(금연구역 지정, 과태료)을 둠
- (2-5) 전북특별자치도 및 14개 시·군에서 자체적으로 총 2,565회의 교육과 76,153건의 홍보를 실시함
- (2-5) 2023년에 도지사 기관표창 3개, 공무원 2개, 민간인 3개의 포상을 수여함
- (3-1) 2024년 도비 3,423,380원을 집행하여 지역사회 금연지원사업을 실시함

■ 종합의견	개정 권고/일반 정비

◎ 입법평가 세부의견

○ **평가항목별 검토**

평가항목	평가항목별 검토 내용
1. 입법 근거 및 적법성	「국민건강증진법」 제3조 및 제9조의 위임 범위에서 적절하게 제정되었음
2. 조례의 실효성	조례 제7조에 따른 금연구역 지정과 조례 제10조의 흡연 피해자 지원을 통해 조례의 실효성을 확보하고 있음
3. 조례 내용의 적정성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제7항에 따른 금연구역을 설정하여 조례 내용이 적정함
4. 조례의 공평성	장애, 성별, 나이 등에 관한 사회적 편견, 고정관념이 반영된 표현 및 차별 규정 없음
5. 주민 수용성	조례의 체계 및 용어가 주민이 알기 쉽게 되어 있음
6. 전북자치도 현실부합성	전북특별자치도민의 건강과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있는 사안으로 조례의 내용이 전북특별자치도 현실에 부합함
7. 위원회 운영의 적정성	위원회 운영관련 규정이 없음
※ 기타 의견	없음

○ **연도별 사업내용 및 예산/집행액**

- 지역사회 금연지원사업 : '24년 도비 3,423,380원

○ **조례의 입법목적 달성도 또는 부수효과 분석**

- 조례 목적달성도 평가
  - 조례 내용에 따라 교육과 홍보는 지속적으로 시행중이나, 이로 인해 실제로 금연환경이 얼마나 조성되었는지 여부는 추후 장기적인 시각에서 평가가 필요함
- 부수효과
  - 금연환경을 조성하여 비흡연자들의 권리를 보호하고 도시 미관을 개선할 수 있음

○ **타 시·도 유사 조례와 비교 또는 타 시·도 자치법규(정책) 동향**

전북특별자치도 금연활동 실천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환경조성 조례	**경기도 금연활동 실천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환경조성 조례**	**전라남도 금연환경 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울산광역시 금연환경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제3조(도지사 등의 책임 등)	제3조(도지사 등의 책임 등)	**제3조(도민의 권리 등)**	**제3조(시민의 권리 등)**
제4조(재정지원 등)	제4조(재정지원 등)	제4조(도지사의 책무)	제4조(금연구역의 지정 등)
제5조(금연정책 등 공고)	제5조(금연정책 등 공고)	제5조(금연구역의 지정 등)	제5조(금연구역 표시 등)
제6조(흡연예방 및 금연홍보)	제6조(흡연예방 및 금연홍보)	제6조(금연구역의 지정 변경 등)	**제6조(흡연장소의 설치 등)**
제7조(금연구역 지정 대상)	제7조(금연구역 지정 대상)	제7조(금연구역 표시)	제7조(금연교육 및 홍보지원)
제8조(금연구역 지정 방법)	제8조(금연구역 지정 방법)	**제8조(흡연실 설치)**	제8조(자원봉사자 활용 및 지원)
제9조(금연구역 표시)	제9조(금연구역 표시)	제9조(금연교육 및 홍보지원)	제9조(평가 등)
제10조(흡연 피해자 구제 지원)	**제10조(흡연실의 설치 등)**	제10조(과태료)	제10조(과태료)
제11조(담배 광고·판촉·후원 금지)	**제10조의2(흡연실 설치 지원 등)**		제11조(권한위임)
제12조(금연사업 평가)	제11조(흡연 피해자 구제 지원)		
제13조(과태료)	제12조(담배 광고·판촉·후원 금지)		

제14조(권한위임)	제13조(금연사업 평가)		
제15조(시행규칙)	제14조(과태료)		
	제15조(권한의 위임)		
	제16조(시행규칙)		

- 전라남도와 울산광역시 조례에서는 간접흡연의 피해로부터 보호받을 권리에 대해 명문화하고 있음
- 또한 경기도와 전라남도, 울산광역시 조례에서는 비흡연자의 권리뿐만 아니라 흡연자의 흡연권도 함께 보호하기 위해 흡연장소의 설치와 관련된 규정을 두고 있음

Ⅳ. 개정의견

현 행	개정안	비고
제3조(도지사 등의 책임 등) ① 전북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금연에 대한 도민의 관심을 높이고 흡연자의 금연 촉진 및 비흡연자의 간접흡연 피해 예방을 위한 각종 시책을 마련하여 추진하여야 한다. ② 생략	제3조(도지사 등의 책임 등) ① 전북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금연에 대한 전북특별자치도민(이하 "도민"이라 한다)의 관심을 높이고 흡연자의 금연 촉진 및 비흡연자의 간접흡연 피해 예방을 위한 각종 시책을 마련하여 추진하여야 한다. ② 현행과 같음	-"도민"을 약칭하고 사용하도록 정비 권고
제7조(금연구역 지정 대상) ① 도지사는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제7항에 따라 간접흡연으로 인한 피해방지 및 도민의 건강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구역의 전부 또는 일부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1. 생략 2.「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의한 정류소, 택시 승차대 3. 이하 생략	제7조(금연구역 지정 대상) ① 도지사는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제7항에 따라 간접흡연으로 인한 피해방지 및 도민의 건강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구역의 전부 또는 일부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1. 현행과 같음 2.「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른 정류소, 택시 승차대 3. 이하 현행과 같음	-알기 쉬운 법령정비 기준에 따라 "의한"을 "따른"으로 정비 권고
제9조(금연구역 표시) ① ~ ③ 생략 <신설>	제9조(금연구역 표시 등)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금연구역으로 지정된 시설이나 구역의 관리자 또는 소유자는 흡연자의 편의를 고려하여 흡연실을 설	-「국민건강증진법 시행규칙」 제6조제4항 별표 2의 기준에 맞게 필요한 경우 흡연실 설치를 할 수 있도록 하여 흡연

현 행	개정안	비고
<신설>	치할 수 있다. ⑤ 제4항에 따른 설치기준 및 방법은 「국민건강증진법 시행규칙」 제6조제4항 별표 2에 따른다.	자의 권리를 보호함과 동시에 금연환경을 조성하고 간접흡연을 방지하는데 기여하도록 규정 신설 검토 권고
<신설>	제9조의2(흡연시설의 설치 등) ① 도지사가 지정하는 금연구역 내 시설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자는 흡연시민의 편의를 고려하여 해당 구역 내에 흡연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 이 경우 도지사는 예산의 범위에서 흡연시설 설치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흡연시설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국민건강증진법 시행규칙」 제6조에 따라 흡연장소임을 알 수 있도록 표시를 하여야 한다. ③ 도지사는 금연구역에서 담배를 피우려는 사람에게 흡연시설을 이용하도록 홍보하여야 한다.	-심층분석을 통해 타 시·도의 사례를 참고하여 흡연시설의 설치에 관한 규정 신설 권고
제10조(흡연 피해자 구제 지원) ① 도지사는 흡연으로 인한 도민의 건강과 재산상의 피해 구제를 위한 필요한 노력을 할 수 있다.	제10조(흡연 피해자 구제 지원) 도지사는 흡연으로 인한 도민의 건강과 재산상의 피해 구제를 위한 필요한 노력을 할 수 있다.	-제10조는 단항 조항으로 불필요한 "①" 삭제 권고
제15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삭제>	-시행규칙은 개별 조례에서 위임이 없더라도 조례의 집행에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규칙으로 규정할 수 있으므로 삭제 권고

심층분석 관련 검토

○ **심층분석 사유**

- 타 시·도의 사례를 참고하여 「국민건강증진법 시행규칙」 제6조제4항 별표 2의 기준에 맞게 필요한 경우 흡연실 설치를 할 수 있도록 하여 흡연자의 권리를 보호함과 동시에 금연환경을 조성하고 간접흡연을 방지하는데 기여하도록 규정 신설 검토를 위한 심층분석 실시

○ **심층분석**

- 「전북특별자치도 금연활동 실천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환경조성 조례」와 유사한 조례를 규정하고 있는 타 시·도 사례를 참고하여 흡연시설 관련 설치·지원을 통하여 간접흡연을 예방하는데 기여할 수 있음
- 타 시·도 유사 조례의 흡연시설 설치 규정을 비교하여 살펴봄

-	경기도 금연활동 실천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환경조성 조례	전라남도 금연환경 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울산광역시 금연환경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흡연실 설치	제10조(흡연실의 설치 등 <개정 2020.01.13.>) ① 제8조에 따라 금연구역으로 지정되는 해당 장소 혹은 시설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자는 흡연자의 편의를 고려하여 해당구역 내에 흡연실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흡연실의 설치기준 및 방법은 「국민건강증진법 시행규칙」 제6조제4항 관련 별표2를 준용한다. 1. 삭제 <2016.11.08.> 2. 삭제 <2016.11.08.> 3. 삭제 <2016.11.08.> ③ 제1항에 따라 흡연실을 설치하는 경우 민간시설의 참여를 활용할 수 있다.	제8조(흡연실 설치) ① 금연구역으로 지정된 시설이나 구역의 관리자 또는 소유자는 흡연자의 편의를 고려하여 흡연실을 설치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흡연실 설치 기준과 방법 등은 「국민건강증진법 시행규칙」 제6조에 준하여 규칙으로 정한다. ③ (삭제 2021. 7. 29.)	제6조(흡연장소의 설치 등) ① 시장이 지정하는 금연구역 내 시설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자는 흡연시민의 편의를 고려하여 해당 구역 내에 흡연장소를 설치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흡연장소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국민건강증진법 시행규칙」 제6조에 따라 흡연장소임을 알 수 있도록 표시를 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금연구역에서 담배를 피우려는 사람에게 흡연장소를 이용하도록 홍보하여야 한다.
흡연실 설치 지원	제10조의2(흡연실 설치 지원 등) ① 도지사는 유동인구가 많거나 간접흡연으로 인한 민원이 많은 지역, 공동주택 등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

	시장·군수, 「공동주택관리법」 제2조제1항제10호에 따른 관리주체 등과 협의하여 흡연실 설치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흡연실과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 외부기관이나 단체 등과 업무협약을 통해 흡연실을 설치 및 유지·관리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흡연실의 설치 등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 흡연실을 설치하여 운영하도록 규정함으로써 흡연자의 흡연권을 보장함과 동시에 간접흡연으로 인한 비흡연자의 피해를 예방할 수 있다는 점에서 흡연실 설치를 검토할 필요가 있음

- 아래와 같이 흡연실 설치 관련 규정의 신설을 제안함

현 행	개정안	비고
<신설>	제9조의2(흡연시설의 설치 등) ① 도지사가 지정하는 금연구역 내 시설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자는 흡연시민의 편의를 고려하여 해당 구역 내에 흡연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 이 경우 도지사는 예산의 범위에서 흡연시설 설치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흡연시설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국민건강증진법 시행규칙」 제6조에 따라 흡연장소임을 알 수 있도록 표시를 하여야 한다. ③ 도지사는 금연구역에서 담배를 피우려는 사람에게 흡연시설을 이용하도록 홍보하여야 한다.	-타 시·도의 사례를 참고하여 흡연시설의 설치에 관한 규정 신설 권고

□ 참고자료 1 – 위원회 관련 실적

○ 구성

- 위원회 규정 없음

○ 개최 실적

- 해당사항 없음

□ 참고자료 2 – 조례 관련 보도 자료

○ 보도자료 1

전북교육청, 농산어촌 학교 흡연예방·금연교육 지원17)

전북교육청, 농산어촌 학교 흡연예방·금연교육 지원

작성자 : 대변인(우지혜) **작성일** : 2023-05-02 **조회수** : 588



전라북도교육청(교육감 서거석)은 취약지역 학교의 흡연예방교육 내실화를 위해 오는 5월부터 11월까지 '2023년 찾아가는 흡연 예방·금연 교육'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교육부와 질병관리청에서 발표한 청소년 건강행태조사(2022년) 결과에 따르면 청소년 흡연 연령이 점차 낮아지고 있어 흡연 친입을 사전에 차단하고, 금연을 생활화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다.

'찾아가는 흡연 예방·금연 교육'은 농산어촌 및 보건교사 미배치 학교를 중심으로 운영한다.

지난 4월 21~25일까지 희망학교의 신청을 받아 초등학교 65교, 중학교 45를 선정했으며, 초등3~4학년과 중1~2학년을 대상으로 학생 눈높이에 맞는 오감체험형 흡연예방·금연교육을 진행할 예정이다.

흡연예방교육 전문강사가 직접 학교로 찾아가 초등학교에서는 게임·마술쇼·인형극 등을 접목한 교육을 운영한다.

중학교에서는 레크리에이션·서바이벌 브레인 퀴즈 등을 연계한 학생 참여 중심의 학습활동 속에서 예방교육 활동이 이루어진다. 또 흡연 예방과 평생 금연 실천을 다짐하는 교육도 진행할 예정이다.

이서기 문예체건강과장은 "아동·청소년의 흡연예방을 위해서는 흡연에 처음 노출되기 전부터 반복적인 예방교육이 무엇보다 중요하며, 가정과 지역사회과 학생들을 흡연으로부터 지키기 위한 노력을 함께 해야한다"면서 "앞으로도 학생 발달 시기에 맞는 맞춤형 눈높이 교육과 학생 참여형 흡연예방·금연교육 프로그램 운영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17) https://news.jbe.go.kr/board/view.jbe?boardId=BBS_0000222&menuCd=DOM_000001201001000000&paging=ok&startPage=64&searchOperation=AND&dataSid=443913

붙임 1 사업 관련 추진실적

□ 연도별 사업 및 예산 집행 실적

○ **재정지원 규정 : 제4조**

- '24년 도비 3,423,380원이 지원됨

붙임 2 평가대상 조례

전북특별자치도 금연활동 실천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환경조성 조례

[시행 2024. 1. 18.] [전북특별자치도조례 제5399호, 2023. 12. 8., 일부개정]

전북특별자치도(건강증진과), 063-280-2448

제1조(목적) 이 조례는「국민건강증진법」에 따라 전북특별자치도민의 금연실천 촉진과 간접흡연의 유해환경으로부터 보호함으로써 전북특별자치도민의 건강증진과 쾌적한 환경조성을 통해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3. 12. 8.>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간접흡연”이란 다른 사람의 흡연으로 담배연기를 간접적 또는 수동적으로 들이마심으로써 담배를 피우는 것과 같은 부정적인 효과를 입는 것을 말한다.
2. “금연구역”이란 다수인이 모이거나 오고가는 일정한 구역으로서 제7조에 따라 금연을 하도록 지정된 구역을 말한다.

제3조(도지사 등의 책임 등)

① 전북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금연에 대한 도민의 관심을 높이고 흡연자의 금연 촉진 및 비흡연자의 간접흡연 피해 예방을 위한 각종 시책을 마련하여 추진하여야 한다.<개정 2023. 12. 8.>

② 경영자, 사업주 등 노동자의 관리·감독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은 종사자들의 건강증진을 위하여 직장 내 금연에 노력하여야 한다.<개정 2020.7.13.>

제4조(재정지원 등) 도지사는 금연사업의 추진을 위하여 사업에 필요한 예산을 편성하고 시·군 및 기관·단체 또는 개인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제5조(금연정책 등 공고) 도지사는 금연에 관한 도민의 알권리 보호를 위해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해 매년 전북특별자치도도보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개정 2023. 12. 8.>

1. 전북특별자치도의 금연정책
2. 전북특별자치도 및 시·군별 주민 흡연율 등 금연관련 통계
3. 시·군별 금연구역 등 지정 현황
4. 그 밖에 금연촉진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내용

제6조(흡연예방 및 금연홍보)

① 도지사는 청소년·여성 등 비흡연자의 흡연예방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고, 보다 많은 도민이 금연교육에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금연 홍보활동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금연단체 또는 시민단체 등과 연계하여 범도민 금연운동을 실시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건강관련 자원봉사자(자원봉사단체를 포함한다)를 위촉하여 금연구역에서 홍보활동을 할 수 있다.

제7조(금연구역 지정 대상)

① 도지사는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제7항에 따라 간접흡연으로 인한 피해방지 및 도민의 건강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구역의 전부 또는 일부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개정 2021.6.10.>

1.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교육환경보호구역 중 절대보호구역
2.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의한 정류소, 택시 승차대
3.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공원

4. 「도로교통법」에 따른 어린이 보호구역
5. 해수욕장 및 어린이 놀이터
6. 도심 내 번화가 또는 관광·쇼핑·문화 활동 등으로 시민의 통행이 많고 혼잡한 거리
7.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에 따른 수소연료공급시설
8.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시행령」 제2조제3호에 따른 주유소
9.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을 하는 가스충전소
10. 그 밖에 금연환경 조성과 주민건강 증진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거리와 장소

② 누구든지 제1항에 따라 지정된 금연구역에서 흡연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8조(금연구역 지정 방법)

① 도지사는 제7조에 따라 금연구역을 지정하거나 변경·해제하려는 경우 지역주민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해당 시장·군수와 협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금연구역으로 지정하거나 변경·해제하는 때에는 전북특별자치도보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 게재 등의 방법으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공고하여야 한다.<개정 2023. 12. 8.>

1. 금연구역의 위치 및 면적
2. 금연구역이 표시된 도면

제9조(금연구역 표시)

① 도지사는 금연구역을 지정하는 경우 금연구역임을 알리는 안내표지 또는 조형물을 설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표지판과 조형물의 모양·규격·설치방법 등은 도지사가 따로 정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안내표지판 또는 조형물에는 금연구역의 경계범위와 간접흡연 피해방지를 위한 문구를 표시하여야 한다.

제10조(흡연 피해자 구제 지원)

① 도지사는 흡연으로 인한 도민의 건강과 재산상의 피해 구제를 위한 필요한 노력을 할 수 있다.

제11조(담배 광고·판촉·후원 금지) 도지사는 담배회사의 광고·판촉·후원에 관계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2조(금연사업 평가)

① 도지사는 시·군의 금연 환경조성 등에 관한 사항을 평가할 수 있으며, 그 결과를 시책에 반영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금연사업의 원활한 시행과 금연사업 추진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제1항의 평가에 따른 상사업비 등의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

제13조(과태료)

① 도지사는 제7조제2항을 위반하여 금연구역에서 흡연한 사람에게는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제8항 및 제34조제3항에 따라 5만원의 과태료를 부과·징수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징수, 이의제기, 감경 등의 사항은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따른다. [본조신설 2021.6.10.]

제14조(권한위임) 도지사는 제13조에 따른 사무의 권한을 시장·군수에게 위임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1.6.10.]

제15조(시행규칙) [제13조에서 이동<2021.6.10.>]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10. 전북특별자치도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장소 지정 조례

Ⅰ. 종합의견

< 평가결과 >

□ 평가대상

조 례 명	전북특별자치도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장소 지정 조례		
조례 구분	개별 법률 위임	관계 법령	「식품위생법 시행규칙」별표 15의2 제10호
제정·시행일	2016. 12. 30. 제정	최근개정·시행일	2023. 12. 8. 개정
소관 부서	감염병관리과	소관 상임위	농업복지환경

□ 평가의견

평가항목	평가의견	주요 내용
종합의견	개정/일반	- 법제처 자치법규 입안기준에 따른 상위법령 인용 오류 정비 검토 - 인용 법령 오류 정비 검토 - 문장부호 정비 검토 - 타 시·도의 사례를 참고하여 우대 규정 신설 검토
심층분석 결과		- 타 시·도의 사례를 참고하여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에 대한 지원 등, 영업자의 준수사항, 영업신고표시, 위반행위에 대한 조치 규정을 신설하는 방안을 기 제시된 개정의견에서 개정안에 반영하여 제시함
1. 입법 근거 및 적법성	적정	상위법의 위임 범위에서 적절하게 제정되었음
2. 조례의 실효성	적정	전북특별자치도 내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장소 지정을 통해 조례의 실효성을 확보하고 있음
3. 조례 내용의 적정성	적정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장소 및 첨부서류 규정 내용으로 조례 내용이 적정함
4. 조례의 공평성	적정	장애, 성별, 나이 등에 관한 사회적 편견, 고정관념이 반영된 표현 및 차별 규정 없음
5. 주민 수용성	적정	조례의 체계 및 용어가 주민이 알기 쉽게 되어 있음
6. 전북자치도 현실부합성	적정	전북특별자치도의 무분별한 음식판매자동차 판매를 방지하기 위하여 제정된 본 조례는 행정수요를 반영하고 있어 전북특별자치도 현실에 부합함
7. 위원회 운영의 적정성	-	위원회 운영 관련 규정이 없음
※ 기타 의견	없음	

Ⅱ. 항목별 평가 결과

평가항목	세부항목	척도	의견 및 자료
1. 입법의 근거 및 적법성	1) 위임조례인가 자치사무에 관한 조례인가?	☑ 위임조례 ☐ 자치사무에 관한 조례	
	2) 조례에서 규정하고 있는 위임근거가 올바른가?	☑ 그렇다 ☐ 그렇지않다 ☐ 해당사항 없음	
	3) 조례가 위임범위에서 적절하게 제·개정되었는가?	☑ 그렇다 ☐ 그렇지않다 ☐ 해당사항 없음	
	4) 조례 제.개정 이후 동일 또는 유사한 법령이나 제도가 만들어졌거나 근거법령이 개정 또는 폐지되었는가?	☐ 그렇다 ☑ 그렇지않다 ☐ 해당사항 없음	
	5) 조례에서 주민의 권리제한, 의무부과, 벌칙 부과, 규제사항에 대한 법률위임이 있는가?	☐ 그렇다 ☑ 그렇지않다 ☐ 해당사항 없음	
	6) 상위법령에 위배되는 조항이 있는가?	☐ 그렇다 ☑ 그렇지않다 ☐ 해당사항 없음	
2. 조례의 실효성	1) 조례의 시행과정에서 다른 조례와의 충돌이나 모순이 발생하고 있는가?	☐ 그렇다 ☑ 그렇지않다 ☐ 해당사항 없음	
	2) 이 조례와 유사 또는 동일한 다른 조례가 제정 및 시행되고 있어 통합할 필요가 있는가?	☐ 그렇다 ☑ 그렇지않다 ☐ 해당사항 없음	
	3) 조례에 따른 계획이 수립·시행되고 있는가?	☐ 그렇다 ☐ 그렇지않다 ☑ 해당사항 없음	
	4) 조례에서 집행기관 등에 책무를 부여하고 있는가?	☐ 그렇다 ☑ 그렇지않다 ☐ 해당사항 없음	

평가항목	세부항목	척도	의견 및 자료
	5) 조례에서 부여한 책무와 관련사업을 집행기관이 잘 이행하고 있는가?	□ 그렇다 □ 그렇지않다 ☑ 해당사항 없음	
3. 조례 내용의 적정성	1) 조례에 재정지원 관련 규정이 있는가?	□ 그렇다 ☑ 그렇지않다 □ 해당사항 없음	
	2) 조례 시행에 필요한 예산 확보와 집행이 잘 이루어지고 있는가?	□ 그렇다 □ 그렇지않다 ☑ 해당사항 없음	
	3) 지원대상이 집행이 가능한 정도로 구체화 되어 있는가?	□ 그렇다 □ 그렇지않다 ☑ 해당사항 없음	
	4) 조례에 따른 위탁사무가 위탁대상으로 적정한가?	□ 그렇다 □ 그렇지않다 ☑ 해당사항 없음	
4. 조례의 공평성	1) 조례에서 장애인, 성별 등의 특정계층이나 특정지역을 차별하는 조항이 있는가?	□ 그렇다 ☑ 그렇지않다 □ 해당사항 없음	
	2) 조례에서 정한 차별이 합리적인가?	□ 그렇다 □ 그렇지않다 ☑ 해당사항 없음	
5. 주민 의견 수용성	1) 조례 제·개정 시 입법예고는 하였는가?	☑ 그렇다 □ 그렇지않다 □ 해당사항 없음	
	2) 조례 제·개정 시 공청회, 세미나 등 이해관계인 및 주민에 대한 의견 수렴 과정이 있었는가?	□ 그렇다 □ 그렇지않다 ☑ 해당사항 없음	
	3) 조례와 관련한 민원(청원, 진정, 소송 등)이 제기되거나 개정 또는 폐지 요구가 있었는가?	□ 그렇다 □ 그렇지않다 ☑ 해당사항 없음	
	4) 조례의 체계나 사용 되어진 용어가 주민이 알기 쉽게 되어 있는가?	☑ 그렇다 □ 그렇지않다 □ 해당사항 없음	
6. 위원회 운영의 적정성	1) 조례로 위원회를 구성하도록 되어 있는가?	□ 그렇다 ☑ 그렇지않다 □ 해당사항 없음	

평가항목	세부항목	척도	의견 및 자료
	2) 위원회가 법정위원회인가 조례로 설치하도록 한 위원회인가?	☐ 법정위원회 ☐ 조례로 정한 위원회 ☑ 해당사항 없음	
	3) 위원회 위원의 성별 구성이 적정한가?	☐ 그렇다 ☐ 그렇지않다 ☑ 해당사항 없음	
	4) 위원회가 법령이나 조례에서 정한 회의개최 운영 실적이 있고 관련 회의록을 보존하고 있는가?	☐ 그렇다 ☐ 그렇지않다 ☑ 해당사항 없음	
	5) 위원회를 계속 설치·운영할 필요성이 있는가?	☐ 그렇다 ☐ 그렇지않다 ☑ 해당사항 없음	
	6) 해당 위원회와 유사한 다른 위원회와의 기능적 통합이 필요한가?	☐ 그렇다 ☐ 그렇지않다 ☑ 해당사항 없음	
7. 종합 의견	1) 이 조례를 현행대로 유지할 필요가 있는가?	☑ 그렇다 ☐ 그렇지않다	
	2) 이 조례를 개정할 이유가 있는가? (해당사항 모두 표기)	☐ 위임근거에 불부합 ☐ 위임근거 불명확 ☐ 법령의 위임 없는 규제 정비 필요 ☐ 다른 조례와의 상충 및 모순 ☐ 조례 시행의 문제점 발생 ☐ 조례의 공평성 문제 ☑ 알기 쉬운 법령정비 기준에 따른 정비 필요 ☐ 위원회 관련 규정개정 필요 ☑ 그 밖의 사유	-우대 규정 신설 검토
	3) 이 조례를 폐지할 사유가 있는가? (해당사항 모두 표기)	☐ 다른 유사한 조례와의 통합 운영 필요성 ☐ 조례 시행 불가능 ☐ 최근 3년간 조례 관련 운영 실적 전무 ☐ 기타	
	4) 그 밖의 이 조례와 관련된 의견이 있는가?	☐ 있다 ☐ 없다	

Ⅲ. 세부내용

조례명	전북특별자치도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장소 지정 조례

■ 소관 부서 의견(팀)

○ **최종의견 :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별표15의2에 따른 전북특별자치도 내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을 할 수 있는 장소를 지정하기 위해서는 조례의 유지가 필요함**

○ **내용**

- 본 조례는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42조제1항제14호에 따른 영업을 할 수 있는 장소를 지정하기 위해 제정된 조례임

■ 종합의견	개정 권고/일반 정비

◎ 입법평가 세부의견

○ **평가항목별 검토**

평가항목	평가항목별 검토 내용
1. 입법 근거 및 적법성	상위법의 위임 범위에서 적절하게 제정되었음
2. 조례의 실효성	전북특별자치도 내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장소 지정을 통해 조례의 실효성을 확보하고 있음
3. 조례 내용의 적정성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장소 및 첨부서류에 관한 내용을 규정하여 조례 내용이 적정함
4. 조례의 공평성	장애, 성별, 나이 등에 관한 사회적 편견, 고정관념이 반영된 표현 및 차별 규정 없음
5. 주민 수용성	조례의 체계 및 용어가 주민이 알기 쉽게 되어 있음
6. 전북자치도 현실부합성	전북특별자치도의 무분별한 음식판매자동차 판매를 방지하기 위하여 제정된 본 조례는 행정수요를 반영하고 있어 전북특별자치도 현실에 부합함
7. 위원회 운영의 적정성	위원회 운영 관련 규정이 없음
※ 기타 의견	없음

○ **연도별 사업내용 및 예산/집행액**

- 사업내용 및 예산집행내역 없음

○ **조례의 입법목적 달성도 또는 부수효과 분석**

- 조례 목적달성도 평가
  - 조례를 기반으로 규정된 내용을 통해 음식판매자동차의 영업장소가 지정되는바 조례의 목적이 달성되었다고 평가됨
- 부수효과
  - 전북특별자치도 내에서 운영되는 음식판매자동차에 대한 최소한의 규제를 실시하여 전북특별자치도민의 안전을 확보하고 음식판매자동차의 난립을 방지함

○ **타 시·도 유사 조례와 비교 또는 타 시·도 자치법규(정책) 동향**

전북특별자치도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장소 지정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시설·장소 지정 등에 관한 조례**	**경기도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장소 지정 및 영업의 지원 등에 관한 조례**	**광주광역시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장소 지정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제2조(영업장소)	제2조(영업장소)
제3조(영업장소)	제3조(음식판매자동차 영업시설·장소)	제3조(영업장소 지정신청)	제3조(영업장소 지정신청)
제4조(첨부서류)	**제4조(영업시설 등의 사용허가·계약 시 우대)**	**제4조(음식판매자동차 영업에 대한 지원 등)**	제4조(첨부서류)
제5조(시·군 조례와의 관계)	**제5조(음식판매자동차 영업 위생교육)**	제5조(음식판매자동차 영업자격, 영업기간 등)	제5조(음식판매자동차 영업기간 제한)
제6조(준용)	제6조(협력체계 구축)	제5조의2(모집방법)	제6조(음식판매자동차 영업 시 준수사항)
		제5조의3(우선순위)	**제7조(영업자의 범위 등)**
		제5조의4(지역축제 등 참여지원)	**제8조(영업신고 표시)**
		제6조(음식판매자동차 영업 시 준수사항)	**제9조(의무불이행에 대한 조치)**
		제7조(영업신고 표시)	**제10조(음식판매자동차 영업에 대한 지원 등)**
		제8조(의무불이행에 대한 조치)	
		제9조(협조요청)	
		제10조(시행규칙)	

- 강원특별자치도 조례에서는 도민이 운영하는 음식판매자동차에 대한 우대사항을 규정하고 운영자에 대한 위생교육을 실시하도록 규정함
- 경기도 조례에서도 강원도와 유사하게 도민이 운영하는 음식판매자동차에 대한 우대사항을 규정하고 영업 시 준수사항을 규정하여 음식판매자동차의 실효적인 운영을 도모함. 광주광역시 조례 또한 지원 규정을 두고 있음

Ⅳ. 개정의견

현 행	개정안	비고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 2. 생략 3. "제과점영업"이란 영 제21조제8호 나목에 해당하는 영업을 말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 2. 현행과 같음 3. "제과점영업"이란 영 제21조제8호 바목에 해당하는 영업을 말한다.	-제과점영업은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제8호바목에서 규정하고 있음. 인용 법령 조항 인용오류 정비 권고
제3조(영업장소) 음식판매자동차를 이용한 휴게음식점영업 또는 제과점영업을 할 수 있는 전북특별자치도 내 영업장소는 다음 각 호를 따른다. 1. 「문화예술진흥법」 제2조제1항제3호에 따른 시설 2. 「도로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도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 및 영 제2조제2항제1호에 따른 보행자전용도로 3. 「자연공원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공원 4. 생략 5.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5조제2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공공용재산 및 기업용재산 <신설>	제3조(영업장소) 음식판매자동차를 이용한 휴게음식점영업 또는 제과점영업을 할 수 있는 전북특별자치도 내 영업장소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문화예술진흥법」 제2조제1항제3호에 따른 시설 2. 「도로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도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2항제1호에 따른 보행자전용도로 3. 「자연공원법」 제2조제3호에 따른 도립공원, 같은 조 제4호에 따른 군립공원, 같은 조 제4호의2에 따른 시립공원 4. 현행과 같음 5.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5조제2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공공용재산 및 기업용재산 6.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조제1호 및 제4호에 따른 전통시장 및 상권활성화구역	-문장 표현 정비 권고 -띄어쓰기 정비 권고 -제2호: 이 조례 제2조에서 「식품위생법 시행령」을 "영"으로 약칭하고 있음. 제3호제2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영"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말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 시행령"으로 사용하도록 정비 권고 -제3호: 「자연공원법」 제2조제1호에서는 국립공원, 도립공원, 군립공원 및 지질공원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이 중에서 전북특별자치도의 권한 범위에 있는 "도립공원" 등으로 한정하도록 정비 권고 -타 시·도의 사례를 참고하여 전통시장 등을 영업장소로 추가하도록 신설 검토 권고
<신설>	제3조의2(음식판매자동차 영업에 대한 지원 등) 도지사는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지원할 수 있다. 1.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장소 확대 등 제도적 기반구축 2. 음식판매자동차 영업 관련 창업 희망자, 종사자에 대한 교육지원 3. 음식판매자동차 영업과 관련한	-타 시·도의 사례를 참고하여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에 대한 지원 규정 신설 검토 권고

현 행	개정안	비고
	다음 각 목에 대한 창업지원 가.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시행령」 제7조에 따른 취업애로 청년 나. 소득인정액이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차상위계층 이하인 사람 다.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사회적기업 라. 「협동조합 기본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사회적협동조합 4. 그 밖에 음식판매자동차 영업 활성화를 위하여 도지사가 인정하여 규칙으로 정하는 사항	
<신설>	제3조의3(지역축제 등 참여지원) 도 및 도 내 시·군에서 주최·주관·후원하는 축제 및 행사에 음식판매자동차가 참여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이 경우 도 내 영업신고 된 음식판매자동차를 우선적으로 모집할 수 있다.	-심층분석을 통해 타 시·도의 사례를 참고하여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에 대한 지원 규정 신설 검토 권고
제4조(첨부서류) 제3조 각 호의 시설 또는 장소에서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을 하려는 경우 제출하여야 하는 첨부 서류는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로 한다. 1. 이하 생략	제4조(첨부서류) 제3조 각 호의 시설 또는 장소에서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을 하려는 경우 제출하여야 하는 첨부 서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이하 현행과 같음	-문장 표현 정비 권고
제5조(시·군 조례와의 관계) 시·군의 조례로 영업장소 및 첨부서류를 정한 경우에는 제3조 및 제4조에도 불구하고 해당 시군의 조례를 따른다.	제5조(시·군 조례와의 관계) 시·군의 조례로 영업장소 및 첨부서류를 정한 경우에는 제3조 및 제4조에도 불구하고 해당 시·군의 조례를 따른다.	-문장 부호 추가하도록 정비 권고
제6조(준용)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식품위생법」등 관련 법규를 따른다.	<삭제>	-상위법령인 「식품위생법」은 준용의 대상이 아니며, 다른 법률 등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당연히 적용되는 것으로 준용 규정의 실익이 없음
<신설>	제7조(영업자의 준수사항) ①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자(이하 "영업자"라 한다)는 「식품위생법」에 따른 위생안전 등에 필요한 조건을 준수하고 장소사용계약에 관한 의무를 이행해야	-타 시·도의 사례를 참고하여 영업 중 발생할 수 있는 위생 문제나 안전사고를 사전에 방지하고, 불공정한 영

현 행	개정안	비고
	한다. ② 영업자는 지정된 영업기간이 만료되는 즉시 영업을 중단하고 영업기간 연장을 위한 재계약 등의 조치를 취해야 한다.	업 행위를 예방할 수 있어 이를 통해 영업자의 책임의식이 강화될 수 있도록 조항 신설 권고
<신설>	제8조(영업신고표시) 영업자는 본인, 영업장소, 영업신고번호, 영업소 명칭 등이 작성된 영업신고 표시사항을 이용객이 잘 볼 수 있는 장소에 부착해야 한다.	-타 시·도의 사례를 참고하여 전북특별자치도 조례에 소비자의 신뢰를 확보하고 영업의 투명성을 높일 수 있도록 영업 신고 표시 조항을 신설 권고
<신설>	제9조(위반행위에 대한 조치) 전북특별자치도지사는 영업자가 제4조의 준수사항을 위반한 때에는 관련 법령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타 시·도의 사례를 참고하여 영업행위 위반에 대한 조치를 명시하여 영업자의 법규 준수를 유도하고 위반 시 제재를 명확히 하는 조항을 신설 권고

심층분석 관련 검토

○ **심층분석 사유**

- 타 시·도의 사례를 참고하여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자 지원, 영업자의 준수사항 및 영업신고 표시, 위반행위에 대한 조치사항에 대한 규정 신설 필요성을 검토

○ **심층분석**

- 타 시·도의 조례 규정을 통하여 전북자치도의 현실에 맞는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자에 대한 지원 및 책임(준수사항)을 위반했을 때의 조치사항 신설을 검토함
- 타 시·도의 관련 규정을 살펴보면 아래와 같음

-	**강원특별자치도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시설·장소 지정 등에 관한 조례**	**경기도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장소 지정 및 영업의 지원 등에 관한 조례**	**광주광역시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장소 지정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우대	제4조(영업시설 등의 사용허가·계약 시 우대) 도지사는 규칙 별표 15의2에 따른 시설·장소를 사용할 수 있는 허가·계약 등을 할 때 강원특별자치도에 주소를 두고 실제로 거주하는 사람 또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가 있는 자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우대할 수 있다. 1.「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제8조의4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른 취업에 어려움을 겪는 청년 2.「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7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급여 수급자 3.「사회적기업 육성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사회적기업 4.「협동조합 기본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사회적협동조합 5.「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16조에 따라 지정된 지역자활센터	제4조(음식판매자동차 영업에 대한 지원 등) 도지사는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지원할 수 있다. 1.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장소 확대 등 제도적 기반구축 2. 음식판매자동차 영업 관련 창업 희망자, 종사자에 대한 교육지원 3. 음식판매자동차 영업과 관련한 다음 각 목에 대한 창업 지원 가.「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시행령」 제7조에 따른 취업애로 청년 나. 소득인정액이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제3조에 따른 차상위계층 이하인 사람 다.「사회적기업 육성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사회적기업 라.「협동조합 기본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사회적협동조합 4. 그 밖에 음식판매자동차 영업 활성화를 위하여 도지사가 인정하여 규칙으로 정하는 사항	제10조(음식판매자동차 영업에 대한 지원 등) ① 시장은 음식판매자동차 영업 활성화를 위하여 창업자금 융자, 창업·운영 교육 등 재정적,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음식판매자동차를 제작하여 이를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자에게 임대하는 등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의 공공운영 방안 등을 강구할 수 있다. ③ 시장은 광주형 음식판매자동차 브랜드 개발을 통하여 음식 한류문화조성 등을 통한 관광 및 문화산업 진흥방안을 강구할 수 있다.

-	강원특별자치도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시설·장소 지정 등에 관한 조례	경기도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장소 지정 및 영업의 지원 등에 관한 조례	광주광역시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장소 지정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위생 교육 등 준수 사항	제5조(음식판매자동차 영업 위생교육) 도지사는 음식판매자동차 영업 지원을 위하여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자의 위생관리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제7조(영업신고 표시) ① 이 조례에 따른 음식판매자동차는 다른 무신고업소 등과 구분하기 위하여 영업신고표시 등을 부착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영업신고표시에는 영업자, 영업장소, 영업기간, 영업신고번호 등의 사항을 기재한다.	제6조(음식판매자동차 영업 시 준수사항)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자는 관련법령에 따른 위생, 안전 등 모든 조건을 준수하고, 시설 및 장소 사용 계약의 모든 의무를 이행하여야 한다. 제8조(영업신고 표시) ① 시장은 이 조례에 따른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을 다른 무신고업소 등과 구분하기 위하여 영업신고표시 등을 지정하여 이 조례에 따른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자에게 부착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영업신고표시에는 영업자, 영업장소, 영업기간, 영업신고번호 등 시장이 지정한 사항을 기재한다.
축제 등 참여 지원	-	제5조의4(지역축제 등 참여지원) 도 및 도내 시·군에서 주최·주관·후원하는 축제 및 행사에 음식판매자동차가 참여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이 경우 도내 영업신고 된 음식판매자동차를 우선적으로 모집할 수 있다.	-
협력 체계 구축	제6조(협력체계 구축) 도지사는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중앙행정기관, 시·군, 관련 기관 및 법인·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제9조(협조요청) 도지사는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관련 행정기관, 공공단체 등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거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

- 타 시·도의 사례를 참고하여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에 대한 지원 등, 영업자의 준수사항, 영업신고표시, 위반행위에 대한 조치 규정을 신설하는 방안을 기 제시된 개정의견에서 개정안에 반영하여 제시함

- 추가적으로 지역축제 등 참여지원 관련 규정의 신설도 검토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임. 기 제안한 영업에 대한 지원에 더하여 이 규정의 신설을 아래와 같이 제안함

현 행	개정안	비고
<신설>	제3조의3(지역축제 등 참여지원) 도 및 도 내 시·군에서 주최·주관·후원하는 축제 및 행사에 음식판매자동차가 참여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이 경우 도 내 영업신고 된 음식판매자동차를 우선적으로 모집할 수 있다.	-타 시·도의 사례를 참고하여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에 대한 지원 규정 신설 검토 권고

□ 참고자료 1 – 위원회 관련 실적

○ 구성

- 위원회 규정 없음

○ 개최 실적

- 해당사항 없음

□ 참고자료 2 – 전북 특별자치도 내 푸드트럭 허가구역 현황



표준데이터 기본정보 메타데이터 다운로드 오류신고 및 문의

제공범위(대상)	「식품위생법」 등에 따른 푸드트럭 영업이 가능하도록 지방자치단체가 허가한 푸드트럭허가구역에 대한 정보		
관련법령	식품위생법, 지방자치단체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장소 지정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 등		
소관기관	-	제공기관	지방자치단체
표준데이터셋제공시스템	해당없음	다운로드 수	40390
갱신주기	연간	수정일	2024-09-03
분류체계	보건 - 식품의약안전	키워드	푸드트럭존,푸드트럭운영,이동음식점
참고자료			

데이터 목록 (총 4 건) 전북특별자치도 검색

파일데이터	전북특별자치도_전주시_푸드트럭허가구역	제공기관 :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	수정일 : 2024-05-02
파일데이터	전북특별자치도_군산시_푸드트럭허가구역	제공기관 : 전북특별자치도 군산시	수정일 : 2024-03-08
파일데이터	전북특별자치도_익산시_푸드트럭허가구역	제공기관 : 전북특별자치도 익산시	수정일 : 2024-03-04
파일데이터	전라북도_고창군_푸드트럭허가구역	제공기관 : 전북특별자치도 고창군	수정일 : 2023-01-20

붙임 1 사업 관련 추진실적

□ 연도별 사업 및 예산 집행 실적

○ 사업 및 예산집행실적 없음

붙임 2 평가대상 조례

전북특별자치도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장소 지정 조례

[시행 2024. 1. 18.] [전북특별자치도조례 제5399호, 2023. 12. 8., 일부개정]

전북특별자치도(감염병관리과), 063-280-2448

제1조(목적) 이 조례는「식품위생법 시행규칙」별표15의2제9호에 따른 전북특별자치도 내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을 할 수 있는 장소를 지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3. 12. 8.>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음식판매자동차”란「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별표 1 제1호·제2호 및 비고 제1호가목에 따른 이동용 음식판매 용도인 소형·경형화물자동차 또는 같은 표 제2호에 따른 이동용 음식판매 용도인 특수작업형 특수자동차를 말한다.
2. “휴게음식점영업”이란「식품위생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1조제8호가목에 해당하는 영업을 말한다.
3. “제과점영업”이란 영 제21조제8호나목에 해당하는 영업을 말한다.

제3조(영업장소) 음식판매자동차를 이용한 휴게음식점영업 또는 제과점영업을 할 수 있는 전북특별자치도 내 영업장소는 다음 각 호를 따른다.<개정 2023. 12. 8.>

1. 「문화예술진흥법」제2조제1항제3호에 따른 시설
2. 「도로법」제2조제1호에 따른 도로,「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2조제6호 및 영 제2조제2항제1호에 따른 보행자전용도로
3. 「자연공원법」제2조제1호에 따른 공원
4.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및「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제2조제1항에 따른 공공기관에서 주최, 주관하는 행사의 장소 또는 시설
5.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제5조제2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공공용재산 및 기업용재산

제4조(첨부서류) 제3조 각 호의 시설 또는 장소에서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을 하려는 경우 제출하여야 하는 첨부 서류는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로 한다.

1. 해당 시설 또는 장소의 소유자, 사업자, 운영자 또는 관리자임을 증명하는 서류
2. 해당 시설 또는 장소의 소유자, 사업자, 운영자, 또는 관리자 등과 체결한 사용계약, 사용·수익허가 또는 점용허가 등에 관한 서류

제5조(시·군 조례와의 관계) 시·군의 조례로 영업장소 및 첨부서류를 정한 경우에는 제3조 및 제4조에도 불구하고 해당 시군의 조례를 따른다.

제6조(준용)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식품위생법」등 관련 법규를 따른다.

11. 전북특별자치도 녹색제품 구매 촉진 조례

Ⅰ. 종합의견

< 평가결과 >

□ 평가대상

조 례 명	전북특별자치도 녹색제품 구매 촉진 조례		
조례 구분	개별 법률 위임	관계 법령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제11조
제정·시행일	2008. 12. 26 제정	최근개정·시행일	2023. 12. 8. 개정
소관 부서	탄소중립정책과	소관 상임위	농업복지환경

□ 평가의견

평가항목	평가의견	주요 내용
종합의견	개정/일반	- 법제처 자치법규 입안기준에 따른 정비(상위법 폐지사항, 개정사항 등 반영, 띄어쓰기 정비) 검토 - 시행규칙은 개별 조례에서 위임이 없더라도 조례의 집행에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규칙으로 규정할 수 있으므로 삭제 권고
심층분석 결과		- 타 시·도 사례와 비교하여 선진적인 규정의 도입을 검토하였으나 추가적인 시사점을 발견하기 어려움. 개정의견과 같이 개정하도록 권고함
1. 입법 근거 및 적법성	적정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제11조를 근거로 하여 위임범위에서 적절하게 제정되었음
2. 조례의 실효성	적정	조례 제4조에 따른 적용대상 공공기관을 통해 조례의 실효성을 확보하고 있음
3. 조례 내용의 적정성	적정	조례에서 규정하고 있는 녹색제품 구매가 적절하게 이루어지고 있음
4. 조례의 공평성	적정	장애, 성별, 나이 등에 관한 사회적 편견, 고정관념이 반영된 표현 및 차별 규정 없음
5. 주민 수용성	적정	조례의 체계 및 용어가 주민이 알기 쉽게 되어 있음
6. 전북자치도 현실부합성	적정	전북특별자치도의 녹색제품 구매를 촉진하기 위하여 제정된 본 조례는 행정수요를 반영하고 있어 전북자치도 현실에 부합함
7. 위원회 운영의 적정성	-	위원회 운영 관련 규정이 없음
※ 기타 의견	없음	

Ⅱ. 항목별 평가 결과

평가항목	세부항목	척도	의견 및 자료
1. 입법의 근거 및 적법성	1) 위임조례인가 자치사무에 관한 조례인가?	☑ 위임조례 ☐ 자치사무에 관한 조례	
	2) 조례에서 규정하고 있는 위임근거가 올바른가?	☑ 그렇다 ☐ 그렇지않다 ☐ 해당사항 없음	
	3) 조례가 위임범위에서 적절하게 제·개정되었는가?	☑ 그렇다 ☐ 그렇지않다 ☐ 해당사항 없음	
	4) 조례 제.개정 이후 동일 또는 유사한 법령이나 제도가 만들어졌거나 근거법령이 개정 또는 폐지되었는가?	☑ 그렇다 ☐ 그렇지않다 ☐ 해당사항 없음	-상위법 폐지사항 확인
	5) 조례에서 주민의 권리제한, 의무부과, 벌칙 부과, 규제사항에 대한 법률위임이 있는가?	☐ 그렇다 ☑ 그렇지않다 ☐ 해당사항 없음	
	6) 상위법령에 위배되는 조항이 있는가?	☐ 그렇다 ☑ 그렇지않다 ☐ 해당사항 없음	
2. 조례의 실효성	1) 조례의 시행과정에서 다른 조례와의 충돌이나 모순이 발생하고 있는가?	☐ 그렇다 ☑ 그렇지않다 ☐ 해당사항 없음	
	2) 이 조례와 유사 또는 동일한 다른 조례가 제정 및 시행되고 있어 통합할 필요가 있는가?	☐ 그렇다 ☑ 그렇지않다 ☐ 해당사항 없음	
	3) 조례에 따른 계획이 수립·시행되고 있는가?	☐ 그렇다 ☐ 그렇지않다 ☑ 해당사항 없음	
	4) 조례에서 집행기관 등에 책무를 부여하고 있는가?	☐ 그렇다 ☑ 그렇지않다 ☐ 해당사항 없음	

평가항목	세부항목	척도	의견 및 자료
	5) 조례에서 부여한 책무와 관련사업을 집행기관이 잘 이행하고 있는가?	□ 그렇다 □ 그렇지않다 ☑ 해당사항 없음	
3. 조례 내용의 적정성	1) 조례에 재정지원 관련 규정이 있는가?	□ 그렇다 □ 그렇지않다 ☑ 해당사항 없음	
	2) 조례 시행에 필요한 예산 확보와 집행이 잘 이루어지고 있는가?	□ 그렇다 □ 그렇지않다 ☑ 해당사항 없음	
	3) 지원대상이 집행이 가능한 정도로 구체화 되어 있는가?	□ 그렇다 □ 그렇지않다 ☑ 해당사항 없음	
	4) 조례에 따른 위탁사무가 위탁대상으로 적정한가?	□ 그렇다 □ 그렇지않다 ☑ 해당사항 없음	
4. 조례의 공평성	1) 조례에서 장애인, 성별 등의 특정계층이나 특정지역을 차별하는 조항이 있는가?	□ 그렇다 ☑ 그렇지않다 □ 해당사항 없음	
	2) 조례에서 정한 차별이 합리적인가?	□ 그렇다 □ 그렇지않다 ☑ 해당사항 없음	
5. 주민 의견 수용성	1) 조례 제·개정 시 입법예고는 하였는가?	☑ 그렇다 □ 그렇지않다 □ 해당사항 없음	
	2) 조례 제·개정 시 공청회, 세미나 등 이해관계인 및 주민에 대한 의견 수렴 과정이 있었는가?	□ 그렇다 □ 그렇지않다 ☑ 해당사항 없음	
	3) 조례와 관련한 민원(청원, 진정, 소송 등)이 제기되거나 개정 또는 폐지 요구가 있었는가?	□ 그렇다 □ 그렇지않다 ☑ 해당사항 없음	
	4) 조례의 체계나 사용 되어진 용어가 주민이 알기 쉽게 되어 있는가?	☑ 그렇다 □ 그렇지않다 □ 해당사항 없음	
6. 위원회 운영의 적정성	1) 조례로 위원회를 구성하도록 되어 있는가?	□ 그렇다 ☑ 그렇지않다 □ 해당사항 없음	

평가항목	세부항목	척도	의견 및 자료
	2) 위원회가 법정위원회인가 조례로 설치하도록 한 위원회인가?	☐ 법정위원회 ☐ 조례로 정한 위원회 ☑ 해당사항 없음	
	3) 위원회 위원의 성별 구성이 적정한가?	☐ 그렇다 ☐ 그렇지않다 ☑ 해당사항 없음	
	4) 위원회가 법령이나 조례에서 정한 회의개최 운영 실적이 있고 관련 회의록을 보존하고 있는가?	☐ 그렇다 ☐ 그렇지않다 ☑ 해당사항 없음	
	5) 위원회를 계속 설치·운영할 필요성이 있는가?	☐ 그렇다 ☐ 그렇지않다 ☑ 해당사항 없음	
	6) 해당 위원회와 유사한 다른 위원회와의 기능적 통합이 필요한가?	☐ 그렇다 ☐ 그렇지않다 ☑ 해당사항 없음	
7. 종합 의견	1) 이 조례를 현행대로 유지할 필요가 있는가?	☑ 그렇다 ☐ 그렇지않다	
	2) 이 조례를 개정할 이유가 있는가? (해당사항 모두 표기)	☐ 위임근거에 불부합 ☐ 위임근거 불명확 ☐ 법령의 위임 없는 규제 정비 필요 ☐ 다른 조례와의 상충 및 모순 ☐ 조례 시행의 문제점 발생 ☐ 조례의 공평성 문제 ☑ 알기 쉬운 법령정비 기준에 따른 정비 필요 ☐ 위원회 관련 규정개정 필요 ☐ 그 밖의 사유	
	3) 이 조례를 폐지할 사유가 있는가? (해당사항 모두 표기)	☐ 다른 유사한 조례와의 통합 운영 필요성 ☐ 조례 시행 불가능 ☐ 최근 3년간 조례 관련 운영 실적 전무 ☐ 기타	
	4) 그 밖의 이 조례와 관련된 의견이 있는가?	☐ 있다 ☐ 없다	

Ⅲ. 세부내용

조례명	전북특별자치도 녹색제품 구매 촉진 조례

■ 소관 부서 의견(팀)

○ **최종의견 : 법령에 따른 녹색제품 구매 촉진을 규정하여 조례의 유지가 필요함**

○ **내용**

- (1-1) 본 조례는「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령」제11조에 따라 제정된 위임 조례임
- (2-5) 조례 내용에 따라 2024년(2023년 실적) 합동평가 녹색제품 구매실적 최종 결과 알림을 작성함

■ 종합의견	개정 권고/일반 정비

◎ 입법평가 세부의견

○ **평가항목별 검토**

평가항목	평가항목별 검토 내용
1. 입법 근거 및 적법성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제11조를 근거로 하여 위임 범위에서 적절하게 제정되었음
2. 조례의 실효성	조례 제4조에 따른 적용대상 공공기관을 통해 조례의 실효성을 확보하고 있음
3. 조례 내용의 적정성	조례에서 규정하고 있는 녹색제품 구매가 적절하게 이루어지고 있음
4. 조례의 공평성	장애, 성별, 나이 등에 관한 사회적 편견, 고정관념이 반영된 표현 및 차별 규정 없음
5. 주민 수용성	조례의 체계 및 용어가 주민이 알기 쉽게 되어 있음
6. 전북자치도 현실부합성	전북특별자치도의 녹색제품 구매를 촉진하기 위하여 제정된 본 조례는 행정수요를 반영하고 있어 전북자치도 현실에 부합함
7. 위원회 운영의 적정성	위원회 운영 관련 규정이 없음
※ 기타 의견	없음

○ **연도별 사업내용 및 예산/집행액**

- 도내 녹색제품 구매실적을 합동평가 중
- 별도의 예산집행액 내역은 없음

○ **조례의 입법목적 달성도 또는 부수효과 분석**

- 조례 목적달성도 평가
  - 2023년 전북특별자치도의 녹색제품 구매 목표율은 5.3%였으나, 실 구매율은 5.63%로, 목표 구매율을 상회하여 조례의 목적이 충분히 달성됨
- 부수효과
  - 녹색제품 구매를 통해 친환경산업을 발전시키고 자원 재활용률을 증진할 수 있음

○ **타 시·도 유사 조례와 비교 또는 타 시·도 자치법규(정책) 동향**

전북특별자치도 녹색제품 구매 촉진 조례	제주특별자치도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조례	서울특별시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조례	경기도 녹색제품 구매 촉진 조례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제2조(용어의 정의)	제2조(용어의 정의)	제2조(다른 법규와의 관계)	제2조(정의)
제3조(적용범위)	제3조(다른 법령 또는 조례와의 관계)	제3조(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제4조(적용대상 공공기관)	제4조(적용대상 공공기관)	제4조(녹색제품 구매·생산 촉진시책의 수립·시행)	제4조(적용대상 공공기관)
제5조(녹색제품 구매담당관 지정)	제5조(녹색제품 구매·생산 촉진 시책의 수립)	제5조(녹색제품 구매이행계획의 수립·시행)	제5조(녹색제품 구매촉진 시책의 수립)
제6조(녹색제품 구매·생산촉진 시책의 수립)	제6조(녹색제품 구매담당관 지정)	제6조(녹색제품 구매실적의 관리)	제6조(녹색제품 구매이행계획의 수립)
제7조(녹색제품 구매이행계획의 수립)	제7조(녹색제품 구매이행계획의 수립)	제7조(녹색제품 구매의무 등)	제7조(녹색제품의 구매실적)
제8조(녹색제품의 구매실적)	제8조(녹색제품의 구매실적 관리)	제8조(판단기준의 설정·관리)	제8조(녹색제품 구매의무)
제9조(녹색제품 구매의무)	제9조(녹색제품 구매예외)	제9조(구매담당자 등에 대한 교육)	제9조(녹색제품 구매담당관 지정)
제10조(녹색제품 판단기준)	제10조(판단기준의 설정·관리)	**제10조(관내기업에 대한 지원)**	제10조(판단기준의 설정·관리)
제11조(교육훈련)	제11조(교육훈련)	제11조(산학협력사업의 개발)	제11조(교육훈련)
제12조(녹색제품 생산·유통·판매지원)	**제12조(도내기업에 대한 지원)**	제12조(녹색제품에 관한 정보제공)	제12조(자금 및 융자지원 확대)
제13조(녹색제품 정보제공)	제13조(녹색제품 정보제공)	제13조(녹색제품 구매문화의 증진)	제13조(녹색제품 개발·생산·유통·판매 지원 등)
제14조(구매문화 증진사업)	제14조(녹색제품 구매문화 증진사업)	**제14조(녹색구매지원센터의 설치·운영)**	제14조(녹색제품 정보제공 등)
제15조(평가)	**제15조(녹색구매지원센터의 설치·운영)**	제15조(녹색제품 구매실적의 평가 등)	**제15조(녹색제품 구매문화 증진사업)**

제16조(사무분장)	제16조(평가)	제16조(포상)	**제16조(녹색구매지원센터의 설치·운영 등)**
제17조(시행규칙)	제17조(포상)		제17조(기관 평가)
	제18조(시행규칙)		제18조(포상)
			제19조(사무분장)
			제20조(시행규칙)

- 제주특별자치도와 서울특별시, 경기도 조례에서는 지역 내에 소재하는 녹색제품 생산기업에 대한 지원을 실시하고 녹색제품 구매지원센터를 설치하여 생산자와 소비자를 모두 지원할 수 있도록 방안을 마련하고 있으나, 이는「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제17조의3에 근거하여 추진할 수 있음. 이외 특별한 시사점 없음

Ⅳ. 개정의견

현 행	개정안	비고
제1장 총 칙	<삭제>	-장(章) 삭제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관내기업"이란 본사 또는 생산시설이 전북특별자치도내에 소재한 기업을 말한다. 2. 생략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관내기업"이란 본사 또는 생산시설이 전북특별자치도 내에 소재한 기업을 말한다. 2. 현행과 같음	-띄어쓰기 정비 권고
제4조(적용대상 공공기관) 이 조례의 적용을 받는 공공기관(이하"공공기관"이라 한다.)은 법 제2조제2호에 따른 공공기관을 말한다.	제4조(적용대상 공공기관) 이 조례의 적용을 받는 공공기관(이하 "공공기관"이라 한다)은 법 제2조제2호에 따른 공공기관을 말한다.	-약칭문 띄어쓰기 및 문장부호 사용 정비 권고
제5조(녹색제품 구매담당관 지정) ① 생략 ② 제1항에 따라 공공기관의 장이 지정할 수 있는 녹색제품 구매담당관은 전북특별자치도 물품관리 조례 시행규칙 제2조제1항제1호와 제2호에 따른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사람으로 한다. 1. 이하 생략	제5조(녹색제품 구매담당관 지정) ① 현행과 같음 ② 제1항에 따라 공공기관의 장이 지정할 수 있는 녹색제품 구매담당관은 「전북특별자치도 물품관리 조례 시행규칙」 제2조제1항제1호와 제2호에 따른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사람으로 한다. 1. 이하 현행과 같음	-인용하고 있는 시행규칙에 문장부호를 사용하도록 정비 권고
제2장 녹색제품 의무구매제의 이행	<삭제>	-장(章) 삭제
제6조(녹색제품 구매·생산촉진 시책의 수립) ① ~ ② 생략 ③ 도지사가 녹색제품 구매·생산촉진	제6조(녹색제품 구매·생산촉진 시책의 수립) ① ~ ② 현행과 같음 ③ 도지사가 녹색제품 구매·생산촉진	-띄어쓰기 정비 권고

현 행	개정안	비고
시책을 수립하거나 변경한 경우에는 이를 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하고 지원 사항을 건의 할 수 있다.	시책을 수립하거나 변경한 경우에는 이를 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하고 지원 사항을 건의할 수 있다.	
제7조(녹색제품 구매이행계획의 수립) ① ~ ② 생략 ③ 도지사는 제1항의 녹색제품 구매 이행계획과 법 제8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시장·군수가 제출한 녹색제품 구매이행계획을 종합하여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생략	제7조(녹색제품 구매이행계획의 수립) ① ~ ② 현행과 같음 ③ 도지사는 제1항의 녹색제품 구매 이행계획과 법 제8조제2항에 따라 시장·군수가 제출한 녹색제품 구매이행계획을 종합하여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현행과 같음	-조항 인용표기 방식에 맞게 정비 권고
제8조(녹색제품의 구매실적) ① 생략 ② 녹색제품의 구매실적에 대한 공표방법은 제7조제1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③ 이하 생략	제8조(녹색제품의 구매실적) ① 현행과 같음 ② 녹색제품의 구매실적에 대한 공표방법은 제7조제1항을 준용한다. ③ 이하 현행과 같음	-조항 인용표기 방식에 맞게 정비 권고
제9조(녹색제품 구매의무) ① 법 제6조에 따라 공공기관의 장은 상품을 구매하고자 하는 경우 녹색제품을 구매 하여야 한다. ② 생략	제9조(녹색제품 구매의무) ① 법 제6조에 따라 공공기관의 장은 상품을 구매하고자 하는 경우 녹색제품을 구매하여야 한다. ② 현행과 같음	-띄어쓰기 정비 권고
제10조(녹색제품 판단기준) 법 제11조제1항제2호에 따른 녹색제품 대상 품목 외의 품목에 대한 녹색제품 판단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수도권 대기환경 개선에 관한 특별법」에서 정한 저공해자동차 2. 생략 3.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및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에 따른 저탄소제품, 탄소중립제품 4. 이하 생략	제10조(녹색제품 판단기준) 법 제11조제1항제2호에 따른 녹색제품 대상 품목 외의 품목에 대한 녹색제품 판단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에서 정한 저공해자동차 2. 현행과 같음 3.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에 따른 녹색제품 4. 이하 현행과 같음	-폐지법에 대한 인용사항 삭제 권고
제3장 녹색제품 생산·유통·판매지원	<삭제>	-장(章) 삭제
제13조(녹색제품 정보제공) ① 생략 ② 도지사는 정보수집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전문기관 등에 예산의 범위 안에서 비용을 지불할 수 있다.	제13조(녹색제품 정보제공) ① 생략 ② 도지사는 정보수집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전문기관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비용을 지불할 수 있다.	-중복적인 표현 정비 권고
제14조(구매문화 증진사업) ① 도지사는 전북특별자치도내에 소재한 학교	제14조(구매문화 증진사업) ① 도지사는 전북특별자치도 내에 소재한 학	-띄어쓰기 정비 권고

현 행	개정안	비고
법인, 종교시설, 체육시설 및 산업계 등에게 녹색제품의 우선구매를 요청할 수 있다. ② 이하 생략	교법인, 종교시설, 체육시설 및 산업계 등에게 녹색제품의 우선구매를 요청할 수 있다. ② 이하 현행과 같음	
제4장 보 칙	<삭제>	-장(章) 삭제
제15조(평가) ① 도지사는 공공기관의 업무평가 항목에 녹색제품 구매실적 등을 반영하여 평가 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공공기관의 녹색제품 구매촉진 시책수립과 추진에 소요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보조할 수 있다.	제15조(평가) ① 도지사는 공공기관의 업무평가 항목에 녹색제품 구매실적 등을 반영하여 평가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공공기관의 녹색제품 구매촉진 시책수립과 추진에 소요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할 수 있다.	-띄어쓰기 정비 권고 -중복적인 표현 정비 권고
제16조(사무분장) 녹색제품의 구매촉진 업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한 부서간 사무분장은 별표와 같다.	제16조(사무분장) 녹색제품의 구매촉진 업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한 부서 간 사무분장은 별표와 같다.	-띄어쓰기 정비 권고
제1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삭제>	-시행규칙은 개별 조례에서 위임이 없더라도 조례의 집행에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규칙으로 규정할 수 있으므로 삭제 권고

심층분석 관련 검토

○ **심층분석**

- 타 시·도 사례와 비교하여 선진적 규정의 도입을 검토하였으나 추가적인 시사점을 발견하기 어려움. 개정의견과 같이 개정하도록 권고함

□ 참고자료 1 – 위원회 관련 실적

○ 구성

- 위원회 규정 없음

○ 개최 실적

- 해당사항 없음

□ 참고자료 2 – 조례 관련 보도 자료

○ 보도자료 1

전북특별자치도, 기후 대응 위해 녹색 제품 확대에 나선다, 전북도민일보[18)]

전북특별자치도가 에너지·자원 투입과 온실가스 및 오염물질의 발생을 최소화한 상품인 녹색 제품 구매 확대에 나섰다.

최근 기후 대응에 관한 관심이 갈수록 높아지면서 녹색 제품에 대한 관심도도 덩달아 높아지는 만큼 이에 적극 대응하기 위함이다.

7일 전북특별자치도에 따르면 녹색 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제6조로 인해 공공기관에서는 구매하고자 하는 품목에 녹색 제품이 있는 경우 의무 구매해야 한다.

이에 전북자치도도 자원의 낭비와 환경오염을 방지하고 온실가스 감축에 기여하기 위해 녹색 제품을 구매해왔으며 올해 총구매액 범위 변동에 따라 목표치를 증가했다.

기존에는 모든 물품 구매 건에 대한 금액을 총구매액으로 적용했으나 올해부터 녹색 제품이 있는 182개 제품군 구매 건에 대한 금액으로 총구매액을 적용하면서 녹색 제품 구매 목표치를 19.78%로 설정했다.

이 같은 목표치 변경은 기후환경 대응과 더불어 도내 녹색 제품 기업의 활성화를 위한 것으로 풀이되고 있다.

이에 녹색 제품 기업체의 물품 구매가 더욱 많아지면서 도내 해당 기업들도 활기가 생길 것으로 예상된다.

또 기존에 의무구매제도 인식 부족, 도내 인증업체 부족 등으로 인해 상대적으로 부족했던 구매율을 올리기 위한 방안도 마련했다.

우선 기업과 담당자 간 소통채널 마련 및 인증 유도방안 발굴하고 도내 제조업체 생산 제품이 녹색제품 인증을 받을 수 있도록 기업인증설명회 개최를 통한 제도 홍보, 등록 절차 안내하고 있다.

이어 기업에 지자체 녹색구매계획 공유 및 업체의 녹색제품 인증 취득을 유도할 수 있는 방안 도출하고 취득하게 되면 공공기관에서 구매할 수 있도록 홍보를 펼칠 예정이다.

전북자치도 관계자는 "녹색 제품 관련 업무를 주관하는 한국환경산업기술원과 협업해서 제도에 대한 설명 등을 안내하는 자리를 지속적으로 마련하기 위해 계획 중이다"며 "앞으로 녹색 제품에 대한 구매율을 상승시킬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18) https://www.domin.co.kr/news/articleView.html?idxno=1460886

□ 참고자료 3 – 조례 관련 구매 계획

○ 보고서 1

전북개발공사 2024년도 구매이행계획 공표

계획연도	기관명	총구매수량	총구매금액	녹색구매수량
2024	전북개발공사	12,250	1,109,376,450	3,250
	녹색구매금액	녹색구매수량비율	녹색구매금액비율	녹색구매제출상태명
	385,655,000	26.5	34.8	기술원 승인

붙임 1 사업 관련 추진실적

□ 연도별 사업 및 예산 집행 실적

○ 2023년 합동평가 녹색제품 구매실적

- 목표치 5.3%, 최저치 3.71%
- 미 달성 지역 : 장수, 고창, 부안

시군구별 자료

(단위: 원)

구분	시군	총구매액 (e호조)	**녹색제품 구매액** (에코스퀘어, 24.2.15)	**구매율**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	186,248,228,890	9,804,372,043	5.26%
전북특별자치도	군산시	70,929,166,160	4,020,223,326	5.67%
전북특별자치도	익산시	146,569,719,565	9,749,996,167	6.65%
전북특별자치도	정읍시	106,155,312,235	5,710,604,286	5.38%
전북특별자치도	남원시	117,821,653,055	6,322,262,124	5.37%
전북특별자치도	김제시	106,159,296,636	5,622,776,538	5.30%
전북특별자치도	완주군	80,275,611,890	3,410,487,387	4.25%
전북특별자치도	진안군	64,508,571,700	3,561,611,008	5.52%
전북특별자치도	무주군	45,277,924,325	2,507,981,132	5.54%
전북특별자치도	장수군	71,348,300,170	2,566,789,841	3.60%
전북특별자치도	임실군	61,362,093,882	5,745,251,271	9.36%
전북특별자치도	순창군	53,580,083,889	5,786,883,253	10.80%
전북특별자치도	고창군	113,365,024,760	3,150,462,583	2.78%
전북특별자치도	부안군	95,146,368,912	3,134,767,098	3.29%

붙임 2 평가대상 조례

전북특별자치도 녹색제품 구매 촉진 조례

[시행 2024. 1. 18.] [전북특별자치도조례 제5399호, 2023. 12. 8., 일부개정]

전북특별자치도(탄소중립정책과), 063-280-3523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제11조에 따라 전북특별자치도가 녹색제품의 구매를 촉진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1. 11. 11, 2015. 12. 11., 2023. 12. 8.>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개정 2011. 11. 11, 2015. 12. 11., 2023. 12. 8.>

1. “관내기업”이란 본사 또는 생산시설이 전북특별자치도내에 소재한 기업을 말한다.
2. “자발적 협약”이란 전북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 공공기관, 사업자, 민간단체 등이 녹색제품의 구매 또는 생산을 위한 목표와 그 이행방법 등에 관한 계획을 자발적으로 수립하여 이를 이행하기로 약속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령 또는 다른 조례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개정 2015. 12. 11>

제4조(적용대상 공공기관) 이 조례의 적용을 받는 공공기관(이하“공공기관”이라 한다.)은 법 제2조제2호에 따른 공공기관을 말한다.<개정 2015. 12. 11>

제5조(녹색제품 구매담당관 지정)

① 법 제6조의2에 따라 공공기관의 장은 녹색제품 구매의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녹색제품 구매 업무를 총괄하여 관리하는 자를 녹색제품 구매담당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11. 11. 11, 2014. 6 .27, 2015. 12. 11>

② 제1항에 따라 공공기관의 장이 지정할 수 있는 녹색제품 구매담당관은 전북특별자치도 물품관리 조례 시행규칙 제2조제1항제1호와 제2호에 따른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사람으로 한다.<신설 2015. 12. 11., 2023. 12. 8.>

1. 전북자치도 본청 : 회계과장
2. 직속기관, 사업소, 소방본부 및 도의회사무처 : 회계업무담당과장(과가 없는 기관은 그 소속기관의 장)

제2장 녹색제품 의무구매제의 이행

제6조(녹색제품 구매·생산촉진 시책의 수립)

① 도지사는 법 제3조제1항에 따라 전북특별자치도 지역 안에서 녹색제품 구매·생산을 활성화하기 위한 녹색제품 구매·생산 촉진시책을 수립하여 시행 할 수 있다.<개정 2011. 11. 11., 2023. 12. 8.>

② 구매·생산촉진 시책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녹색제품 구매촉진을 위한 중·장기 계획
2. 녹색제품 구매촉진을 위한 교육·홍보 및 인력양성 계획

3. 관내기업의 녹색제품 기술개발 및 국내·외 판매지원
4. 관내 녹색제품 유통·판매 사업자 지원
5. 그 밖에 도민의 녹색제품 구매촉진을 위한 홍보

③ 도지사가 녹색제품 구매·생산촉진 시책을 수립하거나 변경한 경우에는 이를 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하고 지원사항을 건의 할 수 있다.<개정 2011. 11. 11>

제7조(녹색제품 구매이행계획의 수립)

① 법 제8조에 따라 도지사는 환경부장관이 통보한 녹색제품 구매지침을 참고하여 매 회계연도의 시작 후 2개월 이내에 당해 회계연도의 녹색제품 구매이행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전북특별자치도 홈페이지 및 공보 등에 공표하여야 한다.<개정 2011. 11. 11, 2014. 6. 27., 2023. 12. 8.>

② 제1항의 녹색제품 구매이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개정 2011. 11. 11>

1. 녹색제품 구매품목 및 구매목표율 등 녹색제품 구매계획
2. 녹색제품 구매촉진을 위한 추진체계와 담당부서
3. 계약특수조건 규정, 기관업무평가, 제도개선 사항 등 녹색제품 구매촉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도지사는 제1항의 녹색제품 구매이행계획과 법 제8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시장·군수가 제출한 녹색제품 구매이행계획을 종합하여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1. 11. 11, 2014. 6. 27>

④ <삭제 2015. 12. 11>

제8조(녹색제품의 구매실적)

① 법 제9조제1항에 따라 도지사가 집계·공표하는 전년도 녹색제품 구매실적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개정 2011. 11. 11>

1. 녹색제품 구매이행계획 대비 구매실적<개정 2011. 11. 11>
2. 녹색제품 생산·유통·판매사업자에 대한 지원 실적<개정 2011. 11. 11>
3. 녹색제품 구매촉진을 위한 교육홍보 실적<개정 2011. 11. 11>
4. 녹색제품 구매촉진을 위한 제도·시책 개선실적과 수범사례 등<개정 2011. 11. 11>

② 녹색제품의 구매실적에 대한 공표방법은 제7조제1항의 규정을 준용한다.<개정 2011. 11. 11>

③ 도지사는 제1항의 녹색제품 구매실적과 법 제9조제2항에 따라 시장·군수가 제출한 녹색제품 구매이행실적을 취합하여 매년 3월말까지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1. 11. 11>

④ <삭제 2015. 12. 11>

제9조(녹색제품 구매의무)

① 법 제6조에 따라 공공기관의 장은 상품을 구매하고자 하는 경우 녹색제품을 구매 하여야 한다.<개정 2011. 11. 11, 2015. 12. 11>

② 도지사는 법 제6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어 녹색제품을 구매 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기록하여야 한다.<신설 2015. 12. 11>

제10조(녹색제품 판단기준) 법 제11조제1항제2호에 따른 녹색제품 대상 품목 외의 품목에 대한 녹색제품 판단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11. 11. 11, 2015. 12. 11>

1. 「수도권 대기환경 개선에 관한 특별법」에서 정한 저공해자동차<개정 2011. 11. 11, 2015. 12. 11>
2.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순환골재 및 순환골재 재활용 제품<개정 2015. 12. 11>
3.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및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에 따른 저탄소제품, 탄소중립제품<개정 2011. 11. 11, 2015. 12. 11>

4. 「에너지이용합리화법」에 따른 에너지 소비효율 Ⅰ등급 제품, 대기전력저감 우수제품, 고효율 에너지 기자재<개정 2015. 12. 11>
5. 제12조에 따른 녹색제품의 생산과 기술개발에 참여한 기업이나 교육기관에서 생산한 신제품 중 제조・사용・폐기과정에서 친환경성이 높다고 판단되는 제품<개정 2011. 11. 11, 2015. 12. 11>

제11조(교육훈련)

① 도지사는 녹색제품 구매촉진을 위하여 관할 공공기관의 구매담당자 등을 대상으로 매년 교육훈련 계획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개정 2011. 11. 11>

② 도지사는 구매담당자에 대한 교육훈련을 실시함에 있어 필요한 경우 환경부장관에게 강사 및 교재의 지원 등을 요청할 수 있다.<개정 2011. 11. 11>

제3장 녹색제품 생산·소비촉진

제12조(녹색제품 생산·유통·판매지원)

① 도지사는 관내기업이나 교육기관에 대하여 녹색제품의 생산과 기술개발을 위하여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개정 2011. 11. 11>

② 도지사는 관내기업이 생산한 녹색제품의 유통·판매지원을 위한 홍보, 시장개척, 수출 등을 지원할 수 있다.<개정 2011. 11. 11>

제13조(녹색제품 정보제공)

① 도지사는 녹색제품의 생산과 구매촉진에 필요한 관련정보를 수집하여 관내기업 및 산업계, 민간단체 등에게 제공할 수 있다.<개정 2011. 11. 11>

② 도지사는 정보수집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전문기관 등에 예산의 범위 안에서 비용을 지불할 수 있다.

제14조(구매문화 증진사업)

① 도지사는 전북특별자치도내에 소재한 학교법인, 종교시설, 체육시설 및 산업계 등에게 녹색제품의 우선구매를 요청할 수 있다.<개정 2011. 11. 11., 2023. 12. 8.>

② 도지사는 필요한 경우 관계기관·단체의 장과 녹색제품 구매촉진을 위한 자발적 협약 등을 맺을 수 있다.<개정 2011. 11. 11>

③ 도지사는 법인 또는 단체 등이 녹색제품의 소비촉진을 위하여 추진하는 교육·홍보사업에 대하여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지원하거나 행정지원을 할 수 있다.<개정 2011. 11. 11>

제4장 보 칙

제15조(평가)

① 도지사는 공공기관의 업무평가 항목에 녹색제품 구매실적 등을 반영하여 평가 할 수 있다.<개정 2011. 11. 11>

② 도지사는 공공기관의 녹색제품 구매촉진 시책수립과 추진에 소요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보조할 수 있다.<개정 2011. 11. 11>

제16조(사무분장) 녹색제품의 구매촉진 업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한 부서간 사무분장은 별표와 같다.<개정 2011. 11. 11>

제1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12. 전북특별자치도 도립공원 조례

Ⅰ. 종합의견

< 평가결과 >

□ 평가대상

조 례 명	전북특별자치도 도립공원 조례		
조례 구분	개별 법률 위임	관계 법령	「자연공원법」 제9조, 제37조, 제38조, 제80조, 「자연공원법 시행규칙」제24조
제정·시행일	2015. 10. 30. 제정	최근개정·시행일	2024. 5. 31. 개정
소관 부서	탄소중립정책과	소관 상임위	농업복지환경

□ 평가의견

평가항목	평가의견	주요 내용
종합의견	개정/일반	- 법제처 자치법규 입안기준에 따른 일본식 표현 정비 검토 - 위원의 회피와 관련하여 특별위원도 포함하도록 하고 사유발생 시 "회피하도록" 규정 정비 검토 - 도조례에서 시·군 규칙으로 위임하는 것은 체계에 맞지 아니하므로 시장·군수가 정하는 바에 따라 감면할 수 있도록 규정 정비 권고 - 시행규칙은 개별 조례에서 위임이 없더라도 조례의 집행에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규칙으로 규정할 수 있으므로 삭제 권고
심층분석 결과		- 「경기도 도립공원 관리 조례」에서는 2024년 개정 시 야간탐방과 안전용품 대여, 자연환경해설사 채용에 대한 규정을 신설하여 도립공원의 안전하고 편리한 이용을 도모함. 경기도의 사례를 참고하여 규정 신설을 제안함
1. 입법 근거 및 적법성	적정	「자연공원법」과 「자연공원법 시행규칙」을 근거로 하여 위임범위에서 적절하게 제정되었음
2. 조례의 실효성	적정	조례 제7조의 도립공원의 권한 위임조항을 통해 조례의 실효성을 확보하고 있음
3. 조례 내용의 적정성	적정	조례에서 규정하고 있는 재정지원이 적절하게 이루어지고 있음

4. 조례의 공평성	적정	장애, 성별, 나이 등에 관한 사회적 편견, 고정관념이 반영된 표현 및 차별 규정은 없으며, 시설사용료의 감면은 공무수행 목적 및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 측면으로 합리적인 차별로 평가됨
5. 주민 수용성	적정	조례의 체계 및 용어가 주민이 알기 쉽게 되어 있음
6. 전북자치도 현실부합성	적정	법령의 위임사항을 규정하여 도립공원을 전북특별자치도의 상황에 맞게 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위임조례로 전북특별자치도 현실에 부합함
7. 위원회 운영의 적정성	적정	위원회가 규정대로 설치되었고 활발히 운영되고 있어 위원회의 운영이 적절함
※ 기타 의견	없음	

Ⅱ. 항목별 평가 결과

평가항목	세부항목	척도	의견 및 자료
1. 입법의 근거 및 적법성	1) 위임조례인가 자치사무에 관한 조례인가?	☑ 위임조례 ☐ 자치사무에 관한 조례	
	2) 조례에서 규정하고 있는 위임근거가 올바른가?	☑ 그렇다 ☐ 그렇지않다 ☐ 해당사항 없음	
	3) 조례가 위임범위에서 적절하게 제·개정되었는가?	☑ 그렇다 ☐ 그렇지않다 ☐ 해당사항 없음	
	4) 조례 제.개정 이후 동일 또는 유사한 법령이나 제도가 만들어졌거나 근거법령이 개정 또는 폐지되었는가?	☐ 그렇다 ☑ 그렇지않다 ☐ 해당사항 없음	
	5) 조례에서 주민의 권리제한, 의무부과, 벌칙 부과, 규제사항에 대한 법률위임이 있는가?	☐ 그렇다 ☑ 그렇지않다 ☐ 해당사항 없음	
	6) 상위법령에 위배되는 조항이 있는가?	☐ 그렇다 ☑ 그렇지않다 ☐ 해당사항 없음	
2. 조례의 실효성	1) 조례의 시행과정에서 다른 조례와의 충돌이나 모순이 발생하고 있는가?	☐ 그렇다 ☑ 그렇지않다 ☐ 해당사항 없음	
	2) 이 조례와 유사 또는 동일한 다른 조례가 제정 및 시행되고 있어 통합할 필요가 있는가?	☐ 그렇다 ☑ 그렇지않다 ☐ 해당사항 없음	
	3) 조례에 따른 계획이 수립·시행되고 있는가?	☐ 그렇다 ☐ 그렇지않다 ☑ 해당사항 없음	
	4) 조례에서 집행기관 등에 책무를 부여하고 있는가?	☐ 그렇다 ☐ 그렇지않다 ☑ 해당사항 없음	

평가항목	세부항목	척도	의견 및 자료
	5) 조례에서 부여한 책무와 관련사업을 집행기관이 잘 이행하고 있는가?	□ 그렇다 □ 그렇지않다 ☑ 해당사항 없음	
3. 조례 내용의 적정성	1) 조례에 재정지원 관련 규정이 있는가?	☑ 그렇다 □ 그렇지않다 □ 해당사항 없음	-제6조
	2) 조례 시행에 필요한 예산 확보와 집행이 잘 이루어지고 있는가?	☑ 그렇다 □ 그렇지않다 □ 해당사항 없음	
	3) 지원대상이 집행이 가능한 정도로 구체화 되어 있는가?	□ 그렇다 ☑ 그렇지않다 □ 해당사항 없음	
	4) 조례에 따른 위탁사무가 위탁대상으로 적정한가?	□ 그렇다 □ 그렇지않다 ☑ 해당사항 없음	
4. 조례의 공평성	1) 조례에서 장애인, 성별 등의 특정계층이나 특정지역을 차별하는 조항이 있는가?	☑ 그렇다 □ 그렇지않다 □ 해당사항 없음	-제21조(시설사용료의 감면)
	2) 조례에서 정한 차별이 합리적인가?	☑ 그렇다 □ 그렇지않다 □ 해당사항 없음	
5. 주민 의견 수용성	1) 조례 제·개정 시 입법예고는 하였는가?	☑ 그렇다 □ 그렇지않다 □ 해당사항 없음	
	2) 조례 제·개정 시 공청회, 세미나 등 이해관계인 및 주민에 대한 의견 수렴 과정이 있었는가?	□ 그렇다 □ 그렇지않다 ☑ 해당사항 없음	
	3) 조례와 관련한 민원(청원, 진정, 소송 등)이 제기되거나 개정 또는 폐지 요구가 있었는가?	□ 그렇다 □ 그렇지않다 ☑ 해당사항 없음	
	4) 조례의 체계나 사용 되어진 용어가 주민이 알기 쉽게 되어 있는가?	☑ 그렇다 □ 그렇지않다 □ 해당사항 없음	
6. 위원회 운영의 적정성	1) 조례로 위원회를 구성하도록 되어 있는가?	☑ 그렇다 □ 그렇지않다 □ 해당사항 없음	

평가항목	세부항목	척도	의견 및 자료
	2) 위원회가 법정위원회인가 조례로 설치하도록 한 위원회인가?	☐ 법정위원회 ☑ 조례로 정한 위원회 ☐ 해당사항 없음	
	3) 위원회 위원의 성별 구성이 적정한가?	☑ 그렇다 ☐ 그렇지않다 ☐ 해당사항 없음	-위촉직 남5, 여4
	4) 위원회가 법령이나 조례에서 정한 회의개최 운영 실적이 있고 관련 회의록을 보존하고 있는가?	☑ 그렇다 ☐ 그렇지않다 ☐ 해당사항 없음	
	5) 위원회를 계속 설치·운영할 필요성이 있는가?	☑ 그렇다 ☐ 그렇지않다 ☐ 해당사항 없음	
	6) 해당 위원회와 유사한 다른 위원회와의 기능적 통합이 필요한가?	☐ 그렇다 ☑ 그렇지않다 ☐ 해당사항 없음	
7. 종합 의견	1) 이 조례를 현행대로 유지할 필요가 있는가?	☑ 그렇다 ☐ 그렇지않다	
	2) 이 조례를 개정할 이유가 있는가? (해당사항 모두 표기)	☐ 위임근거에 불부합 ☐ 위임근거 불명확 ☐ 법령의 위임 없는 규제 정비 필요 ☐ 다른 조례와의 상충 및 모순 ☐ 조례 시행의 문제점 발생 ☐ 조례의 공평성 문제 ☑ 알기 쉬운 법령정비 기준에 따른 정비 필요 ☐ 위원회 관련 규정개정 필요 ☑ 그 밖의 사유	-감면 규제 정비 권고
	3) 이 조례를 폐지할 사유가 있는가? (해당사항 모두 표기)	☐ 다른 유사한 조례와의 통합 운영 필요성 ☐ 조례 시행 불가능 ☐ 최근 3년간 조례 관련 운영 실적 전무 ☐ 기타	
	4) 그 밖의 이 조례와 관련된 의견이 있는가?	☐ 있다 ☐ 없다	

Ⅲ. 세부내용

조례명	전북특별자치도 도립공원 조례

■ 소관 부서 의견(팀)

○ **최종의견 : 법령에 따른 도립공원위원회 지속 운영을 위해 조례를 유지해야 함**

○ **내용**

- (1-1) 본 조례는 「자연공원법」 제9조, 제37조, 제38조, 제80조, 「자연공원법 시행규칙」 제24조에 따라 제정된 위임조례임
- (2-5) 조례 제6조에 따라 도립공원의 효율적 운영관리에 360,000천원, 도립공원 정비 및 생태계 복원에 1,850,000천원을 집행함
- (3-1) 조례 제6조에 따라 예산 지원을 실시할 수 있음
- (3-3) 조례 제6조에 따라 2022년부터 2024년까지 예산을 확보하고 집행함
- (4-1) 조례 제21조에 따라 해당자에게 시설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음
- (4-2) 위의 차별 사항은 공무수행 목적과 취약계층, 국가유공자 등에 대한 시설 사용료 감면 적용으로 합리적인 차별임
- (7-1) 조례 제8조에 따라 전북특별자치도 도립공원위원회를 둠
- (7-3) 위원회 위원 중 45%가 여성임
- (7-4) 2022년과 2023년에 위원회를 개최함
- (7-5) 공원계획 결정·변경 등의 심의를 위해 위원회의 유지가 필요함

■ 종합의견	개정 권고/일반 정비

◎ 입법평가 세부의견

○ **평가항목별 검토**

평가항목	평가항목별 검토 내용
1. 입법 근거 및 적법성	「자연공원법」과 「자연공원법 시행규칙」을 근거로 하여 위임 범위에서 적절하게 제정되었음
2. 조례의 실효성	조례 제7조의 도립공원의 권한 위임조항을 통해 조례의 실효성을 확보하고 있음
3. 조례 내용의 적정성	조례에서 규정하고 있는 재정지원이 적절하게 이루어지고 있음
4. 조례의 공평성	장애, 성별, 나이 등에 관한 사회적 편견, 고정관념이 반영된 표현 및 차별 규정은 없으며, 시설사용료의 감면은 공무수행 목적 및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 측면으로 합리적인 차별로 평가됨
5. 주민 수용성	조례의 체계 및 용어가 주민이 알기 쉽게 되어 있음

6. 전북자치도 현실부합성	법령의 위임사항을 규정하여 도립공원을 전북특별자치도의 상황에 맞게 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위임조례로 전북특별자치도 현실에 부합함
7. 위원회 운영의 적정성	위원회가 규정대로 설치되었고 활발히 운영되고 있어 위원회의 운영이 적절함
※ 기타 의견	없음

○ 연도별 사업내용 및 예산/집행액

(단위: 천원)

연도	사업명	필요예산	확보예산	집행액	집행내역
2022	도립공원의 효율적 운영관리	400,000	400,000	400,000	공원 환경정비 등
	도립공원 정비 및 생태계복원	1,850,000	1,850,000	1,850,000	탐방로 정비 등
2023	도립공원의 효율적 운영관리	400,000	400,000	400,000	공원 환경정비 등
	도립공원 정비 및 생태계복원	1,650,000	1,650,000	1,650,000	탐방로 정비 등
2024	도립공원의 효율적 운영관리	360,000	360,000	360,000	공원 환경정비 등
	도립공원 정비 및 생태계복원	1,850,000	1,850,000	1,850,000	탐방로 정비 등

○ 조례의 입법목적 달성도 또는 부수효과 분석

- 조례 목적달성도 평가
  - 조례 내용에 따라 다양한 지원사업을 실시하고 있다는 점에서 조례의 목적이 달성되고 있다고 평가됨
- 부수효과
  - 도립공원의 보호 및 관리를 통하여 도립공원의 보전 및 지속가능한 이용을 가능하게 하며, 관련홍보를 통한 관광자원 활성화와 도민의 도립공원의 안전한 이용을 도모함

○ 타 시·도 유사 조례와 비교 또는 타 시·도 자치법규(정책) 동향

전북특별자치도 도립공원 조례	제주특별자치도립공원 관리 조례	경기도 도립공원 관리 조례	경상북도 도립공원 관리조례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제2조(적용범위)	제2조(정의)	제2조(적용범위)	제2조(적용범위)
제3조(정의)	제3조(공원의 명칭 및 구역)	제3조(정의)	제3조(정의)
제4조(공원의 명칭과 위치)	제4조(도립공원구역 중요 변경사항)	제4조(공원의 명칭)	제4조(공원의 명칭과 위치)

제5조(건축물의 형식 등)	제5조(승인을 받아야 하는 도립공원 축소 규모)	제5조(설치)	제5조(공원보호 등의 직무)
제6조(예산지원)	제6조(도립공원의 지정에 필요한 서류)	제6조(심의 사항)	제6조(관리사무소)
제7조(권한의 위임)	제7조(공원지정 등의 고시)	제6조의2(구성 및 운영 등)	제7조(권한의 위임)
제8조(설치)	제8조(도립공원의 폐지 등)	제6조의3(위원장 등의 직무)	제8조(설치)
제9조(기능)	제9조(위원회의 구성)	제7조(특별위원)	제9조(조직)
제10조(구성)	제10조(위원장의 직무)	제8조(위원·특별위원의 제척·기피·회피)	제10조(임기)
제11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등)	제11조(회의)	제8조의2(위원·특별위원의 지명철회 및 해촉)	제11조(위원장의 직무)
제12조(임기)	제12조(수당 등)	제9조(수당 등)	제12조(기능)
제13조(위원장의 직무)	제13조(운영세칙)	제10조(시설사용료)	제13조(회의)
제14조(회의)	**제14조(공원계획의 경미한 변경)**	제11조(시설사용료 등 면제)	제14조(분과위원회)
제15조(분과위원회)	**제15조(공원계획에 대한 타당성 검토기준)**	제12조(요금표의 게시)	제15조(간사등)
제16조(간사 등)	**제16조(공원계획의 고시)**	제13조(점용료)	제16조(실비변상)
제17조(운영세칙)	**제17조(공원계획변경시의 자연환경영향평가 대상)**	제14조(점용료 징수시기)	제17조(운영세칙)
제18조(입장료)	**제18조(자연환경에 미치는 영향평가)**	제15조(점용료의 감면 및 반환)	제18조(입장료)
제19조(시설사용료)	**제19조(공원별 보전·관리계획의 수립기준 등)**	제16조(점용허가 변경 등)	제19조(입장료 징수등)
제20조(광고사용 등)	**제20조(해안 및 섬지역의 범위)**	제17조(원상회복)	제20조(시설사용료)
제21조(시설사용료의 감면)	**제21조(공원사업의 시행기준)**	제18조(과태료)	제20조의2(입장료 및 시설사용료의 결정)
제22조(요금표의 게시)	**제22조(공원사업시행계획의 고시 등)**	제19조(세입조치)	제21조(입장료 등의 면제)
제23조(점용료의 징수)	**제23조(공원사업시행허가 생략사항)**	제20조(준용)	제22조(요금게시)
제24조(점용료의 징수시기)	**제24조(환매권)**	**제21조(관리사무소)**	제23조(점용료)
제25조(점용료의 감면)	**제25조(공원구역에서의 행위허가 신청)**	**제22조(안전장비 대여)**	제24조(점용료의 징수시기)
제26조(원상회복)	**제26조(공원구역에서의 행위신고)**	**제23조(야간탐방)**	제25조(점용료의 감면)
제27조(점용료의 반환)	**제27조(신고생략사항)**	제24조(자연환경해설사 채용·활용)	제26조(점용폐지신고)
제28조(준용)	**제28조(허가에 관한 관**	제25조(권한의 위임)	제27조(원상회복)

	계행정기관과의 협의 등)		
제29조(시행규칙)	**제29조(도립공원 점·사용자에 대한 원상회복 비용의 예치 등)**	제26조(시행규칙)	제28조(과태료)
	제30조(제거된 물건 등의 보관 및 처리)		제29조(입장료 등의 반환)
	제31조(금지행위)		제30조(시행규칙)
	제32조(공원구역에서 금지할 수 있는 영업의 제한 등)		
	제33조(공원대장의 서식)		
	제34조(입장료)		
	제35조(입장료 징수 등)		
	제36조(입장료의 면제 등)		
	제37조(입장료 징수대행)		
	제38조(입장료 징수대행수수료)		
	제39조(점용료 등의 징수)		
	제40조(점용료 등의 감면)		
	제41조(허가에 관한 협의 등)		
	제42조(상・하수도시설 설치 등에 대한 주민지원)		
	제43조(주민지원사업)		
	제44조(도립공원 보전·관리·이용활동에 대한 재정지원 등)		
	제45조(매수대상토지의 판정기준)		
	제46조(매수절차 등)		
	제47조(공원관리의 위탁)		
	제48조(규제의 재검토)		
	제49조(시행규칙)		

- 제주특별자치도 조례에서는 도립공원 관리를 위한 다양한 조항을 마련하여 공원에서의 금지행위, 주민지원사업 등도 함께 규정하고 있음
- 경기도 조례에서는 야간 개장과 안전용품 대여에 대한 규정을 두어 도립공원의 안전한 이용을 도모함

Ⅳ. 개정의견

현 행	개정안	비고
제1조(목적) 이 조례는「자연공원법」제9조·제37조·제38조 및 제80조에 따라 전북특별자치도 도립공원의 보호관리와 공원위원회의 설치운영, 시설사용료 및 점용료의 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자연공원법」 제9조·제37조·제38조 및 제80조에 따라 전북특별자치도 도립공원의 보호·관리와 공원위원회의 설치운영, 시설사용료 및 점용료의 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띄어쓰기 정비 권고 -"보호"와 "관리"는 병렬적 행위이므로 문장부호를 사용하여 표현하도록 정비 권고
제2조(적용범위) 전북특별자치도 도립공원(이하 "공원"이라 한다)의 보호·관리에 관하여 「자연공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또는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2조(적용범위) 전북특별자치도 도립공원(이하 "공원"이라 한다)의 보호·관리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상위법은 당연히 조례보다 먼저 적용을 받게 되므로 상위법의 내용을 규정하는 것은 실익이 없음
제3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시설사용료: 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시설물을 사용하는 자로부터 징수하는 요금을 말한다. 2. 점용료: 법 제23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점용 및 사용자로부터 징수하는 요금을 말한다. 3. 경자동차: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별표 1의 자동차의 종류에 따른 경형자동차를 말한다. 4. 공원관리청: 전북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를 말한다. 다만, 제7조에 따라 권한을 위임한 범위에서 공원을 관리하는 시장·군수를 공원관리청으로 본다. 5. 집단시설지구: 공원의 보전·관리를 위한 공원시설을 집단화시키기 위하여 공원계획으로 집단시설지구로 지정한 지역을 말한다.	제3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시설사용료"란 「자연공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시설물을 사용하는 자로부터 징수하는 요금을 말한다. 2. "점용료"란 법 제23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점용 및 사용자로부터 징수하는 요금을 말한다. 3. "경자동차"란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별표 1의 자동차의 종류에 따른 경형자동차를 말한다. 4. "공원관리청"이란 전북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를 말한다. 다만, 제7조에 따라 권한을 위임한 범위에서 공원을 관리하는 시장·군수를 공원관리청으로 본다. 5. "집단시설지구"란 공원의 보전·관리를 위한 공원시설을 집단화시키기 위하여 공원계획으로 집단시설지구로 지정한 지역을 말한다.	-정의 문장에 맞게 정비(시설사용료: → 시설사용료란) -제2조 정비에 따라 삭제된 "「자연공원법」(이하 "법"이라 한다)"을 규정하도록 문장 정비 권고
제5조(건축물의 형식 등) 공원관리청이 집단시설지구내에서 건축허가를 할 경우에는 법 시행규칙 제14조제3호에 따른 공원시설의 설치권고기준	제5조(건축물의 형식 등) 공원관리청이 집단시설지구 내에서 건축허가를 할 경우에는 「자연공원법 시행규칙」 제14조제3호에 따른 공원시설의 설	-띄어쓰기 정비 권고 -약칭한바 없는 「자연공원법 시행규칙」을 원제명대로 규정하도록

현 행	개정안	비고
에 관한 규정에 의하여 한국고유의 건축미를 살리는 방향으로 건축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치권고기준에 관한 규정에 의하여 한국고유의 건축미를 살리는 방향으로 건축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정비 권고
제7조(권한의 위임) 도지사는 법 제80조제2항에 따라 도립공원에 관한 다음 각 호의 권한을 시장·군수에게 위임한다. 1. 공원시설의 유지관리와 공원사업의 시행 2. 「법 시행령」제45조제2항 각 호의 권한	제7조(권한의 위임) 도지사는 법 제80조제2항에 따라 도립공원에 관한 다음 각 호의 권한을 시장·군수에게 위임한다. 1. 공원시설의 유지관리와 공원사업의 시행 2. 「자연공원법 시행령」 제45조제2항 각 호의 권한	-띄어쓰기 정비 권고 -약칭한바 없는 「자연공원법 시행령」을 원제명대로 규정하도록 정비 권고
제9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 3. 생략 4. 그 밖에 도지사가 위원회의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9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 3. 현행과 같음 4.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회의 안건을 상정하는 사람은 도지사가 아니고 위원장이므로 문장 표현 정비 권고
제11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등) ①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대상 안건의 심사 업무에서 제척된다. 1. ~ 2. 생략 3. 그 밖에 자문 안건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회의를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기피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해당 위원의 기피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기피신청을 받은 위원은 그 기피여부에 대한 결정에 참여할 수 없다. 위원은 제1항 또는 제2항의 사유에 해당하면 스스로 그 안건의 심사를 회피할 수 있다.	제11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등) ① 위원회의 위원 및 특별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대상 안건의 심사 업무에서 제척된다. 1. ~ 2. 현행과 같음 3. 그 밖에 자문 안건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당사자는 위원 및 특별위원에게 공정한 회의를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기피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해당 위원 및 특별위원의 기피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기피신청을 받은 위원 및 특별위원은 그 기피여부에 대한 결정에 참여할 수 없다. ② 위원 및 특별위원은 제1항 또는 제2항의 사유에 해당하면 스스로 그 안건의 심사를 회피하여야 한다.	-특별위원도 제적·기피·회피의 대상이 되어야 하므로 특별위원을 포함하여 규정하도록 정비 권고 -제3호를 제2항으로 규정하도록 체계 정비 권고(하나의 조·항·호는 하나의 문장으로 구성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단서 또는 조건을 부여하는 경우 예외로 2문장으로 구성하는데 제3호의 경우 세 개의 문장으로 구성되어 있으므로 정비 권고) -회피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회피하도록" 당연규정으로 정비 권고
제12조(임기) 위원회 위원 및 특별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당해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고,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12조(임기) 위원회 위원 및 특별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고,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당해"를 "해당"으로 정비 권고

현 행	개정안	비고
제19조(시설사용료) ① 시설사용료는 별표 2의 기준 범위에서 징수하되, 유지관리비 및 지역적 여건을 고려하여 시장·군수가 규칙으로 정한다. 다만, 주차장 시설사용료는 징수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이하 생략	제19조(시설사용료) ① 시설사용료는 별표 2의 기준 범위에서 징수하되, 유지관리비 및 지역적 여건을 고려하여 시장·군수가 정하는 바에 따라 감면할 수 있다. 다만, 주차장 시설사용료는 징수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이하 현행과 같음	-도 조례에서 시·군 규칙으로 위임하는 것은 체계에 맞지 아니하므로 시장·군수가 정하는 바에 따라 감면할 수 있도록 규정 정비 권고
제20조(광고사용 등) ① 제19조에 따른 주차권·시설이용권에 관하여 타 법령이나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광고사용을 하게 할 수 있다. 다만, 과대광고·거짓광고·미풍양속을 해치는 저속한 광고는 게재할 수 없다. ② 생략 ③ 광고사용은 별지 제1호서식, 별지 제2호서식 및 별지 제3호서식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야 한다.	제20조(광고사용 등) ① 제19조에 따른 주차권·시설이용권에 관하여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광고사용을 하게 할 수 있다. 다만, 과대광고·거짓광고·미풍양속을 해치는 저속한 광고는 게재할 수 없다. ② 현행과 같음 ③ 광고사용은 별지 제1호서식, 별지 제2호서식 및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다.	-제1항: "타"를 "다른"으로 정비 권고 -제3항: 문장 표현 정비 권고
<신설>	제20조의2(안전장비 대여) ① 도지사는 탐방객에게 안전장비를 무료로 대여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안전장비의 종류 및 대여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도지사가 따로 정한다.	-심층분석을 통해 타 시·도의 사례를 참고하여 안전장비 대여에 관한 규정 신설 권고
<신설>	제20조의3(야간탐방) ① 도지사는 공원의 보호 및 탐방객의 안전을 위하여 일몰 이후 야간탐방에 대해 법 제28조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야간탐방이 제한되지 않는 탐방로, 전망대 등에 야간 경관 향상을 위한 조명을 설치할 수 있다. ③ 도지사는 공원 이용 활성화를 위해 야간탐방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다.	-심층분석을 통해 타 시·도의 사례를 참고하여 야간탐방에 관한 규정 신설 권고
<신설>	제20조의4(자연환경해설사 채용·활용) 도지사는 탐방객의 자연환경보전에 관한 이해를 증진시키기 위하여 「자연환경보전법」 제59조에 따른 자연환경해설사를 채용·활용할 수 있다.	-심층분석을 통해 타 시·도의 사례를 참고하여 자연환경해설사 채용·활용에 관한 규정 신설 권고

현 행	개정안	비고
제21조(시설사용료의 감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시설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 이 경우, 구체적인 감면대상과 범위는 시장·군수가 규칙으로 정한다. 1. ~ 8. 생략 9.「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2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10. ~ 15. 생략 16.「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등록포로 및 같은 조 제3호에 따른 억류지 출신 포로가족 17. 생략	제21조(시설사용료의 감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시설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 이 경우, 구체적인 감면대상과 범위는 시장·군수가 별도로 정한다. 1. ~ 8. 현행과 같음 9.「5·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2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10. ~ 15. 현행과 같음 16.「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등록포로 및 같은 조 제3호에 따른 억류지출신 포로가족 17. 현행과 같음	-각 호외의 본문: 도조례에서 시·군 규칙으로 위임하는 것은 체계에 맞지 아니하므로 시장·군수가 별도로 정하는바에 따라 감면할 수 있도록 규정 정비 권고 -제9호: 인용 법령 제명 오기 정비 권고 -제16호: 인용 법령에서 사용하는 용어와 같게 사용하도록 띄어쓰기 정비 권고
제23조(점용료의 징수) ① ~ ② 생략 ③ 제2항 단서규정에 의하여 점용료를 산정함에 있어 1월 미만 일때에는 일수로 계산한다.	제23조(점용료의 징수) ① ~ ② 현행과 같음 ③ 제2항 단서에 따라 점용료를 산정함에 있어 1월 미만 일 때에는 일수로 계산한다.	-문장 표현 정비 권고
제24조(점용료의 징수시기) 점용료의 징수 시기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의한다. 1. 생략 2. 점용기간이 1년 이상인 때에는 점용허가를 하는 해당연도분은 허가를 할 때에, 그 이후 연도분은 해당 연도 개시후 3월이 경과되기 전에 징수한다.	제24조(점용료의 징수시기) 점용료의 징수 시기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다. 1. 현행과 같음 2. 점용기간이 1년 이상인 때에는 점용허가를 하는 해당 연도분은 허가를 할 때에, 그 이후 연도분은 해당 연도 개시 후 3월이 경과되기 전에 징수한다.	-일본식 표현의 순화 권고 -띄어쓰기 정비 권고
제26조(원상회복) ① 공원의 점용자가 그 점용기간이 만료되었거나 점용을 폐지한 때에는 공원을 원상으로 회복하여야 한다. 다만, 원상회복이 불가능하거나 부적당하여 도지사의 승인을 얻을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② 도지사는 제1항의 원상회복을 하지 아니할 때에는 이를 대집행하고 그 비용을 점용자로부터 징수할 수 있다.	제26조(원상회복) ① 공원의 점용자가 그 점용기간이 만료되었거나 점용을 폐지한 때에는 공원을 원상으로 회복하여야 한다. 다만, 원상회복이 불가능하거나 부적당하여 도지사의 승인을 얻은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② 도지사는 제1항의 원상회복을 하지 아니할 때에는 이를 대집행하고 그 비용을 점용자로부터 징수하여야 한다.	-제1항: 오기 수정 권고 -제2항: 도지사가 원상회복 비용의 징수 여부에 대해서 재량을 갖는 것으로 규정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으므로 대집행비용을 징수하도록 규정 정비 권고

현 행	개정안	비고
제28조(준용) 시설사용료와 점용료의 징수에 관하여 법 또는 이 조례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지방세징수의 예에 의한다.	제28조(준용) 시설사용료와 점용료의 징수에 관하여 법 또는 이 조례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지방세징수의 예에 따른다.	-일본식 표현의 순화 권고
제29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삭제>	-시행규칙은 개별 조례에서 위임이 없더라도 조례의 집행에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규칙으로 규정할 수 있으므로 삭제 권고

심층분석 관련 검토

○ **심층분석 사유**

- 타 시·도의 사례를 참고하여 규정 신설이 필요한 사항에 대한 시사점을 도출함

○ **심층분석**

- 「경기도 도립공원 관리 조례」에서는 2024년 개정 시 야간탐방과 안전용품 대여, 자연환경해설사 채용에 대한 규정을 신설하여 도립공원의 안전하고 편리한 이용을 도모함
- 세부적인 규정은 아래와 같음

조항	규정 내용
안전장비 대여	제22조(안전장비 대여) ① 도지사는 탐방객에게 안전장비를 무료로 대여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안전장비의 종류 및 대여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도지사가 따로 정한다.
야간탐방	제23조(야간탐방) ① 도지사는 공원의 보호 및 탐방객의 안전을 위하여 일몰 이후 야간탐방에 대해 법 제28조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야간탐방이 제한되지 않는 탐방로, 전망대 등에 야간 경관 향상을 위한 조명을 설치할 수 있다. ③ 도지사는 공원 이용 활성화를 위해 야간탐방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다.
자연환경해설사 채용	제24조(자연환경해설사 채용·활용) 도지사는 탐방객의 자연환경보전에 관한 이해를 증진시키기 위하여 「자연환경보전법」 제59조에 따른 자연환경해설사를 채용·활용할 수 있다.

- 경기도의 사례를 참고하여 아래와 같이 규정 신설을 제안함

현 행	개정안	비고
<신설>	제20조의2(안전장비 대여) ① 도지사는 탐방객에게 안전장비를 무료로 대여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안전장비의 종류 및 대여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도지사가 따로 정한다.	-타 시·도의 사례를 참고하여 안전장비 대여에 관한 규정 신설 권고
<신설>	제20조의3(야간탐방) ① 도지사는 공원의 보호 및 탐방객의 안전을 위하여 일몰 이후 야간탐방에 대해 법 제28조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야간탐방이 제한되지 않는	-타 시·도의 사례를 참고하여 야간탐방에 관한 규정 신설 권고

현 행	개정안	비고
	탐방로, 전망대 등에 야간 경관 향상을 위한 조명을 설치할 수 있다. ③ 도지사는 공원 이용 활성화를 위해 야간탐방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다.	
<신설>	제20조의4(자연환경해설사 채용·활용) 도지사는 탐방객의 자연환경보전에 관한 이해를 증진시키기 위하여 「자연환경보전법」 제59조에 따른 자연환경해설사를 채용·활용할 수 있다.	-타 시·도의 사례를 참고하여 자연환경해설사 채용·활용에 관한 규정 신설 권고

□ 참고자료 1 – 위원회 관련 실적

○ 구성

- 도립공원위원회(제9조)

구분	정원	현원	당연직	위촉직	
				남	여
위원수(명)	15	15	6	5	4
비 율(%)	-	-	-	55%	45%

○ 개최 실적

- 2024년 개최실적은 아직 없음

연도별	2022	2023
개최건수	1	1
개최일	2022.12.27.	2023.4.5.
소요예산	541,800원	560,000원

□ 참고자료 2 – 조례 관련 보도 자료

○ 보도자료 1

전북특별자치도 도립공원 공원계획변경(안) 공람·공고 및 주민설명회 개최

전북특별자치도 공고 제2024 - 232호

전북특별자치도 도립공원 공원계획변경(안) 공람.공고 및 주민설명회 개최공고

전북특별자치도 도립공원 공원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자연공원법」 제4조의3 및 제15조,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와 같은법 시행령 제6조에 따라 의견을 수렴하고자 주민 공람.공고 및 주민설명회 개최 일정 등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4. 2. 8.

전 북 특 별 자 치 도 지 사

○ **보도자료 2**

전북자치도, 도립공원 친환경 복원에 박차... 전문가 컨설팅 추진, 투데이안[19)]

-도립공원의 가치 보존과 지속 가능한 이용기반 마련
-국립공원공단 전문가 참여... 시설 점검과 복원 계획 수립



[투데이안] 전북특별자치도는 도립공원의 친환경적 관리와 탐방객 서비스 강화를 위해 4일부터 10일까지 5일간 도립공원 현장을 방문하고, 전문가 컨설팅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방문은 노후화된 시설물과 훼손된 자연환경을 점검하고, 이를 친환경적으로 복원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작년 한 해 500만 명 이상이 방문한 전북 도립공원은 탐방객 수요 증가로 인해 탐방로와 주차장 등 주요 시설이 점차 노후화되고 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전북자치도는 매년 탐방로 및 배수로 정비, 쉼터와 생태숲 조성 등 친환경적인 방식으로 도립공원을 정비하고 복원하는데 주력하고 있다.

이번 컨설팅은 모악산, 마이산, 대둔산, 선운산 등 4개 도립공원을 대상으로 하며, 국립공원공단의 시설관리 및 생태복원 전문가들이 참여한다.

전문가들은 공원의 현장을 직접 돌아보며 시설 상태를 점검하고, 훼손된 지역의 복원 방안을 제시할 예정이다.

올해 상반기에도 현장컨설팅이 실시돼 ▲(선운산) 주차장 이동동선 표기 및 안전승하차 구간 조성 ▲(마이산) 결빙 우려 구간 목재데크 설치 ▲(대둔산) 자연형 보 조성을 통한 담수 생태 공간 마련 ▲(모악산) 식생복원 시 주변 자생종 활용 ▲(공통) 매트, 로프 교체 시 친환경자재 시공 등 다양한 개선 방안이 도출된 바 있다.

전북자치도는 이번 컨설팅을 통해 4개 공원별 우선 복원 대상지를 선정하고, 이를 신속하게 정비해 탐방객들에게 보다 쾌적한 자연환경을 제공할 계획이다.

강해원 전북자치도 환경산림국장은 "앞으로도 도립공원의 지속가능한 관리와 보존을 위해 다양한 노력을 기울일 예정이다"며, "탐방객들이 보다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공원을 즐길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19) https://www.todayan.com/news/articleView.html?idxno=546740

○ **보도자료 3**

도립공원 보전·관리계획 전략목표 논의, 디지털 김제신문[20)]



전북특별자치도가 도립공원 중장기 보전관리 전략 마련을 위한 논의의 장을 마련하고 머리를 맞댔다.

전북자치도는 25일 도립공원 4개소(모악산, 대둔산, 마이산, 선운산)에 대한 중장기 보전관리 방안을 논의하고자 각 지자체와 전문가, 국립공원연구원과 함께 워크숍을 개최했다.

이번 워크숍에서는 전북특별자치도 도립공원 보전·관리계획 수립을 위한 핵심과제 도출을 위해 국내외 정책여건과 여가 트렌드를 분석하고, 동식물 보호, 훼손지 복원, 탐방객 안전관리 등 공원관리 세부 실행 방안에 대해 중점 논의했다.

또한 공원구역 내 행위허가 및 불법행위 단속, 공원시설 조성 등 공원관리청의 현장관리 역량강화를 위한 전문가 강연도 함께 진행됐다.

도립공원 보전·관리계획은 자연공원법에 따른 10년 주기의 법정계획으로 자연자원과 문화자원을 보존하는 한편 안전한 관리를 통해 탐방객에게 쾌적한 환경을 제공하는 것을 목표로 삼고 있다.

이에 전북자치도는 지난 2023년 8월부터 공원별 현장답사와 자연자원·인문환경 자원조사 및 '제3차 자연공원기본계획(2023년, 환경부)' 등 상위계획 분석을 통해 보전관리계획을 수립 중에 있으며, 올해 8월까지 수립 완료할 예정이다.

이번 계획에는 '자연과 사람이 함께 향유' 라는 비전 아래 ▲(자원보전·보호) 훼손지복원 및 생태계 위협요인 제거 등 ▲(지속가능한이용) 탐방인프라 조성 및 서비스 개선 등 ▲(지역사회협력) 주민·사찰·기업 협력체계 구축 등 ▲(재해예방) 재난취약지구(급경사지, 산사태 등) 관리방안 등 ▲(관리기반) 과학적 공원과리 체계 구축 등 총 5개 부문에 대한 세부 추진과제들이 제시된다.

도립공원은 연평균 850만명이 방문하는 도내 주요 관광자원이자 약2천여종의 생물이 분포하는 생태자원으로 공원별 특성을 반영한 탐방문화 개선 등은 지속가능한 자연유산 관리와 지역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김은숙 기자

20) http://kimje.newsk.com/front/news/view.do?articleId=ARTICLE_00024887

붙임 1 사업 관련 추진실적

□ 연도별 사업 및 예산 집행 실적

○ 조례 제6조(예산지원) 관련

- 도비교부금으로 각 시·군에 지출하고 있음

(단위 천원)

연도	사업명	필요예산	확보예산	집행액	집행내역
2022	도립공원의 효율적 운영관리	400,000	400,000	400,000	공원 환경정비 등
	도립공원 정비 및 생태계복원	1,850,000	1,850,000	1,850,000	탐방로 정비 등
2023	도립공원의 효율적 운영관리	400,000	400,000	400,000	공원 환경정비 등
	도립공원 정비 및 생태계복원	1,650,000	1,650,000	1,650,000	탐방로 정비 등
2024	도립공원의 효율적 운영관리	360,000	360,000	360,000	공원 환경정비 등
	도립공원 정비 및 생태계복원	1,850,000	1,850,000	1,850,000	탐방로 정비 등

붙임 2 평가대상 조례

전북특별자치도 도립공원 조례

[시행 2024. 5. 31.] [전북특별자치도조례 제5508호, 2024. 5. 31., 일부개정]

전북특별자치도(탄소중립정책과)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자연공원법」제9조·제37조·제38조 및 제80조에 따라 전북특별자치도 도립공원의 보호관리와 공원위원회의 설치운영, 시설사용료 및 점용료의 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3. 12. 8.>

제2조(적용범위) 전북특별자치도 도립공원(이하 “공원”이라 한다)의 보호·관리에 관하여 「자연공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또는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개정 2023. 12. 8.>

제3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20. 7. 13., 2023. 12. 8.>

1. 시설사용료: 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시설물을 사용하는 자로부터 징수하는 요금을 말한다.
2. 점용료: 법 제23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점용 및 사용자로부터 징수하는 요금을 말한다.
3. 경자동차: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별표 1의 자동차의 종류에 따른 경형자동차를 말한다.
4. 공원관리청: 전북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를 말한다. 다만, 제7조에 따라 권한을 위임한 범위에서 공원을 관리하는 시장·군수를 공원관리청으로 본다.
5. 집단시설지구: 공원의 보전·관리를 위한 공원시설을 집단화시키기 위하여 공원계획으로 집단시설지구로 지정한 지역을 말한다.

제4조(공원의 명칭과 위치) 공원의 명칭과 위치는 별표 1과 같다.

제2장 관리

제5조(건축물의 형식 등) 공원관리청이 집단시설지구내에서 건축허가를 할 경우에는 법 시행규칙 제14조제3호에 따른 공원시설의 설치권고기준에 관한 규정에 의하여 한국고유의 건축미를 살리는 방향으로 건축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제6조(예산지원) 법 제39조에 따라 도지사는 시장·군수에게 공원의 보호 및 시설의 유지관리를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7조(권한의 위임) 도지사는 법 제80조제2항에 따라 도립공원에 관한 다음 각 호의 권한을 시장·군수에게 위임한다.

1. 공원시설의 유지관리와 공원사업의 시행
2. 「법 시행령」제45조제2항 각 호의 권한

제3장 도립공원위원회

제8조(설치) 법 제9조에 따라 전북특별자치도 도립공원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개정 2023. 12. 8.>

제9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공원의 지정·폐지 및 구역변경에 관한 사항
2. 공원계획의 결정·변경에 관한 사항
3. 공원의 환경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업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도지사가 위원회의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10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과 제4항에 따른 특별위원으로 구성한다. 다만, 특정 성이 위촉직 위원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위원장은 행정부지사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기획조정실장·농생명축산산업국장·환경산림국장·문화체육관광국장·건설교통국장당연직 위원이 되며, 도립공원 안에 거주하는 주민·사업자 등 이해관계인과 자연공원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전북특별자치도의회의원 중에서 도지사가 위촉하는 사람으로 한다.<개정 2017. 1. 2., 2022. 10. 21., 2023. 12. 8., 2024. 5. 31.>

④ 다음 각 호의 사람은 특별위원이 된다.

1. 해당 공원지역을 관할하는 부시장·부군수
2. 해당 공원구역면적의 1,000분의 1 이상의 토지를 기증한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위촉하는 사람
3. 해당 공원구역 내에 있는 종교단체 시설물의 관리운영 책임자로서 도지사가 위촉한 사람

⑤ 특별위원은 해당 공원에 관한 안건을 심의할 경우에 한하여 위원이 된다.

제11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등)

①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대상 안건의 심사 업무에서 제척된다.

1. 안건과 이해관계가 있는 자문 또는 그 밖의 방법으로 직접 관여한 경우
2. 최근 3년 이내에 안건과 이해관계가 있는 업체에 임원 또는 직원으로 재직한 경우
3. 그 밖에 자문 안건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회의를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기피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해당 위원의 기피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기피신청을 받은 위원은 그 기피여부에 대한 결정에 참여할 수 없다. 위원은 제1항 또는 제2항의 사유에 해당하면 스스로 그 안건의 심사를 회피할 수 있다.

제12조(임기) 위원회 위원 및 특별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당해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고,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13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사무를 총괄하며, 위원회의 의장이 된다.<개정 2022. 11. 4.>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4조(회의)

① 위원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이를 소집한다.

②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5조(분과위원회)

① 위원회는 필요에 따라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분과위원회는 위원회의 위원 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하는 사람으로 구성하되, 그 분과위원장은 해당

분과위원회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분과위원회는 위원회로부터 위촉받은 사항을 조사·심의한다.

제16조(간사 등)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와 서기 각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관련업무 담당과장, 서기는 관련업무 담당팀장이 된다.

제17조(운영세칙) 이 조례에 규정된 것 외에 위원회 및 분과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4장 비용의 징수 등

제18조(입장료) 법 제37조에 따른 입장료는 징수하지 아니한다.

제19조(시설사용료)

① 시설사용료는 별표 2의 기준 범위에서 징수하되, 유지관리비 및 지역적 여건을 고려하여 시장·군수가 규칙으로 정한다. 다만, 주차장 시설사용료는 징수하지 아니할 수 있다.<개정 2020.7.13.>

② 주차권의 서식은 별지 제1호서식과 같다.

③ 그 밖에 시설의 이용권서식은 별지 제2호서식 및 별지 제3호서식으로 한다.

제20조(광고사용 등)

① 제19조에 따른 주차권·시설이용권에 관하여 타 법령이나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광고사용을 하게 할 수 있다. 다만, 과대광고·거짓광고·미풍양속을 해치는 저속한 광고는 게재할 수 없다.<개정 2020.7.13., 2022.11.4.>

② 시장·군수는 광고사용을 하고자 하는 자와 광고의 내용·기간·규격·사용료 등에 관하여 협의·결정한다.

③ 광고사용은 별지 제1호서식, 별지 제2호서식 및 별지 제3호서식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야 한다.

제21조(시설사용료의 감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시설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 이 경우, 구체적인 감면대상과 범위는 시장·군수가 규칙으로 정한다.<개정 2020.7.13.>

1. 국빈·외교사절 및 수행하는 사람
2. 공무수행을 위하여 출입하는 사람
3. 국립공원위원회 위원 및 도립공원위원회 위원과 환경부장관이 위촉 또는 추천한 학술 조사단
4. 6세 이하인 어린이와 주민등록증이나 경로우대증을 소지한 65세 이상인 사람
5.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6조제1항 각 호의 사람
6. 국군의 날에 입장하는 군인, 경찰의 날에 입장하는 경찰, 어린이날에 입장하는 어린이, 근로자의 날에 입장하는 근로자 및 석가탄신일에 사찰에 출입하는 불교신도
7.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과 그 보호자
8.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
9.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2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10.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의3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및 고엽제후유의증 2세환자
11.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23조에 따른 독립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
12.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3조에 해당하는 사람
13.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2011년 9월 15일 법률 제110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제73조의2에 해당하는 사람
14. 「보훈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해당하는 사람

15.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16.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등록포로 및 같은 조 제3호에 따른 억류지 출신 포로가족
17.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목개정 2020.7.13.]

제22조(요금표의 게시) 공원관리청은 시설사용료의 요금표를 탐방객이 잘 볼 수 있는 곳에 게시하여야 한다.

제23조(점용료의 징수)

① 법 제38조에 따른 점용료는 같은 법 시행규칙 제26조에 규정된 요율을 기준으로 하여 징수한다.

② 점용료는 연액으로 산정한다. 다만, 점용료의 산정기간이 1년 미만인 때에는 매 1개월을 12분의 1년으로 하여 월액으로 산정한다.

③ 제2항 단서규정에 의하여 점용료를 산정함에 있어 1월 미만 일때에는 일수로 계산한다.

제24조(점용료의 징수시기) 점용료의 징수 시기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의한다.

1. 점용기간이 1년 미만인 때에는 허가를 할 때에 전액을 징수한다.
2. 점용기간이 1년 이상인 때에는 점용허가를 하는 해당연도분은 허가를 할 때에, 그 이후 연도분은 해당연도 개시후 3월이 경과되기 전에 징수한다.

제25조(점용료의 감면) 도지사는 법 제 38조에 따른 공원의 점용이 공용 또는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사업을 위한 것이나, 재해로 인하여 본래의 점용목적을 달성할 수 없거나 그 밖에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점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

제26조(원상회복)

① 공원의 점용자가 그 점용기간이 만료되었거나 점용을 폐지한 때에는 공원을 원상으로 회복하여야 한다. 다만, 원상회복이 불가능하거나 부적당하여 도지사의 승인을 얻을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② 도지사는 제1항의 원상회복을 하지 아니할 때에는 이를 대집행하고 그 비용을 점용자로부터 징수할 수 있다.<개정 2018. 12. 28>

제27조(점용료의 반환) 이미 납부된 점용료는 반환하지 아니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공원관리청이 공익상 관련 허가를 취소·변경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28조(준용) 시설사용료와 점용료의 징수에 관하여 법 또는 이 조례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지방세징수의 예에 의한다.

제29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13. 전북특별자치도 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 방지 조례

Ⅰ. 종합의견

< 평가결과 >

□ 평가대상

조 례 명	전북특별자치도 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 방지 조례		
조례 구분	개별 법률 위임	관계 법령	「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 방지법」제7조, 제11조,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 제6조, 제10조
제정·시행일	2017. 12. 1. 제정	최근개정·시행일	2024. 5. 31. 개정
소관 부서	생활환경과	소관 상임위	농업복지환경

□ 평가의견

평가항목	평가의견	주요 내용
종합의견	개정/일반	- 법제처 자치법규 입안기준에 따른 정비(상위법령 인용 오류 수정) 검토 - 문화유산과 관련하여 인용 법령의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정비 검토 - 「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 방지법 시행령」 제6조에 따라 빛 방사허용기준의 적용 제외 구역을 조례로 위임하여 정하도록 하고 있음. 이와 같은 내용을 포함한 조례 규정 신설 검토
심층분석 결과		- 타 시·도 사례의 선진적 규정 도입 검토를 살펴보았으나 추가적인 시사점을 발견하기 어려움. 개정의견과 같이 개정하도록 권고함
1. 입법 근거 및 적법성	적정	「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 방지법」, 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을 근거로 하여 위임 범위에서 적절하게 제정되었음
2. 조례의 실효성	적정	제5조에 따른 공해방지 계획과 제16조에 따른 조명환경관리구역 설정을 통해 조례의 실효성을 확보하고 있음
3. 조례 내용의 적정성	적정	본 조례는 전북특별자치도 내에서 발생할 수 있는 인공조명에 의한 빛 공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조례로 규정한 내용이 적정함

4. 조례의 공평성	적정	장애, 성별, 나이 등에 관한 사회적 편견, 고정관념이 반영된 표현 및 차별 규정 없음
5. 주민 수용성	적정	조례의 체계 및 용어가 주민이 알기 쉽게 되어 있음
6. 전북자치도 현실부합성	적정	전북특별자치도 내에서 발생할 수 있는 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제정된 본 조례는 행정수요를 반영하고 있어 전북특별자치도 현실에 부합함
7. 위원회 운영의 적정성	적정	위원회가 규정대로 설치되었고 활발히 운영되고 있어 위원회의 운영이 적절함
※ 기타 의견	생활환경 개선에 대한 전북특별자치도민의 요구가 증가함에 따라 빛공해로 인한 건강·생태계 영향을 예측하고 사전에 예방하기 위하여 본 조례는 존속 유지 필요함. 정부(환경부)의 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 방지를 위한 '제3차 빛공해방지 종합계획(2024~2028)을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시행하며 이에 따라 전북특별자치도는 제2차 기본계획 수립 용역 추진하고 있는 등 정부와 계획에 따라 정책을 수행함에 있어 그 근거조례가 반드시 필요함	

Ⅱ. 항목별 평가 결과

평가항목	세부항목	척도	의견 및 자료
1. 입법의 근거 및 적법성	1) 위임조례인가 자치사무에 관한 조례인가?	☑ 위임조례 ☐ 자치사무에 관한 조례	
	2) 조례에서 규정하고 있는 위임근거가 올바른가?	☑ 그렇다 ☐ 그렇지않다 ☐ 해당사항 없음	
	3) 조례가 위임범위에서 적절하게 제·개정되었는가?	☑ 그렇다 ☐ 그렇지않다 ☐ 해당사항 없음	
	4) 조례 제.개정 이후 동일 또는 유사한 법령이나 제도가 만들어졌거나 근거법령이 개정 또는 폐지되었는가?	☑ 그렇다 ☐ 그렇지않다 ☐ 해당사항 없음	
	5) 조례에서 주민의 권리제한, 의무부과, 벌칙 부과, 규제사항에 대한 법률위임이 있는가?	☐ 그렇다 ☑ 그렇지않다 ☐ 해당사항 없음	
	6) 상위법령에 위배되는 조항이 있는가?	☐ 그렇다 ☑ 그렇지않다 ☐ 해당사항 없음	
2. 조례의 실효성	1) 조례의 시행과정에서 다른 조례와의 충돌이나 모순이 발생하고 있는가?	☐ 그렇다 ☑ 그렇지않다 ☐ 해당사항 없음	
	2) 이 조례와 유사 또는 동일한 다른 조례가 제정 및 시행되고 있어 통합할 필요가 있는가?	☐ 그렇다 ☑ 그렇지않다 ☐ 해당사항 없음	
	3) 조례에 따른 계획이 수립·시행되고 있는가?	☑ 그렇다 ☐ 그렇지않다 ☐ 해당사항 없음	-제1차 빛공해 방지 기본계획
	4) 조례에서 집행기관 등에 책무를 부여하고 있는가?	☑ 그렇다 ☐ 그렇지않다 ☐ 해당사항 없음	-제4조(책무)

평가항목	세부항목	척도	의견 및 자료
	5) 조례에서 부여한 책무와 관련사업을 집행기관이 잘 이행하고 있는가?	☑ 그렇다 ☐ 그렇지않다 ☐ 해당사항 없음	
3. 조례 내용의 적정성	1) 조례에 재정지원 관련 규정이 있는가?	☑ 그렇다 ☐ 그렇지않다 ☐ 해당사항 없음	-제19조
	2) 조례 시행에 필요한 예산 확보와 집행이 잘 이루어지고 있는가?	☑ 그렇다 ☐ 그렇지않다 ☐ 해당사항 없음	
	3) 지원대상이 집행이 가능한 정도로 구체화 되어 있는가?	☐ 그렇다 ☐ 그렇지않다 ☑ 해당사항 없음	
	4) 조례에 따른 위탁사무가 위탁대상으로 적정한가?	☐ 그렇다 ☐ 그렇지않다 ☑ 해당사항 없음	
4. 조례의 공평성	1) 조례에서 장애인, 성별 등의 특정계층이나 특정지역을 차별하는 조항이 있는가?	☐ 그렇다 ☑ 그렇지않다 ☐ 해당사항 없음	
	2) 조례에서 정한 차별이 합리적인가?	☐ 그렇다 ☐ 그렇지않다 ☑ 해당사항 없음	
5. 주민 의견 수용성	1) 조례 제·개정 시 입법예고는 하였는가?	☐ 그렇다 ☑ 그렇지않다 ☐ 해당사항 없음	
	2) 조례 제·개정 시 공청회, 세미나 등 이해관계인 및 주민에 대한 의견 수렴 과정이 있었는가?	☐ 그렇다 ☐ 그렇지않다 ☑ 해당사항 없음	
	3) 조례와 관련한 민원(청원, 진정, 소송 등)이 제기되거나 개정 또는 폐지 요구가 있었는가?	☐ 그렇다 ☐ 그렇지않다 ☑ 해당사항 없음	
	4) 조례의 체계나 사용 되어진 용어가 주민이 알기 쉽게 되어 있는가?	☑ 그렇다 ☐ 그렇지않다 ☐ 해당사항 없음	
6. 위원회 운영의 적정성	1) 조례로 위원회를 구성하도록 되어 있는가?	☑ 그렇다 ☐ 그렇지않다 ☐ 해당사항 없음	

평가항목	세부항목	척도	의견 및 자료
	2) 위원회가 법정위원회인가 조례로 설치하도록 한 위원회인가?	☑ 법정위원회 ☐ 조례로 정한 위원회 ☐ 해당사항 없음	-「인공조명에 의한 빛 공해 방지법」
	3) 위원회 위원의 성별 구성이 적정한가?	☑ 그렇다 ☐ 그렇지않다 ☐ 해당사항 없음	-당연직 3 -위촉직 남3, 여2
	4) 위원회가 법령이나 조례에서 정한 회의개최 운영 실적이 있고 관련 회의록을 보존하고 있는가?	☑ 그렇다 ☐ 그렇지않다 ☐ 해당사항 없음	
	5) 위원회를 계속 설치·운영할 필요성이 있는가?	☑ 그렇다 ☐ 그렇지않다 ☐ 해당사항 없음	
	6) 해당 위원회와 유사한 다른 위원회와의 기능적 통합이 필요한가?	☐ 그렇다 ☑ 그렇지않다 ☐ 해당사항 없음	
7. 종합 의견	1) 이 조례를 현행대로 유지할 필요가 있는가?	☑ 그렇다 ☐ 그렇지않다	
	2) 이 조례를 개정할 이유가 있는가? (해당사항 모두 표기)	☐ 위임근거에 불부합 ☐ 위임근거 불명확 ☐ 법령의 위임 없는 규제 정비 필요 ☐ 다른 조례와의 상충 및 모순 ☐ 조례 시행의 문제점 발생 ☐ 조례의 공평성 문제 ☑ 알기 쉬운 법령정비 기준에 따른 정비 필요 ☐ 위원회 관련 규정개정 필요 ☑ 그 밖의 사유	-규정 신설 검토
	3) 이 조례를 폐지할 사유가 있는가? (해당사항 모두 표기)	☐ 다른 유사한 조례와의 통합 운영 필요성 ☐ 조례 시행 불가능 ☐ 최근 3년간 조례 관련 운영 실적 전무 ☐ 기타	
	4) 그 밖의 이 조례와 관련된 의견이 있는가?	☐ 있다 ☐ 없다	

Ⅲ. 세부내용

조례명	전북특별자치도 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 방지 조례

■ 소관 부서 의견(팀)

○ **최종의견 : 정부의 계획에 따라 정책을 수행함에 있어 그 근거조례가 반드시 필요함**

○ **내용**

- (1-1) 본 조례는「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 방지법」제7조, 제11조,「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 방지법 시행령」제2조,「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 방지법 시행규칙」제3조, 제6조, 제10조에 따라 제정된 위임조례임
- (2-4) 조례 제5조에 따라 제2차 빛공해 방지 기본계획 용역 추진사업에 49,000천원을 집행함
- (2-5) 조례 내용에 따라 빛공해 방지 기본 계획 도청 홈페이지 홍보, 빛공해 환경영향평가 평가위원 공개모집 및 관련 자료 도청 홈페이지 홍보, 빛공해 관련 조명관리구역 지정 추진 홍보, 빛공해 방지 조례안 입법 예고 홍보, 빛공해 저감 컨설팅 서비스 안내(시군), 빛공해 측정 및 분석 장비 현황 파악, 빛공해 방지 기본계획 및 환경영향평가 시군 의견 수렴, 빛공해 피해 발생 우려지역 조사 등을 실시함
- (2-5) 조례 내용에 따라 제2차('25~'29) 전북특별자치도 빛공해방지 기본계획 용역을 실시함
- (3-1) 조례 제19조에 재정지원 내용이 규정됨
- (3-3) 조례 제19조에 따라 2022년과 2024년에 예산을 확보하고 집행함
- (7-1) 조례 제7조에 따라 전북특별자치도 빛공해 방지 지역위원회를 설치함
- (7-3) 위원회 위원 8인 중 여성 비율이 25%임
- (7-4) 2022년과 2023년에 위원회를 개최함
- (7-5) 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 방지법 제7조에 따라 전북특별자치도의 조명환경관리구역의 지정·지정해제 등 빛공해 관련 주요 결정 사항에 관한 심의를 위해 현행대로 지역 위원회 유지가 필요함
- (8-1) 인공조명에 의한「빛공해 방지법」제7조에 따라 전북특별자치도의 조명환경관리구역의 지정·지정해제 등 빛공해 관련 주요 결정 사항에 관한 심의를 위해 현행대로 지역위원회 유지가 필요함
- (8-2)「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 방지법 시행령」제6조에 따라 빛 방사허용기준의 적용 제외 구역을 조례로 위임하여 정하도록 하는 내용의 조례 개정 필요

- (8-4) 생활환경 개선에 대한 전북특별자치도민의 요구가 증가함에 따라 빛공해로 인한 건강·생태계 영향을 예측하고 사전에 예방하기 위하여 본 조례는 존속 유지 필요함
- (8-4) 정부(환경부)의 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 방지를 위한 '제3차 빛공해방지 종합계획(2024~2028)을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시행하며 이에 따라 전북특별자치도는 제2차 기본계획 수립 용역 추진하고 있는 등 정부와 계획에 따라 정책을 수행함에 있어 그 근거조례가 반드시 필요함

■ 종합의견	개정 권고/일반 정비

◎ 입법평가 세부의견

○ 평가항목별 검토

평가항목	평가항목별 검토 내용
1. 입법 근거 및 적법성	「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 방지법」, 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을 근거로 하여 위임 범위에서 적절하게 제정되었음
2. 조례의 실효성	제5조에 따른 공해방지 계획과 제16조에 따른 조명환경관리구역 설정을 통해 조례의 실효성을 확보하고 있음
3. 조례 내용의 적정성	본 조례는 전북특별자치도 내에서 발생할 수 있는 인공조명에 의한 빛 공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조례로 규정한 내용이 적정함
4. 조례의 공평성	장애, 성별, 나이 등에 관한 사회적 편견, 고정관념이 반영된 표현 및 차별 규정 없음
5. 주민 수용성	조례의 체계 및 용어가 주민이 알기 쉽게 되어 있음
6. 전북자치도 현실부합성	전북특별자치도 내에서 발생할 수 있는 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제정된 본 조례는 행정수요를 반영하고 있어 전북특별자치도 현실에 부합함
7. 위원회 운영의 적정성	위원회가 규정대로 설치되었고 활발히 운영되고 있어 위원회의 운영이 적절함
※ 기타 의견	생활환경 개선에 대한 전북특별자치도민의 요구가 증가함에 따라 빛공해로 인한 건강·생태계 영향을 예측하고 사전에 예방하기 위하여 본 조례는 존속 유지 필요함. 정부(환경부)의 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 방지를 위한 '제3차 빛공해방지 종합계획(2024~2028)을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시행하며 이에 따라 전북특별자치도는 제2차 기본계획 수립 용역 추진하고 있는 등 정부와 계획에 따라 정책을 수행함에 있어 그 근거조례가 반드시 필요함

○ **연도별 사업내용 및 예산/집행액**

(단위: 천원)

연도	사업명	필요예산	확보예산	집행액	집행내역
2022	제2차 빛공해 환경영향평가 용역 추진	80,000	80,000	76,000	환경영향평가 용역비
2023	해당 없음				
2024	제2차 빛공해 방지 기본계획 용역 추진	49,000	49,000	21,818	기본계획 수립 용역 선금 지급

○ **조례의 입법목적 달성도 또는 부수효과 분석**

- 조례 목적달성도 평가
  - 조례 내용에 따라 다양한 사업을 집행하고 환경영향평가를 시행하는 등 조례의 목적이 달성되고 있다고 평가됨
- 부수효과
  - 빛공해의 감소를 통해 전북특별자치도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데 기여

○ **타 시·도 유사 조례와 비교 또는 타 시·도 자치법규(정책) 동향**

전북특별자치도 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 방지 조례	**경기도 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 방지 조례**	**서울특별시 빛공해 방지 및 좋은빛 형성 관리 조례**	**부산광역시 빛공해 방지 조례**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제3조(조명기구의 범위)	제3조(조명기구의 범위)	제3조(조명기구의 범위)	제3조(조명기구의 범위)
제4조(책무)	제4조(도지사 등의 책무)	제4조(시장 등의 책무)	제4조(시 등의 책무)
제5조(빛공해방지계획의 수립·시행)	제5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5조(빛공해방지계획의 수립)	제5조(빛공해방지계획의 수립·시행)
제6조(빛환경 관리계획의 수립·시행)	제6조(경기도빛공해방지계획 수립)	**제6조(조명환경관리구역의 지정)**	제6조(빛환경관리계획의 수립·시행)
제7조(빛공해방지지역위원회의 설치)	**제7조(조명환경관리구역 지정 등)**	제7조(빛환경 관리계획의 수립)	제7조(빛공해방지위원회의 설치)
제8조(구성)	제8조(빛방사허용기준의 강화)	제8조(빛방사허용기준의 적용 제외)	제8조(구성)
제9조(위원의 임기)	제9조(빛방사허용기준의 적용 제외)	제9조(빛공해환경영향평가 등)	제9조(위원의 임기)
제10조(위원장의 직무)	제10조(빛공해환경영향평가)	제10조(좋은빛위원회)	제9조의2(위원의 해촉)
제11조(위원회의 회의)	제11조(빛공해방지위원	제11조(위원회의 기능)	제9조의3(위원의 제척·

	회의 구성)		기피·회피)
제12조(관계기관 등에 대한 협조요청)	제12조(위원회의 기능)	제12조(위원회의 구성)	제10조(위원장의 직무)
제13조(간사)	제13조(위원장의 직무)	제13조(위원의 제척 및 회피)	제11조(회의)
제14조(수당 등)	제14조(위원회의 회의)	제14조(위원의 위촉 해제)	제12조(관계기관 등에 대한 협조요청)
제15조(운영세칙)	제15조(수당 등)	제15조(위원장의 직무 등)	제13조(간사)
제16조(조명환경관리구역 지정 시 고려사항)	제16조(자료제출 등)	제16조(위원회의 운영 등)	제14조(수당 등)
제17조(빛방사허용기준의 강화)	제17조(지도 및 권고)	제17조(비밀준수)	제15조(운영세칙)
제18조(빛공해환경영향평가)	제18조(시범사업 발굴)	제18조(협조요청 등)	제16조(조명환경관리구역 지정 시 고려사항)
제19조(조명기구 정비 지원 등)	제19조(지원제도)	제19조(수당)	제17조(빛방사허용기준의 강화)
제20조(포상)	제20조(평가 및 포상 등)	제20조(운영세칙)	제18조(빛방사허용기준의 적용 제외)
	제21조(시행규칙)		제19조(빛공해환경영향평가)
			제20조(조명기구 정비 지원 등)
			제21조(포상)

- 경기도와 서울특별시 조례에서는 '조명환경관리구역의 지정'에 관해 규정하고 있음. 이는 상위법령에서 조례로 위임한 사항(「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 방지법」 제9조 및 「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 방지법 시행규칙」 제3조제5호)에 따른 내용을 명시한 것임

Ⅳ. 개정의견

현 행	개정안	비고
제3조(조명기구의 범위) 이 조례에 따른 조명기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1. ~ 2. 생략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 시설물, 조형물 또는 자연환경 등을 장식할 목적으로 그 외관에 설치되거나 외관을 비추는 발광기구 및 부속장치 가. 「건축법」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건축물 중 연면적이 2천제곱미터 이상이거나 5층 이상인 것 나. 「건축법 시행령」제3조의5에 따른 숙박시설 및 위락시설 다. 생략 라. 「문화재보호법」제2조에 따른 지정문화재 또는 등록문화재 마. 「문화예술진흥법 시행령」제12조제4항에 따른 미술작품	제3조(조명기구의 범위) 이 조례에 따른 조명기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1. ~ 2. 현행과 같음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 시설물, 조형물 또는 자연환경 등을 장식할 목적으로 그 외관에 설치되거나 외관을 비추는 발광기구 및 부속장치 가. 「건축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건축물 중 연면적이 2천제곱미터 이상이거나 5층 이상인 것 나. 「건축법 시행령」 제3조의5에 따른 숙박시설 및 위락시설 다. 현행과 같음 라.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지정문화유산 또는 「근현대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등록문화유산 마. 「문화예술진흥법 시행령」 제12조제1항에 따른 미술작품	-띄어쓰기 정비 권고 -마목에서 인용하고 있는 제12조제4항은 건축비용에 관한 내용이므로 제1항으로 정비 권고 -제3호라목: 「문화재보호법」의 개정으로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로 변경되었으며, 기존의 "문화재"는 "문화유산"으로 용어가 변경되었음. 또한 기존 "등록문화재"는 「근현대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음. 인용 법령의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정비 권고
제4조(책무) ① 전북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지역적 특성을 고려하여 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이하 "빛공해"라 한다) 방지시책을 수립·시행하고, 도민에게 빛공해에 관한 정보제공 등의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② 생략	제4조(책무) ① 전북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지역적 특성을 고려하여 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이하 "빛공해"라 한다) 방지시책을 수립·시행하고, 전북특별자치도민(이하 "도민"이라 한다)에게 빛공해에 관한 정보제공 등의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② 현행과 같음	-"도민"을 약칭하고 사용하도록 정비 권고
제9조(위원의 임기) ①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② 생략	제9조(위원의 임기) ①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② 현행과 같음	-문장 표현 정비 권고
<신설>	제17조의2(빛방사허용기준의 적용 제외) ① 도지사는 영 제6조제2항에 따라 빛방사허용기준의 적용 제외에	-타 시·도의 사례를 참고하여 「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 방지법 시

현 행	개정안	비고
	대한 승인 여부를 결정할 때에는 위원회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② 도지사는 여성 및 아동 등 시민의 생활안전 및 범죄예방에 관련된 조명 시설에 대하여는 규칙 별표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위원회의 의견을 들어 빛방사허용기준 보다 완화하여 결정할 수 있다.	행령」제6조에 따라 빛방사허용기준의 적용 제외 구역을 정하도록 규정 신설 권고
제20조(포상) 도지사는 빛공해 방지에 기여한 공적이 현저한 기관·단체 또는 개인에게 「전북특별자치도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제20조(포상) 도지사는 빛공해 방지에 기여한 공적이 현저한 기관·단체 또는 개인에게 포상할 수 있다.	-포상에 관해 선언적인 의미만을 규정하면, 그에 따른 구체적인 사항은 당연히 「전북특별자치도 포상 조례」를 적용 받으므로 규정의 실익이 없음(법제처, 2023년 우수조례 및 자치법규 입법컨설팅 사례집, 118면)

심층분석 관련 검토

○ **심층분석**

- 타 시·도 사례의 선진적 규정 도입 검토를 살펴보았으나 추가적인 시사점을 발견하기 어려움. 개정의견과 같이 개정하도록 권고함

□ 참고자료 1 – 위원회 관련 실적

○ **구성**

- 제7조(빛공해방지지역위원회)

구분	정원	현원	당연직	위촉직	
				남	여
위원수(명)	8	8	3	3	2
비 율(%)	-	38	33		

○ **개최 실적**

- 연 1회 개최 중

연도별	2022	2023	2024
개최건수	1	1	-
개최일	'22.11.17.	'23.09.26.	개최예정
소요예산	800천원	500천원	-

- 위원회 소요 예산

연도별	2022	2023	2024
개최건수	1	1	
개최일	'22.11.17.	'23.09.26.	
소요예산	800천원	500천원	

□ 참고자료 2 – 조례 관련 보도 자료

○ 보도자료 1

전북자치도, 지역적 특성 반영된 '빛공해 관리 체계' 마련, 전북도민일보[21)]

과도한 인공조명으로 수면장애, 생태계 교란 등 빛 공해가 사회적 문제로 대두됨에 따라 전북특별자치도가 이를 해소할 수 있는 방안 모색에 나섰다.

지역 특성을 반영해 과학적이고 합리적인 빛 공해 관리 체계를 구축하기 위함이다.

4일 전북자치도에 따르면 쾌적하고 건강한 빛 환경 조성을 위해 '제2차(2025~2029) 전북특별자치도 빛공해 방지 기본계획 수립 용역'을 추진한다

이번 용역은 환경부의 '제3차 빛공해 방지 종합계획(2024~2028)'에 발맞춰 지역 특성을 반영한 빛공해 관리 체계를 마련하는 데 목적이 있다.

빛 공해는 인공조명의 부적절한 사용으로 인해 생기는 과도한 빛이나, 조명영역 밖으로 누출되는 빛으로 인해 생활을 방해하거나 환경에 피해를 주는 현상이다.

가로등, 간판, 네온사인 등이 밤에도 필요에 의해 환하게 밝혀지지만, 이제는 빛 공해의 원인이 되고 있다.

현행 빛 공해 방지법은 용도지역별로 조도 및 휘도 기준을 엄격하게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도내 각 지역의 특수성을 고려하지 않은 획일적인 규제라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이에 전북자치도는 지역적 특성을 고려한 빛공해 관리 체계를 마련하고, 건강한 빛환경 조성을 위한 새로운 방안을 모색할 방침이다.

우선, 용역을 통해 전북의 조명별 현황, 빛 공해 피해 방지 기본 방향 및 관리 여건을 분석할 계획이다.

이를 토대로 빛 공해 방지를 위한 공간·광고·장식 조명 등 분야별·단계별 대책을 수립하고, 빛 공해 방지 계획 시행 비용 산정 및 재원 조달 방안을 마련한다는 구상이다.

21) https://www.domin.co.kr/news/articleView.html?idxno=1471941&sc_section_code=S1N6

또, 기존에 설치된 빛 조명에 대한 실태 조사 및 평가를 실시, 야간 경관 보전·관리 및 형성을 위한 단계별 실행 방안도 도출해 낼 예정이다.

도민들의 빛 공해에 대한 인식을 높이고 자발적인 참여를 위해 인공조명 설치 및 운영 등에 대한 빛 공해 관리 가이드라인과 빛 공해에 대한 교육·홍보 대책도 마련키로 했다.

전북자치도는 이번 용역을 신속히 추진, 빛 공해 문제 해결에 있어 지역 맞춤형 접근으로 지역 특성에 부합하는 빛 환경 관리 체계를 차질 없이 구축한다는 복안이다.

전북자치도 관계자는 "빛 공해 문제는 단순한 환경 문제를 넘어 도민의 삶의 질과 직결되는 중요한 사안"이라며 "지역 특성을 반영한 과학적이고 합리적인 빛 공해 관리 체계 구축을 통해 건강하고 지속 가능한 지역 발전을 도모할 것"이라고 말했다.

□ 참고자료 3 – 조례 관련 자료

○ 자료 1 - 전북특별자치도 조명환경관리구역 지정 현황

조명환경관리구역 지정 현황

home › 빛공해 실태 › 조명환경관리구역 지정 현황

전체 | 서울 | 부산 | 대구 | 인천 | 광주 | 대전 | 울산 | 세종 | 경기 | 강원 | 충북 | 충남 | 전북 | 전남 | 경북 | 경남 | 제주

지역 / 내용	행정구역별 현황			면적별 현황					
	지자체 (개)	지정 여부	면적 (km2)	조명환경관리구역 (km2)	1종 (km2)	2종 (km2)	3종 (km2)	4종 (km2)	비율 (%)
전라북도	14	미지정	8078.27	0	0	0	0	0	0%
전주시		미지정	206.03						
익산시		미지정	506.58						
남원시		미지정	752.21						
김제시		미지정	545.95						
완주군		미지정	821.27						
무주군		미지정	631.78						
장수군		미지정	533.19						
임실군		미지정	597.17						
순창군		미지정	495.91						
부안군		미지정	494.98						
군산시		미지정	403.46						
정읍시		미지정	693.22						
진안군		미지정	789.06						
고창군		미지정	607.46						

[이미지 크게 보기]



붙임 1 사업 관련 추진실적

□ 연도별 사업 및 예산 집행 실적

○ 최근 3년간 사업 실적 등

- 제19조(조명기구 정비 지원 등) (단위: 천원)

연도	사업명	필요예산	확보예산	집행액	집행내역
2022	제2차 빛공해 환경영향평가 용역 추진	80,000	80,000	76,000	환경영향평가 용역비
2023	해당 없음				
2024	제2차 빛공해 방지 기본계획 용역 추진	49,000	49,000	21,818	기본계획 수립 용역 선금 지급

붙임 2 평가대상 조례

전북특별자치도 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 방지 조례

[시행 2024. 5. 31.] [전북특별자치도조례 제5508호, 2024. 5. 31., 일부개정]

전북특별자치도(생활환경과)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 방지법」과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모든 도민이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이하 "빛공해"라 한다)란 인공조명의 부적절한 사용으로 인한 과도한 빛 또는 비추고자 하는 조명영역 밖으로 누출되는 빛이 국민의 건강하고 쾌적한 생활을 방해하거나 환경에 피해를 주는 상태를 말한다.
2. "조명기구"란 공간을 밝게 하거나 광고, 장식 등을 위하여 설치된 발광기구 및 부속장치로서 제3조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조명기구의 범위) 이 조례에 따른 조명기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1. 안전하고 원활한 야간활동을 위하여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간을 비추는 발광기구 및 부속장치

가. 「도로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도로

나.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보행자길

다.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공원녹지

라. 옥외 체육공간

2.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라 허가를 받아야 하는 옥외광고물(「건축법 시행령」 제3조의5에 따른 의료시설, 위험물 저장 및 처리 시설 또는 교정 및 군사 시설에 설치된 옥외광고물은 제외한다)에 설치되거나 광고를 목적으로 그 옥외광고물을 비추는 발광기구 및 부속장치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 시설물, 조형물 또는 자연환경 등을 장식할 목적으로 그 외관에 설치되거나 외관을 비추는 발광기구 및 부속장치

가. 「건축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건축물 중 연면적이 2천제곱미터 이상이거나 5층 이상인 것

나. 「건축법 시행령」 제3조의5에 따른 숙박시설 및 위락시설

다. 교량

라. 「문화재보호법」 제2조에 따른 지정문화재 또는 등록문화재

마. 「문화예술진흥법 시행령」 제12조제4항에 따른 미술작품

제4조(책무)

① 전북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지역적 특성을 고려하여 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이하 "빛공해"라 한다) 방지시책을 수립·시행하고, 도민에게 빛공해에 관한 정보제공 등의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개정 2023. 12. 8.>

② 도민은 빛공해 방지를 위하여 노력함과 동시에 도지사가 시행하는 빛공해 방지시책에 협력하여야

한다.

제5조(빛공해방지계획의 수립·시행)

① 도지사는 「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 방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제1항에 따라 빛공해 방지를 위한 계획(이하 “빛공해방지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빛공해방지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빛공해방지계획의 목표 및 기본방향
2. 빛공해의 현황 및 향후 전망에 관한 사항
3. 빛공해 방지를 위한 분야별·단계별 대책
4. 빛공해에 관한 교육·홍보 대책
5. 시·군별 빛공해방지계획의 시행 방안
6. 빛공해방지계획의 시행에 드는 비용의 산정 및 재원 조달방안
7. 그 밖에 빛공해 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6조(빛환경 관리계획의 수립·시행)

① 도지사는 법 제9조제5항에 따라 조명환경관리구역의 빛환경을 친환경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계획(이하 “빛환경 관리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빛환경 관리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조명환경관리구역의 빛환경 관리 목표 및 기본방향
2. 조명환경관리구역의 현황 및 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 실태
3. 조명환경관리구역의 조명기구에 대한 친환경적 관리방안
4. 조명환경관리구역의 빛환경을 친환경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기술적·재정적 지원 방안

제7조(빛공해방지지역위원회의 설치) 도지사는 법 제7조제1항에 따라 빛공해 관리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전북특별자치도빛공해방지지역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개정 2023. 12. 8.>

1. 제5조에 따른 빛공해방지계획의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
2. 제6조에 따른 빛환경 관리계획의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
3. 법 제9조에 따른 조명환경관리구역의 지정 및 법 제10조에 따른 조명환경관리구역의 지정해제 또는 변경에 관한 사항
4. 제17조에 따른 빛방사허용기준의 강화에 관한 사항
5. 법 제12조제1항 및 「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 방지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6조에 따른 빛방사허용기준의 적용 제외에 관한 사항
6. 빛공해 방지대책 관련 법령 및 제도의 정비에 관한 중요 사항
7. 제20조에 따른 조명기구 정비 지원 등에 관한 사항
8. 그 밖에 빛공해 방지대책 추진에 필요하다고 도지사가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8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5명 이상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환경산림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성별을 고려하여 도지사가 임명하거나 위촉하되, 위촉위원의 수는 전체 위원의 2분의 1 이상이어야 한다.<개정 2023. 12. 8., 2024. 5. 31.>

1. 전북자치도 소속 4급 이상 공무원
2. 빛공해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을 갖춘 사람
3. 도민을 대표할 수 있는 사람

제9조(위원의 임기)

①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②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10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1조(위원회의 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2조(관계기관 등에 대한 협조요청) 위원회는 안건의 심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련 기관 및 단체 관계자를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청취하거나 설명 및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제13조(간사)

① 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빛공해업무담당팀장이 된다.

제14조(수당 등) 위원회에 참석한 위촉위원 및 관계 전문가 등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5조(운영세칙) 이 조례에 정한 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6조(조명환경관리구역 지정 시 고려사항) 「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 방지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3조제5호에 따라 조명환경관리구역 지정 시 추가로 고려하여야 하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구역별 빛공해 관련 민원발생 현황
2. 관광특구의 지정 현황

제17조(빛방사허용기준의 강화)

① 도지사는 환경부장관이 정한 조명환경관리구역에서 허용되는 빛방사허용기준으로는 빛공해의 방지 또는 쾌적한 환경의 조성이 어렵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엄격한 빛방사허용기준을 정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빛방사허용기준을 강화하여 적용하려면 해당 시장·군수의 의견을 들은 후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른 행정예고를 통하여 주민의 의견을 듣고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조명환경관리구역내 엄격한 빛방사허용기준을 고시하여야 한다.

제18조(빛공해환경영향평가) 도지사는 법 제16조에 따라 빛환경이 주변지역에 미치는 환경상 영향을 3년마다 1회 이상 평가하여야 한다.

제19조(조명기구 정비 지원 등)

① 도지사는 이 조례의 규정을 준수하여 조명기구를 정비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조명환경관리구역 중 자연환경과 주거환경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조명기구에 대하여 우선적으로 지원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을 받으려는 자는 규칙 제6조의 빛방사허용기준 등을 반영한 조명계획이 포함

된 사업계획서를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도지사는 빛공해 개선을 위하여 조명환경관리구역의 조명기구 소유자 등에게 필요한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20조(포상) 도지사는 빛공해 방지에 기여한 공적이 현저한 기관·단체 또는 개인에게 「전북특별자치도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개정 2023. 12. 8.>

14. 전북특별자치도 농어촌 체험관광 활성화 지원 조례

Ⅰ. 종합의견

< 평가결과 >

□ 평가대상

조 례 명	전북특별자치도 농어촌 체험관광 활성화 지원 조례		
조례 구분	자치조례	관계 법령	-
제정·시행일	2013. 11. 8. 제정	최근개정·시행일	2023. 12. 8. 개정
소관 부서	농촌사회활력과	소관 상임위	농업복지환경

□ 평가의견

평가항목	평가의견	주요 내용
종합의견	통합/일반	- 법제처 자치법규 입안기준에 따른 정비(띄어쓰기 및 상위법령 개정 사항 반영) 검토 - 「전북특별자치도 농어촌민박사업 지원조례」와 조례 제정 목적 및 농어촌에 대한 정의가 같고, 농어촌민박사업 활성화계획을 농어촌관광 활성화 기본계획으로 갈음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는 점 등에서 통합을 검토 - 시행규칙은 개별 조례에서 위임이 없더라도 조례의 집행에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규칙으로 규정할 수 있으므로 삭제 권고
심층분석 결과		- 「전북특별자치도 농어촌 체험관광 활성화 지원 조례」의 규정 내용이 오히려 농산어촌유학 지원에 보다 가까운 내용을 규정하고 있음. 관련하여 이 조례 제7조 청소년 등 참여지원 규정에서 1교1촌 자매결연 지원 등의 내용을 담고 있음 - 세부적인 지원 내용의 유사성이 있으므로 기존의 「전북특별자치도 농어촌 체험관광 활성화 지원 조례」를 기반으로 하되 계획 수립 시 농산어촌유학을 교육에 포함시키도록 하는 방안을 통합안으로 제안함
1. 입법 근거 및 적법성	적정	관련 법률에서 농촌 활성화를 위한 자치법규를 제정·운영하도록 하고 있으며 본 조례는 자치사무의 범위에서 적절하게 제정되었음
2. 조례의 실효성	적정	조례에 따른 시행계획 수립 및 교육 추진 등을 통해 조례의 실효성을 확보하고 있음
3. 조례 내용의 적정성	적정	농촌관광 활성화를 위한 사업을 추진하기에 조례 내용이 적정함

4. 조례의 공평성	적정	장애, 성별, 나이 등에 관한 사회적 편견, 고정관념이 반영된 표현 및 차별 규정 없음
5. 주민 수용성	적정	조례의 체계 및 용어가 주민이 알기 쉽게 되어 있음
6. 전북자치도 현실부합성	적정	본 조례는 농어촌의 체험관광을 활성화하고자 하는 행정수요를 반영하고 있어 전북특별자치도 현실에 부합함
7. 위원회 운영의 적정성	-	위원회 운영 관련 규정이 없음
※ 기타 의견	없음	

Ⅱ. 항목별 평가 결과

평가항목	세부항목	척도	의견 및 자료
1. 입법의 근거 및 적법성	1) 위임조례인가 자치사무에 관한 조례인가?	□ 위임조례 ☑ 자치사무에 관한 조례	
	2) 조례에서 규정하고 있는 위임근거가 올바른가?	□ 그렇다 □ 그렇지않다 ☑ 해당사항 없음	
	3) 조례가 위임범위에서 적절하게 제·개정되었는가?	□ 그렇다 □ 그렇지않다 ☑ 해당사항 없음	
	4) 조례 제.개정 이후 동일 또는 유사한 법령이나 제도가 만들어졌거나 근거법령이 개정 또는 폐지되었는가?	□ 그렇다 □ 그렇지않다 ☑ 해당사항 없음	
	5) 조례에서 주민의 권리제한, 의무부과, 벌칙 부과, 규제사항에 대한 법률위임이 있는가?	□ 그렇다 □ 그렇지않다 ☑ 해당사항 없음	
	6) 상위법령에 위배되는 조항이 있는가?	□ 그렇다 □ 그렇지않다 ☑ 해당사항 없음	
2. 조례의 실효성	1) 조례의 시행과정에서 다른 조례와의 충돌이나 모순이 발생하고 있는가?	□ 그렇다 ☑ 그렇지않다 □ 해당사항 없음	
	2) 이 조례와 유사 또는 동일한 다른 조례가 제정 및 시행되고 있어 통합할 필요가 있는가?	□ 그렇다 ☑ 그렇지않다 □ 해당사항 없음	
	3) 조례에 따른 계획이 수립·시행되고 있는가?	☑ 그렇다 □ 그렇지않다 □ 해당사항 없음	-전북 농촌관광 활성화 기본계획
	4) 조례에서 집행기관 등에 책무를 부여하고 있는가?	☑ 그렇다 □ 그렇지않다 □ 해당사항 없음	-제8조(전문인력의 육성 등)

평가항목	세부항목	척도	의견 및 자료
	5) 조례에서 부여한 책무와 관련사업을 집행기관이 잘 이행하고 있는가?	☑ 그렇다 ☐ 그렇지않다 ☐ 해당사항 없음	
3. 조례 내용의 적정성	1) 조례에 재정지원 관련 규정이 있는가?	☑ 그렇다 ☐ 그렇지않다 ☐ 해당사항 없음	
	2) 조례 시행에 필요한 예산 확보와 집행이 잘 이루어지고 있는가?	☑ 그렇다 ☐ 그렇지않다 ☐ 해당사항 없음	
	3) 지원대상이 집행이 가능한 정도로 구체화 되어 있는가?	☐ 그렇다 ☐ 그렇지않다 ☑ 해당사항 없음	
	4) 조례에 따른 위탁사무가 위탁대상으로 적정한가?	☐ 그렇다 ☐ 그렇지않다 ☑ 해당사항 없음	
4. 조례의 공평성	1) 조례에서 장애인, 성별 등의 특정계층이나 특정지역을 차별하는 조항이 있는가?	☐ 그렇다 ☑ 그렇지않다 ☐ 해당사항 없음	
	2) 조례에서 정한 차별이 합리적인가?	☐ 그렇다 ☐ 그렇지않다 ☑ 해당사항 없음	
5. 주민 의견 수용성	1) 조례 제·개정 시 입법예고는 하였는가?	☑ 그렇다 ☐ 그렇지않다 ☐ 해당사항 없음	
	2) 조례 제·개정 시 공청회, 세미나 등 이해관계인 및 주민에 대한 의견 수렴 과정이 있었는가?	☑ 그렇다 ☐ 그렇지않다 ☐ 해당사항 없음	
	3) 조례와 관련한 민원(청원, 진정, 소송 등)이 제기되거나 개정 또는 폐지 요구가 있었는가?	☐ 그렇다 ☐ 그렇지않다 ☑ 해당사항 없음	
	4) 조례의 체계나 사용 되어진 용어가 주민이 알기 쉽게 되어 있는가?	☑ 그렇다 ☐ 그렇지않다 ☐ 해당사항 없음	
6. 위원회 운영의 적정성	1) 조례로 위원회를 구성하도록 되어 있는가?	☐ 그렇다 ☑ 그렇지않다 ☐ 해당사항 없음	

평가항목	세부항목	척도	의견 및 자료
	2) 위원회가 법정위원회인가 조례로 설치하도록 한 위원회인가?	☐ 법정위원회 ☐ 조례로 정한 위원회 ☑ 해당사항 없음	
	3) 위원회 위원의 성별 구성이 적정한가?	☐ 그렇다 ☐ 그렇지않다 ☑ 해당사항 없음	
	4) 위원회가 법령이나 조례에서 정한 회의개최 운영 실적이 있고 관련 회의록을 보존하고 있는가?	☐ 그렇다 ☐ 그렇지않다 ☑ 해당사항 없음	
	5) 위원회를 계속 설치·운영할 필요성이 있는가?	☐ 그렇다 ☐ 그렇지않다 ☑ 해당사항 없음	
	6) 해당 위원회와 유사한 다른 위원회와의 기능적 통합이 필요한가?	☐ 그렇다 ☐ 그렇지않다 ☑ 해당사항 없음	
7. 종합 의견	1) 이 조례를 현행대로 유지할 필요가 있는가?	☑ 그렇다 ☐ 그렇지않다	
	2) 이 조례를 개정할 이유가 있는가? (해당사항 모두 표기)	☐ 위임근거에 불부합 ☐ 위임근거 불명확 ☐ 법령의 위임 없는 규제 정비 필요 ☐ 다른 조례와의 상충 및 모순 ☐ 조례 시행의 문제점 발생 ☐ 조례의 공평성 문제 ☑ 알기 쉬운 법령정비 기준에 따른 정비 필요 ☐ 위원회 관련 규정개정 필요 ☑ 그 밖의 사유	
	3) 이 조례를 폐지할 사유가 있는가? (해당사항 모두 표기)	☐ 다른 유사한 조례와의 통합 운영 필요성 ☐ 조례 시행 불가능 ☐ 최근 3년간 조례 관련 운영 실적 전무 ☐ 기타	
	4) 그 밖의 이 조례와 관련된 의견이 있는가?	☐ 있다 ☐ 없다	

Ⅲ. 세부내용

조례명	전북특별자치도 농어촌 체험관광 활성화 지원 조례

■ 소관 부서 의견(팀)

○ **최종의견 : 도시와 농촌간의 교류 및 상생과 농촌의 경제활성화를 위하여 농촌관광 사업이 더욱 확대되어야 하므로 농촌관광 활성화를 위하여 해당 조례의 유지가 필요함**

○ **내용**

- (1-1) 본 조례는「도시와 농어촌 간의 교류촉진에 관한 법률」제3조와 관련된 내용을 규정한 자치조례임
- (2-4) 조례 제8조에 따라 체험마을 리더교육 지원에 18,228천원을 집행함
- (2-5) 조례 내용에 따라 24년 기준 예산액 18백만원을 확보하여 매년 체험마을 리더교육 지원을 통한 교육을 온, 오프라인으로 시행함
- (3-1) 2024년도 예산액 기준 전북형 농촌관광 운영활성화 지원에 600백만원, 농촌체험휴양마을 육성 지원에 312백만원, 체험마을 리더교육 지원에 18백만원, 농촌체험휴양마을 박람회 참가 지원에 12백만원, 농촌관광 홍보 지원에 66백만원, 농촌관광 경쟁력 제고사업에 500백만원을 지원함

■ 종합의견	통합 권고/일반 정비

◎ 입법평가 세부의견

○ **평가항목별 검토**

평가항목	평가항목별 검토 내용
1. 입법 근거 및 적법성	관련 법률에서 농촌 활성화를 위한 자치법규를 제정·운영하도록 하고 있으며 본 조례는 자치사무의 범위에서 적절하게 제정되었음
2. 조례의 실효성	조례에 따른 시행계획 수립 및 교육 추진 등을 통해 조례의 실효성을 확보하고 있음
3. 조례 내용의 적정성	농촌관광 활성화를 위한 사업을 추진하기에 조례 내용이 적정함
4. 조례의 공평성	장애, 성별, 나이 등에 관한 사회적 편견, 고정관념이 반영된 표현 및 차별 규정 없음
5. 주민 수용성	조례의 체계 및 용어가 주민이 알기 쉽게 되어 있음
6. 전북자치도 현실부합성	본 조례는 농어촌의 체험관광을 활성화하고자 하는 행정수요를 반영하고 있어 전북특별자치도 현실에 부합함
7. 위원회 운영의 적정성	위원회 운영 관련 규정이 없음
※ 기타 의견	없음

○ **연도별 사업내용 및 예산/집행액**

(단위: 천원)

규 정	사 업 명	예산('24년)
제8조(전문인력의 육성 등)	체험마을 리더교육 지원	18,228

- 전북형 농촌관광 운영활성화 지원 : 600백만원
- 농촌체험휴양마을 육성 지원 : 312백만원
- 체험마을 리더교육 지원 : 18백만원
- 농촌체험휴양마을 박람회 참가 지원 : 12백만원
- 농촌관광 홍보 지원 : 66백만원
- 농촌관광 경쟁력 제고사업 : 500백만원

○ **조례의 입법목적 달성도 또는 부수효과 분석**

- 조례 목적달성도 평가
  - 조례 내용에 따라 농어촌 관광 활성화를 위해 다양한 홍보와 교육을 진행하고 있다는 점에서 조례의 목적을 달성되고 있다고 평가됨
- 부수효과
  - 농어촌 체험관광을 활성화하여 새로운 관광자원을 개발하고 수입원을 창출하는데 기여

○ **타 시·도 유사 조례와 비교 또는 타 시·도 자치법규(정책) 동향**

전북특별자치도 농어촌 체험관광 활성화 지원 조례	**전라남도 농산어촌 체험관광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	**경상남도 농산어촌체험관광 활성화 지원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농산어촌 체험관광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제3조(체험관광사업의 활성화 계획 수립·시행)	제3조(활성화계획 수립·시행)	제3조(도지사의 책무)	제3조(활성화계획 수립·시행)
제4조(농어촌 체험관광 활성화 자문회의)	제4조(지원대상)	제4조(지원대상)	제4조(지원대상)
제5조(지원대상)	제5조(지원내용)	제5조(지원내용)	제5조(지원내용)
제6조(지원내용)	제6조(청소년 등 참여 지원)	제6조(체험관광사업의 활성화)	제6조(청소년 등 참여 지원)

제7조(청소년 등 참여 지원)	제7조(전문가의 자문 등)	제7조(청소년 등 참여 지원)	제7조(전문가의 자문 등)
제8조(전문인력의 육성 등)	제8조(전문인력의 육성 등)	제8조(전문가의 자문 등)	제8조(전문인력의 육성 등)
제9조(1사1촌 자매결연의 활성화)	제9조(1사1촌 및 1교1촌 자매결연의 활성화)	제9조(전문인력의 육성 등)	제9조(1사1촌 자매결연의 활성화)
제10조(지도 감독 및 평가 등)	제10조(지도·감독 및 평가 등)	제10조(1사1촌 친선결연의 활성화)	제10조(지도·감독 및 평가 등)
제11조 <삭제 2016. 9. 30.>	제11조(시행규칙)	제11조(감독 및 평가 등)	제11조(시행규칙)
제12조 <삭제 2016. 9. 30.>		제12조(시행규칙)	
제13조(시행규칙)			

- 타 시·도 조례와 실질적인 규정 내용이 유사하여 특별한 시사점 없음

Ⅳ. 개정의견

현 행	개정안	비고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농어촌"이란「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3조제5호에 따른 전북특별자치도 시·군의 지역을 말한다. 2. ~ 4. 생략 5. "1교1촌 자매결연"이란 「유아교육법」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과 「초·중등교육법」 제2조 각 호의 학교(다른 시·도를 포함한다. 이하 "학교 등"이라 한다)가 하나의 농어촌 마을과 자매 결연을 맺어 유아 및 학생의 체험활동 등을 통하여 지속적으로 교류를 추진하는 것을 말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농어촌"이란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5호 및 「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 제3조제6호에 따른 전북특별자치도 시·군의 지역을 말한다. 2. ~ 4. 현행과 같음 5. "1교1촌 자매결연"이란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과 「초·중등교육법」 제2조 각 호의 학교(다른 시·도를 포함한다. 이하 "학교 등"이라 한다)가 하나의 농어촌 마을과 자매결연을 맺어 유아 및 학생의 체험활동 등을 통하여 지속적으로 교류를 추진하는 것을 말한다.	-띄어쓰기 및 법령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농어촌"을 정의하도록 정비 권고 -"자매결연"으로 띄어쓰기 정비 권고
제3조(체험관광사업의 활성화 계획 수립·시행) ① 전북특별자치도지사(이하"도지사"라 한다)는 농어촌체험관광사업의 체계적인 관리·지원을 위하여 전북특별자치도 농어촌 체험관광 활성화계획(이하 "활성화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이하 생략	제3조(체험관광사업의 활성화 계획 수립·시행) ① 전북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농어촌체험관광사업의 체계적인 관리·지원을 위하여 전북특별자치도 농어촌 체험관광 활성화계획(이하 "활성화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이하 현행과 같음	-띄어쓰기 정비 권고
제4조(농어촌 체험관광 활성화 자문회의) 도지사는 전북특별자치도 농어촌 체험관광 활성화 자문회의를 통해 활성화계획의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을 자문 및 심의할 수 있다.	제4조(농어촌 체험관광 활성화 자문회의) 도지사는 전북특별자치도 농어촌 체험관광 활성화 자문회의를 통해 활성화계획의 수립·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경우 자문 및 심의를 받을 수 있다.	-도지사는 자문 또는 심의를 받는 주체이므로 규정 표현 정비 권고
제13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삭제>	-시행규칙은 개별 조례에서 위임이 없더라도 조례의 집행에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규칙으로 규정할 수 있으므로 삭제 권고

심층분석 관련 검토

○ **심층분석 사유**

- 이 조례와 「전북특별자치도 농어촌민박사업 지원조례」와 조례 제정 목적 및 농어촌에 대한 정의가 같고, 농어촌민박사업 활성화계획을 농어촌관광 활성화 기본계획으로 갈음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는 점 등에서 통합을 검토할 수 있음. 이 경우 지원대상, 지원 내용 등이 다르므로 심층분석을 통해서 통합안 검토

○ **심층분석**

- 입법정책담당관실 의견: 「전북특별자치도 농어촌민박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와 통합 가능 여부 검토
  - 조례 제정 목적, 농어촌에 대한 정의가 동일하고, 농어촌 민박 활성화 계획을 농어촌 체험관광 활성화 기본계획으로 갈음하고 있음
  - 다만, 지원대상, 지원 내용 등은 다르므로 조별 구분하여 규정할 필요성 있음
- 「전북특별자치도 농어촌 체험관광 활성화 지원 조례」의 사업 내용을 살펴보면 농산어촌 유학지원과 유사하게 진행되는 것으로 보임. 실제 전북특별자치도가 「전북특별자치도 농산어촌유학 지원 조례」에 근거하여 시행하는 사업은 아래와 같음

연도	사 업 명
2024	전북형 농촌관광 운영활성화
	농촌체험휴양마을 육성
	체험마을 리더 교육
	농촌체험휴양마을 박람회 참가
	농촌관광 홍보
	농촌관광 경쟁력 제고사업

- 「전북특별자치도 농어촌 체험관광 활성화 지원 조례」에 따른 사업 및 예산 집행 실적으로 아래와 같은 사항을 제시함

  • 2024년 실적

(단위 천원)

규 정	사 업 명	예산('24년)
제8조(전문인력의 육성 등)	체험마을 리더교육 지원	18,228

- 전북형 농촌관광 운영활성화 지원 : 600백만원
- 농촌체험휴양마을 육성 지원 : 312백만원
- 체험마을 리더교육 지원 : 18백만원

- 농촌체험휴양마을 박람회 참가 지원 : 12백만원
- 농촌관광 홍보 지원 : 66백만원
- 농촌관광 경쟁력 제고사업 : 500백만원

- 「전북특별자치도 농산어촌유학 지원 조례」와 「전북특별자치도 농어촌 체험관광 활성화 지원 조례」는 사업과 예산 집행실적이 동일함. 사업 내용만으로 보아서는 농산어촌 유학 조례의 특성을 살려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지는 않음

- 「전북특별자치도 농산어촌유학 지원 조례」와 「전북특별자치도 농어촌 체험관광 활성화 지원 조례」 및 이와 유사한 내용을 규정하고 있는 「전북특별자치도 농어촌민박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의 구성체계를 살펴보면 아래와 같음

전북특별자치도 농산어촌유학 지원 조례	전북특별자치도 농어촌 체험관광 활성화 지원 조례	전북특별자치도 농어촌민박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제3조(농촌유학 지원계획 수립)	제3조(체험관광사업의 활성화 계획 수립·시행)	제3조(책무)
제4조(지원대상사업)	제4조(농어촌 체험관광 활성화 자문회의)	제4조(활성화계획의 수립·시행)
제5조(지원센터 운영)	제5조(지원대상)	제5조(실태조사 등)
제6조(협의회 구성)	제6조(지원내용)	제6조(재정지원)
제7조(협의회 기능)	제7조(청소년 등 참여지원)	제7조(신청 및 선정)
제8조(위원의 임기)	제8조(전문인력의 육성 등)	제8조(지도·감독)
제9조(회의)	제9조(1사1촌 자매결연의 활성화)	제9조(협력체계)
제10조(수당 등)	제10조(지도 감독 및 평가 등)	제10조(시행규칙)
제11조(시행규칙)	제11조 <삭제 2016. 9. 30.>	
	제12조 <삭제 2016. 9. 30.>	
	제13조(시행규칙)	

- 「전북특별자치도 농어촌 체험관광 활성화 지원 조례」의 규정 내용이 오히려 농산어촌유학 지원에 보다 가까운 내용을 규정하고 있음. 관련하여 제7조 청소년 등 참여지원 규정에서 1교1촌 자매결연 지원 등의 내용을 담고 있음
- 또한 「전북특별자치도 농어촌 체험관광 활성화 지원 조례」와 「전북특별자치도 농어촌민박사업 지원조례」는 조례 제정 목적 및 농어촌에 대한 정의가 같고, 농어촌민박사업 활성화계획을 농어촌관광 활성화 기본계획으로 갈음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는 점 등에서 통합을 검토할 수 있음. 다만, 지원대상, 지원 내용은 양 조례가 달리 규정하고 있음. 지원의 내용은 오히려 살펴본바와 같이 「전북특별자치도 농산어촌유학 지원 조례」와 유사하다고 할 것임. 통합을 한다면 「전북특별자치도 농산어촌유학 지원 조례」와 「전북특별자치도 농어촌 체험관광 활성화 지원 조례」와의 통합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 세부적인 지원 내용의 유사성이 있으므로 기존의 「전북특별자치도 농어촌 체험관광 활성화 지원 조례」를 기반으로 하되 계획 수립 시 농산어촌유학을 교육에 포섭시키도록 하는 방안을 포함하여 아래와 같이 통합안을 제안함

전북특별자치도 농어촌 체험관광 활성화 지원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전북특별자치도 농어촌과 도시간의 교류를 활성화하여 농어촌지역의 소득증대 및 삶의 질 향상과 도시지역 주민의 건강한 여가욕구 수요를 충족시켜 농어촌과 도시가 함께 발전할 수 있는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농어촌”이란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5호, 「산림기본법」 제3조제2호 및 「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 제3조제6호에 따른 전북특별자치도 시·군의 지역을 말한다. 2. “마을”이란 「지방자치법」 제3조제3항에 따른 동·리, 같은 법 제7조제4항에 따른 행정동·리 등의 공간적 개념과 지역적으로 문화, 경제, 사회적 일체감을 갖는 주민들의 집합체라는 사회적인 개념을 총칭한다. 3. “농어촌 체험관광사업”이란 농어촌주민들이 마을의 역사·문화, 자연경관 및 농수산물과 특산물 등 부존자원을 활용하여 도시민들에게 체험·휴양·숙박·음식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농수산물과 특산물을 생산·가공·판매하는 소득증대 사업을 말한다. 4. “1사1촌 자매결연” 이란 하나의 기관(기업 및 단체 또는 관련부서를 포함한다)과 마을이 자매결연하고 교류를 추진하는 것을 말하며 1사1촌에는 1사다촌, 1부서1촌을 포함한다. 5. “1교1촌 자매결연”이란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과 「초·중등교육법」 제2조 각 호의 학교(다른 시·도를 포함한다. 이하 “학교 등”이라 한다)가 하나의 농어촌 마을과 자매결연을 맺어 유아 및 학생의 체험활동 등을 통하여 지속적으로 교류를 추진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체험관광사업의 활성화 계획 수립·시행)** ① 전북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농어촌체험관광사업의 체계적인 관리·지원을 위하여 전북특별자치도 농어촌 체험관광 활성화계획(이하 “활성화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활성화 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농어촌 체험관광 활성화를 위한 기본정책방향 2. 농어촌 체험관광사업에 대한 다양한 형태의 활성화 대책 3. 농어촌의 관광·휴양 자원의 개발 및 지역연계 관광정보 제공에 관한 사항 4. 관계 기관·단체와의 유기적 협조체제 구축 및 지원 방안 5. 청소년 등과 연계한 농어촌체험교육(농산어촌유학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사업 추진대책 6. 농어촌 체험관광 활성화를 위한 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 7. 농어촌 체험관광 활성화 지원사업을 위한 재원확보 방안 8. 그 밖에 농어촌 체험관광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업 ③ 도지사가 제2항제5호와 관련된 사항을 활성화 계획에 포함시킬 때에는 전북특별자치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과 협의하여 수립하여야 한다. **제4조(농산어촌 체험관광 활성화 자문회의)** 도지사는 전북특별자치도 농어촌 체험관광 활성화 자문회의를 통해 활성화계획의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자문 및 심의를 받을 수 있다. **제5조(지원대상)** 이 조례에 따른 지원대상은 농어촌 체험관광사업을 추진하려는 마을 또는 복수의 마을연합체(이하 “마을”이라 한다)로서 그 운영 실적이 우수하거나 시장·군수의 신청을 받아 추진하는 마을과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마을과 농어촌 관광 관련 법인으로 한다. **제6조(지원내용)** ① 도지사는 농어촌 체험관광사업의 지속적인 추진과 사업이 널리 확산될 수 있도록 사업의 추진에 필요한 시설확보 및 기반정비 등을 적극적으로 지원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사업대상자로 선정된 마을과 법인에 대해서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제7조(청소년 등 참여지원) ① 도지사는 교육감과 협의하여「유아교육법」제2조제1호에 따른 유아와 초·중등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이하 “청소년 등”이라 한다)에게 자연의 소중함과 농산어촌의 중요성을 알리기 위한 농어촌체험활동 추천과 교육과정 운영을 권장하여 체험활동에 적극 참여하도록 하고 다른 시·도 청소년 등에게도 사업을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참여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1교1촌 자매결연을 적극적으로 지원하여 학교 등과 농어촌의 활발한 교류를 장려해야 한다.

③ 도지사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농어촌 체험활동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농어촌체험 활동에 소요되는 경비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8조(전문인력의 육성 등) ① 도지사는 사업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전문 인력의 육성 및 확보에 노력해야 한다.

② 도지사는 농어촌 체험마을에서 추천한 농산어촌체험 운영인력에 대하여 그 전문성을 갖추도록 교육을 실시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전문기관에 의뢰하여 수행할 수 있다.

③ 도지사는 전문인력의 확보가 어려운 농어촌 체험마을에서 외부 전문인력을 활용할 경우에는 경비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9조(1사1촌 자매결연의 활성화) ① 도지사는 1사1촌 자매결연을 적극적으로 지원하여 기관과 농어촌의 활발한 교류를 장려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자매결연을 맺고 활발히 활동하고 있는 마을에 대해서는 편의시설의 확충 등 시설 개·보수사업을 요청할 경우에는 이를 지원할 수 있다.

③ 도지사는 자매결연 중인 기관의 소속직원 및 가족에게 사업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10조(지도 감독 및 평가 등) ① 도지사는 농어촌체험마을로 선정·지원되는 사업에 대해서는 시장·군수로 하여금 관리·감독을 실시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사업을 평가하고 결과에 따라 사업실적이 우수한 마을에 대하여 포상할 수 있다.

제11조 <삭제 2016. 9. 30.>

제12조 <삭제 2016. 9. 30.>

제13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 참고자료 1 – 위원회 관련 실적

○ **구성**

- 위원회 규정 없음

○ **개최 실적**

- 해당사항 없음

□ 참고자료 2 – 조례 관련 자료

○ **자료 1**

전북특별자치도 농어촌 종합지원센터에서 주관하는 농촌여행 상품 안내 플랫폼 '참참' 개설



- 이외에도 인스타그램, 유튜브 등 다양한 sns를 통해 농촌여행 홍보를 진행함

○ 자료 2

전북특별자치도 생생마을만들기와 농촌 경제·사회 서비스 활성화 방안[22)]

전북특별자치도 생생마을만들기와 농촌 경제·사회 서비스 활성화 방안

정윤형
전북특별자치도농어촌종합지원센터 생생마을부 부장

생생마을과 생생마을만들기

'전북특별자치도 생생마을'은 마을 공동체를 중심으로 체험·관광·전통·문화·경제자원 등 고유한 자원을 활용해 출향인·관광객·귀농귀촌인이 찾아오게 하는 활력과 생기가 넘치는 마을을 말한다.

〈전북특별자치도 생생마을만들기 사업〉은 농촌 고령화, 과소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 공동체를 지속적으로 성장하는 단계별 지원체계를 마련해 지원한다. 생생마을만들기 사업은 총 4단계(기초→활성화→자립화→지속성장)로 추진되며, 농촌 공동체가 이를 통해 소멸하지 않도록 지원한다.



단계별 사업을 통해 농촌 공동체가 자립하고 확산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이를 위해 행정-중간지원조직-주민이 협력체계를 구축·운영한다.

전북특별자치도는 전국 최초로 전북특별자치도 14개 시·군 모두 마을만들기 중간지원조직을 구축해 생생마을만들기 사업 활성화 및 지속가능한 농촌 공동체 구축을 위해 활동한다.

전북특별자치도 농어촌종합지원센터는 전국 최초로 광역단위 중간지원조직을 구축해 시·군 중간지원조직 활동가의 역량강화 및 농촌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사업을 추진한다.

22) https://blog.naver.com/42tongshin/223486583975

붙임 1 사업 관련 추진실적

□ 연도별 사업 및 예산 집행 실적

○ 2024년 사업 및 예산

- 2024년 실적

(단위 천원)

규 정	사 업 명	예산('24년)
제8조(전문인력의 육성 등)	체험마을 리더교육 지원	18,228

- 전북형 농촌관광 운영활성화 지원 : 600백만원
- 농촌체험휴양마을 육성 지원 : 312백만원
- 체험마을 리더교육 지원 : 18백만원
- 농촌체험휴양마을 박람회 참가 지원 : 12백만원
- 농촌관광 홍보 지원 : 66백만원
- 농촌관광 경쟁력 제고사업 : 500백만원

○ 연도별 투자계획 ('21~'23)

구 분	재원	계	연도별 투자계획 (백만원)		
			2021년	2022년	2023년
총 계	합 계	92,115	30,355	32,955	28,805
	국 비	16,242	5,414	5,414	5,414
	도 비	37,412	12,455.6	13,645.6	11,310.6
	시군비	37,798	12,264.4	13,674.4	11,859.4
	자 담	663	221	221	221

붙임 2 평가대상 조례

전북특별자치도 농어촌 체험관광 활성화 지원 조례

[시행 2024. 1. 18.] [전북특별자치도조례 제5399호, 2023. 12. 8., 일부개정]

전북특별자치도(농촌사회활력과), 063-280-4195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전북특별자치도 농어촌과 도시간의 교류를 활성화하여 농어촌지역의 소득증대 및 삶의 질 향상과 도시지역 주민의 건강한 여가욕구 수요를 충족시켜 농어촌과 도시가 함께 발전할 수 있는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3. 12. 8.>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개정 2022. 3. 11., 2023. 12. 8.>

1. “농어촌”이란「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3조제5호에 따른 전북특별자치도 시·군의 지역을 말한다.
2. “마을”이란「지방자치법」 제3조제3항에 따른 동·리, 같은 법 제7조제4항에 따른 행정동·리 등의 공간적 개념과 지역적으로 문화, 경제, 사회적 일체감을 갖는 주민들의 집합체라는 사회적인 개념을 총칭한다.
3. “농어촌 체험관광사업”이란 농어촌주민들이 마을의 역사·문화, 자연경관 및 농수산물과 특산물 등 부존자원을 활용하여 도시민들에게 체험·휴양·숙박·음식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농수산물과 특산물을 생산·가공·판매하는 소득증대 사업을 말한다.
4. “1사1촌 자매결연” 이란 하나의 기관(기업 및 단체 또는 관련부서를 포함한다)과 마을이 자매결연하고 교류를 추진하는 것을 말하며 1사1촌에는 1사다촌, 1부서1촌을 포함한다.
5. “1교1촌 자매결연”이란 「유아교육법」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과 「초·중등교육법」 제2조 각 호의 학교(다른 시·도를 포함한다. 이하 “학교 등”이라 한다)가 하나의 농어촌 마을과 자매 결연을 맺어 유아 및 학생의 체험활동 등을 통하여 지속적으로 교류를 추진하는 것을 말한다. <신설 2014. 12. 26>

제3조(체험관광사업의 활성화 계획 수립·시행)

① 전북특별자치도지사(이하“도지사”라 한다)는 농어촌체험관광사업의 체계적인 관리·지원을 위하여 전북특별자치도 농어촌 체험관광 활성화계획(이하 “활성화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4. 12. 26., 2023. 12. 8.>

② 활성화 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개정 2014. 12. 26.>

1. 농어촌 체험관광 활성화를 위한 기본정책방향
2. 농어촌 체험관광사업에 대한 다양한 형태의 활성화 대책
3. 농어촌의 관광·휴양 자원의 개발 및 지역연계 관광정보 제공에 관한 사항
4. 관계 기관·단체와의 유기적 협조체제 구축 및 지원 방안
5. 청소년 등과 연계한 농어촌체험교육 사업 추진대책
6. 농어촌 체험관광 활성화를 위한 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
7. 농어촌 체험관광 활성화 지원사업을 위한 재원확보 방안
8. 그 밖에 농어촌 체험관광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업

③ 도지사가 제2항제5호와 관련된 사항을 활성화 계획에 포함시킬 때에는 전북특별자치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과 협의하여 수립하여야 한다.<개정 2023. 12. 8.>

제4조(농어촌 체험관광 활성화 자문회의) 도지사는 전북특별자치도 농어촌 체험관광 활성화 자문회의를 통해 활성화계획의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을 자문 및 심의할 수 있다.<개정 2023. 12. 8.>

제5조(지원대상) 이 조례에 따른 지원대상은 농어촌 체험관광사업을 추진하려는 마을 또는 복수의 마을 연합체(이하 “마을”이라 한다)로서 그 운영 실적이 우수하거나 시장·군수의 신청을 받아 추진하는 마을과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마을과 농어촌 관광 관련 법인으로 한다.<개정 2016. 1. 29>

제6조(지원내용)

① 도지사는 농어촌 체험관광사업의 지속적인 추진과 사업이 널리 확산될 수 있도록 사업의 추진에 필요한 시설확보 및 기반정비 등을 적극적으로 지원하여야 한다.<개정 2014. 12. 26>

② 도지사는 사업대상자로 선정된 마을과 법인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개정 2016. 1. 29>

제7조(청소년 등 참여지원)

① 도지사는 교육감과 협의하여 「유아교육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유아와 초·중등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이하 “청소년 등”이라 한다)에게 자연의 소중함과 농어촌의 중요성을 알리기 위한 농어촌체험활동 추천과 교육과정 운영을 권장하여 체험활동에 적극 참여하도록 하고 다른 시·도 청소년 등에게도 사업을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참여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1교1촌 자매결연을 적극적으로 지원하여 학교 등과 농어촌의 활발한 교류를 장려해야 한다.<신설 2014. 12. 26>

③ 도지사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농어촌 체험활동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농어촌체험 활동에 소요되는 경비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개정 2014. 12. 26>

제8조(전문인력의 육성 등)

① 도지사는 사업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전문 인력의 육성 및 확보에 노력해야 한다.

② 도지사는 농어촌 체험마을에서 추천한 농어촌체험 운영인력에 대하여 그 전문성을 갖추도록 교육을 실시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전문기관에 의뢰하여 수행할 수 있다.

③ 도지사는 전문인력의 확보가 어려운 농어촌 체험마을에서 외부 전문인력을 활용할 경우에는 경비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9조(1사1촌 자매결연의 활성화)

① 도지사는 1사1촌 자매결연을 적극적으로 지원하여 기관과 농어촌의 활발한 교류를 장려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자매결연을 맺고 활발히 활동하고 있는 마을에 대해서는 편의시설의 확충 등 시설개·보수사업을 요청할 경우에는 이를 지원할 수 있다.

③ 도지사는 자매결연 중인 기관의 소속직원 및 가족에게 사업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10조(지도 감독 및 평가 등)

① 도지사는 농어촌체험마을로 선정·지원되는 사업에 대해서는 시장·군수로 하여금 관리·감독을 실시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사업을 평가하고 결과에 따라 사업실적이 우수한 마을에 대하여 포상할 수 있다.

제11조 <삭제 2016. 9. 30>

제12조 <삭제 2016. 9. 30>

제13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개정 2016. 1. 29>

15. 전북특별자치도 스마트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Ⅰ. 종합의견

< 평가결과 >

□ 평가대상

조 례 명	전북특별자치도 스마트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구분	자치조례	관계 법령	-
제정·시행일	2021. 2. 19. 제정	최근개정·시행일	2023. 12. 8. 개정
소관 부서	스마트농산과	소관 상임위	농업복지환경

□ 평가의견

평가항목	평가의견	주요 내용
종합의견	개정/일반	- 타 시·도의 사례를 참고하여 청년농업인 대상 스마트팜에 대한 체계적인 교육 실시 규정 신설 권고 - 시행규칙은 개별 조례에서 위임이 없더라도 조례의 집행에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규칙으로 규정할 수 있으므로 삭제 권고
심층분석 결과		- 「스마트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에 따라 집행부서에서는 「전북특별자치도 스마트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의 전부개정을 추진하고 있음 - 전부개정 조례안의 각 규정에 대하여 세부 내용을 검토하여 정비방안을 제안함
1. 입법 근거 및 적법성	적정	전북특별자치도에서 스마트 농업을 육성하기 위한 자치조례로 자치사무의 범위에서 적절하게 제정되었음
2. 조례의 실효성	적정	제7조에 따른 사업 추진을 통해 조례의 실효성을 확보하고 있음
3. 조례 내용의 적정성	적정	전북특별자치도 내에서 스마트 농업을 개발하고 보급하기 위한 조례로, 조례의 내용이 적정함
4. 조례의 공평성	적정	장애, 성별, 나이 등에 관한 사회적 편견, 고정관념이 반영된 표현 및 차별 규정 없음
5. 주민 수용성	적정	조례의 체계 및 용어가 주민이 알기 쉽게 되어 있음
6. 전북자치도 현실부합성	적정	스마트농업을 보급하기 위한 조례로 농업이 활발하게 이뤄지고 있는 전북특별자치도 현실에 부합함
7. 위원회 운영의 적정성	-	위원회 운영 관련 규정이 없음
※ 기타 의견	없음	

Ⅱ. 항목별 평가 결과

평가항목	세부항목	척도	의견 및 자료
1. 입법의 근거 및 적법성	1) 위임조례인가 자치사무에 관한 조례인가?	☐ 위임조례 ☑ 자치사무에 관한 조례	
	2) 조례에서 규정하고 있는 위임근거가 올바른가?	☐ 그렇다 ☐ 그렇지않다 ☑ 해당사항 없음	
	3) 조례가 위임범위에서 적절하게 제·개정되었는가?	☐ 그렇다 ☐ 그렇지않다 ☑ 해당사항 없음	
	4) 조례 제.개정 이후 동일 또는 유사한 법령이나 제도가 만들어졌거나 근거법령이 개정 또는 폐지되었는가?	☐ 그렇다 ☐ 그렇지않다 ☑ 해당사항 없음	
	5) 조례에서 주민의 권리제한, 의무부과, 벌칙 부과, 규제사항에 대한 법률위임이 있는가?	☐ 그렇다 ☐ 그렇지않다 ☑ 해당사항 없음	
	6) 상위법령에 위배되는 조항이 있는가?	☐ 그렇다 ☐ 그렇지않다 ☑ 해당사항 없음	
2. 조례의 실효성	1) 조례의 시행과정에서 다른 조례와의 충돌이나 모순이 발생하고 있는가?	☐ 그렇다 ☑ 그렇지않다 ☐ 해당사항 없음	
	2) 이 조례와 유사 또는 동일한 다른 조례가 제정 및 시행되고 있어 통합할 필요가 있는가?	☐ 그렇다 ☑ 그렇지않다 ☐ 해당사항 없음	
	3) 조례에 따른 계획이 수립·시행되고 있는가?	☑ 그렇다 ☐ 그렇지않다 ☐ 해당사항 없음	-전북자치도 스마트 농업 육성계획
	4) 조례에서 집행기관 등에 책무를 부여하고 있는가?	☑ 그렇다 ☐ 그렇지않다 ☐ 해당사항 없음	-제6조, 제7조

평가항목	세부항목	척도	의견 및 자료
	5) 조례에서 부여한 책무와 관련사업을 집행기관이 잘 이행하고 있는가?	☑ 그렇다 ☐ 그렇지않다 ☐ 해당사항 없음	
3. 조례 내용의 적정성	1) 조례에 재정지원 관련 규정이 있는가?	☑ 그렇다 ☐ 그렇지않다 ☐ 해당사항 없음	-제6조, 제7조
	2) 조례 시행에 필요한 예산 확보와 집행이 잘 이루어지고 있는가?	☑ 그렇다 ☐ 그렇지않다 ☐ 해당사항 없음	
	3) 지원대상이 집행이 가능한 정도로 구체화 되어 있는가?	☐ 그렇다 ☐ 그렇지않다 ☑ 해당사항 없음	
	4) 조례에 따른 위탁사무가 위탁대상으로 적정한가?	☐ 그렇다 ☐ 그렇지않다 ☑ 해당사항 없음	
4. 조례의 공평성	1) 조례에서 장애인, 성별 등의 특정계층이나 특정지역을 차별하는 조항이 있는가?	☐ 그렇다 ☑ 그렇지않다 ☐ 해당사항 없음	
	2) 조례에서 정한 차별이 합리적인가?	☐ 그렇다 ☐ 그렇지않다 ☑ 해당사항 없음	
5. 주민 의견 수용성	1) 조례 제·개정 시 입법예고는 하였는가?	☐ 그렇다 ☑ 그렇지않다 ☐ 해당사항 없음	
	2) 조례 제·개정 시 공청회, 세미나 등 이해관계인 및 주민에 대한 의견 수렴 과정이 있었는가?	☐ 그렇다 ☐ 그렇지않다 ☑ 해당사항 없음	
	3) 조례와 관련한 민원(청원, 진정, 소송 등)이 제기되거나 개정 또는 폐지 요구가 있었는가?	☐ 그렇다 ☐ 그렇지않다 ☑ 해당사항 없음	
	4) 조례의 체계나 사용 되어진 용어가 주민이 알기 쉽게 되어 있는가?	☑ 그렇다 ☐ 그렇지않다 ☐ 해당사항 없음	
6. 위원회 운영의 적정성	1) 조례로 위원회를 구성하도록 되어 있는가?	☐ 그렇다 ☑ 그렇지않다 ☐ 해당사항 없음	

평가항목	세부항목	척도	의견 및 자료
	2) 위원회가 법정위원회인가 조례로 설치하도록 한 위원회인가?	☐ 법정위원회 ☐ 조례로 정한 위원회 ☑ 해당사항 없음	
	3) 위원회 위원의 성별 구성이 적정한가?	☐ 그렇다 ☐ 그렇지않다 ☑ 해당사항 없음	
	4) 위원회가 법령이나 조례에서 정한 회의개최 운영 실적이 있고 관련 회의록을 보존하고 있는가?	☐ 그렇다 ☐ 그렇지않다 ☑ 해당사항 없음	
	5) 위원회를 계속 설치·운영할 필요성이 있는가?	☐ 그렇다 ☐ 그렇지않다 ☑ 해당사항 없음	
	6) 해당 위원회와 유사한 다른 위원회와의 기능적 통합이 필요한가?	☐ 그렇다 ☐ 그렇지않다 ☑ 해당사항 없음	
7. 종합 의견	1) 이 조례를 현행대로 유지할 필요가 있는가?	☑ 그렇다 ☐ 그렇지않다	
	2) 이 조례를 개정할 이유가 있는가? (해당사항 모두 표기)	☐ 위임근거에 불부합 ☐ 위임근거 불명확 ☐ 법령의 위임 없는 규제 정비 필요 ☐ 다른 조례와의 상충 및 모순 ☐ 조례 시행의 문제점 발생 ☐ 조례의 공평성 문제 ☑ 알기 쉬운 법령정비 기준에 따른 정비 필요 ☐ 위원회 관련 규정개정 필요 ☑ 그 밖의 사유	-교육 규정 신설 필요
	3) 이 조례를 폐지할 사유가 있는가? (해당사항 모두 표기)	☐ 다른 유사한 조례와의 통합 운영 필요성 ☐ 조례 시행 불가능 ☐ 최근 3년간 조례 관련 운영 실적 전무 ☐ 기타	
	4) 그 밖의 이 조례와 관련된 의견이 있는가?	☑ 있다 ☐ 없다	

Ⅲ. 세부내용

조례명	전북특별자치도 스마트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소관 부서 의견(팀)

○ **최종의견 : 고령화 및 기후변화 등 농업의 위기 극복을 위해 스마트농업 확산 및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근거가 필요하여 조례를 유지해야 함**

○ **내용**

- (1-4) 조례 제정 이후 「스마트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 제정됨
- (2-3) 조례 제4조에 따라 '전북자치도 스마트농업 육성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하나, 현재 '전북자치도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육성계획' 수립 시 반영 예정임
- (2-4) 조례 제6조와 제7조에 따라 사업을 수행함
- (2-5) 조례 제6조에 따라 2018년부터 현재까지 청년창업 보육센터를 운영하고, 2024년부터는 과학영농 실용농업 스마트팜 교육을 진행하며, 청년창업 스마트팜 패키지 지원사업 성과 홍보, 스마트축산 패키지 지원사업 참여 홍보, 스마트축산 패키지 지원사업 공모선정, 스마트팜 청년창업보육교육 성과 등 홍보, 스마트팜 청년창업 보육센터 국내외 견학사례 홍보를 실시함
- (3-1) 조례 제6조와 제7조에 따라 재정지원을 실시할 수 있음
- (3-3) 2022년부터 2024년까지 예산 지원을 실시함

■ 종합의견	개정 권고/일반 정비

◎ 입법평가 세부의견

○ **평가항목별 검토**

평가항목	평가항목별 검토 내용
1. 입법 근거 및 적법성	전북특별자치도에서 스마트 농업을 육성하기 위한 자치조례로 자치사무의 범위에서 적절하게 제정되었음
2. 조례의 실효성	제7조에 따른 사업 추진을 통해 조례의 실효성을 확보하고 있음
3. 조례 내용의 적정성	전북특별자치도 내에서 스마트 농업을 개발하고 보급하기 위한 조례로, 조례의 내용이 적정함
4. 조례의 공평성	장애, 성별, 나이 등에 관한 사회적 편견, 고정관념이 반영된 표현 및 차별 규정 없음
5. 주민 수용성	조례의 체계 및 용어가 주민이 알기 쉽게 되어 있음
6. 전북자치도 현실부합성	스마트농업을 보급하기 위한 조례로 농업이 활발하게 이뤄지고 있는 전북특별자치도 현실에 부합함

7. 위원회 운영의 적정성	위원회 운영 관련 규정이 없음
※ 기타 의견	없음

○ 연도별 사업내용 및 예산/집행액

(단위: 천원)

규 정	사 업 명	예산('24년)
제6조(교육 및 컨설팅 지원)	청년창업 스마트팜 컨설팅 운영	85,000
	과학영농 실용농업 스마트팜 교육	30,000
제7조(사업추진 및 지원)	청년 희망 스마트팜 지원	250,000
	청년창업 스마트팜 패키지 지원	2,156,000

연도	사업명	필요예산	확보예산	집행액	집행내역
2022	**소계**	**3,830,000**	**3,830,000**	**3,713,000**	
	청년 희망 스마트팜 지원	300,000	300,000	300,000	시설하우스, ICT 장비 등 지원
	청년창업 스마트팜 패키지 지원	3,300,000	3,300,000	3,300,000	청년농 스마트팜 조성 지원
	과학영농 실용농업 스마트팜 교육	30,000	30,000	30,000	교육운영비(강사비, 식비 등)
	청년창업 스마트팜 컨설팅 운영	200,000	200,000	83,000	청년농 대상 스마트팜 컨설팅 지원
2023	**소계**	**7,230,000**	**7,230,000**	**6,960,000**	
	청년 희망 스마트팜 지원	300,000	300,000	30,000	시설하우스, ICT 장비 등 지원
	청년창업 스마트팜 패키지 지원	4,400,000	4,400,000	4,400,000	청년농 스마트팜 조성 지원
	동부권 임대형 수직농장 실증 지원	2,500,000	2,500,000	2,500,000	청년 임대형 수직농장 조성
	과학영농 실용농업 스마트팜 교육	30,000	30,000	30,000	교육운영비(강사비, 식비 등)
2024	**소계**	**2,521,000**	**2,521,000**	**2,406,000**	
	청년 희망 스마트팜 지원	250,000	250,000	250,000	시설하우스, ICT 장비 등 지원
	청년창업 스마트팜 패키지 지원	2,156,000	2,156,000	2,156,000	청년농 스마트팜 조성 지원
	과학영농 실용농업 스마트팜 교육	30,000	30,000		교육운영비(강사비, 식비 등)
	청년창업 스마트팜 컨설팅 운영	85,000	85,000		청년농 대상 스마트팜 컨설팅 지원

○ 조례의 입법목적 달성도 또는 부수효과 분석

- 조례 목적달성도 평가
  - 조례 내용에 따라 다양한 형태의 스마트팜과 스마트팜 밸리를 조성하고자 하는 계획을 수립하였다는 점에서 조례의 목적이 달성되고 있다고 평가됨
- 부수효과
  - 스마트 농법 보급을 통한 농업 소멸의 방지와 청년농민의 유입을 기대할 수 있음

○ 타 시·도 유사 조례와 비교 또는 타 시·도 자치법규(정책) 동향

전북특별자치도 스마트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경기도 스마트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경상남도 스마트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서울특별시 스마트농업 육성 및 지원 조례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제3조(도지사의 책무)	제3조(도지사의 책무)	제3조(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제4조(스마트농업 육성 계획의 수립)	제4조(스마트농업 육성 계획 수립)	제4조(스마트농업 육성 계획 수립·시행 등)	제4조(스마트농업육성 계획 수립 등)
제5조(홍보)	**제5조(스마트농업 지원 사업)**	제5조(스마트농업 육성 사업)	제5조(스마트농업 육성 사업 지원)
제6조(교육 및 컨설팅 지원 등)	**제6조(스마트농업기술의 개발 및 보급)**	제6조(스마트농업 육성 사업 지원)	제6조(스마트농업 관련 기술개발 등)
제7조(사업추진 및 지원)	**제7조(스마트농업정보센터)**	제7조(우수농업인 교육 기회 제공)	제7조(교육 및 컨설팅 지원 등)
제8조(시행규칙)	**제8조(스마트팜 지원)**	제8조(협력체계 구축)	제8조(협력체계 구축 및 수출 지원 등)
	제9조(청년농업인 경영 실습 스마트팜)	제9조(스마트농업정보센터 설치·운영)	제9조(스마트농업 홍보)
	제10조(교육 및 컨설팅 지원 등)		
	제11조(스마트농업기술의 홍보)		
	제12조(협력체계 구축)		
	제13조(시행규칙)		

- 경기도 조례에서는 청년 농업인 지원을 위해 스마트팜에 대한 체계적인 교육을 실시하고 있는 점이 특징적임

Ⅳ. 개정의견

현 행	개정안	비고
<신설>	제7조의2(청년농업인 경영실습 스마트팜) ① 도지사는 청년농업인에게 스마트농업 경영을 위한 실습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청년농업인 경영실습 스마트팜(이하 "청년스마트팜"이라 한다)을 조성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청년스마트팜을 조성·운영함에 있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1. 스마트농업 경영에 관한 정보 제공 및 영농기술 등의 지원 2. 청년스마트팜 시설 운영 및 임대 3. 그 밖에 청년스마트팜의 효율적인 이용 및 관리를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③ 제2항제2호에 따른 청년스마트팜을 임대하는 경우 그 계약기간, 임대면적, 임대료 등에 관한 사항은 도지사가 따로 정한다.	-타 시·도의 사례를 참고하여 청년농업인 경영실습 스마트팜 규정 신설 검토 권고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삭제>	-시행규칙은 개별 조례에서 위임이 없더라도 조례의 집행에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규칙으로 규정할 수 있으므로 삭제 권고

심층분석 관련 검토

○ 심층분석 사유

- 집행부에서 상위법 제정으로 인한 조례 전부개정을 준비 중이며, 심층분석 시 이를 반영·검토하여 개정안 제시

○ 심층분석

- 「스마트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에 따라 집행부서에서는 아래와 같이 「전북특별자치도 스마트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의 전부개정을 추진하고 있음

법률 위임에 따른 전부개정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스마트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전북특별자치도의 스마트농업 육성을 위한 정책의 수립과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농업인의 소득증대와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스마트농업"이란 「스마트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다.
2. "스마트팜"이란 작물 재배 시설이나 축사에 정보통신기술을 접목하여 원격 또는 자동으로 작물과 가축의 생육환경을 적정하게 유지·관리할 수 있는 농장을 말한다.
3. "스마트농업데이터"란 법 제2조제2호에 따른다.

제3조(도지사의 책무) ① 전북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스마트농업의 안정적인 성장·발전과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전북특별자치도(이하 "전북자치도"라 한다) 내 시·군이 스마트농업 육성시책을 수립·시행하고자 할 경우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스마트농업 육성계획의 수립 등) ① 도지사는 법 제5조제1항에 따라 스마트농업의 육성을 위하여 매년 전북자치도 스마트농업 육성계획(이하 "육성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육성계획에는 법 제5조제2항 각 호의 사항 외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스마트농업 전문인력 양성
2. 스마트농업의 생산·유통 및 경영 등 추진전략
3. 스마트팜 확산 및 교육·컨설팅 지원
4. 스마트농업데이터의 수집·분석 및 활용
5. 그 밖에 도지사가 스마트농업 육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도지사는 육성계획의 수립·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기관에 자료의 제출 등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④ 도지사는 육성계획에 따른 추진 실적을 평가하여 다음 연도 육성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⑤ 도지사는 육성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였을 때에는 법 제5조제4항에 따라 전북자치도 공보에 게재하고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표하여야 한다.

제5조(홍보) 도지사는 스마트농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우수 실천 사례를 적극 발굴하여 홍보

법률 위임에 따른 전부개정 조례안
하여야 한다. **제6조(교육 및 컨설팅 지원 등)** ① 도지사는 스마트농업의 육성과 스마트팜 확산을 위하여 전문기술 교육훈련 등을 지원하는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스마트팜 도입 농가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전문 컨설팅 지원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③ 도지사는 매년 우수농업인을 선발하여 국내외 선진 스마트농업기술의 체험 및 견학 등 다양한 교육 기회 제공을 위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제7조(스마트농업 지원사업 등)** ① 도지사는 스마트농업의 육성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1. 스마트농업 기술의 연구개발 및 보급 2. 스마트농업 생산기반 조성·설치 및 운영 3. 스마트농업 생산물 가공·유통 시설의 설치 및 운영 4. 스마트농업 관련 생산·유통 촉진 및 경영규모의 확대 5. 스마트농업 확산을 위한 청년농업인 지원 6. 스마트농업데이터의 체계적 관리 등 스마트농업 정보화 7. 우수한 스마트농업 사례 발굴 및 홍보 8. 그 밖에 도지사가 스마트농업 육성 및 지원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스마트농업 지원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해당 사업을 수행하는 기관·단체 또는 농업인 등에 대해서 필요한 행정적 지원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③ 도지사는 스마트농업을 효율적으로 육성 및 지원하기 위하여 제1항에 따른 지원사업을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으며, 위탁과 관련한 절차와 방법 등은「전북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및「전북특별자치도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대행에 관한 조례」등 관련 조례를 따른다. **제8조(협력체계 구축)** 도지사는 스마트농업 육성 및 지원 정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관련 대학, 연구소, 기관 또는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 전부개정 조례안에 대해서 검토하여 정비방안을 아래와 같이 제안함

전부개정 조례안	정비방안	비고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스마트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전북특별자치도의 스마트농업 육성을 위한 정책의 수립과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농업인의 소득증대와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전북특별자치도의 스마트농업 육성을 위한 정책의 수립과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농업인의 소득증대와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스마트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과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조례로 위임한 사항은 없음. 관련 분야의 상위법률이 제정되었다하더라도 위임 규정이 없는 경우 자치조례로 보아야 할 것이며, 이에 적합하게

전부개정 조례안	정비방안	비고
		규정방식 정비 권고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스마트농업"이란 「스마트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다. 2. "스마트팜"이란 작물 재배 시설이나 축사에 정보통신기술을 접목하여 원격 또는 자동으로 작물과 가축의 생육환경을 적정하게 유지·관리할 수 있는 농장을 말한다. 3. "스마트농업데이터"란 법 제2조제2호에 따른다.		
제3조(도지사의 책무) ① 전북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스마트농업의 안정적인 성장·발전과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전북특별자치도(이하 "전북자치도"라 한다) 내 시·군이 스마트농업 육성시책을 수립·시행하고자 할 경우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스마트농업 육성계획의 수립 등) ① 도지사는 법 제5조제1항에 따라 스마트농업의 육성을 위하여 매년 전북자치도 스마트농업 육성계획(이하 "육성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육성계획에는 법 제5조제2항 각 호의 사항 외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스마트농업 전문인력 양성 2. 스마트농업의 생산·유통 및 경영 등 추진전략 3. 스마트팜 확산 및 교육·컨설팅 지원 4. 스마트농업데이터의 수집·분석		

전부개정 조례안	정비방안	비고
및 활용 5. 그 밖에 도지사가 스마트농업 육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도지사는 육성계획의 수립·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기관에 자료의 제출 등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④ 도지사는 육성계획에 따른 추진실적을 평가하여 다음 연도 육성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⑤ 도지사는 육성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였을 때에는 법 제5조제4항에 따라 전북자치도 공보에 게재하고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표하여야 한다.		
제5조(홍보) 도지사는 스마트농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우수 실천 사례를 적극 발굴하여 홍보하여야 한다.		
제6조(교육 및 컨설팅 지원 등) ① 도지사는 스마트농업의 육성과 스마트팜 확산을 위하여 전문기술 교육훈련 등을 지원하는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스마트팜 도입 농가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전문 컨설팅 지원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③ 도지사는 매년 우수농업인을 선발하여 국내외 선진 스마트농업기술의 체험 및 견학 등 다양한 교육 기회 제공을 위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제7조(스마트농업 지원사업 등) ① 도지사는 스마트농업의 육성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1. 스마트농업 기술의 연구개발 및 보급 2. 스마트농업 생산기반 조성·설치 및 운영 3. 스마트농업 생산물 가공·유통 시설의 설치 및 운영	**제7조(스마트농업 지원사업 등)** ① 도지사는 스마트농업의 육성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1. 스마트농업 기술의 연구개발 및 보급 2. 스마트농업 생산기반 조성·설치 및 운영 3. 스마트농업 생산물 가공·유통 시설의 설치 및 운영	-띄어쓰기 정비 권고 -위탁 규정의 경우 전북특별자치도「전북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등이 당연 적용되므로 규정 실익이 없지만, 조례의 완성도·이해도를

전부개정 조례안	정비방안	비고
4. 스마트농업 관련 생산·유통 촉진 및 경영규모의 확대 5. 스마트농업 확산을 위한 청년농업인 지원 6. 스마트농업데이터의 체계적 관리 등 스마트농업 정보화 7. 우수한 스마트농업 사례 발굴 및 홍보 8. 그 밖에 도지사가 스마트농업 육성 및 지원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스마트농업 지원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해당 사업을 수행하는 기관·단체 또는 농업인 등에 대해서 필요한 행정적 지원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③ 도지사는 스마트농업을 효율적으로 육성 및 지원하기 위하여 제1항에 따른 지원사업을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으며, 위탁과 관련한 절차와 방법 등은 「전북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 및 「전북특별자치도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대행에 관한 조례」 등 관련 조례를 따른다.	4. 스마트농업 관련 생산·유통 촉진 및 경영규모의 확대 5. 스마트농업 확산을 위한 청년농업인 지원 6. 스마트농업데이터의 체계적 관리 등 스마트농업 정보화 7. 우수한 스마트농업 사례 발굴 및 홍보 8. 그 밖에 도지사가 스마트농업 육성 및 지원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스마트농업 지원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해당 사업을 수행하는 기관·단체 또는 농업인 등에 대해서 필요한 행정적 지원과 예산의 범위에서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③ 도지사는 스마트농업을 효율적으로 육성 및 지원하기 위하여 제1항에 따른 지원사업을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위하여 조례명은 표기하지 않고 단순히 선언적 규정으로만 정비 권고
<신설>	**제8조(청년농업인 경영실습 스마트팜)** ① 도지사는 청년농업인에게 스마트농업 경영을 위한 실습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청년농업인 경영실습 스마트팜(이하 "청년스마트팜"이라 한다)을 조성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청년스마트팜을 조성·운영함에 있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1. 스마트농업 경영에 관한 정보 제공 및 영농기술 등의 지원 2. 청년스마트팜 시설 운영 및 임대 3. 그 밖에 청년스마트팜의 효율적인 이용 및 관리를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③ 제2항제2호에 따른 청년스마트팜	-타 시·도의 사례를 참고하여 청년농업인 경영실습 스마트팜 규정 신설 검토 권고

전부개정 조례안	정비방안	비고
	을 임대하는 경우 그 계약기간, 임대면적, 임대료 등에 관한 사항은 도지사가 따로 정한다.	
제8조(협력체계 구축) 도지사는 스마트농업 육성 및 지원 정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관련 대학, 연구소, 기관 또는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제9조(협력체계 구축 및 수출 지원 등)** ① 도지사는 국제기구 또는 정부, 국내외 관련 대학, 연구소, 기관 또는 단체 등과 스마트농업에 관한 정보·인력 교류, 기술협력, 공동 조사·연구 등에 관한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스마트농업 관련 기술, 기자재·설비 등의 수출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타 시·도의 사례를 참고하여 협력체계 구축 및 수출 지원 관련 규정 내용을 정비 권고

□ 참고자료 1 – 위원회 관련 실적

○ 구성

- 위원회 규정 없음

○ 개최 실적

- 해당사항 없음

□ 참고자료 2 – 조례 관련 보도 자료

○ 보도자료 1

스마트농업 5년마다 육성계획 수립, 자원경영과[23)]

스마트농업 5년마다 육성계획 수립

법률 제정안 국무회의 통과

매년 실태조사·관리사 신설

스마트농업의 체계적인 육성과 지원을 뒷받침하는 법안이 마련됐다.

농림축산식품부는 8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스마트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안'이 통과됐다고 밝혔다.

제정안에 따르면 농식품부는 스마트농업 확산과 발전을 위한 정책과제를 이행할 수 있도록 5년 단위 기본계획과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광역지방자치단체 역시 지자체 여건에 맞춰 시·도 계획을 세워야 한다. 스마트농업 관련 주요 정책사업은 '스마트농업 지원센터'가 총괄해 수행한다. 스마트농업 현장과 관련한 산업 동향을 파악하기 위해 매년 실태조사도 한다.

농민과 산업인력·전문가 역량을 키우기 위해 '스마트농업 전문인력 교육기관'을 지정한다. '스마트농업관리사' 자격제도도 도입한다. 스마트농업관리사는 스마트농업에 관한 교육·지도·기술보급·상담 등의 업무를 맡는다.

사물인터넷(IoT) 장비로 수집되는 데이터를 농민과 기업이 효율적이고 안전하게 활용하고 거래할 수 있도록 '스마트농업데이터 플랫폼'을 구축한다.

영농철 스마트농업과 관련한 인공지능(AI)·로봇 등 기술개발과 표준화사업을 추진하고 개발된 장비와 서비스를 농민이 잘 활용할 수 있도록 기술 실증과 기자재 검정·사후관리도 지원한다.

도입 초기 단계인 스마트농업 교육·실습·창업을 선도적으로 지원하는 핵심 거점을 '스마트농업 지원 거점단지'로 지정해 육성한다.

스마트농업과 관련 산업을 집적화하고 지역단위로 확산시키기 위한 '스마트농업 육성지구'도 조성한다. 거점단지와 육성지구에 입주하는 농민과 기업인은 수의계약, 장기 임대, 사용료 감경 등의 혜택을 받는다.

정부는 법안을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정황근 농식품부 장관은 "이 법안에 스마트농업 발전으로 농업혁신을 이루겠다는 정부의 의지와 농민과 업계 관계자의 염원을 담았다"며 "법안이 국회를 통과할 수 있도록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23) https://www.jbares.go.kr/board/view.jbares?boardId=BBS_0000080&menuCd=DOM_000000101007000000&orderBy=REGISTER_DATE%20DESC&paging=ok&startPage=60&dataSid=210830&categoryCode1=&categoryCode2=&categoryCode3=

○ **보도자료 2**

[특집]전북특별자치도의 혁신과 도전, '대한민국 스마트농업의 중심지'로 자리매김, 전북투데이[24)]

> - 청년농을 위한 임대형스마트팜 56ha 조성에 2,104억원 투자
> - 2022년부터 지원한 청년창업형 스마트팜이 가족단위 정착 유도
> - 2025년 스마트팜 국비예산의 24%인 89억원이 전북으로

전북특별자치도(도지사 김관영)는 민선 8기를 출범하면서 전북이 대한민국 '농생명산업 수도'로의 도약을 위한 핵심정책으로 청년농과 연계한 '청년 스마트팜'을 2022년 24.4ha, 2024년 35ha, 2026년까지 70ha까지 확대 목표를 발표하고, 스마트팜 경영을 희망하는 청년농의 창업 지원을 위한 기술교육, 창업컨설팅, 자금 지원 등의 청년농 성장단계별 스마트농업 인프라 확충 에 지속적으로 투자해 왔다.



24) http://www.jtnews.kr/news/articleView.html?idxno=76160

□ 스마트팜, 청년농의 꿈을 키우다.

"스마트팜"은 자동화 기술과 정보통신 기술을 농업에 접목해, 최적의 생육 환경을 제공함으로써 농산물의 생산성과 품질을 향상시키는 농장이다.

한국농산업조사연구소의 2022년 스마트농업 실태조사에서 스마트온실을 도입한 농업인의 단위 생산량은 32% 증가, 노동시간 8% 감소, 면적당 농업소득 46% 증대되었다는 결과를 발표했다.

최근에는 스마트폰과 디지털 환경에 익숙한 MZ세대 청년들에게 "스마트팜"은 선망과 도전의 대상이며, 도시의 화려한 직장생활보다 농촌의 실속있는 스마트팜 경영을 선택하는 청년이 늘어남에 따라 「귀농의 판을 뒤집은 스마트팜」이라는 평가다.

전북자치도는 이러한 의견들을 반영해 농촌으로 눈을 돌리는 청년농의 안정적인 창업과 정착을 돕기 위한 2022년부터 청년창업 스마트팜 확대와 청년농 인큐베이팅 시설 확충에도 주력해 왔다.

▶청년 임대형 스마트팜 조성= 스마트팜 경영을 희망하지만 농지와 초기투자자본이 없는 예비 청년농이 저렴한 임대료로 3년간 재배기술을 익히고, 농업투자금을 모을 수 있는 '임대형스마트팜' 확충에 주력하고 있다. 현재까지 임대형스마트팜 조성이 확정된 곳은 김제, 장수 등 7개소이며, 2027년까지 최첨단 스마트팜 28ha 조성에 1,729억원을 투자한다. 김제 스마트팜 혁신밸리 수료생과 스마트팜 경영을 희망하는 지역 청년농을 대상으로 2024년 30명을 시작으로 2027년까지 176명에게 제공할 수 있다.

▶경영실습임대농장 운영= 김제 스마트팜혁신밸리 수료생이 아니여도 영농경력 3년이하의 청년농에게 스마트팜 운영의 기회를 제공하는 소규모 임대농장이 도내 군산, 익산 등 8개소, 5ha의 첨단온실이 111억원을 투자해 조성, 현재 7개 시군에 조성된 스마트팜에 30명의 청년농이 입주해 있으며, 시군에서 직접 운영해 재배기술이 서툰 청년농에게 밀착교육과 실습을 병행해 전문 농업인 양성에 높은 호평을 받고 있다.

▶청년창업 스타트업단지 조성= 스마트팜을 경영하고 싶어도 농지를 확보하지 못해 애로를 겪는 청년농의 창업을 돕기 위해 적정한 부지를 우량농지로 개량하고, 스마트팜 신축에 적합하도록 부지 평탄화, 용수와 전기 인입 등의 기반을 조성하여 장기 임대 또는 분양하는 사업으로 김제 새만금 3.2ha, 남원시 20ha가 조성되며, 2026년까지 265억원이 투자된다. 현재 3.2ha, 6구획의 부지조성이 완료된 새만금 6-1공구에는 6명의 청년농이 선발되어 전문경영인으로의 도약을 꿈꾸며 스마트팜 온실 설계 등의 절차를 이행하고 있고, 2025년부터는 새만금에 청년농의 꿈이 실현되는 스마트팜이 순차적으로 들어설 것으로 기대한다.

▶스마트팜과 식품기업 연계= 장수군에 신개념 스마트팜인 건물형태의 인공 환경제어를 활용, 작물을 생육하는 '청년농 임대형 수직농장'이 조성될 예정으로 전국 최초 공공형 수직농장을 조성하여 청년에게 수직농장 재배기술 습득과 농업경영 기회를 제공할 예정이다. 지난 6월 CJ제일제당과 업무협약을 맺고, 실무협의회를 구성하여 청년농의 선발, 재배기술교육, 안정적 유통망 구축 등의 추진체계를 마련해 나가고 있다. 또한, CJ제일제당에서 수직농장 생산 농산물을 전량 수매하기로 함으로써 식품기업과 직접 연계 유통망 구축을 통해 청년농에게 안정적인 소득 기반을 마련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 **농촌 인구소멸, 청년스마트팜에서 해답을 찾다**

▶청년창업 스마트팜 지원= 농업에 입문하는 청년농과 귀농인에게 일체형 스마트팜을 매년 73억원 규모로 지원하여 농작물 재배기술이 부족한 초보 농업인의 고품질 농산물 생산과 안정적 농업소득에 기여한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특히, 전국에서 유일하게 전북자치도에서만 추진하는 "청년창업 스마트팜 패키지 지원사업"은 스마트팜 시설 지원과 동시에 재배기술교육, 지역융화프로그램 등의 밀착케어를 병행 지원하여 청년농의 농촌정착에 세심한 정성을 쏟고 있다. 그 결과, 중앙평가에서 인구감소지역에 청년농이 농촌에 활력을 불어넣은 사업으로 평가받고 있다.

민선8기의 핵심정책으로 인구소멸이 우려되는 시군에 스마트팜을 연계한 청년농 유입을 위해 2022년부터 올해까지 49개소 청년스마트팜 조성에 216억원을 투입했으며, 현재까지 30개소, 8.7ha(26천평)가 스마트팜 조성이 완료되어 청년농의 신바람나는 일터로 운영 중이다.

실제로, 서울과 경기 등 수도권에서 대학교 졸업과 직장생활 중에 '스마트팜'에 매료되어 과감한 "전북행"을 결정한 청년농이 많으며, 이번 "청년창업 스마트팜 패키지 지원"으로 가족까지 동반 이주, 지역청년과의 결혼 등 타지역 출신 청년농의 가족단위 농촌 정착이 실현됐다.

또한, 농촌정착까지 세심한 지원을 받은 청년농들은 스마트팜에서 생산되는 딸기, 토마토를 "지역 어르신 도시락 배달사업"에 기부하는 등의 선행도 이어가고 있어 고령화된 농촌에 청년의 훈훈함을 보여주고 있다.

□ 전북자치도의 혁신과 도전, 스마트팜분야 전국 1위

▶2년 연속 '우수지자체' 선정= 올해 농림축산식품부가 시행한 스마트팜분야 지자체 평가에서 '전북자치도'가 광역도 분야, '남원시'가 시·군 분야에 '우수지자체'로 선정돼 전 분야를 석권하는 기염을 토했다.

스마트팜 평가는 전국 16개 광역시도와 46개 시군을 대상으로 평가했으며, 예산집행율, 사업수행도를 평가하는 정량평가와 지원체계 구축, 사업확산 노력 등을 정성평가를 통해 광역도분야 2개 시도, 시군분야 3개 시·군 선정하는데 전북자치도와 남원시가 우수지자체로 선정됐다.

▶ '25년 스마트팜 국비확보액 전국 1위= 지자체 평가결과를 반영한 인센티브를 부여받아 2025년 스마트팜사업 국비 371억원 중 전북도가 24%에 해당하는 89억원을 확보해 작년에 이어 올해도 전국 1위를 차지했다.

이번 결과는, 민선 8기 도지사 공약인 'K-스마트팜 확산'과 '대한민국 농생명산업수도' 실현을 위해 시군의 특화된 스마트팜 확산사업 발굴과 적극적 대응을 통한 다수의 공모사업 선정이 일궈낸 성과라는 평가가 높다.

전북자치도는 이번에 확보한 국비를 토대로 지방비를 편성하여 내년에 263억원 규모의 스마트팜 지원사업을 추진하게 되며, 2025년 사업 홍보와 신청접수 등을 통해 사업대상자를 선정하여 내년초부터 즉시 사업이 착수될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이다.

2025년 시설원예분야사업으로 △기존 시설하우스의 개보수, 스마트팜 전환, 에너지 절감시설 보급, △농업분야 신재생에너지 시설 보급 및 저탄소에너지 공동이용시설 지원, △스마트원예단지 기반 조성 등에 투자한다.

최재용 전북특별자치도 농생명축산산업국장은 "이번 스마트팜 관련된 성과는 전북특별자치도는 민선8기의 핵심정책 중 하나로「대한민국 농생명산업수도」실현을 위해 현장의 의견수렴과 시군에 특화된 시책발굴로 이뤄낸 성과"라며, "이번 성과로 전북특별자치도는 명실상부한 대한민국의 스마트농업 중심지로 인정받았고, 앞으로 더욱 가시화된 「스마트농업의 메카」라는 역할로 주목받는 지역으로 거듭났다"고 밝혔다.

이어 "전북자치도의 특화된 현장중심형 스마트농업은 '농촌'이 청년이 성공하는 공간, 돈버는 전문농업인으로 성장하는 공간, 가족과 함께 누리는 공간으로 농업의 구조를 디자인을 완성하는 것이 최종 목표"라고 덧붙였다.

○ **보도자료 3**

JB-Smart Farm/ 스마트농업 中心 전북특별자치도의 혁신.도전!, 시사전북닷컴[25)]

> 청년농 임대형 스마트팜 56ha조성 2,104억원 투자
> 2022년부터 청년창업형 스마트팜 가족 정착 유도
> 스마트팜 2025년 국비예산 24% 89억원 전북으로

전북특별자치도(도지사 김관영) 민선8기는 출범하면서 전북이 대한민국 '농생명산업 수도'로의 도약을 위한 핵심정책으로 청년농과 연계한 '청년 스마트팜'을 2022년 24.4ha, 2024년 35ha, 2026년까지 70ha까지 확대 목표를 발표했다.

이에 따라 스마트팜 경영을 희망하는 청년농의 창업 지원을 위한 기술교육, 창업컨설팅, 자금 지원 등의 청년농 성장단계별 스마트농업 인프라 확충<교육(스마트팜혁신밸리 창업보육센터)→예비창업(임대형스마트팜)→취·창업(청년스마트팜)>에 지속적으로 투자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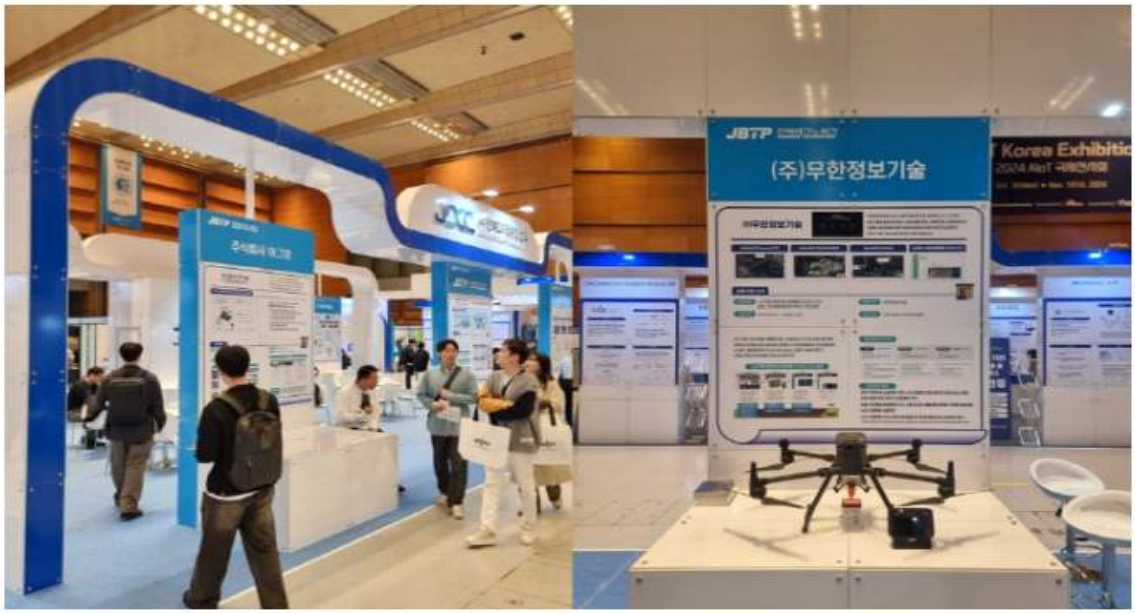
↑↑ 전북특별자치도 임대형스마트팜 조성 지도

25) http://m.sisajb.com/view.php?idx=80487

○ 보도자료 4

전북자치도, AI 스마트농업 기술로 미래 농업 혁신 선도, 헬스케어뉴스[26)]

| AIoT 국제전시회, 호남권 AI농업 기술 집약 전시
| 스마트농업 혁신기술, 호남권 13개사 참여
| 426억 규모 AI융합 농업 생태계 구축



전북자치도, AI 스마트농업 기술로 미래 농업 혁신 선도, 사진자료: 전북도 디지털산업과

전북특별자치도와 전북디지털융합센터가 2024 AIoT 국제전시회에서 호남권 인공지능(AI) 융합 산업의 혁신 성과를 공개한다.

전북특별자치도는 10월 30일부터 11월 1일까지 서울 코엑스에서 개최되는 2024 AIoT 국제전시회에 호남권 인공지능(AI) 융합 산업 공동홍보관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번 전시회는 'AIoT가 만드는 일상의 가치, 산업의 혁신'을 주제로 국내외 160여개의 기업 및 기관이 참가한다. 전시회에서는 농업기반 AI융합기술 실증을 진행 중인 ㈜아그모, ㈜링크롤, ㈜하다 등 도내 기업들이 참여해 지능형 AI 농업 관련 서비스와 기술을 선보일 예정이다.

호남권 13개 기업이 참여하는 이번 전시회에서는 ㈜아그모의 'AI기반 정밀 두둑성형 경로생성 알고리즘 개발 및 농작업 솔루션', ㈜하다의 'AI기반 전동식 무인 과수 방제 로봇 제어 기술', ㈜링크롤의 '작업자 선행 및 추종 기능, 고설 딸기 수확 운반 자율주행 시스템' 등 혁신적인 농업 기술이 소개된다.

26) http://www.hcnews.or.kr/news_gisa/gisa_view.htm?gisa_category=01040000&gisa_idx=80281

전시 참여 기업들은 국내 시장에서의 성공적인 레퍼런스 확보를 시작으로 글로벌 시장 진출까지 목표로 하고 있다고 밝혔다. 전북디지털융합센터는 이번 전시회를 통해 지역 내 AI융합 지능형 농업 실증 과제 수행기업들의 기술력을 알리고, 새로운 비즈니스 파트너십을 구축할 계획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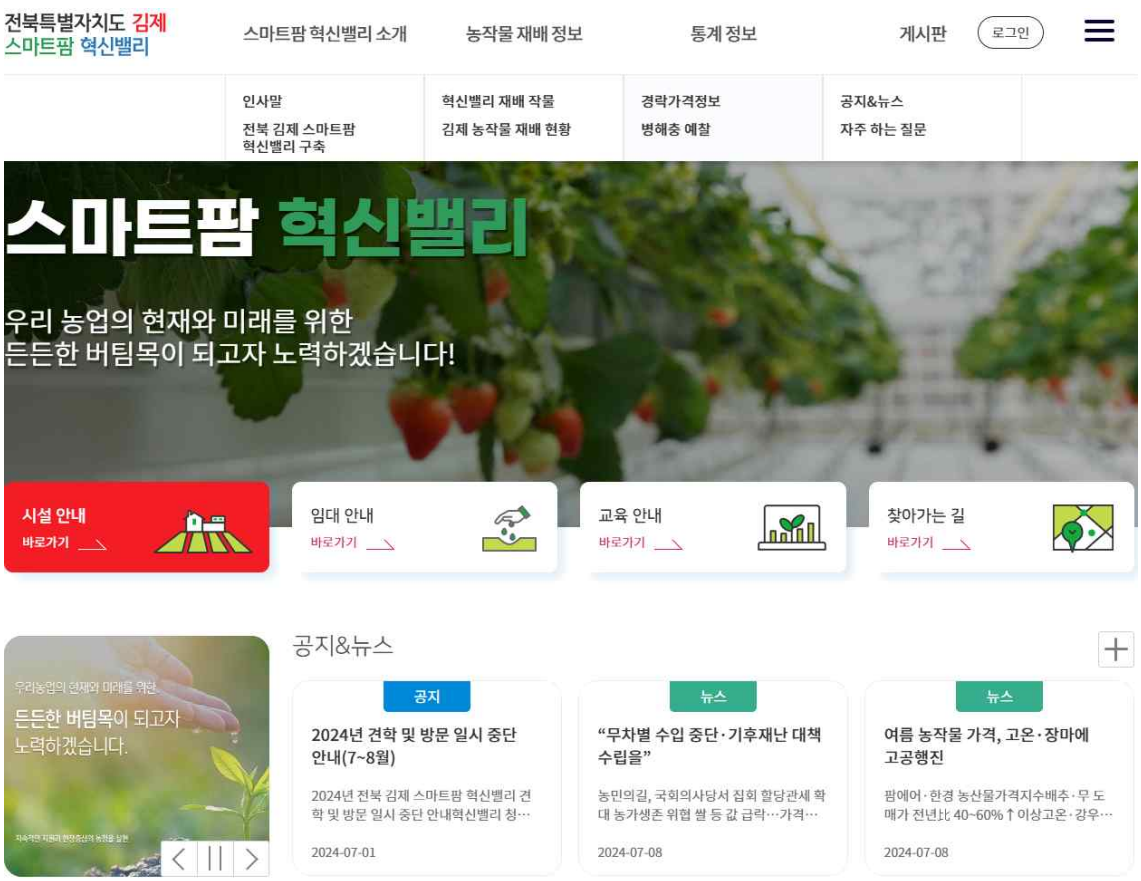
정미화 전북자치도 디지털산업과장은 "호남권 초광역 협력을 통해 지역의 농생명 산업 분야의 디지털 전환을 가속화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AI 융합 기술 확산을 통해 지역 경제 활성화와 산업 혁신을 이끌어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호남권 AI융합 지능형 농업 생태계 구축 사업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지역 AI 확산 선도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2024년부터 2028년까지 426억원이 투입되는 사업이다. 전북자치도, 전라남도, 광주광역시가 공동으로 수행하며, 이번 전시회를 통해 지역 내 AI 기술의 활발한 교류가 기대된다.

□ 참고자료 3 – 조례 관련 자료

○ 자료 1

전북 김제 스마트팜 혁신밸리 홈페이지 운영[27)]



27) https://innovalley.smartfarmkorea.net/gimje/index.do;jsessionid=3F2E600655B69C719CE2B599E527AF3E.innovalleywas01

붙임 1 사업 관련 추진실적

□ 연도별 사업 및 예산 집행 실적

○ 제7조(사업추진 및 지원)

- 주요 사업

1. 신규사업 발굴 및 육성
2. 생산기반시설 조성 및 정비
3. 스마트농업 확산을 위한 청년농부 지원

- 2024년 사업 및 예산 내역 (단위: 천원)

규 정	사 업 명	예산('24년)
제6조(교육 및 컨설팅 지원)	청년창업 스마트팜 컨설팅 운영	85,000
	과학영농 실용농업 스마트팜 교육	30,000
제7조(사업추진 및 지원)	청년 희망 스마트팜 지원	250,000
	청년창업 스마트팜 패키지 지원	2,156,000

- 최근 3년간 사업 및 예산 집행액 (단위: 천원)

연도	사업명	필요예산	확보예산	집행액	집행내역
2022	**소계**	**3,830,000**	**3,830,000**	**3,713,000**	
	청년 희망 스마트팜 지원	300,000	300,000	300,000	시설하우스, ICT 장비 등 지원
	청년창업 스마트팜 패키지 지원	3,300,000	3,300,000	3,300,000	청년농 스마트팜 조성 지원
	과학영농 실용농업 스마트팜 교육	30,000	30,000	30,000	교육운영비(강사비, 식비 등)
	청년창업 스마트팜 컨설팅 운영	200,000	200,000	83,000	청년농 대상 스마트팜 컨설팅 지원
2023	**소계**	**7,230,000**	**7,230,000**	**6,960,000**	
	청년 희망 스마트팜 지원	300,000	300,000	30,000	시설하우스, ICT 장비 등 지원
	청년창업 스마트팜 패키지 지원	4,400,000	4,400,000	4,400,000	청년농 스마트팜 조성 지원
	동부권 임대형 수직농장 실증 지원	2,500,000	2,500,000	2,500,000	청년 임대형 수직농장 조성
	과학영농 실용농업 스마트팜 교육	30,000	30,000	30,000	교육운영비(강사비, 식비 등)
2024	**소계**	**2,521,000**	**2,521,000**	**2,406,000**	
	청년 희망 스마트팜 지원	250,000	250,000	250,000	시설하우스, ICT 장비 등 지원
	청년창업 스마트팜 패키지 지원	2,156,000	2,156,000	2,156,000	청년농 스마트팜 조성 지원
	과학영농 실용농업 스마트팜 교육	30,000	30,000		교육운영비(강사비, 식비 등)
	청년창업 스마트팜 컨설팅 운영	85,000	85,000		청년농 대상 스마트팜 컨설팅 지원

붙임 2 평가대상 조례

전북특별자치도 스마트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 2024. 1. 18.] [전북특별자치도조례 제5399호, 2023. 12. 8., 일부개정]

전북특별자치도(스마트농산과), 063-280-264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전북특별자치도의 스마트농업 육성을 위한 정책수립과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농업인의 소득 증대와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3. 12. 8.>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스마트농업”이란 농업의 생산성 향상과 농작업의 질 향상을 위해 농업의 생산·유통 과정에 정보통신기술을 융합한 농업을 말한다.
2. “스마트팜”이란 작물 재배 시설이나 축사에 정보통신기술을 접목하여 원격 또는 자동으로 작물과 가축의 생육환경을 적정하게 유지·관리할 수 있는 농장을 말한다.

제3조(도지사의 책무)

① 전북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스마트농업의 안정적인 성장·발전과 경쟁력 강화를 위해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개정 2023. 12. 8.>

② 도지사는 전북특별자치도(이하 “전북자치도”라 한다) 내 시·군이 스마트농업 육성시책을 수립·시행하고자 할 경우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개정 2023. 12. 8.>

③ 도지사는 스마트농업 육성정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관련 대학, 연구소, 기관 또는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제4조(스마트농업 육성계획의 수립)

① 도지사는 스마트농업의 육성을 위하여 5년마다 전북자치도 스마트농업 육성계획(이하 “육성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개정 2023. 12. 8.>

② 육성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기본방향 및 목표
2. 육성시책 및 추진전략
3. 기술의 개발·보급·확산 및 활용 촉진
4. 재원조달 및 연도별 투자계획
5. 생산·유통·경영 등 추진전략
6. 전문 인력 양성
7. 스마트팜 확산 및 컨설팅·교육 지원
8. 그 밖에 스마트농업의 육성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도지사는 육성계획을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14조제5항에 따른 전북특별자치도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발전계획에 반영하여 수립할 수 있다.<개정 2023. 12. 8.>

④ 도지사는 육성계획의 수립·시행을 위하여 관계 기관에 자료의 제출 등 필요한 사항을 요청할 수 있다.

⑤ 도지사는 육성계획에 따른 추진실적을 평가하여 다음 육성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제5조(홍보) 도지사는 스마트농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우수 실천사례를 적극 발굴하여 홍보하여야 한다.

제6조(교육 및 컨설팅 지원 등)

① 도지사는 스마트농업의 육성과 스마트팜 확산을 위하여 전문기술 교육훈련 등을 지원하는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스마트팜 도입 농가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전문 컨설팅 지원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③ 도지사는 매년 우수농업인을 선발하여 국내 외 선진 스마트농업기술의 체험 및 견학 등 다양한 교육 기회 제공을 위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제7조(사업추진 및 지원)

① 도지사는 스마트농업의 육성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신규 사업 발굴 및 육성
2. 생산기반시설 조성 및 정비
3. 가공·유통 시설의 설치 및 운영
4. 생산·유통 촉진 및 경영규모의 확대
5. 기술의 연구·개발 및 보급
6. 종사자 교육 및 전문컨설팅
7. 스마트농업 확산을 위한 청년농부 지원
8. 경영·기획·유통·광고·회계·기술혁신 등을 위한 상담 및 기술개발 촉진
9. 그 밖에 스마트농업 육성 및 지원을 위해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도지사는 사업의 효과적 추진을 위하여 해당 사업을 수행하는 기관·단체·농업인 등에 대해서 필요한 행정적 지원과 예산의 범위에서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16. 전북특별자치도 청년일자리 창출 촉진에 관한 조례

Ⅰ. 종합의견

< 평가결과 >

□ 평가대상

조 례 명	전북특별자치도 청년일자리 창출 촉진에 관한 조례		
조례 구분	자치조례	관계 법령	-
제정·시행일	2013. 10. 4. 제정	최근개정·시행일	2023. 12. 8. 개정
소관 부서	일자리민생경제과	소관 상임위	경제산업건설

□ 평가의견

평가항목	평가의견	주요 내용
종합의견	통합/일반	- 연임 규정 관련 문장 표현 정비 검토 - 시행규칙은 개별 조례에서 위임이 없더라도 조례의 집행에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규칙으로 규정할 수 있으므로 삭제 권고 - 「전북특별자치도 고등학교졸업자 고용촉진 조례」에 따른 "고등학교졸업자"의 개념이 「전북특별자치도 청년일자리 창출 촉진에 관한 조례」의 "청년"의 개념에 포함되므로 통합을 검토할 수 있음. 통합 검토 권고
심층분석 결과		- 양 조례의 세부 규정 내용을 살펴본바 「전북특별자치도 고등학교졸업자 고욕촉진 조례」는 고등학교졸업자 고용 확대, 불이익 금지에 관한 규정이 특징적이라고 할 것임. 「전북특별자치도 청년일자리 창출 촉진에 관한 조례」를 기반으로 하되 고등학교졸업자 고용 확대와 불이익 금지에 관한 규정을 추가하도록 할 필요가 있음. 이와 같은 내용을 담아 통합안을 제안함
1. 입법 근거 및 적법성	적정	위임 범위에서 적절하게 제정되었음
2. 조례의 실효성	적정	제9조에 따른 청년 일자리 지원을 통해 조례의 실효성을 확보하고 있음
3. 조례 내용의 적정성	적정	조례에서 규정하고 있는 재정지원이 적절하게 이루어지고 있음
4. 조례의 공평성	적정	장애, 성별, 나이 등에 관한 사회적 편견, 고정관념이 반영된 표현 및 차별 규정 없음
5. 주민 수용성	적정	조례의 체계 및 용어가 주민이 알기 쉽게 되어 있음

6. 전북자치도 현실부합성	적정	전북특별자치도의 청년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하여 제정된 본 조례는 행정수요를 반영하고 있어 전북특별자치도 현실에 부합함
7. 위원회 운영의 적정성	-	위원회가 운영 관련 규정이 있지만(임의규정) 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지 아니함
※ 기타 의견	「전북특별자치도 고등학교졸업자 고용촉진 조례」에 따른 "고등학교졸업자"의 개념이 「전북특별자치도 청년일자리 창출 촉진에 관한 조례」의 "청년"의 개념에 포함되므로 통합이 필요함	

Ⅱ. 항목별 평가 결과

평가항목	세부항목	척도	의견 및 자료
1. 입법의 근거 및 적법성	1) 위임조례인가 자치사무에 관한 조례인가?	☐ 위임조례 ☑ 자치사무에 관한 조례	
	2) 조례에서 규정하고 있는 위임근거가 올바른가?	☐ 그렇다 ☐ 그렇지않다 ☑ 해당사항 없음	
	3) 조례가 위임범위에서 적절하게 제·개정되었는가?	☐ 그렇다 ☐ 그렇지않다 ☑ 해당사항 없음	
	4) 조례 제.개정 이후 동일 또는 유사한 법령이나 제도가 만들어졌거나 근거법령이 개정 또는 폐지되었는가?	☐ 그렇다 ☐ 그렇지않다 ☑ 해당사항 없음	
	5) 조례에서 주민의 권리제한, 의무부과, 벌칙 부과, 규제사항에 대한 법률위임이 있는가?	☐ 그렇다 ☐ 그렇지않다 ☑ 해당사항 없음	
	6) 상위법령에 위배되는 조항이 있는가?	☐ 그렇다 ☐ 그렇지않다 ☑ 해당사항 없음	
2. 조례의 실효성	1) 조례의 시행과정에서 다른 조례와의 충돌이나 모순이 발생하고 있는가?	☑ 그렇다 ☐ 그렇지않다 ☐ 해당사항 없음	-「전북특별자치도 고등학교졸업자 고용촉진 조례」
	2) 이 조례와 유사 또는 동일한 다른 조례가 제정 및 시행되고 있어 통합할 필요가 있는가?	☑ 그렇다 ☐ 그렇지않다 ☐ 해당사항 없음	
	3) 조례에 따른 계획이 수립·시행되고 있는가?	☑ 그렇다 ☐ 그렇지않다 ☐ 해당사항 없음	-2024년 전북특별자치도 청년일자리 창출 계획
	4) 조례에서 집행기관 등에 책무를 부여하고 있는가?	☐ 그렇다 ☑ 그렇지않다 ☐ 해당사항 없음	

평가항목	세부항목	척도	의견 및 자료
	5) 조례에서 부여한 책무와 관련사업을 집행기관이 잘 이행하고 있는가?	□ 그렇다 □ 그렇지않다 ☑ 해당사항 없음	
3. 조례 내용의 적정성	1) 조례에 재정지원 관련 규정이 있는가?	☑ 그렇다 □ 그렇지않다 □ 해당사항 없음	-제3조
	2) 조례 시행에 필요한 예산 확보와 집행이 잘 이루어지고 있는가?	☑ 그렇다 □ 그렇지않다 □ 해당사항 없음	
	3) 지원대상이 집행이 가능한 정도로 구체화 되어 있는가?	□ 그렇다 □ 그렇지않다 ☑ 해당사항 없음	
	4) 조례에 따른 위탁사무가 위탁대상으로 적정한가?	□ 그렇다 □ 그렇지않다 ☑ 해당사항 없음	
4. 조례의 공평성	1) 조례에서 장애인, 성별 등의 특정계층이나 특정지역을 차별하는 조항이 있는가?	□ 그렇다 ☑ 그렇지않다 □ 해당사항 없음	
	2) 조례에서 정한 차별이 합리적인가?	□ 그렇다 □ 그렇지않다 ☑ 해당사항 없음	
5. 주민 의견 수용성	1) 조례 제·개정 시 입법예고는 하였는가?	☑ 그렇다 □ 그렇지않다 □ 해당사항 없음	
	2) 조례 제·개정 시 공청회, 세미나 등 이해관계인 및 주민에 대한 의견 수렴 과정이 있었는가?	□ 그렇다 □ 그렇지않다 ☑ 해당사항 없음	
	3) 조례와 관련한 민원(청원, 진정, 소송 등)이 제기되거나 개정 또는 폐지 요구가 있었는가?	□ 그렇다 □ 그렇지않다 ☑ 해당사항 없음	
	4) 조례의 체계나 사용 되어진 용어가 주민이 알기 쉽게 되어 있는가?	☑ 그렇다 □ 그렇지않다 □ 해당사항 없음	
6. 위원회 운영의 적정성	1) 조례로 위원회를 구성하도록 되어 있는가?	□ 그렇다 ☑ 그렇지않다 □ 해당사항 없음	

평가항목	세부항목	척도	의견 및 자료
	2) 위원회가 법정위원회인가 조례로 설치하도록 한 위원회인가?	☐ 법정위원회 ☐ 조례로 정한 위원회 ☑ 해당사항 없음	
	3) 위원회 위원의 성별 구성이 적정한가?	☐ 그렇다 ☐ 그렇지않다 ☑ 해당사항 없음	
	4) 위원회가 법령이나 조례에서 정한 회의개최 운영 실적이 있고 관련 회의록을 보존하고 있는가?	☐ 그렇다 ☐ 그렇지않다 ☑ 해당사항 없음	
	5) 위원회를 계속 설치·운영할 필요성이 있는가?	☐ 그렇다 ☐ 그렇지않다 ☑ 해당사항 없음	
	6) 해당 위원회와 유사한 다른 위원회와의 기능적 통합이 필요한가?	☐ 그렇다 ☐ 그렇지않다 ☑ 해당사항 없음	
7. 종합 의견	1) 이 조례를 현행대로 유지할 필요가 있는가?	☐ 그렇다 ☑ 그렇지않다	
	2) 이 조례를 개정할 이유가 있는가? (해당사항 모두 표기)	☐ 위임근거에 불부합 ☐ 위임근거 불명확 ☐ 법령의 위임 없는 규제 정비 필요 ☑ 다른 조례와의 상충 및 모순 ☐ 조례 시행의 문제점 발생 ☐ 조례의 공평성 문제 ☑ 알기 쉬운 법령정비 기준에 따른 정비 필요 ☐ 위원회 관련 규정개정 필요 ☐ 그 밖의 사유	
	3) 이 조례를 폐지할 사유가 있는가? (해당사항 모두 표기)	☑ 다른 유사한 조례와의 통합 운영 필요성 ☐ 조례 시행 불가능 ☐ 최근 3년간 조례 관련 운영 실적 전무 ☐ 기타	
	4) 그 밖의 이 조례와 관련된 의견이 있는가?	☐ 있다 ☐ 없다	

Ⅲ. 세부내용

조례명	전북특별자치도 청년일자리 창출 촉진에 관한 조례

■ 소관 부서 의견(팀)

○ **최종의견 : 조례 통합 검토 필요**

○ **내용**

- (2-3) 조례 제4조에 따라 2024년 전북특별자치도 청년일자리 창출계획을 수립함
- (2-5) 2024년 계획 수립 시 2023년 사업 추진 실적을 포함함
- (3-1) 조례 제3조에 따라 재정 지원이 가능함
- (3-3) 2022년부터 2024년까지 아래와 같이 예산 지원을 실시함
- (8-1) 청년일자리 창출을 통한 지속적 전북특별자치도 내 청년인구 지속적 유출 등의 문제에 대응하기 위하여 조례의 유지가 필요함
- (8-2), (8-4) 「전북특별자치도 고등학교졸업자 고용촉진 조례」에 따른 "고등학교졸업자"의 개념이 「전북특별자치도 청년일자리 창출 촉진에 관한 조례」의 "청년"의 개념에 포함되므로 통합이 필요

■ 종합의견	통합 권고/일반 정비

◎ 입법평가 세부의견

○ **평가항목별 검토**

평가항목	평가항목별 검토 내용
1. 입법 근거 및 적법성	위임 범위에서 적절하게 제정되었음
2. 조례의 실효성	제9조에 따른 청년 일자리 지원을 통해 조례의 실효성을 확보하고 있음
3. 조례 내용의 적정성	조례에서 규정하고 있는 재정지원이 적절하게 이루어지고 있음
4. 조례의 공평성	장애, 성별, 나이 등에 관한 사회적 편견, 고정관념이 반영된 표현 및 차별 규정 없음
5. 주민 수용성	조례의 체계 및 용어가 주민이 알기 쉽게 되어 있음
6. 전북자치도 현실부합성	전북특별자치도의 청년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하여 제정된 본 조례는 행정수요를 반영하고 있어 전북특별자치도 현실에 부합함
7. 위원회 운영의 적정성	위원회가 운영 관련 규정이 있지만(임의규정) 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지 아니함
※ 기타 의견	「전북특별자치도 고등학교졸업자 고용촉진 조례」상 "고등학교졸업자"의 개념이 「전북특별자치도 청년일자리 창출 촉진에 관한 조례」의 "청년"의 하위개념에 해당하므로 통합이 필요함

○ **연도별 사업내용 및 예산/집행액**

(단위: 천원)

연도	사업명	필요예산	확보예산	집행액	집행내역
2022	전북형 청년취업지원	593,000	593,000	593,000	사업 추진을 위한 시군 사업비 교부
2023					
2024		305,760	305,760	305,760	

○ **조례의 입법목적 달성도 또는 부수효과 분석**

- 조례 목적달성도 평가
  - 조례내용에 따라 청년 일자리 창출을 위한 구체적인 계획을 수립하고 있다는 점에서 조례의 목적이 달성되고 있다고 평가됨
- 부수효과
  - 청년 일자리 창출을 통해 청년들의 순 유입을 늘리고, 지방 소멸을 억제할 수 있음

○ **타 시·도 유사 조례와 비교 또는 타 시·도 자치법규(정책) 동향**

전북특별자치도 청년일자리 창출 촉진에 관한 조례	**충청남도 청년일자리 창출 촉진에 관한 조례**	**경상남도 청년 일자리 창출 촉진에 관한 조례**	**세종특별자치시 청년일자리 창출 촉진 등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제3조(책무)	제3조(책무)	제3조(도지사의 책무)	제2조의2(적용 범위)
제4조(청년일자리 창출 계획)	제4조(추진계획의 수립·시행)	제4조(청년 일자리 창출 시행계획 수립)	제3조(청년인력수급계획)
제5조(실태조사)	제5조(실태조사)	제4조의2(일자리창출사업 등 추진)	제4조(실태조사)
제6조(위원회)	제6조(위원회의 설치·운영)	제5조(실태조사)	제5조(교육지원 등)
제7조(교육기관 활용)	**제7조(출자기관 등의 청년고용 확대)**	제6조(교육기관의 활용)	제6조(관계기관·단체와의 협력 등)
제8조(관계기관·단체와의 협력 등)	제8조(취업지원 등)	제7조(기관·단체 등과의 협력)	**제7조(청년구직자 및 고등학교 졸업자 고용 노력)**
제9조(행·재정적 지원)	제9조(교육기관 활용 등)	제8조(취업 지원)	제8조(행·재정적 지원)

제10조(시행규칙)	제10조(노동교육 등)	**제9조(청년 고용 확대)**	제9조(청년일자리창출위원회)
	제11조(지원센터의 설치)	제10조 삭제 <2018.6.28.>	제10조(시행규칙)
	제12조(경비지원)	제11조(지원방법 등)	
	제13조(협력체계의 구축 등)	제12조(시행규칙)	
	제14조(표창)		
	제15조(시행규칙)		

- 충청남도와 경상남도 조례에서는 청년 고용 확대를 위해 출자기관에 청년 고용을 확대할 것을 규정하고, 청년에게도 도의 정책에 협조하도록 함
- 세종특별자치시 조례에서는 제7조에서 청년구직자 및 고등학교졸업자 고용 노력에 관한 조문을 규정하고 있는바 전북특별자치도 집행부의 조례 통합의견에 시사하는 바가 있음

Ⅳ. 개정의견

현 행	개정안	비고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청년고용촉진 특별법」에 따라 전북지역 청년들의 일자리 창출을 촉진함으로써 지속적인 경제발전과 사회 안정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청년고용촉진 특별법」에 따라 전북특별자치도 지역 청년들의 일자리 창출을 촉진함으로써 지속적인 경제발전과 사회 안정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지역을 명확하게 규정하도록 정비 권고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청년고용촉진 특별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제2조에 따른다.	-상위법령의 용어정의 규정을 그대로 규정할 경우에는 "「○○법」 제○조에 따른다."고 표현함
제3조(책무) ① 전북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청년의 고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대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1. 이하 생략	제3조(책무) ① 전북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청년의 고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대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1. 이하 현행과 같음	-법조형식의 문장으로 정비(「112신고의 운영 및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참조)
제4조(청년일자리 창출계획) ① 도지사는 매년 청년 일자리 창출계획을 수립하여 청년 고용안정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이하 생략	제4조(청년일자리 창출계획) ① 도지사는 매년 전북특별자치도 청년 일자리 창출계획(이하 "청년일자리 창출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청년 고용안정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이하 현행과 같음	-약칭을 할 경우에는 전체 명칭을 사용한 후 약칭함
제6조(위원회) ① 도지사는 청년일자리 창출 촉진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전북특별자치도청년일자리창출촉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1. 생략 2. 그 밖에 청년고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1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은 도지사가 위촉하고 과반수는 외부 인사 중 민간위원으로 한다. 위원장은 경제부지사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한다. ③ 생략	제6조(위원회) ① 도지사는 청년일자리 창출 촉진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전북특별자치도 청년일자리 창출촉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1. 현행과 같음 2. 그 밖에 위원회가 청년고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1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은 도지사가 위촉하고 과반수는 외부 인사 중 민간위원으로 한다. 위원장은 경제부지사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현행과 같음	-띄어쓰기 수정 -주어를 신설하여 구체적인 문장으로 정비 -고유명사는 붙여 씀 -띄어쓰기 정비 권고 -문장표현 정비 권고

현 행	개정안	비고
1. ~ 3. 생략 4. 전북특별자치도 교육청, 도내 대학교 총장·학장의 추천을 받은 고등학생 또는 대학생 대표 ④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1회 연임할 수 있으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⑤ ~ ⑥ 생략 ⑦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위원 해촉에 관한 사안의 경우 제5항의 규정에 따른다.	1. ~ 3. 현행과 같음 4.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도 내 대학교 총장·학장의 추천을 받은 고등학생 또는 대학생 대표 ④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으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⑤ ~ ⑥ 현행과 같음 ⑦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위원 해촉에 관하여는 제5항에 따른다.	
제9조(행·재정적 지원) ① 도지사는 청년일자리 창출 사업을 수행하는 관련 기관이나 비영리단체 등에 대한 행정적 지원 또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그 사업에 따른 소요경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경비지원 방법·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전북특별자치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③ 이하 생략	제9조(행·재정적 지원) ① 도지사는 청년일자리 창출 사업을 수행하는 관련 기관이나 비영리단체 등에 대한 행정적 지원 또는 예산의 범위에서 그 사업에 따른 소요경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삭제> ③ 이하 현행과 같음	-중복적인 표현 정비 권고 -재정지원에 관해 선언적인 의미만을 규정하면, 그에 따른 구체적인 사항은 당연히 「전북특별자치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적용 받으므로 규정의 실익이 없음(법제처, 2023년 우수조례 및 자치법규 입법컨설팅 사례집, 107면)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삭제>	-시행규칙은 개별 조례에서 위임이 없더라도 조례의 집행에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규칙으로 규정할 수 있으므로 삭제 권고

심층분석 관련 검토

○ 심층분석 사유

- 「전북특별자치도 고등학교졸업자 고용촉진 조례」에 따른 "고등학교졸업자"의 개념이 「전북특별자치도 청년일자리 창출 촉진에 관한 조례」의 "청년"의 개념에 포함되므로 통합을 검토할 수 있음. 통합 검토 권고

○ 심층분석

- 통합 검토의 대상이 되는 「전북특별자치도 고등학교졸업자 고용촉진 조례」와 「전북특별자치도 청년일자리 창출 촉진에 관한 조례」의 구성체계를 살펴봄

전북특별자치도 청년일자리 창출 촉진에 관한 조례	전북특별자치도 고등학교졸업자 고용촉진 조례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제3조(책무)	제3조(책무)
제4조(청년일자리 창출계획)	**제4조(고등학교졸업자 고용촉진 대책의 수립)**
제5조(실태조사)	제5조(고등학교졸업자 실태조사 등)
제6조(위원회)	**제6조(고등학교졸업자 고용 확대)**
제7조(교육기관 활용)	**제7조(고등학교졸업자 불이익 금지)**
제8조(관계기관·단체와의 협력 등)	제8조(관계기관·단체와의 협력 등)
제9조(행·재정적 지원)	제9조(행정적·재정적 지원)
제10조(시행규칙)	제10조(시행규칙)

- 통합검토를 위하여 양 조례의 구성체계상 내용상 차이가 있는 규정의 세부내용을 살펴봄

전북특별자치도 청년일자리 창출 촉진에 관한 조례	전북특별자치도 고등학교졸업자 고용촉진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청년고용촉진 특별법」에 따라 전북지역 청년들의 일자리 창출을 촉진함으로써 지속적인 경제발전과 사회 안정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청년고용촉진 특별법」에 따라 전북특별자치도 지역 고등학교졸업자들의 일자리 창출을 촉진하여 지속적인 경제발전과 사회 안정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청년고용촉진 특별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고등학교졸업자"란 「초·중등교육법」제2조제3호에 따른 고등학교·고등기술학교 졸업자(졸업예정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와 같은 법 시행령 제98조에 따라 고등학교졸업자와 동등한 학력을 인정받은 자 중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대학 또는 학교에 진학하지 아니한 청년을 말한다.
제3조(책무) ① 전북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청년의 고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제3조(책무) ① 전북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고등학교졸업자의 고용이 촉진될 수 있는

전북특별자치도 청년일자리 창출 촉진에 관한 조례	전북특별자치도 고등학교졸업자 고용촉진 조례
호의 사항을 포함한 대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1. 청년 고용 촉진을 위한 인력수급 전망 2. 청년 미취업자 실태조사 및 지원 방안 3. 직업 지도, 취업 알선 및 직업능력개발훈련 방안 4. 청년 일자리 제공 기업에 대한 장려책 마련 ② 도지사는 청년 미취업자의 고용이 촉진될 수 있는 사회적·경제적 환경을 마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기업 등은 청년 고용을 촉진하기 위한 전북특별자치도의 대책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사회적·경제적 환경을 조성하여야 한다. ② 전북특별자치도(이하 "전북자치도"라 한다)가 설립한 투자·출연·출자기관,「전북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에 따른 수탁기관(이하 "공기업 등"이라 한다)은 고등학교졸업자의 고용을 촉진하기 위한 전북자치도의 대책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4조(청년일자리 창출계획) ① 도지사는 매년 청년일자리 창출계획을 수립하여 청년 고용안정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청년일자리 창출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지역 산업동향 및 청년 고용동향 2. 청년 일자리 개발과 보급에 관한 사항 3. 청년 일자리 창출을 위한 재정지원에 관한 사항 4. 청년 일자리 창출을 위한 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 5.「고등교육법」에 따른 교육기관, 시·군, 공공기관 및 기업 등과의 협력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도지사는 매년 청년일자리 창출계획에 따른 실적을 평가하여 공표하고, 그 결과를 다음연도 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제4조(고등학교졸업자 고용촉진 대책의 수립) ① 도지사는 매년 고등학교졸업자의 고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대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1. 고등학교졸업자 고용촉진 목표 및 시행계획 2. 해당 연도 일자리박람회 등 고등학교졸업자 고용촉진 시책 사업 3. 고등학교졸업자 고용촉진을 위한 재정지원에 관한 사항 4. 직업 지도, 취업 알선 및 직업능력개발훈련 등에 관한 사항 5.「고등교육법」에 따른 교육기관과 기업 등과의 협력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고등학교졸업자의 고용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도지사는 매년 고등학교졸업자 고용촉진 대책의 시행에 따른 실적을 평가하고, 그 결과를 다음 연도 고등학교졸업자 고용촉진 대책에 반영하여야 한다.
제5조(실태조사) ① 도지사는 매년 청년 미취업자의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공표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할 경우 청년일자리 창출 관련 기관 또는 법인 등에 위탁할 수 있다.	제5조(고등학교졸업자 실태조사 등) ① 도지사는 제4조에 따른 고등학교졸업자 고용촉진 대책 수립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지역산업의 동향, 고등학교졸업자 인력수급 동향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할 경우 청년일자리 창출 관련 기관 또는 법인 등에 위탁할 수 있다.
제6조(위원회) ① 도지사는 청년일자리 창출 촉진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전북특별자치도청년일자리창출촉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전북특별자치도 청년일자리 창출 촉진에 관한 조례	전북특별자치도 고등학교졸업자 고용촉진 조례
1. 제3조 및 제4조에 따른 대책 및 계획의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 2. 그 밖에 청년고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1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은 도지사가 위촉하고 과반수는 외부 인사 중 민간위원으로 한다. 위원장은 경제부지사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청년일자리 관련 분야 공무원 또는 학계·산업계 전문가 2. 청년일자리 분야 정부기관, 비영리 민간단체·법인 등에서 근무하거나 근무경험이 있는 사람 3.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의원을 포함하여 도의회가 추천하는 2명 4. 전북특별자치도 교육청, 도내 대학교 총장·학장의 추천을 받은 고등학생 또는 대학생 대표 5. 그 밖에 청년일자리 분야에 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④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1회 연임할 수 있으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⑤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회 회의에 자주 불참하거나 직무를 성실하게 수행하지 않을 때 2. 위원으로서의 품위를 현저히 손상하였거나 부적절한 행위를 한 경우 3. 그 밖에 해촉할 만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⑥ 위원회의 회의는 1년에 1회 이상 정기회의를 개최하되, 필요한 경우 재적위원 과반수의 동의로 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 ⑦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위원 해촉에 관한 사안의 경우 제5항의 규정에 따른다.	
제7조(교육기관 활용) ① 도지사는 「고등교육법」에	

전북특별자치도 청년일자리 창출 촉진에 관한 조례	전북특별자치도 고등학교졸업자 고용촉진 조례
따른 교육기관과 연계하여 청년이 취업을 위하여 필요한 지식과 기술을 익힐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지원을 하는 경우 「고등교육법」에 의한 교육기관에 대하여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6조(고등학교졸업자 고용 확대) 제3조제2항에 따른 공기업 등 중 정원이 20명 이상인 공기업 등은 정원의 100분의 10 이상에 대하여 고등학교졸업자를 우선적으로 고용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7조(고등학교졸업자 불이익 금지) ① 공기업 등이 제6조에 따른 채용을 하는 경우 해당 기관장은 채용된 고등학교졸업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인사상·신분상 불이익 또는 근무조건상의 차별적 조치를 받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② 기관장은 채용된 고등학교졸업자를 별도의 직군(職群)으로 분류·관리하여서는 아니된다. ③ 기관장은 특정 직군위주로 고등학교졸업자가 선발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제8조(관계기관·단체와의 협력 등) ① 도지사는 청년일자리 지원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중앙행정기관(그 소속·산하기관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와 같다) 및 일자리 관련 기관·단체 등과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필요할 경우 중앙행정기관, 일자리창출 관련 기관·단체 등과 일자리 창출을 위한 협약 등을 체결할 수 있다.	제8조(관계기관·단체와의 협력 등) ① 도지사는 고등학교졸업자 고용촉진 지원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중앙행정기관(그 소속·산하기관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와 같다) 및 일자리 관련 기관·단체 등과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필요할 경우 중앙행정기관, 일자리창출 관련 기관·단체 등과 고등학교졸업자 일자리 창출을 위한 협약 등을 체결할 수 있다.
제9조(행·재정적 지원) ① 도지사는 청년일자리 창출 사업을 수행하는 관련 기관이나 비영리단체 등에 대한 행정적 지원 또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그 사업에 따른 소요경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경비지원 방법·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전북특별자치도 지방보조금 관리조례」에 따른다. ③ 도지사는 청년일자리 창출에 기여한 기업에게 「전북특별자치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조례」에 따라 우대하여 지원할 수 있다. ④ 도지사는 청년일자리 창출에 기여한 기업·단체 등에 대해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9조(행정적·재정적 지원) ① 도지사는 고등학교졸업자 고용촉진을 위하여 제6조에서 정한 고용목표를 달성한 제3조제2항에 따른 공기업 등에 대해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경비지원 방법·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전북특별자치도 지방보조금 관리조례」에 따른다.

전북특별자치도 청년일자리 창출 촉진에 관한 조례	전북특별자치도 고등학교졸업자 고용촉진 조례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 양 조례의 세부 규정 내용을 살펴본바 고등학교졸업자 고용 확대, 불이익 금지에 관한 규정이 특징적이라고 할 것임. 「전북특별자치도 청년일자리 창출 촉진에 관한 조례」를 기반으로 하되 고등학교졸업자 고용 확대와 불이익 금지에 관한 규정을 추가하도록 할 필요가 있음. 이와 같은 내용을 담아 아래와 같이 통합안을 제안함

「전북특별자치도 청년일자리 창출 촉진에 관한 조례」 통합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청년고용촉진 특별법」에 따라 전북특별자치도 지역 청년들의 일자리 창출을 촉진함으로써 지속적인 경제발전과 사회 안정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① 이 조례에서 "고등학교졸업자"란 「초·중등교육법」제2조제3호에 따른 고등학교·고등기술학교 졸업자(졸업예정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와 같은 법 시행령 제98조에 따라 고등학교졸업자와 동등한 학력을 인정받은 자 중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대학 또는 학교에 진학하지 아니한 청년을 말한다. ② 제1항에서 정한 것 이외에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제2조에 따른다. **제3조(책무)** ① 전북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청년의 고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대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1. 청년(고등학교졸업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고용 촉진을 위한 인력수급 전망 2. 청년 미취업자 실태조사 및 지원 방안 3. 직업 지도, 취업 알선 및 직업능력개발훈련 방안 4. 청년 일자리 제공 기업에 대한 장려책 마련 ② 도지사는 청년 미취업자의 고용이 촉진될 수 있는 사회적·경제적 환경을 마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전북특별자치도(이하 "전북자치도"라 한다)가 설립한 투자·출연·출자기관,「전북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에 따른 수탁기관(이하 "공기업등"이라 한다) 및 기업 등은 청년 고용을 촉진하기 위한 전북특별자치도의 대책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4조(청년일자리 창출계획)** ① 도지사는 매년 전북특별자치도 청년 일자리 창출계획(이하 "청년일자리 창출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청년 고용안정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청년일자리 창출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지역 산업동향 및 청년 고용동향 2. 청년 일자리 개발과 보급에 관한 사항 3. 청년 일자리 창출을 위한 재정지원에 관한 사항 4. 청년 일자리 창출을 위한 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 5.「고등교육법」에 따른 교육기관, 시·군, 공공기관 및 기업 등과의 협력에 관한 사항 6. 해당 연도 일자리박람회 등 청년 고용촉진 시책 사업 7.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도지사는 매년 청년일자리 창출계획에 따른 실적을 평가하여 공표하고, 그 결과를 다음연도 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제5조(실태조사)** ① 도지사는 매년 청년 미취업자의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공표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청년 고용촉진 대책을 수립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지역산업 동향, 청년 인력수급 동향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③ 도지사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할 경우 청년일자리 창출 관련 기관 또는 법인 등에 위탁할 수 있다.

제6조(위원회) ① 도지사는 청년일자리 창출 촉진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전북특별자치도 청년일자리 창출촉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1. 제3조 및 제4조에 따른 대책 및 계획의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
2. 그 밖에 청년고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1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은 도지사가 위촉하고 과반수는 외부 인사 중 민간위원으로 한다. 위원장은 경제부지사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청년일자리 관련 분야 공무원 또는 학계·산업계 전문가
2. 청년일자리 분야 정부기관, 비영리 민간단체·법인 등에서 근무하거나 근무경험이 있는 사람
3.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의원을 포함하여 도의회가 추천하는 2명
4.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도내 대학교 총장·학장의 추천을 받은 고등학생 또는 대학생 대표
5. 그 밖에 청년일자리 분야에 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④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으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⑤ 위원회의 회의는 1년에 1회 이상 정기회의를 개최하되, 필요한 경우 재적위원 과반수의 동의로 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

⑥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위원 해촉에 관한 사안의 경우 제5항에 따른다.

제7조(고등학교졸업자 고용 확대 등) ① 제3조제3항에 따른 공기업등 중에서 정원이 20명 이상인 공기업 등은 정원의 100분의 10 이상에 대하여 고등학교졸업자를 우선적으로 고용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공기업등이 제1항에 따른 채용을 하는 경우 해당 기관장은 채용된 고등학교졸업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인사상·신분상 불이익 또는 근무조건상의 차별적 조치를 받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제8조(행·재정적 지원) ① 도지사는 청년일자리 창출 사업을 수행하는 관련 기관이나 비영리단체 등에 대한 행정적 지원 또는 예산의 범위에서 그 사업에 따른 소요경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고등학교졸업자 고용촉진을 위하여 제9조제1항에서 정한 고용목표를 달성한 제3조제3항에 따른 공기업 등에 대해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③ 도지사는 청년일자리 창출에 기여한 기업에게 「전북특별자치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조례」에 따라 우대하여 지원할 수 있다.

④ 도지사는 청년일자리 창출에 기여한 기업·단체 등에 대해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 참고자료 1 – 위원회 관련 실적

○ 구성

- 위원회 규정은 있으나, 미 구성됨(임의규정)

○ 개최 실적

- 해당사항 없음

□ 참고자료 2 – 조례 관련 보도 자료

○ 보도자료 1

'내 일(JOB)의 시작!' 전북특별자치도 일자리 페스티벌로 꿈을 잡다, 전북도민일보[28)]

도내 청년과 신중년층을 위한 맞춤형 채용의 장이 펼쳐진다.

전북특별자치도는 전북자치도일자리센터를 비롯해 도내 28개 일자리 유관기관과 공동으로 오는 24일 전주실내체육관에서 일자리페스티벌을 개최한다.

올해 일자리 페스티벌은 청년과 신중년층 대상 맞춤형으로 마련됐다는 점이 특징으로, 도내 기업과 구직자를 연결하는 중요한 장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이에 오전에는 신중년 중심의 부스를 운영하고, 오후에는 청년 중심의 부스를 운영해 도내 식품, 방산, 이차전지 등 36개 기업이 250여 명의 직원을 채용할 예정이다.

행사장에는 △채용설명관 △공공정책관 △취업컨설팅관 △취업준비관 △부대행사 등 50개 부스가 운영되며, 다양한 일자리 관련 정보도 제공된다.

특히, 채용설명관은 비나텍, 하림, 효성첨단소재 등 36개 기업이 참여해 적합한 인력을 선발하기 위한 현장면접과 기업설명을 진행할 계획이다.

전북지방중소벤처기업청, 국민연금공단 등 18개 기관이 참여하는 공공정책관에서는 일자리 사업 및 채용 정보를 제공, 고용노동부 전주지청, 중장년내일센터 등 15개 기관이 참여하는 취업컨설팅관에서는 취업 상담과 정보 제공이 이뤄진다.

이와 함께 세계한인비즈니스대회와 연계를 통해 재외동포청 부스에서 도내 구직자들을 대상으로 해외 인턴 관련 정보를 제공하며, 비나텍(주), 참프레, 영인바이오, ㈜그레넥스, 하림 등 5개 기업은 현장 면접 및 기업 설명회를 통해 해외 취업의 기회도 제공할 예정이다.

전북자치도는 또, 청년 및 신중년층을 위한 상담창구를 운영해 청년정책 및 일자리 지원사업을 한 자리에서 확인할 수 있도록 한다는 구상이다.

아울러, 이번 일자리페스티벌에서는 일자리 창출 우수기업으로 선정된 ㈜아이버스, ㈜풍림파마텍, ㈜디에스단석, ㈜광스틸, ㈜대신FS 5개사의 대표이사와 유관기관 및 공무원 10명에게 도지사 표창을 수여할 계획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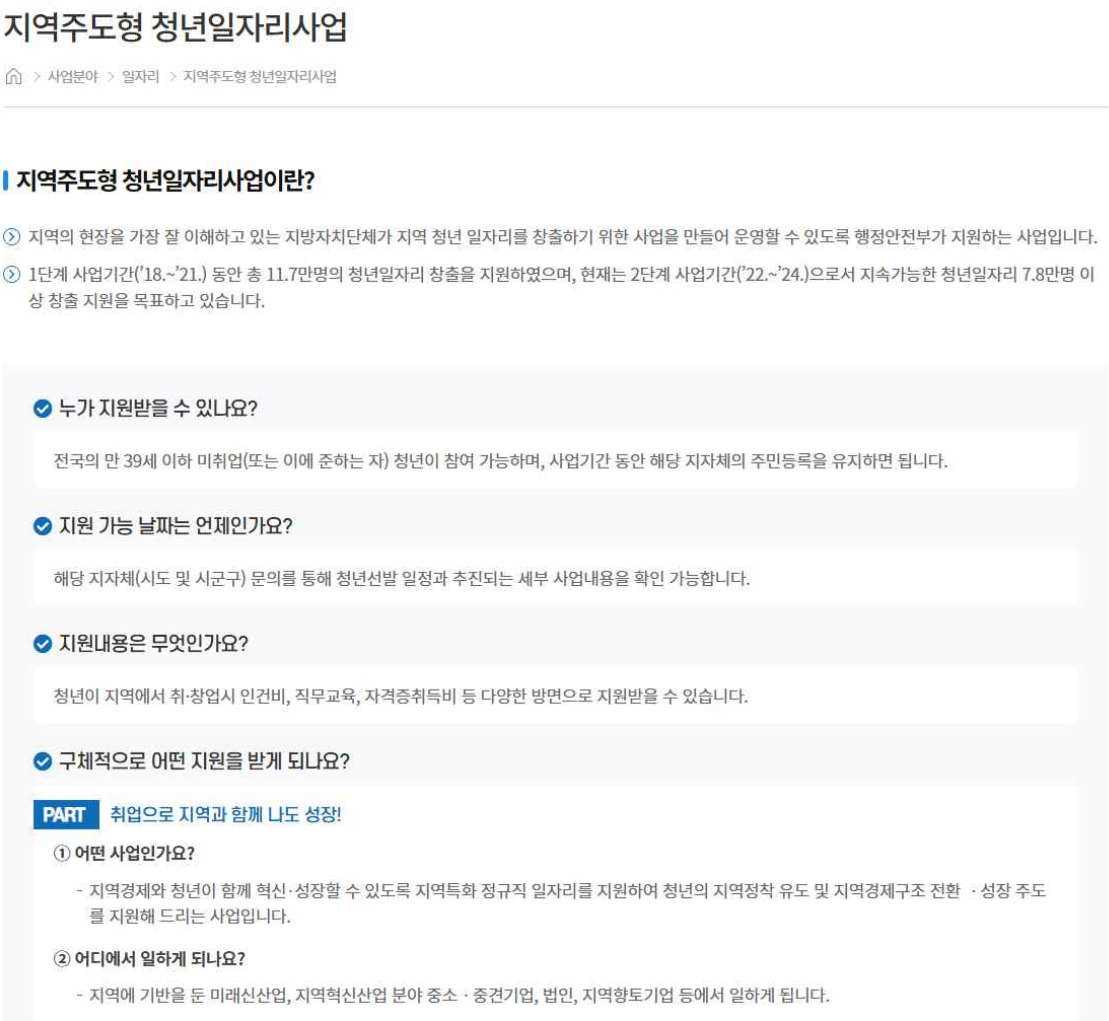
일자리페스티벌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전북자치도 일자리민생경제과(063-280-3214)나 전북자치도 일자리센터(1577-0365)로 문의하면 된다.

28) https://www.domin.co.kr/news/articleView.html?idxno=1488809&sc_section_code=S1N6

□ 참고자료 3 – 조례 관련 자료

○ 자료 1

전북산학융합원 주도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사업 실시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사업

사업분야 > 일자리 >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사업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사업이란?

- 지역의 현장을 가장 잘 이해하고 있는 지방자치단체가 지역 청년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한 사업을 만들어 운영할 수 있도록 행정안전부가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 1단계 사업기간('18.~'21.) 동안 총 11.7만명의 청년일자리 창출을 지원하였으며, 현재는 2단계 사업기간('22.~'24.)으로서 지속가능한 청년일자리 7.8만명 이상 창출 지원을 목표하고 있습니다.

누가 지원받을 수 있나요?

전국의 만 39세 이하 미취업(또는 이에 준하는 자) 청년이 참여 가능하며, 사업기간 동안 해당 지자체의 주민등록을 유지하면 됩니다.

지원 가능 날짜는 언제인가요?

해당 지자체(시도 및 시군구) 문의를 통해 청년선발 일정과 추진되는 세부 사업내용을 확인 가능합니다.

지원내용은 무엇인가요?

청년이 지역에서 취·창업시 인건비, 직무교육, 자격증취득비 등 다양한 방면으로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지원을 받게 되나요?

PART 취업으로 지역과 함께 나도 성장!

① 어떤 사업인가요?

- 지역경제와 청년이 함께 혁신·성장할 수 있도록 지역특화 정규직 일자리를 지원하여 청년의 지역정착 유도 및 지역경제구조 전환 · 성장 주도를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② 어디에서 일하게 되나요?

- 지역에 기반을 둔 미래신산업, 지역혁신산업 분야 중소 · 중견기업, 법인, 지역향토기업 등에서 일하게 됩니다.

붙임 1 사업 관련 추진실적

□ 연도별 사업 및 예산 집행 실적

○ 제3조(청년일자리 창출계획)

- 최근 3년간 사업 실적

(단위: 천원)

연도	사업명	필요예산	확보예산	집행액	집행내역
2022	전북형 청년취업지원	593,000	593,000	593,000	사업 추진을 위한 시군 사업비 교부
2023					
2024		305,760	305,760	305,760	

○ '23년 대비 일자리 창출 예산액

(단위 : 백만원)

구 분	'23년 예산액					'24년 예산액				
	합계	국비	도비	시군비	기타	합계	국비	도비	시군비	기타
소 계	**94,331**	**37,109**	**26,699**	**22,722**	**7,801**	**75,748**	**30,754**	**21,864**	**18,239**	**4,891**
청년취업 연계강화	57,269	23,903	11,857	15,851	5,658	34,434	10,891	10,376	10,650	2,517
청년창업 활성화 지원	19,536	10,892	5,132	3,441	71	20,098	12,057	3,484	4,032	525
현장중심 전문인력 양성	11,097	514	7,693	1,778	1,112	8,031	606	5,032	1,700	693
일자리 인프라 구축 강화	6,429	1,800	2,017	1,652	960	13,185	7,200	2,972	1,857	1,156

붙임 2 평가대상 조례

전북특별자치도 청년일자리 창출 촉진에 관한 조례

[시행 2024. 1. 18.] [전북특별자치도조례 제5399호, 2023. 12. 8., 일부개정]

전북특별자치도(일자리민생경제과), 063-280-2827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청년고용촉진 특별법」에 따라 전북지역 청년들의 일자리 창출을 촉진함으로써 지속적인 경제발전과 사회 안정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청년고용촉진 특별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책무)

① 전북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청년의 고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대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개정 2023. 12. 8.>

1. 청년 고용 촉진을 위한 인력수급 전망
2. 청년 미취업자 실태조사 및 지원 방안
3. 직업 지도, 취업 알선 및 직업능력개발훈련 방안
4. 청년 일자리 제공 기업에 대한 장려책 마련

② 도지사는 청년 미취업자의 고용이 촉진될 수 있는 사회적·경제적 환경을 마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기업 등은 청년 고용을 촉진하기 위한 전북특별자치도의 대책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개정 2023. 12. 8.>

제4조(청년일자리 창출계획)

① 도지사는 매년 청년 일자리 창출계획을 수립하여 청년 고용안정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청년일자리 창출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지역 산업동향 및 청년 고용동향
2. 청년 일자리 개발과 보급에 관한 사항
3. 청년 일자리 창출을 위한 재정지원에 관한 사항
4. 청년 일자리 창출을 위한 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
5. 「고등교육법」에 따른 교육기관, 시·군, 공공기관 및 기업 등과의 협력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도지사는 매년 청년일자리 창출계획에 따른 실적을 평가하여 공표하고, 그 결과를 다음연도 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제5조(실태조사)

① 도지사는 매년 청년 미취업자의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공표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할 경우 청년일자리 창출 관련 기관 또는 법인 등에 위탁할 수 있다.

제6조(위원회)

① 도지사는 청년일자리 창출 촉진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전북특별자치도청년일자리창출촉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개정 2023. 12. 8.>

1. 제3조 및 제4조에 따른 대책 및 계획의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

2. 그 밖에 청년고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1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은 도지사가 위촉하고 과반수는 외부 인사 중 민간위원으로 한다. 위원장은 경제부지사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개정 2014. 10. 22., 2022. 10. 21.>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개정 2023. 12. 8.>

1. 청년일자리 관련 분야 공무원 또는 학계·산업계 전문가
2. 청년일자리 분야 정부기관, 비영리 민간단체·법인 등에서 근무하거나 근무경험이 있는 사람
3.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의원을 포함하여 도의회가 추천하는 2명
4. 전북특별자치도 교육청, 도내 대학교 총장·학장의 추천을 받은 고등학생 또는 대학생 대표
5. 그 밖에 청년일자리 분야에 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④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1회 연임할 수 있으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⑤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회 회의에 자주 불참하거나 직무를 성실하게 수행하지 않을 때
2. 위원으로서의 품위를 현저히 손상하였거나 부적절한 행위를 한 경우
3. 그 밖에 해촉할 만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⑥ 위원회의 회의는 1년에 1회 이상 정기회의를 개최하되, 필요한 경우 재적위원 과반수의 동의로 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

⑦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위원 해촉에 관한 사안의 경우 제5항의 규정에 따른다.

제7조(교육기관 활용)

① 도지사는 「고등교육법」에 따른 교육기관과 연계하여 청년이 취업을 위하여 필요한 지식과 기술을 익힐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지원을 하는 경우 「고등교육법」에 의한 교육기관에 대하여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8조(관계기관·단체와의 협력 등)

① 도지사는 청년일자리 지원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중앙행정기관(그 소속·산하기관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와 같다) 및 일자리 관련 기관·단체 등과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필요할 경우 중앙행정기관, 일자리창출 관련 기관·단체 등과 일자리 창출을 위한 협약 등을 체결할 수 있다.

제9조(행·재정적 지원)

① 도지사는 청년일자리 창출 사업을 수행하는 관련 기관이나 비영리단체 등에 대한 행정적 지원 또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그 사업에 따른 소요경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경비지원 방법·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전북특별자치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개정 2015. 5. 1., 2023. 12. 8.>

③ 도지사는 청년일자리 창출에 기여한 기업에게 「전북특별자치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조례」에 따라 우대하여 지원할 수 있다.<개정 2023. 12. 8.>

④ 도지사는 청년일자리 창출에 기여한 기업·단체 등에 대해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17. 전북특별자치도 경제교육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Ⅰ. 종합의견

< 평가결과 >

□ 평가대상

조 례 명	전북특별자치도 경제교육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구분	자치조례	관계 법령	-
제정·시행일	2020. 2. 28. 제정	최근개정·시행일	2023. 12. 8.
소관 부서	일자리민생경제과	소관 상임위	경제산업건설

□ 평가의견

평가항목	평가의견	주요 내용
종합의견	개정/일반	- 법제처 자치법규 입안기준에 따른 정비(용어 수정, 당연규정 삭제) 검토 - 시행규칙은 개별 조례에서 위임이 없더라도 조례의 집행에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규칙으로 규정할 수 있으므로 삭제 권고 - 조례 제10조에서 협의회를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조례 제13조제2항에서 연간 1회이상 개최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협의회 개최 관련 실적을 확인할 수 없다는 점에서 협의회 구성 및 운영 권고. 협의회의 운영이 실질적으로 어려운 경우 협의회를 정기적으로 개최하도록 하고 있는 현재의 규정을 개정하여 필요한 경우 협의회를 구성하여 운영하도록 규정을 개정하는 방안을 검토할 수 있을 것임
심층분석 결과		- 타 시·도 사례와 비교하여 선진적인 규정의 도입을 검토하였으나 추가적인 시사점을 발견하기 어려움. 개정의견과 같이 개정하도록 권고함
1. 입법 근거 및 적법성	적정	자치사무의 범위에서 적절하게 제정되었음
2. 조례의 실효성	적정	제7조에 지원 조항을 통해 조례의 실효성을 확보하고 있음
3. 조례 내용의 적정성	적정	전북특별자치도의 경제교육을 활성화하기 위한 조례로, 조례 내용이 적정함
4. 조례의 공평성	적정	장애, 성별, 나이 등에 관한 사회적 편견, 고정관념이 반영된 표현 및 차별 규정 없음

5. 주민 수용성	적정	조례의 체계 및 용어가 주민이 알기 쉽게 되어 있음
6. 전북자치도 현실부합성	적정	전북특별자치도에서 시행될 경제 교육을 지원하기 위하여 제정된 본 조례는 행정수요를 반영하고 있어 전북특별자치도 현실에 부합함
7. 위원회 운영의 적정성	확인 필요	제10조에서 협의회를 설치하도록 하고 있는데, 협의회 운영의 실적을 확인할 수 없음(2023년 12월 개정사항으로 2024년 이후 실적으로 적정성을 평가할 필요가 있음)
※ 기타 의견	없음	

Ⅱ. 항목별 평가 결과

평가항목	세부항목	척도	의견 및 자료
1. 입법의 근거 및 적법성	1) 위임조례인가 자치사무에 관한 조례인가?	□ 위임조례 ☑ 자치사무에 관한 조례	
	2) 조례에서 규정하고 있는 위임근거가 올바른가?	□ 그렇다 □ 그렇지않다 ☑ 해당사항 없음	
	3) 조례가 위임범위에서 적절하게 제·개정되었는가?	□ 그렇다 □ 그렇지않다 ☑ 해당사항 없음	
	4) 조례 제.개정 이후 동일 또는 유사한 법령이나 제도가 만들어졌거나 근거법령이 개정 또는 폐지되었는가?	□ 그렇다 □ 그렇지않다 ☑ 해당사항 없음	
	5) 조례에서 주민의 권리제한, 의무부과, 벌칙 부과, 규제사항에 대한 법률위임이 있는가?	□ 그렇다 □ 그렇지않다 ☑ 해당사항 없음	
	6) 상위법령에 위배되는 조항이 있는가?	□ 그렇다 □ 그렇지않다 ☑ 해당사항 없음	
2. 조례의 실효성	1) 조례의 시행과정에서 다른 조례와의 충돌이나 모순이 발생하고 있는가?	□ 그렇다 ☑ 그렇지않다 □ 해당사항 없음	
	2) 이 조례와 유사 또는 동일한 다른 조례가 제정 및 시행되고 있어 통합할 필요가 있는가?	□ 그렇다 ☑ 그렇지않다 □ 해당사항 없음	
	3) 조례에 따른 계획이 수립·시행되고 있는가?	□ 그렇다 ☑ 그렇지않다 □ 해당사항 없음	-기획재정부 추진계획 미 수립
	4) 조례에서 집행기관 등에 책무를 부여하고 있는가?	□ 그렇다 ☑ 그렇지않다 □ 해당사항 없음	

평가항목	세부항목	척도	의견 및 자료
	5) 조례에서 부여한 책무와 관련사업을 집행기관이 잘 이행하고 있는가?	□ 그렇다 □ 그렇지않다 ☑ 해당사항 없음	
3. 조례 내용의 적정성	1) 조례에 재정지원 관련 규정이 있는가?	☑ 그렇다 □ 그렇지않다 □ 해당사항 없음	-제9조(지원)
	2) 조례 시행에 필요한 예산 확보와 집행이 잘 이루어지고 있는가?	☑ 그렇다 □ 그렇지않다 □ 해당사항 없음	
	3) 지원대상이 집행이 가능한 정도로 구체화 되어 있는가?	□ 그렇다 □ 그렇지않다 ☑ 해당사항 없음	
	4) 조례에 따른 위탁사무가 위탁대상으로 적정한가?	□ 그렇다 □ 그렇지않다 ☑ 해당사항 없음	
4. 조례의 공평성	1) 조례에서 장애인, 성별 등의 특정계층이나 특정지역을 차별하는 조항이 있는가?	□ 그렇다 ☑ 그렇지않다 □ 해당사항 없음	
	2) 조례에서 정한 차별이 합리적인가?	□ 그렇다 □ 그렇지않다 ☑ 해당사항 없음	
5. 주민 의견 수용성	1) 조례 제·개정 시 입법예고는 하였는가?	☑ 그렇다 □ 그렇지않다 □ 해당사항 없음	
	2) 조례 제·개정 시 공청회, 세미나 등 이해관계인 및 주민에 대한 의견 수렴 과정이 있었는가?	☑ 그렇다 □ 그렇지않다 □ 해당사항 없음	
	3) 조례와 관련한 민원(청원, 진정, 소송 등)이 제기되거나 개정 또는 폐지 요구가 있었는가?	□ 그렇다 □ 그렇지않다 ☑ 해당사항 없음	
	4) 조례의 체계나 사용 되어진 용어가 주민이 알기 쉽게 되어 있는가?	☑ 그렇다 □ 그렇지않다 □ 해당사항 없음	
6. 위원회 운영의 적정성	1) 조례로 위원회를 구성하도록 되어 있는가?	☑ 그렇다 □ 그렇지않다 □ 해당사항 없음	-제10조(협의회의 설치)

평가항목	세부항목	척도	의견 및 자료
	2) 위원회가 법정위원회인가 조례로 설치하도록 한 위원회인가?	☐ 법정위원회 ☑ 조례로 정한 위원회 ☐ 해당사항 없음	
	3) 위원회 위원의 성별 구성이 적정한가?	☐ 그렇다 ☐ 그렇지않다 ☑ 해당사항 없음	
	4) 위원회가 법령이나 조례에서 정한 회의개최 운영 실적이 있고 관련 회의록을 보존하고 있는가?	☐ 그렇다 ☑ 그렇지않다 ☐ 해당사항 없음	
	5) 위원회를 계속 설치·운영할 필요성이 있는가?	☑ 그렇다 ☐ 그렇지않다 ☐ 해당사항 없음	
	6) 해당 위원회와 유사한 다른 위원회와의 기능적 통합이 필요한가?	☐ 그렇다 ☐ 그렇지않다 ☑ 해당사항 없음	
7. 종합 의견	1) 이 조례를 현행대로 유지할 필요가 있는가?	☑ 그렇다 ☐ 그렇지않다	
	2) 이 조례를 개정할 이유가 있는가? (해당사항 모두 표기)	☐ 위임근거에 불부합 ☐ 위임근거 불명확 ☐ 법령의 위임 없는 규제 정비 필요 ☐ 다른 조례와의 상충 및 모순 ☐ 조례 시행의 문제점 발생 ☐ 조례의 공평성 문제 ☑ 알기 쉬운 법령정비 기준에 따른 정비 필요 ☑ 위원회 관련 규정개정 필요 ☑ 그 밖의 사유	-협의회 관련 규정 정비
	3) 이 조례를 폐지할 사유가 있는가? (해당사항 모두 표기)	☐ 다른 유사한 조례와의 통합 운영 필요성 ☐ 조례 시행 불가능 ☐ 최근 3년간 조례 관련 운영 실적 전무 ☐ 기타	
	4) 그 밖의 이 조례와 관련된 의견이 있는가?	☐ 있다 ☐ 없다	

Ⅲ. 세부내용

조례명	전북특별자치도 경제교육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소관 부서 의견(팀)

○ **최종의견 : 자치사무이긴 하나, 경제교육지원법과의 대응 및 경제교육 활성화 지원 근거가 필요하여 조례를 유지해야 함**

○ **내용**

- (2-3) 기획재정부 경제교육 추진계획에 따른 계획을 수립 예정임
- (2-5) 연 2회 전북특별자치도, 경제교육센터, 민간단체, 학계 등의 인사를 초청해서 협력체계를 구축함
- (2-5) 조례 제15조에 따라 전주대 산학협력단(전북경제교육센터)에 업무를 위탁함
- (3-1) 조례 제9조에 따라 재정지원을 실시할 수 있음
- (3-3) 2022년부터 2024년까지 아래와 같이 예산을 확보하고 집행함

■ 종합의견	개정 권고/일반 정비

◎ 입법평가 세부의견

○ **평가항목별 검토**

평가항목	평가항목별 검토 내용
1. 입법 근거 및 적법성	자치사무의 범위에서 적절하게 제정되었음
2. 조례의 실효성	제7조에 지원 조항을 통해 조례의 실효성을 확보하고 있음
3. 조례 내용의 적정성	전북특별자치도의 경제교육을 활성화하기 위한 조례로, 조례 내용이 적정함
4. 조례의 공평성	장애, 성별, 나이 등에 관한 사회적 편견, 고정관념이 반영된 표현 및 차별 규정 없음
5. 주민 수용성	조례의 체계 및 용어가 주민이 알기 쉽게 되어 있음
6. 전북자치도 현실부합성	전북특별자치도에서 시행될 경제 교육을 지원하기 위하여 제정된 본 조례는 행정수요를 반영하고 있어 전북특별자치도 현실에 부합함
7. 위원회 운영의 적정성	제10조에서 협의회를 설치하도록 하고 있는데, 협의회 운영의 실적을 확인할 수 없음(2023년 12월 개정사항으로 2024년 이후 실적으로 적정성을 평가할 필요가 있음)
※ 기타 의견	없음

○ **연도별 사업내용 및 예산/집행액**

(단위: 천원)

연도	사업명	필요예산	확보예산	집행액	집 행 내 역
2022	경제교육 활성화 지원	50,000	50,000	50,000	경제교육센터 운영 등 초중고 경제교육 지원 등 취약계층 경제교육 지원 등
2023					
2024					

○ **조례의 입법목적 달성도 또는 부수효과 분석**

- 조례 목적달성도 평가
  - 조례 내용에 따라 다양한 계층의 전북특별자치도민에게 경제교육을 실시하고 있다는 점에서 조례의 목적이 달성되고 있음
- 부수효과
  - 전북특별자치도민 경제교육을 통해 기본적인 경제 상식을 갖출 수 있음

○ **타 시·도 유사 조례와 비교 또는 타 시·도 자치법규(정책) 동향**

전북특별자치도 경제교육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서울특별시 경제교육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경상북도 경제교육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경기도 경제교육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제3조(기본목표)	제3조(기본원칙)	제3조(도지사의 책무)	제3조(기본원칙)
제4조(도지사의 책무)	제4조(책무)	제4조 삭제<2023.11. 6.>	제4조(적용범위)
제5조(교육감의 책무)	제5조(경제교육 활성화 기본계획)	제5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5조(도지사의 책무)
제6조(계획의 수립)	제6조(경제교육활성화 위원회 설치 및 기능)	제6조(경제교육 기본계획)	제6조(경제교육 기본계획)
제7조(경제교육의 사업 지원)	제7조(위원회 구성)	제7조(경제교육추진위원회)	제7조(재정지원)
제8조(전문인력 양성)	제8조(위원의 임기)	제8조(회의)	제8조(경제교육추진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
제9조(지원)	제9조(위원장의 직무)	제9조(경제교육 추진사업)	제9조(전문인력 양성)
제10조(협의회의 설치)	제10조(위원회 운영)	제10조(경제교육인력 양성)	제10조(경제교육의 위탁)
제11조(협의회의 구성)	제11조(경제교육인력의 양성 등)	제11조(경제교육의 위탁)	제11조(교류협력 등)
제12조(위원의 해촉)	제12조(경제교육의 위탁)	제12조(재정지원)	제12조(공청회 등)
제13조(협의회의 운영)	제13조(재정지원)	제13조(교류협력 등)	제13조(시행규칙)
제14조(수당 등)	제14조(교류협력)	제14조(공청회 등)	
제15조(업무의 위탁)	제15조(시행규칙)	제15조(시행규칙)	
제16조(교류협력 등)			
제17조(시행규칙)			

- 타 시·도의 조례와 실질적인 규정내용이 유사하여 특별한 시사점 없음

Ⅳ. 개정의견

현 행	개정안	비고
제2조(정의) 생략 1. "경제교육"이란 「경제교육지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교육을 말한다. 2. "경제교육단체"란 법 제2조제2호에 따른 기관 또는 단체를 말한다. 3. 생략 4. "경제교육인력"이란 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제2조(정의) 현행과 같음 1. "경제교육"이란 「경제교육지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다. 2. "경제교육단체"란 법 제2조제2호에 따른다. 3. 현행과 같음 4. "경제교육인력"이란 법 제2조제3호에 따른다.	-상위법령의 용어정의 규정을 그대로 규정할 경우에는 "「○○법」 제○조에 따른다"고 표현함
제3조(기본목표) 생략	제3조(기본이념) 현행과 같음	-기본이념의 규정은 기본원칙, 기본방향 등 여러 가지로 표현하고 있으나 통일을 기하기 위해 원칙적으로 "기본이념"으로 규정하도록 정비 권고
제4조(도지사의 책무) 전북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경제교육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관련 시책 및 사업을 적극 발굴하여 추진하고, 이에 수반되는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	제4조(도지사의 책무) 전북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경제교육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관련 시책 및 사업을 적극 발굴하여 추진하고, 필요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	-문장 정비
제7조(경제교육의 사업지원) 생략 1. 생략 2. 그 밖에 경제교육지원사업과 경제교육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7조(경제교육의 사업지원) 현행과 같음 1. 현행과 같음 2. 그 밖에 도지사가 경제교육지원사업과 경제교육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주어를 명시하여 구체적인 문장으로 정비
제10조(협의회의 설치) ① 도지사는 경제교육 활성화를 위한 제반 시책을 심의·조정하고, 전북특별자치도·민간단체·학계 각 분야별 상호협력 체계를 강화하기 위하여 전북특별자치도경제교육추진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설치한다.	제10조(협의회의 설치) ① 도지사는 경제교육 활성화를 위한 제반 시책을 심의·조정하기 위하여 전북특별자치도 경제교육 추진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설치한다.	-상호협력체계 강화는 제16조에 명시되어 있어, 중복되는 자구 삭제 -띄어쓰기 수정
제12조(위원의 해촉) 위원의 해촉은 「전북특별자치도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7조에 따른다.	<삭제>	-「전북특별자치도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명시되어 있어 재기재할 실익이 없으므로 삭제 권고

현 행	개정안	비고
제13조(협의회의 운영) ① 생략 ② 정기회의는 연간 1회 이상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소집한다. ③ 생략	제13조(협의회의 운영) ① 현행과 같음 ②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소집한다. ③ 현행과 같음	-필요한 경우 협의회를 소집하여 개최하도록 규정 정비 권고
제14조(수당 등) 협의회에 참석한 위촉직 위원에 대하여는 「전북특별자치도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5조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4조(수당 등) 협의회에 참석한 위촉직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수당 및 여비에 관해 선언적인 의미만을 규정하면, 그에 따른 구체적인 사항은 당연히 「전북특별자치도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적용 받으므로 규정의 실익이 없음(법제처, 2023년 우수조례 및 자치법규 입법컨설팅 사례집, 226면)
제15조(업무의 위탁) ① 생략 ② 제1항에 따라 경제교육을 위탁하는 경우, 필요한 절차와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전북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 또는 「전북특별자치도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대행에 관한 조례」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15조(업무의 위탁) ① 현행과 같음 ② <삭제>	-업무위탁에 대한 선언적인 의미만을 규정하면, 그에 따른 구체적인 사항은 당연히 「전북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를 적용 받으므로 규정의 실익이 없음(법제처, 2023년 우수조례 및 자치법규 입법컨설팅 사례집, 108면)
제1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삭제>	-시행규칙은 개별 조례에서 위임이 없더라도 조례의 집행에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규칙으로 규정할 수 있으므로 삭제 권고

심층분석 관련 검토

○ **심층분석 사유**

- 타 시·도 사례와 비교하여 선진적인 규정의 도입을 검토하였으나 추가적인 시사점을 발견하기 어려움. 개정의견과 같이 개정하도록 권고함

□ 참고자료 1 – 위원회 관련 실적

○ **구성**

- 협의회가 구성되어 있지 않음

○ **개최 실적**

- 개최실적 없음

□ 참고자료 2 – 조례 관련 연구 자료

○ 연구자료 1

- 전북연구원 주관 전라북도 경제교육 활성화사업 실태분석 및 발전방향 보고서 작성 (2023)

○ 연구배경

- 1997년 외환위기, 2003년 신용카드 사태,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그리고 코로나 19 등 국민경제에 영향을 미치는 국내외 사건 등으로 경제교육에 대한 필요성이 확대되고 있음
- 경제교육은 미래의 시장주체를 포함한 시장경제체제 내에서 생활하는 모든 사람을 대상으로 시장경제에서 일어나는 생산, 소비, 금융 등 경제활동을 교육하는 것으로 정의됨
- 한국개발연구원의 '경제교육 실태에 관한 의견조사'에 따르면 응답자의 대다수는 경제교육이 필요하고, 일상생활에 도움이 된다고 하였음
- 정부는「경제교육지원법」에 근거하여 우리 사회 구성원들이 적절한 시기에 경제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다양한 방식으로 지원하고 있음
- 그러나 현재 경제교육의 주요 대상이 청소년이 주를 이루고 경제교육 프로그램도 합리적 소비생활, 재무설계 등 원론적 수준에 머무르고 있고 가계재정, 주택 및 자산 구입에 관한 경제적·법률적 처리 과정, 금융 카운슬링, 국내외 정책의 경제적 해석 등과 같은 실생활과 밀착된 프로그램이 부족하다는 지적들이 제기됨
- 따라서 급변하는 경제환경 변화에 대한 이해와 합리적인 경제활동을 위한 의사결정을 돕고 조기 경제교육에 대한 요구에 부응하기 위해 지역경제교육이 활성화될 필요가 있음

○ 연구목적

- 본 연구의 목적은 현재 운영되고 있는 전라북도 경제교육의 문제점을 살펴보고 지역경제 교육 활성화 방향을 제시하는 데 있음
- 이를 위해 전라북도 경제교육 활성화 관련 정책 및 제도 검토, 경제교육 기관현황 파악, 국내외 경제교육 사례조사, 전라북도민 경제교육 인식 및 수요조사 등을 통해 전라북도 경제교육의 문제점을 제시하고자 하였음
- 연구결과 전라북도 경제교육의 목표와 가치, 기본방향 및 추진과제를 제안하고자 하였음

□ 참고자료 3 – 조례 관련 보도 자료

○ 보도자료 1

전북특별자치도, 전 연령층 대상 맞춤형 경제교육으로 지역경제 발전 앞장, 전북도민일보[29)]

전북특별자치도가 추진하고 있는 '경제교육 활성화 지원사업'이 도민의 경제적 자립 역량을 강화하는 데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

24일 전북자치도에 따르면 이 사업은 전주대학교 산학협력단이 주관, 도민들이 경제에 대해 보다 깊이 있게 이해하고, 개인의 경제적 결정을 내릴 때 보다 신중하게 접근할 수 있도록 돕고자 지난 2017년부터 추진됐다.

초등학생부터 어르신에 이르기까지 전 생애주기별 맞춤형 경제교육 제공이 핵심이다.

이를 통해 지난해까지 학생, 취약·소외계층, 일반인 등 약 18만4,000명이 교육을 받았다.

이는 그동안 지역사회의 경제적 이해력과 금융 문해력을 향상시키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특히, 대학의 전문 지식과 자원을 활용해 실시됨에 따라 도민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제공하고, 지역 경제의 자립성을 높이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하지만 기획재정부가 지난해 실시한 전 국민 경제이해력 조사 결과, 수도권(61점)과 비수도권(56.2점) 사이에 점수 격차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별 경제교육의 중요성을 더욱 부각되고 있다는 의미다.

이에 전북자치도는 이러한 격차를 줄이고자 도민들에게 생애주기별 경제교육을 제공하겠다는 방침이다.

현재 추진되는 경제교육 활성화 지원 사업의 효율성을 높여 더 다양한 연령대와 계층에서 맞춤형 경제 교육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소비, 진로 탐색, 노후 대비, 창업 체험, 금융 사기 예방 등의 주제를 지속적으로 추진하는 한편, 4차 산업혁명, 금융위기 등 변화하는 사회 흐름에 맞는 위기관리 교육도 한층 더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전북자치도는 특히, 최신 경제 트렌드와 사회 변화를 반영한 교육 내용을 지속적으로 업데이트해 모든 도민이 시대의 변화에 적응하고, 경제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는 복안이다.

전북자치도 관계자는 "경제교육 사업은 지역 내에서 경제적 이해와 역량을 강화하고, 경제적 자립과 지속 가능한 발전을 추구하는 중요한 단계"라며 "앞으로도 더 많은 도민이 이 프로그램을 통해 경제적 지식을 쌓고, 자신의 경제적 미래를 보다 밝게 만들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29) https://www.domin.co.kr/news/articleView.html?idxno=1462845

붙임 1 사업 관련 추진실적

□ 연도별 사업 및 예산 집행 실적

○ 제9조(지원)

- 매년 도비 50백만원의 예산이 편성/집행되고 있음 (단위: 천원)

연도	사업명	필요예산	확보예산	집행액	집행내역
2022	경제교육 활성화 지원	50,000	50,000	50,000	경제교육센터 운영 등 초중고 경제교육 지원 등 취약계층 경제교육 지원 등
2023					
2024					

○ 세부사업개요(2024)

- 사업기간 : 2024. 1. 01.~ 2024. 12. 31
- 사업지역 : 전북특별자치도 내
- 사 업 량 : 초등방문경제교육 18회, 중학생방문교육 49회, 고등학생방문교육 18회, 지역아동센터교육 25회, 대학생양성교육 1회, 강사역량강화 2회, 실버경제교육 40회, 협동강의 10회, 학교 밖 실용화 경제교육 프로그램 진행
- 사업내용 : 초·중·고등학교 방문교육 및 취약지역 아동·청소년에 대한 경제교육 제공
- 비목별 세부 산출내역(전주대 산학협력단)

구분	지출항목			금 액	비 고
	인건비	보조인건비		2,000,000	아르바이트 보조업무 1만원×25시간×8개월×1명
교육운영	강사료	강사료		40,050,000	강사Ⅰ350,000원(2h) 35만원×71회=24,850,000원 강사Ⅱ 220,000원(2h) 22만원×23회=5,060,000원 강사Ⅴ 170,000원(2h), 160,000(2h) 16만원×40회=6,400,000원 대학생 강사 100,000(2h) 10만원×25회=2,500,000원 보조 40,000(1h)×11회=440,000원 40,000(2h)×10회=800,000원
		강사여비		1,100,000	강사여비 : 20,000원×55회(4시간이상)
	경비	교육관련 비용 (수용비)	센터사업추진비	2,550,000	교육재료비 : 현수막, 교재인쇄, 교육재료
			센터업무추진비	2,500,000	연구과제추진비
	출장여비	출장여비		500,000	출장여비
	운영비	사무용품구입		800,000	복사용지등 사무용품 구입
	운영비	인쇄(제본)		500,000	
	합계			**50,000,000**	

붙임 2 평가대상 조례

전북특별자치도 경제교육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 2024. 1. 18.] [전북특별자치도조례 제5399호, 2023. 12. 8., 일부개정]

전북특별자치도(일자리민생경제과), 063-280-2794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전북특별자치도민이 경제 관련 지식을 습득하고 합리적인 경제의식의 함양과 바람직한 경제주체가 되도록 경제교육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 12. 8.>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경제교육”이란 「경제교육지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교육을 말한다.
2. “경제교육단체”란 법 제2조제2호에 따른 기관 또는 단체를 말한다.
3. “경제교육 학습체계”란 경제교육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제도 및 교육지원 프로그램 등을 말한다.
4. “경제교육인력”이란 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제3조(기본목표) 경제교육은 다음 각 호의 기본목표에 따라 계획되고 추진되어야 한다.<개정 2023. 12. 8.>

1. 전북특별자치도민의 합리적인 경제생활에 필요한 지식과 정보의 적극적인 제공
2. 신용경제사회에 대응하는 합리적인 경제주체 양성
3. 세계 경제시대에 지역경제를 선도할 경제인 양성 토대 구축

제4조(도지사의 책무) 전북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경제교육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관련 시책 및 사업을 적극 발굴하여 추진하고, 이에 수반되는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개정 2023. 12. 8.>

제5조(교육감의 책무) 전북특별자치도교육감은 미래의 주역인 청소년에게 필요한 경제지식을 습득하게 하고 올바른 경제의식 형성을 통해 바람직한 경제주체로 성장할 수 있도록 경제교육을 교육과정 등에 적극 반영하도록 노력한다.<개정 2023. 12. 8.>

제6조(계획의 수립)

① 도지사는 경제교육의 체계적인 추진을 위하여 5년마다 전북특별자치도 경제교육 활성화 중장기계획(이하 “중장기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고 매년 시행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한다.<개정 2023. 12. 8.>

② 제1항에 따른 중장기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

1. 경제교육의 기본 방향 및 목표
2. 경제교육 학습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3. 경제교육인력의 연수 및 활용
4. 경제교육단체 상호 간 협력망 구축에 관한 사항
5. 민간차원의 경제교육 활성화 방안 및 지원방안
6. 소외계층에 대한 경제교육 강화 방안
7. 경제교육 평가에 관한 사항

8. 사업추진을 위한 재원 조달 방안
9. 그 밖에 경제교육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사항

제7조(경제교육의 사업 지원) 도지사는 경제교육 기반조성 및 사업 지원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할 수 있다.
1. 경제교육 교재의 보급 및 지원, 경제교육사업 추진 및 기반 조성
2. 그 밖에 경제교육지원사업과 경제교육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본조신설 2023. 8. 11.]

제8조(전문인력 양성)
① 도지사는 경제교육이 체계적이고 지속적으로 시행될 수 있도록 경제교육 전문인력을 양성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경제교육에 대한 신뢰성을 확보하고 체계적인 경제교육 전문인력 양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전북특별자치도 경제교육 전문인력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할 수 있다.<개정 2023. 12. 8.>
[제13조에서 이동 , 종전 제8조는 제10조로 이동 <2023. 8. 11.>]

제9조(지원) 경제교육단체가 경제교육사업을 추진하는데 필요한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재정지원을 할 수 있다.
[제7조에서 이동 , 종전 제9조는 제11조로 이동 <2023. 8. 11.>]

제10조(협의회의 설치)
① 도지사는 경제교육 활성화를 위한 제반 시책을 심의·조정하고, 전북특별자치도·민간단체·학계 각 분야별 상호협력 체계를 강화하기 위하여 전북특별자치도경제교육추진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설치한다.<개정 2023. 12. 8.>
②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조정한다.
1. 중장기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2. 경제교육 정책의 종합적인 추진에 관한 사항
3. 경제교육단체 상호 간의 협력망 구축에 관한 사항
4. 경제교육활성화 사업 지원 및 홍보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경제교육과 관련하여 도지사가 협의회의 회의에 부치는 사항<개정 2022. 11. 4.>
[제8조에서 이동 , 종전 제10조는 제12조로 이동 <2023. 8. 11.>]

제11조(협의회의 구성)
① 협의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경제부지사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으로 선출한다.<개정 2022. 10. 21.>
②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위촉 또는 임명한다.<개정 2023. 12. 8.>
1. 전북특별자치도(이하 “전북자치도”라 한다) 및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소속 공무원
2. 지역 경제교육단체의 임직원
3. 경제교육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등
③ 위촉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④ 협의회의 사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해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전북자치도 경제교육 업무 담당과장이 된다.<개정 2023. 12. 8.>
[제9조에서 이동 , 종전 제11조는 제13조로 이동 <2023. 8. 11.>]

제12조(위원의 해촉) 위원의 해촉은 「전북특별자치도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7조에 따른다.<개정 2023. 12. 8.>

[제10조에서 이동 , 종전 제12조는 제14조로 이동 <2023. 8. 11.>]

제13조(협의회의 운영)

① 위원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② 정기회의는 연간 1회 이상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소집한다.

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1조에서 이동 , 종전 제13조는 제8조로 이동 <2023. 8. 11.>]

제14조(수당 등) 협의회에 참석한 위촉직 위원에 대하여는 「전북특별자치도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5조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23. 12. 8.>

[제12조에서 이동 , 종전 제14조는 제17조로 이동 <2023. 8. 11.>]

제15조(업무의 위탁)

① 도지사는 경제교육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이 조례에 따른 업무의 일부를 법인 또는 경제교육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경제교육을 위탁하는 경우, 필요한 절차와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전북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 또는 「전북특별자치도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대행에 관한 조례」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23 .12. 8.>

[본조신설 2023. 8. 11.]

제16조(교류협력 등) 도지사는 경제교육의 기반구축 및 활성화를 위하여 다른 지방자치단체, 경제교육 관련 법인·단체 등과 교류 및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3. 8. 11.]

제1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18. 전북특별자치도 고등학교졸업자 고용촉진 조례

Ⅰ. 종합의견

< 평가결과 >

□ 평가대상

조 례 명	전북특별자치도 고등학교졸업자 고용촉진 조례		
조례 구분	자치조례	관계 법령	-
제정·시행일	2013. 7. 12. 제정	최근개정·시행일	2023. 12. 8. 개정
소관 부서	일자리민생경제과	소관 상임위	경제산업건설

□ 평가의견

평가항목	평가의견	주요 내용
종합의견	통합/일반	- 문장 표현 정비 및 띄어쓰기 정비 권고 - "고등학교졸업자"는 「전북특별자치도 청년일자리 창출 촉진에 관한 조례」의 "청년"에 포함되므로 유사 조례(「전북특별자치도 청년일자리 창출 촉진에 관한 조례」)와 통합 검토 권고
심층분석 결과		- 양 조례의 세부 규정 내용을 살펴본바 「전북특별자치도 고등학교졸업자 고용촉진 조례」는 고등학교졸업자 고용 확대, 불이익 금지에 관한 규정이 특징적이라고 할 것임. 「전북특별자치도 청년일자리 창출 촉진에 관한 조례」를 기반으로 하되 고등학교졸업자 고용 확대와 불이익 금지에 관한 규정을 추가하도록 할 필요가 있음. 이와 같은 내용을 담아 통합안을 제안함 - 이와 같이 통합하는 경우 「전북특별자치도 고등학교졸업자 고용촉진 조례」는 폐지 권고
1. 입법 근거 및 적법성	적정	자치사무의 범위에서 적절하게 규정되었음
2. 조례의 실효성	개정	고등학교졸업자 고용촉진 대책이 이미 「전북특별자치도 청년일자리 창출 촉진에 관한 조례」에 따라 수립한 「2024년 전북특별자치도 청년일자리 창출 계획」에 포함되었고, 조례에 따른 별도의 사업도 진행되지 않아 조례의 실효성이 낮음
3. 조례 내용의 적정성	적정	조례의 목적에 맞도록 규정되어 내용은 적정한 것으로 평가됨
4. 조례의 공평성	적정	장애, 성별, 나이 등에 관한 사회적 편견, 고정관념이 반영된 표현 없음

5. 주민 수용성	적정	조례의 체계 및 용어가 주민이 알기 쉽게 되어 있음
6. 전북자치도 현실부합성	적정	고교 졸업자 취업 지원책 발전에 기여하여 전북특별자치도 현실에 부합함
7. 위원회 운영의 적정성	-	위원회 운영 관련 규정이 없음
※ 기타 의견	없음	

Ⅱ. 항목별 평가 결과

평가항목	세부항목	척도	의견 및 자료
1. 입법의 근거 및 적법성	1) 위임조례인가 자치사무에 관한 조례인가?	☐ 위임조례 ☑ 자치사무에 관한 조례	
	2) 조례에서 규정하고 있는 위임근거가 올바른가?	☐ 그렇다 ☐ 그렇지않다 ☑ 해당사항 없음	
	3) 조례가 위임범위에서 적절하게 제·개정되었는가?	☐ 그렇다 ☐ 그렇지않다 ☑ 해당사항 없음	
	4) 조례 제.개정 이후 동일 또는 유사한 법령이나 제도가 만들어졌거나 근거법령이 개정 또는 폐지되었는가?	☐ 그렇다 ☐ 그렇지않다 ☑ 해당사항 없음	
	5) 조례에서 주민의 권리제한, 의무부과, 벌칙 부과, 규제사항에 대한 법률위임이 있는가?	☐ 그렇다 ☐ 그렇지않다 ☑ 해당사항 없음	
	6) 상위법령에 위배되는 조항이 있는가?	☐ 그렇다 ☐ 그렇지않다 ☑ 해당사항 없음	
2. 조례의 실효성	1) 조례의 시행과정에서 다른 조례와의 충돌이나 모순이 발생하고 있는가?	☑ 그렇다 ☐ 그렇지않다 ☐ 해당사항 없음	
	2) 이 조례와 유사 또는 동일한 다른 조례가 제정 및 시행되고 있어 통합할 필요가 있는가?	☑ 그렇다 ☐ 그렇지않다 ☐ 해당사항 없음	
	3) 조례에 따른 계획이 수립·시행되고 있는가?	☐ 그렇다 ☐ 그렇지않다 ☑ 해당사항 없음	
	4) 조례에서 집행기관 등에 책무를 부여하고 있는가?	☐ 그렇다 ☐ 그렇지않다 ☑ 해당사항 없음	

평가항목	세부항목	척도	의견 및 자료
	5) 조례에서 부여한 책무와 관련사업을 집행기관이 잘 이행하고 있는가?	□ 그렇다 □ 그렇지않다 ☑ 해당사항 없음	
3. 조례 내용의 적정성	1) 조례에 재정지원 관련 규정이 있는가?	☑ 그렇다 □ 그렇지않다 □ 해당사항 없음	-제9조
	2) 조례 시행에 필요한 예산 확보와 집행이 잘 이루어지고 있는가?	□ 그렇다 ☑ 그렇지않다 □ 해당사항 없음	
	3) 지원대상이 집행이 가능한 정도로 구체화 되어 있는가?	□ 그렇다 ☑ 그렇지않다 □ 해당사항 없음	
	4) 조례에 따른 위탁사무가 위탁대상으로 적정한가?	□ 그렇다 □ 그렇지않다 ☑ 해당사항 없음	
4. 조례의 공평성	1) 조례에서 장애인, 성별 등의 특정계층이나 특정지역을 차별하는 조항이 있는가?	□ 그렇다 ☑ 그렇지않다 □ 해당사항 없음	
	2) 조례에서 정한 차별이 합리적인가?	□ 그렇다 □ 그렇지않다 ☑ 해당사항 없음	
5. 주민 의견 수용성	1) 조례 제·개정 시 입법예고는 하였는가?	☑ 그렇다 □ 그렇지않다 □ 해당사항 없음	
	2) 조례 제·개정 시 공청회, 세미나 등 이해관계인 및 주민에 대한 의견 수렴 과정이 있었는가?	□ 그렇다 ☑ 그렇지않다 □ 해당사항 없음	
	3) 조례와 관련한 민원(청원, 진정, 소송 등)이 제기되거나 개정 또는 폐지 요구가 있었는가?	□ 그렇다 □ 그렇지않다 ☑ 해당사항 없음	
	4) 조례의 체계나 사용 되어진 용어가 주민이 알기 쉽게 되어 있는가?	☑ 그렇다 □ 그렇지않다 □ 해당사항 없음	
6. 위원회 운영의 적정성	1) 조례로 위원회를 구성하도록 되어 있는가?	□ 그렇다 ☑ 그렇지않다 □ 해당사항 없음	

평가항목	세부항목	척도	의견 및 자료
	2) 위원회가 법정위원회인가 조례로 설치하도록 한 위원회인가?	☐ 법정위원회 ☐ 조례로 정한 위원회 ☑ 해당사항 없음	
	3) 위원회 위원의 성별 구성이 적정한가?	☐ 그렇다 ☐ 그렇지않다 ☑ 해당사항 없음	
	4) 위원회가 법령이나 조례에서 정한 회의개최 운영 실적이 있고 관련 회의록을 보존하고 있는가?	☐ 그렇다 ☐ 그렇지않다 ☑ 해당사항 없음	
	5) 위원회를 계속 설치·운영할 필요성이 있는가?	☐ 그렇다 ☐ 그렇지않다 ☑ 해당사항 없음	
	6) 해당 위원회와 유사한 다른 위원회와의 기능적 통합이 필요한가?	☐ 그렇다 ☐ 그렇지않다 ☑ 해당사항 없음	
7. 종합 의견	1) 이 조례를 현행대로 유지할 필요가 있는가?	☐ 그렇다 ☑ 그렇지않다	
	2) 이 조례를 개정할 이유가 있는가? (해당사항 모두 표기)	☐ 위임근거에 불부합 ☐ 위임근거 불명확 ☐ 법령의 위임 없는 규제 정비 필요 ☑ 다른 조례와의 상충 및 모순 ☐ 조례 시행의 문제점 발생 ☐ 조례의 공평성 문제 ☑ 알기 쉬운 법령정비 기준에 따른 정비 필요 ☐ 위원회 관련 규정개정 필요 ☐ 그 밖의 사유	
	3) 이 조례를 폐지할 사유가 있는가? (해당사항 모두 표기)	☑ 다른 유사한 조례와의 통합 운영 필요성 ☐ 조례 시행 불가능 ☐ 최근 3년간 조례 관련 운영 실적 전무 ☐ 기타	
	4) 그 밖의 이 조례와 관련된 의견이 있는가?	☐ 있다 ☐ 없다	

Ⅲ. 세부내용

조례명	전북특별자치도 고등학교졸업자 고용촉진 조례

■ 소관 부서 의견(팀)

○ **최종의견 : 다른 유사한 조례와 통합하여 운영할 필요성이 있음**

○ **내용**

- (1-1) 본 조례는 「청년고용촉진특별법」과 관련된 내용을 규정하고 있는 자치조례임
- (1-4) 근거법령이 2023년 12월 31일 일부개정됨
- (2-2) 조례의 내용이 "고등학교졸업자"는 「전북특별자치도 청년일자리 창출 촉진에 관한 조례」의 "청년"에 포함되므로 해당 조례와 통합이 필요함
- (2-3) 조례 제4조에 따라 고등학교졸업자 고용촉진 대책을 수립해야하나, 해당하는 내용이 「전북특별자치도 청년일자리 창출 촉진에 관한 조례」에 따라 수립한 「2024년 전북특별자치도 청년일자리 창출 계획」에 이미 포함되어 있어 별도의 계획을 수립하지 않음
- (3-1) 조례 제9조에 따라 고등학교졸업자 고용촉진을 위하여 제6조에서 정한 고용목표를 달성한 제3조제2항에 따른 공기업 등에 대해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음
- (8-1) "고등학교졸업자"는 「전북특별자치도 청년일자리 창출 촉진에 관한 조례」의 "청년"에 포함되므로 해당 조례와 통합이 필요함

■ 종합의견	통합 권고/일반 정비

◎ 입법평가 세부의견

○ **평가항목별 검토**

평가항목	평가항목별 검토 내용
1. 입법 근거 및 적법성	자치사무의 범위에서 적절하게 규정되었음
2. 조례의 실효성	고등학교졸업자 고용촉진 대책이 이미 「전북특별자치도 청년일자리 창출 촉진에 관한 조례」에 따라 수립한 「2024년 전북특별자치도 청년일자리 창출 계획」에 포함되었고, 조례에 따른 별도의 사업도 진행되지 않아 조례의 실효성이 낮음
3. 조례 내용의 적정성	조례의 목적에 맞도록 규정되어 내용은 적정한 것으로 평가됨
4. 조례의 공평성	장애, 성별, 나이 등에 관한 사회적 편견, 고정관념이 반영된 표현 없음
5. 주민 수용성	조례의 체계 및 용어가 주민이 알기 쉽게 되어 있음

6. 전북자치도 현실부합성	고교 졸업자 취업 지원책 발전에 기여하여 전북특별자치도 현실에 부합함
7. 위원회 운영의 적정성	위원회 운영 관련 규정이 없음
※ 기타 의견	없음

○ **연도별 사업내용 및 예산/집행액**

- 사업내용 및 예산집행액 없음

○ **조례의 입법목적 달성도 또는 부수효과 분석**

- 조례 목적달성도 평가
  - 청년일자리 관련 정책 등과 중첩되는 부분이 있어 타 조례의 계획수립 등으로 대체하는 등 본 조례 자체만으로 목적달성도를 평가하기에 어려움이 있음
- 부수효과
  - 고등학교졸업자들에게도 취업 기회의 균형을 통한 사회 안정에 이바지할 수 있음

○ **타 시·도 유사 조례와 비교 또는 타 시·도 자치법규(정책) 동향**

전북특별자치도 고등학교졸업자 고용촉진 조례	전라남도 고등학교졸업자 고용촉진 조례	서울특별시 고등학교졸업자 고용촉진 조례	경기도 고등학교졸업자 고용촉진 조례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제3조(책무)	제3조(책무)	제3조(책무)	제3조(도지사 등의 책무)
제4조(고등학교졸업자 고용촉진 대책의 수립)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례)	제4조(고등학교졸업자 고용촉진 대책의 수립)	제4조(고용촉진 대책의 수립)
제5조(고등학교졸업자 실태조사 등)	제5조(고등학교졸업자 고용촉진 대책의 수립)	제5조(고등학교졸업자 실태조사 등)	제5조(실태조사 등)
제6조(고등학교졸업자 고용 확대)	제6조(실태조사 등)	제6조(고등학교졸업자 고용 확대)	제6조(우선 채용)
제7조(고등학교졸업자 불이익 금지)	제7조(고용 확대)	제7조(고등학교졸업자 불이익 금지)	제7조(불이익 금지)
제8조(관계기관·단체와의 협력 등)	제8조(불이익 금지)	제8조(관계기관·단체와의 협력 등)	제8조(관계기관·단체와의 협력 등)
제9조(행정적·재정적 지원)	제9조(관계기관·단체와의 협력 등)	제9조(행정적·재정적 지원)	제9조(행정적·재정적 지원)
제10조(시행규칙)	제10조(행정적·재정적 지원)	제10조(시행규칙)	제10조(시행규칙)
	제11조(시행규칙)		

- 타 시·도의 조례가 실질적인 규정내용이 유사하여 특별한 시사점 없음

Ⅳ. 개정의견

현 행	개정안	비고
제8조(관계기관·단체와의 협력 등) ① 도지사는 고등학교졸업자 고용촉진 지원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중앙행정기관(그 소속·산하기관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와 같다) 및 일자리 관련 기관·단체 등과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② 생략	제8조(관계기관·단체와의 협력 등) ① 도지사는 고등학교졸업자 고용촉진 지원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중앙행정기관(그 소속·산하기관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및 일자리 관련 기관·단체 등과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② 현행과 같음	-문장 표현 정비 권고
제9조(행정적·재정적 지원) ① 생략 ② 제1항에 따른 경비지원 방법·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전북특별자치도 지방보조금 관리조례」에 따른다.	제9조(행정적·재정적 지원) ① 현행과 같음 ② <삭제>	-재정지원에 관해 선언적인 의미만을 규정하면, 그에 따른 구체적인 사항은 당연히 「전북특별자치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적용 받으므로 규정의 실익이 없음(법제처, 2023년 우수조례 및 자치법규 입법컨설팅 사례집, 107면)
제1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삭제>	-시행규칙은 개별 조례에서 위임이 없더라도 조례의 집행에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규칙으로 규정할 수 있으므로 삭제 권고

심층분석 관련 검토

○ **심층분석 사유**

- 「전북특별자치도 고등학교졸업자 고용촉진 조례」에 따른 "고등학교졸업자"의 개념이 「전북특별자치도 청년일자리 창출 촉진에 관한 조례」의 "청년"의 개념에 포함되므로 통합을 검토할 수 있음. 통합 검토 권고

○ **심층분석**

- 통합 검토의 대상이 되는 「전북특별자치도 고등학교졸업자 고용촉진 조례」와 「전북특별자치도 청년일자리 창출 촉진에 관한 조례」의 구성체계를 살펴봄

전북특별자치도 청년일자리 창출 촉진에 관한 조례	전북특별자치도 고등학교졸업자 고용촉진 조례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제3조(책무)	제3조(책무)
제4조(청년일자리 창출계획)	**제4조(고등학교졸업자 고용촉진 대책의 수립)**
제5조(실태조사)	제5조(고등학교졸업자 실태조사 등)
제6조(위원회)	**제6조(고등학교졸업자 고용 확대)**
제7조(교육기관 활용)	**제7조(고등학교졸업자 불이익 금지)**
제8조(관계기관·단체와의 협력 등)	제8조(관계기관·단체와의 협력 등)
제9조(행·재정적 지원)	제9조(행정적·재정적 지원)
제10조(시행규칙)	제10조(시행규칙)

- 통합검토를 위하여 양 조례의 구성체계상 내용상 차이가 있는 규정의 세부내용을 살펴봄

전북특별자치도 청년일자리 창출 촉진에 관한 조례	전북특별자치도 고등학교졸업자 고용촉진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청년고용촉진 특별법」에 따라 전북지역 청년들의 일자리 창출을 촉진함으로써 지속적인 경제발전과 사회 안정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청년고용촉진 특별법」에 따라 전북특별자치도 지역 고등학교졸업자들의 일자리 창출을 촉진하여 지속적인 경제발전과 사회 안정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청년고용촉진 특별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고등학교졸업자"란 「초·중등교육법」제2조제3호에 따른 고등학교·고등기술학교 졸업자(졸업예정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와 같은 법 시행령 제98조에 따라 고등학교졸업자와 동등한 학력을 인정받은 자 중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대학 또는 학교에 진학하지 아니한 청년을 말한다.

전북특별자치도 청년일자리 창출 촉진에 관한 조례	전북특별자치도 고등학교졸업자 고용촉진 조례
제3조(책무) ① 전북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청년의 고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대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1. 청년 고용 촉진을 위한 인력수급 전망 2. 청년 미취업자 실태조사 및 지원 방안 3. 직업 지도, 취업 알선 및 직업능력개발훈련 방안 4. 청년 일자리 제공 기업에 대한 장려책 마련 ② 도지사는 청년 미취업자의 고용이 촉진될 수 있는 사회적·경제적 환경을 마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기업 등은 청년 고용을 촉진하기 위한 전북특별자치도의 대책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3조(책무) ① 전북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고등학교졸업자의 고용이 촉진될 수 있는 사회적·경제적 환경을 조성하여야 한다. ② 전북특별자치도(이하 "전북자치도"라 한다)가 설립한 투자·출연·출자기관,「전북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에 따른 수탁기관(이하 "공기업 등"이라 한다)은 고등학교졸업자의 고용을 촉진하기 위한 전북자치도의 대책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4조(청년일자리 창출계획) ① 도지사는 매년 청년일자리 창출계획을 수립하여 청년 고용안정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청년일자리 창출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지역 산업동향 및 청년 고용동향 2. 청년 일자리 개발과 보급에 관한 사항 3. 청년 일자리 창출을 위한 재정지원에 관한 사항 4. 청년 일자리 창출을 위한 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 5.「고등교육법」에 따른 교육기관, 시·군, 공공기관 및 기업 등과의 협력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도지사는 매년 청년일자리 창출계획에 따른 실적을 평가하여 공표하고, 그 결과를 다음연도 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제4조(고등학교졸업자 고용촉진 대책의 수립) ① 도지사는 매년 고등학교졸업자의 고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대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1. 고등학교졸업자 고용촉진 목표 및 시행계획 2. 해당 연도 일자리박람회 등 고등학교졸업자 고용촉진 시책 사업 3. 고등학교졸업자 고용촉진을 위한 재정지원에 관한 사항 4. 직업 지도, 취업 알선 및 직업능력개발훈련 등에 관한 사항 5.「고등교육법」에 따른 교육기관과 기업 등과의 협력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고등학교졸업자의 고용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도지사는 매년 고등학교졸업자 고용촉진 대책의 시행에 따른 실적을 평가하고, 그 결과를 다음 연도 고등학교졸업자 고용촉진 대책에 반영하여야 한다.
제5조(실태조사) ① 도지사는 매년 청년 미취업자의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공표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할 경우 청년일자리 창출 관련 기관 또는 법인 등에 위탁할 수 있다.	제5조(고등학교졸업자 실태조사 등) ① 도지사는 제4조에 따른 고등학교졸업자 고용촉진 대책 수립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지역산업의 동향, 고등학교졸업자 인력수급 동향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할 경우 청년일자리 창출 관련 기관 또는 법인 등에 위탁할 수 있다.

전북특별자치도 청년일자리 창출 촉진에 관한 조례	전북특별자치도 고등학교졸업자 고용촉진 조례
제6조(위원회) ① 도지사는 청년일자리 창출 촉진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전북특별자치도청년일자리창출촉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1. 제3조 및 제4조에 따른 대책 및 계획의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 2. 그 밖에 청년고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1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은 도지사가 위촉하고 과반수는 외부 인사 중 민간위원으로 한다. 위원장은 경제부지사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청년일자리 관련 분야 공무원 또는 학계·산업계 전문가 2. 청년일자리 분야 정부기관, 비영리 민간단체·법인 등에서 근무하거나 근무경험이 있는 사람 3.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의원을 포함하여 도의회가 추천하는 2명 4. 전북특별자치도 교육청, 도내 대학교 총장·학장의 추천을 받은 고등학생 또는 대학생 대표 5. 그 밖에 청년일자리 분야에 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④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1회 연임할 수 있으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⑤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회 회의에 자주 불참하거나 직무를 성실하게 수행하지 않을 때 2. 위원으로서의 품위를 현저히 손상하였거나 부적절한 행위를 한 경우 3. 그 밖에 해촉할 만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⑥ 위원회의 회의는 1년에 1회 이상 정기회의를 개최하되, 필요한 경우 재적위원 과반수의 동의로 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 ⑦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전북특별자치도 청년일자리 창출 촉진에 관한 조례	전북특별자치도 고등학교졸업자 고용촉진 조례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위원 해촉에 관한 사안의 경우 제5항의 규정에 따른다.	
제7조(교육기관 활용) ① 도지사는 「고등교육법」에 따른 교육기관과 연계하여 청년이 취업을 위하여 필요한 지식과 기술을 익힐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지원을 하는 경우 「고등교육법」에 의한 교육기관에 대하여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6조(고등학교졸업자 고용 확대) 제3조제2항에 따른 공기업 등 중 정원이 20명 이상인 공기업 등은 정원의 100분의 10 이상에 대하여 고등학교졸업자를 우선적으로 고용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7조(고등학교졸업자 불이익 금지) ① 공기업 등이 제6조에 따른 채용을 하는 경우 해당 기관장은 채용된 고등학교졸업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인사상·신분상 불이익 또는 근무조건상의 차별적 조치를 받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② 기관장은 채용된 고등학교졸업자를 별도의 직군(職群)으로 분류·관리하여서는 아니된다. ③ 기관장은 특정 직군위주로 고등학교졸업자가 선발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제8조(관계기관·단체와의 협력 등) ① 도지사는 청년일자리 지원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중앙행정기관(그 소속·산하기관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와 같다) 및 일자리 관련 기관·단체 등과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필요할 경우 중앙행정기관, 일자리창출 관련 기관·단체 등과 일자리 창출을 위한 협약 등을 체결할 수 있다.	제8조(관계기관·단체와의 협력 등) ① 도지사는 고등학교졸업자 고용촉진 지원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중앙행정기관(그 소속·산하기관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와 같다) 및 일자리 관련 기관·단체 등과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필요할 경우 중앙행정기관, 일자리창출 관련 기관·단체 등과 고등학교졸업자 일자리 창출을 위한 협약 등을 체결할 수 있다.
제9조(행·재정적 지원) ① 도지사는 청년일자리 창출 사업을 수행하는 관련 기관이나 비영리단체 등에 대한 행정적 지원 또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그 사업에 따른 소요경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경비지원 방법·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전북특별자치도 지방보조금 관리조례」에 따른다. ③ 도지사는 청년일자리 창출에 기여한 기업에게 「전북특별자치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조례」에 따	제9조(행정적·재정적 지원) ① 도지사는 고등학교졸업자 고용촉진을 위하여 제6조에서 정한 고용목표를 달성한 제3조제2항에 따른 공기업 등에 대해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경비지원 방법·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전북특별자치도 지방보조금 관리조례」에 따른다.

전북특별자치도 청년일자리 창출 촉진에 관한 조례	전북특별자치도 고등학교졸업자 고용촉진 조례
라 우대하여 지원할 수 있다. ④ 도지사는 청년일자리 창출에 기여한 기업·단체 등에 대해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 양 조례의 세부 규정 내용을 살펴본바 「전북특별자치도 고등학교졸업자 고용촉진 조례」는 고등학교졸업자 고용 확대, 불이익 금지에 관한 규정이 특징적이라고 할 것임. 「전북특별자치도 청년일자리 창출 촉진에 관한 조례」를 기반으로 하되 고등학교졸업자 고용 확대와 불이익 금지에 관한 규정을 추가하도록 할 필요가 있음. 이와 같은 내용을 담아 아래와 같이 통합안을 제안함

「전북특별자치도 청년일자리 창출 촉진에 관한 조례」 통합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청년고용촉진 특별법」에 따라 전북특별자치도 지역 청년들의 일자리 창출을 촉진함으로써 지속적인 경제발전과 사회 안정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① 이 조례에서 "고등학교졸업자"란 「초·중등교육법」제2조제3호에 따른 고등학교·고등기술학교 졸업자(졸업예정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와 같은 법 시행령 제98조에 따라 고등학교졸업자와 동등한 학력을 인정받은 자 중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대학 또는 학교에 진학하지 아니한 청년을 말한다.

② 제1항에서 정한 것 이외에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제2조에 따른다.

제3조(책무) ① 전북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청년의 고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대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1. 청년(고등학교졸업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고용 촉진을 위한 인력수급 전망
2. 청년 미취업자 실태조사 및 지원 방안
3. 직업 지도, 취업 알선 및 직업능력개발훈련 방안
4. 청년 일자리 제공 기업에 대한 장려책 마련

② 도지사는 청년 미취업자의 고용이 촉진될 수 있는 사회적·경제적 환경을 마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전북특별자치도(이하 "전북자치도"라 한다)가 설립한 투자·출연·출자기관,「전북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에 따른 수탁기관(이하 "공기업등"이라 한다) 및 기업 등은 청년 고용을 촉진하기 위한 전북특별자치도의 대책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4조(청년일자리 창출계획) ① 도지사는 매년 전북특별자치도 청년 일자리 창출계획(이하 "청년일자리 창출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청년 고용안정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청년일자리 창출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지역 산업동향 및 청년 고용동향
2. 청년 일자리 개발과 보급에 관한 사항
3. 청년 일자리 창출을 위한 재정지원에 관한 사항
4. 청년 일자리 창출을 위한 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
5. 「고등교육법」에 따른 교육기관, 시·군, 공공기관 및 기업 등과의 협력에 관한 사항
6. 해당 연도 일자리박람회 등 청년 고용촉진 시책 사업
7.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도지사는 매년 청년일자리 창출계획에 따른 실적을 평가하여 공표하고, 그 결과를 다음연도 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제5조(실태조사) ① 도지사는 매년 청년 미취업자의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공표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청년 고용촉진 대책을 수립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지역산업 동향, 청년 인력수급 동향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③ 도지사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할 경우 청년일자리 창출 관련 기관 또는 법인 등에 위탁할 수 있다.

제6조(위원회) ① 도지사는 청년일자리 창출 촉진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전북특별자치도 청년일자리 창출촉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1. 제3조 및 제4조에 따른 대책 및 계획의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
2. 그 밖에 청년고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1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은 도지사가 위촉하고 과반수는 외부 인사 중 민간위원으로 한다. 위원장은 경제부지사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청년일자리 관련 분야 공무원 또는 학계·산업계 전문가
2. 청년일자리 분야 정부기관, 비영리 민간단체·법인 등에서 근무하거나 근무경험이 있는 사람
3.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의원을 포함하여 도의회가 추천하는 2명
4.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도내 대학교 총장·학장의 추천을 받은 고등학생 또는 대학생 대표
5. 그 밖에 청년일자리 분야에 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④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으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⑤ 위원회의 회의는 1년에 1회 이상 정기회의를 개최하되, 필요한 경우 재적위원 과반수의 동의로 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

⑥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위원 해촉에 관한 사안의 경우 제5항에 따른다.

제7조(고등학교졸업자 고용 확대 등) ① 제3조제3항에 따른 공기업등 중에서 정원이 20명 이상인 공기업 등은 정원의 100분의 10 이상에 대하여 고등학교졸업자를 우선적으로 고용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공기업등이 제1항에 따른 채용을 하는 경우 해당 기관장은 채용된 고등학교졸업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인사상·신분상 불이익 또는 근무조건상의 차별적 조치를 받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제8조(행·재정적 지원) ① 도지사는 청년일자리 창출 사업을 수행하는 관련 기관이나 비영리단체 등에 대한 행정적 지원 또는 예산의 범위에서 그 사업에 따른 소요경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고등학교졸업자 고용촉진을 위하여 제9조제1항에서 정한 고용목표를 달성한 제3조제3항에 따른 공기업 등에 대해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③ 도지사는 청년일자리 창출에 기여한 기업에게 「전북특별자치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조례」에 따라 우대하여 지원할 수 있다.

④ 도지사는 청년일자리 창출에 기여한 기업·단체 등에 대해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 이와 같이 통합하는 경우 「전북특별자치도 고등학교졸업자 고용촉진 조례」는 폐지 권고

□ 참고자료 1 – 위원회 관련 실적

○ 구성

- 위원회 규정 없음

○ 개최 실적

- 해당사항 없음

□ 참고자료 2 – 조례 관련 자료

○ 자료 1

전북특별자치도 평생교육장학진흥원, 고등학교졸업자 고용촉진을 위한 지원사업 및 채용현황

고등학교졸업자 고용촉진을 위한 지원사업 및 채용현황 제출

작성자 인재육성재단 16-07-20 17:06 조회 416회 댓글 0건

이전글 다음글 목록

세부정보

등록번호	717
등록일자	20160720
등록구분	생산
신청일자	20160720
수신자	전라북도지사
생산기관 등록번호	

붙임 1 사업 관련 추진실적

□ 연도별 사업 및 예산 집행 실적

○ 사업 및 예산집행실적 없음

붙임 2 평가대상 조례

전북특별자치도 고등학교졸업자 고용촉진 조례

[시행 2024. 1. 18.] [전북특별자치도조례 제5399호, 2023. 12. 8., 일부개정]

전북특별자치도(일자리민생경제과), 063-280-3214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청년고용촉진 특별법」에 따라 전북특별자치도 지역 고등학교졸업자들의 일자리 창출을 촉진하여 지속적인 경제발전과 사회안정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3. 12. 8.>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고등학교졸업자”란 「초·중등교육법」제2조제3호에 따른 고등학교·고등기술학교 졸업자(졸업예정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와 같은 법 시행령 제98조에 따라 고등학교졸업자와 동등한 학력을 인정받은 자 중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대학 또는 학교에 진학하지 아니한 청년을 말한다.

제3조(책무)

① 전북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고등학교졸업자의 고용이 촉진될 수 있는 사회적·경제적 환경을 조성하여야 한다.<개정 2023. 12. 8.>

② 전북특별자치도(이하 “전북자치도”라 한다)가 설립한 투자·출연·출자기관,「전북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에 따른 수탁기관(이하 “공기업 등”이라 한다)은 고등학교졸업자의 고용을 촉진하기 위한 전북자치도의 대책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개정 2023. 12. 8.>

제4조(고등학교졸업자 고용촉진 대책의 수립)

① 도지사는 매년 고등학교졸업자의 고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대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1. 고등학교졸업자 고용촉진 목표 및 시행계획
2. 해당 연도 일자리박람회 등 고등학교졸업자 고용촉진 시책 사업
3. 고등학교졸업자 고용촉진을 위한 재정지원에 관한 사항
4. 직업 지도, 취업 알선 및 직업능력개발훈련 등에 관한 사항
5. 「고등교육법」에 따른 교육기관과 기업 등과의 협력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고등학교졸업자의 고용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도지사는 매년 고등학교졸업자 고용촉진 대책의 시행에 따른 실적을 평가하고, 그 결과를 다음 연

도 고등학교졸업자 고용촉진 대책에 반영하여야 한다.

제5조(고등학교졸업자 실태조사 등)

① 도지사는 제4조에 따른 고등학교졸업자 고용촉진 대책 수립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지역산업의 동향, 고등학교졸업자 인력수급 동향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할 경우 청년일자리 창출 관련 기관 또는 법인 등에 위탁할 수 있다.

제6조(고등학교졸업자 고용 확대) 제3조제2항에 따른 공기업 등 중 정원이 20명 이상인 공기업 등은 정원의 100분의 10 이상에 대하여 고등학교졸업자를 우선적으로 고용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7조(고등학교졸업자 불이익 금지)

① 공기업 등이 제6조에 따른 채용을 하는 경우 해당 기관장은 채용된 고등학교졸업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인사상·신분상 불이익 또는 근무조건상의 차별적 조치를 받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② 기관장은 채용된 고등학교졸업자를 별도의 직군(職群)으로 분류·관리하여서는 아니된다.

③ 기관장은 특정 직군위주로 고등학교졸업자가 선발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제8조(관계기관·단체와의 협력 등)

① 도지사는 고등학교졸업자 고용촉진 지원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중앙행정기관(그 소속·산하기관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와 같다) 및 일자리 관련 기관·단체 등과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필요할 경우 중앙행정기관, 일자리창출 관련 기관·단체 등과 고등학교졸업자 일자리 창출을 위한 협약 등을 체결할 수 있다.

제9조(행정적·재정적 지원)

① 도지사는 고등학교졸업자 고용촉진을 위하여 제6조에서 정한 고용목표를 달성한 제3조제2항에 따른 공기업 등에 대해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경비지원 방법·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전북특별자치도 지방보조금 관리조례」에 따른다.<개정 2015. 5. 1., 2023. 12. 8.>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19. 전북특별자치도 건설신기술 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

Ⅰ. 종합의견

< 평가결과 >

□ 평가대상

조 례 명	전북특별자치도 건설신기술 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		
조례 구분	자치조례	관계 법령	-
제정·시행일	2019. 8. 9. 제정	최근개정·시행일	2024. 5. 31. 개정
소관 부서	건설정책과	소관 상임위	경제산업건설

□ 평가의견

평가항목	평가의견	주요 내용
종합의견	개정/일반	- 법제처 자치법규 입안기준에 부합하도록 띄어쓰기, 약칭문 정비 검토 - 타 시·도의 사례를 참고하여 건설신기술 전시회 및 경진대회 등에 관한 규정 신설 검토 - 시행규칙은 개별 조례에서 위임이 없더라도 조례의 집행에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규칙으로 규정할 수 있으므로 삭제 권고
심층분석 결과		- 타 시·도 사례와 비교하여 선진적인 규정의 도입을 검토하였으나 추가적인 시사점을 발견하기 어려움. 개정의견과 같이 개정하도록 권고함
1. 입법 근거 및 적법성	적정	자치사무의 범위에서 적절하게 제정되었음
2. 조례의 실효성	적정	조례 시행과정에서 타 조례와의 충돌이나 모순 발생 사례와 유사 또는 동일한 타 조례의 제정 및 시행 사례가 없으므로 실효성이 확보됨
3. 조례 내용의 적정성	적정	위원회 구성방법, 지원대상 및 범위 등 조례 내용이 적정함
4. 조례의 공평성	적정	장애, 성별, 나이 등에 관한 사회적 편견, 고정관념이 반영된 표현 및 차별 규정 없음
5. 주민 수용성	적정	조례의 체계 및 용어가 주민이 알기 쉽게 되어 있음
6. 전북자치도 현실 부합성	적정	건설신기술 활용.촉진을 도모하고자 하는 관련법 취지 및 필요성 등이 현실에 부합함
7. 위원회 운영의 적정성	적정	위원회 안건 발생 빈도가 낮아, 행안부 지침에 따라 조례 개정을 통해 비상설위원회로 전환(2024.3.29.)하였음. 안건 발생 시 위원회를 구성하고 심의 의결 후 자동 해산되므로 적정함
※ 기타 의견	없음	

Ⅱ. 항목별 평가 결과

평가항목	세부항목	척도	의견 및 자료
1. 입법의 근거 및 적법성	1) 위임조례인가 자치사무에 관한 조례인가?	□ 위임조례 ☑ 자치사무에 관한 조례	
	2) 조례에서 규정하고 있는 위임근거가 올바른가?	□ 그렇다 □ 그렇지않다 ☑ 해당사항 없음	
	3) 조례가 위임범위에서 적절하게 제·개정되었는가?	□ 그렇다 □ 그렇지않다 ☑ 해당사항 없음	
	4) 조례 제.개정 이후 동일 또는 유사한 법령이나 제도가 만들어졌거나 근거법령이 개정 또는 폐지되었는가?	□ 그렇다 □ 그렇지않다 ☑ 해당사항 없음	
	5) 조례에서 주민의 권리제한, 의무부과, 벌칙 부과, 규제사항에 대한 법률위임이 있는가?	□ 그렇다 □ 그렇지않다 ☑ 해당사항 없음	
	6) 상위법령에 위배되는 조항이 있는가?	□ 그렇다 □ 그렇지않다 ☑ 해당사항 없음	
2. 조례의 실효성	1) 조례의 시행과정에서 다른 조례와의 충돌이나 모순이 발생하고 있는가?	□ 그렇다 ☑ 그렇지않다 □ 해당사항 없음	
	2) 이 조례와 유사 또는 동일한 다른 조례가 제정 및 시행되고 있어 통합할 필요가 있는가?	□ 그렇다 □ 그렇지않다 ☑ 해당사항 없음	
	3) 조례에 따른 계획이 수립·시행되고 있는가?	□ 그렇다 □ 그렇지않다 ☑ 해당사항 없음	
	4) 조례에서 집행기관 등에 책무를 부여하고 있는가?	□ 그렇다 □ 그렇지않다 ☑ 해당사항 없음	

평가항목	세부항목	척도	의견 및 자료
	5) 조례에서 부여한 책무와 관련사업을 집행기관이 잘 이행하고 있는가?	□ 그렇다 □ 그렇지않다 ☑ 해당사항 없음	
3. 조례 내용의 적정성	1) 조례에 재정지원 관련 규정이 있는가?	☑ 그렇다 □ 그렇지않다 □ 해당사항 없음	-제13조
	2) 조례 시행에 필요한 예산 확보와 집행이 잘 이루어지고 있는가?	□ 그렇다 ☑ 그렇지않다 □ 해당사항 없음	-임의규정
	3) 지원대상이 집행이 가능한 정도로 구체화 되어 있는가?	□ 그렇다 ☑ 그렇지않다 □ 해당사항 없음	
	4) 조례에 따른 위탁사무가 위탁대상으로 적정한가?	□ 그렇다 □ 그렇지않다 ☑ 해당사항 없음	
4. 조례의 공평성	1) 조례에서 장애인, 성별 등의 특정계층이나 특정지역을 차별하는 조항이 있는가?	□ 그렇다 ☑ 그렇지않다 □ 해당사항 없음	
	2) 조례에서 정한 차별이 합리적인가?	□ 그렇다 □ 그렇지않다 ☑ 해당사항 없음	
5. 주민 의견 수용성	1) 조례 제·개정 시 입법예고는 하였는가?	☑ 그렇다 □ 그렇지않다 □ 해당사항 없음	
	2) 조례 제·개정 시 공청회, 세미나 등 이해관계인 및 주민에 대한 의견 수렴 과정이 있었는가?	□ 그렇다 □ 그렇지않다 ☑ 해당사항 없음	
	3) 조례와 관련한 민원(청원, 진정, 소송 등)이 제기되거나 개정 또는 폐지 요구가 있었는가?	□ 그렇다 □ 그렇지않다 ☑ 해당사항 없음	
	4) 조례의 체계나 사용 되어진 용어가 주민이 알기 쉽게 되어 있는가?	☑ 그렇다 □ 그렇지않다 □ 해당사항 없음	
6. 위원회 운영의 적정성	1) 조례로 위원회를 구성하도록 되어 있는가?	☑ 그렇다 □ 그렇지않다 □ 해당사항 없음	-제4조 -비상설 임의규정

평가항목	세부항목	척도	의견 및 자료
	2) 위원회가 법정위원회인가 조례로 설치하도록 한 위원회인가?	☐ 법정위원회 ☑ 조례로 정한 위원회 ☐ 해당사항 없음	
	3) 위원회 위원의 성별 구성이 적정한가?	☐ 그렇다 ☐ 그렇지않다 ☑ 해당사항 없음	
	4) 위원회가 법령이나 조례에서 정한 회의개최 운영 실적이 있고 관련 회의록을 보존하고 있는가?	☐ 그렇다 ☐ 그렇지않다 ☑ 해당사항 없음	
	5) 위원회를 계속 설치·운영할 필요성이 있는가?	☑ 그렇다 ☐ 그렇지않다 ☐ 해당사항 없음	
	6) 해당 위원회와 유사한 다른 위원회와의 기능적 통합이 필요한가?	☐ 그렇다 ☑ 그렇지않다 ☐ 해당사항 없음	
7. 종합 의견	1) 이 조례를 현행대로 유지할 필요가 있는가?	☑ 그렇다 ☐ 그렇지않다	
	2) 이 조례를 개정할 이유가 있는가? (해당사항 모두 표기)	☐ 위임근거에 불부합 ☐ 위임근거 불명확 ☐ 법령의 위임 없는 규제 정비 필요 ☐ 다른 조례와의 상충 및 모순 ☐ 조례 시행의 문제점 발생 ☐ 조례의 공평성 문제 ☑ 알기 쉬운 법령정비 기준에 따른 정비 필요 ☐ 위원회 관련 규정개정 필요 ☑ 그 밖의 사유	-규정 신설 검토
	3) 이 조례를 폐지할 사유가 있는가? (해당사항 모두 표기)	☐ 다른 유사한 조례와의 통합 운영 필요성 ☐ 조례 시행 불가능 ☐ 최근 3년간 조례 관련 운영 실적 전무 ☐ 기타	
	4) 그 밖의 이 조례와 관련된 의견이 있는가?	☐ 있다 ☐ 없다	

Ⅲ. 세부내용

조례명	전북특별자치도 건설신기술 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

■ 소관 부서 의견(팀)

○ **최종의견 : 전북특별자치도 내 건설신기술 보유 기업 및 활용실적은 저조하나, 관계법령의 취지와 중장기적 관점에서 건설신기술의 활용 촉진을 위해 조례의 유지가 필요함**

○ **내용**

- (1-1) 상위법(건설기술 진흥법) 상 조례 입법을 명시적으로 규정한 조항은 없음. 그러나「건설기술진흥법」제14조, 같은 법 시행령 제34조 및 제36조 등 건설신기술 활용에 관해 규정한 조항을 근거내용으로 하여 조례를 제정함
- (2-5) 2024년 3월 29일 포상 조항을 신설했으나, 건설신기술 보유 기업 및 개발자가 적고, 우수 신기술개발자 및 우수사례 등에 대한 발주청 추천이 없었음
- (3-1) 조례 제13조에 따라 재정지원을 실시할 수 있음
- (3-2) 지원범위를 전북특별자치도 내 거주 기술개발자 또는 소재 중소기업으로 한정하여 적정함
- (3-3) 재정 지원 규정은 있으나, 최근 신설된 임의규정이며 지원대상인 건설신기술 보유 전북특별자치도 내 업체(4개소)의 재정지원 요청이 없었고, 해당 조항은 임의규정이므로 재정지원이 의무사항은 아니라 지원 실적이 없음
- (3-4) 조례상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는 "건설신기술 개발자 육성", "신기술의 실용화 및 보급"에 해당하는 사안에 대해 정형화하여 구체적으로 명시화하기 어려움
- (3-6) 조례 제13조와 제14조의 '재정·행정적 지원'과 '포상'에 관한 조문을 임의규정으로 구성하여 집행여부에 대해 행정기관에 재량권을 부여하였으며, 지원대상, 규모 등 재량권 범위는 적정함
- (6-1) 건설신기술 활용 촉진을 도모하기 위해 건설기술진흥법 제14조제4항, 같은 법 시행령 제34조제3항과 조례 제8조의 내용이 동일함(우수한 신기술의 건설공사 설계 반영)
- (7-1) 조례 제4조에 따라 전북특별자치도 신기술활용위원회를 비상설위원회로 운영함
- (7-3) 비상설위원회이며, 위원회 구성 시 특정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함
- (7-5) 2022년 300,000원을 소요하여 위원회를 11회 개최함. 위원회 안건 발생 빈도가 적은 경우, 비상설 위원회로 전환하여 운영하도록 한 행정안전부 지침*에 따라 조례 개정을 통해 비상설위원회로 전환함(2024.03.29.).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안부 예규, 2020.12.30.)」에 따라 발주청이 신기술 선정 외부전문가 자문회의, 공법선정 위원회 자체 진행하므로 위원회 개최 실적이 저조하나, 그 외 조례에서 정한 사항에 대한 심의·자문을 위해 위원회(비상설) 계속 설치 및 운영이 필요함

■ 종합의견	개정 권고/일반 정비

◎ 입법평가 세부의견

○ **평가항목별 검토**

평가항목	평가항목별 검토 내용
1. 입법 근거 및 적법성	자치사무의 범위에서 적절하게 제정되었음
2. 조례의 실효성	조례 시행과정에서 다른 조례와의 충돌이나 모순 발생 사례와 유사 또는 동일한 다른 조례의 제정 및 시행 사례가 없으므로 실효성이 확보됨
3. 조례 내용의 적정성	위원회 구성방법, 지원대상 및 범위 등 조례 내용이 적정함
4. 조례의 공평성	장애, 성별, 나이 등에 관한 사회적 편견, 고정관념이 반영된 표현 및 차별 규정 없음
5. 주민 수용성	조례의 체계 및 용어가 주민이 알기 쉽게 되어 있음
6. 전북자치도 현실부합성	건설신기술 활용.촉진을 도모하고자 하는 관련법 취지 및 필요성 등이 현실에 부합함
7. 위원회 운영의 적정성	위원회 안건 발생 빈도가 낮아, 행안부 지침에 따라 조례 개정을 통해 비상설위원회로 전환(2024.3.29.)하였음. 안건 발생 시 위원회를 구성하고 심의 의결 후 자동 해산되므로 적정함
※ 기타 의견	없음

○ **연도별 사업내용 및 예산/집행액**

- 사업내용 및 예산집행 실적 없음

○ **조례의 입법목적 달성도 또는 부수효과 분석**

- 조례 목적달성도 평가
  - 본 조례에 따라 전북특별자치도 및 전북특별자치도 출자출연기관이 시행하는 건설공사에 건설신기술 적용을 촉진할 수 있어 조례의 목적이 달성되고 있다고 평가됨
- 부수효과
  - 건설신기술 확보를 통하여 향후 전북특별자치도의 건설산업 발전에 기여할 수 있음

○ 타 시·도 유사 조례와 비교 또는 타 시·도 자치법규(정책) 동향

전북특별자치도 건설신기술 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	경기도 건설신기술 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	서울특별시 건설신기술 활용촉진에 관한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건설신기술 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제3조(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제4조(전북특별자치도 신기술활용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제4조(신기술 활용 심의·자문)	제4조(설치)	제4조(신기술 활용 심의·자문)
제5조(신기술 활용 심의·자문)	제5조(심의·자문 요청)	제5조(기능)	제5조(심의·자문 요청)
제6조(심의·자문 요청)	제6조(심의·자문사항의 사후관리)	제6조(심의·자문 요청)	제6조(심의·자문사항의 사후관리)
제7조(심의·자문사항의 사후관리)	제7조(생애주기비용평가서 반영)	제7조(구성 등)	제7조(생애주기비용평가서 반영)
제8조(설계반영의무 등)	제8조(설계반영의무)	제8조(준용규정)	제8조(설계반영의무)
제9조(계약)	제9조(계약)	제9조(심의·자문사항의 사후관리)	제9조(신기술 실명제)
제10조(실명제)	제10조(신기술 실명제)	제10조(설계반영의무)	제10조(자료축적 및 활용)
제11조(생애주기비용평가서 반영)	제11조(자료축적 및 활용)	제11조(계약)	제11조(포상)
제12조(자료축적 및 활용)	제12조(건설신기술에 대한 지원 등)	제12조(신기술 실명제)	제12조(시행규칙)
제13조(건설신기술에 대한 지원 등)	**제13조(건설신기술 전시회 및 경진대회 등)**	제13조(생애주기비용평가서 반영)	
제14조(포상)	제14조(포상)	제14조(자료축적 및 활용)	
제15조(시행규칙)	제15조(시행규칙)	제15조(포상)	
		제16조(시행규칙)	

- 경기도에서는 제13조(건설신기술 전시회 및 경진대회 등)에서 매년 건설신기술 개발자가 개발한 신기술을 전시하고, 영세 기술개발자의 기술 홍보 및 제도개선을 위한 의견교환, 기술개발자 간 정보교환, 신기술 적용 활성화를 위한 상담 등을 진행하는 건설신기술 전시회를 개최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음

Ⅳ. 개정의견

현 행	개정안	비고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건설기술 진흥법」 제14조, 같은 법 시행령 제34조 및 제36조에 따라 전북특별자치도가 발주청으로 하는 건설공사(시·군에서 시행하는 도비 지원 또는 도비 보조금 사업을 포함한다)에 신기술을 활용·촉진하도록 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건설기술 진흥법」 제14조, 같은 법 시행령 제34조 및 제36조에 따라 전북특별자치도가 발주청으로 하는 건설공사에 신기술을 활용·촉진하도록 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목적조항에서 괄호문 삭제 정비 권고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건설공사"란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4호의 건설공사를 말한다. 2. "신기술"이란 「건설기술 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4조제1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고시한 새로운 건설기술로 법 제14조제2항에 따른 보호기간 내에 있는 기술을 말한다. 3. 생략 4. "생애주기비용"이란 건설공사 대상 시설물의 기획, 조사, 설계, 조달, 시공, 운영, 유지관리, 철거 등에 이르는 시설물의 내구연한 동안 발생하는 비용과 잔존가치를 포함한 총비용을 말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건설공사"란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4호에 따른다. 2. "신기술"이란 「건설기술 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4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다. 3. 이하 현행과 같음 4. "생애주기비용"이란 건설공사(시·군에서 시행하는 도비 지원 또는 도비 보조금 사업을 포함한다) 대상 시설물의 기획, 조사, 설계, 조달, 시공, 운영, 유지관리, 철거 등에 이르는 시설물의 내구연한 동안 발생하는 비용과 잔존가치를 포함한 총비용을 말한다.	-상위법령의 용어정의 규정을 그대로 규정할 경우에는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법」 제○조에 따른다"고 표현함 -제4호: 목적조항에서 삭제한 괄호문 추가 정비 권고
<신설>	제2조의2(책무) 전북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건설신기술의 활성화 촉진을 위한 다양한 시책을 추진할 수 있으며, 신기술 등이 선정 및 활용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조례 제8조제1항의 규정은 도지사의 책무와 관련된 내용으로 제3조를 신설하여 규정할 것을 권고함 -제3조로 신설 시 이하 조문번호 변경 검토 필요
제3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건설공사를 시행함에 있어 신기술을 적용하	제3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건설공사를 시행함에 있어 신기술을 적용하	-인용 조례 제명 띄어쓰기 정비 권고

현 행	개정안	비고
는 다음 각 호의 기관들(이하 "발주청"이라 한다)에 적용한다. 1. 「전북특별자치도 행정기구 설치 및 정원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른 본청·직속기관 및 사업소 2. 이하 생략	는 다음 각 호의 기관들(이하 "발주청"이라 한다)에 적용한다. 1. 「전북특별자치도 행정기구 설치 및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른 본청·직속기관 및 사업소 2. 이하 현행과 같음	
제5조(신기술 활용 심의·자문) ① ~ ② 생략 ③ 법 시행령 제75조에 따라 설계의 경제성 등 검토를 시행하는 건설공사는 위원회의 심의 또는 자문 대상에서 제외한다.	제5조(신기술 활용 심의·자문) ① ~ ② 현행과 같음 ③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이하 "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75조에 따라 설계의 경제성 등 검토를 시행하는 건설공사는 위원회의 심의 또는 자문 대상에서 제외한다.	-법 시행령은 약칭한바 없으므로 원 제명으로 규정하도록 하고 약칭을 추가하도록 정비 권고
제6조(심의·자문 요청) 발주청은 제5조의 사항에 대하여 위원회의 심의 또는 자문의견을 받으려는 자는 심의요청서나 자문요청서에 관계 서류를 첨부하여 도지사에게 요청하여야 한다.	제6조(심의·자문 요청) 제5조에 따른 사항에 대하여 위원회의 심의 또는 자문의견을 받으려는 자는 심의요청서나 자문요청서에 관계 서류를 첨부하여 도지사에게 요청하여야 한다.	-불필요한 "발주청"을 삭제하도록 정비 권고
제13조(건설신기술에 대한 지원 등) 도지사는 도내 건설신기술 개발자 육성, 신기술의 실용화 및 보급 등에 필요한 재정적·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다만, 지원받을 수 있는 기술개발자 또는 기업은 도내 거주하는 사람 또는 도내에 소재지를 둔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에 한한다.	제13조(건설신기술에 대한 지원 등) 도지사는 전북자치도 내 건설신기술 개발자 육성, 신기술의 실용화 및 보급 등에 필요한 재정적·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다만, 지원받을 수 있는 기술개발자 또는 기업은 전북자치도 내 거주하는 사람 또는 전북자치도 내에 소재지를 둔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에 한한다.	-띄어쓰기 정비 권고
<신설>	제13조의2(건설신기술 전시회 및 경진대회 등) ① 도지사는 매년 건설신기술 개발자가 개발한 신기술을 전시하고, 영세 기술개발자의 기술 홍보 및 제도개선을 위한 의견교환, 기술개발자 간 정보교환, 신기술 적용 활성화를 위한 상담 등을 진행하는 건설신기술 전시회를 개최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매년 건설신기술 개발 및 보급·활성화 등에 우수한 성과를 거둔 건설신기술을 시상하는 신기술 경진대회를 개최할 수 있다.	-타 시·도의 사례를 참고하여 건설신기술 전시회 및 경진대회 등에 관한 규정 신설 권고

현 행	개정안	비고
	③ 도지사는 매년 건설신기술 분야의 연구활성화 및 기술개발을 촉진하기 위하여 정보박람회 및 연구발표회, 세미나 등을 개최할 수 있다. ④ 도지사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전시회 등을 효율적으로 개최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업무를 관련 법인, 기관,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제14조(포상) 도지사는 발주청의 추천을 받거나 자체적인 심사를 거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전북특별자치도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1. 이하 생략	제14조(포상) 도지사는 발주청의 추천을 받거나 자체적인 심사를 거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포상할 수 있다. 1. 이하 현행과 같음	-포상에 관해 선언적인 의미만을 규정하면, 그에 따른 구체적인 사항은 당연히 「전북특별자치도 포상 조례」를 적용 받으므로 규정의 실익이 없음(법제처, 2023년 우수조례 및 자치법규 입법컨설팅 사례집, 118면)
제15조(시행규칙)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외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삭제>	-시행규칙은 개별 조례에서 위임이 없더라도 조례의 집행에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규칙으로 규정할 수 있으므로 삭제 권고

심층분석 관련 검토

○ **심층분석**

- 타 시·도 사례와 비교하여 선진적인 규정의 도입을 검토하였으나 추가적인 시사점을 발견하기 어려움. 개정의견과 같이 개정하도록 권고함

□ 참고자료 1 – 위원회 관련 실적

○ **구성**

- 비상설위원회이며, 위원회 구성시 특정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함

○ **개최 실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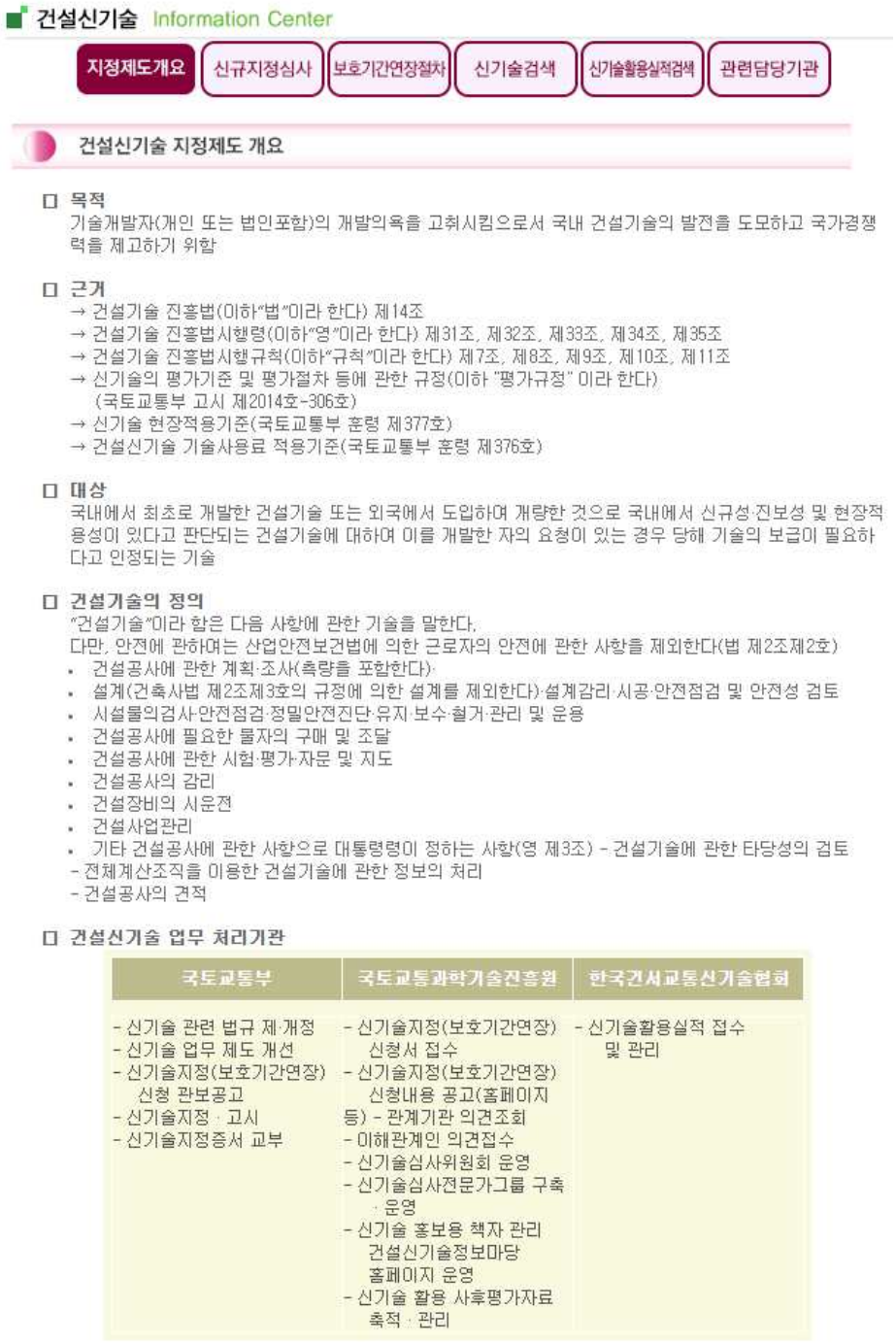
- 2022년 11건 개최

연도별	2022	2023	2024
개최건수	11	-	-
개최일	22.1.18~1.24(서면)	-	-
소요예산	300,000원	-	-

□ 참고자료 2 – 조례 관련 자료

○ 자료 1

대한전문건설협회 전북특별자치도회 주관 건설신기술 지정제도 실시



건설신기술 Information Center

지정제도개요 | 신규지정심사 | 보호기간연장절차 | 신기술검색 | 신기술활용실적검색 | 관련담당기관

건설신기술 지정제도 개요

□ 목적

기술개발자(개인 또는 법인포함)의 개발의욕을 고취시킴으로서 국내 건설기술의 발전을 도모하고 국가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함

□ 근거

→ 건설기술 진흥법(이하"법"이라 한다) 제14조
→ 건설기술 진흥법시행령(이하"영"이라 한다) 제31조, 제32조, 제33조, 제34조, 제35조
→ 건설기술 진흥법시행규칙(이하"규칙"이라 한다) 제7조, 제8조, 제9조, 제10조, 제11조
→ 신기술의 평가기준 및 평가절차 등에 관한 규정(이하 "평가규정" 이라 한다)
(국토교통부 고시 제2014호-306호)
→ 신기술 현장적용기준(국토교통부 훈령 제377호)
→ 건설신기술 기술사용료 적용기준(국토교통부 훈령 제376호)

□ 대상

국내에서 최초로 개발한 건설기술 또는 외국에서 도입하여 개량한 것으로 국내에서 신규성·진보성 및 현장적용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건설기술에 대하여 이를 개발한 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 당해 기술의 보급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기술

□ 건설기술의 정의

"건설기술"이라 함은 다음 사항에 관한 기술을 말한다.
다만, 안전에 관하여는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한 근로자의 안전에 관한 사항을 제외한다(법 제2조제2호)

- 건설공사에 관한 계획·조사(측량을 포함한다)·
- 설계(건축사법 제2조제3호의 규정에 의한 설계를 제외한다)·설계감리·시공·안전점검 및 안전성 검토
- 시설물의검사·안전점검·정밀안전진단·유지·보수·철거·관리 및 운용
- 건설공사에 필요한 물자의 구매 및 조달
- 건설공사에 관한 시험·평가·자문 및 지도
- 건설공사의 감리
- 건설장비의 시운전
- 건설사업관리
- 기타 건설공사에 관한 사항으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영 제3조) - 건설기술에 관한 타당성의 검토
- 전체계산조직을 이용한 건설기술에 관한 정보의 처리
- 건설공사의 견적

□ 건설신기술 업무 처리기관

국토교통부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한국건설교통신기술협회
- 신기술 관련 법규 제·개정 - 신기술 업무 제도 개선 - 신기술지정(보호기간연장) 신청 관보공고 - 신기술지정 · 고시 - 신기술지정증서 교부	- 신기술지정(보호기간연장) 신청서 접수 - 신기술지정(보호기간연장) 신청내용 공고(홈페이지 등) - 관계기관 의견조회 - 이해관계인 의견접수 - 신기술심사위원회 운영 - 신기술심사전문가그룹 구축 · 운영 - 신기술 홍보용 책자 관리 건설신기술정보마당 홈페이지 운영 - 신기술 활용 사후평가자료 축적 · 관리	- 신기술활용실적 접수 및 관리

붙임 1 사업 관련 추진실적

□ 연도별 사업 및 예산 집행 실적

○ 위원회 소요예산 외 사업 및 예산집행실적 없음

- 2022년, 300,000원

붙임 2 평가대상 조례

전북특별자치도 건설신기술 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

[시행 2024. 5. 31.] [전북특별자치도조례 제5508호, 2024. 5. 31., 일부개정]

전북특별자치도(건설정책과)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건설기술 진흥법」 제14조, 같은 법 시행령 제34조 및 제36조에 따라 전북특별자치도가 발주청으로 하는 건설공사(시·군에서 시행하는 도비 지원 또는 도비 보조금 사업을 포함한다)에 신기술을 활용·촉진하도록 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3. 12. 8.>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건설공사”란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4호의 건설공사를 말한다.
2. “신기술”이란 「건설기술 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4조제1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고시한 새로운 건설기술로 법 제14조제2항에 따른 보호기간 내에 있는 기술을 말한다.
3. “신기술개발자”란 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신기술 지정을 받은 자를 말한다.
4. “생애주기비용”이란 건설공사 대상 시설물의 기획, 조사, 설계, 조달, 시공, 운영, 유지관리, 철거 등에 이르는 시설물의 내구연한 동안 발생하는 비용과 잔존가치를 포함한 총비용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건설공사를 시행함에 있어 신기술을 적용하는 다음 각 호의 기관들(이하 “발주청”이라 한다)에 적용한다. <개정 2023. 12. 8.,신설 2024. 3. 29.>

1. 「전북특별자치도 행정기구 설치 및 정원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른 본청·직속기관 및 사업소
2. 시·군(도비 지원 또는 도비 보조금사업을 시행하는 경우에 한정한다)
3. 전북특별자치도(이하 “전북자치도”라 한다) 소관 공기업·공사
4. 전북자치도 출자·출연기관

제4조(전북특별자치도 신기술활용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① 전북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전북특별자치도 신기술활용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전북자치도에 둘 수 있다.<개정 2023. 12. 8.>

② 위원회는 5명 이상 11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은 도지사가 「전북특별자치도 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 조례」에 따른 전북특별자치도 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의 위원 중에서 위촉한다. 이 경우 공무원이 아닌 전문가가 2명 이상 포함되어야 하며, 위촉직 위원의 경우 특정성별이 10분의 6

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23. 12. 8.,2024. 3. 29.>

[제목개정 2023. 12. 8.]

③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도지사가 지명한다.<개정 2024. 3. 29.>

④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신설 2024. 3. 29.>

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명과 서기 1명을 두되, 간사는 건설정책과장이 되고, 서기는 업무담당사무관이 된다. <신설 2024. 3. 29., 2024. 5. 31.>

⑥ 위원회는 안건이 발생하면 구성하고, 심의·의결 후 자동 해산한다.<신설 2024. 3. 29.>

제5조(신기술 활용 심의·자문)

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개정 2024. 3. 29.>

1. 기본 및 실시설계에서 공종별 신기술 적용방안이 제시되었으나 발주청이 이를 건설공사에 반영하지 아니 할 경우 그 적정 여부
2. 설계에 반영된 신기술의 적정 여부
3. 설계에 적합한 신기술의 선정(법 제2조제2호 각 목에 대한 신기술을 포함한다)
4. 신기술의 사전성능검증 필요 여부
5. 신기술 적용 건설공사의 신기술분야 분리발주 등 계약방법 적정 여부
6. 법 제14조제4항에 따른 시험시공의 실시 여부
7. 그 밖에 발주청이 요청하는 사항 중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자문한다.<개정 2024. 3. 29.>

1. 발주청에서 건설공사를 시행하는 과정에서 신기술과 관련하여 자문이 필요한 사항
2. 다른 법령에 따라 지정되어 「건설산업기본법」제2조제4호에 따른 건설공사에 적용하려는 다음 각 목의 기술

가.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제7조에 따른 환경신기술

나. 「재난안전산업 진흥법」 제14조에 따른 재난안전신기술

다.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제102조에 따른 교통신기술

3. 그 밖에 발주청이 요청하는 사항 중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법 시행령 제75조에 따라 설계의 경제성 등 검토를 시행하는 건설공사는 위원회의 심의 또는 자문 대상에서 제외한다.<개정 2024. 3. 29.>

제6조(심의·자문 요청) 발주청은 제5조의 사항에 대하여 위원회의 심의 또는 자문의견을 받으려는 자는 심의요청서나 자문요청서에 관계 서류를 첨부하여 도지사에게 요청하여야 한다.

제7조(심의·자문사항의 사후관리) 제5조에 따라 심의 또는 자문의 결과를 통지 받은 발주청은 그 결과를 건설공사에 반영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8조(설계반영의무 등)

① 도지사는 건설신기술의 활성화 촉진을 위한 다양한 시책을 추진할 수 있으며, 신기술 등이 선정 및 활용 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발주청은 법 시행령 제34조제3항에 따라 신기술이 기존 기술에 비하여 시공성 및 경제성 등에서 우수하면 건설공사 설계에 반영하고, 건설공사를 발주하는 경우에는 공사계약서에 명시하여야 하며, 기술개발자로 하여금 해당 건설공사 중 신기술과 관련되는 공정에 참여하게 할 수 있다.<개정 2024. 3. 29.>

③ 제2항에 따라 발주청은 건설공사 설계를 시행할 때 관련 신기술을 사전에 검토하여야 하고, 관련 신기술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신기술이 아닌 다른 유사 기술이나 기존 기술을 반영하려면 발주청의 자체 검토 과정을 거쳐야 하며, 그 사유를 도지사가 정하는 바에 따라 설계보고서에 기록하여야

한다.

④ 발주청은 건설공사의 설계에 반영된 신기술에 대하여 현장 여건의 변동이 있거나 신기술개발자가 신기술 제공을 거부하는 등의 사유로 설계변경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위원회의 재심의를 받아 그 신기술을 다른 공법으로 설계변경 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⑤ 발주청은 기술개발자가 신기술 제공을 부당하게 거부하여 그 신기술을 사용하지 않는 것으로 설계변경을 하기 위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다시 거쳐 설계변경을 한 경우에는 위원회 심의를 다시 거친 날부터 6개월 이상 18개월 이하의 기간을 정하여 그 신기술의 사용을 발주청이 시행하는 다른 건설공사에서 배제할 수 있다.

제9조(계약) 발주청은 위원회 심의 등에 따라 적용된 신기술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조부터 제32조까지 정하는 한도 내에서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하거나 참가자를 지명하여 입찰에 부치거나 수의계약을 할 수 있다.

제10조(실명제) 도지사는 신기술이 적용된 건설공사가 준공된 때는 사후평가를 위해 시공자로 하여금 신기술이 시공된 위치에 표지판을 부착하여 신기술 명칭 또는 번호, 신기술개발자, 시공자, 시공일자 등의 정보를 표시하여야 한다. 다만, 현장표시가 불가능할 경우 준공보고서, 준공도면 등에 별도 설명·표시하여야 한다.

제11조(생애주기비용평가서 반영) 제6조에 따라 심의 또는 자문의견을 받으려는 발주청은 필요한 경우 신기술개발자로부터 해당 신기술의 생애주기비용평가서를 제출받아 이를 위원회에 참고자료로 제출할 수 있다. 다만, 생애주기비용평가서는 법 제7조제1항에 따른 건설기술연구기관에서 발행한 것이어야 한다.

제12조(자료축적 및 활용) 도지사는 다음 각 호에 관한 유용한 자료를 축적하여 위원회 위원과 건설관련 관계공무원 등의 참고자료로 제공할 수 있다.

1. 해당 신기술의 개요 및 품셈
2. 제6조제1항에 관한 심의 결과
3. 제1호 외에 신기술 활용 촉진을 위해 유익한 정보

제13조(건설신기술에 대한 지원 등) 도지사는 도내 건설신기술 개발자 육성, 신기술의 실용화 및 보급 등에 필요한 재정적·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다만, 지원받을 수 있는 기술개발자 또는 기업은 도내 거주하는 사람 또는 도내에 소재지를 둔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에 한한다.

[본조신설 2024. 3. 29.]

제14조(포상) 도지사는 발주청의 추천을 받거나 자체적인 심사를 거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전북특별자치도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개정 2023. 12. 8.,2024. 3. 29.>

1. 우수한 신기술개발자
2. 신기술을 적용하여 예산절감 등 신기술의 활용 촉진에 기여한 공이 뛰어난 개인·기관·법인 또는 단체

제15조(시행규칙)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외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20. 전북특별자치도 도시가스 공급시설 설치비 지원 조례

Ⅰ. 종합의견

< 평가결과 >

□ 평가대상

조 례 명	전북특별자치도 도시가스 공급시설 설치비 지원 조례		
조례 구분	자치조례	관계 법령	-
제정·시행일	2016. 11. 4. 제정	최근개정·시행일	2023. 12. 8. 개정
소관 부서	청정에너지수소과	소관 상임위	경제산업건설

□ 평가의견

평가항목	평가의견	주요 내용
종합의견	개정/이행/일반	- 제7조에서 지원대상 구역 선정 방법 및 절차를 규칙으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규칙을 운영하고 있지 않음. 규칙 제정 권고 검토 - 시행규칙은 개별 조례에서 위임이 없더라도 조례의 집행에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규칙으로 규정할 수 있으므로 삭제 권고
심층분석 결과		- 타 시·도 사례와 비교하여 선진적인 규정의 도입을 검토하였으나 추가적인 시사점을 발견하기 어려움. 개정 의견과 같이 개정하도록 권고함
1. 입법 근거 및 적법성	적정	조례 제정 목적이 전북특별자치도의 자치 사무 범위 내에 있는 적법한 조례임
2. 조례의 실효성	적정	제5조에 따른 재정지원을 통해 조례의 실효성을 확보하고 있음
3. 조례 내용의 적정성	적정	조례에서 규정하고 있는 재정지원이 적절하게 이루어지고 있음
4. 조례의 공평성	적정	장애, 성별, 나이 등에 관한 사회적 편견, 고정관념이 반영된 표현 및 차별 규정 없음
5. 주민 수용성	적정	조례의 체계 및 용어가 주민이 알기 쉽게 되어 있음
6. 전북자치도 현실부합성	적정	도시가스 미공급지역의 도시가스 설치비 지원을 위하여 제정된 본 조례는 행정수요를 반영하고 있어 전북특별자치도 현실에 부합함
7. 위원회 운영의 적정성	-	위원회 운영 관련 규정이 없음
※ 기타 의견	없음	

Ⅱ. 항목별 평가 결과

평가항목	세부항목	척도	의견 및 자료
1. 입법의 근거 및 적법성	1) 위임조례인가 자치사무에 관한 조례인가?	□ 위임조례 ☑ 자치사무에 관한 조례	
	2) 조례에서 규정하고 있는 위임근거가 올바른가?	□ 그렇다 □ 그렇지않다 ☑ 해당사항 없음	
	3) 조례가 위임범위에서 적절하게 제·개정되었는가?	□ 그렇다 □ 그렇지않다 ☑ 해당사항 없음	
	4) 조례 제.개정 이후 동일 또는 유사한 법령이나 제도가 만들어졌거나 근거법령이 개정 또는 폐지되었는가?	□ 그렇다 □ 그렇지않다 ☑ 해당사항 없음	
	5) 조례에서 주민의 권리제한, 의무부과, 벌칙 부과, 규제사항에 대한 법률위임이 있는가?	□ 그렇다 □ 그렇지않다 ☑ 해당사항 없음	
	6) 상위법령에 위배되는 조항이 있는가?	□ 그렇다 □ 그렇지않다 ☑ 해당사항 없음	
2. 조례의 실효성	1) 조례의 시행과정에서 다른 조례와의 충돌이나 모순이 발생하고 있는가?	□ 그렇다 ☑ 그렇지않다 □ 해당사항 없음	
	2) 이 조례와 유사 또는 동일한 다른 조례가 제정 및 시행되고 있어 통합할 필요가 있는가?	□ 그렇다 ☑ 그렇지않다 □ 해당사항 없음	
	3) 조례에 따른 계획이 수립·시행되고 있는가?	☑ 그렇다 □ 그렇지않다 □ 해당사항 없음	-도시가스 미공급지역 설치비 지원사업 추진계획
	4) 조례에서 집행기관 등에 책무를 부여하고 있는가?	☑ 그렇다 □ 그렇지않다 □ 해당사항 없음	-제3조(책무)

평가항목	세부항목	척도	의견 및 자료
	5) 조례에서 부여한 책무와 관련사업을 집행기관이 잘 이행하고 있는가?	☑ 그렇다 ☐ 그렇지않다 ☐ 해당사항 없음	
3. 조례 내용의 적정성	1) 조례에 재정지원 관련 규정이 있는가?	☑ 그렇다 ☐ 그렇지않다 ☐ 해당사항 없음	
	2) 조례 시행에 필요한 예산 확보와 집행이 잘 이루어지고 있는가?	☑ 그렇다 ☐ 그렇지않다 ☐ 해당사항 없음	
	3) 지원대상이 집행이 가능한 정도로 구체화 되어 있는가?	☑ 그렇다 ☐ 그렇지않다 ☐ 해당사항 없음	
	4) 조례에 따른 위탁사무가 위탁대상으로 적정한가?	☐ 그렇다 ☐ 그렇지않다 ☑ 해당사항 없음	
4. 조례의 공평성	1) 조례에서 장애인, 성별 등의 특정계층이나 특정지역을 차별하는 조항이 있는가?	☐ 그렇다 ☑ 그렇지않다 ☐ 해당사항 없음	
	2) 조례에서 정한 차별이 합리적인가?	☐ 그렇다 ☐ 그렇지않다 ☑ 해당사항 없음	
5. 주민 의견 수용성	1) 조례 제·개정 시 입법예고는 하였는가?	☑ 그렇다 ☐ 그렇지않다 ☐ 해당사항 없음	
	2) 조례 제·개정 시 공청회, 세미나 등 이해관계인 및 주민에 대한 의견 수렴 과정이 있었는가?	☐ 그렇다 ☐ 그렇지않다 ☑ 해당사항 없음	
	3) 조례와 관련한 민원(청원, 진정, 소송 등)이 제기되거나 개정 또는 폐지 요구가 있었는가?	☐ 그렇다 ☐ 그렇지않다 ☑ 해당사항 없음	
	4) 조례의 체계나 사용 되어진 용어가 주민이 알기 쉽게 되어 있는가?	☑ 그렇다 ☐ 그렇지않다 ☐ 해당사항 없음	
6. 위원회 운영의	1) 조례로 위원회를 구성하도록 되어 있는가?	☐ 그렇다 ☑ 그렇지않다 ☐ 해당사항 없음	

평가항목	세부항목	척도	의견 및 자료
적정성	2) 위원회가 법정위원회인가 조례로 설치하도록 한 위원회인가?	☐ 법정위원회 ☐ 조례로 정한 위원회 ☑ 해당사항 없음	
	3) 위원회 위원의 성별 구성이 적정한가?	☐ 그렇다 ☐ 그렇지않다 ☑ 해당사항 없음	
	4) 위원회가 법령이나 조례에서 정한 회의개최 운영 실적이 있고 관련 회의록을 보존하고 있는가?	☐ 그렇다 ☐ 그렇지않다 ☑ 해당사항 없음	
	5) 위원회를 계속 설치·운영할 필요성이 있는가?	☐ 그렇다 ☐ 그렇지않다 ☑ 해당사항 없음	
	6) 해당 위원회와 유사한 다른 위원회와의 기능적 통합이 필요한가?	☐ 그렇다 ☐ 그렇지않다 ☑ 해당사항 없음	
7. 종합 의견	1) 이 조례를 현행대로 유지할 필요가 있는가?	☑ 그렇다 ☐ 그렇지않다	
	2) 이 조례를 개정할 이유가 있는가? (해당사항 모두 표기)	☐ 위임근거에 불부합 ☐ 위임근거 불명확 ☐ 법령의 위임 없는 규제 정비 필요 ☐ 다른 조례와의 상충 및 모순 ☐ 조례 시행의 문제점 발생 ☐ 조례의 공평성 문제 ☑ 알기 쉬운 법령정비 기준에 따른 정비 필요 ☐ 위원회 관련 규정개정 필요 ☑ 그 밖의 사유	-규칙 제정 필요
	3) 이 조례를 폐지할 사유가 있는가? (해당사항 모두 표기)	☐ 다른 유사한 조례와의 통합 운영 필요성 ☐ 조례 시행 불가능 ☐ 최근 3년간 조례 관련 운영 실적 전무 ☐ 기타	
	4) 그 밖의 이 조례와 관련된 의견이 있는가?	☐ 있다 ☐ 없다	

Ⅲ. 세부내용

조례명	전북특별자치도 도시가스 공급시설 설치비 지원 조례

■ 소관 부서 의견(팀)

○ **최종의견 : 지원대상 선정 주체 및 시군 위임사항 명시 등을 위해 조례의 유지가 필요함**

○ **내용**

- (1-1) 본 조례는「도시가스사업법」제19조의3의 내용과 관련하여 규정하고 있는 자치조례임
- (2-3) 조례 제4조에 따라 도시가스 미공급지역 설치비 지원사업 추진계획을 수립함
- (2-4) 조례 제3조에 따라 도시가스 미공급지역 설치비 지원사업에 22,146백만원을 확보함
- (3-1) 조례 제5조에 따라 도시가스 미공급지역에 설치비를 지원할 수 있음
- (3-3) 조례 제5조에 따라 2021년~2023년간 아래와 같이 재정지원을 실시함

■ 종합의견	개정 권고/이행 권고/일반 정비

◎ 입법평가 세부의견

○ **평가항목별 검토**

평가항목	평가항목별 검토 내용
1. 입법 근거 및 적법성	조례 제정 목적이 전북특별자치도의 자치사무 범위에 있는 적법한 조례임
2. 조례의 실효성	제5조에 따른 재정지원을 통해 조례의 실효성을 확보하고 있음
3. 조례 내용의 적정성	조례에서 규정하고 있는 재정지원이 적절하게 이루어지고 있음
4. 조례의 공평성	장애, 성별, 나이 등에 관한 사회적 편견, 고정관념이 반영된 표현 및 차별 규정 없음
5. 주민 수용성	조례의 체계 및 용어가 주민이 알기 쉽게 되어 있음
6. 전북자치도 현실부합성	도시가스 미공급지역의 도시가스 설치비 지원을 위하여 제정된 본 조례는 행정수요를 반영하고 있어 전북특별자치도 현실에 부합함
7. 위원회 운영의 적정성	위원회 운영 관련 규정이 없음
※ 기타 의견	없음

○ **연도별 사업내용 및 예산/집행액** (단위: 천원)

연도	사업명	필요예산	확보예산	집행액	집행내역
2021	도시가스 미공급지역 설치비 지원)	2,228,315	2,228,315	2,228,315	도시가스 미공급지역 배관 설치
2022		3,190,625	3,190,625	3,190,625	
2023		4,012,846	4,012,846	4,012,846	

○ **조례의 입법목적 달성도 또는 부수효과 분석**

- 조례 목적달성도 평가
  - 조례 내용에 따라 도시가스 미공급지역에 체계적으로 도시가스를 공급할 수 있어 조례의 목적이 달성됨
- 부수효과
  - 도시가스의 안정적인 공급을 통해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전북특별자치도민의 생활수준을 향상할 수 있음

○ **타 시·도 유사 조례와 비교 또는 타 시·도 자치법규(정책) 동향**

전북특별자치도 도시가스 공급시설 설치비 지원 조례	부산광역시 도시가스 공급시설 설치비 지원 조례	충청남도 도시가스공급시설 설치비 지원 조례	충청북도 도시가스공급시설 설치비 지원 조례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제3조(책무)	제3조(책무)	제3조(책무)	제3조(도지사의 책무)
제4조(지원계획의 수립·시행)	제4조(지원계획)	제4조(지원계획의 수립·시행)	제4조(지원계획의 수립 및 시행)
제5조(설치비 지원)	**제5조(실태조사)**	제5조(설치비 지원)	제5조(지원내용)
제6조(지원신청)	제6조(지원대상)	제6조(지원신청)	제6조(지원신청 등)
제7조(지원대상 선정 등)	제7조(지원내용)	제7조(지원대상 선정 등)	제7조(지원대상 선정 등)
제8조(협약체결)	제8조(지원금의 환수)	제8조(협약체결)	제8조(보조금 지원)
제9조(지도·감독)	제9조(협조체계 구축·운영)	제9조(지도·감독)	제9조(협약체결)
제10조(환수 등)	제10조(감독)	제10조(환수 등)	제10조(사업의 점검)
제11조(준용)		제11조(준용)	제11조(보조금의 반환 등)
제12조(권한의 위임)		제12조(시행규칙)	**제12조(사업결과 보고)**
제13조(시행규칙)			제13조(시행규칙)

- 부산광역시 조례에서는 지원계획을 효율적으로 수립·시행하기 위해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규정하여 도시가스를 공급하기 어려운 지역의 현황, 세대수 등을 파악하고자 하고 있음
- 충청북도 조례에서는 시장·군수가 설치비 지원사업의 완료시 보조금 지원에 대한 결과를 도지사에게 보고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Ⅳ. 개정의견

현 행	개정안	비고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사업자"란「도시가스사업법」제3조제2항에 따라 일반도시가스사업의 허가를 받은 기관 또는 법인·개인을 말한다. 2. "공급배관 등"이란 본관·공급관 및 정압시설을 말한다. 3. ~ 4. 생략 5. "수요가부담 시설분담금"이란 사업자가 경제성 미달지역의 가스공급 요청자에게 일반시설분담금 및 취사전용시설분담금 외에 추가적으로 분담하도록 하는 설치비용의 선부과 요금을 말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사업자"란「도시가스사업법」제3조제2항에 따라 일반도시가스사업의 허가를 받은 자를 말한다. 2. "공급배관등"이란 본관·공급관 및 정압시설을 말한다. 3. ~ 4. 현행과 같음 5. "수요가부담 시설분담금"이란 사업자가 경제성 미달지역의 가스공급 요청자에게 일반시설분담금 및 취사전용시설분담금 외에 추가적으로 분담하도록 하는 설치비용을 미리 부과한 요금을 말한다.	-사람 외에 단체, 법인 등도 가리킬 때는 "자"를 씀 -정의에서 사용하는 '등'은 한 단어로 판단하여 붙여서 씀 -한자어 정비
제4조(지원계획의 수립·시행) 도지사는 사업자의 도시가스공급 사업계획 등을 반영하여 해마다 미공급지역에 대한 도시가스 공급 지원규모, 지원절차 등을 포함하는 전북특별자치도 도시가스 미공급지역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해야 한다. 〈신설〉	제4조(지원계획의 수립·시행) ① 도지사는 매년 도시가스 미공급 지역에 대한 전북특별자치도 도시가스 미공급지역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해야 한다. 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지원계획의 방향 및 목표 2. 도시가스 공급시설 설치비 지원을 위한 시책 개발에 관한 사항 3. 제5조에 따른 지원내용에 관한 사항 4. 도시가스 공급시설 설치비 지원을 위한 재원조달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도지사가 공급시설 설치비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지원계획의 수립 시행에 대한 내용을 명확하고 구체적으로 명시하도록 규정 신설 권고
제7조(지원대상 선정 등) ① 생략 ② 제1항의 지원 대상구역 선정 방법 및 절차는 규칙으로 정한다. ③ 생략	제7조(지원대상 선정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제1항의 지원대상 구역 선정 방법 및 절차는 규칙으로 정한다. ③ 현행과 같음	-조 제목에 맞게 띄어쓰기 정비 권고 -규칙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는 사항을 정하도록 규칙 제정 권고

현 행	개정안	비고
제11조(준용) 도시가스 설치비 지원을 위한 보조금의 신청·교부·보고·정산 등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외의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전북특별자치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삭제>	-재정지원에 관해 선언적인 의미만을 규정하면, 그에 따른 구체적인 사항은 당연히 「전북특별자치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적용 받으므로 규정의 실익이 없음(법제처, 2023년 우수조례 및 자치법규 입법컨설팅 사례집, 107면)
제13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삭제>	-시행규칙은 개별 조례에서 위임이 없더라도 조례의 집행에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규칙으로 규정할 수 있으므로 삭제 권고

심층분석 관련 검토

○ **심층분석 사유**

- 타 시·도 사례와 비교하여 선진적인 규정의 도입을 검토하였으나 추가적인 시사점을 발견하기 어려움. 개정의견과 같이 개정하도록 권고함

□ 참고자료 1 – 위원회 관련 실적

○ **구성**

- 위원회 규정 없음

○ **개최 실적**

- 해당사항 없음

□ 참고자료 2 – 조례 관련 보도 자료

○ 보도자료 1

2024년 도시가스 시설지원 사업을 위한 사업지역에 익산시 선정

지자체 소식

2024년 도시가스 시설지원 사업을 위한 사업지역 선정 공고

전북특별자치도 익산시 2024.01.08

익산시는 도시가스 공급 여건이 열악한 지역에 도시가스 공급사업을 추진하여 안전성이 우수한 청정에너지 공급함으로 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2024년도에 시행할 도시가스 공급사업 대상지역을 선정하기 위하여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 신청자격

○ 익산시 도시가스 공급 가능지역(동지역, 읍면 일부지역-함열읍 와리·황등면 황등리·금마면 동고도리·삼기면 오룡리) 중 다음 조건 해당 지역에 한한다.

·「건축법 시행령」 별표 1의 제1호 단독주택

· 「건축법 시행령」 별표 1의 제2호 공동주택 중 아파트(읍면지역에 한함), 연립주택과 다세대주택

· 그 밖의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역

* 순수 영업・업무용 세대만을 공급할 목적으로 신청하는 지역은 보조금 지원을 제한할 수 있다.

□ 지원범위

○ 공급관공사 시설비중 주민분담금의 80%이내로 세대당 최대 700만원 다만, 기초생활수급자의 세대에 대하여는 최대 800만원까지 지원

※공급관 공사 : 중압 및 저압관에서 소로 및 골목길 배관공사

* 공급관 : 정압기에서 가스사용자가 소유하거나 점유하고 있는 토지의 경계까지 이르는 배관

○ 보조금은 도시가스사업자에게 지급되며, 도시가스사업자는 도시가스 신청 주민에게 사전에 주민분담금중 보조금을 공제 후 시설비를 청구

○ 지원가구수 : 75가구지원 예상(예산확보 500백만원)

□ 제외대상

○ 공급관 개별공사가 10m미만의 공사

○ 가구별 내부 설치공사

○ 공급가능여부를 도시가스사업자와 협의하지 아니한 지역

○ 관련 법령에서 가스공급시설에 대한 공사가 제한될 경우(예 : 사유지 도로 등)

○ 철도, 상하수도, 하천, 암반 등 지형이 특수하여 공사가 기술적으로 곤란하거나 안전확보가 곤란한 경우

○ 재개발지역 및 도로굴착 불허가 구간

□ 신청대상 및 요령

○ 신청 대상자 : 익산시 도시가스 미공급 지역내 주민

○ 신 청 기 간 : 2022. 12. 19. ~ 2023. 2. 17.까지

(단, 기한 내 신청자 부족 시 예산 범위 내에서 계속 접수)

○ 신청서 제출처 : 전북에너지서비스(주) 영업공무팀(☎830-8556, 8552)

익산시청 읍・면・동사무소 또는 일자리정책과(☎1577-0072, 859-5217)

○ 신청방법 : 도시가스공급 보조사업 신청서(붙임)에 의한 신청

붙임 도시가스 공급관 보조금 신청서 1부. 끝.

○ **보도자료 2**

전북자치도, 농어촌 도시가스 배관 설치 등에 563억 투입, 연합뉴스[30)]

(전주=연합뉴스) 임채두 기자 = 전북특별자치도는 에너지 공급망 확대와 취약계층의 에너지 시설 개선을 위한 10개 사업에 563억원을 투입한다고 29일 밝혔다.

사업별로 보면 도시가스가 공급되지 않는 농어촌 지역 주민을 위해 223억원을 들여 가스 배관을 설치한다.

도시가스 배관 51.6㎞가 연장되면 1천500여 세대가 안정적으로 도시가스를 공급받을 수 있게 된다.

또 액화석유가스(LPG) 저장탱크 및 배관망 설치에 107억원을 배정, 2천200여 세대에 안정적인 에너지 보급망을 구축하기로 했다.

아울러 보일러 점검·수리, 고효율 LED 조명등 교체, 가스타이머 안전장치 보급 등도 추진할 계획이다.

이종훈 전북자치도 에너지수소산업과장은 "올해도 에너지 공급망 확대 등 복지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해 민생 안정을 도모하겠다"고 말했다.

30) https://www.yna.co.kr/view/AKR20240129104400055

붙임 1 사업 관련 추진실적

□ 연도별 사업 및 예산 집행 실적

○ 도시가스 미공급지역 설치비 지원 실적

- 2021~2023 실적

(금액단위: 천원)

연도	사업명	필요예산	확보예산	집행액	집행내역
2021	도시가스 미공급지역 설치비 지원	2,228,315	2,228,315	2,228,315	도시가스 미공급지역 배관 설치
2022		3,190,625	3,190,625	3,190,625	
2023		4,012,846	4,012,846	4,012,846	

- 2024 계획

(단위 : 가구, m, 백만원)

구 분		합 계	전주	군산	익산	정읍	남원	김제	완주	진안	장수	순창	부안
사업대상		**29**	**2**	**2**	**1**	**5**	**6**	**2**	**3**	**1**	**3**	**2**	**2**
공 급 관		**52,244**	**2,221**	**10,910**	**1,728**	**14,377**	**2,415**	**3,060**	**4,773**	**978**	**3,082**	**3,180**	**5,520**
사업비	**합계**	22,036	442	4,925	841	7,205	809	1,110	1,748	413	1,431	1,000	2,112
	도 비	4,904	88	976	152	1,674	74	322	368	124	386	257	483
	시군비	11,442	204	2,277	353	3,905	174	751	858	289	902	600	1,129
	기 타	5,690	150	1,671	337	1,626	561	37	522	협의중	143	143	500

□ 기대효과

- 정부의「에너지안전과 복지지원 강화」정책에 기여
- 도시가스 설치비 지원을 통한 수요가 부담완화 및 에너지복지 향상

붙임 2 평가대상 조례

전북특별자치도 도시가스 공급시설 설치비 지원 조례

[시행 2024. 1. 18.] [전북특별자치도조례 제5399호, 2023. 12. 8., 일부개정]

전북특별자치도(청정에너지수소과), 063-280-3236

제1조(목적) 이 조례는「도시가스사업법」제19조의3에 따라 전북특별자치도 내 도시가스 미공급지역에 이를 조기에 공급함으로써, 주민의 연료비 부담 경감 및 주거환경 개선에 기여하기 위하여 도시가스 공급시설 설치비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3. 12. 8.>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사업자”란「도시가스사업법」제3조제2항에 따라 일반도시가스사업의 허가를 받은 기관 또는 법인·개인을 말한다.
2. “공급배관 등”이란 본관·공급관 및 정압시설을 말한다.
3. “세대”란 도시가스 계량기의 설치대수 단위를 말한다.
4. “경제성 미달지역”이란「도시가스사업법」제19조제3항제1호에 해당하는 지역을 말한다.
5. “수요가부담 시설분담금”이란 사업자가 경제성 미달지역의 가스공급 요청자에게 일반시설분담금 및 취사전용시설분담금 외에 추가적으로 분담하도록 하는 설치비용의 선부과 요금을 말한다.

제3조(책무) 전북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도시가스사용 혜택을 받지 못하는 주민의 생활불편 해소를 위하여 도시가스 공급계획을 수립할 경우 전북특별자치도 도시가스 미공급지역(이하 “미공급지역”이라 한다)이 우선 반영되도록 노력해야 한다.<개정 2023. 12. 8.>

제4조(지원계획의 수립·시행) 도지사는 사업자의 도시가스공급 사업계획 등을 반영하여 해마다 미공급지역에 대한 도시가스 공급 지원규모, 지원절차 등을 포함하는 전북특별자치도 도시가스 미공급지역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해야 한다.<개정 2023. 12. 8.>

제5조(설치비 지원)

① 도지사는 지원계획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설치비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1. 미공급지역의 공급배관 등 설치비
2. 경제성 미달지역의 수요가부담 시설분담금

② 제1항에 따른 설치비 지원은 도시가스 보급률에 따라 차등하여 지원한다.

제6조(지원신청)

① 제5조에 따른 지원을 원하는 사람은 주민대표를 정하여 별지 제1호서식의 신청서 및 사업자가 작성한 별지 제2호서식의 사업계획서를 관할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신청지역에 대한 우선순위를 관할 시장·군수에게 정하여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

③ 주민대표가 제1항의 지원 신청을 위해 사업자에게 사업계획서의 작성을 요청하는 경우 사업자는 30일 이내에 이를 작성하여 신청인에게 제공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7조(지원대상 선정 등)

① 도지사는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 대상 구역을 선정하여 시장·군수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지원 대상구역 선정 방법 및 절차는 규칙으로 정한다.

③ 지원 대상으로 선정된 구역의 사업계획이 변경되는 경우 도지사의 변경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8조(협약체결) 도지사는 미공급지역에 도시가스공급의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하여 필요할 경우 사업자와 해당 사업에 관한 협약을 체결할 수 있다.

제9조(지도·감독) 도지사는 필요할 경우 소속 공무원 또는 관련 전문가로 하여금 제5조에 따라 지원한 사업 추진상황을 점검하게 하고 필요한 행정조치 등의 지도·감독을 할 수 있다.

제10조(환수 등)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이미 교부한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되돌려 받거나 그 교부를 중지할 수 있다.

1. 법령이나 조례 또는 그 교부조건을 위반한 때
2. 해당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가 중단된 때
3.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교부받은 때
4. 그 밖에 도지사의 행정조치를 이행하지 않거나 검사거부 또는 거짓보고를 한 때

제11조(준용) 도시가스 설치비 지원을 위한 보조금의 신청·교부·보고·정산 등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외의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전북특별자치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개정 2023. 12. 8.>

제12조(권한의 위임) 도지사는 제6조제1항에 따른 신청 접수 권한을 시장·군수에게 위임한다.

제13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20. 전북특별자치도 지역서점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Ⅰ. 종합의견

< 평가결과 >

□ 평가대상

조 례 명	전북특별자치도 지역서점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구분	개별 법률 위임	관계 법령	「출판문화산업 진흥법」제7조의2
제정·시행일	2017. 4. 14. 제정	최근개정·시행일	2023. 12. 8. 개정
소관 부서	문화산업과	소관 상임위	문화안전소방

□ 평가의견

평가항목	평가의견	주요 내용
종합의견	개정/일반	- 위임조례로서의 성격을 명확하게 하도록 목적조항 정비 검토 - 법제처 자치법규 입안기준에 따른 정비(용어 수정, 당연규정 삭제) 검토 - 지역서점 활성화를 위하여 전북자치도의 특성을 담아 조례로 지역서점의 요건을 정할 필요성에 대하여 심층 분석을 통해 검토
심층분석 결과		- 지역서점 활성화 관련 조례를 운영하는 타 시·도는 강원특별자치도, 경기도, 경상남도, 경상북도, 광주광역시, 대전광역시, 부산광역시, 서울특별시, 세종특별자치시, 울산광역시, 인천광역시, 전라남도, 전북특별자치도, 제주특별자치도, 충청남도, 충청북도임. 타 시·도의 사례를 참고하여 지원사업에 관한 규정 추가, 지역서점 독서문화 지원 규정, 인증제도 운영, 우선 조달계약에 관한 규정 신설 권고
1. 입법 근거 및 적법성	적정	「출판문화산업 진흥법」 제7조의2(지역서점 활성화 지원 등)에 근거하여 위임의 범위에서 적절하게 제정되었음
2. 조례의 실효성	적정	제5조에 따른 활성화 계획을 통해 조례의 실효성을 확보하고 있음
3. 조례 내용의 적정성	적정	재정지원 규정 및 지원대상이 구체화되어 있기 때문에 조례 내용이 적정함
4. 조례의 공평성	적정	장애, 성별, 나이 등에 관한 사회적 편견, 고정관념이 반영된 표현 및 차별 규정 없음

5. 주민 수용성	적정	조례의 체계 및 용어가 주민이 알기 쉽게 되어 있음
6. 전북자치도 현실부합성	적정	지역 서점에 대한 적정한 지원을 통해 공공복리 증진에 기여하는 조례로 전북특별자치도 현실에 부합함
7. 위원회 운영의 적정성	적정	위원회가 규정대로 설치되었고 활발히 운영되고 있어 위원회의 운영이 적절함
※ 기타 의견	없음	

Ⅱ. 항목별 평가 결과

평가항목	세부항목	척도	의견 및 자료
1. 입법의 근거 및 적법성	1) 위임조례인가 자치사무에 관한 조례인가?	☑ 위임조례 ☐ 자치사무에 관한 조례	
	2) 조례에서 규정하고 있는 위임근거가 올바른가?	☑ 그렇다 ☐ 그렇지않다 ☐ 해당사항 없음	
	3) 조례가 위임범위에서 적절하게 제·개정되었는가?	☑ 그렇다 ☐ 그렇지않다 ☐ 해당사항 없음	
	4) 조례 제.개정 이후 동일 또는 유사한 법령이나 제도가 만들어졌거나 근거법령이 개정 또는 폐지되었는가?	☐ 그렇다 ☑ 그렇지않다 ☐ 해당사항 없음	
	5) 조례에서 주민의 권리제한, 의무부과, 벌칙 부과, 규제사항에 대한 법률위임이 있는가?	☐ 그렇다 ☑ 그렇지않다 ☐ 해당사항 없음	
	6) 상위법령에 위배되는 조항이 있는가?	☐ 그렇다 ☑ 그렇지않다 ☐ 해당사항 없음	
2. 조례의 실효성	1) 조례의 시행과정에서 다른 조례와의 충돌이나 모순이 발생하고 있는가?	☐ 그렇다 ☑ 그렇지않다 ☐ 해당사항 없음	
	2) 이 조례와 유사 또는 동일한 다른 조례가 제정 및 시행되고 있어 통합할 필요가 있는가?	☐ 그렇다 ☑ 그렇지않다 ☐ 해당사항 없음	
	3) 조례에 따른 계획이 수립·시행되고 있는가?	☐ 그렇다 ☐ 그렇지않다 ☑ 해당사항 없음	
	4) 조례에서 집행기관 등에 책무를 부여하고 있는가?	☐ 그렇다 ☐ 그렇지않다 ☑ 해당사항 없음	

평가항목	세부항목	척도	의견 및 자료
	5) 조례에서 부여한 책무와 관련사업을 집행기관이 잘 이행하고 있는가?	□ 그렇다 □ 그렇지않다 ☑ 해당사항 없음	
3. 조례 내용의 적정성	1) 조례에 재정지원 관련 규정이 있는가?	☑ 그렇다 □ 그렇지않다 □ 해당사항 없음	-제6조(지원사업 추진)
	2) 조례 시행에 필요한 예산 확보와 집행이 잘 이루어지고 있는가?	☑ 그렇다 □ 그렇지않다 □ 해당사항 없음	
	3) 지원대상이 집행이 가능한 정도로 구체화 되어 있는가?	☑ 그렇다 □ 그렇지않다 □ 해당사항 없음	
	4) 조례에 따른 위탁사무가 위탁대상으로 적정한가?	☑ 그렇다 □ 그렇지않다 □ 해당사항 없음	-임의규정
4. 조례의 공평성	1) 조례에서 장애인, 성별 등의 특정계층이나 특정지역을 차별하는 조항이 있는가?	□ 그렇다 ☑ 그렇지않다 □ 해당사항 없음	
	2) 조례에서 정한 차별이 합리적인가?	□ 그렇다 □ 그렇지않다 ☑ 해당사항 없음	
5. 주민 의견 수용성	1) 조례 제·개정 시 입법예고는 하였는가?	☑ 그렇다 □ 그렇지않다 □ 해당사항 없음	
	2) 조례 제·개정 시 공청회, 세미나 등 이해관계인 및 주민에 대한 의견 수렴 과정이 있었는가?	□ 그렇다 □ 그렇지않다 ☑ 해당사항 없음	
	3) 조례와 관련한 민원(청원, 진정, 소송 등)이 제기되거나 개정 또는 폐지 요구가 있었는가?	□ 그렇다 □ 그렇지않다 ☑ 해당사항 없음	
	4) 조례의 체계나 사용 되어진 용어가 주민이 알기 쉽게 되어 있는가?	☑ 그렇다 □ 그렇지않다 □ 해당사항 없음	
6. 위원회 운영의 적정성	1) 조례로 위원회를 구성하도록 되어 있는가?	☑ 그렇다 □ 그렇지않다 □ 해당사항 없음	-제9조

평가항목	세부항목	척도	의견 및 자료
	2) 위원회가 법정위원회인가 조례로 설치하도록 한 위원회인가?	☐ 법정위원회 ☑ 조례로 정한 위원회 ☐ 해당사항 없음	
	3) 위원회 위원의 성별 구성이 적정한가?	☑ 그렇다 ☐ 그렇지않다 ☐ 해당사항 없음	-위촉직 남5, 여5
	4) 위원회가 법령이나 조례에서 정한 회의개최 운영 실적이 있고 관련 회의록을 보존하고 있는가?	☑ 그렇다 ☐ 그렇지않다 ☐ 해당사항 없음	
	5) 위원회를 계속 설치·운영할 필요성이 있는가?	☑ 그렇다 ☐ 그렇지않다 ☐ 해당사항 없음	
	6) 해당 위원회와 유사한 다른 위원회와의 기능적 통합이 필요한가?	☐ 그렇다 ☑ 그렇지않다 ☐ 해당사항 없음	
7. 종합 의견	1) 이 조례를 현행대로 유지할 필요가 있는가?	☑ 그렇다 ☐ 그렇지않다	
	2) 이 조례를 개정할 이유가 있는가? (해당사항 모두 표기)	☐ 위임근거에 불부합 ☐ 위임근거 불명확 ☐ 법령의 위임 없는 규제 정비 필요 ☐ 다른 조례와의 상충 및 모순 ☐ 조례 시행의 문제점 발생 ☐ 조례의 공평성 문제 ☑ 알기 쉬운 법령정비 기준에 따른 정비 필요 ☐ 위원회 관련 규정개정 필요 ☑ 그 밖의 사유	-지역서점 요건 관련 규정 검토
	3) 이 조례를 폐지할 사유가 있는가? (해당사항 모두 표기)	☐ 다른 유사한 조례와의 통합 운영 필요성 ☐ 조례 시행 불가능 ☐ 최근 3년간 조례 관련 운영 실적 전무 ☐ 기타	
	4) 그 밖의 이 조례와 관련된 의견이 있는가?	☐ 있다 ☐ 없다	

Ⅲ. 세부내용

조례명	전북특별자치도 지역서점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소관 부서 의견(팀)

○ **최종의견 : 지역 문화공간으로서의 성장을 도모하여 지역서점 활성화를 꾀하고 도민의 독서문화 진흥에 이바지하기 위해서는 조례의 현행 유지가 필요함**

○ **내용**

- (1-1) 본 조례는「출판문화산업 진흥법」제7조의2에 따라 제정된 위임조례임
- (2-5) 조례 내용에 따라 2023년에 45,000천원(2,699권), 2024년에 29,010천원(1,759권)을 전북특별자치도청 도서관 도서 구입에 사용함
- (3-1) 조례 제6조에 따라 지원 사업을 진행할 수 있음
- (3-3) 2022년과 2023년 예산을 확보하여 집행함
- (3-4) 조례 제2조에 "지역서점"을 '전북특별자치도에 본사와 방문매장 사업장을 두고 영업하고 있는 서점'으로 구체화함
- (6-1) 온라인·대형 체인서점의 시장 장악과 그에 따른 지역서점의 도태 위기 가속화에 따른 경영지원 근거를 마련하여 지역서점의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조례 제4조를「출판문화산업 진흥법」제7조의2와 동일하게 규정함
- (7-1) 조례 제9조에 따라 전북특별자치도 지역서점위원회를 둘 수 있음
- (7-3) 위원회 위원 9인 중 여성 비율은 50%임
- (7-4) 2022년부터 2024년까지 위원회를 개최함

■ 종합의견	개정 권고/일반 정비

◎ 입법평가 세부의견

○ **평가항목별 검토**

평가항목	평가항목별 검토 내용
1. 입법 근거 및 적법성	「출판문화산업 진흥법」 제7조의2(지역서점 활성화 지원 등)에 근거하여 위임 범위에서 적절하게 제정되었음
2. 조례의 실효성	제5조에 따른 활성화 계획을 통해 조례의 실효성을 확보하고 있음
3. 조례 내용의 적정성	재정지원 규정 및 지원대상이 구체화되어 있기 때문에 조례 내용이 적정함
4. 조례의 공평성	장애, 성별, 나이 등에 관한 사회적 편견, 고정관념이 반영된 표현 및 차별 규정 없음

5. 주민 수용성	조례의 체계 및 용어가 주민이 알기 쉽게 되어 있음
6. 전북자치도 현실부합성	지역 서점에 대한 적정한 지원을 통해 공공복리 증진에 기여하는 조례로 전북특별자치도 현실에 부합함
7. 위원회 운영의 적정성	위원회가 규정대로 설치되었고 활발히 운영되고 있어 위원회의 운영이 적절함
※ 기타 의견	없음

○ 연도별 사업내용 및 예산/집행액

(단위: 천원)

연도	사업명	필요예산	확보예산	집행액	집행내역
2022	전북도청도서관 도서구입	45,000	45,000	44,921	전북도청도서관 도서구입
	동네서점과 작가와의만남	1,500	1,500	1,500	강사수당, 현수막 제작, 강연장 및 장비 임차료
2023	전북도청도서관 도서구입	45,000	45,000	44,921	전북도청도서관 도서구입
	동네서점과 작가와의만남	2,930	2,930	2,430	강사수당, 도서구입, 현수막 제작 등

○ 조례의 입법목적 달성도 또는 부수효과 분석

- 조례 목적달성도 평가
  - 조례 내용에 따라 전북 도서관 도서 우선 구입, 작가와의 만남 등의 사업을 추진한다는 점에서 조례의 목적이 달성되고 있다고 평가됨
- 부수효과
  - 지역 서점 지원을 통해 전북특별자치도민의 독서문화 창달 및 도서산업 활성화에 이바지할 수 있음

○ 타 시·도 유사 조례와 비교 또는 타 시·도 자치법규(정책) 동향

전북특별자치도 지역서점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경기도 지역서점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울산광역시 지역서점 활성화에 관한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지역서점 활성화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3조(적용범위)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4조(도지사의 책무)	제4조(도지사의 책무)	제4조(시장의 책무)	제4조(도지사의 책무)
제5조(지역서점 활성화 및 지원계획)	제5조(지역서점 활성화 및 지원계획)	제5조(지역서점 지원계획)	제5조(지원계획)

제6조(지원사업 추진)	제6조(지역서점 지원)	제6조(지역서점 지원사업)	제6조(지원사업)
제7조(사무의 위탁)	**제6조의2(지역서점 인증)**	**제6조의2(지역서점 인증)**	**제7조(지역서점 인증)**
제8조(협력체계 구축)	제7조(지역서점위원회 설치)	**제6조의3(인증요건)**	제8조(지역서점위원회 설치)
제9조(지역서점위원회 설치)	제8조(구성)	**제6조의4(인증 유효기간 등)**	제9조(위원회 구성)
제10조(구성)	제9조(위원의 위촉 해제)	**제6조의5(인증서점의 관리)**	제10조(협력사업)
제11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제10조(위원장의 직무)	**제6조의6(인증 취소)**	**제11조(지역서점 등과의 우선 조달계약)**
제12조(해촉)	제11조(회의·운영)	제7조(지역서점 독서문화 지원)	제12조(협력체계의 구축)
제13조(위원장의 직무)	제12조(수당 등)	제8조(지역서점위원회 설치)	제13조(위임・위탁)
제14조(회의·운영)	**제13조(지역서점 등과의 우선 조달계약)**	제9조(위원회 구성)	제14조(포상)
제15조(수당 등)	제14조(업무의 위탁)	제10조(회의·운영)	제15조(시행규칙)
제16조(포상)	제15조(표창)	제11조(사무의 위탁)	
	제16조(시행규칙)	제12조(포상)	
		제13조(시행규칙)	

- 경기도와 울산광역시, 강원특별자치도 조례에서는 지역서점 인증 제도를 마련하여 인증받은 지역 서점에 대해 지원사업을 우선적으로 시행할 수 있음
- 경기도와 강원특별자치도 조례에서는 지역서점 및 「협동조합기본법」에 의한 지역서점 협동조합에 대해 도서에 관한 조달계약을 우선적으로 체결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Ⅳ. 개정의견

현 행	개정안	비고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독서문화 진흥을 통한 지역서점의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도민의 독서문화 진흥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출판문화산업 진흥법」 제7조의2에 따라 전북특별자치도 내 독서문화 진흥을 통한 지역서점의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전북특별자치도민의 독서문화 진흥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위임조례로서의 성격을 명확하게 하도록 목적조항의 규정을 정비 권고
제2조(정의) 이 조례의 "지역서점"이란 전북특별자치도에 본사와 방문매장 사업장을 두고 영업하고 있는 서점을 말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지역서점"이란 전북특별자치도 내에 본사와 방문매장 사업장을 두고 영업하고 있는 서점을 말한다.	-정의조항 규정 형식에 맞게 문장 정비 권고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독서문화 진흥을 통한 지역서점 활성화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독서문화 진흥을 통한 지역서점 활성화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입법편제면에서 순서 조정(제3조↔제4조)
제4조(도지사의 책무) ① 전북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독서문화 진흥을 통한 지역서점의 경영안정을 위하여 지역서점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시책을 적극 발굴하고 추진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도서관 등에서의 도서구입시 지역서점 우선구매 정책을 시행하고, 필요한 예산 지원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③ 도지사는 지역서점 활성화에 필요한 시책 마련 및 추진을 위하여 전북특별자치도교육감 및 시장·군수와 협력하여야 한다.	제3조(도지사의 책무) ① 전북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독서문화 진흥을 통한 지역서점의 경영안정을 위하여 지역서점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시책을 적극 발굴하고 추진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도서관 등에서의 도서구입 시 지역서점 우선구매 정책을 시행하고, 필요한 예산 지원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③ 도지사는 지역서점 활성화에 필요한 시책 마련 및 추진을 위하여 전북특별자치도교육감 및 시장·군수와 협력하여야 한다.	-입법편제면에서 순서 조정(제3조↔제4조) -띄어쓰기 정비 권고
제5조(지역서점 활성화 및 지원계획) ① 도지사는 지역서점 활성화와 경쟁력 강화를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지역서점 활성화 및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	제5조(지역서점 활성화 및 지원계획) ① 도지사는 지역서점 활성화와 경쟁력 강화를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전북특별자치도 지역서점 활성화 및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	-지원계획에 행정기관의 고유명칭을 표기하도록 정비 권고
제6조(지원사업 추진) 도지사는 지	제6조(지원사업 추진) 도지사는 지	-심층분석 결과 타 시·도

현 행	개정안	비고
역문화공간으로서의 지역서점을 활성화하고 경영안정을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인문학 강좌, 작가와의 만남 등 독서관련 프로그램 운영 2. 지역문화공간으로서의 지역서점 활성화 포럼 3. 창업상담, 컨설팅, 교육, 창업자금 융자지원 등의 창업지원 <신설> 4. 그 밖에 지역서점 활성화와 경영안정 등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	역문화공간으로서의 지역서점을 활성화하고 경영안정을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인문학 강좌, 작가와의 만남 등 독서관련 프로그램 운영 2. 지역문화공간으로서의 지역서점 활성화 포럼 3. 창업상담, 컨설팅, 교육, 창업자금 융자지원 등의 창업지원 4. 지역서점 활성화를 위한 독서문화 진흥 시설의 설치 지원 5. 공공도서관 도서 우선 구매 6. 책값 돌려주기 등 지역서점 활성화 지원 7. 협업사업, 밀집지역 활성화, 문화·교육프로그램 운영 등 활성화를 위한 등 경영개선 지원 8. 홍보, 디자인 또는 공동브랜드 개발, 판매촉진 등 마케팅 지원 지역서점, 관련 조합 및 단체 등의 지역서점 활성화를 위한 사업 지원 9. 지역서점 활성화를 위한 책 읽는 문화 확산 시설 설치 지원 10. 그 밖에 지역서점 활성화와 경영안정 등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	의 사례를 참고하여 지원사업의 세부내용 신설 권고
<신설>	제6조의2(지역서점 독서문화 지원) ① 도지사는 지역서점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문화·교육 프로그램 운영 등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인문도서, 고서 등을 전문으로 취급하는 특성화서점의 활성화를 위하여 시책을 추진하고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③ 도지사는 지역서점을 활성화하고 독서인구의 저변을 확대하기 위하여 전북특별자치도민이 지역서점에서 구입한 도서를 읽고 도서관에 제출할 경우 책값을 돌려주는 등의	-심층분석 결과 타 시·도의 사례를 참고하여 지역서점 독서문화 지원에 관한 규정 신설 권고

현 행	개정안	비고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신설>	제6조의3(인증제도 운영) ① 도지사는 지역서점의 자생력 강화 및 복합문화공간화 성장 지원을 위하여 지역문화공간으로서의 지역서점임을 인증하는 인증제도를 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역서점 인증에 필요한 요건, 절차 및 취소 등 구체적인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심층분석 결과 타 시·도의 사례를 참고하여 인증제도 운영에 관한 규정 신설 권고
제7조(사무의 위탁) ① 생략 ② 제1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할 경우에 필요한 절차·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전북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에 따른다.	제7조(업무의 위탁) ① 현행과 같음 ② <삭제>	-업무위탁에 대한 선언적인 의미만을 규정하면, 그에 따른 구체적인 사항은 당연히 「전북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를 적용 받으므로 규정의 실익이 없음(법제처, 2023년 우수조례 및 자치법규 입법컨설팅 사례집, 108면)
제10조(구성) ① 생략 ② 위원회의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다만, 위촉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 위원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한다. 1. 전북도청도서관 관장 2. ~ 5. 생략 ③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④ 생략	제10조(구성) ① 현행과 같음 ② 위원회의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다만, 위촉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 위원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한다. 1. 전북특별자치도청도서관 관장 2. ~ 5. 현행과 같음 ③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④ 현행과 같음	-명칭 변경 정비 권고 -연임 제한에 관한 일반적인 표현으로 규정하도록 정비 권고 -문장 표현 정비 권고
제14조(회의·운영) ① 위원회의 정기회는 매년 한차례 이상 개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임시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제14조(회의·운영) ① 위원회의 정기회는 매년 한 차례 이상 개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임시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문장 정비 권고

현 행	개정안	비고
소집한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소집한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5조(수당 등)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전북특별자치도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위원회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15조(수당 등)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위원회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수당 및 여비에 관해 선언적인 의미만을 규정하면, 그에 따른 구체적인 사항은 당연히 「전북특별자치도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적용받으므로 규정의 실익이 없음(법제처, 2023년 우수조례 및 자치법규 입법컨설팅 사례집, 226면)
<신설>	제15조의2(지역서점 등과의 우선 조달계약) ① 도지사는 법령의 범위 안에서 지역서점 또는 「협동조합 기본법」에 따른 지역서점 협동조합에 대하여 도서에 관한 조달계약을 우선적으로 체결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지역서점에서 도서를 구입하는 학교 및 공공기관, 시·군의 도서관 등에 대하여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	-심층분석 결과 타 시·도의 사례를 참고하여 우선조달계약에 관한 규정 신설 권고
제16조(포상) 도지사는 독서문화 진흥을 통한 지역서점 활성화에 기여한 공적이 뛰어난 개인 또는 단체 등에 대하여 「전북특별자치도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제16조(포상) 도지사는 독서문화 진흥을 통한 지역서점 활성화에 기여한 공적이 뛰어난 개인 또는 단체 등에 대하여 포상할 수 있다.	-포상에 관해 선언적인 의미만을 규정하면, 그에 따른 구체적인 사항은 당연히 「전북특별자치도 포상 조례」를 적용 받으므로 규정의 실익이 없음(법제처, 2023년 우수조례 및 자치법규 입법컨설팅 사례집, 118면)

심층분석 관련 검토

○ 심층분석 사유

- 지역서점 활성화를 위하여 전북자치도의 특성을 담아 조례로 지역서점의 요건을 정할 필요성에 대하여 심층분석을 통해 검토 필요. 이를 위하여 타 시·도의 사례를 분석함

○ 심층분석

- 지역서점의 실질적인 활성화를 위하여 타 시·도의 지원사업 관련 규정을 살펴봄

시·도	규정 내용
강원특별자치도 지역서점 활성화에 관한 조례	제6조(지원사업) 도지사는 지역서점의 경영 및 창업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1. 자금, 인력, 기술, 판로, 입지, 협업사업 등의 경영컨설팅 지원 2. 창업상담, 창업자금 융자 등 지원 3. 홍보, 판매촉진 등 마케팅 지원 4. 그 밖에 지역서점의 경쟁력 강화와 경영안정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경기도 지역서점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6조(지역서점 지원) 도지사는 지역서점의 경영 및 창업지원과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1. 창업상담, 컨설팅, 교육, 창업자금 융자지원 등 창업지원 2. 협업사업, 문화·교육프로그램 운영 등 활성화를 위한 등 경영개선 지원 3. 홍보, 디자인 또는 공동브랜드 개발, 판매촉진 등 마케팅 지원 4. 자금·인력·기술·판로·입지 등의 개선에 필요한 경영컨설팅 지원 5. 지역서점, 관련 조합 및 단체 등의 지역서점 활성화를 위한 사업 지원 6. 지역서점 활성화를 위한 책 읽는 문화 확산 시설 설치 지원 7. 그 밖에 지역서점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경상남도 지역서점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6조(지역서점 지원사업) 도지사는 지역서점의 경영 및 창업지원과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1.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은 지역서점 예비창업자에 대한 창업상담, 컨설팅, 교육, 창업자금 융자지원 등 창업지원 2. 협업사업, 밀집지역 활성화 등 경영개선 지원 3. 홍보, 디자인 또는 공동브랜드 개발, 판매촉진 등 마케팅 지원 4. 자금、인력、기술、판로、입지 등의 개선에 필요한 컨설팅 지원 5. 업종전환 또는 폐업을 하고자 하는 지역서점 지원 6. 지역서점, 관련 조합 및 단체 등의 지역서점 활성화를 위한 지원 7. 공공도서관 도서 우선 구매 8. 그 밖에 지역서점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경상북도 지역서점 활성화에 관한 조례	제6조(지원사업) ① 도지사는 지역서점의 경영 및 창업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1. 자금, 인력, 기술, 판로, 입지, 협업사업 등의 경영컨설팅 지원 2. 창업상담, 창업자금 융자 등 지원 3. 홍보, 판매촉진 등 마케팅 지원 4. 책값 돌려주기 등 지역서점 활성화 지원 5. 그 밖에 지역서점의 경쟁력 강화와 경영안정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도지사는 사업자등록을 하지 아니한 지역서점 창업예정자에게 제1항 각 호의 지원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광주광역시 지역서점 활성화 조례	제5조(지역서점 지원) 시장은 지역서점의 창업 및 경영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1. 지역서점 창업 상담 및 교육, 창업 자금 융자 지원 등 2. 협업사업, 밀집지역 활성화 사업 등 지원 3. 홍보, 디자인 또는 공동브랜드 개발, 판매 촉진 지원 4. 자금、인력、기술、판로、입지 등 개선에 필요한 경영 컨설팅 지원 5. 그 밖에 지역서점의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사업
대구광역시	-지역서점 지원 조례 없음
대전광역시 지역서점 활성화 조례	제5조(지원사업) ① 시장은 지역서점의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1. 창업상담, 교육, 창업자금 융자지원 등 창업 지원 2. 협력사업, 밀집지역 활성화 등 경영개선 지원 3. 홍보, 디자인 또는 공동브랜드 개발, 판매촉진 등 마케팅 지원 4. 자금·인력·기술·판로·입지 등의 개선에 필요한 컨설팅 지원 5. 공공도서관 도서 우선 구매 6. 그 밖에 지역서점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업 ② 시장은 제1항의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사업의 일부 또는 전부를 관련 법인·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부산광역시 지역서점 활성화에 관한 조례	제6조(지역서점 지원사업) ① 시장은 지역서점의 경영 및 창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1. 자금, 인력, 기술, 판로, 입지 등의 경영컨설팅 지원 2. 지역서점 밀집지역 활성화 사업, 협업사업 등 지원 3. 창업상담, 창업자금 융자 등 창업 지원 4. 홍보, 판매촉진 등 마케팅 지원 5. 그 밖에 지역서점의 경쟁력 강화와 성장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시장은 사업자등록을 하지 아니한 지역서점 창업예정자에게 제1항 각 호의 지원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제7조(지역서점 독서문화 지원) ① 시장은 지역서점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문화·교육 프로그램 운영 등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인문도서, 고서 등을 전문으로 취급하는 특성화서점의 활성화를 위한 시책을 추진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비용의 지원 방법 및 절차 등은 「부산광역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따른다.

서울특별시 지역서점 활성화에 관한 조례	제6조(지역서점 지원) 시장은 지역서점의 창업 및 경영지원과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1. 창업상담, 컨설팅, 교육, 창업자금 융자지원 등 창업 지원 2. 협업사업, 밀집지역 활성화 등 경영개선 지원 3. 홍보, 디자인 또는 공동브랜드 개발, 판매촉진 등 마케팅 지원 4. 자금ㆍ인력ㆍ기술ㆍ판로ㆍ입지 등의 개선에 필요한 건설팅 지원 5. 업종전환 또는 폐업을 하고자 하는 지역서점 지원 6. 지역서점, 관련 조합 및 단체 등의 지역서점 활성화를 위한 사업 지원 7. 지역서점 활성화를 위한 독서문화 진흥 시설의 설치 지원 8. 그 밖에 지역서점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사업
세종특별자치시 지역서점 활성화에 관한 조례	-지원사업에 관한 직접 규정 없음
울산광역시 지역서점 활성화에 관한 조례	제6조(지역서점 지원사업) ① 시장은 지역서점의 경영 및 창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1. 경영컨설팅 지원 2. 창업상담, 창업자금 융자 등 창업 지원 3. 홍보, 판매촉진 등 마케팅 지원 4. 그 밖에 지역서점의 경쟁력 강화와 성장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시장은 사업자등록을 하지 아니한 지역서점 창업예정자에게 제1항 각 호의 지원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제7조(지역서점 독서문화 지원) ① 시장은 지역서점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문화·교육 프로그램 운영 등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인문도서, 고서 등을 전문으로 취급하는 특성화서점의 활성화를 위하여 시책을 추진하고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지역서점을 활성화하고 독서인구의 저변을 확대하기 위하여 울산광역시민이 지역서점에서 구입한 도서를 읽고 도서관에 제출할 경우 책값을 돌려주는 등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신설 2020. 5. 28.> ④ 삭제
인천광역시 지역서점 활성화에 관한 조례	제6조(지역서점 지원사업) 시장은 지역서점의 경영 및 창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1. 창업상담, 컨설팅, 교육, 창업자금 융자지원 등 창업지원 2. 협업사업, 지역서점 밀집지역 활성화 등 경영개선 지원 3. 홍보, 판매촉진 등 마케팅 지원 4. 자금·인력·기술·판로·입지 등의 개선에 필요한 컨설팅 지원 5. 그 밖에 지역서점의 경쟁력 강화와 성장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7조(지역서점 독서문화 지원) ① 시장은 지역서점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문화ㆍ교육 프로그램 운영 등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시장은 특성화서점을 적극 발굴하여 지원하고, 특성화서점의 활성화를 위한 시책을 추진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비용의 지원 방법 및 절차 등은 「인천광역시 재정운영 조례」를 따른다.

전라남도 지역서점 활성화 및 지원 조례	제5조(지역서점 지원사업) 도지사는 지역서점의 경영 및 창업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1. 창업상담, 컨설팅, 교육, 창업자금 융자지원 등 창업지원 2. 협업사업, 밀집지역 활성화 경영개선 지원 3. 홍보, 판매촉진 등 마케팅 지원 4. 자금·인력·기술·판로·입지 등의 개선에 필요한 컨설팅 지원 5. 지역서점 활성화를 위한 독서문화 진흥 시설의 설치 지원 6. 그 밖에 지역서점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전북특별자치도 지역서점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6조(지원사업 추진) 도지사는 지역문화공간으로서의 지역서점을 활성화하고 경영안정을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인문학 강좌, 작가와의 만남 등 독서관련 프로그램 운영 2. 지역문화공간으로서의 지역서점 활성화 포럼 3. 창업상담, 컨설팅, 교육, 창업자금 융자지원 등의 창업지원 4. 그 밖에 지역서점 활성화와 경영안정 등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
제주특별자치도 지역서점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지원사업에 관한 직접 규정 없음
충청남도 지역서점 활성화에 관한 조례	제6조(지원사업) 도지사는 지역서점의 경영 및 창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이하 “지원사업”이라 한다)을 추진할 수 있다. 1. 창업상담, 컨설팅, 교육, 창업자금 융자 등 창업지원 2. 협업, 밀집지역 활성화 사업 등 경영개선 지원 3. 홍보, 디자인 또는 공동브랜드 개발, 판매촉진 등 마케팅 지원 4. 자금·인력·기술·판로·입지 등 경영 컨설팅 지원 5.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원
충청북도 지역서점 활성화에 관한 조례	제6조(지역서점 지원) 도지사는 지역서점의 경영 및 창업지원과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1. 창업상담, 컨설팅, 교육, 창업자금 융자지원 등 창업지원 2. 협업사업, 문화·교육프로그램 운영 등 활성화를 위한 등 경영개선 지원 3. 홍보, 디자인 또는 공동브랜드 개발, 판매촉진 등 마케팅 지원 4. 자금·인력·기술·판로·입지 등의 개선에 필요한 경영컨설팅 지원 5. 그 밖에 지역서점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타 시·도의 사례를 참고하여 지원사업에 관한 규정 신설 및 지역서점 독서문화 지원 규정 신설을 검토할 수 있음

- 지역서점 활성화 관련 조례를 운영하는 타 시·도는 강원특별자치도, 경기도, 경상남도, 경상북도, 광주광역시, 대전광역시, 부산광역시, 서울특별시, 세종특별자치시, 울산광역시, 인천광역시, 전라남도, 전북특별자치도, 제주특별자치도, 충청남도, 충청북도임. 전북특별자치도 조례에 두고 있지 않은 규정은 지역서점 인증제도 관련 규정과 지역서점 등과의 우선 조달계약 규정임
- 타 시·도의 지역서점 인증 규정과 지역서점 등과의 우선 조달계약 규정의 세부적인

내용을 살펴보면 아래와 같음

-	경기도 지역서점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세종특별자치시 지역서점 활성화에 관한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지역서점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인증제도	제6조의2(인증제도 운영) ① 도지사는 지역서점의 자생력 강화 및 복합문화공간화 성장 지원을 위하여 지역문화공간으로서의 지역서점임을 인증하는 인증제도를 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역서점 인증에 필요한 요건, 절차 및 취소 등 구체적인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5조(지역서점 인증) ① 시장은 지역서점 활성화를 위하여 관내 서점이 인증을 요청하는 경우 일정한 요건과 절차에 따라 지역서점으로 인증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지역서점 인증에 필요한 기준 및 절차 등 세부적인 사항을 세종특별자치시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제7조(지역서점 인증) ① 도지사는 강원자치도 내 지역서점 활성화를 위하여 지역서점 중 인증을 원하는 지역서점을 일정한 요건에 따라 지역서점으로 인증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역서점 인증에 필요한 요건, 절차 및 취소 등 구체적인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우선조달계약	제13조(지역서점 등과의 우선조달계약 ① 도지사는 법령의 범위 안에서 지역서점 또는 「협동조합기본법」에 의한 지역서점 협동조합에 대하여 도서에 관한 조달계약을 우선적으로 체결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지역서점에서 도서를 구입하는 학교 및 공공기관, 시·군의 도서관 등에 대하여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	제6조(지역서점 등과 우선 조달계약) ① 시장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령의 범위 안에서 제5조에 따라 인증받은 지역서점과 도서에 관한 조달계약을 우선적으로 체결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지역서점에서 도서를 구입하는 학교 및 공공기관의 도서관 등에 대하여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	제11조(지역서점 등과의 우선조달계약) ① 도지사는 법령의 범위 안에서 지역서점 또는 「협동조합기본법」에 의한 지역서점 협동조합에 대하여 도서에 관한 조달계약을 우선적으로 체결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지역서점에서 도서를 구입하는 학교 및 공공기관, 시·군의 도서관 등에 대하여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

- 이상의 내용을 반영하여 타 시·도의 사례를 참고하여 지원사업에 관한 규정 추가, 지역서점 독서문화 지원 규정, 인증제도 운영, 우선 조달계약에 관한 규정 신설 권고

현 행	개정안	비고
제6조(지원사업 추진) 도지사는 지역문화공간으로서의 지역서점을 활성화하고 경영안정을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인문학 강좌, 작가와의 만남 등 독서관련 프로그램 운영 2. 지역문화공간으로서의 지역서점 활성화 포럼 3. 창업상담, 컨설팅, 교육, 창업자금 융자지원 등의 창업지원	제6조(지원사업 추진) 도지사는 지역문화공간으로서의 지역서점을 활성화하고 경영안정을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인문학 강좌, 작가와의 만남 등 독서관련 프로그램 운영 2. 지역문화공간으로서의 지역서점 활성화 포럼 3. 창업상담, 컨설팅, 교육, 창업자금 융자지원 등의 창업지원	-타 시·도의 사례를 참고하여 지원사업의 세부내용 신설 권고

현 행	개정안	비고
<신설> <br

현 행	개정안	비고
	계약) ① 도지사는 법령의 범위 안에서 지역서점 또는 「협동조합기본법」에 따른 지역서점 협동조합에 대하여 도서에 관한 조달계약을 우선적으로 체결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지역서점에서 도서를 구입하는 학교 및 공공기관, 시·군의 도서관 등에 대하여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	참고하여 우선 조달계약에 관한 규정 신설 권고

□ 참고자료 1 – 위원회 관련 실적

○ 구성

- 전북특별자치도 지역서점위원회

구분	정원	현원	당연직	위촉직	
				남	여
위원수(명)	9	9	1	4	4
비 율(%)	-	-	-	50	50

○ 개최 실적

- 최근 3년간 위원회 개최 실적

연도별	2022	2023	2024
개최건수	1	1	12월 예정
개최일	12.23~12.26	12.12~12.13	-
소요예산	600,000원	-	-

□ 참고자료 2 – 조례 관련 보도 자료

○ 보도자료 1

지역서점에서 서적 구입시 지역 포인트 제공



○ **보도자료 2**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주관 희망도서지역서점바로대출 서비스 실시



신청시 주의사항

- 대출 회원증을 발급받은 정회원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연체 중인 자료가 있거나 대출 정지인 경우, 신청이 불가합니다.
- 이용약관 및 3자 제공에 동의하여야만 이용할 수 있습니다.
- 동시 신청 가능 책 수는 1권이며, 월별 3권 이내로 신청 가능합니다.
- 도서관에서 해당 도서를 소장하고 있을 경우, 신청할 수 없을 수 있습니다.
- 서점별 월 신청 건수가 제한될 수 있으며 초과 시 해당 서점에서는 신청이 어려우니, 초과에 따른 신청 불가 시 다른 서점을 선택하여야 합니

도서선정 제외기준

- 도서관에서 소장 중이거나, 이용서점에서 대출 중인 도서일 경우
- 각종 수험서, 자격서, 문제집, 교과서, 심화 단계 전문서, 만화책
- 무협지, 로맨스, 인터넷 소설 등의 장르문학, 수험서, 자격서, 만화 등
- 스프링 도서, 컬러링북, 쓰기 익힘책, 퍼즐북, 스티커 북 등 자료의 형태가 도서관 소장 도서로서 부적합한 도서
- 고가의 도서 (5만 원 이상), 정기간행물, 논문, 전집류
- 출판년도가 오래된 도서 (발행 후 5년 이상 경과한 경우)
- 청소년 정서에 바람직하지 않은 영향을 줄 수 있는 도서

붙임 1 사업 관련 추진실적

□ 연도별 사업 및 예산 집행 실적

○ 최근 3년간 사업 및 예산 집행 실적

- 2024년 행사운영비 삭감에 따른 사업 미시행 (금액단위: 천원)

연도	사업명	필요예산	확보예산	집행액	집행내역
2022	전북도청도서관 도서구입	45,000	45,000	44,921	전북도청도서관 도서구입
	동네서점과 작가와의만남	1,500	1,500	1,500	강사수당, 현수막 제작, 강연장 및 장비 임차료
2023	전북도청도서관 도서구입	45,000	45,000	44,921	전북도청도서관 도서구입
	동네서점과 작가와의만남	2,930	2,930	2,430	강사수당, 도서구입, 현수막 제작 등

붙임 2 평가대상 조례

전북특별자치도 지역서점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 2024. 1. 18.] [전북특별자치도조례 제5399호, 2023. 12. 8., 일부개정]

전북특별자치도(문화산업과), 063-280-2492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독서문화 진흥을 통한 지역서점의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도민의 독서문화 진흥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의 “지역서점”이란 전북특별자치도에 본사와 방문매장 사업장을 두고 영업하고 있는 서점을 말한다.<개정 2023. 12. 8.>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독서문화 진흥을 통한 지역서점 활성화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도지사의 책무)

① 전북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독서문화 진흥을 통한 지역서점의 경영안정을 위하여 지역서점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시책을 적극 발굴하고 추진하여야 한다.<개정 2022. 11. 11., 2023. 12. 8.>

② 도지사는 도서관 등에서의 도서구입시 지역서점 우선구매 정책을 시행하고, 필요한 예산 지원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③ 도지사는 지역서점 활성화에 필요한 시책 마련 및 추진을 위하여 전북특별자치도교육감 및 시장·군수와 협력하여야 한다.<신설 2022. 11. 11., 2023. 12. 8.>

제5조(지역서점 활성화 및 지원계획)

① 도지사는 지역서점 활성화와 경쟁력 강화를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지역서점 활성화 및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개정 2022. 11. 11.>

1. 독서문화 진흥을 통한 지역서점 활성화 정책의 기본방향
2. 독서문화 진흥을 통한 지역서점 활성화 방안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독서문화 진흥을 통한 지역서점 활성화와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개정 2022. 11. 11.>

② 도지사는 지원계획의 수립·시행을 위하여 지역서점의 현황 및 운영 여건 등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개정 2022. 11. 11.>

[제목개정 2022. 11. 11.]

제6조(지원사업 추진) 도지사는 지역문화공간으로서의 지역서점을 활성화하고 경영안정을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개정 2022. 11. 11.>

1. 인문학 강좌, 작가와의 만남 등 독서관련 프로그램 운영
2. 지역문화공간으로서의 지역서점 활성화 포럼
3. 창업상담, 컨설팅, 교육, 창업자금 융자지원 등의 창업지원<신설 2022. 11. 11.>
4. 그 밖에 지역서점 활성화와 경영안정 등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

[제3호에서 이동 <2022. 11. 11.>]<개정 2022. 11. 11.>

[제목개정 2022. 11. 11.]

제7조(사무의 위탁)

① 도지사는 제6조에 따른 업무를 전문성이 있는 기관 또는 법인·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할 경우에 필요한 절차·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전북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에 따른다.<개정 2023. 12. 8.>

[본조신설 2022. 11. 11.]

제8조(협력체계 구축) 도지사는 독서문화 진흥을 통한 지역서점 활성화와 경영안정을 위하여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지역서점 관련 기관·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개정 2022. 11. 11., 2023. 12. 8.>

[제7조에서 이동, 종전 제7조는 제8조로 이동 <2022. 11. 11.>]

제9조(지역서점위원회 설치) 도지사는 독서문화 진흥을 통한 지역서점의 활성화와 경영안정을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자문하는 '전북특별자치도 지역서점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개정 2022. 11. 11., 2023. 12. 8.>

1. 지역서점 활성화를 위한 중요 정책 사항
2. 지원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개정 2022. 11. 11.>
3. 그 밖에 위원장이 심의·자문에 부치는 사항

[제8조에서 이동, 종전 제8조는 제9조로 이동 <2022. 11. 11.>]

제10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다만, 위촉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 위원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한다.<개정 2023. 12. 8.>

1. 전북도청도서관 관장
2.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의원
3. 지역서점을 직접 운영하는 사람
4. 대학에서 관련 분야를 담당하는 부교수 이상으로 재직 중인 사람
5. 그 밖에 위원회의 심의·자문 사항과 관련한 전문지식 및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③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④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담당업무의 재임기간으로 한다.

[제9조에서 이동, 종전 제9조는 제10조로 이동 <2022. 11. 11.>]

제11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①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대상 안건의 심사 업무에서 제척된다.

1. 안건과 이해관계가 있는 자문 또는 그 밖의 방법으로 직접 관여한 경우
2. 최근 3년 이내에 안건과 이해관계가 있는 업체에 임원 또는 직원으로 재직한 경우
3. 그 밖에 자문 안건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위원에게 공정한 회의를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기피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해당 위원의 기피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기피신청을 받은 위원은 그 기피여부에 대한 결정에 참여할 수 없다.

③ 위원은 제1항 또는 제2항의 사유에 해당하면 스스로 그 안건의 심사를 회피할 수 있다.

[제10조에서 이동, 종전 제11조는 제12조로 이동 <2022. 11. 11.>]

제12조(해촉) 도지사는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는 때에는 임기 중이라도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질병이나 해외여행 등으로 6개월 이상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2. 스스로 사퇴를 원하는 경우
3. 위원회의 목적에 반하거나 아무런 연락 없이 3회 이상 회의에 불참하는 등 그 직무를 소홀히 한 경우

[제11조에서 이동, 종전 제11조는 제12조로 이동 <2022. 11. 11.>]

제13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 회의를 소집하고 위원회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2조에서 이동, 종전 제13조는 제14조로 이동 <2022. 11. 11.>]

제14조(회의·운영)

① 위원회의 정기회는 매년 한차례 이상 개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임시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소집한다.<개정 2022. 11. 11.>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3조에서 이동, 종전 제14조는 제15조로 이동 <2022. 11. 11.>]

제15조(수당 등)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전북특별자치도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위원회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개정 2023. 12. 8.>

[제14조에서 이동, 종전 제15조는 제16조로 이동 <2022. 11. 11.>]

제16조(포상) 도지사는 독서문화 진흥을 통한 지역서점 활성화에 기여한 공적이 뛰어난 개인 또는 단체 등에 대하여 「전북특별자치도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개정 2023. 12. 8.>

22. 전북투어패스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조례

Ⅰ. 종합의견

< 평가결과 >

□ 평가대상

조 례 명	전북투어패스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조례 구분	자치조례	관계 법령	-
제정·시행일	2019. 2. 1. 제정	최근개정·시행일	2023. 12. 8. 개정
소관 부서	관광산업과	소관 상임위	문화안전소방

□ 평가의견

평가항목	평가의견	주요 내용
종합의견	일반 정비	- 시행규칙은 개별 조례에서 위임이 없더라도 조례의 집행에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규칙으로 규정할 수 있으므로 삭제 권고 - 전북투어패스 관련 부실 문제가 제기된바 있으므로 이를 조례를 통하여 개선할 수 있도록 규정을 정비할 필요성에 대해 심층 분석을 통해 검토
심층분석 결과		- 집행부에서 제출한 기초자료의 운영 사업비 교부결정 관련 자료, 운영사업 정산검사 결과보고 자료 등을 분석한 결과 보도자료에서 언급하고 있는 사업운영 부실 문제는 조례 규정의 불비에서 비롯된 문제라고 보기에는 어려움. 「전북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에 따른 제 규정을 정확하게 적용하였더라면 발생하지 않았을 문제로 보임. 지속적인 관리·감독의 필요성 있음 - 특별히 조례 규정으로 보완할 사항은 보이지 않음. 개정의견과 같이 개정하도록 권고함
1. 입법 근거 및 적법성	적정	전북투어패스 운영 및 관리를 위해 자치사무의 범위에서 적절하게 제정되었음
2. 조례의 실효성	적정	전북투어패스 홍보·마케팅 및 연계상품 개발로 관광객 유입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등 전북자치도 관광객 유치 기여하여 조례의 실효성을 확보하고 있음
3. 조례 내용의 적정성	적정	전북투어패스 운영 및 관리를 위한 조례의 각 규정 내용이 적정함

4. 조례의 공평성	적정	장애, 성별, 나이 등에 관한 사회적 편견, 고정관념이 반영된 표현 및 차별 규정 없음
5. 주민 수용성	적정	조례의 체계 및 용어가 주민이 알기 쉽게 되어 있음
6. 전북자치도 현실부합성	적정	전북투어패스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제정된 본 조례는 행정수요를 반영하고 있어 전북특별자치도 현실에 부합함
7. 위원회 운영의 적정성	-	위원회 운영관련 규정이 없음
※ 기타 의견	없음	

Ⅱ. 항목별 평가 결과

평가항목	세부항목	척도	의견 및 자료
1. 입법의 근거 및 적법성	1) 위임조례인가 자치사무에 관한 조례인가?	☐ 위임조례 ☑ 자치사무에 관한 조례	
	2) 조례에서 규정하고 있는 위임근거가 올바른가?	☐ 그렇다 ☐ 그렇지않다 ☑ 해당사항 없음	
	3) 조례가 위임범위에서 적절하게 제·개정되었는가?	☐ 그렇다 ☐ 그렇지않다 ☑ 해당사항 없음	
	4) 조례 제.개정 이후 동일 또는 유사한 법령이나 제도가 만들어졌거나 근거법령이 개정 또는 폐지되었는가?	☐ 그렇다 ☐ 그렇지않다 ☑ 해당사항 없음	
	5) 조례에서 주민의 권리제한, 의무부과, 벌칙 부과, 규제사항에 대한 법률위임이 있는가?	☐ 그렇다 ☐ 그렇지않다 ☑ 해당사항 없음	
	6) 상위법령에 위배되는 조항이 있는가?	☐ 그렇다 ☐ 그렇지않다 ☑ 해당사항 없음	
2. 조례의 실효성	1) 조례의 시행과정에서 다른 조례와의 충돌이나 모순이 발생하고 있는가?	☐ 그렇다 ☑ 그렇지않다 ☐ 해당사항 없음	
	2) 이 조례와 유사 또는 동일한 다른 조례가 제정 및 시행되고 있어 통합할 필요가 있는가?	☐ 그렇다 ☑ 그렇지않다 ☐ 해당사항 없음	
	3) 조례에 따른 계획이 수립·시행되고 있는가?	☐ 그렇다 ☐ 그렇지않다 ☑ 해당사항 없음	
	4) 조례에서 집행기관 등에 책무를 부여하고 있는가?	☑ 그렇다 ☐ 그렇지않다 ☐ 해당사항 없음	-제14조

평가항목	세부항목	척도	의견 및 자료
	5) 조례에서 부여한 책무와 관련사업을 집행기관이 잘 이행하고 있는가?	☑ 그렇다 ☐ 그렇지않다 ☐ 해당사항 없음	-사업 내용 검토 필요
3. 조례 내용의 적정성	1) 조례에 재정지원 관련 규정이 있는가?	☐ 그렇다 ☑ 그렇지않다 ☐ 해당사항 없음	
	2) 조례 시행에 필요한 예산 확보와 집행이 잘 이루어지고 있는가?	☑ 그렇다 ☐ 그렇지않다 ☐ 해당사항 없음	
	3) 지원대상이 집행이 가능한 정도로 구체화 되어 있는가?	☑ 그렇다 ☐ 그렇지않다 ☐ 해당사항 없음	
	4) 조례에 따른 위탁사무가 위탁대상으로 적정한가?	☑ 그렇다 ☐ 그렇지않다 ☐ 해당사항 없음	
4. 조례의 공평성	1) 조례에서 장애인, 성별 등의 특정계층이나 특정지역을 차별하는 조항이 있는가?	☐ 그렇다 ☑ 그렇지않다 ☐ 해당사항 없음	
	2) 조례에서 정한 차별이 합리적인가?	☐ 그렇다 ☐ 그렇지않다 ☑ 해당사항 없음	
5. 주민 의견 수용성	1) 조례 제·개정 시 입법예고는 하였는가?	☑ 그렇다 ☐ 그렇지않다 ☐ 해당사항 없음	
	2) 조례 제·개정 시 공청회, 세미나 등 이해관계인 및 주민에 대한 의견 수렴 과정이 있었는가?	☐ 그렇다 ☐ 그렇지않다 ☑ 해당사항 없음	
	3) 조례와 관련한 민원(청원, 진정, 소송 등)이 제기되거나 개정 또는 폐지 요구가 있었는가?	☐ 그렇다 ☐ 그렇지않다 ☑ 해당사항 없음	
	4) 조례의 체계나 사용 되어진 용어가 주민이 알기 쉽게 되어 있는가?	☑ 그렇다 ☐ 그렇지않다 ☐ 해당사항 없음	
6. 위원회 운영의 적정성	1) 조례로 위원회를 구성하도록 되어 있는가?	☐ 그렇다 ☑ 그렇지않다 ☐ 해당사항 없음	

평가항목	세부항목	척도	의견 및 자료
	2) 위원회가 법정위원회인가 조례로 설치하도록 한 위원회인가?	☐ 법정위원회 ☐ 조례로 정한 위원회 ☑ 해당사항 없음	
	3) 위원회 위원의 성별 구성이 적정한가?	☐ 그렇다 ☐ 그렇지않다 ☑ 해당사항 없음	
	4) 위원회가 법령이나 조례에서 정한 회의개최 운영 실적이 있고 관련 회의록을 보존하고 있는가?	☐ 그렇다 ☐ 그렇지않다 ☑ 해당사항 없음	
	5) 위원회를 계속 설치·운영할 필요성이 있는가?	☐ 그렇다 ☐ 그렇지않다 ☑ 해당사항 없음	
	6) 해당 위원회와 유사한 다른 위원회와의 기능적 통합이 필요한가?	☐ 그렇다 ☐ 그렇지않다 ☑ 해당사항 없음	
7. 종합 의견	1) 이 조례를 현행대로 유지할 필요가 있는가?	☑ 그렇다 ☐ 그렇지않다	
	2) 이 조례를 개정할 이유가 있는가? (해당사항 모두 표기)	☐ 위임근거에 불부합 ☐ 위임근거 불명확 ☐ 법령의 위임 없는 규제 정비 필요 ☐ 다른 조례와의 상충 및 모순 ☐ 조례 시행의 문제점 발생 ☐ 조례의 공평성 문제 ☑ 알기 쉬운 법령정비 기준에 따른 정비 필요 ☐ 위원회 관련 규정개정 필요 ☑ 그 밖의 사유	-사업 관련 규정 정비 검토
	3) 이 조례를 폐지할 사유가 있는가? (해당사항 모두 표기)	☐ 다른 유사한 조례와의 통합 운영 필요성 ☐ 조례 시행 불가능 ☐ 최근 3년간 조례 관련 운영 실적 전무 ☐ 기타	
	4) 그 밖의 이 조례와 관련된 의견이 있는가?	☐ 있다 ☑ 없다	

Ⅲ. 세부내용

조례명	전북투어패스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조례

■ 소관 부서 의견(팀)

○ **최종의견 : 전북투어패스 운영은 전북특별자치도 내 자연환경 및 다양한 문화관광자원을 하나의 여행 콘텐츠로 연계하여 80여개의 주요 관광지를 단 한 장의 카드로 이용할 수 있게 만든 관광 자유이용권으로, 전북자치도의 관광객 유치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는 바가 큰 사업으로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해 조례의 유지가 필요함**

○ **내용**

- (2-4) 조례 제14조에 따라 전북투어패스를 운영하는 데에 1,400,000천원을 집행함
- (2-5) 2023년 공무원 5명, 민간인 3명에게 전북투어패스 유공 포상을 수여함
- (2-5) 조례 제15조에 따라 ㈜엘에스컴퍼니에 전북투어패스 홍보, 판매, 정산 등 통합시스템 운영을 위탁함
- (3-3) 2022년부터 2024년까지 예산 지원을 실시함
- (3-5) 전북투어패스는 서비스 공급의 능률성이 현저히 요구되는 사무로써 다양한 수요 대응과 여행트렌드에 맞는 상품 개발, 다각적인 홍보 마케팅 등 사업 운영의 경험 및 노하우를 바탕으로 민간의 축적된 전문역량을 활용하고, 사업의 안정성과 효율성 제고를 위해 민간위탁이 필요한 사업이며, 민간위탁 대상으로 적정함

■ 종합의견	일반 정비

◎ 입법평가 세부의견

○ **평가항목별 검토**

평가항목	평가항목별 검토 내용
1. 입법 근거 및 적법성	전북투어패스 운영 및 관리를 위해 자치사무의 범위에서 적절하게 제정되었음
2. 조례의 실효성	전북투어패스 홍보·마케팅 및 연계상품 개발로 관광객 유입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등 전북자치도 관광객 유치 기여하여 조례의 실효성을 확보하고 있음
3. 조례 내용의 적정성	전북투어패스 운영 및 관리를 위한 조례의 각 규정 내용이 적정함
4. 조례의 공평성	장애, 성별, 나이 등에 관한 사회적 편견, 고정관념이 반영된 표현 및 차별 규정 없음
5. 주민 수용성	조례의 체계 및 용어가 주민이 알기 쉽게 되어 있음

6. 전북자치도 현실부합성	전북투어패스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제정된 본 조례는 행정수요를 반영하고 있어 전북특별자치도 현실에 부합함
7. 위원회 운영의 적정성	위원회 운영관련 규정이 없음
※ 기타 의견	없음

○ 연도별 사업내용 및 예산/집행액

(단위: 천원)

연도	사업명	필요예산	확보예산	집행액	집행내역
2022	전북투어패스 운영	1,041,500	1,041,500	1,041,500	전북투어패스 운영 사업비
2023		941,500	941,500	941,500	
2024		1,400,000	1,400,000	720,000	

○ 조례의 입법목적 달성도 또는 부수효과 분석

- 조례 목적달성도 평가
  - 조례 내용에 따라 전북특별자치도 지역에서 자유로이 여행이 가능한 투어패스를 판매 중이지만, 2023년 회계 법령 위반과 금액 부풀리기 의혹 등으로 공무원 11명이 징계처분을 받은 점을 비추어 볼 때 조례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함
- 부수효과
  - 투어패스 판매를 통해 전북특별자치도 내 관광자원을 활성화하여 전북특별자치도민의 관광사업 수익을 높일 수 있음

○ 타 시·도 유사 조례와 비교 또는 타 시·도 자치법규(정책) 동향

전북투어패스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충청남도 관광통합이용권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제3조(투어패스 활성화 시책)	**제3조(도지사의 책무)**
제4조(투어패스 이용범위)	제4조(투어패스 운영 등)
제5조(투어패스 종류 등)	제5조(투어패스 판매·환불)
제6조(투어패스 유효기간 등)	제6조(가맹점 지정 등)
제7조(판매점 지정 등)	제7조(가맹점 준수사항)
제8조(판매 수수료)	제8조(투어패스 시스템 구축)
제9조(환불기준)	제9조(위탁)
제10조(가맹점 지정 등)	
제11조(가맹점 준수사항)	
제12조(정산기준)	
제13조(투어패스 시스템 등)	
제14조(예산 등)	
제15조(위탁)	
제16조(시행규칙)	

- 투어패스와 관련하여 충청남도에서 유사한 조례를 운영하고 있으며, 제3조(도지사의 책무) 규정을 제외하고 내용이 유사함

Ⅳ. 개정의견

현 행	개정안	비고
제1장 총칙	<삭제>	-장(章) 삭제
제2장 투어패스 발행	<삭제>	-장(章) 삭제
제3장 판매점	<삭제>	-장(章) 삭제
제4장 가맹점	<삭제>	-장(章) 삭제
제5장 투어패스 시스템 등	<삭제>	-장(章) 삭제
제14조(예산 등) 도지사는 투어패스의 발행·판매·홍보 등 운영관리 및 투어패스 시스템의 운영, 유지보수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에 반영할 수 있다.	제14조(재정 지원) 도지사는 투어패스의 발행·판매·홍보 등 운영관리 및 투어패스 시스템의 운영, 유지보수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조문제목 및 문장 정비
제6장 보칙	<삭제>	-장(章) 삭제
제15조(위탁) ① 도지사는 전북특별자치도 출자·출연기관이나 「관광진흥법」 제2조에 따라 설립된 관광사업자 등에 투어패스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할 수 있다. 1. 생략 2. 제7조부터 제9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투어패스 판매, 판매점 관리 3. ~ 4. 생략 ② 생략 ③ 업무를 위탁할 경우에는 「전북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조례」를 따른다.	제15조(위탁) ① 도지사는 전북특별자치도 출자·출연기관이나 「관광진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관광사업자 등에 투어패스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할 수 있다. 1. 현행과 같음 2. 제7조부터 제9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투어패스 판매 및 판매점 관리 3. ~ 4. 현행과 같음 ② 현행과 같음 ③ <삭제>	-정확한 인용조문 표기 -문장 정비 -업무위탁에 대한 선언적인 의미만을 규정하면, 그에 따른 구체적인 사항은 당연히 「전북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를 적용 받으므로 규정의 실익이 없음(법제처, 2023년 우수조례 및 자치법규 입법컨설팅 사례집, 108면)
제16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삭제>	-시행규칙은 개별 조례에서 위임이 없더라도 조례의 집행에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규칙으로 규정할 수 있으므로 삭제 권고

심층분석 관련 검토

○ **심층분석 사유**

- 전북투어패스 관련 부실 문제가 제기된바 있으므로 이를 조례를 통하여 개선할 수 있도록 규정을 정비할 필요성에 대해 심층분석을 통해 검토 필요

○ **심층분석**

- 집행부에서 제출한 기초자료의 운영 사업비 교부결정 관련 자료, 운영사업 정산검사 결과보고 자료 등을 분석한 결과 보도자료에서 언급하고 있는 사업운영 부실 문제는 조례 규정의 불비에서 비롯된 문제라고 보기에는 어려움.「전북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에 따른 제 규정을 정확하게 적용하였더라면 발생하지 않았을 문제로 보임. 지속적인 관리·감독의 필요성 있음
- 특별히 조례 규정으로 보완할 사항은 보이지 않음. 개정의견과 같이 개정하도록 권고함

□ 참고자료 1 – 위원회 관련 실적

○ **구성**

- 위원회 규정 없음

○ **개최 실적**

- 해당사항 없음

□ 참고자료 2 – 조례 관련 보도 자료

○ 보도자료 1

전북투어패스 홈페이지를 통한 홍보 및 판매 실시



○ **보도자료 2**

전북투어패스 총체적 부실…공무원 11명 징계, 전북일보[31)]

> 전북도 감사 결과, 억대 혈세 낭비 드러나
> 판매 수입금, 통합시스템 관리 소홀 '만연'



전북 관광 활성화를 위해 도입된 '전북투어패스'의 판매 수입금과 가맹점, 통합시스템 등이 소홀하게 운영·관리되는 등 전북투어패스의 총체적 부실이 드러났다.

전북도 감사관실은 '전북투어패스 운영 특정감사'를 통해 △판매 수입금 반환 등 부적정 △가맹점 관리·정산 부적정 △ 위탁사업비 예산 편성 등 부적정 △통합시스템 최초 개발 부적정 △통합시스템 유지·보수 위탁 부적정 △통합시스템 재개발 부적정 △통합시스템 임차계약 부적정 △통합시스템 자료·보안관리 부적정 △구입·배부·관리 소홀 △상품권 구매·관리 지침 제정 업무 소홀 등 모두 9건 문제를 적발했다.

이와 관련해 공무원 11명에게 주의 등 경징계와 훈계 처분을 내리고, 약 6000만 원을 환수 조치했다.

자세히 살펴보면 판매 수입금의 경우 수탁자가 전북투어패스 판매 수입금을 직접 사용할 수 없는데도, 전북도는 부적정하게 협약을 체결해 이를 허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로 인해 수탁자는 판매 수입금을 도에 반납하지 않고, 가맹점에 대한 대가 등을 판매 수입금에서 사용·지출한 것으로 확인됐다. 수탁자는 2017년 1월부터 2022년 9월까지 판매 수입금 43억여 원 가운데 약 80%인 35억여 원을 도의 세입으로 반납하지 않았다.

31) https://www.jjan.kr/article/20230416580278

전북도 감사관실은 "상위 법령·조례와 다르게 협약을 체결해 수탁자가 전북투어패스 판매 수입금을 직접 사용하도록 하고 반납 받지 않음으로써 지방회계법 등 상위 법령을 위반하는 결과를 초래했다"며 "적기에 세입(판매수입금)을 징수할 수 없게 했고 판매 수입금에서 지출한 비용에 대해 예산 편성·심의를 하지 않고 사용하게 함으로써 예산의 사전 통제 기능과 집행의 투명성을 저하시켰다"고 지적했다.

또 수탁자는 특별할인 가맹점으로 구분해야 할 카페 등 21개 시설에 대해 자유이용 가맹점으로 지정·정산하기도 했다. 전북도 감사관실은 "가맹점 구분을 모호하게 했을 뿐만 아니라 카페 등 동일 업종의 가맹점이 유사한 서비스를 제공하는데도 가맹점 구분과 정산 비율 등을 각기 다르게 적용해 가맹점 간 형평성 문제가 제기될 우려가 있다"고 밝혔다.

전북투어패스 통합시스템 개발, 재개발, 임차계약 등에서도 관리 부실이 만연했다. 판매 대금을 집계하지 못하는 통합시스템을 개발해 판매 대금과 정산 내역에 대한 신뢰성을 떨어뜨리고, 소스코드의 저작권 등을 확보하지 못해 2021년 6월까지 소프트웨어의 유지·보수 등의 업무를 저작권자인 개발용역사와 1인 수의계약할 수밖에 없었다. 이는 유지·보수비를 과대 지급하는 단초가 됐다.

또 통합시스템은 설치 후 1년간 유지·보수가 무상으로 제공되는데도 이를 확인하지 않고 수탁사에 유지·보수비와 인건비를 지급하기도 했다.

특히 2016년 최초 개발된 통합시스템의 소스코드 저작권을 확보하지 못해 유지·보수에 문제가 생기자, 2020년 통합시스템을 재개발했는데도 결국 저작권을 확보하지 못했다. 이 때문에 유지·보수 업무를 1인 수의계약하거나 또다시 신규 시스템을 개발해야 하는 동일한 문제가 반복 연출됐다. 최초 개발에는 9억 5000여만 원, 재개발에는 4억 4000여만 원이 투입됐다. 결국 지난해 2월부터는 신규 수탁사의 통합시스템을 임차해 매달 1400만 원을 내고 있다.

○ 보도자료 3

‘만족도 98%’ 전북투어패스, 관광객 발길 붙잡았다, 서울신문[32)]

전북을 찾는 관광객들에게 여행 편의와 할인 혜택을 제공하는 전북투어패스가 ‘체류형 관광’에 큰 효과를 거둔 것으로 확인됐다.

전북도는 10월 말 기준 전북투어패스의 판매량이 지난해 같은 기간(11만 5158매)보다 109% 증가한 12만 5506매를 기록했다고 2일 밝혔다. 1인당 자유이용시설 방문 횟수도 2.2회에서 3.6회로 증가함에 따라 도내 관광객이 지역에 오래 머무르는 데 기여했다는 평가가 나왔다.

전북도는 올 한해 투어패스 연계상품(체험, 시군 축제 등) 16개를 추가 발굴하고, 무주 목재 문화체험장, 부안 새만금 메타 버스 체험관, 옥정호 출렁다리 등 지역 체험시설과 제휴하고 전북 워케이션 상품 연계, 카 쉐어링 연계 프로모션 진행 등 상품성을 개선했다.

그 결과 도내 특정지역(전주 한옥마을 등)에 편중됐던 관광객을 14개 시군으로 고루 분산시켜 도내 관광 균형발전에도 크게 기여한 것으로 분석됐다.

투어패스 이용객들의 평가도 높게 나타났다. 이용객 371명을 대상으로 9월에서 10월까지 실시한 모바일 설문조사(인지도·만족도·이용현황 등) 결과, 주 이용 고객의 특징은 여성이 71.7%로 대다수를 차지했고, 연령은 30~40대가 80%로 가장 많았다. 동행자는 가족 단위가 75.2%, 동행 인원은 3~4인이 45.8%, 교통수단은 자차 활용이 84.4%를 차지했다.

특히 타 지역 학교의 수학여행, 도내 여행사에서 단체구매(2023년 10월 기준, 1만 4581매)가 활성화되면서 전체 이용자의 90%가 타 시도 거주자로 확인, 외래 관광객 유치를 성공적으로 이끌었다.

또 투어패스 재구매 의사를 묻는 문항에는 96.2%가 그렇다고 응답했고, 자유이용시설·특별할인가맹점 혜택과 이용 혜택 만족도 또한 98.1%로 긍정 평가를 받았다.

전북도는 투어패스의 핵심인 모바일 티켓을 업그레이드 하고, 최신 여행트렌드를 반영해 카페·체험시설을 추가하는 등 MZ세대의 취향을 공략한다는 계획이다.

천선미 전북도 문화체육관광국장은 “전북투어패스에 대한 인지도가 높아진 만큼, 도민은 물론 전라북도를 방문하는 관광객들의 관심과 기대도 높아져 책임감이 크다”면서 “보다 내실있는 사업으로 자리잡을 수 있도록 계속해서 전북의 강점을 녹여낸 특화된 관광상품을 개발·연계하는 등 체류시간 연장과 관광 분산 효과를 더욱 극대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32) https://www.seoul.co.kr/news/society/2023/11/02/20231102500126

○ **보도자료 4**

총체적 부실 '전북투어패스', 전북도의회 문제제기 7개월 만에 징계 등 조치…여전히 의문 투성이, "외부 감사 필요", 전북의소리[33)]

전북 관광을 활성화하겠다며 전북도가 지난 2017년 출시한 '전북투어패스'가 도입한 지 7년 만에 '총체적 부실 덩어리'로 드러났다. 판매 실적이 부풀려지고, 수익금이 무단으로 사용돼 수십억원의 예산이 낭비됐을 뿐 아니라 통합 시스템 개발 과정에서 공무원들의 무지로 수억원의 혈세가 낭비된 것으로 밝혀져 충격을 주고 있다.

그러나 전북투어패스가 '부실 덩어리'란 지적이 지난해 이미 전북도의회에서 제기됐음에도 전북도는 뒤늦은 자체 감사를 통해 사태 파악에 나서 솜방망이 징계 등을 조치해 따가운 시선을 받고 있다. 아직도 특혜 시비 논란과 예산 낭비 요인이 남아 있어 철저한 외부 감사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높다.

작년 9월 전북도의회 진형석 의원 "전북투어패스 총체적 부실" 제기

지난해 9월 15일 진형석 전북도의원(전주2)은 제394회 전북도의회 정례회에서 "민간위탁사업으로 추진된 전북투어패스 사업이 '회계관련 법령 위반'을 비롯해 수탁업체에 대한 지도·감독 부실은 물론 판매 실적 부풀리기 정황 등 총체적인 부실과 문제가 있다"며 긴급 현안 질문을 통해 문제를 제기했다.



진형석 전북도의원(사진=전북도의회 제공)

당시 진 의원은 "전북투어패스 사업을 성공시키기 위해 그동안 전북도는 행정·재정적 역량을 집중 투입해 왔으나 실상은 총체적 부실이다"며 "전북도가 투어패스 사업을 운영하면서 이용 관광객들에게 혜택을 늘리기는커녕 판매 수익을 쌓아 놓고 있었다"고 지적했다.

진 의원은 이어 "2017년부터 2022년 6월까지 누적 판매액이 약 32억 1,500만원으로 자유이용시설 정산보전금 등의 지출금을 제외하고도 약 10억원의 누적 수익을 올렸다"며 "그러나 투어패스 카드 판매 수익금은 예산총계주의(지방재정법 제34조)와 직접사용금지의 원칙(지방회계법 제25조) 등 회계기본원칙을 위반했다"고 주장했다.

33) https://www.jbsori.com/news/articleView.html?idxno=11088

"시스템 유지보수, 고도화 변경...사업비 부풀리기 의혹"



전북투어패스 홈페이지 초기화면(캡처)

진 의원은 "회계원칙이 철저히 무시되면서 지난 5년 동안 전북도는 약 27억원의 세외수입 결손이 발생했을 뿐만 아니라 결과적으로 전북도의회의 민간위탁동의안, 예산안 등에 대한 심의권을 무력화시켰다"며 "수탁업체는 사업계획 변경을 통해 정산보전금으로 쓰여야 하는 예산을 쉽게 확인하기 어려운 시스템 유지보수나 고도화 등으로 변경해 사업비를 부풀리기한 의혹이 있다"고 수탁업체의 문제점과 전북도의 봐주기 의혹을 제기했다.

최근 전북도 감사에서 드러난 문제점이 당시 도의회에서 제기된 것인데 진 의원은 이 당시 "2018년 개발되지도 않은 모바일 앱 인건비가 3,000만원 집행됐고, 회계법인 감사에 따른 반납금 약 3억원 등은 정상적인 회계로 보기 어렵다"고 지적한 바 있다.

전북도 "공무원 11명 신분상 처분"...7개월 만에 조치

그로부터 약 7개월이 지난 14일 전북도는 "전북투어패스 특정감사 결과 투어패스 판매 수입금 반환과 정산 부적정을 비롯해 9건의 문제가 드러나 행정처분을 내렸다"고 밝혔다. 또 "이로 인해 관계 공무원 11명을 경징계 및 훈계 처분하고, 약 6,000만원을 환수 조치했다"고 덧붙였다.

전북도 감사관실은 "지난해 10월부터 12월까지 전북도 문화체육관광국 관광산업과를 대상으로 전북투어패스 위탁사업비 집행 및 정산검사, 통합시스템 구축 등의 적정성을 들여다봤다"며 이 같은 내용을 공개했다.

전북투어패스는 민선 6~7기 송하진 전 전북도지사의 역점 사업으로, 한 장의 카드로 도내 숙박시설과 주요 관광지를 이용할 수 있는 사업이다. 그런데 투어패스 판매 수입금을 수탁자가 직접 사용할 수 없는데도 전북도는 관련 협약을 통해 이를 허용한 것으로 드러나 여전히 의문은 수그러들지 않고 있다.

무엇보다 지난 2017년 1월부터 2022년 9월까지 판매 수입금 43억여원 중 약 80%를 도의 세입으로 반납하지 않고 수탁자가 직접 사용했다. 특혜 제공이자 혈세 낭비란 지적에서 여전히 자유롭지 못하다. 게다가 2021년 수탁자가 이미 유지 보수 계약을 체결했는데 불필요한 인력을 추가로 투입해 인건비 5,000만원을 부당 지급하기도 했다.

전북투어패스가 회계 관련 법령 위반과 판매 금액 부풀리기 등의 문제점을 드러냈다는 전북도의회의 지적이 없었더라면 이러한 특혜와 혈세 낭비는 계속 이어졌을 것이란 지적이 팽배한 이유다.

프로그램 저작권 확보하지 못해 혈세 낭비 계속...여전히 의문

심지어 전북투어패스의 판매 실적과 가맹점 현황, 제휴업체 이용실적 등이 기록되어야 할 통합관리시스템도 큰 문제였다. 9억원 넘게 들여 자체 개발했다면서도 프로그램 저작권을 확보하지 못했다는 이유로 다시 4억 5,000만원을 들여 재개발 했는데 이 마저 저작권을 확보하지 못해 예산을 낭비했다. 이로 인해 지난해 2월부터 타사 프로그램을 임대해 매달 1,400만원을 이용료로 납부하는 실정이어서 여전히 문제점은 남아 있는 상태다.



전북투어패스 로고, 이미지(전북투어패스 페이스북 캡처)

특히 프로그램 개선과 앱·홈페이지 고도화를 위한 이 사업의 계약(4억 4,500만원) 당시 시스템 개발은 원활하게 이뤄졌으나 담당 공무원은 반드시 확보해야 할 '소스 코드'의 저작권 또는 사용권을 받는 절차를 빠트려 추가적인 예산 낭비 사례가 드러났다.

"외부 감사 통해 내부 결탁 특혜 여부, 추가 예산 낭비 등 철저히 조사해야"

담당자는 소스 코드가 든 저장 매체를 확보했기 때문에 소유권을 얻었다고 생각했으나 저작권 확보 없이 이를 사용하면 법에 따른 제재를 받는다는 사실은 몰랐다는 것이다. 그런데 이 과정에서 담당자는 알맹이를 빠뜨린 사업 서류를 그대로 팀장에게 올렸고, 팀장은 이를 한 차례도 확인하지 않고 다시 과장에게 올려졌지만 과장 역시 검토 한번 제대로 하지 않고 서류가 올라오자 서둘러 결재를 끝내 문제가 발생한 것.

결국 이 시스템은 7개월 만에 운용이 중단됐고, 저작권을 다시 확보해 사용하려면 1억원 이상의 추가 비용이 들게 됐다. 따라서 전북도의회에서 문제가 제기된 사안을 전북도가 뒤늦게 자체 감사를 통해 드러난 내용을 조치했다고 발표하며 끝낼 사안이 아니라는 지적이 팽배하다.

추후 외부 감사를 통해 내부 윗선과 결탁한 특혜 여부는 없었는지, 추가 예산 낭비 사례는 더 있는지 등을 철저히 조사해야 한다는 여론이 비등하다.

붙임 1 사업 관련 추진실적

□ 연도별 사업 및 예산 집행 실적

○ 연도별 사업실적 및 예산집행내역

- 2022~2024 사업실적 (금액단위: 천원)

연도	사업명	필요예산	확보예산	집행액	집행내역
2022	전북투어패스 운영	1,041,500	1,041,500	1,041,500	전북투어패스 운영 사업비
2023		941,500	941,500	941,500	
2024		1,400,000	1,400,000	720,000	

- 2022년 정산검사 결과

□ 판매수익금 정산결과

(단위 : 원)

21년 이월	22년 수입	22년 지출	23년 이월	비고
972,276,805	697,230,695	1,337,173,098	332,334,402	

※ 22년 지출액 1,337,173,098원 (판매수익금 정산액 802,433,098원 도 세입처리 534,740,000원)

□ 사업비 반납액 : 40,942,977원

- 2023년 정산검사 결과

□ 판매수익금 정산결과

(단위 : 원)

22년 이월	23년 수입	23년 지출	24년 이월	비고
332,334,402	618,227,780	758,605,533	194,572,543	

※ 23년 지출액 758,605,533원 (판매수익금 정산액 555,989,639원 도 세입처리 202,615,894원)
※ 24년도 이월액 194,572,543원은 도 세입처리 완료('24. 2. 6.)

□ 사업비 반납액 : 19,155,679원

붙임 2 평가대상 조례

전북투어패스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시행 2024. 1. 18.] [전북특별자치도조례 제5399호, 2023. 12. 8., 일부개정]

전북특별자치도(관광산업과), 063-280-2708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전북특별자치도의 관광 진흥 및 활성화를 촉진하기 위하여 도내 주요 관광지, 교통수단 등을 하나의 카드로 무료 또는 할인하여 이용할 수 있는 전북투어패스의 발행, 운영 및 관리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3. 12. 8.>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개정 2023. 11. 10., 2023. 12. 8.>

1. “전북투어패스”(이하 “투어패스”라 한다)란 정해진 이용기간 동안 전북특별자치도 주요 투어패스 가맹점의 무료 또는 할인이용 혜택을 제공하는 온·오프라인 이용권을 말한다.
2. “판매점”이란 투어패스를 인터넷이나 현장에서 판매할 수 있도록 전북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가 제7조에 따라 지정하는 장소를 말한다.
3. “가맹점”이란 투어패스로 무료 또는 할인 이용할 수 있도록 도지사가 투어패스 가맹점 협약을 체결하여 가맹점으로 지정한 주요 유료 관광지, 시·군내 버스 및 공영주차장, 맛집·숙박업소·공연장(체험 포함) 등을 말한다.

제3조(투어패스 활성화 시책) 도지사는 지역경제 발전을 위하여 투어패스 판매, 이용 및 홍보 등에 관한 활성화 시책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

제2장 투어패스 발행

제4조(투어패스 이용범위)

① 투어패스 이용자는 유효기간에 이용기간 동안 가맹점 협약 내용에 따라 가맹점을 무료 또는 할인 이용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투어패스로 받을 수 있는 무료 또는 할인 이용 범위 등 가맹점 정보를 전북투어패스 홈페이지에 공고한다. 가맹점 정보가 변경된 경우에도 또한 같다.<개정 2023. 11. 10.>

③ 판매점은 투어패스 판매 시 제2항에 따른 가맹점 정보를 투어패스 구입자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제5조(투어패스 종류 등)

① 투어패스 종류 및 가격은 다음 각 호의 비용 등을 고려하여 규칙으로 정한다.

1. 이용범위, 이용기간, 이용횟수 및 할인율
2. 투어패스 카드 제작비 등 투어패스 발행 유형
3. 판매 수수료, 위탁 수수료 등 운영비용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투어패스 가격을 할인하여 판매할 수 있다.<개정 2023. 12. 8.>

1. 투어패스 구매자의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전북특별자치도인 경우(신분증 등으로 주소지 확인이 가능한 경우만 해당한다)
2. 그 밖에 규칙으로 정하는 경우

③ 투어패스는 카드형과 모바일형으로 도지사가 발행한다.

제6조(투어패스 유효기간 등)

① 투어패스 유효기간은 발행일부터 1년까지로 한다.

② 투어패스는 재발행하지 않는다.

제3장 판매점

제7조(판매점 지정 등)

① 투어패스는 도지사가 위탁 판매하거나 다음 각 호의 온·오프라인 장소를 판매점으로 지정하여 판매할 수 있다.

1. 오프라인 판매점: 관광안내소, 주요 관광지 매표소, 버스터미널 등
2. 온라인 판매점: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활용하는 전자상거래 업체 등

② 도지사는 판매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판매점의 지정을 취소하거나 정지할 수 있다.

1. 거짓이나 위법·부당한 방법으로 투어패스를 판매한 경우
2. 특별한 사유 없이 도지사가 정한 판매점 준수사항이나 판매점 지정조건을 위반한 경우

제8조(판매 수수료) 도지사가 제7조제1항에 따라 판매점을 지정하여 투어패스를 판매하게 한 경우에는 규칙으로 정하는 판매 수수료를 매월 정산하여 판매점에 지급한다.

제9조(환불기준) 투어패스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 환불할 수 있다. 이 경우 구매 시 결제방법과 같은 방법으로 환불한다.

1. 투어패스를 아직 사용하지 않았을 것
2. 환불 요청자가 판매점에서 직접 구매한 것일 것
3. 투어패스 유효기간이 지나지 않았을 것

제4장 가맹점

제10조(가맹점 지정 등)

① 도지사는 신청을 받아 가맹점 지정을 희망하는 업소와 협약을 통해 가맹점으로 지정할 수 있다. 지정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 도지사는 가맹점이 제11조에 따른 가맹점 준수사항을 위반한 경우에는 가맹점 지정을 취소 또는 정지할 수 있다.

제11조(가맹점 준수사항) 가맹점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투어패스 위·변조 또는 훼손 등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유효한 투어패스를 사용한 가맹점 무료 이용 또는 할인 결제에 응할 것
2. 투어패스 사용자를 현금 거래자 등 다른 거래자와 가맹점 이용에 차등을 두지 말 것
3.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가맹점 협약을 준수할 것

제12조(정산기준)

① 도지사는 자유이용 가맹점 이용에 대한 대가를 매월 정산하여 가맹점에 지급한다.<개정 2023. 11. 10.>

② 제1항에 따른 정산금은 가맹점 협약 내용 등을 고려하여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23. 11. 10.>

제5장 투어패스 시스템 등

제13조(투어패스 시스템 등) 도지사는 투어패스의 투명하고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발급, 판매, 정산, 사후관리 등의 모든 과정을 하나로 통합하여 관리하는 시스템을 개발 또는 임차하고, 이를 유지·개선

및 관리할 수 있다.<개정 2023. 11. 10.>
[제목개정 2023. 11. 10.]

제14조(예산 등) 도지사는 투어패스의 발행·판매·홍보 등 운영관리 및 투어패스 시스템의 운영, 유지보수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에 반영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23. 11. 10.]

제6장 보칙

제15조(위탁)

① 도지사는 전북특별자치도 출자·출연기관이나 「관광진흥법」 제2조에 따라 설립된 관광사업자 등에 투어패스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할 수 있다.<개정 2023. 12. 8.>

1. 제3조에 따른 투어패스 홍보
2. 제7조부터 제9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투어패스 판매, 판매점 관리
3. 제10조 및 제12조에 따른 가맹점 관리
4. 제13조에 따른 투어패스 시스템의 유지 및 관리

② 도지사는 투어패스 업무를 전문적·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위탁에 관한 구체적인 기준을 따로 정할 수 있다.

③ 업무를 위탁할 경우에는 「전북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조례」를 따른다.<개정 2023. 12. 8.>

제16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23. 전북특별자치도 관광기념품 개발 및 육성조례

Ⅰ. 종합의견

< 평가결과 >

□ 평가대상

조 례 명	전북특별자치도 관광기념품 개발 및 육성조례		
조례 구분	자치조례	관계 법령	-
제정·시행일	2015. 5. 1. 제정	최근개정·시행일	2023. 12. 8. 개정
소관 부서	관광산업과	소관 상임위	문화안전소방

□ 평가의견

평가항목	평가의견	주요 내용
종합의견	개정/일반	- 법제처 자치법규 입안기준에 따른 정비(비문 수정, 문장 표현 수정) 검토 - 타 시·도의 사례를 참고하여 우수업체 지정 등 관련 규정 신설 검토
심층분석 결과		- 제주특별자치도에서는 제13조에서 관광기념품을 창작 개발·제작하는 사람 중 일정한 요건을 갖춘 사람을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제주관광명장으로 선정할 수 있도록 함. 제주의 경우 "관광명품"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전북자치도의 경우 관광기념품 100선으로 선정하고 있어서 관광기념품 선정에 관한 행정 추진의 방향성이 달라 보임. 관광명장의 선정에 관해서는 제주의 규정 사례 반영을 검토할 수 있음. 참고하여 개정안을 제시함 - 타 시·도의 사례를 참고하여 우수업체 지정 관련 규정 신설하는 경우 기념품 100선에 선정된 업체를 대상으로 위원회에서 선정하도록 하여 현행 조례상 제도와 연계하여 선정하도록 정비 검토
1. 입법 근거 및 적법성	적정	자치사무의 범위에서 적절하게 제정되었음
2. 조례의 실효성	적정	조례에서 규정하고 있는 관광기념품 100선 사업이 예산 확보를 통해 적절하게 이루어지고 있음
3. 조례 내용의 적정성	적정	조례 내용이 적정한 범위 내에서 제정되었음
4. 조례의 공평성	적정	장애, 성별, 나이 등에 관한 사회적 편견, 고정관념이 반영된 표현 없음
5. 주민 수용성	적정	조례의 체계 및 용어가 주민이 알기 쉽게 되어 있음

6. 전북자치도 현실부합성	적정	관광기념품의 개발과 육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여 전북의 현실과 부합한 행정수요를 반영하고 있음
7. 위원회 운영의 적정성	적정	조례 제5조에 따라 위원회가 적절하게 설치되어 운영 중임
※ 기타 의견	없음	

Ⅱ. 항목별 평가 결과

평가항목	세부항목	척도	의견 및 자료
1. 입법의 근거 및 적법성	1) 위임조례인가 자치사무에 관한 조례인가?	☐ 위임조례 ☑ 자치사무에 관한 조례	
	2) 조례에서 규정하고 있는 위임근거가 올바른가?	☐ 그렇다 ☐ 그렇지않다 ☑ 해당사항 없음	
	3) 조례가 위임범위에서 적절하게 제·개정되었는가?	☐ 그렇다 ☐ 그렇지않다 ☑ 해당사항 없음	
	4) 조례 제.개정 이후 동일 또는 유사한 법령이나 제도가 만들어졌거나 근거법령이 개정 또는 폐지되었는가?	☐ 그렇다 ☐ 그렇지않다 ☑ 해당사항 없음	
	5) 조례에서 주민의 권리제한, 의무부과, 벌칙 부과, 규제사항에 대한 법률위임이 있는가?	☐ 그렇다 ☐ 그렇지않다 ☑ 해당사항 없음	
	6) 상위법령에 위배되는 조항이 있는가?	☐ 그렇다 ☐ 그렇지않다 ☑ 해당사항 없음	
2. 조례의 실효성	1) 조례의 시행과정에서 다른 조례와의 충돌이나 모순이 발생하고 있는가?	☐ 그렇다 ☑ 그렇지않다 ☐ 해당사항 없음	
	2) 이 조례와 유사 또는 동일한 다른 조례가 제정 및 시행되고 있어 통합할 필요가 있는가?	☐ 그렇다 ☑ 그렇지않다 ☐ 해당사항 없음	
	3) 조례에 따른 계획이 수립·시행되고 있는가?	☑ 그렇다 ☐ 그렇지않다 ☐ 해당사항 없음	-2024 전북특별자치도 관광기념품 100선 사업 기본 계획
	4) 조례에서 집행기관 등에 책무를 부여하고 있는가?	☐ 그렇다 ☑ 그렇지않다 ☐ 해당사항 없음	

평가항목	세부항목	척도	의견 및 자료
	5) 조례에서 부여한 책무와 관련사업을 집행기관이 잘 이행하고 있는가?	□ 그렇다 □ 그렇지않다 ☑ 해당사항 없음	
3. 조례 내용의 적정성	1) 조례에 재정지원 관련 규정이 있는가?	□ 그렇다 □ 그렇지않다 ☑ 해당사항 없음	
	2) 조례 시행에 필요한 예산 확보와 집행이 잘 이루어지고 있는가?	☑ 그렇다 □ 그렇지않다 □ 해당사항 없음	
	3) 지원대상이 집행이 가능한 정도로 구체화 되어 있는가?	☑ 그렇다 □ 그렇지않다 □ 해당사항 없음	
	4) 조례에 따른 위탁사무가 위탁대상으로 적정한가?	☑ 그렇다 □ 그렇지않다 □ 해당사항 없음	
4. 조례의 공평성	1) 조례에서 장애인, 성별 등의 특정계층이나 특정지역을 차별하는 조항이 있는가?	□ 그렇다 ☑ 그렇지않다 □ 해당사항 없음	
	2) 조례에서 정한 차별이 합리적인가?	□ 그렇다 □ 그렇지않다 ☑ 해당사항 없음	
5. 주민 의견 수용성	1) 조례 제·개정 시 입법예고는 하였는가?	☑ 그렇다 □ 그렇지않다 □ 해당사항 없음	
	2) 조례 제·개정 시 공청회, 세미나 등 이해관계인 및 주민에 대한 의견 수렴 과정이 있었는가?	□ 그렇다 □ 그렇지않다 ☑ 해당사항 없음	
	3) 조례와 관련한 민원(청원, 진정, 소송 등)이 제기되거나 개정 또는 폐지 요구가 있었는가?	□ 그렇다 □ 그렇지않다 ☑ 해당사항 없음	
	4) 조례의 체계나 사용 되어진 용어가 주민이 알기 쉽게 되어 있는가?	☑ 그렇다 □ 그렇지않다 □ 해당사항 없음	
6. 위원회 운영의 적정성	1) 조례로 위원회를 구성하도록 되어 있는가?	☑ 그렇다 □ 그렇지않다 □ 해당사항 없음	

평가항목	세부항목	척도	의견 및 자료
	2) 위원회가 법정위원회인가 조례로 설치하도록 한 위원회인가?	☐ 법정위원회 ☑ 조례로 정한 위원회 ☐ 해당사항 없음	
	3) 위원회 위원의 성별 구성이 적정한가?	☑ 그렇다 ☐ 그렇지않다 ☐ 해당사항 없음	-위촉직 남6, 여5
	4) 위원회가 법령이나 조례에서 정한 회의개최 운영 실적이 있고 관련 회의록을 보존하고 있는가?	☑ 그렇다 ☐ 그렇지않다 ☐ 해당사항 없음	
	5) 위원회를 계속 설치·운영할 필요성이 있는가?	☑ 그렇다 ☐ 그렇지않다 ☐ 해당사항 없음	
	6) 해당 위원회와 유사한 다른 위원회와의 기능적 통합이 필요한가?	☐ 그렇다 ☑ 그렇지않다 ☐ 해당사항 없음	
7. 종합 의견	1) 이 조례를 현행대로 유지할 필요가 있는가?	☑ 그렇다 ☐ 그렇지않다	
	2) 이 조례를 개정할 이유가 있는가? (해당사항 모두 표기)	☐ 위임근거에 불부합 ☐ 위임근거 불명확 ☐ 법령의 위임 없는 규제 정비 필요 ☐ 다른 조례와의 상충 및 모순 ☐ 조례 시행의 문제점 발생 ☐ 조례의 공평성 문제 ☑ 알기 쉬운 법령정비 기준에 따른 정비 필요 ☐ 위원회 관련 규정개정 필요 ☑ 그 밖의 사유	-관련 규정 신설 검토
	3) 이 조례를 폐지할 사유가 있는가? (해당사항 모두 표기)	☐ 다른 유사한 조례와의 통합 운영 필요성 ☐ 조례 시행 불가능 ☐ 최근 3년간 조례 관련 운영 실적 전무 ☐ 기타	
	4) 그 밖의 이 조례와 관련된 의견이 있는가?	☐ 있다 ☑ 없다	

Ⅲ. 세부내용

조례명	전북특별자치도 관광기념품 개발 및 육성 조례

■ 소관 부서 의견(팀)

○ **최종의견 : 현행 조례를 통하여 관광기념품 100선 사업을 원활히 수행함으로써 지역경제 활성화에 크게 기여하고 있어 조례의 현행유지가 필요함**

○ **내용**

- (2-3) 조례 제4조에 따라 2024 전북특별자치도 관광기념품 100선 사업 기본 계획을 수립함
- (3-3) 조례 내용에 따라 2022년부터 2024년까지 아래와 같이 예산을 확보하고 집행함
- (7-1) 조례 제5조에 따라 관광기념품 100선 공모전 심사위원회를 둠
- (7-3) 위원회 위원 11인 중 여성 비율은 45.45%임
- (7-4) 2022년부터 2024년까지 아래와 같이 위원회를 개최함
- (7-5) 관광기념품 100선의 선정 또는 해제 사유 발생 시 심사를 위해 위원회를 계속 운영해야 함

■ 종합의견	개정 권고/일반 정비

◎ 입법평가 세부의견

○ **평가항목별 검토**

평가항목	평가항목별 검토 내용
1. 입법 근거 및 적법성	자치사무의 범위에서 적절하게 제정되었음
2. 조례의 실효성	조례에서 규정하고 있는 관광기념품 100선 사업이 예산 확보를 통해 적절하게 이루어지고 있음
3. 조례 내용의 적정성	조례 내용이 적정한 범위 내에서 제정되었음
4. 조례의 공평성	장애, 성별, 나이 등에 관한 사회적 편견, 고정관념이 반영된 표현 없음
5. 주민 수용성	조례의 체계 및 용어가 주민이 알기 쉽게 되어 있음
6. 전북자치도 현실부합성	관광기념품의 개발과 육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여 전북의 현실과 부합한 행정수요를 반영하고 있음
7. 위원회 운영의 적정성	조례 제5조에 따라 위원회가 적절하게 설치되어 운영 중임
※ 기타 의견	없음

○ **연도별 사업내용 및 예산/집행액**

(단위: 천원)

연도	사업명	필요예산	확보예산	집행액	집행내역
2022	전라북도 관광 기념품 100선	350,000	350,000	350,000	- 공모전, 컨설팅 등 진행 - 100선 판매관 운영비 지원
2023	전라북도 관광 기념품 100선	350,000	350,000	350,000	- 공모전, 컨설팅 등 진행 - 100선 판매관 운영비 지원
2024	전북특별자치도 관광 기념품 100선	350,000	350,000	350,000	- 공모전, 컨설팅 등 진행 - 100선 판매관 운영비 지원

○ **조례의 입법목적 달성도 또는 부수효과 분석**

- 조례 목적달성도 평가
  - 조례 내용에 따라 전북특별자치도의 특색있는 관광기념품을 판매하여 지역 홍보와 제조업체 성장에 기여함
- 부수효과
  - 전북특별자치도의 특색있는 관광기념품을 통해 전북특별자치도민에게는 지역 애향심을 고취하고 외부인에게는 전북특별자치도 홍보의 기회를 마련함

○ **타 시·도 유사 조례와 비교 또는 타 시·도 자치법규(정책) 동향**

전북특별자치도 관광기념품 개발 및 육성조례	**서울특별시 관광기념품 개발 및 육성 조례**	**충청남도 관광기념품 개발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제주특별자치도 관광기념품 개발 및 육성 조례**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제3조(시책과 사업)	제3조(시책과 사업)	제3조(도지사의 책무)	제3조(시책 수립 등)
제4조(관광기념품 100선 선정)	제4조(위원회의 설치)	제4조(추진사업)	제4조(위원회의 설치)
제5조(관광기념품 100선 공모전 심사위원회)	제5조(구성 등)	제5조(행사 개최·참가 등)	제5조(구성)
제6조(관광기념품 100선 마크의 개발·사용)	제6조(위원장의 직무)	제6조(우수 관광기념품의 선정)	제6조(임기)
제7조(마크 부착에 따른 생산자의 책무 및 선정 해제)	제7조(회의)	**제7조(우수업체의 지정)**	제7조(위원장의 직무)
제8조(관광기념품 100선 선정제품 지원)	제8조(수당 등)	제8조(우수업체 지정 해제)	제8조(회의)
제9조(사무의 위탁)	제9조(경진대회 등의 개최)	제9조(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등)	제9조(수당 등)
제10조(포상)	제10조(입상자에 대한 지원)	제10조(위원장의 직무)	제10조(경진대회 등의 개최)

	제11조(우수관광기념품 업체의 지정)	제11조(회의)	제11조(입상자에 대한 지원)
	제12조(평가기관)	제12조(시행규칙)	제12조(제주관광명품의 선정)
	제13조(지정 신청)		**제13조(제주관광명장의 선정)**
	제14조(지정 고시와 통지)		제14조(우수관광기념품 업체의 지정)
	제15조(지정 효력)		제15조(평가기관)
	제16조(사후관리)		제16조(지정 등의 신청)
	제17조(지정 해제)		제17조(지정 등의 고시와 통지)
	제18조(전시판매장의 설치 운영)		제18조(지정 등의 효력)
	제19조(우수관광기념품 업체 육성 및 지원)		제19조(사후관리)
	제20조(마케팅 활동 및 판로개척 등 지원)		제20조(지정 등의 해제)
	제21조(사무의 위탁)		제21조(전시판매장의 설치운영)
	제22조(표창)		제22조(제주관광명품·제주관광명장 등의 육성)
	제23조(시행규칙)		제23조(판로개척)
			제24조(전문기관 등의 지정)
			제25조(시행규칙)

- 서울특별시에서는 우수관광기념품업체의 육성을 위하여 사업수행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함
- 충청남도에서는 우수업체 지정 조항을 통해 관광기념품 업체에 대하여 관광기념품 개발·상품화·판로개척 등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함
- 제주특별자치도에서는 제13조에서 관광기념품을 창작 개발·제작하는 사람 중 일정한 요건을 갖춘 사람을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제주관광명장으로 선정할 수 있도록 함

Ⅳ. 개정의견

현 행	개정안	비고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생략 2. "전북특별자치도 관광기념품 100선"이란 관광기념품 중에서 품질이 우수하고 부가가치가 높아 경쟁력 있는 전략적인 관광기념품으로 육성할 만한 가치가 있는 전북특별자치도의 대표상품으로서 이 조례에 따라 지정된 관광기념품을 말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현행과 같음 2. "전북특별자치도 관광기념품 100선"이란 관광기념품 중에서 품질이 우수하고 부가가치가 높고 경쟁력이 있어 전략적인 관광기념품으로 육성할 만한 가치가 있는 전북특별자치도의 대표상품으로서 이 조례에 따라 지정된 관광기념품을 말한다.	-가독성 제고를 위해 비문 수정 권고
<신설>	제4조의2(우수업체의 지정) ① 도지사는 관광기념품 관련 업체 중 아이디어 및 제작 기술이 우수한 업체를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우수 관광기념품 업체로 지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제4조에 따른 관광기념품 100선에 선정된 업체를 우선 고려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지정된 우수 관광기념품 업체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거나 사업 수행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1. 업체 시설 현대화 및 집단화 사업 2. 신규 관광기념품 개발 및 생산 장려금의 지원 3. 포장 디자인과 브랜드 개발 4. 마케팅 및 홍보 촉진 활동 5. 특허 출원, 등록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 지원 및 법률자문 5. 국내외 박람회, 전시회 , 특별행사 개최 및 참가 6. 유관기관을 통한 국내외 판로개척 7. 그 밖에 관광기념품 개발과 육성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타 시·도의 사례를 참고하여 우수업체 지정 관련 규정 신설 검토 -우수업체 지원과 관련하여 현행 조례 제8조의 관광기념품 100선에 대한 지원과 차별화 할 수 있도록 규정 검토

현 행	개정안	비고
	제4조의3(우수업체 지정 해제) ①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경우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정을 해제할 수 있다. 1. 우수 관광기념품 업체로 지정 당시의 관광기념품을 생산하지 않고 다른 제품을 생산하거나 휴업·폐업·관외 이전 또는 소재 불명 업체로 되었을 경우 2. 관계 법규를 위반하였거나 그 밖에 특수한 사유가 있을 경우 3. 그 밖에 도지사가 지정을 지속적으로 유지하기가 부적합하다고 판단할 경우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해제할 경우, 지원의 중단과 반환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5조(관광기념품 100선 공모전 심사위원회) ① 관광기념품 100선의 선정 또는 해제를 심사하기 위하여 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하여 12인 이내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행정부지사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도록 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생략 ④ 심사의 공정성을 위해 당해 제품과 관련 있는 사람은 심사위원에서 배제된다. ⑤ 생략 ⑥ 전북자치도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⑦ 이하 생략	제5조(관광기념품 100선 공모전 심사위원회) ① 관광기념품 100선의 선정 또는 해제를 심사하기 위하여 전북특별자치도 관광기념품 100선 공모전 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2명 이내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행정부지사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도록 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현행과 같음 ④ 심사의 공정성을 위해 해당 제품과 관련있는 사람은 심사위원에서 배제된다. ⑤ 현행과 같음 ⑥ 전북자치도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⑦ 이하 현행과 같음	-위원회 정식 명칭에 행정기관의 고유명칭 표기 -용어 및 중복적인 문장 표현 정비 권고
제6조(관광기념품 100선 마크의 개발·사용) ① 생략 ② 마크는 관광기념품 100선 공모전에 선정된 작품에 한하여 부착할 수	제6조(관광기념품 100선 마크의 개발·사용) ① 현행과 같음 ② 마크는 관광기념품 100선 공모전에 선정된 작품에 한하여 부착할 수	-권리는 전북자치도에 속해야 할 것으로 보임. 문장 표현 정비 권고

현 행	개정안	비고
있으며, 마크에 대한 권리는 도지사에게 있다. ③ 생략	있으며, 마크에 대한 권리는 전북자치도에 있다. ③ 현행과 같음	
제8조(관광기념품 100선 선정제품 지원) 도지사는 전북특별자치도 관광기념품 100선 공모전 선정제품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1. ~ 3. 생략 4. 그 밖에 전북특별자치도 관광기념품 100선 사업 활성화를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8조(관광기념품 100선 선정제품 지원) 도지사는 관광기념품 100선 공모전 선정제품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1. ~ 3. 현행과 같음 4. 그 밖에 도지사가 관광기념품 100선 사업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3조에서 약칭하고 있음 -중복적인 문장 표현 정비 권고
제9조(사무의 위탁) ① 생략 ② 제1항에 따라 위탁하는 사무의 종류·범위, 위탁의 방법과 절차 등은 「전북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에 따른다.	제9조(업무의 위탁) ① 현행과 같음 ② <삭제>	-업무위탁에 대한 선언적인 의미만을 규정하면, 그에 따른 구체적인 사항은 당연히 「전북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를 적용 받으므로 규정의 실익이 없음(법제처, 2023년 우수조례 및 자치법규 입법컨설팅 사례집, 108면)
제10조(포상) 도지사는 전북특별자치도 관광기념품의 개발과 육성에 현저한 공로가 있다고 인정되는 개인·기관·단체·법인 및 공무원 등에 대하여 「전북특별자치도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제10조(포상) 도지사는 전북특별자치도 관광기념품의 개발과 육성에 현저한 공로가 있다고 인정되는 개인·기관·단체·법인 및 공무원 등에 대하여 포상할 수 있다.	-포상에 관해 선언적인 의미만을 규정하면, 그에 따른 구체적인 사항은 당연히 「전북특별자치도 포상 조례」를 적용 받으므로 규정의 실익이 없음(법제처, 2023년 우수조례 및 자치법규 입법컨설팅 사례집, 118면)
<신설>	제13조(전북관광명장의 선정 등) ① 도지사는 제2조제2호의 전북특별자치도 관광기념품을 창작 개발·제작하는 사람 중 일정한 요건을 갖춘 사람을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전북관광명장으로 선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전북관광명장의 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심층분석을 통해 타 시·도의 사례를 참고하여 관광명장 선정 규정 신설 검토

심층분석 관련 검토

○ **심층분석 사유**

- 타 시·도 사례와 비교하여 추가적으로 검토할 내용을 살펴서 시사점을 검토

○ **심층분석**

- 충청남도에서는 우수업체 지정 조항을 통해 관광기념품 업체에 대하여 관광기념품 개발·상품화·판로개척 등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함
  - 이와 관련하여서는 기 검토하여 제시한 바 개정의견과 같이 개정하도록 권고함
- 제주특별자치도에서는 제13조에서 관광기념품을 창작 개발·제작하는 사람 중 일정한 요건을 갖춘 사람을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제주관광명장으로 선정할 수 있도록 함
  - 「제주특별자치도 관광기념품 개발 및 육성 조례」에서는 관광명품과 관광명장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음. 제주특별자치도의 관련 규정의 세부내용은 아래와 같음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관광기념품"이란 관광객들에게 판매할 목적으로 제주지역에 소재한 전문업체에 의해 개발 및 제작되는 공예품, 토산품, 특산품, 민예품, 농수축임산물 가공품 등으로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가 인정하는 제품의 일체를 말한다.
2. "제주관광명품"이란 관광기념품 중에서 품질이 우수하고 부가가치가 높아 경쟁력을 가진 전략적인 관광기념품으로 육성할 만한 가치가 있는 제주특별자치도(이하 "제주자치도"라 한다)의 대표상품으로 이 조례에 따라 지정된 관광기념품을 말한다.
3. "제주관광명장"이란 장인정신이 투철하고 관광기념품 관련 해당 분야에서 최고 수준의 기능을 가진 사람으로서 제주자치도에서 현재 5년 이상 거주하고 해당 분야에서 10년 이상 직접 종사함으로써 그 분야의 기술발전에 크게 공헌한 자로 이 조례에 따라 선정된 사람을 말한다.

제12조(제주관광명품의 선정) 도지사는 제2조제1호의 관광기념품 중 전략적으로 육성할 만한 가치가 있는 관광기념품을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제주관광명품으로 선정할 수 있다.

제13조(제주관광명장의 선정) 도지사는 제2조제1호의 관광기념품을 창작 개발·제작하는 사람 중 일정한 요건을 갖춘 사람을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제주관광명장으로 선정할 수 있다.

  - 제주의 경우 "관광명품"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전북자치도의 경우 관광기념품 100선으로 선정하고 있어서 관광기념품 선정에 관한 행정 추진의 방향성이 달라 보임. 관광명장의 선정에 관해서는 제주의 규정 사례 반영을 검토할 수 있음

- 위의 내용을 반영하여 아래와 같이 개정안을 제안함

현 행	개정안	비고
<신설>	제13조(전북관광명장의 선정 등) ① 도지사는 제2조제2호의 전북특별자치도 관광기념품을 창작 개발·제작하는 사람 중 일정한 요건을 갖춘 사람을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전북관광명장으로 선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전북관광명장의 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타 시·도의 사례를 참고하여 관광명장 선정 규정 신설 검토

- 타 시·도의 사례를 참고하여 우수업체 지정 관련 규정 신설하는 경우 기념품 100선에 선정된 업체를 대상으로 위원회에서 선정하도록 하여 현행 조례상 제도와 연계하여 선정하도록 정비 검토

현 행	개정안	비고
<신설>	제4조의2(우수업체의 지정) ① 도지사는 관광기념품 관련 업체 중 아이디어 및 제작 기술이 우수한 업체를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우수 관광기념품 업체로 지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제4조에 따른 관광기념품 100선에 선정된 업체를 우선 고려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지정된 우수 관광기념품 업체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거나 사업수행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1. 업체 시설 현대화 및 집단화 사업 2. 신규 관광기념품 개발 및 생산 장려금의 지원 3. 포장 디자인과 브랜드 개발 4. 마케팅 및 홍보 촉진 활동 5. 특허 출원, 등록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 지원 및 법률자문 5. 국내외 박람회, 전시회 , 특별행사 개최 및 참가 6. 유관기관을 통한 국내외 판로개척 7. 그 밖에 관광기념품 개발과 육성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타 시·도의 사례를 참고하여 우수업체 지정 관련 규정 신설 검토 -우수업체 지원과 관련하여 현행 조례 제8조의 관광기념품 100선에 대한 지원과 차별화 할 수 있도록 규정 검토

현 행	개정안	비고
	제4조의3(우수업체 지정 해제) ①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경우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정을 해제할 수 있다. 1. 우수 관광기념품 업체로 지정 당시의 관광기념품을 생산하지 않고 다른 제품을 생산하거나 휴업·폐업·관외 이전 또는 소재 불명 업체로 되었을 경우 2. 관계 법규를 위반하였거나 그 밖에 특수한 사유가 있을 경우 3. 그 밖에 도지사가 지정을 지속적으로 유지하기가 부적합하다고 판단할 경우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해제할 경우, 지원의 중단과 반환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 참고자료 1 – 위원회 관련 실적

○ 구성

- 관광기념품 100선 공모전 심사위원회
- 임기 : 2024. 6. 18. ~ 2024. 12. 31.(당해 위촉일 ~ 당해 12. 31.)

구분	정원	현원	당연직	위촉직	
				남	여
위원수(명)	11	11	1	6	5
비 율(%)	-	-	-	54.55%	45.45%

○ 개최 실적

- 최근 3년간 개최 현황

연도별	2022	2023	2024
개최건수	1	1	1
개최일	6.17.	10.16.	6.19.
소요예산(원)	6,744,200	6,148,050	5,178,500

□ 참고자료 2 – 조례 관련 자료

○ 자료 1

전북특별자치도 문화관광재단에서 전북특별자치도 관광기념품 100선 판매관을 운영중

전북특별자치도 관광기념품 100선 판매관

소개

100선의 관광기념품은 우리네 전통과 멋이 함께합니다.

전북특별자치도를 찾는 국내외 관광객이 전북특별자치도를 추억하거나 이미지를 쉽게 떠올릴 수 있도록 하기 위해 2015년부터 전북특별자치도 관광기념품 100선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전북특별자치도를 상징하는 관광기념품을 개발. 육성하여 전북특별자치도 관광기념품이 대한민국을 넘어 세계적인 관광기념품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주요사업

전북 관광기념품
개발 및 육성
(100선 선정 공모전)

전북 관광기념품
100선 판매

○ 자료 2

전북특별자치도문화관광재단 주관으로 전북특별자치도 관광기념품 100선 상품 공모전을 실시함



□ 참고자료 3 – 조례 관련 보도자료

○ 보도자료 1

전북문화관광재단 대표 관광기념품 7점 선정 시상식, 전라일보[34)]



'2024 전북특별자치도 관광기념품 100선' 상품 선정을 기념하는 시상식이 진행되고 있다

전북특별자치도문화관광재단(이하 재단)과 전북특별자치도(이하 전북자치도)가 주관하는 '2024 전북특별자치도 관광기념품 100선' 상품 선정을 기념하는 시상식을 전북특별자치도문화관광재단 대회의식에서 11일 개최됐다.

이번 공모는 전북의 역사, 문화 등 전북자치도를 대표하고 상징하는 요소를 반영한 관광기념품을 선정하고자 진행됐다.

최종 선정 상품으로는 ▲전주한옥마을 오목대 자개 풍경(아라공방, 강해경) ▲왕의 도시, 미각의 도시 전주 스마트 톡(더씽킹, 배웅선) ▲1초각(한민족사랑, 변길동) ▲전주의 사계 굽 소주잔(조혜림) ▲전주 명소 사계절 향기 제품(취향연못, 박은지) ▲전주명소 행운가득, 자개키링(보물단지, 정민해) ▲풍남문소리(안목 스토어, 이나눔) 등 총 7점이다.

선정된 상품 7점에는 ▲전북특별자치도 관광기념품 인증마크 부여 ▲관광기념품 100선관 입점 ▲생산 장려금 지급 ▲홍보 마케팅 지원 등 다양한 혜택이 제공된다.

한 참여 선정자는 "전북을 대표하는 관광기념품으로 선정되어 영광스럽다"라며 "전북특별자치도 관광기념품 100선으로 선정됨에 자부심을 가지고 상품 유지관리와 개발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이경윤 재단 대표이사는 "앞으로 우수한 관광기념품을 발굴 및 육성 하고, 여러방면에서 선정업체를 지원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전북특별자치도 관광기념품 100선 사업'은 전북을 대표하는 우수한 관광기념품을 개발 및 지원해 전북특별자치도 관광기념품 산업을 육성하는 사업이다. 자세한 내용은 재단 관광마케팅팀(063-230-7484)로 문의하면 된다./박세린기자

34) https://www.jeollailbo.com/news/articleView.html?idxno=737734

붙임 1 사업 관련 추진실적

□ 연도별 사업 및 예산 집행 실적

○ 최근 3년간 실적

(단위: 천원)

연도	사업명	필요예산	확보예산	집행액	집행내역
2022	전라북도 관광 기념품 100선	350,000	350,000	350,000	- 공모전, 컨설팅 등 진행 - 100선 판매관 운영비 지원
2023	전라북도 관광 기념품 100선	350,000	350,000	350,000	- 공모전, 컨설팅 등 진행 - 100선 판매관 운영비 지원
2024	전북특별자치도 관광 기념품 100선	350,000	350,000	350,000	- 공모전, 컨설팅 등 진행 - 100선 판매관 운영비 지원

- 2022년 세부내역

○ 세부내역

(단위 : 원)

구 분	예 산 액	집 행 액	집행잔액 (A)	이자발생액 (B)	수익금 등 (C)	반납액 (A+B+C)
계	350,000,000	331,610,043	18,389,957	178,230	45,639,847	64,208,034
전북문화관광재단	50,000,000	32,734,500	17,265,500	158,260	-	17,423,760
100선 판매관	300,000,000	298,875,543	1,124,457	19,970 (보조금 이자 18,090, 수익금 이자 640, 기타 수익금 이자 1,240)	45,639,847 (판매관 수익금 35,985,587 기타 수익금 9,654,260)	46,784,274

- 2023년 세부내역

○ 총 괄

(단위 : 원)

예 산 액	집 행 액	집행잔액	비고
350,000,000	343,325,635	6,674,365	

○ 세부내역

(단위 : 원)

구 분	예 산 액	집 행 액	집행잔액	이자발생액	기타(수익 등)
총 계	350,000,000	343,325,635	6,674,365	328,630	32,146,495
재단	50,000,000	45,203,150	4,796,850	292,970	-
수탁기관 (한국공예문화협회)	300,000,000	298,122,485	1,877,515	35,660	32,146,495

붙임 2 평가대상 조례

전북특별자치도 관광기념품 개발 및 육성조례

[시행 2024. 1. 18.] [전북특별자치도조례 제5399호, 2023. 12. 8., 일부개정]

전북특별자치도(관광산업과), 063-280-3302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전북특별자치도 관광기념품의 개발과 육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관광기념품 산업의 발전기반 조성과 관광기념품의 고부가가치 산업화를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3. 12. 8.>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개정 2023. 12. 8.>

1. “관광기념품”이란 관광객들에게 판매할 목적으로 전북특별자치도 지역에 소재한 개인이나 업체에 의해 개발 및 제작되는 공예품, 토산품, 민예품, 농·수·축·임산물 가공품 등으로 전북특별자치도지사가 인정하는 제품의 일체를 말한다.
2. “전북특별자치도 관광기념품 100선”이란 관광기념품 중에서 품질이 우수하고 부가가치가 높아 경쟁력 있는 전략적인 관광기념품으로 육성할 만한 가치가 있는 전북특별자치도의 대표상품으로서 이 조례에 따라 지정된 관광기념품을 말한다.<개정 2019. 6. 7., 2023. 12. 8.>

제3조(시책과 사업) 전북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관광기념품의 개발·육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개정 2019. 6. 7. 2023. 12. 8.>

1. 관광기념품의 개발 및 산업육성을 위한 중장기 발전전략의 수립
2. 전북특별자치도 관광기념품 100선(이하 “관광기념품 100선”이라 한다)의 선정 및 육성
3. 관광기념품의 산업재산권(특허권, 실용신안권, 의장권, 상표권 등) 출원 및 등록에 관한 지원
4. 관광기념품의 판로개척 및 유통기반 구축에 관한 지원
5. 관광기념품 개발인력 양성과 교육훈련시스템 구축
6. 그밖에 관광기념품 개발 및 육성과 관련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4조(관광기념품 100선 선정) <개정 2019. 6. 7>

① 도지사는 전북특별자치도(이하 “전북자치도”라 한다)를 대표하는 관광기념품 100선의 선정과 육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개정 2019. 6. 7., 2023. 12. 8.>

1. 관광기념품 100선 공모전
2. 관광기념품 100선 선정제품 전시회
3. 관광기념품 100선 선정제품 판매관의 설치 및 운영

② 관광기념품 100선 공모전 선정제품은 일정기간 일반인에게 공개하여 전시·관람하게 한다.<개정 2019. 6. 7>

③ 관광기념품 100선 공모전과 전시회 등의 절차는 도지사가 별도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한다.<개정 2019. 6. 7>

제5조(관광기념품 100선 공모전 심사위원회) <개정 2019. 6. 7>

① 관광기념품 100선의 선정 또는 해제를 심사하기 위하여 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개정 2019. 6. 7>

②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하여 12인 이내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행정부지사가 되

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도록 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은 관계공무원과 전북자치도의원 및 해당 분야의 전문적 식견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임명 또는 위촉하되, 위촉직의 경우 특정 성이 10분의 6을 넘지 않도록 한다.<개정 2019. 6. 7., 2023. 12. 8.>

④ 심사의 공정성을 위해 당해 제품과 관련 있는 사람은 심사위원에서 배제된다.<개정 2019. 6. 7>

⑤ 위원회는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개정 2019. 6. 7>

⑥ 전북자치도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23. 12. 8.>

⑦ 위원회의 운영은 해당 연도 공모전 심사 및 관광기념품 100선 선정 해제에 한하며, 위원회는 해당 연도 12월 31일에 자동 해산된다.<개정 2019. 6. 7>

⑧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신설 2019. 6. 7>

1. 관광기념품 100선 공모전 심사
2. 관광기념품 100선 선정 해제
3. 그 밖에 관광기념품 100선의 품질관리를 위하여 도지사가 심의·의결을 요구한 사항

제6조(관광기념품 100선 마크의 개발 · 사용) <개정 2019. 6. 7>

① 도지사는 관광기념품 100선 선정작품의 영예를 높이고 판매촉진 및 소비자의 신뢰를 확보하기 위하여 관광기념품 100선 마크를 개발하여야 한다.<개정 2019. 6. 7>

② 마크는 관광기념품 100선 공모전에 선정된 작품에 한하여 부착할 수 있으며, 마크에 대한 권리는 도지사에게 있다.<개정 2019. 6. 7>

③ 도지사는 관광기념품 100선 마크를 관광기념품 100선 생산자에게 부여할 때 선정제품의 품질유지의무 등 생산자의 준수사항과 준수사항 위반 시 선정해제 등의 내용을 포함한 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신설 2019. 6. 7>

제7조(마크 부착에 따른 생산자의 책무 및 선정 해제) <개정 2019. 6. 7>

① 관광기념품 100선에 선정되어 마크를 부여받은 생산자는 선정당시의 품질수준을 유지하여야 한다.<개정 2019. 6. 7>

② 생산자는 관계공무원이 상품생산, 품질유지, 관광기념품 100선 마크 사용실태 등을 조사할 경우에는 적극적으로 협조해야 한다.<개정 2019. 6. 7>

③ 도지사는 관광기념품 100선에 선정된 생산자가 품질유지의무를 준수하지 않거나, 그 밖에 제6조제3항의 계약에 따른 선정 해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관광기념품 100선 선정을 해제할 수 있다.<개정 2019. 6. 7>

④ 도지사는 제3항에 따라 선정이 해제된 경우 제8조에 따른 지원을 중단하여야 하고, 지원사항에 대한 반환요구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신설 2019. 6. 7>

제8조(관광기념품 100선 선정제품 지원) <개정 2019. 6. 7> 도지사는 전북특별자치도 관광기념품 100선 공모전 선정제품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9. 6. 7., 2023. 12. 8.>

1. 제품의 전시 및 홍보지원
2. 선정제품의 상품화 지원
3. 유관기관을 통한 국내외 판로개척
4. 그 밖에 전북특별자치도 관광기념품 100선 사업 활성화를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9조(사무의 위탁)

① 도지사는 관광기념품 개발 및 육성사업 등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련 단체에게 위탁할 수 있다.<개정 2019. 6. 7>

② 제1항에 따라 위탁하는 사무의 종류·범위, 위탁의 방법과 절차 등은 「전북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에 따른다.<개정 2023. 12. 8.>

제10조(포상) 도지사는 전북특별자치도 관광기념품의 개발과 육성에 현저한 공로가 있다고 인정되는 개인·기관·단체·법인 및 공무원 등에 대하여 「전북특별자치도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개정 2023. 12. 8.>

24. 전북특별자치도 바둑 활성화 지원 조례

Ⅰ. 종합의견

< 평가결과 >

□ 평가대상

조 례 명	전북특별자치도 바둑 활성화 지원 조례		
조례 구분	자치조례	관계 법령	-
제정·시행일	2020. 2. 28. 제정	최근개정·시행일	2023. 12. 8. 개정
소관 부서	체육정책과	소관 상임위	문화안전소방

□ 평가의견

평가항목	평가의견	주요 내용
종합의견	일반 정비	- 시행규칙은 개별 조례에서 위임이 없더라도 조례의 집행에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규칙으로 규정할 수 있으므로 삭제 권고 - 유사한 내용을 규정하고 있는 「전북특별자치도 체육진흥 조례」와의 통합 여부 검토
심층분석 결과		- 조례를 별도로 운영할 것인가 아니면 유사한 조례를 통합하여 운영할 것인가 하는 문제는 정책추진 의지, 방향성 및 구성원의 의견 등 다양한 검토를 필요로 하는바, 전북특별자치도에서 "바둑"의 위상 및 실질적 지원 형태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음 - 예산 집행 사례 등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청소년, 생활 바둑 등 다양한 대회 지원 등을 통해서 전북특별자치도에서의 "바둑" 활성화가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보임 - 조례를 별도로 운영함으로써 가질 수 있는 장점은 타 시·도에 비해 "바둑 활성화" 지원에 관한 상징성 확보라는 면에서 조례를 별도로 운영할 실익이 크다고 할 것임. 이 조례를 별도로 운영하도록 권고
1. 입법 근거 및 적법성	적정	자치사무의 범위에서 적절하게 제정되었음
2. 조례의 실효성	적정	바둑관련 프로그램 등 지속적으로 잘 운영되어 실효성이 확보됨
3. 조례 내용의 적정성	적정	실질적인 지원방안인 바둑대회 개최와 같은 조례 내용이 적정함
4. 조례의 공평성	적정	장애, 성별, 나이 등에 관한 사회적 편견, 고정관념이 반영된 표현 및 차별 규정 없음

5. 주민 수용성	적정	조례의 체계 및 용어가 주민이 알기 쉽게 되어 있음
6. 전북자치도 현실부합성	적정	지역의 특성과 여건에 맞는 바둑 진흥책을 마련하기위하여 제정된 본 조례는 행정수요를 반영하고 있어 전북특별자치도 현실에 부합함
7. 위원회 운영의 적정성	적정	위원회 운영관련 규정이 없음
※ 기타 의견	없음	

Ⅱ. 항목별 평가 결과

평가항목	세부항목	척도	의견 및 자료
1. 입법의 근거 및 적법성	1) 위임조례인가 자치사무에 관한 조례인가?	☐ 위임조례 ☑ 자치사무에 관한 조례	
	2) 조례에서 규정하고 있는 위임근거가 올바른가?	☐ 그렇다 ☐ 그렇지않다 ☐ 해당사항 없음	
	3) 조례가 위임범위에서 적절하게 제·개정되었는가?	☐ 그렇다 ☐ 그렇지않다 ☑ 해당사항 없음	
	4) 조례 제.개정 이후 동일 또는 유사한 법령이나 제도가 만들어졌거나 근거법령이 개정 또는 폐지되었는가?	☐ 그렇다 ☐ 그렇지않다 ☑ 해당사항 없음	
	5) 조례에서 주민의 권리제한, 의무부과, 벌칙 부과, 규제사항에 대한 법률위임이 있는가?	☐ 그렇다 ☐ 그렇지않다 ☑ 해당사항 없음	
	6) 상위법령에 위배되는 조항이 있는가?	☐ 그렇다 ☐ 그렇지않다 ☑ 해당사항 없음	
2. 조례의 실효성	1) 조례의 시행과정에서 다른 조례와의 충돌이나 모순이 발생하고 있는가?	☑ 그렇다 ☐ 그렇지않다 ☐ 해당사항 없음	-「전북특별자치도 체육진흥 조례」
	2) 이 조례와 유사 또는 동일한 다른 조례가 제정 및 시행되고 있어 통합할 필요가 있는가?	☑ 그렇다 ☐ 그렇지않다 ☐ 해당사항 없음	
	3) 조례에 따른 계획이 수립·시행되고 있는가?	☑ 그렇다 ☐ 그렇지않다 ☐ 해당사항 없음	-2024년 바둑 활성화 지원 계획
	4) 조례에서 집행기관 등에 책무를 부여하고 있는가?	☑ 그렇다 ☐ 그렇지않다 ☐ 해당사항 없음	-제4조

평가항목	세부항목	척도	의견 및 자료
	5) 조례에서 부여한 책무와 관련사업을 집행기관이 잘 이행하고 있는가?	☑ 그렇다 ☐ 그렇지않다 ☐ 해당사항 없음	
3. 조례 내용의 적정성	1) 조례에 재정지원 관련 규정이 있는가?	☑ 그렇다 ☐ 그렇지않다 ☐ 해당사항 없음	-제3조
	2) 조례 시행에 필요한 예산 확보와 집행이 잘 이루어지고 있는가?	☑ 그렇다 ☐ 그렇지않다 ☐ 해당사항 없음	
	3) 지원대상이 집행이 가능한 정도로 구체화 되어 있는가?	☑ 그렇다 ☐ 그렇지않다 ☐ 해당사항 없음	
	4) 조례에 따른 위탁사무가 위탁대상으로 적정한가?	☐ 그렇다 ☐ 그렇지않다 ☑ 해당사항 없음	
4. 조례의 공평성	1) 조례에서 장애인, 성별 등의 특정계층이나 특정지역을 차별하는 조항이 있는가?	☐ 그렇다 ☑ 그렇지않다 ☐ 해당사항 없음	
	2) 조례에서 정한 차별이 합리적인가?	☐ 그렇다 ☐ 그렇지않다 ☑ 해당사항 없음	
5. 주민 의견 수용성	1) 조례 제·개정 시 입법예고는 하였는가?	☑ 그렇다 ☐ 그렇지않다 ☐ 해당사항 없음	
	2) 조례 제·개정 시 공청회, 세미나 등 이해관계인 및 주민에 대한 의견 수렴 과정이 있었는가?	☐ 그렇다 ☐ 그렇지않다 ☑ 해당사항 없음	
	3) 조례와 관련한 민원(청원, 진정, 소송 등)이 제기되거나 개정 또는 폐지 요구가 있었는가?	☐ 그렇다 ☐ 그렇지않다 ☑ 해당사항 없음	
	4) 조례의 체계나 사용 되어진 용어가 주민이 알기 쉽게 되어 있는가?	☑ 그렇다 ☐ 그렇지않다 ☐ 해당사항 없음	
6. 위원회 운영의	1) 조례로 위원회를 구성하도록 되어 있는가?	☐ 그렇다 ☑ 그렇지않다 ☐ 해당사항 없음	

평가항목	세부항목	척도	의견 및 자료
적정성	2) 위원회가 법정위원회인가 조례로 설치하도록 한 위원회인가?	☐ 법정위원회 ☐ 조례로 정한 위원회 ☑ 해당사항 없음	
	3) 위원회 위원의 성별 구성이 적정한가?	☐ 그렇다 ☐ 그렇지않다 ☑ 해당사항 없음	
	4) 위원회가 법령이나 조례에서 정한 회의개최 운영 실적이 있고 관련 회의록을 보존하고 있는가?	☐ 그렇다 ☐ 그렇지않다 ☑ 해당사항 없음	
	5) 위원회를 계속 설치·운영할 필요성이 있는가?	☐ 그렇다 ☐ 그렇지않다 ☑ 해당사항 없음	
	6) 해당 위원회와 유사한 다른 위원회와의 기능적 통합이 필요한가?	☐ 그렇다 ☐ 그렇지않다 ☑ 해당사항 없음	
7. 종합 의견	1) 이 조례를 현행대로 유지할 필요가 있는가?	☑ 그렇다 ☐ 그렇지않다	
	2) 이 조례를 개정할 이유가 있는가? (해당사항 모두 표기)	☐ 위임근거에 불부합 ☐ 위임근거 불명확 ☐ 법령의 위임 없는 규제 정비 필요 ☐ 다른 조례와의 상충 및 모순 ☐ 조례 시행의 문제점 발생 ☐ 조례의 공평성 문제 ☑ 알기 쉬운 법령정비 기준에 따른 정비 필요 ☐ 위원회 관련 규정개정 필요 ☑ 그 밖의 사유	
	3) 이 조례를 폐지할 사유가 있는가? (해당사항 모두 표기)	☑ 다른 유사한 조례와의 통합 운영 필요성 ☐ 조례 시행 불가능 ☐ 최근 3년간 조례 관련 운영 실적 전무 ☐ 기타	
	4) 그 밖의 이 조례와 관련된 의견이 있는가?	☐ 있다 ☑ 없다	

Ⅲ. 세부내용

조례명	전북특별자치도 바둑 활성화 지원 조례

■ 소관 부서 의견(팀)

○ **최종의견 : 다른 유사한 조례(「전북특별자치도 체육진흥 조례」)와의 통합하여 운영할 필요성은 있음**

○ **내용**

- (1-1) 본 조례는 「바둑진흥법」 제3조, 제8조 관련 내용을 규정한 자치조례임
- (2-2) 본 조례 내용은 2015년 제정된 전북특별자치도 체육진흥조례와 내용이 유사함
- (2-3) 조례 내용에 따라 2024년 바둑 활성화 지원 계획을 수립함
- (2-4) 조례 제4조에 따라 전북특별자치도민을 대상으로 한 바둑교육에 3,440천원, 바둑생활체육 관련 사업에 68,000천원을 확보함
- (2-5) 현재 3개 시·군에 생활체육교실 설립을 추진 중임
- (2-5) 2023년 12월 1명에게 생활체육유공 포상을 수여함
- (3-1) 조례 제3조에 따라 재정지원을 실시할 수 있음
- (3-3) 조례 제3조에 따라 2022년부터 2024년까지 예산을 확보하고 집행함
- (8-1) 바둑 활성화 및 바둑문화 기반조성을 위해 조례 유지가 필요함

■ 종합의견	일반 정비

◎ 입법평가 세부의견

○ **평가항목별 검토**

평가항목	평가항목별 검토 내용
1. 입법 근거 및 적법성	자치사무의 범위에서 적절하게 제정되었음
2. 조례의 실효성	바둑관련 프로그램 등 지속적으로 잘 운영되어 실효성이 확보됨
3. 조례 내용의 적정성	실질적인 지원방안인 바둑대회 개최와 같은 조례 내용이 적정함
4. 조례의 공평성	장애, 성별, 나이 등에 관한 사회적 편견, 고정관념이 반영된 표현 및 차별 규정 없음
5. 주민 수용성	조례의 체계 및 용어가 주민이 알기 쉽게 되어 있음
6. 전북자치도 현실부합성	지역의 특성과 여건에 맞는 바둑 진흥책을 마련하기위하여 제정된 본 조례는 행정수요를 반영하고 있어 전북특별자치도 현실에 부합함
7. 위원회 운영의 적정성	위원회 운영관련 규정이 없음
※ 기타 의견	없음

○ **연도별 사업내용 및 예산/집행액**

(단위: 천원)

연도	사업명	필요예산	확보예산	집행액	집행내역
2022	시군생활체육대회지원	15,000	15,000	15,000	대회지원비
	국제전국규모체육대회지원	38,000	38,000	38,000	대회지원비
2023	시군생활체육대회지원	21,000	21,000	21,000	대회지원비
	국제전국규모체육대회지원	28,000	28,000	28,000	대회지원비
2024	시군생활체육대회지원	50,000	50,000	50,000	대회지원비
	도지사기 대회 지원	18,000	18,000	18,000	대회지원비
	생활체육교실 운영	3,440	3,440	3,440	강사비 등

○ **조례의 입법목적 달성도 또는 부수효과 분석**

- 조례 목적달성도 평가
  - 조례 내용에 따라 매년 전북특별자치도, 시·군 체육대회에 지원을 실시하고 있다는 점에서 조례의 목적이 달성되고 있음
- 부수효과
  - 바둑의 진흥을 통해 청소년의 두뇌학습에 기여할 수 있음

○ **타 시·도 유사 조례와 비교 또는 타 시·도 자치법규(정책) 동향**

전북특별자치도 바둑 활성화 지원 조례	광주광역시 바둑 진흥 조례	서울특별시 바둑 진흥 및 지원 조례	경기도 바둑 진흥 및 지원 조례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제3조(도지사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3조(도지사의 책무)
제4조(사업)	제4조(다른 법령 및 조례와의 관계)	제4조(시장의 책무)	제4조(사업)
제5조(바둑전용경기장의 조성)	제5조(사업)	제5조(사업)	제5조(바둑전용경기장의 조성)
제6조(협력체계 구축)	**제6조(바둑지도자 등의 육성 및 확보)**	제6조(바둑전용경기장의 조성)	제6조(지원)
제7조(포상)	제7조(바둑전용경기장의 조성)	제7조(지원)	제7조(협력체계 구축)
제8조(시행규칙)	제8조(지원)	제8조(협력체계 구축)	제8조(포상)
	제9조(바둑의 날)	제9조(표창)	제9조(시행규칙)
	제10조(협력체계 구축)	제10조(시행규칙)	
	제11조(포상)		
	제12조(시행규칙)		

- 광주광역시는 제6조(바둑지도자 등의 육성 및 확보)에서 바둑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바둑지도자, 바둑전문기사 등을 육성하거나 확보할 수 있도록 함

Ⅳ. 개정의견

현 행	개정안	비고
제4조(사업) 도지사는 바둑 진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전북특별자치도 바둑 및 바둑문화 진흥 2. 전북특별자치도 바둑 관련 실태조사 및 기술개발	제4조(사업) 도지사는 바둑 진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전북특별자치도(이하 "전북자치도"라 한다) 바둑 및 바둑문화 진흥 2. 전북자치도 바둑 관련 실태조사 및 기술개발	-약칭표현 정비 권고
제5조(바둑전용경기장의 조성) 도지사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바둑 전용경기장을 조성·운영 할 수 있다.	제5조(바둑전용경기장의 조성) 도지사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바둑 전용경기장을 조성·운영할 수 있다.	-띄어쓰기 정비 권고
제7조(포상) 도지사는 바둑 활성화에 기여한 공로가 현저한 기관·법인·단체 및 개인 등을 선정하여 「전북특별자치도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제7조(포상) 도지사는 바둑 활성화에 기여한 공로가 현저한 기관·법인·단체 및 개인 등을 선정하여 포상할 수 있다.	-포상에 관해 선언적인 의미만을 규정하면, 그에 따른 구체적인 사항은 당연히 「전북특별자치도 포상 조례」를 적용 받으므로 규정의 실익이 없음(법제처, 2023년 우수조례 및 자치법규 입법컨설팅 사례집, 118면)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삭제>	-시행규칙은 개별 조례에서 위임이 없더라도 조례의 집행에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규칙으로 규정할 수 있으므로 삭제 권고

심층분석 관련 검토

○ **심층분석 사유**

- 유사한 내용을 규정하고 있는 「전북특별자치도 체육진흥 조례」와의 통합운영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집행부 의견에 따라 심층분석을 통해 통합 여부 검토

○ **심층분석**

- 통합논의의 대상인 「전북특별자치도 체육진흥 조례」와 「전북특별자치도 바둑 활성화 지원 조례」는 아래와 같은 체계를 가지고 있음

전북특별자치도 바둑 활성화 지원 조례	전북특별자치도 체육진흥 조례
제1조(목적)	**제1장 전북특별자치도 체육진흥**
제2조(정의)	제1조(목적)
제3조(도지사의 책무)	제2조(정의)
제4조(사업)	제3조(도지사의 책무)
제5조(바둑전용경기장의 조성)	제4조(재정적 지원 등)
제6조(협력체계 구축)	제4조의2(지도·감독)
제7조(포상)	**제2장 전북특별자치도 체육진흥협의회 운영**
제8조(시행규칙)	제5조(설치)
	제6조(기능)
	제7조(구성)
	제8조(위원의 임기)
	제9조(위원의 해임 및 해촉)
	제10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제11조(회장 등의 직무)
	제12조(회의)
	제13조(간사 등)
	제14조(관계기관 등 협조)
	제15조(수당 등)
	제3장 스포츠클럽 및 체육지도자 지원
	제16조(스포츠클럽 지원)
	제17조(체육지도자 지원)
	제18조(준용)

- 「바둑진흥법」 제2조에서 "바둑지도자"를 "「국민체육진흥법」 제11조에 따른 바둑 종목의 체육지도자 자격이 부여된 사람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바둑"도 스포

츠의 일환으로 분류하고 있다는 점에서 크게 보자면 체육진흥 조례에서 함께 의율하는 방안을 검토할 수 있을 것임

- 조례를 별도로 운영할 것인가 아니면 유사한 조례를 통합하여 운영할 것인가 하는 문제는 정책추진 의지, 방향성 및 구성원의 의견 등 다양한 검토를 필요로 하는바, 전북특별자치도에서의 "바둑"의 위상 및 실질적 지원 형태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음
- 전북특별자치도 이외에 경기도, 광주광역시, 서울특별시, 울산광역시, 전라남도, 제주특별자치도에서도 "바둑 활성화 지원 조례"를 운영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음
- 예산 집행 사례 등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청소년, 생활 바둑 등 다양한 대회 지원 등을 통해서 전북특별자치도에서의 "바둑" 활성화가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보임
- 조례를 별도로 운영함으로써 가질 수 있는 장점으로는 "바둑 활성화" 지원에 관한 상징성 확보라는 면에서 조례를 별도로 운영할 실익이 크다고 할 것임. 이 조례를 별도로 운영하도록 권고

□ 참고자료 1 – 위원회 관련 실적

○ 구성

- 위원회 규정 없음

○ 개최 실적

- 해당사항 없음

□ 참고자료 2 – 조례 관련 보도 자료

○ 보도자료 1

완주군, 전북 출신 이창호 9단 주장의 '수소도시 완주' 바둑팀 후원, 프레시안[35)]

전략적인 스포츠 마케팅으로 방문객 유치를 목표로 전북특별자치도 완주군이 전북 출신으로 바둑계 거목이된 이창호 프로기사(9단)를 주장으로 하는 '수소도시 완주' 팀과의 공식 후원 계약을 체결하고 '2024 레전드 바둑리그'에 참가한다.

지난 9일 완주군은 전략회의실에서 바둑을 통한 스포츠마케팅 활성화 추진을 위해 (재)한국기원(사무총장 양재호)과 ㈜아시아(대표 오인섭)간의 스폰서십 협약식 및 선수단 발대식을 가졌다.

2024 레전드 바둑리그는 오는 20일 개막을 앞두고 있는데 '수소도시 완주' 바둑팀은 정수현 감독을 필두로 이창호 9단, 권효진 9단, 박승문 8단, 나종훈 8단이 한 팀이 되어 출전한다.



▲ⓒ완주군

특히, 이창호 9단은 팀의 주장을 맡아 활동하게 된다.

이 9단은 완주군과 스킨십을 강화해 오는 10월 4일부터 6일까지 고산자연휴양림에서 열리는 완주 와일드&로컬푸드축제에도 참가한다. 완주군은 '이창호 프로기사와 함께하는 지도 다면기(多面棋)&사인회'도 열 예정이다. 다면기는 한 명의 프로기사 또는 상수가 하급자 여럿과 동시에 대국하며 지도하는 것을 말한다.

유희태 완주군수는 "오늘 협약식을 계기로 완주군 바둑문화 발전과 저변을 확대해 나가겠다"며 "우리지역에서 제2, 제3의 이창호 기사가 배출될 수 있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35) https://www.pressian.com/pages/articles/2024091012371062905

○ 보도자료 2

전북자치도-장쑤성 자매결연 30주년 기념, 청소년 친선 바둑대회 개최, 투데이안[36)]

-전북자치도-장쑤성 청소년 바둑애호가 문화의 공통 아이콘 '바둑'으로 뭉치다
-전북자치도-장쑤성 미래의 바둑 명인들과 우애를 다지다



[투데이안] 전북국제협력진흥원(원장 김대식)은 '전북특별자치도-장쑤성 청소년 친선 바둑대회'가 8월 29일 중국 장쑤성 난징 이사원 호텔에서 개최됐다고 밝혔다.

'전북자치도-장쑤성 청소년 친선 바둑대회'는 전북자치도-장쑤성 자매결연 30주년을 기념해 양국 아마추어 3단 이상 청소년 바둑애호가 각 12명씩, 총 24명이 참가해 실력을 겨뤘다.

그동안 코로나로 인해 온라인으로 진행되오던 바둑대회를 올해 첫 오프라인으로 진행해 양국 청소년들 간의 수담(手談)을 통해 우정을 쌓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번 행사를 축하해주기 위해 띵시엔중(丁先忠) 중국 장쑤성 외사판공실 2급 순시원, 김정 전북특별자치도 외국인국제정책과장의 축사로 양 국간 우호관계를 증진하고 차세대 바둑 인재들이 상호 존중과 협력을 배우는 장으로 본 대회의 의미를 새기고 성공적인 개최를 축하했다.

이번 청소년 친선 바둑대회를 통해 양국의 청소년들이 바둑으로 교류하며, 국제적인 감각과 전략적 사고를 함양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했다.

36) https://www.todayan.com/news/articleView.html?idxno=546545



더불어, 단순 시합을 넘어 전통 바둑 문화의 계승과 발전을 도모하는 시간을 가졌다.

경기는 팀전 토너먼트 방식으로 진행됐으며 전북바둑협회에서 추천한 전북자치도 선수단과 장쑤성 선수단은 국가별 12명으로 구성해 총 5라운드 경기로 진행됐다.

이번 바둑대회에 참여한 군산 월명중학교 최기범 학생은 "평소에 바둑을 두며 쌓은 실력을 바탕으로 장쑤성 선수단과의 대국을 하게돼 너무 뜻깊은 자리였다"라며, "특히, 저보다 훨씬 뛰어난 실력을 가진 친구들을 만나면서 많은 것을 배우며 비록 대화가 통하지 않지만 수담을 통해 상대방을 이해하고 소통하는 시간을 가져서 기뻤다"고 말했다.

김정 전북특별자치도 외국인정책과장은 "첫 오프라인 청소년 바둑대회를 통해 한국과 중국의 대중적인 공통 놀이문화인 바둑을 매개로 서로의 문화를 이해하고, 깊이 있는 교류를 나눌 수 있는 뜻깊은 시간이었다고 생각한다"며, "앞으로도 장쑤성과의 교류사업 분야를 확대 발전시켜 전북자치도의 국제교류를 내실화하는데 더욱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붙임 1 사업 관련 추진실적

□ 연도별 사업 및 예산 집행 실적

○ 사업 및 예산집행실적

- 최근 3년간 실적 (금액단위: 천원)

연도	사업명	필요예산	확보예산	집행액	집행내역
2022	시군생활체육대회지원	15,000	15,000	15,000	대회지원비
	국제전국규모체육대회지원	38,000	38,000	38,000	대회지원비
2023	시군생활체육대회지원	21,000	21,000	21,000	대회지원비
	국제전국규모체육대회지원	28,000	28,000	28,000	대회지원비
2024	시군생활체육대회지원	50,000	50,000	50,000	대회지원비
	도지사기 대회 지원	18,000	18,000	18,000	대회지원비
	생활체육교실 운영	3,440	3,440	3,440	강사비 등

- 주요 사업내역

가. 보조사업명 :「제2회 진안마이산배 전국바둑대회」
나. 사업기간 : 2022. 6. 25 ~ 6. 26(2일간)
다. 보조사업자 : 진안구수
라. 교부결정액 : 금10,000,000원(금일천만원)
마. 금회송금액 : 금10,000,000원(금일천만원)
바. 예산과목 : 체육정책과, 지속가능한 스포츠 생태계 구축, 체육진흥 및 스포츠 교류, 국제·전국규모 등 주요체육대회 지원, 자치단체등이전, 자치단체경상보조금

가. 보조사업명 :「제19회 조남철국수배 전국학생바둑대회」
나. 사업기간 : 2022. 11. 19 ~ 11. 20(2일간)
다. 보조사업자 : 부안군수
라. 교부결정액 : 금8,000,000원(금팔백만원)
마. 금회송금액 : 금8,000,000원(금팔백만원)
바. 예산과목 : 체육정책과, 지속가능한 스포츠 생태계 구축, 체육진흥 및 스포츠 교류, 국제·전국규모 등 주요체육대회 지원, 자치단체등이전, 자치단체경상보조금

가. 보조사업명 :「제24회 이창호배 전국아마바둑선수권대회」
나. 사업기간 : 2023. 10. 21.(토) ~ 10. 22.(일) / 2일간
다. 보조사업자 : 전주시장
라. 교부결정 및 송금액 : 금10,000,000원(금일천만원)
마. 예산과목 : 체육정책과, 지속가능한 스포츠 생태계 구축, 생활체육활동 육성, 생활체육 활성화 지원, 자치단체등이전, 자치단체경상보조금

가. 보조사업명 :「제3회 완주군수배 바둑대회」
나. 사업기간 : 2023. 9. 16.(토) / 1일간
다. 보조사업자 : 완주군수
라. 교부결정 및 송금액 : 금5,000,000원(금오백만원)
마. 예산과목 : 체육정책과, 지속가능한 스포츠 생태계 구축, 생활체육활동 육성, 생활체육 활성화 지원, 자치단체등이전, 자치단체경상보조금

붙임 2 평가대상 조례

전북특별자치도 바둑 활성화 지원 조례

[시행 2024. 1. 18.] [전북특별자치도조례 제5399호, 2023. 12. 8., 일부개정]

전북특별자치도(체육정책과), 063-280-2532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전북특별자치도 바둑 활성화 및 바둑문화 기반조성에 관한 지원 사항을 정함으로써 전북특별자치도민의 여가선용 기회 확대와 건강한 정신 함양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3. 12. 8.>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바둑 진흥법」 제2조에 따른다.

제3조(도지사의 책무)

① 전북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바둑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하고, 이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 방안을 마련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개정 2023. 12. 8.>

② 도지사는 전북특별자치도민(이하 “도민”이라 한다)이 바둑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교육기회의 확대에 노력하여야 한다.<개정 2023. 12. 8.>

③ 도지사는 바둑생활체육을 권장하고 보호·육성하여야 한다.

제4조(사업) 도지사는 바둑 진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개정 2023. 12. 8.>

1. 전북특별자치도 바둑 및 바둑문화 진흥
2. 전북특별자치도 바둑 관련 실태조사 및 기술개발
3. 도민을 대상으로 한 바둑 교육
4. 바둑 관련 국내외 교류
5. 바둑생활체육 관련 사업
6. 그 밖에 도지사가 바둑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바둑전용경기장의 조성) 도지사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바둑전용경기장을 조성·운영 할 수 있다.

제6조(협력체계 구축) 도지사는 바둑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중앙부처, 다른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바둑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제7조(포상) 도지사는 바둑 활성화에 기여한 공로가 현저한 기관·법인·단체 및 개인 등을 선정하여 「전북특별자치도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개정 2023. 12. 8.>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25. 전북특별자치도 국제문화예술체육행사 지원 조례

Ⅰ. 종합의견

< 평가결과 >

□ 평가대상

조 례 명	전북특별자치도 국제문화예술체육행사 지원 조례		
조례 구분	자치조례	관계 법령	-
제정·시행일	1999. 12. 3. 제정	최근개정·시행일	2023. 12. 8. 개정
소관 부서	체육정책과	소관 상임위	문화안전소방

□ 평가의견

평가항목	평가의견	주요 내용
종합의견	폐지/일반	- 법제처 자치법규 입안기준에 따른 정비(약칭 수정, 일본식 표현 수정) 검토 - 시행규칙은 개별 조례에서 위임이 없더라도 조례의 집행에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규칙으로 규정할 수 있으므로 삭제 권고 - 이 조례는 문화·예술·체육 분야의 국제행사 지원을 위한 포괄적인 내용을 담고 있어 각 행사별 구체적인 특성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문제점이 있어 검토 필요
심층분석 결과		- 이 조례의 규범성·실효성 등 근본적인 문제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고 다만, 지나치게 포괄적인 내용을 규정하고 있어 실제 국제행사 개최시 개별적 구체성을 반영하지 못하는 부분이 있으므로 이 조례는 폐지를 권고하고 각 국제행사의 특성에 맞는 개별 조례 제정 권고
1. 입법 근거 및 적법성	적정	대규모 체육행사 개최 준비와 운영을 위해 자치사무의 범위에서 적절하게 제정되었음
2. 조례의 실효성	적정	국제스포츠대회 노하우 습득을 통한 대규모 국제행사 유치로 관광객 유입을 통한 경제효과 및 전북을 세계각국 홍보라는 실효성이 확보됨
3. 조례 내용의 적정성	적정	스포츠와 관광을 결합한 대규모 국제대회를 유치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와 문화유산 및 관광자원의 세계화 도모라는 목적을 가진 조례 내용이 적정함
4. 조례의 공평성	적정	장애, 성별, 나이 등에 관한 사회적 편견, 고정관념이 반영된 표현 및 차별 규정 없음

5. 주민 수용성	적정	조례의 체계 및 용어가 주민이 알기 쉽게 되어 있음
6. 전북자치도 현실부합성	적정	행사 준비와 운영을 위해 조직설치 및 구성, 예산지원 등을 규정하기 위하여 제정된 본 조례는 행정수요를 반영하고 있어 전북특별자치도 현실에 부합함
7. 위원회 운영의 적정성	적정	조직위원회가 규정에 따라 구성되고 매년 실적을 추진하고 결산하는 등 적정하게 운영되고 있음
※ 기타 의견	없음	

Ⅱ. 항목별 평가 결과

평가항목	세부항목	척도	의견 및 자료
1. 입법의 근거 및 적법성	1) 위임조례인가 자치사무에 관한 조례인가?	☐ 위임조례 ☑ 자치사무에 관한 조례	
	2) 조례에서 규정하고 있는 위임근거가 올바른가?	☐ 그렇다 ☐ 그렇지않다 ☑ 해당사항 없음	
	3) 조례가 위임범위에서 적절하게 제·개정되었는가?	☐ 그렇다 ☐ 그렇지않다 ☑ 해당사항 없음	
	4) 조례 제.개정 이후 동일 또는 유사한 법령이나 제도가 만들어졌거나 근거법령이 개정 또는 폐지되었는가?	☐ 그렇다 ☐ 그렇지않다 ☑ 해당사항 없음	
	5) 조례에서 주민의 권리제한, 의무부과, 벌칙 부과, 규제사항에 대한 법률위임이 있는가?	☐ 그렇다 ☐ 그렇지않다 ☑ 해당사항 없음	
	6) 상위법령에 위배되는 조항이 있는가?	☐ 그렇다 ☐ 그렇지않다 ☑ 해당사항 없음	
2. 조례의 실효성	1) 조례의 시행과정에서 다른 조례와의 충돌이나 모순이 발생하고 있는가?	☑ 그렇다 ☐ 그렇지않다 ☐ 해당사항 없음	-이 조례는 문화·예술·체육 분야의 국제행사 지원을 위한 포괄적인 내용을 담고 있어 각 행사별 구체적인 특성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문제점이 있어 검토가 필요함
	2) 이 조례와 유사 또는 동일한 다른 조례가 제정 및 시행되고 있어 통합할 필요가 있는가?	☑ 그렇다 ☐ 그렇지않다 ☐ 해당사항 없음	
	3) 조례에 따른 계획이 수립·시행되고 있는가?	☑ 그렇다 ☐ 그렇지않다 ☐ 해당사항 없음	-2023전북아태마스터스대회 운영지원
	4) 조례에서 집행기관 등에	☑ 그렇다	-제5조

평가항목	세부항목	척도	의견 및 자료
	책무를 부여하고 있는가?	☐ 그렇지않다 ☐ 해당사항 없음	
	5) 조례에서 부여한 책무와 관련사업을 집행기관이 잘 이행하고 있는가?	☑ 그렇다 ☐ 그렇지않다 ☐ 해당사항 없음	
3. 조례 내용의 적정성	1) 조례에 재정지원 관련 규정이 있는가?	☑ 그렇다 ☐ 그렇지않다 ☐ 해당사항 없음	-제3조
	2) 조례 시행에 필요한 예산 확보와 집행이 잘 이루어지고 있는가?	☑ 그렇다 ☐ 그렇지않다 ☐ 해당사항 없음	
	3) 지원대상이 집행이 가능한 정도로 구체화 되어 있는가?	☐ 그렇다 ☐ 그렇지않다 ☑ 해당사항 없음	
	4) 조례에 따른 위탁사무가 위탁대상으로 적정한가?	☐ 그렇다 ☐ 그렇지않다 ☑ 해당사항 없음	
4. 조례의 공평성	1) 조례에서 장애인, 성별 등의 특정계층이나 특정지역을 차별하는 조항이 있는가?	☐ 그렇다 ☑ 그렇지않다 ☐ 해당사항 없음	
	2) 조례에서 정한 차별이 합리적인가?	☐ 그렇다 ☐ 그렇지않다 ☑ 해당사항 없음	
5. 주민 의견 수용성	1) 조례 제·개정 시 입법예고는 하였는가?	☑ 그렇다 ☐ 그렇지않다 ☐ 해당사항 없음	
	2) 조례 제·개정 시 공청회, 세미나 등 이해관계인 및 주민에 대한 의견 수렴 과정이 있었는가?	☐ 그렇다 ☐ 그렇지않다 ☑ 해당사항 없음	
	3) 조례와 관련한 민원(청원, 진정, 소송 등)이 제기되거나 개정 또는 폐지 요구가 있었는가?	☐ 그렇다 ☐ 그렇지않다 ☑ 해당사항 없음	
	4) 조례의 체계나 사용 되어진 용어가 주민이 알기 쉽게 되어 있는가?	☑ 그렇다 ☐ 그렇지않다	

평가항목	세부항목	척도	의견 및 자료
		☐ 해당사항 없음	
6. 위원회 운영의 적정성	1) 조례로 위원회를 구성하도록 되어 있는가?	☐ 그렇다 ☑ 그렇지않다 ☐ 해당사항 없음	
	2) 위원회가 법정위원회인가 조례로 설치하도록 한 위원회인가?	☐ 법정위원회 ☐ 조례로 정한 위원회 ☑ 해당사항 없음	
	3) 위원회 위원의 성별 구성이 적정한가?	☐ 그렇다 ☐ 그렇지않다 ☑ 해당사항 없음	
	4) 위원회가 법령이나 조례에서 정한 회의개최 운영 실적이 있고 관련 회의록을 보존하고 있는가?	☐ 그렇다 ☐ 그렇지않다 ☑ 해당사항 없음	
	5) 위원회를 계속 설치·운영할 필요성이 있는가?	☐ 그렇다 ☐ 그렇지않다 ☑ 해당사항 없음	
	6) 해당 위원회와 유사한 다른 위원회와의 기능적 통합이 필요한가?	☐ 그렇다 ☐ 그렇지않다 ☑ 해당사항 없음	
7. 종합 의견	1) 이 조례를 현행대로 유지할 필요가 있는가?	☑ 그렇다 ☐ 그렇지않다	
	2) 이 조례를 개정할 이유가 있는가? (해당사항 모두 표기)	☐ 위임근거에 불부합 ☐ 위임근거 불명확 ☐ 법령의 위임 없는 규제 정비 필요 ☐ 다른 조례와의 상충 및 모순 ☐ 조례 시행의 문제점 발생 ☐ 조례의 공평성 문제 ☑ 알기 쉬운 법령정비 기준에 따른 정비 필요 ☐ 위원회 관련 규정개정 필요 ☑ 그 밖의 사유	-다른 조례와 통합 검토
	3) 이 조례를 폐지할 사유가 있는가? (해당사항 모두 표기)	☑ 다른 유사한 조례와의 통합 운영 필요성 ☐ 조례 시행 불가능 ☐ 최근 3년간 조례	

평가항목	세부항목	척도	의견 및 자료
		관련 운영 실적 전무 ☐ 기타	
	4) 그 밖의 이 조례와 관련된 의견이 있는가?	☐ 있다 ☑ 없다	

Ⅲ. 세부내용

조례명	전북특별자치도 국제문화예술 체육행사 지원 조례

■ 소관 부서 의견(팀)

○ **최종의견 : 이 조례는 문화·예술·체육 분야의 국제행사 지원을 위한 조직위원회 구성 등 행정적·제정적 지원 근거를 담고 있어 조례 유지가 필요함**

○ **내용**

- (2-3) 조례 제3조에 따라 2023전북아시아태평양마스터스대회 운영지원 계획을 수립함
- (2-5) 조례 제5조에 따라 2023전북아시아태평양마스터스대회 운영지원에 2020년부터 2024년까지 총 11,630,000천원을 집행함
- (2-5) 조례 제3조에 따라 2023전북아시아태평양마스터스대회 조직위원회를 1총장, 3본부, 8부, 42명으로 구성함
- (2-5) 조례 제8조에 따라 2020년부터 2023년까지 매년 2023전북아시아태평양마스터스대회 추진실적 및 결산보고서를 제출함
- (2-5) 2023전북아시아태평양마스터스대회 유공 포상을 공무원 25인, 민간인 80인에게 수여함
- (3-1) 조례 제3조에 따라 재정 지원을 실시할 수 있음
- (3-3) 2020년부터 2024년까지 아래와 같이 예산을 확보하고 집행함
- (8-1) 대규모 국제체육대회 유치 지원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조직위원회를 설치하고 구성하여 행사준비를 철저히 하기 위해 조례의 유지가 필요함

■ 종합의견	폐지 권고/일반 정비

◎ 입법평가 세부의견

○ **평가항목별 검토**

평가항목	평가항목별 검토 내용
1. 입법 근거 및 적법성	대규모 체육행사 개최 준비와 운영을 위해 자치사무의 범위에서 적절하게 제정되었음
2. 조례의 실효성	국제스포츠대회 노하우 습득을 통한 대규모 국제행사 유치로 관광객 유입을 통한 경제효과 및 전북을 세계 각국 홍보라는 실효성이 확보됨
3. 조례 내용의 적정성	스포츠와 관광을 결합한 대규모 국제대회를 유치하여 지역경제활성화와 문화유산 및 관광자원의 세계화 도모라는 목적을 가진 조례 내용이 적정함
4. 조례의 공평성	장애, 성별, 나이 등에 관한 사회적 편견, 고정관념이 반영된 표현 및 차별 규정 없음

5. 주민 수용성	조례의 체계 및 용어가 주민이 알기 쉽게 되어 있음
6. 전북자치도 현실부합성	행사 준비와 운영을 위해 조직설치 및 구성, 예산지원 등을 규정하기 위하여 제정된 본 조례는 행정수요를 반영하고 있어 전북특별자치도 현실에 부합함
7. 위원회 운영의 적정성	조직위원회가 규정에 따라 구성되고 매년 실적을 추진하고 결산하는 등 적정하게 운영되고 있음
※ 기타 의견	없음

○ 연도별 사업내용 및 예산/집행액

(단위: 천원)

연도	사업명	필요예산	확보예산	집행액	집행내역
2020	2023전북아태마스터스대회 조직위 운영 지원	859,416	859,416	706,391	대회개최준비
2021		2,313,557	2.313,557	2,313,557	대회지원비 운영비
2022		3,178,000	3,178,000	3,178,000	대회지원비 운영비
2023		5,279,027	5,279,027	5,279,027	대회지원비 운영비

○ 조례의 입법목적 달성도 또는 부수효과 분석

- 조례 목적달성도 평가
  - 조례 내용에 따라 71개국에서 1만 4천여명이 참가한 2023전북아시아태평양마스터스대회가 성공적으로 개최되었다는 점에서 조례의 목적이 충분히 달성됨
- 부수효과
  - 국제 문화예술체육행사 개최를 통해 전북특별자치도를 홍보하고 관광수입을 증대할 수 있음

○ 타 시·도 유사 조례와 비교 또는 타 시·도 자치법규(정책) 동향

전북특별자치도 국제문화예술 체육행사 지원 조례
제1조(목적)
제2조(정의)
제3조(조직위원회 설치 및 구성)
제4조(조직위원회의 기능)
제5조(예산의 지원)
제6조(공무원의 파견)
제7조(기타 행정상 지원)
제8조(사업계획서 및 사업정산서 제출)
제9조(휘장 등의 사용)
제10조(시행규칙)

- 타 시·도 조례에는 국제문화예술 체육행사 지원에 관한 조례나 유사조례가 없음

Ⅳ. 개정의견

현 행	개정안	비고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전북특별자치도에서 개최하는 국제문화예술체육행사(이하 "행사"라 한다) 준비와 운영을 위하여 설립되는 조직위원회(이하 "조직위원회"라 한다)를 지원하여 행사를 성공적으로 개최함으로써 지역문화 발전과 도민의 자긍심을 높이는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전북특별자치도에서 개최하는 국제문화예술체육행사 준비와 운영을 위하여 설립되는 조직위원회를 지원하여 행사를 성공적으로 개최함으로써 지역문화 발전과 전북특별자치도민의 자긍심을 높이는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 목적조항에서 약칭을 하지 않음. 약칭 삭제 권고 -이하 조례 본문을 검토했을 때, 굳이 "조직위원회"에 대한 약칭이 없어도 됨 -"도민"을 원용어로 사용하도록 정비 검토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국제문화예술체육행사"라 함은 전북특별자치도가 주최하거나 관할 지방자치단체 또는 중앙부처·국제기구 및 공공단체 등이 전북특별자치도내에서 개최하는 문화·음악·미술·무용·연극·영화·민속·체육 등과 관련한 행사중 외국국가가 참여하는 행사로서 전북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행사를 말하며 전북특별자치도의회의 승인을 받은 사업 또는 행사에 한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국제문화예술체육행사(이하 "행사"라 한다)"라 함은 전북특별자치도가 주최하거나 관할 지방자치단체 또는 중앙부처·국제기구 및 공공단체 등이 전북특별자치도 내에서 개최하는 문화·음악·미술·무용·연극·영화·민속·체육 등과 관련한 행사 중 외국국가가 참여하는 행사로서 전북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행사를 말하며 전북특별자치도의회의 승인을 받은 사업 또는 행사에 한한다.	-목적조항에서 삭제한 "행사" 용어 약칭 표현 추가 정비 권고 -띄어쓰기 정비 권고
제4조(조직위원회의 기능) 조직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업 또는 활동을 수행한다. 1. 생략 2. 행사기간중 문화예술 또는 체육행사 및 부대사업 시행 운영 3. ~ 5. 생략	제4조(조직위원회의 기능) 조직위원회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 또는 활동을 수행한다. 1. 현행과 같음 2. 행사기간 중 문화예술 또는 체육행사 및 부대사업 시행 운영 3. ~ 5. 현행과 같음	-조직위원회가 각 호의 모든 내용에 해당하는 사업 또는 활동을 수행할 것이므로 '다음 각 호'로 표시하는 것이 맞고, 만약 각 호의 어느 하나에만 해당되어도 가능하다는 의미로 규정하고 싶다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로 규정할 것을 권고함 -띄어쓰기 정비 권고
제5조(예산의 지원) 도지사는 조직위원회의 운영과 행사의 준비를 지원하기 위하여 「지방재정법」지방재정법 제17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 29조 제2항 에 의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예산을 지원 할 수 있다.	제5조(예산의 지원) 도지사는 조직위원회의 운영과 행사의 준비를 지원하기 위하여 「지방재정법」 제17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제2항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중복 삭제 정비 권고 -띄어쓰기 정비 권고

현 행	개정안	비고
제6조(공무원의 파견) 도지사는 조직위원회의 원활한 업무수행을 위하여 소속공무원의 파견요청이 있을 경우에 「지방공무원법」제30조의4 및 「지방공무원임용령」제27조의2에 의거 소속공무원을 파견하여 행사 업무를 지원하게 할 수 있다.	제6조(공무원의 파견) 도지사는 조직위원회의 원활한 업무수행을 위하여 소속공무원의 파견요청이 있을 경우에 「지방공무원법」 제30조의4 및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27조의2에 따라 소속공무원을 파견하여 행사 업무를 지원하게 할 수 있다.	-일본식 표현 정비 권고 -법령 제명 띄어쓰기 정비 권고
제8조(사업계획서 및 사업정산서 제출) ① 생략 ② 조직위원회는 행사 종료후 1월이내에 사업정산보고서를 작성하여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8조(사업계획서 및 사업정산서 제출) ① 현행과 같음 ② 조직위원회는 행사 종료 후 1월이내에 사업정산보고서를 작성하여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띄어쓰기 정비 권고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삭제>	-시행규칙은 개별 조례에서 위임이 없더라도 조례의 집행에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규칙으로 규정할 수 있으므로 삭제 권고

심층분석 관련 검토

○ **심층분석 사유**

- 이 조례는 문화·예술·체육 분야의 국제행사 지원을 위한 포괄적인 내용을 담고 있어 각 행사별 구체적인 특성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문제점이 도출되어 심층분석을 실시할 필요가 있음

○ **심층분석**

- 본 조례는 문화·예술·체육 분야의 국제 행사 개최를 위한 조직위 구성 운영 및 조직위 등 법인·단체에 행정적·재정적 지원, 공무원 파견 등을 규정한 조례로 1999년도에 제정되었음
- 조례 제정 당시에는 관련 법률이 미비하여 조례로 지원 근거 마련이 필요했던 것으로 보이나 이후 「국제경기대회 지원법」(`12년 제정), 「문화예술진흥법」(`16년 개정) 등 관련 법률이 제·개정되어 법률로 관련 국제행사지원이 가능해짐
- 그러나 이 조례는 정형성·규범성 등의 문제는 없으나 문화, 예술, 체육 분야 전체를 어우르는 규정으로 구성되어 있어 각 행사의 고유한 특성을 반영한 구체적이고 세밀한 부분의 규정은 미비함. 따라서 이 조례의 일부개정 등으로 각 행사의 특성을 반영하는데 분명한 한계점이 있다고 판단됨.
  - 소관부서인 전북특별자치도 체육정책과에서는 이 조례 시행과 관련한 사업으로 2023아태마스터즈대회조직위원회 구성 및 추진 실적을 제출하였으나, 2023아태마스터즈대회 개최 지원은 「국제경기대회지원법」 제2조 및 시행령 제1조의2, 법 제9조, 제10조 등에 따라 조직위 구성 및 행정적·재정적 지원이 가능함.
    「국제경기대회 지원법」의 관련 규정은 아래와 같음

「국제경기대회 지원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4. 3. 11.>
1. “국제경기대회”란 다음 각 목의 대회를 말한다.
가. 국제올림픽위원회, 국제장애인올림픽위원회가 주관하는 올림픽대회
나. 아시아올림픽평의회, 아시아장애인올림픽위원회가 주관하는 아시아경기대회
다. 국제대학스포츠연맹이 주관하는 유니버시아드대회
라. 국제축구연맹이 주관하는 월드컵축구대회
마. 국제육상경기연맹이 주관하는 세계육상선수권대회
바. 국제수영연맹이 주관하는 세계수영선수권대회
사. 그 밖에 중앙정부의 지원이 필요한 대회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대회

제4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대회의 성공적 개최를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하며, 그 추진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협조와 지원을 할 수 있다.

제9조(조직위원회의 설립 등) 회의 준비 및 성공적인 개최를 위한 다음 각 호의 사업과 활동을 하기 위

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대회별 조직위원회(이하 “조직위원회”라 한다)를 설립할 수 있다.

제10조(국가 등의 지원) ① 조직위원회는 국가·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을 말한다. 이하 같다)·법인·단체 등에 행정적·재정적인 협조 및 지원과 그 밖에 필요한 편의제공을 요청할 수 있으며, 해당 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협조하여야 한다. <개정 2023. 8. 8.>

③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조직위원회의 설치·운영과 대회의 준비·운영에 필요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

제11조(공무원 등의 파견 등) ① 조직위원회는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관계 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대회와 관련된 법인 또는 단체에 대하여 「국가공무원법」 제2조제2항 및 「지방공무원법」 제2조에 따른 공무원과 법인 또는 단체의 임직원의 파견을 요청할 수 있다.

「국제경기대회지원법 시행령」

제1조의2(국제경기대회) 「국제경기대회 지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사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대회”란 다음 각 호의 대회를 말한다. <개정 2016. 4. 26., 2020. 3. 17.>

1. 국제사격연맹이 주관하는 세계사격선수권대회
2. 국제시각장애인스포츠연맹이 주관하는 세계시각장애인경기대회
3. 세계태권도연맹이 주관하는 세계태권도선수권대회
4. 국제마스터스대회협회가 주관하는 아시아태평양마스터스대회

- 이 외에 문화예술행사와 관련해서는 「문화예술진흥법」 제39조제2항(개정 2016.2.)에 따라 문화예술 기관·법인 또는 단체의 운영비 지원이 가능하며 조직위원회 구성은 「민법」 제32조 및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법인 설립이 가능함 (다만, 업무보고 및 결산 등 세부 운영 사항에 관해서는 별도 규정 필요)
- 전북특별자치도의 최근 5년간 국제행사의 조직위원회 구성 관련 사항은 아래와 같음
  - (전주세계소리축제) 『전주세계소리축제조직위원회 설립·운영 및 지원 조례」 (2016. 제정)
  - (세계서예전북비엔날레) 조직위원회는 있으나 별도 조례는 없음(부서 확인결과 법률에 근거)
  - (전주국제발효식품엑스포) 조직위원회 구성·운영 조례 폐지(2014.1 제정, 2016. 5. 폐지)
  - (2023새만금세계스카우트잼버리) 특별법 근거
- 더불어 전북특별자치도는 「전북특별자치도 국제행사 지원 규정」도 별도로 두고 있음

「전북특별자치도 국제행사 지원 규정」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전북특별자치도에서 개최하는 국제행사에 대한 지원기준을 정하여 공정하고 합리적으로 지원함으로써 행사를 효율적으로 운영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① 이 규정은 민간기관·단체 등이 전북특별자치도 내에서 국제행사(이하 “행사”라 한다) 개최에 따른 지원을 요청하는 경우로 한다. <개정 2019. 6. 21, 2024. 1. 12.>

② 행사의 유치 및 개최 등에 관한 지원은 다른 법령 및 조례에서 특별히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3조(정의) 이 규정에서 “국제행사”란 도내에서 외국인 참가자가 10명이상이고 외국인을 포함하여 100명 이상 참가하여 2일 이상 개최하는 행사를 말한다. <개정 2019. 6. 21>

제4조(지원대상) ① 전북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행사의 파급효과 및 경제효과가 있는 행사 등의 유치를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개정 2024.1.12.>

1. 국제행사의 유치 또는 개최에 관한 국내 및 해외홍보 <개정 2019. 6. 21>
2.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국제행사 <개정 2019. 6. 21>

가. 회의(워크숍, 세미나, 포럼, 컨퍼런스, 심포지엄 등)

나. 체육행사

다. 박람회(전시회)

라. 문화행사

마. 관광행사

3. 기타 국제행사 유치 또는 개최를 촉진하기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개정 2019. 6. 21>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한다.

1. 국고보조에 따른 도비의 의무적 부담 행사
2. 문화예술진흥기금, 사회단체보조금 등 심사에 의한 지원행사
3. 개별법 및 조례에 지원이 명시된 행사
4. 전국단위 및 시도단위 정기적인 순회행사
5. 특정 종교단체의 교리전파를 목적으로 하는 행사. 단, 순수한 문화·복지행사 등에 대해서는 지원 가능
6. 이 외 동일행사(또는 유사행사)로 전북특별자치도 및 시·군비 지원을 받은 행사<개정 2024. 1. 12.>

제5조(지원사항) ① 제4조의 규정에 따라 지원할 수 있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예산의 범위에서 재정적 지원
2. 기타 행사 개최 시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행정적 지원 등 <개정 2019. 6. 21>

② 제1항제1호에 따른 재정적 지원기준은 「전북특별자치도 지방보조금 관리조례」제6조에 따른 전북특별자치도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19. 6. 21, 2024. 1. 12.>

제6조(예산 신청 및 지원) ①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예산을 지원받고자 하는자는 별지 제1호 서식의 지원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도지사에게 행사개최 60일전에 제출하여야 한다.

1. 국제행사 개최계획서(행사의 명칭·목적·기간·장소·참가자수·소요경비 등을 포함하여야 한다) 1부 <개정 2019. 6. 21>
2. 국제행사 개최실적에 관한 서류(행사를 개최한 실적이 있는 경우에 한한다) 1부 <개정 2019. 6. 21>
3. 기타 지원을 받고자 하는 세부내용을 기재한 서류 1부

② 제1항의 신청서를 허위 기재 시에는 예산 및 기타 지원 사항에 대하여 즉시 회수 조치한다.

③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지원신청을 받은 때에는 사업의 타당성, 지역경제 파급효과 등을 검토한 후 그 지원액을 결정하여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④ 지원신청자는 별지 제2호 서식에 의거 예산을 신청하고 예산 집행 후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도지사에게 즉시 정산보고를 한다.

⑤ 이 규정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전북특별자치도 보조금 관리조례」를 준용한다.<개정 2024. 1. 12.>

제7조(예산의 용도) 예산은 행사참가자의 숙박비, 식비, 차량임차 및 시설임대료, 문화관광체험비, 행사진행경비, 행사장 및 부대시설 설치비 등 도지사가 허용하는 범위에서 사용할 수 있다. <개정 2019. 6. 21>

- 타 시·도 유사 조례와 비교 또는 타 시·도 자치법규(정책) 동향 분석
  - 타 시·도는 각 행사명에 따른 개별 조례로 규정하고 있음. 사례를 살펴보면 아래와 같음

연번	조 례 명
1	2024 강원 동계청소년올림픽대회 지원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2	2024 경북문경 세계군인 태권도 선수권대회 조직위원회설립 및 지원에 관한 조례
3	2024 문경 세계태권도 한마당 조직위원회 설립 및 지원에 관한 조례
4	2024 문경 아시아 유·청소년 유도 선수권대회 조직위원회 설립 및 지원에 관한 조례
5	2025 구미 아시아육상경기선수권대회 조직위원회 설립 및 지원에 관한 조례
6	2026대구세계마스터즈육상경기대회 조직위원회 설립 및 지원에 관한 조례
7	2026여수세계섬박람회 조직위원회 운영 및 지원 조례
8	2030부산월드엑스포 유치 지원 조례

-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이 조례는 존속·유지하여도 큰 문제소지는 없어 보이지만, 조례의 실효성·집행가능성 측면에서 살폈을 때, 지나치게 개괄적이어서 특정한 국제행사 개최 지원을 위한 조례에 적용하기에는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함. 즉 각 행사의 특성을 반영한 구체적인 사항을 정립한 조례의 제정이 더 합리적임. 따라서 이 조례는 폐지하고 필요시 개별 조례 제정 권고

□ 참고자료 1 – 위원회 관련 실적

○ 구성

- 조직위원회가 규정에 따라 구성되고 매년 실적을 추진하고 결산하는 등 적정하게 운영되고 있음

○ 개최 실적

- 각 연도별 추진실적 및 결산보고서 참조

□ 참고자료 2 – 조례 관련 보도 자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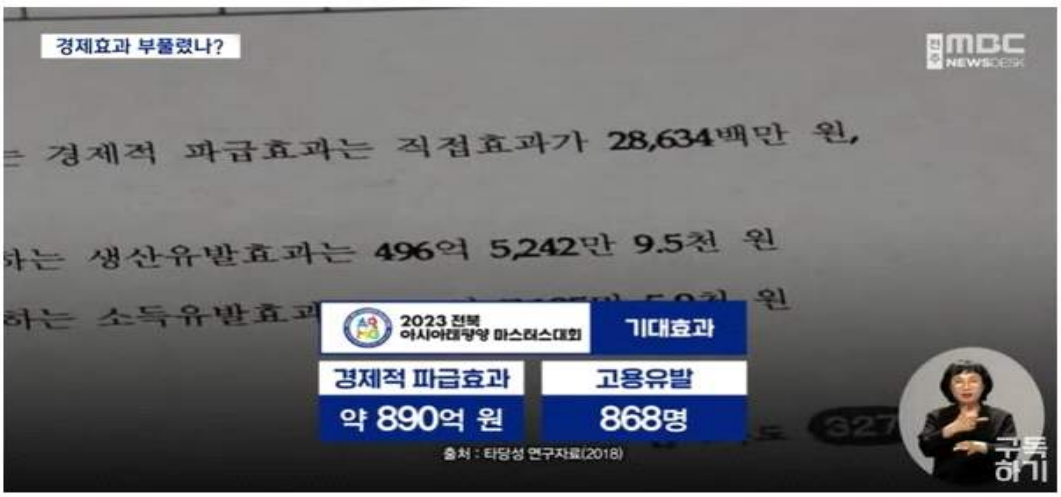
○ 보도자료 1

"전북아태마스터스대회 경제효과 800억?, 알고 보니 '짜맞추기'"...충격, 전북의 소리[37)]

세계 생활체육인의 축제인 '2023 전북 아시아태평양마스터스대회'(아태마스터스대회)가 지난달 20일 9일간의 일정을 마쳤지만 후유증은 계속 이어지고 있다.

특히 이번 대회에 투입된 사업비는 지방비 116억원을 포함해 총 165억원에 달하고 전체 예산이 200억원 가까이 되지만 경제효과는 이에 미치지 못한다는 분석과 지적이 잇따르고 있다. 전북도와 대회조직위원회는 오래 전부터 625억원의 생산소득 유발에 248억원의 부가가치 창출 등 800여억원의 경제효과가 나올 것이라고 예상했지만 막대한 투자에 비해 경제적 효과는 미흡해 재정만 축낸 꼴이 됐다는 비난까지 이어지고 있다.

전주MBC "유치할 때만 '수백억 효과'?...알고 보니 짜맞추기" 보도



전주MBC 6월 14일 뉴스 화면(캡처)

이런 가운데 '800여억원의 경제효과는 짜맞추기였다'는 지적의 보도가 나와 시선을 모았다. 전주MBC는 14일 '유치할 때만 "수백억 효과"?...알고 보니 '짜맞추기"란 기사에서 "전 세계 생활체육 동호인들의 축제인 아태마스터스대회가 160억원의 예산을 쓰고도 별 성과가 없다는 논란이 거세다"며 "그간 전라북도는 800억원대 경제효과를 자신해 왔는데 알고 보니 짜맞추기나 다름 없어, 연이어 열리는 대규모 국제행사의 실상을 냉정하게 짚어봐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고 보도했다.

37) https://www.jbsori.com/news/articleView.html?idxno=11593

그러면서 "전라북도는 2019년 막대한 경제적 효과를 언급하며 제2회 아시아태평양 마스터스대회를 유치했지만 뚜껑을 열고 보니 실상은 달랐다"는 기사는 "저조한 참가에 수천 명에게 돈을 주고 대회 참가를 유도한 것이 사실이며, 공식 온라인몰 판매 실적은 고작 5만원에 그쳐 왜 대회를 유치했냐는 논란만 커지고 있다"면서 "전라북도는 대회 추진 과정에서 당초 계획의 두 배가 넘는 165억원의 예산을 쓰기도 했다. 낭비 아니냐는 지적에 전라북도는 그 이상의 경제효과를 방패막이 삼아 버텨왔다"고 밝혔다.

또한 기사는 "하지만 이 모든 것이 짜맞춰진 허상으로 드러났다"며 "대회 유치단계에서 실시한 경제 타당성 조사결과는 당시 외부기관에 연구를 의뢰한 결과, 약 890억원의 경제 파급효과와 860여명의 고용유발 효과가 예상된다고 전라북도가 발표했으니 어떻게 이런 숫자가 나왔는지, 산출에 관여한 연구진에게 직접 문의했더니 뜻밖의 답변이 돌아왔다"고 지적했다.

대회 타당성 조사 담당 "공무원들이 그런 자료가 있으면 좋겠다고 그래서..."



전주MBC 6월 14일 뉴스 화면(캡처)

"분석을 맡긴 전라북도의 부탁을 받고 어쩔 수 없이 써줬다"고 밝힌 기사는 "말만 800억대일 뿐, 실제 기대되는 경제적 이익과는 거리가 멀다"며 A공단 연구원(아태마스터스 타당성 조사 담당)의 말을 인용해 "사실은 학술적으로 불분명한 것들이 있어서... (돈을) 쓰기만 하면 다 (파급효과로 계산)된다. 사실 저희는 안 쓰는데 그때 공무원분들이 그런 자료가 있으면 좋겠다고 그래서..."라고 전해 충격을 주었다.

이어 기사는 "값비싼 교훈이 될 거란 우려가 제기되기 무섭게, 곧장 시선은 두 달도 채 남지 않은 또 다른 대규모 국제행사로 향하고 있다"며 "오는 8월, 전 세계에서 4만 명이 몰리는 새만금 세계잼버리대회에 투입되는 전체 예산은 처음 계획 때보다 2배 이상 불어나 1,000억원을 돌파한 상황. 이 과감한 예산집행에 자신감을 불어넣은 건 이번에도 '경제 타당성 조사' 였다"고 지적했다.

"전라북도가 전문기관에 조사를 의뢰해 발표한 잼버리의 경제적 기대효과는 무려 9조원 안팎이지만 이 역시 허수일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밝힌 기사는 "주최 측 입맛대로 부풀렸을 가능성은 차치하더라도, 장밋빛 전망에 기대 연구가 추진됐기 때문"이라고 꼬집었다.

○ 보도자료 2

2023전북아태마스터스대회 성료, 전민일보[38)]

- 종합컨트롤 타워 상황실, 대회 보도지원 프레스센터 운영
- 영험한 산 '미륵사지' 기운 받아 성화 채화, 성공 대회 시작 알려
- 출입국부터 수송, 체류까지 맞춤형 편의 제공 참가선수 대만족



2023전북아태마스터스대회 성료

'하나된 스포츠! 즐거운 어울림!'을 대회 슬로건으로 내걸고 지난 9일 화려한 축포를 쏘아올린 전 세계 생활체육인들의 대축제 '2023 전북아태마스터스대회'가 20일 폐회식을 끝으로 전 세계를 뜨겁게 하나로 만들었던 9일간의 대장정을 마무리 됐다.



대한민국 최초, 대륙별 마스터스대회 최대 규모 71개국 1만4177명

▲대한민국 최초, 대륙별 마스터스대회 최대 규모 71개국 1만4177명

대한민국 전주에서 최초로 개최된 국제종합생활체육스포츠 대회 아시아·태평양마스터스대회는 71개국 1만 4177명의 선수들이 참가한 역대 대륙별 마스터스대회 중 최대 규모로 모두가 하나되어 어울리며 최고의 감동을 연일 선사했다.

엘리트체육대회가 아닌 생활체육대회임을 감안 하더라도, 개회식 선수입장식에서 전 세계 다양한 국가의 입장식은 관객들로 하여금 아시안게임 수준을 방불케 하는 장관과 감동을 연출했다.

38) https://www.jeonmin.co.kr/news/articleView.html?idxno=378678

▲종합컨트롤 타워 상황실, 대회 보도지원 프레스센터 운영

대회 조직위는 대회 시작 이틀 전인 지난 10일부터 22일까지 전북도청 4층에 대회종합상황실을 구축하고 24시간 근무체계를 유지하며 혹여나 일어날 긴급 비상상황에 대비했다.

대회기간 24시간 불이 꺼지지 않는 종합상황실에서는 조직위원회 직원을 비롯해 경찰, 소방, 수송업체, 자원봉사자 등 56명이 교대로 근무하며 종목별 경기장, 개폐회식장, 숙소 등 각 현장 상황 모니터링과 이슈를 관리했다.

AD카드 분실 및 재발급, 환전, 수송, 경기결과 안내, 사건사고 접수 등 대회기간에 발생하는 모든 상황 등에 대해 자료를 공유하며 참가자들의 불편상황을 최소화하기 위해 분주하게 움직였다.

또한, 종합상황실 옆 언론인을 위한 프레스센터를 구축하고 대회를 취재하러 온 전국의 중앙과 지방 기자단, 해외 외신기자들에게 취재 차량과 통역을 지원했으며, 대회기간 종목별 경기 사진과 영상, 이슈들을 신속하게 전달하며 현장감 있는 언론 보도 지원으로 대회 붐업 조성에 힘썼다.

붙임 1 사업 관련 추진실적

□ 연도별 사업 및 예산 집행 실적

○ 연도별 사업명, 집행액, 예산집행내역

- 매년 도비보조금으로 교부됨(사업비, 운영비 항목)

(단위: 천원)

연도	사업명	필요예산	확보예산	집행액	집행내역
2020	2023전북아태마스터스대회 조직위 운영 지원	859,416	859,416	706,391	대회개최준비
2021		2,313,557	2.313,557	2,313,557	대회지원비 운영비
2022		3,178,000	3,178,000	3,178,000	대회지원비 운영비
2023		5,279,027	5,279,027	5,279,027	대회지원비 운영비

붙임 2 평가대상 조례

전북특별자치도 국제문화예술 체육행사 지원 조례

[시행 2024. 1. 18.] [전북특별자치도조례 제5399호, 2023. 12. 8., 일부개정]

전북특별자치도(체육정책과), 063-280-3533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전북특별자치도에서 개최하는 국제문화예술체육행사(이하 “행사”라 한다) 준비와 운영을 위하여 설립되는 조직위원회(이하 “조직위원회”라 한다)를 지원하여 행사를 성공적으로 개최함으로써 지역문화 발전과 도민의 자긍심을 높이는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3. 12. 8.>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국제문화예술체육행사”라 함은 전북특별자치도가 주최하거나 관할 지방자치단체 또는 중앙부처·국제기구 및 공공단체 등이 전북특별자치도내에서 개최하는 문화·음악·미술·무용·연극·영화·민속·체육 등과 관련한 행사중 외국국가가 참여하는 행사로서 전북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행사를 말하며 전북특별자치도의회의 승인을 받은 사업 또는 행사에 한한다.<개정 2023. 12. 8.>

제3조(조직위원회 설치 및 구성)

① 도지사는 전북특별자치도가 주최하는 행사의 성공적 개최를 위한 준비와 운영을 위하여 행사별로 조직위원회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개정 2023. 12. 8.>

② 조직위원회는 행사의 규모에 따라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10인이상 100인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도지사가 위촉한다.<개정 2011. 11. 11>

1. 제2조에 해당하는 각 분야의 문화예술단체나 관광 또는 체육 단체의 임원으로서 3년이상 활동한 경력이 있는 자
2. 대학에서 문화예술, 체육 해당학과의 조교수이상의 직에 종사하는 자
3. 연구기관에서 문화예술 또는 체육 해당분야의 연구경력이 5년이상인 자
4. 그 밖의 언론인, 공공기관의 장 지방의회의원, 사회단체의 장, 상공인과 문화예술, 체육 또는 국제행사에 관한 전문직 식견과 풍부한 경험을 가진 자<개정 2011. 11. 11>

제4조(조직위원회의 기능) 조직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업 또는 활동을 수행한다.<개정 2011. 11. 11>

1. 행사의 종합기획 수립 및 조정과 집행
2. 행사기간중 문화예술 또는 체육 행사 및 부대사업 시행 운영
3. 정부, 유관기관, 해외 유사행사와의 업무 협조
4. 행사 준비 및 운영과 재원의 조달·집행
5. 그 밖의 행사 목적달성에 필요한 사업<개정 2011. 11. 11>

제5조(예산의 지원) 도지사는 조직위원회의 운영과 행사의 준비를 지원하기 위하여 「지방재정법」지방재정법 제17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 29조 제2항 에 의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개정 2009. 4. 3, 2011. 11. 11>

제6조(공무원의 파견) 도지사는 조직위원회의 원활한 업무수행을 위하여 소속공무원의 파견요청이 있을 경우에 「지방공무원법」 제30조의4 및 「지방공무원임용령」 제27조의2에 의거 소속공무원을 파견하여 행사 업무를 지원하게 할 수 있다.<개정 2009. 4. 3>

제7조(기타 행정상 지원) 도지사는 조직위원회의 원활한 운영과 그 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행정적 지원과 그 밖의 필요한 편의를 제공할 수 있다.<개정 2011. 11. 11>

제8조(사업계획서 및 사업정산서 제출) ①조직위원회는 매 회계연도 개시 3월전에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조직위원회는 행사 종료후 1월이내에 사업정산보고서를 작성하여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9조(휘장 등의 사용) 행사의 휘장, 마스코트 또는 이와 유사한 것으로 행사를 상징하는 것을 상품 등에 표시하고나 광고하고자 하는 자는 도지사 또는 조직위원회위원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개정 2011. 11. 11>

26. 전북특별자치도 공사상 소방공무원 지원에 관한 조례

Ⅰ. 종합의견

< 평가결과 >

□ 평가대상

조 례 명	전북특별자치도 공사상 소방공무원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구분	자치조례	관계 법령	-
제정·시행일	2015. 12. 28. 제정	최근개정·시행일	2023. 12. 8. 개정
소관 부서	소방행정과	소관 상임위	문화안전소방

□ 평가의견

평가항목	평가의견	주요 내용
종합의견	개정/일반	- 법제처 자치법규 입안기준에 따른 정비(상위법령 인용 오류 수정, 용어 수정) 검토 - 시행규칙은 개별 조례에서 위임이 없더라도 조례의 집행에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규칙으로 규정할 수 있으므로 삭제 권고 - 조례 제6조에서는 3년마다 지원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있는데 법령을 근거로 수립 운영 중임. 「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기본법」제8조에 따른 집행계획으로 갈음하고 있는 것으로 보임. 이 법에 따른 집행계획은 매년 수립하도록 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에 따른 집행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과 이 조례에 따른 지원계획 간의 정합성을 확인할 필요가 있음. 심층 분석을 통하여 검토 필요
심층분석 결과		- 「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기본법」 제8조에 따른 집행계획을 수립하는 경우 이 조례에 따른 지원계획을 갈음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된바 집행계획에 포함되어야 하는 사항과 조례상 지원계획의 세부적 규정 내용을 비교하여 살펴본 결과 세부적인 내용을 담고 있다는 점에서 계획을 대체하여도 무방하다고 판단됨. 다만 이와 같은 내용을 조례에서 명확하게 규정하도록 조례 개정안을 제안함
1. 입법 근거 및 적법성	적정	자치사무의 범위에서 적절하게 제정되었음
2. 조례의 실효성	적정	공사상자 발생 시 기타 법률 등에 의해 보상체계를 갖추고 적절한 보상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조례에 의해 추모공간 조성, 추모행사 진행 등이 추진되고 있어 조례의 실효성이 확보됨

3. 조례 내용의 적정성	적정	조례의 목적에 맞도록 규정되어 내용은 적정한 것으로 평가됨
4. 조례의 공평성	적정	장애, 성별, 나이 등에 관한 사회적 편견, 고정관념이 반영된 표현 및 차별 규정 없음
5. 주민 수용성	적정	조례의 체계 및 용어가 주민이 알기 쉽게 되어 있음
6. 전북자치도 현실부합성	적정	공사상 소방공무원의 유족 지원을 통해 공공복리 증진에 기여하는 조례로 전북특별자치도 현실에 부합함
7. 위원회 운영의 적정성	-	위원회 운영 관련 규정이 있으나(임의규정) 위원회 개최 실적은 없음
※ 기타 의견	없음	

Ⅱ. 항목별 평가 결과

평가항목	세부항목	척도	의견 및 자료
1. 입법의 근거 및 적법성	1) 위임조례인가 자치사무에 관한 조례인가?	□ 위임조례 ☑ 자치사무에 관한 조례	
	2) 조례에서 규정하고 있는 위임근거가 올바른가?	□ 그렇다 □ 그렇지않다 ☑ 해당사항 없음	
	3) 조례가 위임범위에서 적절하게 제·개정되었는가?	□ 그렇다 □ 그렇지않다 ☑ 해당사항 없음	
	4) 조례 제.개정 이후 동일 또는 유사한 법령이나 제도가 만들어졌거나 근거법령이 개정 또는 폐지되었는가?	□ 그렇다 □ 그렇지않다 ☑ 해당사항 없음	
	5) 조례에서 주민의 권리제한, 의무부과, 벌칙 부과, 규제사항에 대한 법률위임이 있는가?	□ 그렇다 □ 그렇지않다 ☑ 해당사항 없음	
	6) 상위법령에 위배되는 조항이 있는가?	□ 그렇다 □ 그렇지않다 ☑ 해당사항 없음	
2. 조례의 실효성	1) 조례의 시행과정에서 다른 조례와의 충돌이나 모순이 발생하고 있는가?	□ 그렇다 ☑ 그렇지않다 □ 해당사항 없음	
	2) 이 조례와 유사 또는 동일한 다른 조례가 제정 및 시행되고 있어 통합할 필요가 있는가?	□ 그렇다 ☑ 그렇지않다 □ 해당사항 없음	
	3) 조례에 따른 계획이 수립·시행되고 있는가?	□ 그렇다 ☑ 그렇지않다 □ 해당사항 없음	-세부 사업별로 별도 시행 중 -정합성 확인 필요
	4) 조례에서 집행기관 등에 책무를 부여하고 있는가?	☑ 그렇다 □ 그렇지않다 □ 해당사항 없음	-제5조

평가항목	세부항목	척도	의견 및 자료
	5) 조례에서 부여한 책무와 관련사업을 집행기관이 잘 이행하고 있는가?	□ 그렇다 ☑ 그렇지않다 □ 해당사항 없음	-추모공간 조성 외 사업의 이행여부 확인 필요
3. 조례 내용의 적정성	1) 조례에 재정지원 관련 규정이 있는가?	☑ 그렇다 □ 그렇지않다 □ 해당사항 없음	-제9조
	2) 조례 시행에 필요한 예산 확보와 집행이 잘 이루어지고 있는가?	□ 그렇다 ☑ 그렇지않다 □ 해당사항 없음	-공사상자 발생 시 기타 법률 등에 의해 보상체계를 갖추고 적절한 보상이 이루어지고 있다고 평가
	3) 지원대상이 집행이 가능한 정도로 구체화 되어 있는가?	☑ 그렇다 □ 그렇지않다 □ 해당사항 없음	
	4) 조례에 따른 위탁사무가 위탁대상으로 적정한가?	□ 그렇다 □ 그렇지않다 ☑ 해당사항 없음	
4. 조례의 공평성	1) 조례에서 장애인, 성별 등의 특정계층이나 특정지역을 차별하는 조항이 있는가?	□ 그렇다 ☑ 그렇지않다 □ 해당사항 없음	
	2) 조례에서 정한 차별이 합리적인가?	□ 그렇다 □ 그렇지않다 ☑ 해당사항 없음	
5. 주민 의견 수용성	1) 조례 제·개정 시 입법예고는 하였는가?	☑ 그렇다 □ 그렇지않다 ☑ 해당사항 없음	
	2) 조례 제·개정 시 공청회, 세미나 등 이해관계인 및 주민에 대한 의견 수렴 과정이 있었는가?	□ 그렇다 □ 그렇지않다 ☑ 해당사항 없음	
	3) 조례와 관련한 민원(청원, 진정, 소송 등)이 제기되거나 개정 또는 폐지 요구가 있었는가?	□ 그렇다 □ 그렇지않다 ☑ 해당사항 없음	
	4) 조례의 체계나 사용 되어진 용어가 주민이 알기 쉽게 되어 있는가?	☑ 그렇다 □ 그렇지않다 □ 해당사항 없음	
6. 위원회 운영의	1) 조례로 위원회를 구성하도록 되어 있는가?	☑ 그렇다 □ 그렇지않다 □ 해당사항 없음	

평가항목	세부항목	척도	의견 및 자료
적정성	2) 위원회가 법정위원회인가 조례로 설치하도록 한 위원회인가?	☐ 법정위원회 ☑ 조례로 정한 위원회 ☐ 해당사항 없음	
	3) 위원회 위원의 성별 구성이 적정한가?	☐ 그렇다 ☐ 그렇지않다 ☑ 해당사항 없음	
	4) 위원회가 법령이나 조례에서 정한 회의개최 운영 실적이 있고 관련 회의록을 보존하고 있는가?	☐ 그렇다 ☐ 그렇지않다 ☑ 해당사항 없음	-위원회 운영 관련 규정이 있으나(임의규정) 위원회 개최 실적은 없음
	5) 위원회를 계속 설치·운영할 필요성이 있는가?	☐ 그렇다 ☐ 그렇지않다 ☑ 해당사항 없음	
	6) 해당 위원회와 유사한 다른 위원회와의 기능적 통합이 필요한가?	☐ 그렇다 ☐ 그렇지않다 ☑ 해당사항 없음	
7. 종합 의견	1) 이 조례를 현행대로 유지할 필요가 있는가?	☐ 그렇다 ☐ 그렇지않다	
	2) 이 조례를 개정할 이유가 있는가? (해당사항 모두 표기)	☐ 위임근거에 불부합 ☐ 위임근거 불명확 ☐ 법령의 위임 없는 규제 정비 필요 ☐ 다른 조례와의 상충 및 모순 ☐ 조례 시행의 문제점 발생 ☐ 조례의 공평성 문제 ☑ 알기 쉬운 법령정비 기준에 따른 정비 필요 ☐ 위원회 관련 규정개정 필요 ☑ 그 밖의 사유	-시행계획 관련 검토
	3) 이 조례를 폐지할 사유가 있는가? (해당사항 모두 표기)	☐ 다른 유사한 조례와의 통합 운영 필요성 ☐ 조례 시행 불가능 ☐ 최근 3년간 조례 관련 운영 실적 전무 ☐ 기타	
	4) 그 밖의 이 조례와 관련된 의견이 있는가?	☐ 있다 ☑ 없다	

Ⅲ. 세부내용

조례명	전북특별자치도 공사상 소방공무원 지원에 관한 조례

■ 소관 부서 의견(팀)

○ **최종의견 : 전북특별자치도 내 공사상 소방공무원 지원에 관한 세부적 사항을 규정하는 역할로 본 조례가 필요함**

○ **내용**

- (2-3) 조례 제6조에 따라 지원 계획을 수립해야 하나, 조례에서 규정한 지원계획은 「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기본법」을 근거로 집행계획을 수립·운영 중이며 세부 사업별로 별도 시행 중이라 별도의 지원계획을 수립하지 않음
- (2-5) 순직 소방공무원을 추모하고, 숭고한 희생과 헌신을 기리기 위한 추모공간 조성(300,000천원) 및 추모행사(9,000천원)에 예산을 집행함
- (3-1) 조례 제9조에 따라 공사상 소방공무원의 자녀에게 장학금을 지급할 수 있음
- (3-2) 지원을 받는 소방공무원의 유족은 배우자, 자녀, 부모, 성년인 직계비속이 없는 조부모로 명확히 정의됨
- (3-3) 공사상자 발생 시 기타 법률 등에 의해 보상체계를 갖추고 적절한 보상이 이루어지고 있다고 평가되어 별도의 예산을 확보하지 않음
- (7-1) 조례 제8조에 따라 전북특별자치도 공사상 소방공무원 지원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음
- (7-3) 위원 성별에 관한 규정사항은 없으나 공사상자 지원에 관한 사항은 성별의 영향을 받지 않을 것으로 판단하여 성별 구분 또는 고정관념, 성별 특성반영, 성별 균형참여 등 개선할 사항이 없는 것으로 평가됨

■ 종합의견	개정 권고/일반 정비

◎ 입법평가 세부의견

○ **평가항목별 검토**

평가항목	평가항목별 검토 내용
1. 입법 근거 및 적법성	자치사무의 범위에서 적절하게 제정되었음
2. 조례의 실효성	공사상자 발생 시 기타 법률 등에 의해 보상체계를 갖추고 적절한 보상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조례에 의해 추모공간 조성, 추모행사 진행 등이 추진되고 있어 조례의 실효성이 확보됨
3. 조례 내용의 적정성	조례의 목적에 맞도록 규정되어 내용은 적정한 것으로 평가됨
4. 조례의 공평성	장애, 성별, 나이 등에 관한 사회적 편견, 고정관념이 반영된 표현 및 차별 규정 없음

5. 주민 수용성	조례의 체계 및 용어가 주민이 알기 쉽게 되어 있음
6. 전북자치도 현실부합성	공사상 소방공무원의 유족 지원을 통해 공공복리 증진에 기여하는 조례로 전북특별자치도 현실에 부합함
7. 위원회 운영의 적정성	위원회 운영 관련 규정이 있으나(임의규정) 위원회 개최 실적은 없음
※ 기타 의견	없음

○ 연도별 사업내용 및 예산/집행액

- 추모공간 조성(300,000천원) 및 추모행사(9,000천원)에 예산을 집행

○ 조례의 입법목적 달성도 또는 부수효과 분석

- 조례 목적달성도 평가
  - 조례 내용에 따라 공사상 소방공무원을 위한 추모공간을 조성하고 추모행사를 실시하는 등 다양한 사업을 수행하고 있다는 점에서 조례 목적이 충분히 달성됨
- 부수효과
  - 공사상 소방관 가족의 명예와 자긍심을 고취하고 전북특별자치도민의 소방관에 대한 감사의 마음을 확대하는 데 기여할 수 있음

○ 타 시·도 유사 조례와 비교 또는 타 시·도 자치법규(정책) 동향

전북특별자치도 공사상 소방공무원 지원에 관한 조례	서울특별시 순직·공상 소방공무원 지원 조례	충청남도 순직 및 공상 소방공무원 지원에 관한 조례	부산광역시 순직·공상 소방공무원 지원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제3조(다른 조례 등과의 관계)	제3조(다른 조례 등과의 관계)	제3조(적용범위)	제3조(책무)
제4조(유족 또는 가족의 범위)	제4조(유족 또는 가족의 범위)	제4조(책무)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5조(도지사의 책무)	제5조(시장의 책무)	제5조(지원계획의 수립)	제5조(유족 또는 가족의 범위)
제6조(지원계획 수립)	제6조(지원계획의 수립)	제6조(재원부담 및 확보)	제6조(지원계획의 수립)
제7조(재원의 부담 및 확보)	**제7조(순직소방공무원 추모사업 지원)**	제7조(위원회의 설치·운영)	제7조(자녀장학금 지원)
제8조(위원회 설치·운영)	제8조(순직소방공무원 유족 지원)	제8조(장학금 지원)	제8조(보험료의 지원)
제9조(자녀장학금 지원)	제9조(취업·창업 지원)	제9조(단체보험 지원)	제9조(취업과 창업 지원)
제10조(단체보험 지원)		제10조(취업·창업 등 지원)	

제11조(취업·창업 지원 등)		제11조(시행규칙)	
제12조(시행규칙)			

- 서울특별시 조례의 경우 순직소방공무원의 추모사업을 지원하는 규정을 명시하여 시장이 필요한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추모사업을 지원할 수 있음

Ⅳ. 개정의견

현 행	개정안	비고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순직소방공무원"이란「소방기본법」제16조 및 제16조의 2와 제17조의 소방활동, 소방지원활동 등 직무수행이나 소방교육·훈련 중 사망한 전북특별자치도 소방공무원을 말한다. 2. "공상소방공무원"이란 제1호에 따른 부상·질병이 발생한 전북특별자치도 소방공무원으로「공무원연금법 시행령」제29조 및 제30조에 따라 공무상 질병 및 부상자로 인정된 사람을 말한다. 3. 생략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순직소방공무원"이란 「소방기본법」제16조부터 제16조의3까지 및 제17조에 따른 소방활동, 소방지원활동, 생활안전활동 등 직무수행이나 소방교육·훈련 중 사망한 전북특별자치도 소방공무원을 말한다. 2. "공상소방공무원"이란 제1호에 따른 부상·질병이 발생한 전북특별자치도 소방공무원으로 「공무원 재해보상법」 제4조 및 제4조의2에 따라 공무상 질병 및 부상자로 인정된 사람을 말한다. 3. 현행과 같음	-「소방기본법」제16조의3(생활안전활동)의 내용도 포함시켜야 할 것으로 보임 -「공무원연금법 시행령」제29조 및 제30조는 공무원 연금의 지급 및 수령, 연금증서발행에 관한 규정이며, 공무원의 공상과 관련해서는 「공무원 재해보상법」 제4조 및 제4조의2에서 규정하고 있음 -띄어쓰기 정비 권고
제6조(지원계획 수립) ① 도지사는 소방공무원의 유족 및 질병·부상을 입은 소방공무원과 그 가족의 생활안정과 복지향상을 위한 지원계획을 3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소방공무원의 사고예방을 위한 안전조치 계획 2. 공사상 소방공무원에 대한 실태조사 3. 공상소방공무원의 진료 및 요양에 관한 사항 4. 소방공무원의 유족 및 공상소방공무원과 그 가족의 생활안정을 위한 지원시책	제6조(지원계획 수립) ① 도지사는 소방공무원의 유족 및 질병·부상을 입은 소방공무원과 그 가족의 생활안정과 복지향상을 위한 지원계획을 3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소방공무원의 사고예방을 위한 안전조치 계획 2. 공사상 소방공무원에 대한 실태조사 3. 공상소방공무원의 진료 및 요양에 관한 사항 4. 소방공무원의 유족 및 공상소방공무원과 그 가족의 생활안정을 위한 지원시책	-심층분석을 통해 계획 관련 현황을 반영하여 조례 문장 정비 권고

현 행	개정안	비고
5. 소방공무원의 외상 후 스트레스 치료 등 조치계획 6. 그 밖에 공사상 소방공무원의 복지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신설>	5. 소방공무원의 외상 후 스트레스 치료 등 조치계획 6. 그 밖에 공사상 소방공무원의 복지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제1항에 따른 계획은 「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기본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에 따른 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집행계획에 포함하여 수립할 수 있다.	
제7조(재원의 부담 및 확보) 도지사는 제6조의 지원계획에 따른 재원을 매년 재정계획에 반영하여 특별회계 세출예산에 계상하여야 한다.	제7조(재원의 부담 및 확보) 도지사는 제6조의 지원계획에 따른 재원을 매년 재정계획에 반영하여 특별회계 세출예산에 반영하여야 한다.	-또는 "계상(計上)"으로 수정
제8조(위원회 설치·운영) ① 공사상 소방공무원의 지원시책에 대한 자문과 지원대상자 선정 등을 위하여 필요할 경우 "전라북도 공사상 소방공무원 지원위원회"(이하 "위원회" 라 한다.)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 ③ 생략 ④ 위원장은 행정부지사가 되고, 당연직 위원은 소방본부장이 되며, 위원은 아래의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위촉한다. 1. 도의회에서 추천하는 도의원 2. ~ 4. 생략 ⑤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⑥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대상 안건의 심사 업무에서 제척된다. 1. 생략 2. 최근 3년이내에 안건과 이해관계가 있는 업체에 임원 또는 직원으로 재직한 경우 3. 생략 ⑦ 생략 ⑧ 위원은 제6항 또는 제7항의 사유에 해당하면 스스로 그 안건의 심사를 회피할 수 있다. ⑥ 생략	제8조(위원회 설치·운영) ① 공사상 소방공무원의 지원시책에 대한 자문과 지원대상자 선정 등을 위하여 필요할 경우 전북특별자치도 공사상 소방공무원 지원위원회(이하 "위원회" 라 한다)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 ③ 현행과 같음 ④ 위원장은 행정부지사가 되고, 당연직 위원은 소방본부장이 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위촉한다. 1. 전북특별자치도의회에서 추천하는 도의원 2. ~ 4. 현행과 같음 ⑤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⑥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대상 안건의 심사 업무에서 제척된다. 1. 현행과 같음 2. 최근 3년 이내에 안건과 이해관계가 있는 업체에 임원 또는 직원으로 재직한 경우 3. 현행과 같음 ⑦ 현행과 같음 ⑧ 위원은 제6항 또는 제7항의 사유에 해당하면 스스로 그 안건의 심사를 회피하여야 한다. ⑥ 현행과 같음	-제1항: 불필요한 문장부호 삭제 권고, '전라북도'에서 '전북특별자치도'로 개정 필요 -제4항 각 호외의 본문: 문장 표현 정비 권고 -제4항제1호: "도의회"를 약칭한바 없으므로 약칭 정비 권고 -제5항: 띄어쓰기 정비 권고 -제6항제2호: 띄어쓰기 정비 권고 -제8항: 위원의 회피를 의무로 규정하여 안건 심사의 공정성을 확보하도록 규정 정비 권고

현 행	개정안	비고
제11조(취업·창업 지원 등) 도지사는 공사상 소방공무원의 유족 및 그 가족의 경제활동 강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취업과 창업 지원 등에 적극적으로 힘써야 한다. 1. ~ 2. 생략 3. 그 밖에 도에서 시행하는 관련시책 참여시 우대 등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1조(취업·창업 지원 등) 도지사는 공사상 소방공무원의 유족 및 그 가족의 경제활동 강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취업과 창업 지원 등에 적극적으로 힘써야 한다. 1. ~ 2. 현행과 같음 3. 그 밖에 전북특별자치도에서 시행하는 관련시책 참여시 우대 등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도"로 약칭한바 없으므로 용어 정비 권고
<신설>	제11조의2(추모사업 지원) 도지사는 순직소방공무원에 대한 애도와 희생정신에 경의를 표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추모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타 시·도의 사례를 참고하여 순직 소방공무원의 추모 및 예우를 위해 상징적으로 명시 필요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삭제>	-시행규칙은 개별 조례에서 위임이 없더라도 조례의 집행에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규칙으로 규정할 수 있으므로 삭제 권고

심층분석 관련 검토

○ **심층분석 사유**

- 「전북특별자치도 공사상 소방공무원 지원에 관한 조례」 제6조에서는 3년마다 지원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있는데 법령을 근거로 수립규정을 두고 있지만, 「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기본법」 제8조에 따른 집행계획으로 갈음하고 있는 것으로 보임.
  이 법에 따른 집행계획은 매년 수립하도록 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에 따른 집행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과 이 조례에 따른 지원계획 간의 정합성을 확인할 필요가 있음. 심층분석을 통하여 검토 필요

○ **심층분석**

- 「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기본법」 제8조에 따른 집행계획을 수립하는 경우 이 조례에 따른 지원계획을 갈음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된바 집행계획에 포함되어야 하는 사항과 조례상 지원계획의 세부적 규정 내용을 비교하여 살펴봄

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기본법 시행령	전북특별자치도 공사상 소방공무원 지원에 관한 조례
제4조(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집행계획의 수립) ① 시·도지사는 매년 1월 31일까지 법 제8조제1항에 따른 보건안전 및 복지 집행계획(이하 "집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소방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집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정책 목표 달성을 위한 세부 추진 계획에 관한 사항 2. 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증진을 위한 예산지원에 관한 사항 3. 소방활동재해 방지를 위한 인력·장비 보강 및 교육훈련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기본계획 및 연도별계획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으로서 소방청장이 정하는 사항	제6조(지원계획 수립) ① 도지사는 소방공무원의 유족 및 질병·부상을 입은 소방공무원과 그 가족의 생활안정과 복지향상을 위한 지원계획을 3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소방공무원의 사고예방을 위한 안전조치 계획 2. 공사상 소방공무원에 대한 실태조사 3. 공상소방공무원의 진료 및 요양에 관한 사항 4. 소방공무원의 유족 및 공상소방공무원과 그 가족의 생활안정을 위한 지원시책 5. 소방공무원의 외상 후 스트레스 치료 등 조치계획 6. 그 밖에 공사상 소방공무원의 복지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 조례에 따른 지원계획에서 계획에 포함되어야 하는 사항으로 규정하고 있는 각 호의 내용은 법 시행령 제4조에 따른 집행계획에 넓게 보면 포함된다고 할 것임. 다만, 실제 계획 수립 내용에 반영되어 있는지 계획을 기반으로 확인할 필요는

있음.

- 조례 제6조제2항 각 호의 내용을 집행계획에서 반영하고 있는지 확인함

전북특별자치도 공사상 소방공무원 지원에 관한 조례 제6조제2항 각 호	2024년 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집행계획
1. 소방공무원의 사고예방을 위한 안전조치 계획	소방공무원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4면)
2. 공사상 소방공무원에 대한 실태조사	소방공무원 정신건강 관리 강화(9면)
3. 공상소방공무원의 진료 및 요양에 관한 사항	소방공무원 복지에 관한 사항(4면)
4. 소방공무원의 유족 및 공상소방공무원과 그 가족의 생활안정을 위한 지원시책	소방공무원 복지에 관한 사항(4면)
5. 소방공무원의 외상 후 스트레스 치료 등 조치계획	소방공무원 복지에 관한 사항(4면)
6. 그 밖에 공사상 소방공무원의 복지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소방공무원 신체건강 관리체계 내실화(10면), 소방공무원 심신안정실 설치 운영・지원(11면)

- 세부적인 내용을 담고 있다는 점에서 계획을 대체하여도 무방하다고 판단됨. 다만 이와 같은 내용을 조례에서 명확하게 규정하도록 조례 개정안을 아래와 같이 제안함

현 행	개정안	비고
제6조(지원계획 수립) ① 도지사는 소방공무원의 유족 및 질병·부상을 입은 소방공무원과 그 가족의 생활안정과 복지향상을 위한 지원계획을 3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소방공무원의 사고예방을 위한 안전조치 계획 2. 공사상 소방공무원에 대한 실태조사 3. 공상소방공무원의 진료 및 요양에 관한 사항 4. 소방공무원의 유족 및 공상소방공무원과 그 가족의 생활안정을 위한 지원시책 5. 소방공무원의 외상 후 스트레스 치료 등 조치계획 6. 그 밖에 공사상 소방공무원의 복지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신설>	제6조(지원계획 수립) ① 도지사는 소방공무원의 유족 및 질병·부상을 입은 소방공무원과 그 가족의 생활안정과 복지향상을 위한 지원계획을 3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소방공무원의 사고예방을 위한 안전조치 계획 2. 공사상 소방공무원에 대한 실태조사 3. 공상소방공무원의 진료 및 요양에 관한 사항 4. 소방공무원의 유족 및 공상소방공무원과 그 가족의 생활안정을 위한 지원시책 5. 소방공무원의 외상 후 스트레스 치료 등 조치계획 6. 그 밖에 공사상 소방공무원의 복지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제1항에 따른 계획은「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기본법」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에 따른 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집행계획에	-계획 관련 현황을 반영하여 조례 문장 정비 권고

현 행	개정안	비고
	포함하여 수립할 수 있다.	

□ 참고자료 1 – 위원회 관련 실적

○ 구성

- 위원회 운영 관련 규정이 있으나(임의규정) 위원회 개최 실적은 없음

○ 개최 실적

- 개최실적 없음

□ 참고자료 2 – 조례 관련 보도 자료

○ 보도자료 1

전북소방, 순직 소방공무원 추모시설 제막식 및 추모행사 개최, 소방신문[39)]

도민들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다 순직한 도내 소방공무원들의 숭고한 희생을 기리는 추모시설이 들어섰다.

전북특별자치도 소방본부는 5일 임실 119 안전체험관에서 순직 소방공무원의 유가족과 김관영 전북특별자치도지사, 이오숙 전북특별자치도소방본부장, 전북특별자치도의회 문화안전소방위원회 의원을 비롯해 소방공무원 동료와 의용소방대원, 도민 등 2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추모시설 제막식과 추모식을 개최했다.

이번에 조성된 추모시설은 지난 2023년 3월 재난 현장에서 순직한 고(故) 성공일 소방교의 사고를 계기로, 순직 소방공무원과 그 유가족을 위로하고 이들의 숭고한 헌신을 기리기 위해 119 안전체험관내 부지에 조성됐다.

이 추모시설에는 고 성공일 소방교를 비롯해 16명의 순직 소방공무원 영령이 한 자리에 모셔졌다.

추모시설은 안전체험관내에 공원과 같은 친화적 공간으로 표지석과 안내판, 추모 조형물 등이 조성됨으로써 도민들의 접근성이 높아져 순직 소방공무원의 희생을 기리고 도민의 안전 문화 확산을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날 제막식은 식사(式辭)와 추모사, 추모의 노래, 헌화 및 분향 등의 순으로 엄숙하게 진행됐다.

이오숙 전북자치도 소방본부장은 식사(式辭)에서 "이 자리는 단순히 기념비적인 조형물을 세우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지킨 생명과 안전을 우리 모두의 마음속에 새기고 그들의 희생정신을 되새기는 뜻깊은 순간이다"며, "오늘 이 자리에 함께 하고 있는 우리 모두는 그들의 희생이 결코 헛되지 않도록 다짐해야 한다" 고 말했다.

이어 "우리는 그들이 지키고자 했던 숭고한 가치를 이어받아 더 안전한 사회를 만들어 가야 한다"며, "그들이 남긴 유산은 바로 '생명을 살리는 일' 그 자체이다"고 강조했다.

김관영 전북특별자치도지사는 "우리 지역에 그들의 희생정신을 기리고 위로할 수 있는 마땅한 공간이 없다는 사실이 매우 안타까웠다"며, "이번에 조성한 추모시설이 순직 소방공무원들을 영원히 기억하고 유가족과 동료 소방관들을 위로할 수 있는 곳으로 자리매김하길 기대한다"고 추모했다.

39) https://www.sobangnews.kr/news/articleView.html?idxno=31417

○ **보도자료 2**

전북소방본부, 故 성공일 소방교 순직1주기 대전현충원서 추모식, 소방신문[40)]

유가족 및 소방본부장 등 100여명, 순직 소방공무원 참배 가져



전북특별자치도소방본부(본부장 주낙동)는 지난 6일 국립대전현충원 소방공무원 묘역을 찾아 작년 3월 김제시 주택화재 인명 검색 중 산화한 故 성공일 소방교 순직 1주기와 도내 순직 소방공무원을 위한 추모식을 거행했다고 밝혔다.

유가족과 소방본부장, 소방청 관계자 등 100여 명이 참석한 이번 추모식은 순직 소방공무원의 위훈을 기리고 유가족을 위로하기 위해 엄숙하고 경건한 분위기 속에서 진행되었으며 고인에 대한 묵념과 추모사 낭독, 분향 및 헌화 순 등으로 진행됐다.

주낙동 전북특별자치도소방본부장은 "마지막까지 소방관의 소임을 다하다 별이 된 선후배, 동료들의 희생과 헌신은 잊지 않고 기억되야 한다"며 "재난 현장 최일선에서 근무하는 이들의 사명감이 더욱 존중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전북특별자치도소방본부는 올해 하반기 임실에 위치한 119안전체험관 부지 내 주민 친화적 추모 공간과 조형물 등을 조성, 도내 순직 소방공무원에 대한 지속적인 예우를 다할 계획이다.

40) https://www.sobangnews.kr/news/articleView.html?idxno=26741

□ 참고자료 3 – 조례 관련 사진

○ 사진 1 – 임실119안전체험관 내 조성된 추모공간



붙임 1 사업 관련 추진실적

□ 연도별 사업 및 예산 집행 실적

○ 순직 소방공무원 추모공간 조성 추진 계획

- 주요내용 : 순직 소방공무원을 추모하고, 숭고한 희생과 헌신을 기리기 위한 추모공간 조성 및 추모행사
- 예　　산 : 300,000천원(추모공간) / 9,000천원(행사)
- 집행실적 : 2024년

기본 계획 수립	제안요청 입찰공고	현장 설명회 질의 응답	우선협상자 선정(계약)	부대시설 공사 계약 (수의)	물품 제작·설치 부대시설 공사	추모행사 (예정)
'24. 2월	'24. 3월	'24. 3월	'24. 5월	'24. 5~6월	'24. 6~10월	'24. 11월

참고 제2차 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기본계획(요약)

□ [전략1] 마음껏 일할 수 있는 근무환경

○ 보건·안전 환경 조성을 위한 소방청사 표준설계 지침 개발
○ 직협 관련 법령 개정, 컨설팅 및 인센티브 지원, 전문교육 및 홍보 실시
○ 여성 소방관 실태점검·예방 교육, 보직관리 개선 및 여성 전용시설 확대
○ 소방공무원 자녀 교육 관련 업무협약 추진 및 특별전형 대학 확대
○ 적극적 현장 활동을 위한 배상책임보험 전국 시·도 통합가입

□ [전략2] 몸과 마음이 건강한 소방관

○ '국립소방병원' 건립(25년 12월 개원 목표, 계속사업 現 건축 진행 중)
○ 건강·질병 연구 지원 확대, 보건안전 전담 연구분석팀(국립소방병원) 신설
○ 심신건강관리 체계 강화(찾아가는 상담실·스트레스 회복력 강화 프로그램 운영, 마음건강 상담·검사진료비 지원 및 심신안정실 구축/'12년 이후 계속사업)
○ 건강진단 사후관리, 진료비 지원 및 체력증진 프로그램 운영
○ '소방수련원' 건립 추진, 심신건강관리 체계 컨트롤타워 기능 수행

□ [전략3] 체계적이고 안전한 현장활동

○ 안전관리 관련 법률 제정, 사고 보고서 작성·배포, 안전점검관 업무 독립
○ 생체신호 추적관리 시스템 도입, 운행기록장치 활용 및 우선신호 시스템 확대
○ 안전의식 진단 실시 및 현장지휘관 안전리더십 개념 정립
○ 소방서 사고조사팀 운영 활성화 및 사고 결과보고서 전파·공유

□ [전략4] 자긍심있고 명예로운 소방像

○ 소방수당 현실화(연구용역) 및 유사직군 기준(공안직군) 기본급 조정
○ 소방 어린이집 확충('20년 7개소 → '25년 시·도별 1개소 이상 목표)
○ 권역별 전직지원 프로그램(전국 6권역) 및 퇴직자 교육과정 운영(소방학교)
○ 공상추정제도 도입(재해보상법 개정 ← 미국 공무상 인과관계 추정제도 인용)
○ 현충원 안장 확대, 추모시설 확충·추모기간 운영 및 백서 발간

붙임 2 평가대상 조례

전북특별자치도 공사상 소방공무원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 2024. 1. 18.] [전북특별자치도조례 제5399호, 2023. 12. 8., 일부개정]

전북특별자치도(소방행정과), 063-280-384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도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각종 소방활동과 재난현장에서 순직 또는 부상·질병을 입은 전북특별자치도 소방공무원과 유족 또는 가족을 예우하고 지원함으로써 생활안정과 사기진작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3. 12. 8.>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개정 2023. 12. 8.>

1. “순직소방공무원”이란「소방기본법」제16조 및 제16조의 2와 제17조의 소방활동, 소방지원활동 등 직무수행이나 소방교육·훈련 중 사망한 전북특별자치도 소방공무원을 말한다.
2. “공상소방공무원”이란 제1호에 따른 부상·질병이 발생한 전북특별자치도 소방공무원으로「공무원연금법 시행령」제29조 및 제30조에 따라 공무상 질병 및 부상자로 인정된 사람을 말한다.
3. “공사상 소방공무원”이란 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전북특별자치도(이하 “전북자치도”라 한다) 소속 “순직소방공무원” 과 “공상소방공무원” 을 말한다.

제3조(다른 조례 등과의 관계) 소방공무원의 지원에 관하여는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서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유족 또는 가족의 범위)

① 이 조례에 따라 지원을 받는 소방공무원의 유족이나 가족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배우자
2. 자녀
3. 부모
4. 성년인 직계비속이 없는 조부모

② 이 조례에 따라 지원을 받게 되는 유족 또는 가족의 순위는 제1항 각 호의 순서로 한다.

제5조(도지사의 책무)

① 도지사는 공사상 소방공무원의 유족 및 가족의 생활안정과 복지향상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공사상 소방공무원의 지원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③ 도지사는 공사상 소방공무원의 유족 및 가족 지원에 필요한 재원확보를 위하여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제6조(지원계획 수립)

① 도지사는 소방공무원의 유족 및 질병·부상을 입은 소방공무원과 그 가족의 생활안정과 복지향상을 위한 지원계획을 3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소방공무원의 사고예방을 위한 안전조치 계획
2. 공사상 소방공무원에 대한 실태조사
3. 공상소방공무원의 진료 및 요양에 관한 사항
4. 소방공무원의 유족 및 공상소방공무원과 그 가족의 생활안정을 위한 지원시책
5. 소방공무원의 외상 후 스트레스 치료 등 조치계획
6. 그 밖에 공사상 소방공무원의 복지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7조(재원의 부담 및 확보) 도지사는 제6조의 지원계획에 따른 재원을 매년 재정계획에 반영하여 특별회계 세출예산에 계상하여야 한다.

제8조(위원회 설치·운영)

① 공사상 소방공무원의 지원시책에 대한 자문과 지원대상자 선정 등을 위하여 필요할 경우 “전라북도 공사상 소방공무원 지원위원회”(이하 “위원회” 라 한다.)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자문한다.

1. 제6조 지원계획 수립
2. 시행계획 수립·변경에 관한 사항
3. 장학금 등 지원대상자 선정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9명 이내로 구성한다.

④ 위원장은 행정부지사가 되고, 당연직 위원은 소방본부장이 되며, 위원은 아래의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위촉한다.

1. 도의회에서 추천하는 도의원
2. 소방관련 전문기관 및 단체에서 추천하는 사람
3. 병원장 및 대학교수
4. 그 밖에 소방업무 관련 전문성과 지식을 갖춘 사람

⑤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한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⑥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대상 안건의 심사 업무에서 제척된다.

1. 안건과 이해관계가 있는 자문 또는 그 밖의 방법으로 직접 관여한 경우
2. 최근 3년이내에 안건과 이해관계가 있는 업체에 임원 또는 직원으로 재직한 경우
3. 그 밖에 자문 안건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⑦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회의를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기피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해당 위원의 기피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기피신청을 받은 위원은 그 기피여부에 대한 결정에 참여할 수 없다.

⑧ 위원은 제6항 또는 제7항의 사유에 해당하면 스스로 그 안건의 심사를 회피할 수 있다.

⑥ 그 밖에 위원회 운영에 대한 세부적인 사항은 위원장이 따로 정한다.

제9조(자녀장학금 지원)

① 도지사는 순직소방공무원의 자녀가 학업을 계속하는데 어려움이 없도록 장학금을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장학생의 선발방법, 지원규모, 신청 및 지원절차 등에 대한 세부적인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0조(단체보험 지원)

① 도지사는 화재진압 등 상시 위험에 노출되어 있는 소방공무원에 대한 보장 지원을 위하여 소방공무원 맞춤형 단체보험을 가입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제1항의 사업이 필요할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보험료 부담을 지원할 수 있다.

제11조(취업·창업 지원 등) 도지사는 공사상 소방공무원의 유족 및 그 가족의 경제활동 강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취업과 창업 지원 등에 적극적으로 힘써야 한다.

1. 취업상담, 채용알선, 일자리 정보제공, 직무능력향상 및 취업교육훈련 등
2. 창업상담, 창업교육 등
3. 그 밖에 도에서 시행하는 관련시책 참여시 우대 등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27. 전북특별자치도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 조례

Ⅰ. 종합의견

< 평가결과 >

□ 평가대상

조 례 명	전북특별자치도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 조례		
조례 구분	개별 법률 위임	관계 법령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제15조, 제16조의2, 제17조,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2조, 제5조, 제6조, 제8조, 제10조, 제11조, 제12조, 제16조, 제17조, 제18조, 제19조, 제20조, 제21조, 제22조
제정·시행일	2015. 5. 29. 제정	최근개정·시행일	2023. 12. 8. 개정
소관 부서	119대응과	소관 상임위	문화안전소방

□ 평가의견

평가항목	평가의견	주요 내용
종합의견	개정/일반	- 법제처 자치법규 입안기준에 따른 정비(약칭 수정, 인용 법령 제명 수정, 띄어쓰기 수정) 검토 - 시행규칙은 개별 조례에서 위임이 없더라도 조례의 집행에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규칙으로 규정할 수 있으므로 삭제 권고 - 집행부 실무의견을 반영하여 별지 제13호서식 내용 수정 검토
심층분석 결과		- 타 시·도 사례와 비교하여 선진적인 규정의 도입을 검토하였으나 추가적인 시사점을 발견하기 어려움. 개정의견과 같이 개정하도록 권고함
1. 입법 근거 및 적법성	적정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등 상위법령을 근거로 하여 위임 범위에서 적절하게 제정되었음
2. 조례의 실효성	적정	조례에 근거한 의용소방대 관련 업무 처리를 통해 조례의 실효성을 확보하고 있음
3. 조례 내용의 적정성	적정	의용소방대 업무 처리를 위한 조례 내용이 적정함
4. 조례의 공평성	적정	장애, 성별, 나이 등에 관한 사회적 편견, 고정관념이 반영된 표현 및 차별 규정 없음

5. 주민 수용성	적정	조례의 체계 및 용어가 주민이 알기 쉽게 되어 있음
6. 전북자치도 현실부합성	적정	전북특별자치도 내 의용소방대의 조직을 위하여 제정된 본 조례는 행정수요를 반영하고 있어 전북특별자치도 현실에 부합함
7. 위원회 운영의 적정성	적정	위원회가 규정대로 설치되었고 활발히 운영되고 있어 위원회의 운영이 적절함
※ 기타 의견	없음	

Ⅱ. 항목별 평가 결과

평가항목	세부항목	척도	의견 및 자료
1. 입법의 근거 및 적법성	1) 위임조례인가 자치사무에 관한 조례인가?	☑ 위임조례 ☐ 자치사무에 관한 조례	
	2) 조례에서 규정하고 있는 위임근거가 올바른가?	☑ 그렇다 ☐ 그렇지않다 ☐ 해당사항 없음	
	3) 조례가 위임범위에서 적절하게 제·개정되었는가?	☑ 그렇다 ☐ 그렇지않다 ☐ 해당사항 없음	
	4) 조례 제.개정 이후 동일 또는 유사한 법령이나 제도가 만들어졌거나 근거법령이 개정 또는 폐지되었는가?	☐ 그렇다 ☑ 그렇지않다 ☐ 해당사항 없음	
	5) 조례에서 주민의 권리제한, 의무부과, 벌칙 부과, 규제사항에 대한 법률위임이 있는가?	☐ 그렇다 ☑ 그렇지않다 ☐ 해당사항 없음	
	6) 상위법령에 위배되는 조항이 있는가?	☐ 그렇다 ☑ 그렇지않다 ☐ 해당사항 없음	
2. 조례의 실효성	1) 조례의 시행과정에서 다른 조례와의 충돌이나 모순이 발생하고 있는가?	☐ 그렇다 ☑ 그렇지않다 ☐ 해당사항 없음	
	2) 이 조례와 유사 또는 동일한 다른 조례가 제정 및 시행되고 있어 통합할 필요가 있는가?	☐ 그렇다 ☑ 그렇지않다 ☐ 해당사항 없음	
	3) 조례에 따른 계획이 수립·시행되고 있는가?	☐ 그렇다 ☐ 그렇지않다 ☑ 해당사항 없음	
	4) 조례에서 집행기관 등에 책무를 부여하고 있는가?	☐ 그렇다 ☐ 그렇지않다 ☑ 해당사항 없음	

평가항목	세부항목	척도	의견 및 자료
	5) 조례에서 부여한 책무와 관련사업을 집행기관이 잘 이행하고 있는가?	□ 그렇다 □ 그렇지않다 ☑ 해당사항 없음	
3. 조례 내용의 적정성	1) 조례에 재정지원 관련 규정이 있는가?	☑ 그렇다 □ 그렇지않다 □ 해당사항 없음	-제21조
	2) 조례 시행에 필요한 예산 확보와 집행이 잘 이루어지고 있는가?	☑ 그렇다 □ 그렇지않다 □ 해당사항 없음	
	3) 지원대상이 집행이 가능한 정도로 구체화 되어 있는가?	☑ 그렇다 □ 그렇지않다 □ 해당사항 없음	
	4) 조례에 따른 위탁사무가 위탁대상으로 적정한가?	□ 그렇다 □ 그렇지않다 ☑ 해당사항 없음	
4. 조례의 공평성	1) 조례에서 장애인, 성별 등의 특정계층이나 특정지역을 차별하는 조항이 있는가?	□ 그렇다 ☑ 그렇지않다 □ 해당사항 없음	
	2) 조례에서 정한 차별이 합리적인가?	□ 그렇다 □ 그렇지않다 ☑ 해당사항 없음	
5. 주민 의견 수용성	1) 조례 제·개정 시 입법예고는 하였는가?	☑ 그렇다 □ 그렇지않다 □ 해당사항 없음	
	2) 조례 제·개정 시 공청회, 세미나 등 이해관계인 및 주민에 대한 의견 수렴 과정이 있었는가?	☑ 그렇다 □ 그렇지않다 □ 해당사항 없음	
	3) 조례와 관련한 민원(청원, 진정, 소송 등)이 제기되거나 개정 또는 폐지 요구가 있었는가?	□ 그렇다 □ 그렇지않다 ☑ 해당사항 없음	
	4) 조례의 체계나 사용 되어진 용어가 주민이 알기 쉽게 되어 있는가?	☑ 그렇다 □ 그렇지않다 □ 해당사항 없음	
6. 위원회 운영의 적정성	1) 조례로 위원회를 구성하도록 되어 있는가?	☑ 그렇다 □ 그렇지않다 □ 해당사항 없음	

평가항목	세부항목	척도	의견 및 자료
	2) 위원회가 법정위원회인가 조례로 설치하도록 한 위원회인가?	☑ 법정위원회 ☐ 조례로 정한 위원회 ☐ 해당사항 없음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12조
	3) 위원회 위원의 성별 구성이 적정한가?	☐ 그렇다 ☐ 그렇지않다 ☑ 해당사항 없음	-비상설운영
	4) 위원회가 법령이나 조례에서 정한 회의개최 운영 실적이 있고 관련 회의록을 보존하고 있는가?	☑ 그렇다 ☐ 그렇지않다 ☐ 해당사항 없음	
	5) 위원회를 계속 설치·운영할 필요성이 있는가?	☑ 그렇다 ☐ 그렇지않다 ☐ 해당사항 없음	
	6) 해당 위원회와 유사한 다른 위원회와의 기능적 통합이 필요한가?	☐ 그렇다 ☑ 그렇지않다 ☐ 해당사항 없음	
7. 종합 의견	1) 이 조례를 현행대로 유지할 필요가 있는가?	☑ 그렇다 ☐ 그렇지않다	
	2) 이 조례를 개정할 이유가 있는가? (해당사항 모두 표기)	☐ 위임근거에 불부합 ☐ 위임근거 불명확 ☐ 법령의 위임 없는 규제 정비 필요 ☐ 다른 조례와의 상충 및 모순 ☐ 조례 시행의 문제점 발생 ☐ 조례의 공평성 문제 ☑ 알기 쉬운 법령정비 기준에 따른 정비 필요 ☐ 위원회 관련 규정개정 필요 ☑ 그 밖의 사유	-별지 제13호서식 수정 필요
	3) 이 조례를 폐지할 사유가 있는가? (해당사항 모두 표기)	☐ 다른 유사한 조례와의 통합 운영 필요성 ☐ 조례 시행 불가능 ☐ 최근 3년간 조례 관련 운영 실적 전무 ☐ 기타	
	4) 그 밖의 이 조례와 관련된 의견이 있는가?	☐ 있다 ☑ 없다	

Ⅲ. 세부내용

조례명	전북특별자치도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 조례

■ 소관 부서 의견(팀)

○ **최종의견 : 제7차 민생토론회 시 제기된 과도한 인감증명서 발급과 관련 인감증명 요구사무 등을 원칙적 폐지토록 지시하여 조례 별지 제13호서식 중 “인감증명서”를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나 전자본인서명확인서의 발급증”으로 개정이 필요함**

○ **내용**

- (1-1) 본 조례는「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과 같은 법 시행규칙 따라 제정된 위임조례임
- (2-5) 조례 제17조에 따라 광주소방학교 의용소방대 간부교육 및 전문교육과 한국소방안전원 의용소방대 전문화교육을 실시함
- (2-5) 조례 제15조에 따라 소방관서 원거리지역 의용소방대 화재진화차 등 지원에 700,000천원을 소요하여 12대의 차량을 지원함
- (2-5) 2024년 6월 17일 의용소방대 활동실적 성과평가를 제출함
- (2-5) 조례 제27조에 따라 15개 시군구 연합회와 타 시도 연합회 교류행사에 예산 지원을 실시함
- (2-5) 조례 제19조에 따라 2022년(표창 59, 상장 11, 공로패 158), 2023년(표창 59, 상장 17, 공로패 136), 2024년(표창 64, 상장 17, 공로패 140) 포상을 수여함
- (2-5) 의용소방대 소방기술경연대회(115,000천원 소요)와 의용소방대 강의경연대회(2,000천원 소요)를 실시함
- (3-1) 조례 제21조에 따라 의용소방대의 경비를 부담함
- (3-3) 2021년부터 2023년까지 예산을 확보하여 집행함
- (7-1) 조례 제10조부터 제13조에 따라 의용소방대 운영위원회를 구성함
- (7-4) 2022년부터 2024년까지 위원회를 개최함
- (7-5) 의용소방대 추천, 해임, 포상 등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위원회의 유지가 필요함
- (8-1) 의용소방대 운영 전반에 대해 반드시 필요한 사항들이 규정되어 있어 조례의 현행 유지가 필요함

■ 종합의견	개정 권고/일반 정비

◎ 입법평가 세부의견

○ 평가항목별 검토

평가항목	평가항목별 검토 내용
1. 입법 근거 및 적법성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등 상위법령을 근거로 하여 위임 범위에서 적절하게 제정되었음
2. 조례의 실효성	조례에 근거한 의용소방대 관련 업무 처리를 통해 조례의 실효성을 확보하고 있음
3. 조례 내용의 적정성	의용소방대 업무 처리를 위한 조례 내용이 적정함
4. 조례의 공평성	장애, 성별, 나이 등에 관한 사회적 편견, 고정관념이 반영된 표현 및 차별 규정 없음
5. 주민 수용성	조례의 체계 및 용어가 주민이 알기 쉽게 되어 있음
6. 전북자치도 현실부합성	전북특별자치도 내 의용소방대의 조직을 위하여 제정된 본 조례는 행정 수요를 반영하고 있어 전북특별자치도 현실에 부합함
7. 위원회 운영의 적정성	위원회가 규정대로 설치되었고 활발히 운영되고 있어 위원회의 운영이 적절함
※ 기타 의견	없음

○ 연도별 사업내용 및 예산/집행액

(단위: 천원)

연도	사업명	필요예산	확보예산	집행액	집행내역
2021	의용소방대 운영	4,985,624	4,985,624	4,985,624	소집수당,피복비,장학금,여비,기술경연 등
	화재진화차 구매	120,000	120,000	120,000	화재진화차 및 개인보호장비 구입
2022	의용소방대 운영	5,023,575	5,023,585	5,023,585	소집수당,피복비,장학금,여비,기술경연 등
	화재진화차 구매	120,000	12,0000	12,0000	화재진화차 및 개인보호장비 구입
2023	의용소방대 운영	5,089,902	5,089,902	5,089,902	소집수당,피복비,장학금,여비,기술경연 등

○ 조례의 입법목적 달성도 또는 부수효과 분석

- 조례 목적달성도 평가
  - 조례 내용에 따라 매년 의용소방대 차원의 다양한 행사를 개최하고 있다는 점에서 조례 목적이 달성되고 있다고 평가됨
- 부수효과
  - 의용소방대를 활성화하여 유사시 긴급대응을 가능하게 하여 재해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복구에 기여하도록 할 수 있음

○ 타 시·도 유사 조례와 비교 또는 타 시·도 자치법규(정책) 동향

전북특별자치도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 조례	서울특별시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세종특별자치시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경기도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 조례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제2조(의용소방대의 설치 등)	제2조(의용소방대의 설치 등)	제2조(의용소방대의 설치 등)	제2조(의용소방대의 설치 등)
제2조의2(의용소방대의 날 운영)	제3조(의용소방대의 표지 등)	제2조의2(의용소방대의 해산명령 등)	제2조의2(의용소방대의 날 운영)
제3조(의용소방대의 표지 등)	제4조(의용소방대원의 임명)	제3조(의용소방대의 표지 등)	제3조(의용소방대의 표지 등)
제4조(의용소방대원의 임명)	제5조(의용소방대원의 해임 등)	제4조(의용소방대원의 임명)	제4조(의용소방대원의 임명)
제5조(의용소방대원의 해임 등)	제6조(조직)	제5조(의용소방대원의 해임 등)	제5조(의용소방대원의 해임 등)
제6조(조직)	제7조(대장 등의 임기)	제6조(조직 등)	제6조(조직)
제6조의2(반장·부장의 자격 기준)	제7조의2(부장·반장의 임명 기준)	제7조(대장 등의 연임)	제6조의2(부장 또는 반장의 자격)
제7조(정원)	제8조(정원)	제8조(정원)	제7조(정원)
제8조(신분증 재발급 신청)	제9조(신분증명서)	제9조(신분증의 재발급 신청)	제8조(신분증명서 재발급 신청)
제9조(개인정보)	제10조(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제10조(개인정보)	제9조(개인정보)
제10조(구성)	제11조(운영위원회의 구성)	제11조(구성)	제10조(운영위원회 구성 및 운영)
제11조(심의 및 수당)	제12조(심의대상)	제12조(임기 등)	제11조(운영위원회 심의)
제12조(절차 및 의결)	제13조(회의 운영 등)	제13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제12조(해임 등 심의 절차)
제13조(대장 등 추천)	제14조(복무에 대한 지도·감독)	제14조(운영위원회 심의)	제13조(연합회장 등 추천)
제14조(전담의용소방대)	제15조(교육 및 훈련)	제15조(절차)	제14조(전담의용소방대)
제15조(소방장비 등 물품 유지·관리)	제16조(소집수당)	제16조(대장 등의 추천)	제15조(소방장비 등 물품 유지·관리)
제16조(복무에 대한 지도·감독)	제17조(성과중심의 포상 등)	제17조(전담의용소방대의 운영 등)	제16조(복무에 대한 지도·감독)
제17조(교육 및 훈련)	제18조(재해보상)	제18조(소방장비 등 물품 유지·관리)	제17조(교육 및 훈련)
제18조(소집수당 등)	**제19조(장학금 지원)**	제19조(복무에 대한 지도·감독)	제18조(소집수당 등)
제19조(성과중심의 보상)	제20조(장학금 지급정지)	제20조(교육 및 훈련)	제19조(성과중심의 포상 등)
제20조(재해보상)	제21조(경비부담)	제21조(경비부담)	제20조(재해보상)
제21조(경비부담)	제22조(의용소방대연합회)	제22조(소집수당 등)	제21조 삭제

제22조(설립)	제23조(연합회의 임무)	제23조(성과중심의 보상)	제21조의2 삭제
제23조(조직 및 구성)	제24조(연합회의 경비 지원)	제24조(재해보상)	제22조(경비부담)
제24조(회장 등의 임명)	제25조(관할 구역 내의 업무지원)	제25조(설립)	제23조(설립)
제25조(회장의 임기)	제26조(권한위임)	제26조(조직 및 구성)	제24조(조직 및 구성)
제26조(회의 등)	제27조(시행규칙)	제27조(회장 등의 선출)	제25조(연합회장 등의 선출)
제27조(경비지원)		제28조(회장 등의 임기)	제26조(회장 등의 임기)
제28조(전국연합회 임원)		제29조(임원의 직무)	제27조(운영)
제29조(시행규칙)		제30조(운영)	제28조(회의 등)
제30조(권한의 위임)		제31조(경비지원)	제29조(경비지원)
		제32조(권한의 위임)	제30조(고문)
		제33조(시행규칙)	제31조(보고)
			제32조(회칙)
			제33조(권한위임)
			제34조(시행규칙)

- 서울특별시 조례의 경우 제19조에서 장학금 지원에 관해 규정하면서 시장으로 하여금 의용소방대원의 자녀에 대하여 기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장학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함. 전북특별자치도의 경우 별도의 조례(전북특별자치도 의용소방대 장학금 지급조례)에서 관련 내용을 규정하고 있음

Ⅳ. 개정의견

현 행	개정안	비고
제1장 총칙	<삭제>	-장(章) 삭제
제2조(의용소방대의 설치 등) ①「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4항에 따른 전담의용소방대는 「지방소방기관 설치에 관한 규정」에 따른 소방기관(이하 "소방기관"이라 한다)이 설치되지 아니한 읍·면지역에서 운영할 수 있다. ②「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2조제2항에 따른 전문의용소방대는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구성한다. 1. ~ 6. 생략 ③ 이하 생략	제2조(의용소방대의 설치 등) ① 전북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이라 한다) 또는 전북특별자치도소방서장(이하 "소방서장"이라 한다)은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4항에 따른 전담의용소방대를 「지방소방기관 설치에 관한 규정」에 따른 소방기관(이하 "소방기관"이라 한다)이 설치되지 아니한 읍·면지역에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도지사 또는 소방서장은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2조제2항에 따른 전문의용소방대를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구성한다. 1. ~ 6. 현행과 같음 ③ 이하 현행과 같음	-행위 주체를 넣어 자연스러운 문장으로 표현 -"도지사"의 경우 제4조에서 약칭하고 있는데, 가장 먼저 사용된 곳에서 약칭하도록 정비 권고
제2장 의용소방대원의 임명 및 조직 등	<삭제>	-장(章) 삭제
제4조(의용소방대원의 임명) ① 전북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 또는 소방서장은 공개모집을 통하여 의용소방대 입대신청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모집공고문을 전북특별자치도 및 소방기관 게시판 또는 홈페이지 등에 10일 이상 게시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 또는 소방서장은 제1항에 따른 공개모집 결과 신청자가 없는 경우에는 전북특별자치도 소방본부 또는 관할 소방서 소속 소방공무원이나 의용소방대원이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추천하는 자 중에서 임명할 수 있다. 이 경우 소방공무원이나 의용소방대원은 추천대상자의 사전 동의를 받아야 한다.	제4조(의용소방대원의 임명) ① 도지사 또는 소방서장은 공개모집을 통하여 의용소방대 입대신청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모집공고문을 전북특별자치도 및 소방기관 게시판 또는 홈페이지 등에 10일 이상 게시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 또는 소방서장은 제1항에 따른 공개모집 결과 신청자가 없는 경우에는 전북특별자치도 소방본부 또는 관할 소방서 소속 소방공무원이나 의용소방대원이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추천하는 자 중에서 임명할 수 있다. 이 경우 소방공무원이나 의용소방대원은 추천대상자의 사전 동의를 받아야 한다.	-제4조제1항: 제2조제2항제6호에서 "도지사"를 사용하고 있으므로 가장 먼저 용어가 사용된 곳에서 약칭하도록 정비 권고 -제4조제2항·제4항: 띄어쓰기 정비 권고

현 행	개정안	비고
③ 생략 ④ 도지사 또는 소방서장은 의용소방대원을 임명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른 임명장을 수여할 수 있다. ⑤ 생략	③ 현행과 같음 ④ 도지사 또는 소방서장은 의용소방대원을 임명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임명장을 수여할 수 있다. ⑤ 현행과 같음	
제5조(의용소방대원의 해임 등) ① 도지사 또는 소방서장은 법 제4조에 따라 의용소방대원을 해임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른 의용소방대원 해임통지서를 해당 의용소방대원에게 보내야 한다. ② 의용소방대원이 사직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4호 서식에 따른 의용소방대원 사직서를 도지사 또는 소방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5조(의용소방대원의 해임 등) ① 도지사 또는 소방서장은 법 제4조에 따라 의용소방대원을 해임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의용소방대원 해임통지서를 해당 의용소방대원에게 보내야 한다. ② 의용소방대원이 사직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 의용소방대원 사직서를 도지사 또는 소방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띄어쓰기 정비 권고
제6조의2(반장·부장의 자격 기준) 대원에서 반장, 반장에서 부장으로 임명할 때에는 각각 3년 이상 근무한 대원을 최우선 임명하되, 법 제7조 및 법 시행규칙 제13조의 활동사항을 고려하여 임명하여야 한다.	제6조의2(반장·부장의 자격 기준) 대원에서 반장, 반장에서 부장으로 임명할 때에는 각각 3년 이상 근무한 대원을 최우선 임명하되, 법 제7조 및 규칙 제13조의 활동사항을 고려하여 임명하여야 한다.	-제2조제2항에서 이미 "규칙"으로 약칭했으므로 약칭으로 기재하도록 정비 권고
제8조(신분증 재발급 신청) 의용소방대원이 신분증을 재발급 받으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5호 서식에 따른 의용소방대원 신분증 재발급 신청서를 도지사 또는 소방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8조(신분증 재발급 신청) 의용소방대원이 신분증을 재발급 받으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 의용소방대원 신분증 재발급 신청서를 도지사 또는 소방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띄어쓰기 정비 권고
제3장 의용소방대 운영위원회	<삭제>	-장(章) 삭제
제11조(심의 및 수당) ① 생략 ② 공무원이 아닌 위촉 위원에게는 「전북특별자치도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 또는 여비 등의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1조(심의 및 수당) ① 현행과 같음 ② 공무원이 아닌 위촉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또는 여비 등의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중복적인 표현 정비 권고 -수당 및 여비에 관해 선언적인 의미만을 규정하면, 그에 따른 구체적인 사항은 당연히 「전북특별자치도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적용 받으므로 규정의 실익이 없음(법제처, 2023년 우수조례 및 자치법규 입법컨설팅 사례집, 22

현 행	개정안	비고
		6면)
제12조(절차 및 의결) ① 생략 ② 운영위원회는 규칙 제12조제2항 제1호에 따른 의용소방대원의 해임을 심의하는 경우에는 해당 의용소방대원에게 별지 제7호 서식에 따른 출석요구서를 발송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해당 의용소방대원은 회의에 출석하여 진술하거나 별지 제8호 서식에 따른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다. ③ 생략	제12조(절차 및 의결) ① 현행과 같음 ② 운영위원회는 규칙 제12조제2항 제1호에 따른 의용소방대원의 해임을 심의하는 경우에는 해당 의용소방대원에게 별지 제7호서식에 따른 출석요구서를 발송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해당 의용소방대원은 회의에 출석하여 진술하거나 별지 제8호서식에 따른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다. ③ 현행과 같음	-띄어쓰기 정비 권고
제4장 복무와 교육 및 훈련	<삭제>	-장(章) 삭제
제15조(소방장비 등 물품 유지·관리) 의용소방대는 법 제10조제3항 및 규칙 제17조제1항에 따라 무상으로 대여하거나 사용하는 소방장비 등 물품을 「소방장비관리규칙」에 따라 유지·관리하여야 한다.	제15조(소방장비 등 물품 유지·관리) 의용소방대는 법 제10조제3항 및 규칙 제17조제1항에 따라 무상으로 대여하거나 사용하는 소방장비 등 물품을 「소방장비관리법 시행규칙」에 따라 유지·관리하여야 한다.	-상위 법령의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인용 법령의 제명 정비 권고
제16조(복무에 대한 지도·감독) ① 법 제12조에 따라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각 연 1회 이상 의용소방대원의 복무에 대한 지도·감독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생략	제16조(복무에 대한 지도·감독) ① 법 제12조에 따라 전북특별자치도 소방본부장(이하 "소방본부장"이라 한다) 또는 소방서장은 각 연 1회 이상 의용소방대원의 복무에 대한 지도·감독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현행과 같음	-"소방본부장"을 약칭 후 사용하도록 용어 정비 권고
제17조(교육 및 훈련) ① ~ ⑥ 생략 ⑦ 도지사 또는 소방서장은 의용소방대원 교육·훈련을 위하여 소집한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7조(교육 및 훈련) ① ~ ⑥ 생략 ⑦ 도지사 또는 소방서장은 의용소방대원 교육·훈련을 위하여 소집한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중복적인 표현 정비 권고
제5장 의용소방대원의 경비 및 재해보상 등	<삭제>	-장(章) 삭제
제19조(성과중심의 보상) ①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의용소방대원의 활동실적을 반영하여 포상기회를 부여하는 등 성과중심으로 보상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② 생략 ③ 도지사 또는 소방서장은 재난현장에서 주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등 법 제7조 각 호에 따른 임	제19조(성과중심의 포상) ①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의용소방대원의 활동실적을 반영하여 포상기회를 부여하는 등 성과중심으로 포상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② 현행과 같음 ③ 도지사 또는 소방서장은 재난현장에서 주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등 법 제7조 각 호에 따른 임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서 사용하는 용어와 같게 "보상"을 "포상"으로 정비 권고 -포상에 관해 선언적인 의미만을 규정하면, 그에 따른 구체적인 사항은 당연히 「전북특별자

현 행	개정안	비고
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공적이 있는 의용소방대원에 대하여 「전북특별자치도 포상조례」 또는 지침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④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성과보상 및 사기진작 등을 위하여 모범의용소방대원에 대한 국내·외 견학, 시·도 화합을 위한 지역 간 교류행사, 전북자치도 및 시·군 의용소방연합회별 소방기술능력 배양을 위한 행사를 실시할 수 있다.	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공적이 있는 의용소방대원에 대하여 포상할 수 있다. ④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성과포상 및 사기진작 등을 위하여 모범의용소방대원에 대한 국내외 견학, 시·도 화합을 위한 지역 간 교류행사, 전북자치도 및 시·군 의용소방연합회별 소방기술능력 배양을 위한 행사를 실시할 수 있다.	치도 포상 조례」를 적용 받으므로 규정의 실익이 없음(법제처, 2023년 우수조례 및 자치법규 입법컨설팅 사례집, 118면)
제20조(재해보상) ① 생략 ② 도지사 또는 소방서장은 제1항에 따른 재해보상의 청구를 받은 때에는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재해보상금 지급을 결정하고 지체없이 지급하여야 한다. ③ ~ ④ 생략	제20조(재해보상) ① 현행과 같음 ② 도지사 또는 소방서장은 제1항에 따른 재해보상의 청구를 받은 때에는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재해보상금 지급을 결정하고 지체 없이 지급하여야 한다. ③ ~ ④ 현행과 같음	-띄어쓰기 정비 권고. '지체 없이'는 사전에 하나의 단어로 올라 있지 않기 때문에 띄어쓰도록 정비 권고
제6장 전북자치도 및 시·군 의용소방대연합회	<삭제>	-장(章) 삭제
제22조(설립) ① ~ ② 생략 ③ 전북자치도 및 시·군 연합회의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 2. 생략 3. 도 및 시·군 등의 협조 요청에 따른 지원	제22조(설립) ① ~ ② 현행과 같음 ③ 전북자치도 및 시·군 연합회의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 2. 현행과 같음 3. 전북자치도 및 시·군 등의 협조 요청에 따른 지원	-약칭한 대로 "전북자치도"로 용어 사용 정비 권고
제23조(조직 및 구성) ① 도 연합회는 회장, 부회장, 감사 및 사무처장을 시·군 연합회는 회장, 부회장, 감사 및 사무국장을 둘 수 있다. 다만 남성의용소방대연합회와 여성의용소방대연합회를 통합하여 운영하는 경우에는 전북자치도 연합회는 남성과 여성 각각의 회장, 부회장, 감사 및 사무처장을 시·군 연합회는 남성과 여성 각각의 회장, 부회장, 감사 및 사무국장을 둘 수 있다. ② 이하 생략	제23조(조직 및 구성) ① 전북자치도 연합회는 회장, 부회장, 감사 및 사무처장을 시·군 연합회는 회장, 부회장, 감사 및 사무국장을 둘 수 있다. 다만 남성의용소방대연합회와 여성의용소방대연합회를 통합하여 운영하는 경우에는 전북자치도 연합회는 남성과 여성 각각의 회장, 부회장, 감사 및 사무처장을 시·군 연합회는 남성과 여성 각각의 회장, 부회장, 감사 및 사무국장을 둘 수 있다. ② 이하 현행과 같음	-약칭한 대로 "전북자치도"로 용어 사용 정비 권고
제24조(회장 등의 임명) ① 생략 ② 부회장 및 감사는 총회에서 선출하고 사무처장 및 사무국장은 회장이 회원중에서 지명하며 도지사 또	제24조(회장 등의 임명) ① 생략 ② 부회장 및 감사는 총회에서 선출하고 사무처장 및 사무국장은 회장이 회원 중에서 지명하며 도지사 또	-띄어쓰기 정비 권고

현 행	개정안	비고
는 소방서장이 위촉한다.	는 소방서장이 위촉한다.	
제27조(경비지원) ① ~ ② 생략 ③ 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가 소요경비를 지원하는 경우에는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지도 감독을 하여야 한다.	제27조(경비지원) ① ~ ② 현행과 같음 ③ 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가 소요경비를 지원하는 경우에는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지도·감독을 하여야 한다.	-문장 부호를 사용하여 정비 권고
제28조(전국연합회 임원) 규칙 제23조 제2항에 따른 전국연합회임원은 전국연합회 임원의 임기 내에서 전북자치도 연합회장의 임기를 보장 할 수 있다.	제28조(전국연합회 임원) 규칙 제23조 제2항에 따른 전국연합회임원은 전국연합회 임원의 임기 내에서 전북자치도 연합회장의 임기를 보장받을 수 있다.	-주술관계에 맞게 문장 표현 정비 권고
제29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삭제>	-시행규칙은 개별 조례에서 위임이 없더라도 조례의 집행에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규칙으로 규정할 수 있으므로 삭제 권고
제7장 보칙	<삭제>	-장(章) 삭제
[별지 제13호서식]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 요양·장애보상(주민등록등본, 외국인등록 사실증명서) 장제·유족보상(가족관계증명서· 인감증명서)	[별지 제13호서식]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 요양·장애보상(주민등록등본, 외국인등록 사실증명서) 장제·유족보상(가족관계증명서,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또는 전자본인서명확인서 발급증)	-별지의 서류 내용 수정(집행부 의견)

심층분석 관련 검토

○ **심층분석**

- 타 시·도 사례와 비교하여 선진적인 규정의 도입을 검토하였으나 추가적인 시사점을 발견하기 어려움. 개정의견과 같이 개정하도록 권고함

□ 참고자료 1 – 위원회 관련 실적

○ **구성**

- 의용소방대 운영위원회(비상설)
- 의용소방대 추천, 해임, 포상 등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심의

구분	정원	현원	당연직	위촉직	
				남	여
위원수(명)	5~9	5~9		성별균형 고려	
비 율(%)	-	-	-		

○ **개최 실적**

연도별	2022	2023	2024
개최건수	91	87	66
개최일	연중 필요시		
소요예산(원)	1,851,800	1,651,400	1,331,400

□ 참고자료 2 – 조례 관련 자료

○ 자료 1 – 전북특별자치도 의용소방대 홈페이지



○ 자료 2 – 의용소방대 정원 현황

정원현황

구 분		대 수(대)						대 원 수(명)					
		계	남성	여성	지역	전문	전담	계	남성	여성	지역	전문	전담
계	계	362	163	166	14	16	3	8,220	3,930	3,770	280	180	60
	시	31	7	7	5	12		1,010	420	350	100	140	
	읍	35	15	15	2	3		1,360	720	570	40	30	
	면	296	141	144	7	1	3	5,850	2,790	2,850	140	10	60

□ 참고자료 3 – 조례 관련 보도 자료

○ 보도자료 1

전북특별자치도소방본부 의용소방대 '전국의용소방대 강의경연대회' 장려상 수상, 골든타임즈[41)]



▲ 전북특별자치도소방본부 의용소방대 '전국의용소방대 강의경연대회' 장려상 수상

[골든타임즈=최소영 기자] 전북특별자치도 소방본부가 지난 25과 26일 양일간 충북 단양 소노문리조트에서 열린 제10회 전국의용소방대 강의경연대회에 참가해 우수한 성적을 거두었다

전국 시도별로 생활안전 및 심폐소생술 2개분야에 각 19개팀이 참가한 이번 10회 강의경연대회는 교안심사, 발표심사를 평가하며 입상자에게는 소방청장상이 수여된다

이번 대회는 전북특별자치도 자체대회에서 생활안전분야 1등을 차지한 장수소방서 조수미 대원이 "함께 지키는 안전수칙 실천, 함께 만드는 안전문화 정착!"을 주제로, 심폐소생술분야 1등을 차지한 익산소방서 김한나·하성희대원이 "나도 할 수 있어요 심폐소생술"을 발표해 장려상을 수상하는 영광을 안았다.

이오숙 소방본부장은 "열정과 노력으로 열심히 준비한만큼 좋은 결실을 거둔 의용소방대원들에게 진심으로 축하드린다"며 "이번 대회를 계기로 도민 안전교육을 활성활해 안전문화 확산에 노력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전북특별자치도 8,220명의 의용소방대원이 활동하고 있으며 생활안전강사 및 심폐소생술강사 자격을 취득하여 지역 주민들을 대상으로 안전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41) https://www.goldentimes.kr/689366

○ **보도자료 2**

2024년 전북특별자치도 의용소방대 소방기술경연대회 개최, 아시아뉴스전북[42)]

> 12일 익산 실내체육관에서 2024 의용소방대 기술경연대회 개최
> 김관영 지사, 정헌율 익산시장, 도내 의용소방대원 등 3,000여명 참석



전북특별자치도소방본부(본부장 이오숙)가 12일 익산시 실내체육관에서 '2024년 의용소방대 소방기술경연대회'를 개최했다.@아시아뉴스전북(전북특별자치도)

[아시아뉴스전북=유병철 기자] 전북특별자치도소방본부(본부장 이오숙)가 12일 익산시 실내체육관에서 '2024년 의용소방대 소방기술경연대회'를 개최했다.

의용소방대 기술경연대회는 지역 안전지킴이로 활동하는 의용소방대원들의 대응 능력 향상과 상호 우호 증진을 도모하기 위해 매년 추진하고 있다.

이날 대회에는 김관영 지사와 정헌율 익산시장, 한병도 국회의원, 이춘석 국회의원과 공은태. 윤정순 전북특별자치도 의용소방대연합회장, 도내 각 소방서 의용소방대원 등 3,000여 명이 참석했다.

식전공연을 시작으로 화려한 막을 올린 개회식에서는 전주완산소방서 전주완산여성의용소방대 최수연 대원 등 15명이 도민 생명과 재산보호 기여 및 '함께 혁신, 함께 성공, 새로운 전북' 실현에 앞장선 공로를 인정받아 모범의용소방대원 표창장을 수여받는 영예를 안았다.

또 15개 시.군 대표로 240명의 의용소방대원이 출전했으며 소방호스 전개 및 회수, 심폐소생술 등 3개 종목에서 마음껏 기량을 펼쳤다.

공은태 의용소방대연합회장은 "오늘 경연대회가 의용소방대원의 능력을 더욱 향상시키고 그 결실이 안전한 전북특별자치도의 위상을 드높이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김관영 지사는 "재난의 순간 이웃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 힘을 보태는 의용소방대원의 열정과 헌신에 진심으로 감사드린다"며 "대회를 통해 서로의 노력을 응원하는 우정과 화합을 다지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42) https://www.mjeonbuk.com/news/articleView.html?idxno=88795

붙임 1 사업 관련 추진실적

□ 연도별 사업 및 예산 집행 실적

○ 주요 사업내용 및 실적

- 광주소방학교 의용소방대 간부교육 및 전문교육
  (전문교육) 23년11월 13,21,22,23일 (4일)
  (간부교육) 23년11월 8,14일 (2일)
  (소요예산) 5,223,380원
- 한국소방안전원 의용소방대 전문화교육
  (심폐소생술) 23.11.01. (1일)
  (교관양성과정) 23.8.28. ~ 9.1. (5일)
  (생화안전강사) 23.8.23. ~ 8.25. (3일)
  (소요예산) 13,894,400원
- 소방관서 원거리지역 의용소방대 화재진화차 등 지원
  (지원수량) 12대(2017년 ~ 2024년)
  (소요비용) 700,000천원
- 15개 시군구 연합회와 타 시도 연합회 교류행사
  22년 15회, 34,175천원
  23년 14회, 39,998천원
  24년 15회, 40,000천원
- 의용소방대 소방기술경연대회
  주요내용 : 화재,구조,구급 분야 경연
  예 산 : 115,000천원
  집행실적 : 15개 소방서 및 본부 집행 완료
- 의용소방대 강의경연대회
  주요내용 : 심폐소생술, 생활안전분야 강의경연
  예 산 : 2,000천원

(단위: 천원)

연도	사업명	필요예산	확보예산	집행액	집행내역
2021	의용소방대 운영	4,985,624	4,985,624	4,985,624	소집수당,피복비,장학금,여비,기술경연 등
	화재진화차 구매	120,000	120,000	120,000	화재진화차 및 개인보호장비 구입
2022	의용소방대 운영	5,023,575	5,023,585	5,023,585	소집수당,피복비,장학금,여비,기술경연 등
	화재진화차 구매	120,000	12,0000	12,0000	화재진화차 및 개인보호장비 구입
2023	의용소방대 운영	5,089,902	5,089,902	5,089,902	소집수당,피복비,장학금,여비,기술경연 등

붙임 2 평가대상 조례

전북특별자치도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 2024. 1. 18.] [전북특별자치도조례 제5399호, 2023. 12. 8., 일부개정]

전북특별자치도(119대응과)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과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위임된 사항 및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의용소방대의 설치 등)

①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4항에 따른 전담의용소방대는 「지방소방기관 설치에 관한 규정」에 따른 소방기관(이하 “소방기관”이라 한다)이 설치되지 아니한 읍·면지역에서 운영할 수 있다.

②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2조제2항에 따른 전문의용소방대는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구성한다.

1. 「국가기술자격법 시행규칙」에 따른 소방·전기·가스·기계·화학(화공 및 위험물을 포함한다)·토목·건축·정보통신 또는 사회복지, 간호, 교육, 상담분야의 자격을 가진 사람
2. 산악 및 수상 분야의 자격을 가진 사람
3. 1종 대형면허를 가진 사람
4. 견인차·중장비 또는 덤프트럭 등 소방활동에 활용할 수 있는 장비를 보유한 사람
5. 변호사 또는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에서 법학·의학·공학, 교육학, 사회복지학, 심리학 등 관련 학과의 전임교수 이상의 직(職)에 있거나 있었던 사람
6. 그 밖에 소방활동과 관련하여 도지사 또는 소방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③ 법 제2조제3항에 따라 관할구역을 따로 정하여 설치하는 의용소방대(이하 “지역의용소방대”라 한다)와 전문의용소방대는 규칙 제2조제1항에 따라 설치한 의용소방대의 하부조직으로 설치할 수 있다.

④ 지역의용소방대는 소방 수요 및 지역여건을 고려하여 일부 통합하거나 조정하여 운영할 수 있으며, 관할구역 및 세부 운영기준에 대해서는 시행규칙으로 정한다.

제2조의2(의용소방대의 날 운영)

① 도지사는 법 제2조의2제2항에 따라 의용소방대의 숭고한 봉사와 희생정신을 알리고 그 업적을 기리기 위하여 매년 3월 19일에 의용소방대의 날 기념행사를 한다.

② 도지사는 의용소방대의 날 기념행사 등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2.11.11.]

제3조(의용소방대의 표지 등) 규칙 제4조제1항에 따른 의용소방대 기(旗) 및 표지는 의용소방대의 활동과 공익목적 등에 필요한 경우에만 사용하여야 한다.

제2장 의용소방대원의 임명 및 조직 등

제4조(의용소방대원의 임명)

① 전북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 또는 소방서장은 공개모집을 통하여 의용소방대 입대 신청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모집공고문을 전북특별자치도 및 소방기관 게시판 또는 홈페이지 등에 10일 이상 게시하여야 한다.<개정 2023. 12. 8.>

② 도지사 또는 소방서장은 제1항에 따른 공개모집 결과 신청자가 없는 경우에는 전북특별자치도 소방본부 또는 관할 소방서 소속 소방공무원이나 의용소방대원이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추천하는 자 중에서 임명할 수 있다. 이 경우 소방공무원이나 의용소방대원은 추천대상자의 사전 동의를 받아야 한다.<개정 2023. 12. 8.>

③ 의용소방대장(지역의용소방대장, 전문의용소방대장 및 전담의용소방대장을 포함한다. 이하 “대장”이라 한다)이 의용소방대원의 직위를 변경(부대장으로의 직위변경은 제외한다)하려는 경우에는 도지사 또는 소방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제4항에 따른 임명장을 수여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④ 도지사 또는 소방서장은 의용소방대원을 임명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른 임명장을 수여할 수 있다.

⑤ 도지사 또는 소방서장은 경리, 조달 및 장비·물품 관리를 담당하는 의용소방대원을 임명하는 경우 재정보증에 대해서는 「전북특별자치도회계관계공무원재정보증조례」를 준용한다.<개정 2023. 12. 8.>

제5조(의용소방대원의 해임 등)

① 도지사 또는 소방서장은 법 제4조에 따라 의용소방대원을 해임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른 의용소방대원 해임통지서를 해당 의용소방대원에게 보내야 한다.

② 의용소방대원이 사직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4호 서식에 따른 의용소방대원 사직서를 도지사 또는 소방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6조(조직) 제2조제3항에 따라 의용소방대의 하부조직으로 설치한 지역의용소방대 및 전문의용소방대에는 부대장을 두지 아니하며 총무부장이 대장의 직무를 대행할 수 있다.

제6조의2(반장·부장의 자격 기준) 대원에서 반장, 반장에서 부장으로 임명할 때에는 각각 3년 이상 근무한 대원을 최우선 임명하되, 법 제7조 및 법 시행규칙 제13조의 활동사항을 고려하여 임명하여야 한다. 다만, 임명기준에 적합한 대원이 없거나, 신규로 의용소방대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본조신설 2022.11.11.]

제7조(정원)

① 규칙 제11조제3항에 따라 의용소방대에 두는 대원의 정원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20.2.28.>

1. 시 : 남성 60명 이내, 여성 50명 이내
2. 읍 : 남성 50명 이내, 여성 40명 이내
3. 면: 남성 20명 이내, 여성 20명 이내 또는 혼성 40명 이내(다만, 소방서가 설치된 면은 남성 30명 이내, 여성 30명 이내로 한다)
4. 지역의용소방대: 혼성 20명 이내
5. 전문의용소방대: 혼성 10명 이내(다만, 지역의용소방대를 전문의용소방대로 전환하는 경우와 대학생 전문의용소방대는 정원을 20명 이내로 한다)

② 소방서장은 제1항에 따른 정원의 범위내에서 지역여건에 따라 일부 조정하여 운영할 수 있으며 세부 정원기준에 대해서는 시행규칙으로 정한다.

제8조(신분증 재발급 신청) 의용소방대원이 신분증을 재발급 받으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5호 서식에 따른 의용소방대원 신분증 재발급 신청서를 도지사 또는 소방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9조(개인정보) 법 또는 규칙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으로 의용소방대 운영과 관련하여 의용소방대원 등의 개인정보를 이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당사자에게 별지 제6호서식의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

의서를 받아야 한다.

제3장 의용소방대 운영위원회

제10조(구성)

① 규칙 제12조제1항에 따른 의용소방대 운영위원회(이하 “운영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5명 이상 9명 이하의 위원으로 성별균형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도지사 또는 소방서장이 위원 중에서 임명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도지사 또는 소방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소방본부 또는 관할 소방서 소속 소방공무원
2. 소방본부 또는 관할 소방서 소속 의용소방대원
3. 소방업무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③ 위원장은 운영위원회를 대표하고 회의소집 등 운영위원회 업무를 총괄한다.

④ 도지사 또는 소방서장은 운영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소방본부 또는 관할 소방서 소속 소방공무원 중에서 간사를 임명한다. 이 경우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운영위원회 회의록을 작성·보관한다.

⑤ 운영위원회는 해당 안건에 대하여 구성되며 안건 심의의결 후에는 자동으로 해체된다.<신설 2020.2.28.>

제11조(심의 및 수당)

① 규칙 제12조제2항제4호의 “그 밖에 의용소방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23. 12. 8.>

1. 제19조에 따른 성과중심의 보상심의에 관한 사항(공적심사위원회를 개최하는 경우에는 운영위원회 개최를 생략할 수 있다.)
2. 제24조에 따른 전북특별자치도(이하 “전북자치도”라 한다) 및 시·군 의용소방대연합회장의 임명추천에 관한 사항
3. 의용소방대 또는 전북자치도 및 시·군 의용소방대연합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

② 공무원이 아닌 위촉 위원에게는 「전북특별자치도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 또는 여비 등의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20.2.28., 2023. 12. 8.>

제12조(절차 및 의결)

① 위원장은 운영위원회의 개최 일시·장소·방법 등을 미리 결정하여 각 위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운영위원회는 규칙 제12조제2항제1호에 따른 의용소방대원의 해임을 심의하는 경우에는 해당 의용소방대원에게 별지 제7호 서식에 따른 출석요구서를 발송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해당 의용소방대원은 회의에 출석하여 진술하거나 별지 제8호 서식에 따른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다.

③ 운영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3조(대장 등 추천)

① 소방서장이 법 제6조제2항에 따라 대장 및 부대장 후보자를 추천하는 경우에는 임명 예정 인원의 2배수 이상을 추천할 수 있다.

② 운영위원회에서는 규칙 제9조제1항에 따른 운영위원회 심의 시 대장 및 부대장이 되려는 사람에게 의견을 듣거나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③ 대장 및 부대장과 전북자치도 및 시군의용소방대연합회장에 대한 운영위원회 심의대상 후보자 모집절차는 시행규칙으로 정한다.<개정 2023. 12. 8.>

제4장 복무와 교육 및 훈련

제14조(전담의용소방대)

① 도지사 또는 소방서장은 전담의용소방대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소방관련 경력자 등을 운영지도관으로 임명할 수 있다.

② 운영지도관은 비상근으로 관할구역 안에 거주 또는 상주하여야 한다. 다만, 도지사 또는 소방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③ 운영지도관의 복무나 근무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도지사 또는 소방서장이 정한다.

④ 전담의용소방대장은 장비운영에 필요한 자격을 가진 사람을 지정 운영하여야 하며, 전담의용소방대의 복무 및 근무방법 등에 대해서는 관할 소방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⑤ 전담의용소방대원은 출동대기 근무를 한 경우 별지 제9호 서식에 따른 대기 근무일지를 작성하여야 한다.

제15조(소방장비 등 물품 유지·관리) 의용소방대는 법 제10조제3항 및 규칙 제17조제1항에 따라 무상으로 대여하거나 사용하는 소방장비 등 물품을 「소방장비관리규칙」에 따라 유지·관리하여야 한다.

제16조(복무에 대한 지도·감독)

① 법 제12조에 따라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각 연 1회 이상 의용소방대원의 복무에 대한 지도·감독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의용소방대원은 제1항에 따른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의 지도·감독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17조(교육 및 훈련)

①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규칙 제18조제1항에 따른 교육 및 훈련(이하 "교육·훈련"이라 한다)을 실시한 때에는 별지 제10호 서식에 따른 의용소방대 교육·훈련 기록부를 작성·관리하여야 한다.

② 대장 및 부대장은 임명 후 소방본부장, 소방서장 또는 소방학교장이 실시하는 의용소방대 관련 교육·훈련을 이수하여야 한다.

③ 의용소방대원이 신규로 임명된 경우에는 3개월 이내에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이 실시하는 직무교육을 이수하여야 한다.

④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교육·훈련 실적을 의용소방대원 개인별로 관리하여야 한다.

⑤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인터넷 등 정보통신을 이용하여 교육·훈련을 실시할 수 있다.

⑥ 의용소방대원이 소방본부, 소방학교, 한국소방안전협회 등에서 집합교육을 받은 경우에는 당해 월중 교육을 이수한 것으로 본다.

⑦ 도지사 또는 소방서장은 의용소방대원 교육·훈련을 위하여 소집한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5장 의용소방대원의 경비 및 재해보상 등

제18조(소집수당 등)

① 의용소방대원이 법 제15조에 따른 소집수당을 신청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12호서식에 따른 소집수당 신청서를 도지사 또는 소방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별지 제11호서식에 따른 소방출동(활동) 기록부를 첨부하여야 한다.

② 소집수당은 임무를 수행한 총 시간을 월별로 합산하여 지급하며, 분 단위 이하를 제외하고 시간 단위로 지급한다.<개정 2022. 11. 4.>

③ 규칙 제19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1일 8시간을 초과하여 소집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20.2.28.>

1. 전담의용소방대원이 화재 등 재난현장활동 임무를 수행한 때
2.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0조에 따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에서 법 제7조에 따른 임무를 수행하는 의용소방대원

제19조(성과중심의 보상)

①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의용소방대원의 활동실적을 반영하여 포상기회를 부여하는 등 성과중심으로 보상하고 관리하여야 한다.<개정 2020.2.28.>

② 도지사 또는 소방서장은 의용소방대원이 지역사회의 안전을 위하여 헌신·봉사하고 퇴임하는 때에는 공로패를 수여할 수 있으며 공로패 수여대상에 대한 세부기준은 시행규칙으로 정한다.<개정 2020.2.28.>

③ 도지사 또는 소방서장은 재난현장에서 주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등 법 제7조 각 호에 따른 임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공적이 있는 의용소방대원에 대하여 「전북특별자치도 포상조례」 또는 지침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개정 2020.2.28., 2023. 12. 8.>

④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성과보상 및 사기진작 등을 위하여 모범의용소방대원에 대한 국내·외 견학, 시·도 화합을 위한 지역 간 교류행사, 전북자치도 및 시·군 의용소방연합회별 소방기술능력 배양을 위한 행사를 실시할 수 있다.<개정 2022.11.11., 2023. 12. 8.>

제20조(재해보상)

① 재해보상의 청구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부터 1년 이내에 별지 제13호 서식에 따라 대장을 경유하여 도지사 또는 소방서장에게 하여야 한다.<개정 2020.2.28.>

1. 요양보상: 해당 의용소방대원이 재해를 당한 날
2. 장애보상: 해당 의용소방대원의 장애정도가 확정된 날
3. 장제보상 및 유족보상: 해당 의용소방대원이 사망한 날

② 도지사 또는 소방서장은 제1항에 따른 재해보상의 청구를 받은 때에는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재해보상금 지급을 결정하고 지체없이 지급하여야 한다.

③ 재해보상금을 받을 유족의 순위는 「민법」 제1000조에 따른 상속의 순위에 따르되, 유족 중 동순위자(同順位者)가 2명 이상 있는 경우에는 재해보상금을 똑같이 나누어 지급한다.

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 유족 중 재해보상금을 받을 동순위자가 2명 이상인 경우에 그 동순위자 또는 그의 법정대리인 중에서 대표자를 선정하여 모든 사람의 재해보상금 수령을 위임한 때에는 제3항에 따른 지급에 갈음하여 그 대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임자는 대표자 선정서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첨부하여 도지사 또는 소방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20.2.28.>

1. 위임자가 성년인 경우: 위임자 본인의 주민등록증 등 공공기관이 발행한 본인 확인이 가능한 신분증 사본
2. 위임자가 미성년인 경우: 법정대리인의 주민등록증 등 공공기관이 발행한 본인 확인이 가능한 신분증 사본

제21조(경비부담) 도지사 또는 시장·군수는 의용소방대 운영과 활동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경비를 부담한다.

1. 소방활동 지원을 위한 장비·물품 구입비 및 유지·관리비
2. 의용소방대 소방기술경연 및 영호남 교류에 필요한 소요경비
3. 재난예방활동을 위한 소방홍보에 필요한 경비
4. 재난현장 초동대응 강화 관련 지역주민 대상 교육·훈련에 필요한 경비
5. 그 밖에 의용소방대의 운영 또는 활동에 필요한 경비

제6장 전북자치도 및 시·군 의용소방대연합회

제22조(설립)

① 규칙 제22조제1항에 따른 지역의용소방대연합회는 전북자치도와 시·군의 행정구역 단위로 의용소

방대연합회(이하 “전북자치도 및 시·군 연합회”라 한다)를 설립하여 운영하며, 남성의용소방대연합회와 여성의용소방대연합회로 구분하여 설립할 수 있다. 다만 시·군의 행정구역과 소방서 관할구역이 일치하지 않을 경우에는 소방서 단위로 연합회를 구성할 수 있다.<개정 2023. 12. 8.>

② 전북자치도 및 시·군 연합회별 명칭 및 관할구역은 시행규칙으로 정한다.<개정 2023. 12. 8.>

③ 전북자치도 및 시·군 연합회의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23. 12. 8.>

1. 의용소방대원 복지증진 및 소방업무 수행능력 향상 도모
2. 의용소방대 상호 간 소방업무 관련 정보 교환 및 협력 강화
3. 도 및 시·군 등의 협조 요청에 따른 지원

제23조(조직 및 구성)

① 도 연합회는 회장, 부회장, 감사 및 사무처장을 시·군 연합회는 회장, 부회장, 감사 및 사무국장을 둘 수 있다. 다만 남성의용소방대연합회와 여성의용소방대연합회를 통합하여 운영하는 경우에는 전북자치도 연합회는 남성과 여성 각각의 회장, 부회장, 감사 및 사무처장을 시·군 연합회는 남성과 여성 각각의 회장, 부회장, 감사 및 사무국장을 둘 수 있다.<개정 2016. 3. 25., 2023. 12. 8.>

② 전북자치도 및 시·군 연합회 회원의 자격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23. 12. 8.>

1. 전북자치도 연합회는 각 시·군 연합회장
2. 시·군 연합회는 관할 행정구역내 대장

③ 전북자치도 및 시·군 연합회 회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회원의 자격을 상실한다.<개정 2023. 12. 8.>

1. 법 제4조제1항제4호·제5호 및 규칙 제6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
2.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의 요구가 있어 재적회원 3분의 2 이상의 의결이 있는 경우

제24조(회장 등의 임명)

① 전북자치도 및 시·군 연합회장은 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쳐 도지사가 임명한다.<개정 2023. 12. 8.>

② 부회장 및 감사는 총회에서 선출하고 사무처장 및 사무국장은 회장이 회원중에서 지명하며 도지사 또는 소방서장이 위촉한다.<개정 2016. 3. 25>

제25조(회장의 임기)

① 전북자치도 연합회장, 시·군 연합회장, 대장(이하 “회장 등”이라 한다)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이 때 임기의 통일을 위하여 임기의 시작일은 1월 1일로 한다.<개정 2022.11.11., 2023. 12. 8.>

② 부회장, 감사, 사무처장, 사무국장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단, 사무처장 및 사무국장은 전북자치도 연합회장 및 시·군 연합회장의 임기가 종료되는 경우 그 임기가 함께 종료되는 것으로 본다.<신설 2022.11.11. 2023. 12. 8.>

③ 전북자치도 연합회장, 시·군 연합회장의 임기 중 시·군 연합회장 또는 대장의 임기가 종료되거나 지위가 상실된 경우에는 전북자치도 연합회장, 시·군 연합회장의 지위를 상실한다.<신설 2022.11.11., 2023. 12. 8.>

④ 회장 등의 임기 중 사임 등으로 공석이 생겼을 때는 전임자의 잔여임기에 한하여 새로운 회장 등을 임명하거나 직제순으로 그 직무를 대리한다. 이 경우 새로이 임명되는 회장 등은 연임제한 횟수에 포함된다.<신설 2022.11.11.>

⑤ 제1항에 따른 회장 등의 선출은 다음 각 호의 시기까지 이루어져야 한다.<신설 2022.11.11., 2023. 12. 8.>

1. 대장: 12월 1일 이전
2. 시·군 연합회장: 12월 15일 이전
3. 전북자치도 연합회장: 12월 30일 이전

제26조(회의 등)

① 전북자치도 및 시·군 연합회의 회의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구분한다.<개정 2023. 12. 8.>

② 정기총회는 연 1회 개최하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연합회의 회칙 및 운영과 관련된 사항
2. 연합회 기능 수행을 위한 사업계획에 관한 사항
3. 회계감사 결과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회장이 총회에 안건으로 상정하는 사항

③ 임시총회는 전북자치도 및 시·군 연합회의 회장 또는 재적회원 3분의 1 이상이 요구하는 경우 소집한다.<개정 2023. 12. 8.>

④ 정기총회 및 임시총회는 재적회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회장은 정기총회 및 임시총회를 개최한 때에는 회의록을 작성하고, 회원에게 공개하여야 한다.

제27조(경비지원)

① 도지사는 전북자치도연합회의 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소요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개정 2023. 12. 8.>

② 시장·군수는 시·군 연합회의 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소요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③ 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가 소요경비를 지원하는 경우에는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지도 감독을 하여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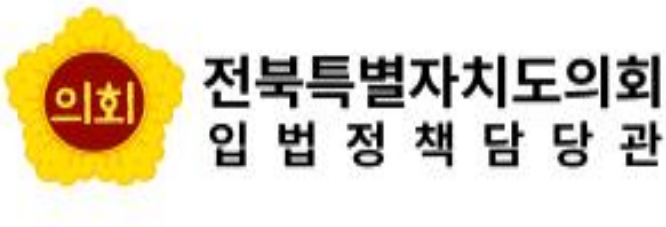
제28조(전국연합회 임원) 규칙 제23조제2항에 따른 전국연합회임원은 전국연합회 임원의 임기 내에서 전북자치도 연합회장의 임기를 보장 할 수 있다.<개정 2023. 12. 8.>

제29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7장 보칙

제30조(권한의 위임) 도지사는 의용소방대의 운영상 필요한 권한의 일부를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 **연구용역** : 한국법제연구원(https://www.klri.re.kr)
- 책임연구원 차현숙 선임연구위원
- 공동연구원 강현철 선임연구위원 / 김동균 연구위원
- 연구보조원 이상현 연구원
· **심의·조정** :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입법평가위원회
· **편집·검토** :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입법정책담당관 입법지원팀 (063-280-4411)
· **발 행 처** :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입법정책담당관 (063-280-4410)
· **발 행 일** : 2024년 12월 30일


의회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입 법 정 책 담 당 관